간추린改正稅法
(1974~1982)

改正稅法 總覽(Ⅰ)

韓國租稅研究院

改正稅法 總覽(Ⅰ)

(간추린改正稅法 '74~'82)



韓國租稅研究院

改正稅法 總覽(Ⅰ)

(간추린改正稅法 '74~'82)



韓國租稅研究院

目　　次

'74 간추린 改正稅法 ····· 3

'75 防衛稅法 制定 ····· 113

'76 간추린 改正稅法 ····· 137

'77 附加價値稅法 어떤 稅金인가 ····· 307

'78 간추린 改正稅法 ····· 347

'79 간추린 改正稅法 ····· 483

'80 간추린 改正稅法 ····· 559

'81 간추린 改正稅法 ····· 635

'82 간추린 改正稅法 ····· 823

74년도

간추린 改正稅法

所 得 稅 法
營 業 稅 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17個 稅法을 改正 또는 制定하여 今年 1月 1日부터 施行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稅金은 政府가 必要로 하는 財政收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主目的이 있는 것이지만 近來에 와서는 稅金이 國民의 生活과 더욱 密接한 關係가 이루어지고 있고 國民生活 하나하나에 미치는 影響이 커짐에 따라 같은 稅金을 받아드리더라도 國民의 立場에서 가장 公平하게 그리고 稅負擔感을 가급적 적게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政府와 納稅者間에 稅務摩擦을 적게하는 한편 稅金이라는 政策手段을 利用하여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을 더욱 促進하고 社會가 더욱 健實하게 되며 庶民生活을 윤택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過去 어느때보다도 더욱 要請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동안 政府로서는 이와 같은 點을 깊이 念頭에 두고 改正稅法案을 다듬어 國會審議를 거쳐 公布 施行하게 되었습니다. 稅法은 國民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고 納稅者와의 많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너무 複雜하고 理解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제 그 어렵고 複雜한 稅法을 國民 여러분들이 多少나마 쉽게 理解하여 稅務當局과 納稅者 사이에 아무런 마찰없이 協調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改正稅法중 納稅者와 가장 關聯이 많은 所得稅法등 12個稅法에 對한 解說冊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小冊子에 의하여 稅法을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國家財政收入을 圓滑하게 確保케 하고 國民生活의 安定과 經濟開發의 기틀이 되어 줄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75. 1.

財務部長官 金 龍 煥

目　　次

所得稅法 …… 9

1. 所得稅의 納稅義務者 …… 9
2. 所得의 區分 …… 10
3. 課稅期間과 納稅地 및 課稅地 …… 10
4. 非課稅所得과 所得稅의 減免 …… 11
5.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方法 …… 15
6.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20
7. 所得控除 …… 23
8. 稅　　率 …… 31
9. 稅額控除 …… 33
10. 稅額計算의 特例 …… 38
11. 中間豫納 및 豫定申告와 稅額納付 …… 41
12. 課稅標準確定申告와 稅額納付 …… 44
13. 課稅標準의 決定 …… 45
14. 納　　期 …… 48
15. 非居住者에 對한 課稅方法 …… 49
16. 帳簿備置記帳義務 …… 49
17. 販賣報告, 支給報告,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 51
18. 讓渡所得課稅 …… 52
19. 其他 改正事項 …… 63
20. 源泉徵收 …… 64
21. 勤勞所得者가 提出할 申告書 書式과 그 記載要領 …… 74

營業稅法 …… 86

1. 營業의 分類 및 稅率 …… 86

2. 非課稅 및 免除營業의 追加와 免稅點 및 稅額控除制의 擴大 …… 89

3. 認定課稅의 縮小 …… 92

4. 記帳義務의 緩和 …… 96

5. 指定源泉徵收制度의 擴大 …… 97

6. 標準計算書制度 …… 102

7. 營業者 納稅番號制度 …… 109

所 得 稅 法

從前의 우리나라 所得稅는 勤勞所得,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등 各種 所得을 中心으로 課稅하는 分類課稅制度이었기 때문에 個人을 中心으로 얻어지는 모든 種類의 所得을 合計하여 所得이 많은 사람에게는 相對的으로 많은 稅金을 賦課하는 公平課稅를 할 수 없었고 또한 個人의 事情을 稅負擔에 전혀 考慮하고 있지 않아 個人別로 擔稅能力에 따라 稅金을 負擔하는 應能負擔이 되지를 못하였다.

이번 所得稅法改正은 이러한 不完全한 所得稅制度를 是正하여 個人을 中心으로 얻어지는 모든 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또한 個人의 人的인 事情 즉 配偶者, 扶養家族 또는 가족중에 障害者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金額의 所得者라 하더라도 稅負擔을 달리하게 하는 여러가지 人的控除制度(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障害者控除)와 勤勞所得控除 기타特別控除制를 採擇하여 우리도 先進國에서 채택하고 있는 公平한 綜合所得稅制度를 確立하는 한편 低所得層과 中產層의 稅負擔을 大幅 덜어주고 또한 이들의 資產形成을 도와주는 稅制上의 措置를 마련하였다.

1. 所得稅의 納稅義務者(法 §1, 令 §2)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居 住 者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6月이상 居所를 둔 個人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個人
非 居 住 者	居住者가 아닌 者로서 國內 源泉所得이 있는 個人	左 同
法人格없는 團體	個人으로 봄	法人으로 봄

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自然人인 個人이다. 그리고 個人은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 區分하여 納稅義務에 差等을 두고 있다.

居住者는 國內에 住所가 있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者를 말하며, 所得稅法이 定하는 國內外의 모든 所得에 대하여 納稅義務가 있고, 非居住者는 居住者가 아닌 者 즉 國內에 住所가 없거나 1年 미만의 居所를 두고 있거나 外國에 住所를 두고 우리나라에 居住하고 있지 않는 者를

말하며 이들은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서만 所得稅의 納稅義務를 지는 것이다.

法人과 法人格없는 社團·財團등은 法人으로서 所得稅의 納稅義務는 없고 法人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2. 所得의 區分(法 §4)

全面的인 綜合所得稅制라고 하여 모든 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것은 아니다.

綜合所得이 되는 所得으로서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과 其他所得이 있으며, 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은 綜合所得으로 合算되지 아니하고 別途로 稅額을 計算하여 所得稅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所得稅는 綜合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으로 區分하여 賦課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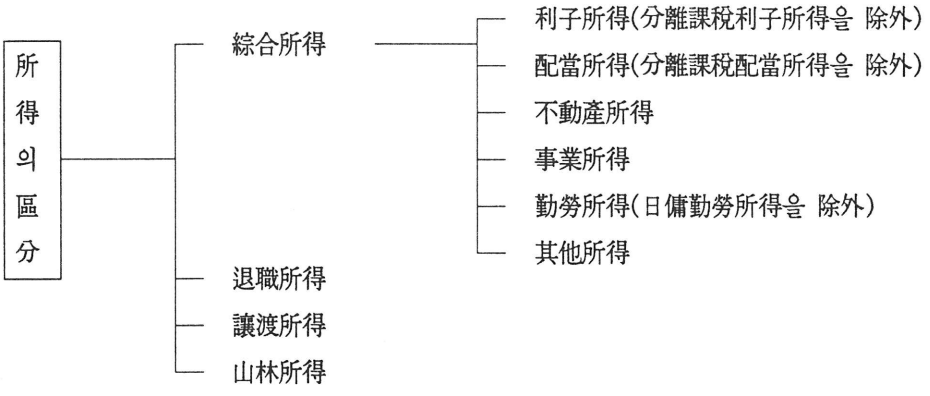

3. 課稅期間과 納稅地 및 課稅地(法 §8~§13)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課 稅 期 間	第1期 :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第2期 :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納 稅 地	居 住 者	事業場所在地 事業場이 없을 때 住所地 또는 居所地	住所地 또는 居所地
	非 居 住 者	國內事業場所在地 國內事業場이 없을 때 居留地 또는 滯留地	左 同

이러한 納稅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이 所得稅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고 國稅廳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所管地方國稅廳長이 所得稅를 賦課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非課稅所得과 所得稅의 減免

所得稅는 所得稅法이 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賦課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政策的인 考慮에서 一定所得은 課稅所得에서 除外하고 있으니 이를 非課稅所得이라 한다.

非課稅所得은 國家가 租稅의 賦課를 처음부터 抛棄한 所得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節次나 手續의 필요없이 課稅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課稅所得에 合算되지도 않는다.

반면 所得稅의 減免對象이 되는 所得은 課稅所得에 合算이 되나 一定要件 즉 減免申請을 함으로써 그 所得에 該當하는 所得稅를 減免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非課稅所得과 所得稅의 減免이 되는 所得은 다음과 같다.

가. 非課稅所得(法 §5, 令 §5~15)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利 子 所 得	契約期間 1年6月이상의 貯蓄性預金의 利子	削除(5% 分離課稅)
	契約期間 1年 6月이상의 合同運用信託의 所得	削除(5% 分離課稅)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總發行社債의 10%이하의 所有者에 대한 償還期間 1年이상인 社債의 利子	削除(總發行社債의 3%미만 5% 分離課稅)
	<新　設>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新　設>	法律이 規定하는 賦金 및 契金의 利子
配當所得	少額株主가 받는 建設利子와 利益配當金	削除(5% 分離課稅)
勤勞所得 退職所得	傷痍病者에 대한 年金과 慰藉料	勤勞提共으로 인한 負傷·疾病·死亡에 관련하여 받는 年金과 慰藉料
	<新　設>	國民福祉年金法에 의한 老齡年金·障害年金·遺族年金과 返還一時金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 法律·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教員年金法에 의하여 退職(役)者·死亡者의 遺族이 받는 給與
	勤勞基準法에 의한 休業補償金	勤勞基準法에 의한 療養補償金·休業補償金·障害補償金·遺族補償金·葬禮費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休業給與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療養給與·休養給與·障害給與·遺族給與·遺族特別給與·葬儀費 또는 一時給與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에 의한 休職 및 職位解除期間의 給與	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教員年金法·軍人年金法에 의한 保健給與 休業給與·災害給與·災害補償金과 休職期間의 給與
	<新　設>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提供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事業所得	初版으로 받는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하는 外國人이 받는 海外勤務手當·住宅手當등 海外勤務에 따른 諸手當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其他所得	<新　設>	國家有功者 및 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에 의하여 받는 年金·手當과 補償金 對日民間請求權補償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받는 補償金 賞勳法에 의한 勳章에 관련하여 받는 賞金 및 副賞과 기타 令이 定하는 賞金과 副賞
讓渡所得	法院의 競賣處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但書新設)	法院의 競賣處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다만, 親族 기타 特殊關係者에게 設定한 擔保權 實行의 경우를 除外
	<新　設>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現物出資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1) 利子所得中에서 非課稅되는 所得(法 §5, 令 §5)

(가) 國債·地方債와 國民投資基金의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나) 產業金融債券·農業金融債券·中小企業金融債券·住宅債券·國民住宅債券·土地債券과 韓國電力株式會社 社債의 利子와 割引額

(다) 國民貯蓄組合貯蓄·어린이預金·郵便貯金의 利子

(라) 公益信託의 利益과 相互賦金·信用賦金·信用契등의 利子

(2) 不動產所得中에서 非課稅되는 所得(法 §5)

農民이 田·畓을 利用하게 하여 얻는 所得

(3) 事業所得중에서 非課稅되는 所得(法 §5, 令 §6)

學術 또는 藝術에 대한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對價중에서 原稿料·著作權使用料인 印稅와 美術·音樂·寫眞의 創作品에 대한 對價 및 우리나라의 古典을 外國語로 翻譯하거나 國譯하고 받는 稿料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에서 非課稅되는 所得(法 §5, 令 §7~§12)

(가) 外國駐屯 軍人·軍屬이나 兵長級이하의 軍人이 받는 給與

(나) 法律에 의하여 動員된 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다) 國民福祉年金法에 의하여 받는 給與

(라) 勤勞의 提供으로 인한 負傷·疾病 또는 死亡과 關聯하여 받는 年金·給與와 慰藉料

(마)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教員年金法에 의하여 받는 年金과 退職金 기타 給與

(바) 軍事援護補償法에 의한 給與와 軍人·軍屬이 戰死한 경우의 戰死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給與

(사) 海外에서 勤勞를 提供하고 있는 看護員·鑛山 勞務者와 月 30万원 이하의 給與를 받는 者의 給與

(아) 기타 實費辨償的인 給與

(5) 其他所得중에서 非課稅되는 所得(法 §5, 令 §13)

(가) 學術·藝術의 創作品에 대한 懸賞金·賞金과 우리나라의 古典을 外國語로 翻譯하거나 國譯하고 받는 稿料

(나) 國家有功者 및 越南歸順者特別援護法에 의하여 받는 年金·手當·補償金과 反共法에 의하여 支給받는 賞金과 報勞金

(다) 對日民間請求權補償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받는 補償金

(라) 賞勳法에 의한 勳章과 關聯하여 받는 賞金과 副賞

(마) 學術院·藝術院賞과 關聯되는 副賞과 5.16民族賞 기타 國際機關에서 授與받는 賞金과 副賞

(바) 大韓民國文化藝術賞과 國展授賞·國民體育賞·科學展覽會賞

(사) 國家·地方自治團體가 授與하는 賞金과 副賞

(6) 讓渡所得중에서 非課稅되는 所得(※ 讓渡所得 解說欄 參照)

나. 稅額減免對象이 되는 所得(法 §6, 令 §16~§20)

(1)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提供하는 外國人이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을 한 날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5年이 되는 달까지에 받는 給與에 대하여는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하게 되어 있는데 그 計算方式은 다음과 같다.

$$(\text{綜合所得金額} - \text{所得控除}) \times \text{基本稅率} \times \frac{\text{減免對象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 = \text{減免稅額}$$

改 正 前	改 正 後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外國人이 받는 給與에 대한 分類 所得稅 免除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外國人이 받는 給與에 대한 所得稅 免除 다만,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日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日로부터 5年間의 所得에 限함.

(2) 船舶이나 航空機의 外國航行所得에 대하여도 위의 算式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하나, 外國人이나 非居住者의 外國航行所得은 當該 外國에서 우리나라 船舶이나 航空機에 대하여 免稅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免稅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

(3) 소·말·돼지·양·사슴·토끼·친칠라·밍크·家禽 또는 꿀벌의 飼育·增殖·採卵·採毛·搾乳등의 畜産業을 營爲하여 얻은 所得에 대하여는 1976年度까지의 所得에 대하여는 全額, 1977年부터 1979年까지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의 50%를 減免하며 그 減免稅額의 計算은 前述한 算式과 같다.

5.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方法

課稅標準이란 稅額을 計算하기 위하여 稅率을 適用하는 課稅所得金額을 말하는 것인데 그 課稅標準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法 §15)

⎧ 利子所得收入金額
⎪ 配當所得收入金額
⎪ 不動產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 事業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 勤勞所得收入金額－(勤勞所得控除＋賞與特別控除)
⎩ 其他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의 合計額(綜合所得金額)－所得控除 ⎧ 基礎控除
⎪ 配偶者控除
⎪ 扶養家族控除
⎩ 障害者控除 ＝綜合所得課稅標準

綜合所得課稅標準을 計算하기 위하여서는 위와같은 算式에 의하게 되나 各 所得金額의 計算方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利子所得金額(法 §17)

利子所得金額은 預金의 利子와 貸與金의 利子, 債券 및 證券의 利子등의 年間合計額이 되며 이에는 必要經費가 없으므로 그 年間 合計額이 그대로 利子所得金額이 되는 것이나 이 중에는 綜合所得에 合算하지 아니하는 利子所得이 있는바, 이를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고 해서 5% 또는 10%의 比例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納付로써 納稅義務를 完結하게 되므로 綜合所得에 合算되는 利子所得은 이러한 分離課稅利子所得 이외의 利子所得을 말한다.

여기서 分離課稅利子所得이란 所得稅法 第144條第1號(가) 내지 (사)에 規定되어 있는 利子를 말하는 바,

예컨대 銀行預金의 利子·合同運用 信託의 利益·短期金融會社의 어음의 利子·社債의 利子·信用協同組合이나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의 農漁民의 預金利子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2) 配當所得金額(法 §18)

配當所得金額은 株式配當金을 말하는 것인데 株式會社의 利益配當金이나 合資會社·合名會

社의 利益의 分配金·法人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無償株式등 擬制配當과 一定留保所得에 課稅되는 紙上配當등이 配當所得이 된다.

이러한 配當所得도 綜合所得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分離課稅配當所得이 있는데 이에는 所得稅法 第144條第2號(가) 내지 (마)에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서 公開法人·上場法人의 少額株主가 받는 配當·信用協同組合·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配當·非公開法人의 少額株主로서 우리社株組合員이 받는 配當·證券投資信託의 利益과 資產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할 때에 받는 無償株式등이 있다.

配當所得 역시 必要經費는 없고 配當으로 받는 收入金額의 總額이 곧 配當所得金額이 된다.

(3) 不動產所得金額(法 §19)

不動產所得金額은 그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것이 된다.

不動產所得이 되는 總收入金額은 土地나 建物·登記된 船舶이나 登錄된 自動車 또는 重機, 鑛業權, 租鑛權·工場財團·鑛業財團등을 貸與하고 받는 賃貸料收入의 合計額이 되는 것이나 특히 總收入金額을 推計調査 決定하는 때에는 賃貸收入保證金에 1年定期預金의 利子率을 곱한 金額을 總收入金額으로 보도록 規定하고 있다.

不動產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서 控除하는 必要經費는 不動產등의 維持費라든가 이에 關係되는 諸經費·人件費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4) 事業所得金額(法 §20)

事業所得金額 역시 事業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것이 된다.

事業所得이 發生하는 事業의 範圍는 社會通念上의 事業의 範圍보다는 훨씬 넓은 意味로 規定되고 있으나 다만 農業所得은 農地稅가 課稅되기 때문에 事業所得에서 除外되어 所得稅를 賦課하지 않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事業所得의 範圍에 대하여는 經濟流通構造나 그 流通過程과의 現實化를 期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產業分類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0種類로 區分하고 있다.

(가) 畜產業·林業·狩獵業과 水產業

(나) 鑛業과 採石業

(다) 製造業

(라)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마) 建設業

(바) 都賣業·小賣業과 飮食·宿泊業

(사) 運輸·保管 및 通信業

(아) 金融·保險業, 不動產業과 用役業

(자) 서어비스業

(차) 自由職業

事業所得에 대한 必要經費는 그 事業에 관련된 모든 費用이 포함되며 그 以外에도 充當金이라든가 準備金등이 必要經費로 容認되는 경우가 있으며, 寄附金이나 接待費도 一定金額에 대하여는 必要經費로 容認이 되고 있다.

(5) 勤勞所得金額(法 §21·§61·§116)

勤勞所得은 勤勞를 提供한 對價로 받는 俸給·賃金·手當·歲費 기타 보너스등 모두가 勤勞所得이 된다.

이러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그 給與의 合計額에서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또한 그 給與額에 賞與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賞與特別控除를 하고 남은 金額이 勤勞所得金額이 된다.

勤勞所得控除額은 年 18萬원이 되며 賞與特別控除額은 12月末 또는 年平均 月定額給與중 많은 給與의 100%에 相當하는 金額이며 그 金額이 12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2萬원이 되고 賞與自體가 12萬원보다 적고 또 月定額給與의 100%보다 적은 때에는 그 賞與金이 賞與特別控除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勤勞所得控除額 年18萬원은 納稅者 1人에 대한 年間控除額이므로 勤務處가 2이상 있을 경우라도 모든 給與를 합하여 年 18萬원을 控除하며 그 勤勞所得이 年 18萬원 미만인 때에는 그 미만인 金額이 勤勞所得控除額이 된다.

따라서 主된 勤務地의 勤勞所得이 年 18萬원 미만이고 從된 勤務地의 勤勞所得이 있을 경우에는 從된 勤務地의 所得에서도 勤勞所得控除가 되며 또한 勤勞所得控除는 그 勤務月數와는 상관없이 年間 18萬원의 控除를 받게 된다.

다만, 日傭勤勞者인 경우에는 勤務日 1日當 3,700원의 勤勞所得控除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은 日當 勤勞所得에서 3,700원의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남은 金額이 되며 또한 이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은 綜合所得金額에 合算하지 아니한다.

(6) 其他所得金額(法 §25 · §40)

其他所得은 利子所得 · 配當所得 · 不動產所得 · 事業所得 · 退職所得 · 讓渡所得 및 山林所得 이외의 所得으로서 賞金 · 補償金이라든가 福券 · 景品券의 當籤金, 懸賞金, 著作者 이외의 者가 받는 著作權使用料 · 營業權, 工業所有權 기타 一定權利의 使用料 · 非營業者의 物品이나 場所의 一時貸與料등의 所得이 되며, 이러한 所得이 되는 總收入金額에서 그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이 其他所得金額이 된다.

(7) 綜合所得金額

위와같은 여섯가지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綜合所得金額이 되는 것이나 그중에서도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것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非課稅所得

(나)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

(다) 分離課稅利子所得

(라) 分離課稅配當所得

(마) 紙上配當으로 課稅된 所得을 그후 實地配當 받았을 때의 그 配當所得

나. 退職所得 · 讓渡所得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의 計算

(1) 退職所得課稅標準의 計算(法 §22 · §62, 令 §117)

退職所得은 退職金에서 그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退職所得特別控除하고 이에서 다시 18萬원의 退職所得控除를 하여 退職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것이며, 綜合所得金額에서 控除하지 못한 所得控除額이 있는 경우는 退職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를 한 金額이 退職所得課稅標準이 되는 것이나, 所得控除할 金額이 없을 때에는 退職所得金額이 곧 課稅標準이 된다.

그런데 敎育公務員法에 의하여 支給받는 退職功勞手當은 退職所得으로 보고 그 支給金額의 100分의 75를 退職所得特別控除額으로서 控除하여 退職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것이나 敎育公務員法에 의하여 支給하는 退職功勞手當 이외에 一般 退職功勞手當이나 退職功勞金 등은 退職所得으로 보지 아니하고 勤勞所得으로 課稅되는 것이다.

(2)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

(※ 讓渡所得解說欄 參照)

(3) 山林所得課稅標準의 計算(法 §24·§46)

山林所得은 自己가 5年이상 造林한 山林을 讓渡하거나 伐採하므로 因하여 얻는 所得이며 그 總收入金額에서 山林의 取得費 其他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에서 다시 50萬원의 山林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한 金額이 山林所得金額이 된다.

이 경우 역시 控除할 所得控除額이 있으면 그 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한 나머지가 課稅標準이 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山林所得金額 自體가 課稅標準이 된다.

다. 稅額의 計算(法 §70 내지 §79)

所得稅의 計算은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 및 山林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를 하여 課稅標準이 計算되면 그 課稅標準에 基本稅率을 適用하여 算出稅額을 計算하고 이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를 각각 한 후 加算稅의 適用分이 있을 경우에는 그 該當 加算稅를 加算한 것이 實地 負擔하여야 할 稅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基本稅率은 綜合所得·退職所得과 山林所得은 同一하나 讓渡所得의 경우 土地는 50%, 建物은 30%이며, 退職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課稅標準을 勤續年數로 나누어 適用하고 다시 勤續年數를 곱하는 方式으로 稅額을 算出하도록 되어 있다.

6.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가. 不當行爲計算의 否認(法 §55, 令 §111)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과 山林所得金額의 計算은 原則的으로 實地去來金額 즉 實地支給金額 및 領收金額에 의하여 調査決定되는 것이나, 不動產所得·事業所得·其他所得·讓渡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가 親族이나 特殊關係人과의 去來에 있어서 租稅負擔을 회피할 目的으로 不當한 去來를 한 것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不當行爲計算否認을 당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政府가 所得金額을 計算하게 된다.

나. 移越缺損金의 計算(法 §58, 令 §113)

不動產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가 缺損金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缺損金은 다른 所得金額과 通算하지 아니하고 不動產所得이 缺損金은 다음 年度의 不動產所得金額에서만 移越控除하여야 하며 事業所得의 缺損金이나 山林所得의 缺損金도 不動產所得의 경우와 같이 當該所得에 대하여서만 移越控除를 하게 된다.

이 경우 移越控除할 수 있는 年數는 綠色申告者인 경우는 4年間, 그 이외의 者의 경우에는 3年間이다.

所 得 税 額 計 算 의 順 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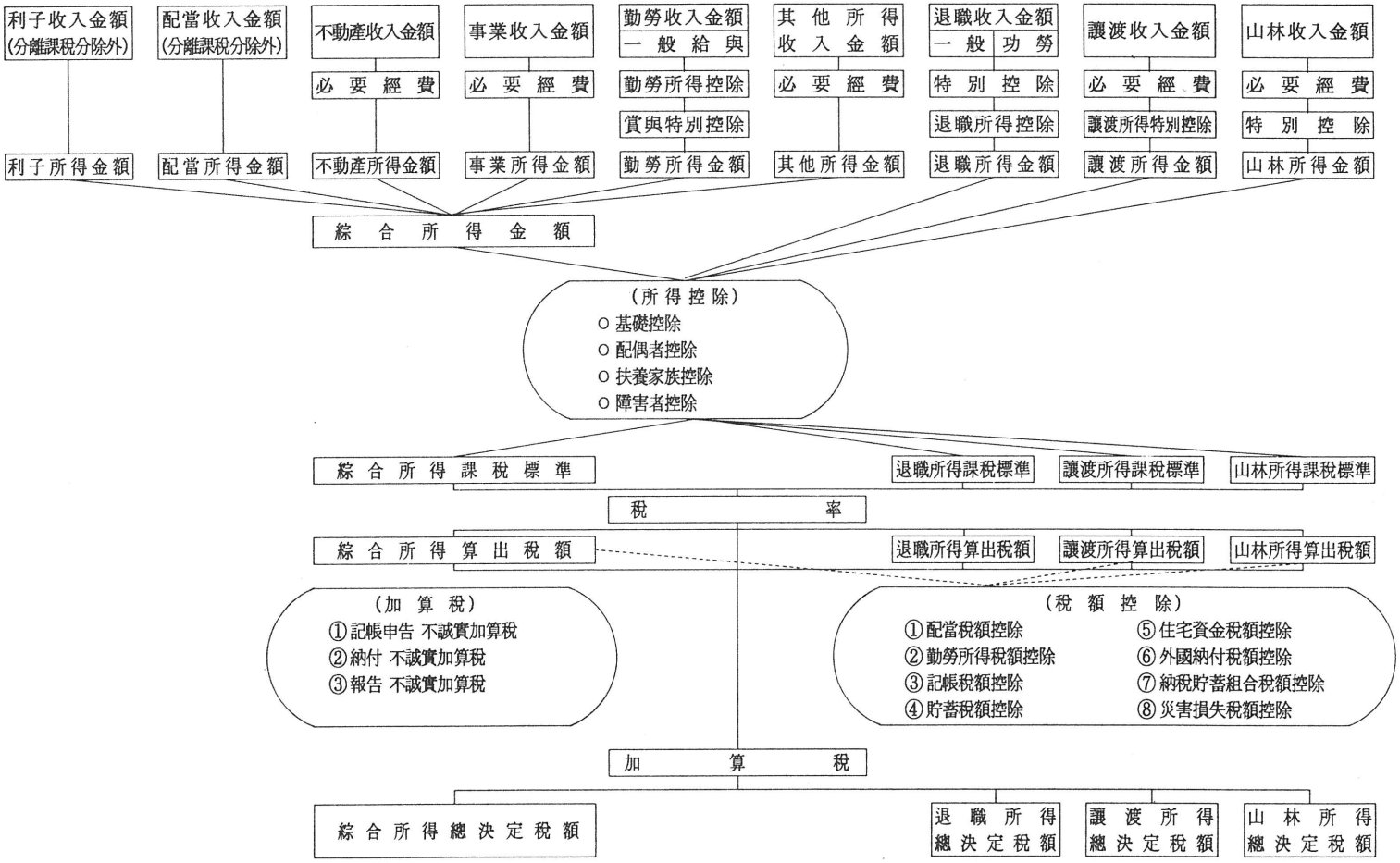
利子收入金額
(分離課稅分除外)
配當收入金額
(分離課稅分除外)
不動產收入金額
必 要 經 費
事業收入金額
必 要 經 費
勤勞收入金額
一 般 給 與
勤勞所得控除
賞與特別控除
其 他 所 得
收 入 金 額
必 要 經 費
退職收入金額
一 般 功 勞
特 別 控 除
退職所得控除
讓渡收入金額
必 要 經 費
讓渡所得特別控除
山林收入金額
必 要 經 費
特 別 控 除
利子所得金額
配當所得金額
不動產所得金額
事業所得金額
勤勞所得金額
其他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
綜 合 所 得 金 額
(所得控除)
○ 基礎控除
○ 配偶者控除
○ 扶養家族控除
○ 障害者控除
綜 合 所 得 課 稅 標 準
退職所得課稅標準
讓渡所得課稅標準
山林所得課稅標準
稅 率
綜 合 所 得 算 出 稅 額
退職所得算出稅額
讓渡所得算出稅額
山林所得算出稅額
(加 算 稅)
①記帳申告 不誠實加算稅
②納付 不誠實加算稅
③報告 不誠實加算稅
(稅 額 控 除)
①配當稅額控除
②勤勞所得稅額控除
③記帳稅額控除
④貯蓄稅額控除
⑤住宅資金稅額控除
⑥外國納付稅額控除
⑦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⑧災害損失稅額控除
加 算 稅
綜 合 所 得 總 決 定 稅 額
退 職 所 得 總 決 定 稅 額
讓 渡 所 得 總 決 定 稅 額
山 林 所 得 總 決 定 稅 額

7. 所得控除

가. 基礎控除(法 §63)

基礎控除는 所得稅의 納稅義務者이면 누구나 다 年 18萬원의 控除를 받을 수 있다.

즉,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所得金額에서 年 18萬원을 控除받는 것이며 이경우 綜合所得金額에서 基礎控除를 다 받는 때에는 다른 所得金額에서 다시 基礎控除를 받지 못한다.

卽 綜合所得金額이 18萬원 이상이면 綜合所得金額에서 基礎控除를 하고 退職·讓渡 및 山林所得金額에서는 이를 다시 控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年 所得金額이 18萬원이하이면 그 所得金額이 基礎控除額이 된다.

나. 配偶者控除(法 §64)

配偶者控除는 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그와 生計를 같이 하는 控除對象配偶者가 있는 경우에 年 12萬원을 所得金額에서 控除하는 制度이다.

이 경우 配偶者控除를 받으려면 配偶者가 法上 夫婦關係에 있어야 하며 內緣의 關係에 있는 때에는 控除對象配偶者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生計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配偶者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配偶者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以外의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間 12萬원이하이어야만 控除對象配偶者가 되기 때문에 配偶者가 事業所得 勤勞所得·其他所得이나 讓渡所得·退職所得·山林所得의 所得金額이 年 12萬원이상일 때에는 그 納稅者는 配偶者控除의 惠澤을 받을 수 없으며 그 以外에 配偶者控除方法은 基礎控除의 경우와 같다.

다. 扶養家族控除(法 §65)

扶養家族控除 亦是 所得稅의 納稅義務者와 生計를 같이 하는 控除對象扶養家族이 있는 경우 그 扶養家族 1人當 年 6萬원의 所得을 所得金額에서 控除하는 制度이다. 이경우 控除對象扶養家族의 範圍는

(1) 그 納稅者의 直系尊屬으로서 60歲이상인 者

(2) 그 納稅者의 直系卑屬으로서 20歲이하인 者

(이경우 子女에 對하여는 3人이내로 人員이 制限이 되나 1974.12.31이전에 出生된 子女에 對하여는 人員의 制限을 받지 않는다)

(3) 60歲이상이나 20歲이하의 兄弟姉妹로 되어 있으며 이들 亦是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이외의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 6萬원 이하의 所得이 있는 경우라야 控除對象扶養家族이 된다. 그리고 扶養家族控除方法은 基礎控除의 경우와 같다.

라. 障害者控除(法 §66, 令 §119)

障害者控除는 納稅義務者 自身이 障害者이거나 그 納稅者와 生計를 같이하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障害者인 때에 障害者 1인에 對하여 年 12萬원을 控除하여 주는 制度이다.

따라서 障害者控除는 所得者 自身이 障害者인 때에도 障害者控除를 追加로 받을 뿐만 아니라 控除對象配偶者나 扶養家族이 障害者인 때에는 配偶者控除 또는 扶養家族控除도 받고 다시 障害者控除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는 그 人員이나 年齡의 制限이 없다.

障害者의 範圍는

(1) 心神喪失者와 精神薄弱者

(2) 軍事援護補償法에 의한 傷痍病者

(3) 벙어리·귀머거리·봉사

(4) 軍事援護補償法에 의한 傷痍病者와 類似한 者로서 勤勞能力이 없는 者

(5) 恒時 治療를 要하는 重症患者

위와 같은 障害者가 納稅者本人인 경우는 所得과 關係없이 障害者控除를 받으나 配偶者가 障害者인 때에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이외의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 24萬원 이하의 所得金額이 있는 경우에만 控除對象障害者가 되며 扶養家族이 障害者인 경우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이외의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 18萬원이하의 所得金額이 있는 경우에만 控除對象障害者가 된다.

障害者控除方法은 基礎控除의 경우와 같다.

마. 控除對象家族의 選擇(令 §118)

居住者의 控除對象配偶者·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가 同時에 다른 居住者의

控除對象配偶者나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가 되는 경우가 있다.

例를 들면 60歲이상의 父母님을 모시고 한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도 綜合所得金額등이 있고 아들도 所得者라면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控除對象配偶者인 同時에 그 아들의 控除對象扶養家族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1人에 對하여 配偶者控除나 扶養家族控除를 두가지 다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첫째는 : 所得控除申告書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選擇에 따라 控除對象者를 決定함을 原則으로 하며

둘째로 : 2이상의 納稅者가 서로 控除對象配偶者 또는 控除對象扶養家族등으로 所得控除申告書에 記載하였거나 또는 그 所得控除申告書로서 누구의 控除對象家族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控除하게 된다.

(1) 居住者의 控除對象配偶者가 다른 居住者의 控除對象扶養家族에 該當하는 때에는 控除對象配偶者로 한다.

(2) 居住者의 控除對象扶養家族이 다른 居住者의 控除對象扶養家族에 該當하는 때에는 直前年度의 所得控除를 한 居住者의 控除對象扶養家族으로 하고, 直前年度에 控除對象扶養家族이 없었던 때에는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이 가장 많은 居住者의 控除對象扶養家族으로 한다.

(3) 居住者의 控除對象障害者가 다른 居住者의 控除對象障害者에 該當하는 때에는 (1) 또는 (2)에 의하여 所得控除를 하는 居住者의 控除對象障害者로 하는 것이다.

바. 控除對象者의 範圍와 判定時期(法 §67, 令 §120)

所得稅는 1年間의 所得에 對하여 課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所得控除도 年間 所得金額에서 控除하게 된다. 그런데 居住者에게 控除對象配偶者가 있는지 없는지의 與否와 控除對象扶養家族이나 控除對象障害者가 있는지의 與否에 對하여 一定時點을 基準으로 하여야만 所得控除가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그 判定時期를 課稅期間終了日現在로 하였기 때문에 一般的으로는 年末基準이 되며 年의 中途에 死亡을 하였거나 出國을 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 또는 出國日現在를 基準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年의 中途에는 獨身으로 있다가 年末이 되기 前에 結婚을 하였을 때에는 控除對象配偶者가 있게 되어 配偶者控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年末에 子女가 태어났을 경우 扶養家族

控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老父母님을 1年間 扶養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年末이 되기前에 父母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扶養家族控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扶養家族과 生計를 같이하던 居住者가 勤務處의 移動으로 一時退居하게 되었다거나 扶養家族중 就學·疾病의 療養등의 形便으로 一時退居한 경우등은 生計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는 一時退居地의 住民登錄票上 同居人 또는 世帶員이 없는 世帶主로 登載된 경우에 그 事實에 對한 學校의 長, 病院이나 醫院의 長, 勤務處의 長의 證明이 必要하다.

사. 所得控除의 順位(法 §68)

所得控除는 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害者控除의 順位에 의하여 綜合所得金額에서 控除하고, 남은 控除額이 있는 경우에는 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山林所得金額에서 順次로 控除하여 各 課稅標準을 計算하게 되나 그 모든 所得金額의 所得控除額의 合計額보다 적을 때에는 그 所得金額의 範圍내에서만 所得控除가 許容된다.

아. 所得控除申告(法 §100·§155, 令 §204)

基礎控除는 居住者 누구나 年 18萬원을 控除받을 수 있으나 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害者控除는 所得控除申告를 한 때에만 控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이나 山林所得金額이 없이 分離課稅利子所得金額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金額만 있는 경우에는 所得控除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所得控除의 申告는 課稅標準의 確定申告時에 配偶者·扶養家族·障害者의 內譯을 記載한 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이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을 添附하여야 하고 障害者가 있는 경우는 障害者證明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障害者證明書는 病院이나 醫院의 醫師가 證明한다든지 傷痍病者인 경우는 援護處에서 傷痍病者證明을 받아 이를 添附하면 된다. 그리고 障害者證明書는 費用이 많이 들것을 勘案하여 障害豫想期間을 判定한 때에 그 期間에 한번만 提出하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勤勞所得者로서 源泉徵收에 의하여 所得稅를 納付하는 경우는 年末精算을 하는 源泉徵收義務者에게 12月分의 給與를 支給받기 前에 所得控除申告를 하면 된다.

다만, 今年에는 처음 所得控除制를 實施하게된 關係上 勤勞所得者는 1月分의 給與를 支給받기 前에 今年에 限하여 所得控除申告書를 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만일 1月分에 提出하지 못하였다면 2月이후에 提出하여도 되며 이는 어차피 年末精算때 다시 所得控除申告를 하게 되므로 今年 年度中에 所得控除를 하지 않았더라도 年末에 所得控除申告를 하면 所得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所得控除와 特別控除의 種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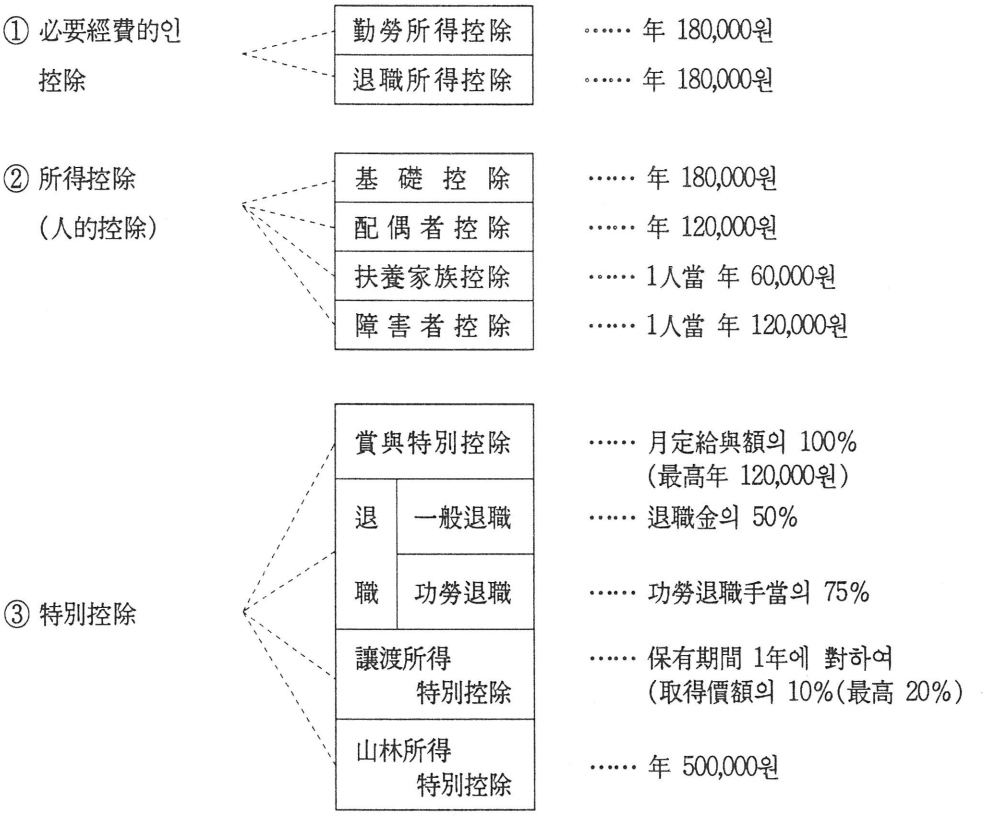

< 所 得 控 除 方 法 >

<例示 1> 居住者 1人基準(配偶者의 年間所得이 없는 경우)

1. 綜合所得만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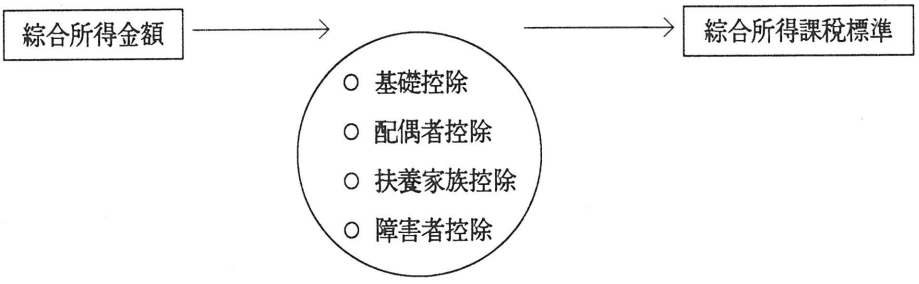

2. 勤勞所得만이 있는 경우 또는 綜合所得에 勤勞所得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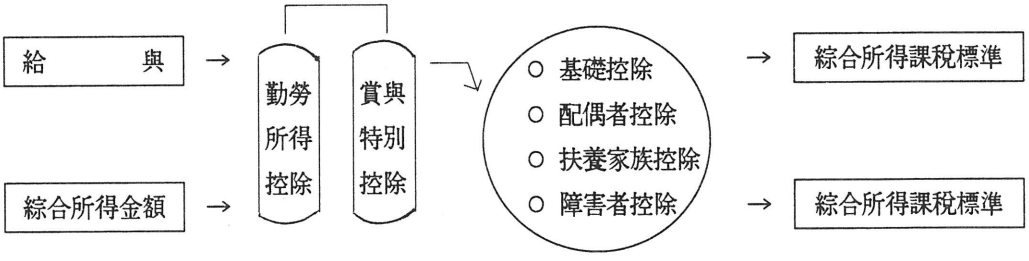

3. 綜合所得에 配當所得과 勤勞所得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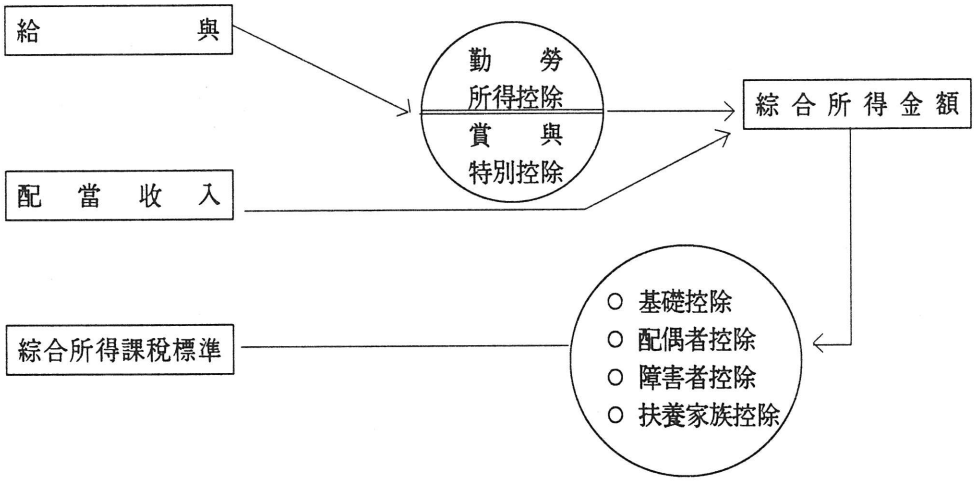

<例示 2> 居住者(夫・婦) 2人基準

1. (夫) …… 勤勞所得以外의 綜合所得
(妻) …… 勤 勞 所 得
이 있는 경우(但 配偶者所得金額이 配偶者控除額보다 많은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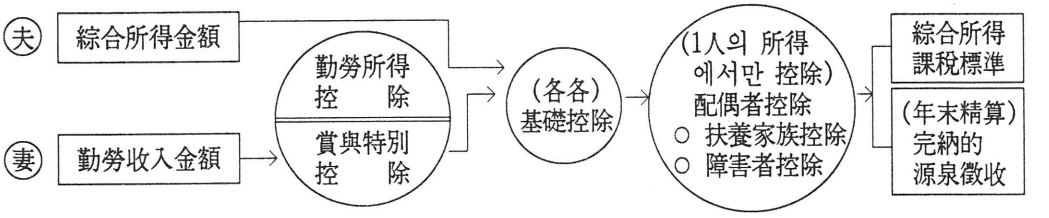

2. (夫) (妻) 各各 勤勞所得이 있는 경우(但 配偶者所得金額이 配偶者控除額보다 많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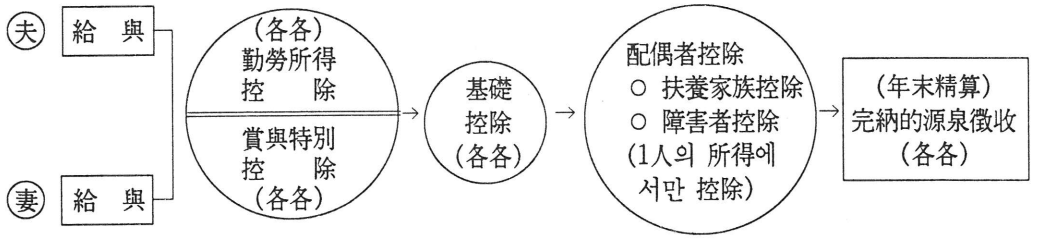

<綜合所得과 分離課稅所得이 있는 경우의 所得控除計算>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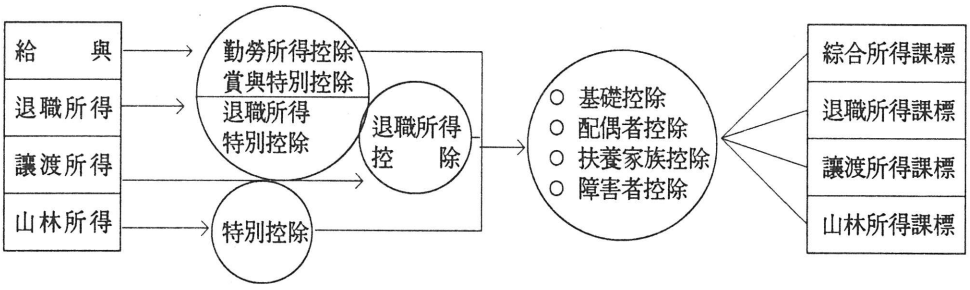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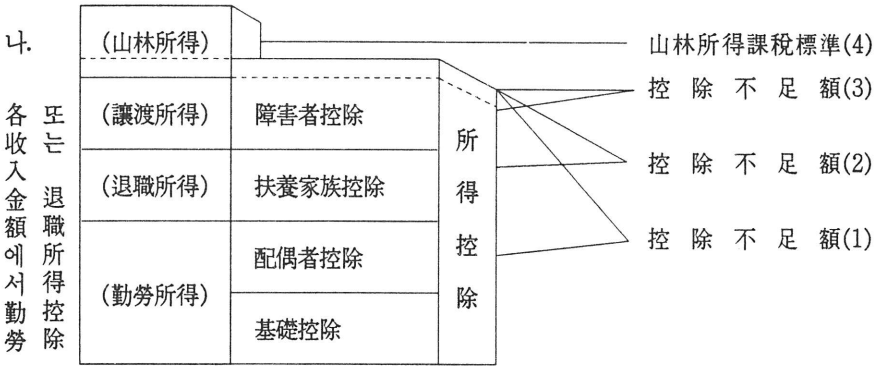

※ 註 : 所得控除不足額計算例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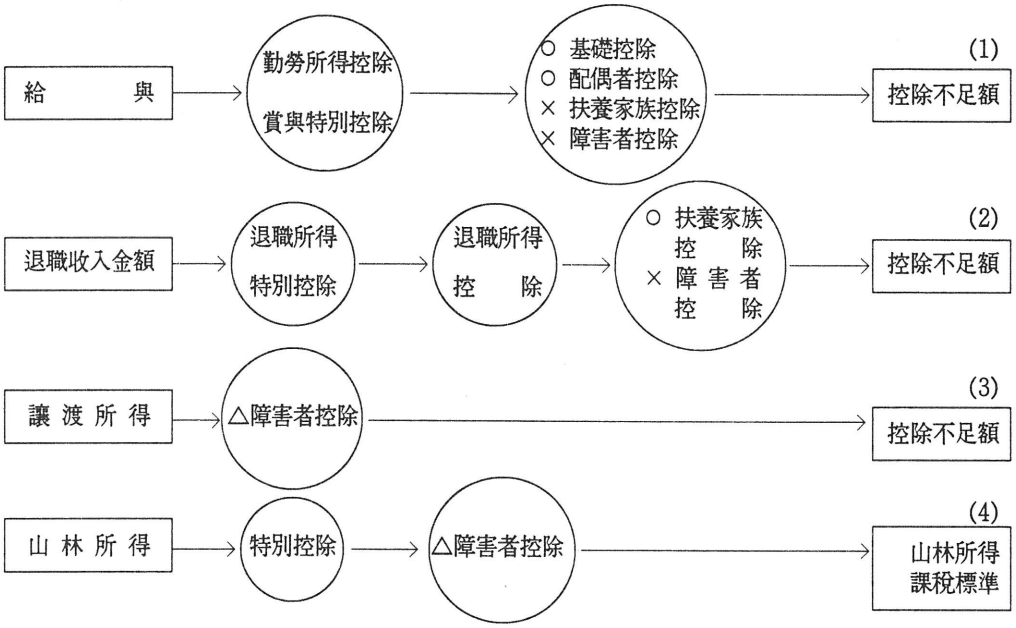

8. 稅　　率(法 §70)

所得稅의 稅率은 讓渡所得에 對한 稅率만 다르고 모두 같은 稅率에 의하여 所得稅를 賦課하는데 이를 基本稅率이라 하며 그 率은 다음과 같다.

가. 綜合所得에 대한 稅率

<基本稅率>

綜合所得課稅標準		稅　率
24萬원以下	課稅標準의	100分의8
24萬원超過 48萬원以下	19,200원＋24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10
48萬원超過 72萬원以下	43,200원＋48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12
72萬원超過 96萬원以下	72,000원＋72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15
96萬원超過 120萬원以下	108,000원＋96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18
120萬원超過 150萬원以下	151,200원＋12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21
150萬원超過 180萬원以下	214,200원＋15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25
180萬원超過 240萬원以下	289,200원＋18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30
240萬원超過 300萬원以下	469,200원＋24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35
300萬원超過 480萬원以下	679,200원＋30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40
480萬원超過 720萬원以下	1,399,200원＋48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45
720萬원超過 1,200萬원以下	2,479,200원＋72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50

<基本稅率>

綜 合 所 得 課 稅 標 準		稅 率
1,200萬원超過 2,400萬원以下	4,879,200원+1,20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55
2,400萬원超過 3,600萬원以下	11,479,200원+2,40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60
3,600萬원超過 4,800萬원以下	18,679,200원+3,60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65
4,800萬원超過	26,479,200원+4,800萬원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70

나. 退職所得에 대한 稅率

綜合所得에 대한 稅率과 同一함

다. 讓渡所得에 대한 稅率

① 土 地

讓渡所得課稅標準의……100分의 50

② 建物과 其他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100分의 30

라. 山林所得에 대한 稅率

綜合所得에 대한 稅率과 同一함

※ 註 : 勤勞所得者에 對한 月別稅負擔額은 別表 簡易稅額表 參照

9. 稅額控除(法 §71~§79)

所得別 課稅標準算出稅額에서 一定한 稅額을 控除하여 주는 稅額控除制度를 改正稅法이 採擇하고 있다.

稅額控除로는 配當稅額控除, 記帳稅額控除, 貯蓄稅額控除, 住宅資金稅額控除, 外國納付稅額控除,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와 災害損失稅額控除가 있다. 이를 項目別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가. 配當稅額控除(法 §71, 令 §122)

配當稅額控除는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國內에서 받은 配當所得金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 그 合算된 配當所得金額에 對한 法人稅額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控除하며 그 配當所得이 公開法人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에는 다시 그 合算된 配當所得金額의 100分의 15에 相當하는 金額을 追加 控除하는 것이 配當稅額控除이다. 그런데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된 配當所得金額의 計算은 綜合所得課稅標準에 配當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計算된 金額에 法人稅率을 適用하여 法人稅相當額을 計算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法人稅率은 非公開法人에 對한 法人稅率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配當所得金額이 여러 法人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에는 法人別 配當所得金額에 의하여 法人稅相當額을 計算하는 것이며 課稅標準에 合算된 法人別 配當所得金額의 計算은 各法人別配當所得金額의 比率에 의하여 計算하면 된다.

그리고 公開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인 경우도 綜合所得金額과의 比率에 의하여 課稅標準에 合算된 配當所得을 計算하고 거기에 100分의 15를 곱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法人稅相當額의 100分의 50과 配當所得金額에 대한 100分의 15를 合計한 配當稅額控除額은 綜合所得算出稅額에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된 配當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配當稅額控除를 받고자 할 때에는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配當稅額控除申告書를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配當稅額控除의 算式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非公開法人의 配當에 對한 配當稅額控除額

$$\text{綜合所得課稅標準} \times \frac{\text{法人別配當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 \times \text{非公開法人의稅率} \times \frac{50}{100}$$

= 配當稅額控除額

(2) 公開法人의 配當에 對한 配當稅額控除額

$$\text{위(1)의 配當稅額控除額} + \text{綜合所得課稅標準} \times \frac{\text{公開法人別配當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 \times \frac{50}{100}$$

= 配當稅額控除

(3) 配當稅額控除額의 限度額

$$\text{綜合所得算出稅額} \times \frac{\text{綜合所得課稅標準} \times \frac{\text{配當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 \leqq \text{配當稅額控除限度額}$$

※ 註 : 2이상의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이 있는 때에는 (1)의 算式에 의하여 法人別 配當所得을 각각 計算하여 合算한다.

나. 勤勞所得額控除(法 §72, 令 §123)

勤勞所得稅額控除는 두가지 경우에만 該當하는 稅額控除로서

첫째 ;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國外에서 勤勞를 提供하고 받는 勤勞所得金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綜合所得算出稅額에 綜合所得額에서 그 勤勞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것이고

둘째 ;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美國軍에 고용되어 勤勞를 提供하고 받는 勤勞所得金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綜合所得算出稅額에 綜合所得金額에서 勤勞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의 100分의 20에 相當하는 金額을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勤勞所得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하는데 그 申請書를 一般源泉徵收義務者나 納稅組合에 提出하든가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면 된다.

다. 記帳稅額控除(法 §73, 令 §124)

記帳稅額控除는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 중 日記帳義務者와 簡易帳簿義務者에 該當하는 者가 該當帳簿를 備置記帳한 때에는 그 帳簿에 依하여 計算된 不動產所得金額과 事業所得金額을 合計한 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를 한 金額에 基本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것이다. 이 경우 記帳義務者의 판단은 課稅期間 終了日 現在의 記帳義務者의 區分에 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課稅期間 終了日 現在 日記帳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이면 記帳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記帳稅額控除는 申告에 의해서 課稅標準確定申告 決定을 하는 때에도 記帳稅額控除를 하게 되나 이런 경우는 記帳狀況明細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時 提出하여야 하며 記帳狀況明細書를 提出한 후 3年間 그 帳簿를 保管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라. 貯蓄稅額控除(法 §74, 令 §125 · §126)

貯蓄稅額控除는 貯蓄擴大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國民貯蓄組合貯蓄을 하는 경우에 그 貯蓄金額의 5%를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制度이다.

勤勞者의 大部分은 國民貯蓄組合貯蓄을 하고 있으므로 大部分의 勤勞者가 同 控除惠澤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貯蓄稅額控除는 어떤 申請을 要하지 않고 國民貯蓄組合長의 確認에 의하여 控除할 수 있다.

그리고 國民貯蓄組合貯蓄에는 公務員·國營企業體의 任職員등이 財務部長官의 통첩에 따라 國民貯蓄組合을 통하여 俸給積金을 하고 있는 것이 包含되므로 同積金의 預金額에 對하여도 5%의 貯蓄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으나 國民貯蓄組合을 通하지 아니하고 納稅義務者 스스로 積金을 拂入하고 있는 것은 貯蓄稅額控除의 惠澤을 받을 수 없다. 貯蓄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貯蓄에는 우리社株組合員이 該當法人의 株式을 取得하기 爲해서 그 組合을 通하여 株式取得前에 每月分의 給與 中 韓國投資公社 또는 金融機關에 貯蓄하는 貯蓄金額과 그 株式을 取得한 후 株式取得資金을 融資받아 이를 償還하는 金額이 包含되며 또한 우리社株組合員이 該當法人이 發行한 株式으로 支給받는 賞與金 또는 退職金에 相當하는 金額도 이에 包含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貯蓄金額, 償還金額 또는 賞與金이나 退職金額의 5%를 算出稅額에서 控除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株式取得資金의 貯蓄이나 그 資金의 融資金에 對한 償還額은 年 給與總額의 100分의 50을 限度로 하여 貯蓄稅額控除의 惠澤을 받을 수 있다.

마. 住宅資金稅額控除(法 §75, 令 §127)

住宅資金稅額控除는 自己住宅이 없는 勤勞所得者에 限하여 適用하는 控除制度로서 年間 勤勞所得이 240萬원 이하인 者가 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는 對象이 된다.

勤勞所得 240萬원이라고 할때의 所得은 年間 總給與額을 말하는 것이므로 俸給·給料·手當·賞與등이 모두 包含된 金額이며 賞與特別控除나 勤勞所得控除를 하기 前의 所得을 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勤勞者가 自己住宅마련을 위하여 住宅銀行에 住宅賦金을 拂入할 때에는 그 拂入金額의 5%를 算出稅額에서 控除받게 되며, 住宅賦金을 拂入하던 勤勞者가 住宅資金을 融資받아서 垈地를 사고 집을 지어 自己집을 마련한후 그 融資金에 對한 元利金을 償還하는 때에는 그 償還金의 5%가 住宅資金稅額控除額이 된다.

또한 無住宅勤勞者가 이미 住宅資金 融資金이 融資되어 있는 住宅을 讓受하여 그 住宅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도 住宅資金에 대한 償還金을 償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5%를 稅額控除받게 되는데 이때 住宅資金融資金이 있는 住宅으로는

(1) 住宅銀行

(2) 地方自治團體와 住宅公社가 國民住宅資金으로 庶民住宅을 建築하여 分讓하였거나 分讓하는 경우

(3) 公務員年金法에 의하여 運用하는 資金이나 地方自治團體의 資金으로 建築한 住宅은 稅額控除對象이 된다.

그런데 住宅資金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住宅資金이 融資된 住宅을 마련하기 前에는 住宅이 없었다는 것을 證明하기 위한 建物에 대한 財產稅未課稅證明書를 住宅資金稅額控除申請書에 添附하여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年末精算을 하는 때에는 住宅資金償還이나 住宅賦金納入證明書를 提出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4年 12月 31日 現在 이미 國民住宅資金으로 住宅을 取得하고 그 融資金을 償還하는 경우에는 無住宅者로 보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前述한 財產稅未課稅證明書를 提出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바. 外國納付稅額控除(法 §76, 令 §128)

居住者의 所得에 對하여는 그 所得이 國內에서 發生하였든 國外에서 발생하였든 間에 所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데 이때에 國外에서 發生한 所得은 그 外國에서도 所得稅가 課稅되는 것이 通例이다.

따라서 같은 所得에 對하여 2個國家가 所得稅를 賦課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所得稅를 賦課할 때에 外國에서 賦課된 所得稅를 控除하여 줌으로써 二重課稅의 防止를 期하고 있는 措置가 外國納付稅額控除制인 것이다.

外國納付稅額控除는 算出稅額에서 國外源泉所得이 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限度로 外國에서 納付한 所得稅를 控除하는 것인데 外國納付稅額控除申請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 또는 年末精算을 하는 때에 住所地管轄稅務署長이나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사.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法 §77, 令 §129)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가 納稅貯蓄組合을 通하여 金融機關에 一定金額을 納入하여 두었다가 그 納入한 貯蓄金額으로 所得稅를 納付하였을 때에는 그 貯蓄金額으로 所得稅를 納付한 稅額의 10% 相當額을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것이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이다.

이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를 받고자 할 때에는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申請書에 預入金融機關의 稅額納入證明을 받아 이를 添附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와 함께 在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아. 災害損失稅額控除(令 §130)

災害損失稅額控除는 土地를 除外한 事業用固定資產總額의 100分의 50이상을 災害로 因하여 喪失하였을 때에 그 災害喪失比率에 따라 計算한 所得稅를 控除하는 制度이다.

이때 控除받을 수 있는 所得稅는 다음과 같으며 이 稅額控除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控除를 해주도록 하였다.

(1) 災害發生日現在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로서 納付하여야 할 所得稅

(2) 災害發生日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

자. 稅額控除의 順位(法 §79)

稅額控除는 다음 順位에 의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讓渡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順次로 控除한다.

(1) 配當稅額控除

(2) 勤勞所得稅額控除

(3) 記帳稅額控除

(4) 貯蓄稅額控除

(5) 住宅資金稅額控除

(6) 外國納付稅額控除

(7)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8) 災害損失稅額控除

10. 稅額計算의 特例(法 §80·§81, 令 §131~§133)

가. 資產所得合算課稅(法 §80, 令 §131·§132)

生計를 같이하는 同居家族에게 綜合所得이 되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資產所得은 同居家族중 綜合所得이 가장 많은 主된 所得者의 所得에 合算하여 綜合所得에 對한 所得稅를 賦課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資產所得合算課稅라 하며 同居家族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1) 主된 所得者

(2) 主된 所得者의 配偶者

(3) 主된 所得者의 直系尊屬 및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

(4) 主된 所得者의 兄弟姉妹와 그 配偶者

그리고 이경우의 主된 所得者라 함은

(1) 資產合算對象家族중 綜合所得金額에서 資產所得金額을 控除한 金額이 가장 많은 者

(2) 또는 綜合所得金額에서 資產所得金額을 控除한 金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資產所得金額이 가장 많은 者

(3) 또는 綜合所得金額에서 資產所得金額을 控除한 金額이 가장 많은 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資產所得金額이 가장 많은 者

(4) 또는 第2號 및 第3號의 경우에 資產所得金額이 가장 많은 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主된 所得者로 記載된 者

이 경우에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主된 所得者에 對한 記載가 없는 때 또는 이의 提出이 없는 때에는 住所地管轄稅務署長이 定하는 者를 主된 所得者로 보게 되어 있다.

나. 主된 所得者에게 資產所得合算課稅를 하는때의 稅額計算은 다음 順位에 의한다.

(1)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金額과 資產合算對象家族의 資產所得을 合算한다.

(2) 위의 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를 한 金額에 基本稅率을 適用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3)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 또는 同居家族의 資產所得에 對하여 減免稅額이나 稅額控除額이 있는 경우는 이 算出稅額에서 控除하고 加算稅가 있는 경우는 이를 加算하여 綜合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4) 위의 稅額에서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과 資產合算對象家族의 資產所得에 對하여 이미 納付한 稅額을 控除하여 納付할 稅額을 計算하는 것이다.

<稅額計算例示>

例示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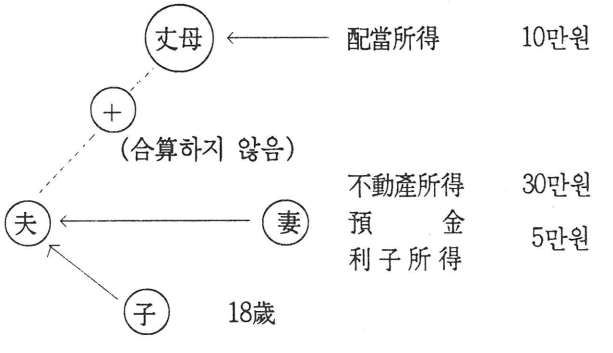

※ 配當所得은 公開法人의 大株主로서 支給받은 分

(가) 主된 所得者에 대한 課稅

$$\left\{\left(\frac{\text{勤勞所得 60}\\ \text{配當所得 30}}{\text{主된所得者(夫)}}+\frac{\text{不動產所得 30}}{\text{世帶員(妻)}}+\frac{\text{配當所得 20}}{\text{世帶員(子)}}\right)-\text{勤勞所得控除}\right.$$

$$\left.-(\text{基礎控除 18}+\text{配偶者控除 12}+\text{扶養家族控除 6})\right\}\times\text{稅率}$$

$$-\text{旣納付源泉稅額(配當所得}+\text{勤勞所得}+\text{不動產所得)}=\text{差減稅額}$$

(나) 配偶者에 대한 課稅

預金利子所得……分離課稅(完納的인 源泉徵收)

例示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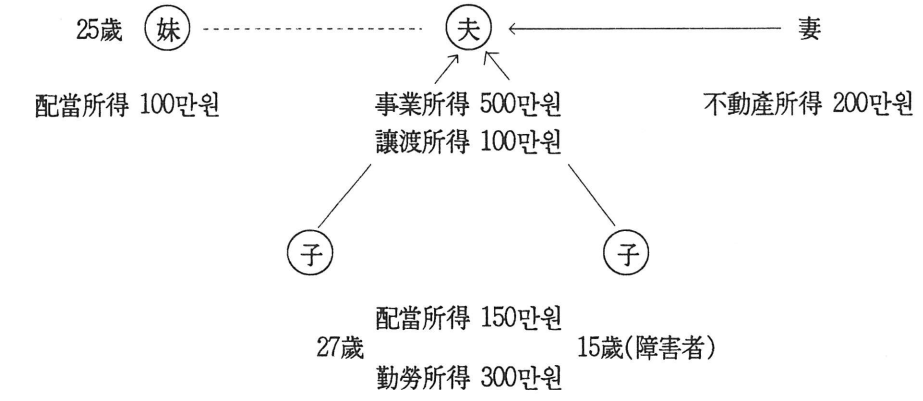

(가) 主된 所得者에 대한 課稅

① 資產所得合算課稅

$$\left\{\left(\frac{\text{事業所得 500}}{\text{主된 所得者}}+\frac{\text{不動產所得 200}}{\text{世帶員(妻)}}+\frac{\text{配當所得 250}}{\text{世帶員(妹)(子)}}\right)\right.$$

$$\left.-(\text{基礎控除 18}+\text{配偶者控除 12}+\text{扶養家族控除 6}+\text{障害者控除 12})\right\}$$

$$\times\ \text{稅率}-\text{旣納付源泉稅額(配當所得}+\text{不動產所得}+\text{事業所得)}=\text{差減稅額}$$

② 讓渡所得→綜合課稅하지 않음

(나) 世帶員課稅(子)

勤勞所得→合算課稅하지 않음

다. 不動產販賣業者에 對한 綜合所得稅額의 計算

不動產販賣業을 營爲하는 者가 土地나 建物을 販賣하는 때에는 그 讓渡差益은 讓渡所得이 아니고 事業所得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不動產販賣事業으로부터 생긴 所得도 모두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所得稅를 賦課하는 것이나 不動產販賣所得에 對해서만은 稅額計算의 特例를 두어 그 販賣가 있을 때마다 豫定申告課稅하는 경우와 確定申告課稅하는 경우로 區分하고 豫定申告課稅의 경우에는 그 販賣所得에 對하여 50%의 稅率에 의해서 課稅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確定申告課稅의 경우는 基本稅率을 適用하여 課稅하되 그 豫定申告課稅分의 稅額과 對比하여 그 중 많은 稅額으로 課稅토록 하고 있는데 그 稅額計算方式은 다음과 같다.

(1) 不動產販賣事業에서 생긴 所得以外의 綜合所得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가) 또는 (나)중 많은 金額이 綜合所得算出稅額이 된다.

(가) (販賣差益－其他必要經費－所得控除)×基本稅率＝算出稅額

(나) (販賣差益－讓渡所得特別控除額)×$\frac{50}{100}$＝ 算出稅額

(2) 不動產賣買事業에서 생긴 所得以外의 綜合所得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가) 또는 (나)중 많은 金額이 綜合所得算出稅額이 된다.

(가) (賣買差益－其他必要經費＋他綜合所得金額－所得控除)＝綜合所得課稅標準

・ 綜合所得課稅標準×基本稅率＝算出稅額

(나) (賣買差益－讓渡所得特別控除)×$\frac{50}{100}$＋{綜合所得課稅標準－(賣買差益－讓渡所得特別控除額)}×基本稅率＝算出稅額

11. 中間豫納 및 豫定申告와 稅額納付

가. 中間豫納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는 年度中에 두번 中間豫納稅額을 納付하게 되는데 一般的인 경우는 政府에서 告知書가 나오면 이를 納付하면 된다.

中間豫納期間은

第 1 期	1月 1日부터 4月 30日까지
第 2 期	5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이며 第1期分은 9月 30日까지 第2期分은 12月 31日까지 納付하게 된다.

中間豫納稅額의 計算은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1) 前年度의 中間豫納稅額

(2) 確定申告 自進納付稅額

(3) 追加納付稅額(加算稅包含)

의 合計額의 3分의 1씩이 되는 것이며 源泉徵收稅額이나 隨時賦課稅額은 中間豫納稅額計算에서 除外되는 것이다.

그런데 事業의 不振이나 기타 事由에 의하여 當該年度의 中間豫納稅額을 그대로 納付한다면 自己가 負擔할 稅額보다 많을 것이 豫想되는 경우에는 中間豫納期間에 對한 自己의 實績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推計額을 申告할 수 있는데 이러한 中間豫納推計額의 申告가 있으면 中間豫納稅額은 그 申告한 推計額에 의하여 調査決定하게 된다.

中間豫納推計額을 申告할 수 있는 要件은 다음과 같다.

期 分	要 件
第1期分	4月30日 現在 中間豫納推計額이 中間豫納基準額의 100분의 20에 未達하는 者
第2期分	8월31日 現在 中間豫納推計額이 中間豫納基準額의 100分의 40에 未達하는 者

위와같은 要件에 該當이 되면 中間豫納推計額을 計算하여 申告할 수 있는데 그 中間豫納推計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第1期分>

{(第1期分中間豫納期間의 綜合所得金額×3)－所得控除}×基準稅率÷3－

(第1期中間豫納期間中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同 隨時賦課稅額＋

同 源泉徵收稅額)＝中間豫納推計額

<第2期分>

(1月1日부터 8月31日까지의 綜合所得金額×$\frac{12}{8}$-所得控除)×基本稅率×$\frac{8}{12}$-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隨時賦課稅額+源泉徵收稅額)=中間豫納推計額

그러나 中間豫納推計額을 申告한 者 중

(1) 綠色申告者인 때

(2) 中間豫納推計額이 當該年度의 一部 또는 全部의 休業·災害 기타 事由에 비추어 볼때 妥當하다고 認定이 되는 때에는 所管稅務署長의 實地調査의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本人이 申告한대로 中間豫納稅額을 決定하게 된다.

나.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와 納付(法 §90~§94, 令 §139~§142)

不動產賣買業을 營爲하는 者는 그가 土地나 建物을 賣渡하였을 때에 그 賣渡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土地나 建物의 賣買所得을 計算하여 豫定申告와 함께 稅額을 納付하여야 하는데 이를 土地等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라고 한다.

이때에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土地建物의 賣渡價額-(그取得原價+設備費·改良費등 資本的 支出額+
土地建物의 建設資金에 充當한 金額의 利子+賣渡로 因한 公課金+讓渡所得
特別控除額에 相當하는 金額)}×$\frac{50}{100}$=豫定申告算出稅額

(2) 豫定申告算出稅額-豫定申告算出稅額×$\frac{10}{100}$=豫定申告納付稅額

위의 算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豫定申告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豫定申告算出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이와같이 不動產賣買事業을 하는者는 豫定申告를 하였다가 年間의 綜合所得에 對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다시 豫定申告分을 包含해서 確定申告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法 §95~§99, 令 §143~§146)

(※ 註 : 讓渡所得解說欄 參照)

12. 課稅標準確定申告와 稅額納付(法 §100~§113, 令 §147~§158)

가. 課稅標準의 確定申告

當該年度에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讓渡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이 있는 者는 이에 對한 綜合所得課稅標準·退職所得課稅標準·讓渡所得課稅標準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을 翌年 2月1日부터 2月末日까지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는데 이를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그러나 綜合所得중에서 勤勞所得만이 있다든지 退職所得만이 있다든지 分離課稅利子所得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만이 있다든지 하여 源泉徵收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義務를 다하고 있는 때에는 課稅標準의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또한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資產所得이 合算됨으로써 自己는 資產所得이외의 所得이 없는 경우에도 課稅標準確定申告를 別途로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資產合算對象家族이 있는 主된 所得者는 그의 所得과 그 家族의 資產所得을 合算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申告書에 主된 所得者와 資產合算對象家族과 連署하여 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그리고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所得金額計算에 必要한 書類는 勿論 稅額減免申請書·所得控除申告書·稅額控除申請書등 必要한 申請書나 申告書 및 이에 必要한 證憑書등을 添附하여야 한다.

나. 確定申告自進納付

위와같이 課稅標準의 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納付할 稅額을 申告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하며 그 稅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讓渡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둘째 ; 위의 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控除한다.

셋째 ; 위의 稅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控除한 金額이 自進納付할 稅額이 된다.

(1) 中間豫納稅額

(2)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3)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4) 隨時賦課稅額

(5) 源泉徵收稅額

(6) 納稅組合徵收稅額과 그 控除額

다. 綠色申告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綠色申告資格의 承認을 받은 者는 綠色의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綠色申告者로서의 여러가지 惠澤을 받게 되는바 이는 종전의 規定과 별다른 差異가 없으나

다만, 改正所得稅法은 綠色申告資格要件을 조금 緩和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法人稅法解說 參照)

13. 課稅標準의 決定(法 § 116~§133, 令 §162~§ 184)

가. 決定時期

納稅義務者가 所得稅의 課稅標準確定申告와 함께 自進申告納付를 하고나면 政府는 그 申告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게 되는데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않았거나 自進納付를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도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게 된다.

이러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은 住所地管轄稅務署長 또는 所管地方國稅廳長이 하게 되는데 그 時期는 翌年 5月 31日까지 決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居住者가 死亡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때에는 그 相續開始日부터 3月내에 決定하여야 하고 出國하는 者에 대하여는 出國日前에 決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課稅標準의 決定方法으로는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과 政府調査決定으로 구분되며 政府調査決定은 實地調査決定, 書面調査決定, 推計調査決定으로 구분된다.

나.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직전년도의 不動產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이 4百萬원 이하였거나 事業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이 1千5百萬원(다만, 仲介業, 代理業, 周旋業등은 4百萬원)이하인 居住者가 所得標準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稅廳長이 定한 一定率(自動賦課率)이상으로 當該年度의 不動產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때에는 政府는 그 申告대로 綜合所得課稅標準을 決定하게 되는데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이외의 綜合所得이 있는 때에는 通報된 資料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하고 이에 不動產所得金額과 事業所得金額은 申告한 所得金額을 合算하여 이에서 所得控除를 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을 決定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체의 稅務調査도 받지 않게 된다.

다. 實地調査決定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을 하는者 以外의 者로서 備置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課稅標準을 調査決定할 수 있을때에는 그 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과 稅額은 政府가 實地調査決定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課稅標準確定申告 有無에는 關係없이 帳簿나 證憑書類를 갖추었으면 實地調査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帳簿와 證憑書類를 完備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實地調査決定을 하여야 한다.

(1) 未備한 帳簿와 證憑書類에서 누락된 金額을 申告額에 加算하여 確定申告를 한 때
(2) 國稅廳長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正直記帳者인 때
(3) 簡易帳簿義務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簡易帳簿明細書를 첨부하여 申告를 한 때
(4) 綠色申告者가 租稅犯處罰法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때 또는 綠色申告者의 承認이 取消된 때

라. 書面調査決定

綠色申告者 또는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을 받을 수 있는 者 이외의 居住者로서 自動賦課率以上으로 申告하는 者가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가 確認한 調整計算書를 첨부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때에는 그 申告書類에 의하여 書面調査決定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實地調査決定이 생략되는 것이다.

마. 推計調査決定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實地調査決定, 書面調査決定을 할 수 없는 명백한 客觀的 事由가 있는때에는 課稅標準을 推計調査決定을 하게 되는데 이때 推計調査決定은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의 收入金額에 所得標準率을 곱한 것이 不動產所得金額, 事業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이 된다.

所得標準率은 從來에는 國稅廳長이 決定하여 왔으나 이제는 大部分이 民間人으로 構成된 所得標準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하게 됨으로써 推計調査決定時에도 客觀性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바. 加算稅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義務不履行으로 인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稅額을 決定하게 되는데 加算稅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記帳申告不誠實加算稅

(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期限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하게 申告한 때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하게 된다.

$$\text{算出稅額} \times \frac{\text{申告하지않은 所得金額 또는 未達한 所得金額}}{\text{所得別所得金額}} \times \frac{10}{100} = \text{加算稅額}$$

※ 所得別所得金額은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과 山林所得金額을 말한다.

(나)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가 當該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記帳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게 記帳한 때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하게 된다.

$$\text{算出稅額} \times \frac{\text{記帳하지않은 所得金額 또는 未達한 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 \times \frac{10}{100} = \text{加算稅額}$$

(다) (가) 및 (나)의 稅額이 同時에 該當하는 때에는 많은 金額 하나만을 加算하게 되며 이를 記帳申告不誠實 加算稅額이라 한다.

(2) 納付不誠實加算稅

確定申告自進納付하여야 할 所得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하게 되는데 이를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3) 報告不誠實加算稅

複式簿記義務者가 販賣報告書·支給報告書 또는 支給調書를 期限內에 提出하지 아니한 때와 提出한 報告書가 不明으로 確認된 때에는 그 去來金額의 1,000分의 15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하게 되며 當初 提出期限經過後 延長期間內에 報告書 또는 支給調書를 提出한 때에는 그 去來金額의 1,000分의 3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하게 되는데 이를 報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고 한다.

14. 納　　期

所得稅와 個人營業稅에 대한 納期는 다음과 같다.

所得稅
個人營業稅 } 納期一覽表

月別 / 區分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所得稅		自進納付			定期分			第1期中間豫納			第2期中間豫納	
個人營業稅	第2期自進納付		第2期定期分		第1期中間豫納		第1期自進納付			第1期定期分	第2期中間豫納	

15. 非居住者에 對한 課稅方法

非居住者는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경우에 그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서만 課稅되는 것인데 非居住者 중에서 國內事業場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國內源泉所得만으로서 綜合課稅를 하게 되며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는 國內源泉所得의 種類別로 分離課稅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는 거의 源泉徵收納付로서 納稅義務가 끝나게 된다.

그리고 非居住者에 대하여 綜合課稅를 하는 때에는 居住者에 대한 것과 같은 方法으로 課稅하게 되나 다만,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와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障害者인 경우의 障害者控除는 물론 住宅資金稅額控除도 惠澤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6. 帳簿備置記帳義務(法 §184・§185・§187・§188, 令 §220～§225)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事業者는 日記帳 簡易帳簿, 複式簿記에 의한 帳簿를 備置記帳할 義務가 있는데 日記帳을 備置・記帳할 義務가 있는 자를 日記帳義務者, 簡易帳簿를 備置記帳할 義務가 있는 자를 簡易帳簿義務者, 複式簿記에 의한 帳簿를 備置記帳할 義務가 있는 자를 複式簿記義務者라고 한다.

가. 複式簿記義務者는 다음 要件에 該當하는 事業者가 된다.

(1) 그 事業者의 當該年度의 직전년도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2億원 以上이 되는 때. 이 경우 保管業, 代理業, 仲介業, 委託賣買業, 運送周旋業 및 都給의 營業을 하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이 5,000萬원 以上이 되는 때

(2) 當該年度에 事業을 新規로 開始한 事業者인 경우는 中間豫納期間의 收入金額을 1年으로 換算한 金額이 2億원 또는 5,000萬원 以上이 되는 때

나. 簡易帳簿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는 다음 要件에 該當하는 事業者가 된다.

(1) 그 事業者의 當該年度의 直前年度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2億원 未滿 6千萬원 以上이 되는 때. 이 경우에도 保管業, 代理業 등의 事業을 하는 경우는 그 收入金額이 5千萬원 未滿 1千5百萬원 以上이 되는 때

(2) 當該年度에 事業을 新規로 開始한 事業者의 中間豫納期間의 收入金額을 1年으로 換算한 金額이 (1)에 該當하는 때

다. 日記帳義務者

當該年度의 直前年度 收入金額이 6千萬원(都給·代理, 仲介業등은 1千5百萬원)未滿인 事業者 즉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 以外의 者가 日記帳義務者가 된다.

라. 記帳의 時期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事業者는 처음 事業을 開始하였을 때에는 日記帳을 記帳하여야 하며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가 되었다는 稅務署長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그 通知를 받은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簡易帳簿 또는 複式簿記에 의한 帳簿를 備置하여 記帳을 始作하여야 하는 것이다.

17. 販賣報告, 支給報告, 支給調書의 提出義務(法 §189~§193,令 §226~§233)

가. 販賣報告의 提出義務

鑛業, 製造業이나 都賣業을 하는 事業者와 複式簿記義務者로서 畜産業, 水産業, 建設業, 運輸保管業, 不動産賣買業, 都給, 代理, 周旋, 委託賣買業과 電氣가스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每月 領收할 收入金額에 대하여 그 收入金額이 確定된 날이 屬하는 다음달 末日까지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報告書를 提出할 義務가 있다.

나. 支給報告의 提出義務

所得稅法上 支給報告書의 提出義務는 複式簿記義務者만이 있는 것인데 이는 每月 支給할 物品代金, 各種料金 또는 使用料에 關한 報告書를 그 支給할 것이 確定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國內에서 利子所得, 配當所得,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또는 其他所得을 支給하는 자와 非居住者에게 國內源泉所得을 支給하는 자는 그 支給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은 年1回 1月 31日까지 支給調書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는데 이때 綜合所得에 合算되지 않는 分離課稅利子所得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을 支給하는 것은 支給報告書를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라. 報告期限의 特例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販賣報告, 支給報告 또는 支給調書의 提出은 그 提出期限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期限내에 提出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去來金額의 1000分의 15에 相當하는 加算稅가 加算된다는 것은 이미 說明하였거니와 부득이하여 그 期限내에 販賣·支給報告書나 支給調書를 提出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期限까지 提出을 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는 1000分의 3의 加算稅가 適用된다.

(1) 1月分부터 4月分까지는 6月 30日

(2) 5月分부터 8月分까지는 10月 31日

(3) 9月分과 10月分은 12月 31日

(4) 11月分과 12月分은 翌年 2月 末日

18. 讓渡所得課稅

가. 讓渡所得의 意義(法 §4· §23)

讓渡所得이라 함은 土地, 建物,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產을 有償으로 讓渡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을 말한다. 따라서 土地, 建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產을 相續하거나 贈與함으로써 無償으로 讓渡하는 경우에는 相續稅法의 適用을 받을 뿐이고 所得稅法上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對象(法 §23)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對象은 다음과 같다.

(1) 土　　地

垈地, 田, 畓, 林野, 雜種地 등 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該當하는 土地는 모두 課稅對象이 된다. 이 경우에 地目은 地籍公簿上의 地目에 關係없이 事實上의 地目에 의하는 것이나, 事實上의 地目이 不分明한 경우에 限하여 地籍公簿上의 地目에 의한다.

(2) 建　　物

土地에 定着된 建築物은 물론 施設物과 構造物도 課稅對象이 된다.

(3)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産

全面的인 綜合所得稅制의 實施와 讓渡所得의 新設에 따른 施行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納稅者의 理解의 促進과 執行上의 煩雜을 피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에서 課稅對象資産을 따로 規定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優先 土地와 建物에만 賦課되도록 하였다.

다. 非課稅所得(法 §5, 令§14·§15)

다음에 該當하는 讓渡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變更되거나 替費地로 充當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가) 여기서 換地라 함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事業施行者가 事業完了後에 事業區域內의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에게 종전의 土地 대신에 그 區域內의 다른 土地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事業施行으로 인한 分割, 合併 또는 交換의 경우를 包含한다.

(나) 여기서 替費地라 함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事業施行者가 事業區域內의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에게 그 區域內의 土地로 事業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경우의 當該土地와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規定하는 保留地를 말한다.

(2) 國稅徵收法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3)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4) 讓渡할 때까지 8年이상 繼續하여 自己가 耕作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非課稅, 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包含)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가) 여기서 讓渡할때까지 8年이상 繼續하여 自己가 耕作한 土地라 함은 取得한 때로부터 讓渡할때까지의 사이에 8年이상 自己가 耕作한 事實이 있는 讓渡日 現在의 農地를 말한다.

(나) 이 경우에 相續받은 農地에 대한 耕作期間의 計算은 被相續人이 取得하여 耕作한 때부터 起算한다.

(5) 다음에 該當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이 경우 交換 또는 分合하는 雙方 土地價額의 差額은 價額이 큰편의 4分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事業으로 인하여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와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다) 耕作上 必要에 의하여 交換하는 農地.

(라) 農村近代化促進法·農地의保全및利用에關한法律 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6) 法院의 決定에 의한 競賣處分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親族 기타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設定한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競賣되는 경우는 除外)

(7) 土地收用法 기타法律에 의한 收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8)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現物로 出資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9) 1世帶 1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에 定着된 面積의 10培를 넘지 아니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가) 여기서 1世帶 1住宅이라 함은 住民登錄法上의 1世帶가 國內에 1個의 住宅을 所有하는 것을 말하며 1世帶라 함은 讓渡者 및 讓渡者와 同一한 住所 또는 居所에서 生計를 같이하는 家族을 말한다.

(나) 住宅의 一部에 店鋪등 다른 目的의 建物이 設置되어 있거나 同一 地番上에 住宅과 다른 目的의 建物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全部를 住宅으로 보나 住宅의 面積이 住宅 이외의 面積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住宅部分이외의 建物은 住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住宅의 面積이 住宅 이외의 面積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住宅部分에 附隨되는 土地의 計算은 다음 算式에 의한다.

$$\text{全體土地面積} \times \frac{\text{住宅部分의 面積}}{\text{建物의 面積}}$$

(10) 改正所得稅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規定한 不動產投機抑制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은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特定地域開發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하여 不動產投機抑制稅가 免除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免除된다.

라. 稅額의 減免(法 §6, 令§17~§19)

다음에 揭記하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減免申請이 있는 경우에 減免을 받는다.

(1) 다음 資產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直接 讓渡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가) 土地收用法 기타法律에 의한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와 이에 定着된 施設物로서 同法에 의한 事業認定 告示後 讓渡하는 것.

(나) 國防上 保安을 要하는 緊急한 軍事施設을 目的으로 國家에 讓渡하는 土地와 이에 定着된 施設物로서 國防部長官이 認定하는 것.

(2) 2年이상 繼續하여 稼動한 工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소득. 이 경우에 工場用에 直接 利用되는 土地와 建物에 대하여는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가) 讓渡한 土地面積이상의 工場敷地를 確保하고 移轉前의 工場에 直接 使用되던 機械裝置등의 施設에 상당하는 價値의 工場을 讓渡前에 施工하거나 讓渡日로부터 1年內에 施工한 경우. 다만, 讓渡前에 工場을 施工한 경우에는 그 施工日로부터 2年內에 竣工하고 竣工日로부터 1年內에 移轉前의 工場用敷地와 建物을 讓渡한 때에 限하여 減免을 받을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建設施工報告書 또는 建設竣工報告書에 當該施設을 說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施工日로부터 또는 竣工日로부터 15日內에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한 경우

(다) 讓渡한 날이 屬하는 年度의 直前年度와 直前前年度에 있어서 當該工場의 運營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所得稅가 賦課되거나 免除된 경우.

(3) 5年이상 繼續하여 經營한 牧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이 경우에도 別表에 揭記하는 飼育頭數 이상의 家畜을 飼育하는 牧場에 대하여는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가) 別表에 揭記하는 土地面積이상의 新牧場敷地를 確保하고 舊牧場을 讓渡한 날로부터 1年內에 新牧場의 事業을 開始한 경우. 다만, 舊牧場의 讓渡前에 新牧場의 事業을 開始한 경우에는 開始日로부터 2年內에 舊牧場을 讓渡하고 別表에 揭記하는 土地面積이상의 新牧場敷地를 確保한 때에 限하여 減免을 받을 수 있다.

(나) 讓渡한 날이 屬하는 年度까지 繼續하여 5年間 舊牧場의 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所得稅가 賦課되거나 免除된 경우

(4)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받은 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所得稅

를 追徵받게 된다.

(가) 正當한 事由없이 1年內에 工場施設을 施工하지 아니하거나 施工日로부터 2年內에 竣工하지 아니한 때

(나) (3)의 (가) 및 (나)의 要件을 갖추지 아니한 때

마. 讓渡所得金額의 計算(法 §23·§45, 令§46·§94)

讓渡所得金額=讓渡價額-必要經費-讓渡所得特別控除

(1) 讓渡價額(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때에는 讓渡當時의 時價標準額)

資產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한 總收入金額

(2) 必要經費

(가) 取得價額

取得價額=取得에 所要된 實地去來價額+設備費와 改良費+資本的 支出額

① 取得에 所要된 實地去來價額 : 取得原價와 그 附帶費用

1) 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取得當時의 時價標準額

2)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產에 있어서는 그 再評價額

② 設備費와 改良費 : 資產取得後의

1) 用途變更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2) 改良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3) 利益便宜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

4) 기타 1) 내지 3)에 準하는 費用

③ 資本支出額 : 資產取得後의

1) 資產의 耐用年數를 延長시키기 위하여 支出한 修繕費

2) 資產의 價値를 現實的으로 增加시키는 修繕費

3) 資產에 대한 所有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直接 所要된 訴訟費用

④ 1967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取得價額은 1968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時價를 알수 없는 때에는 1968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다만, 1967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實地去來된 取得價額에 그 取得日로부터 1967年 12月 31日까지의 保有期間에 의한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合算한 價額이 1968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한다.

(나) 讓渡費

資產을 讓渡하기 위하여 直接 支出한 費用

(다) 讓渡所得特別控除

讓渡所得特別控除＝取得價額×率×讓渡資產의 保有 期間의 年數

① 率 : 原則的으로 $\frac{10}{100}$. 다만, 都賣物價上昇率이 $\frac{10}{100}$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都賣物價上昇率에 의하되 $\frac{20}{100}$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讓渡資產의 保有期間 :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을 年으로 計算하되 年未滿은 月數에 따라 計算하고 月未滿의 日數는 1月로 한다.

바. 讓渡 또는 取得의 時期(法 §27, 令 §53)

(1) 資產의 讓渡 또는 取得의 時期는 當該契約을 締結하고 그 契約金 이외에 代價의 一部를 領收한 날 또는 領收할 날로 한다.
다만, 代金의 一部를 領收하였으나 賣買契約의 目的物이 完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目的物이 完成된 날로 한다.

(2)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의 경우의 讓渡 또는 取得의 時期는 그 契約을 締結한 날로 한다.

(3) 契約金 이외의 代價의 一部를 領收할 날은 契約書 등에 定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讓渡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0日이 되는 날을 讓渡 또는 取得의 時期로 한다.

(4) 讓渡資產중 土地와 建物로서 1967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것은 1968年 1月 1日을 그 資產의 取得의 時期로 보도록 하였다.

사.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率(法 §70)

(1) 讓渡所得課稅標準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讓渡差益＝讓渡價額－必要經費

讓渡所得金額＝讓渡差益－讓渡所得特別控除

讓渡所得課稅標準＝讓渡所得金額－所得控除

여기서 所得控除는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및 障害者控除를 말하는 것이며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과 退職所得金額의 合計額이 所得控除額에 未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控除不足額을 讓渡所得金額에서 控除할 수 있는 것이다.

(2) 稅　　率

(가) 土地 : 讓渡所得課稅標準의 $\frac{50}{100}$

(나) 建物 및 기타資産 : 讓渡所得課稅標準의 $\frac{30}{100}$

(3) 讓渡所得課稅標準計算의 特例

(가) 土地와 建物을 함께 取得하거나 讓渡한 경우에 土地價額과 建物價額의 區分이 不分明한 때에는 取得 또는 讓渡當時의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나) 林木과 林地를 함께 取得하거나 讓渡한 경우에 林木價額과 林地價額을 區分할 수 없는 때에는 林地에 대하여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取得價額과 讓渡價額을 計算하고 그 殘額을 林木에 대한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으로 본다.

아.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 및 納付(法 §95~§99, 令§143~§146)

(1)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資産을 讓渡한 居住者는 每月分의 讓渡所得金額을 그 讓渡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書에 의하여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가) 讓渡所得金額이 課稅最低限(年70萬원)에 未達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를 하여야 한다. 當該年度에 2回이상 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과 當月分의 讓渡所得金額을 合計한 金額(累計讓渡所得金額)을 申告하여야 한다.

(2)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自進納付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를 할 때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의하여 自進納付하여야 한다.

(土地讓渡所得金額의 合計額×$\frac{50}{100}$)+(建物讓渡所得金額의 合計額×$\frac{30}{100}$)=算出稅額

算出稅額－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算出稅額×$\frac{10}{100}$)

－既納付稅額＝納付稅額

(가) 이 경우에 讓渡所得金額이 70萬원 이하인 때에는 自進納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當該年度에 2回이상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를 하는 경우에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과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과의 合計額이 7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自進納付를 하여야 한다.

(나)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는 期限內에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를 한 讓渡所得金額에 대한 算出稅額의 $\frac{10}{100}$에 相當하는 金額이므로 그 期限內에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는 받지 못한다.

(3) 資產讓渡差益의 決定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期限內에 이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讓渡所得金額을 計算하여 所得稅를 告知하게 된다.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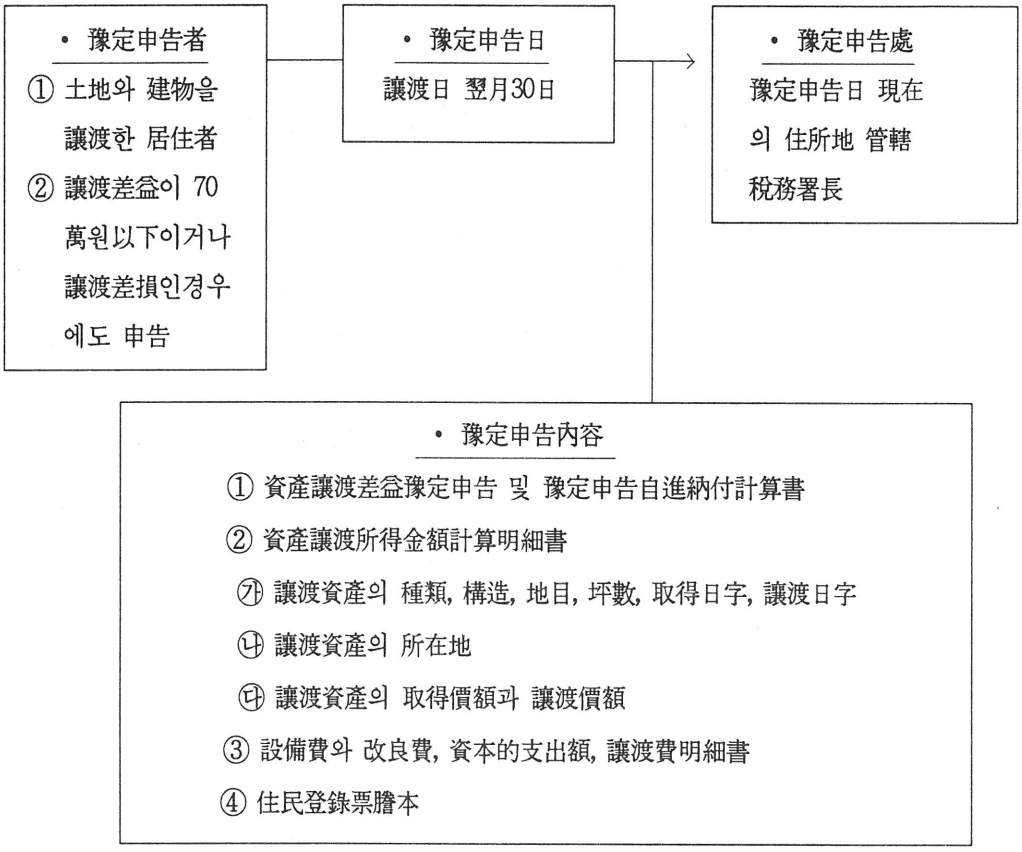

자. 讓渡所得確定申告 및 納付(法 §100, 令§147)

讓渡所得確定申告는 課稅標準確定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기타 附屬書類를 첨부하여 當該年度의 다음年度 2月 1日부터 2月末日까지 住所地管轄稅務署長(또는 韓國銀行이나 遞信官署)에게 申告와 함께 다음과 같이 計算한 稅額을 自進納付하여야 한다.

$$(\text{土地讓渡所得課稅標準}\times\frac{50}{100})+(\text{建物讓渡所得課稅標準}\times\frac{30}{100})=\text{算出稅額}$$

算出稅額－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追加告知稅額＝自進納付稅額

이때 注意할 것은 所得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減免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讓渡所得課稅標準計算의 圖示>

讓渡價額 − 必要經費 (取得에 所要된 實地去來價額·設備費와 改良費·資本的 支出額·讓渡費) = 讓渡差益

讓渡差益 − 讓渡所得特別控除 = 讓渡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 所得控除 = 讓渡所得課稅標準

註 ① 讓渡價額 : 實地 讓渡한 價額(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할때는 讓渡當時의 時價標準額)

② 取得에 所要된 實地去來價額 : 買入價額과 그 附帶費用(買入價額이 不分明할때는 取得當時의 時價標準額)

③ 讓渡所得特別控除 : 取得價額(取得原價+設備費와 改良費+資本的支出額)×率×讓渡資產保有期間의 年數

※ 率 = $\frac{10}{100}$ 단, 都賣物價上昇率이 $\frac{10}{100}$ 을 超過할 때에는 都賣物價上昇率로 하되 $\frac{20}{100}$ 을 限度로 함.

④ 所得控除 : 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害者控除의 合計額이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할때에 限하여 그 超過分을 控除하는 것임(讓渡所得만이 있을 때는 全額控除함)

⑤ 課稅最低限 : 讓渡所得金額이 年 70萬원 以下인 때는 課稅하지 아니함.

⑥ 非課稅所得

(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地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變更되거나 替費地로 充當된 土地의 讓渡

(나) 讓渡할때까지 8年以上 계속하여 自己가 耕作한 土地의 讓渡

(다) 一世帶 一住宅과 그에 附隨되는 土地의 讓渡

(라) 農地의 分合 또는 交換등(p. 76 非課稅所得 參照)

③ 減免所得

(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直接 讓渡한 土地

(나) 2年이상 계속하여 稼動한 工場의 土地와 建物

(다) 5年이상 계속하여 經營한 牧場의 土地와 建物등(p. 79 稅額의 減免 參照)

<讓渡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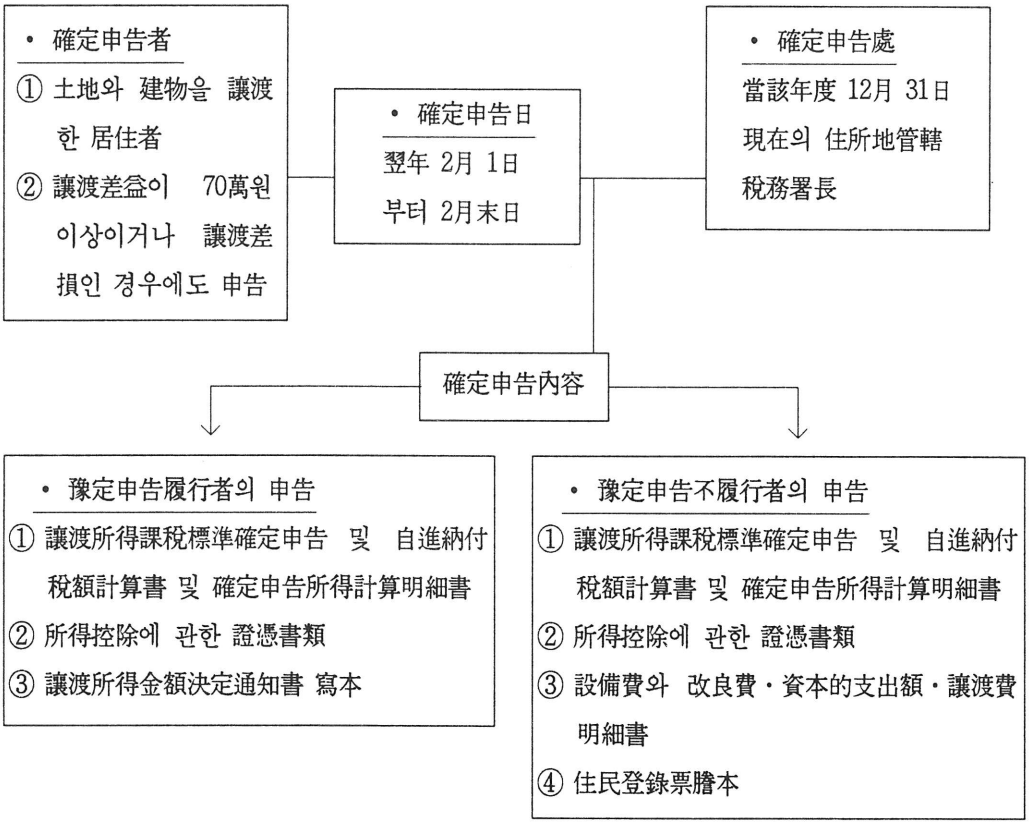

차. 課稅最低限과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法 § 130, 令 §45)

(1) 課稅最低限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最低限은 年70萬원이다. 따라서 當該 年度에 數回에 걸쳐 讓渡所得이 發生하는 경우에 每回의 讓渡所得金額의 合計額이 7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全額에 대하여

課稅된다.

(2)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債務者가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資產을 讓渡한 경우에 다음 要件을 갖춘 契約書의 寫本을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첨부한 때에는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가)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讓渡한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것.

(나) 當該資產을 債務者가 원래대로 使用 收益한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것.

(다) 元金·利率·辨濟期限·辨濟方法등에 관한 約定이 있을 것

이 경우에도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辨濟에 充當한 때에는 그때에 讓渡한 것으로 본다.

카. 讓渡所得金額決定의 特例(令 § 170)

(1)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差益이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差益과 顯著한 差異가 있는 경우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讓渡差益을 計算하여야 한다.

여기서 顯著한 차이라 함은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差益에서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差益을 控除한 差額이 時價標準額에 의한 讓渡差益의 $\frac{3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親族 또는 特殊關係있는 者와의 去來에 있어서 資產을 時價를 超過하여 取得하거나 時價에 未達하게 讓渡함으로써 租稅의 負擔을 부당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을 時價에 의하여 計算하게 된다.

19. 其他 改正事項

가. 納稅番號의 賦與(法 §197, 令 §238)

모든 所得稅의 納稅義務者에게는 納稅番號를 賦與하고 그 納稅番號에 의하여 電子計算機가 그의 所得을 綜合集計하여 申告 納付事項의 正當與否를 点檢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納稅番號의 賦與에 관하여는 技術的으로 많은 時日이 所要되므로 앞으로 이 納稅

番號를 따로 賦與할 때까지는 우선 現在의 住民登錄番號를 納稅番號로써 같음하도록 되어 있다.

나. 改正 所得稅法의 施行과 適用(附則)

改正 所得稅法은 1975.1.1부터 施行된다.

따라서 1975.1.1.이후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만 改正法이 適用되는 것이나 賞與特別控除制度와 같은 것은 納稅者의 稅負担을 덜어주기 위하여 1974年 12月에 支給하는 賞與에 대하여도 適用할수 있도록 特例를 두고 있으며, 利子所得의 計算期間이 1974年과 1975年에 걸쳐 있을 때에는 1974年 發生利子分과 1975年 發生分을 따로 計算하여 이를 각각 適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여야 할 所得稅는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다. 事業所得減免에 대한 特例(附則)

지난해 1月14日에 있었던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 緊急措置에 의한 事業所得稅의 減免措置는 1973年 2月分과 1974年 1期分에 한하여 適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 所得稅法 附則에 의하여 1974年 2期分도 그 惠澤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源泉徵收

源泉徵收란 稅法에 의하여 個人 또는 法人이 國家로부터 特定된 租稅의 徵收權을 委任받아 國家를 대신해서 特定한 金錢 또는 物品의 去來가 있을 때마다 그 去來相對者의 稅金을 徵收하여 所定期日內에 國家에 納付하는 租稅徵收의 한 方法을 말한다. 이와같은 源泉徵收는 原則的으로 豫納的이기 때문에 源泉徵收를 당한 그 去來相對者는 定期分으로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받게 된다.

금번 稅制改革에서 全稅法의 源泉稅 關係規定이 大幅 改正되었는바 그 主要內容을 大綱 살펴보면 改正前에는 一般源泉徵收·法定源泉徵收 및 指定源泉徵收로 區分되어 있어 一般源泉徵收義務者는 對象金額을 支給할때에 그 相對方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고

法定源泉徵收義務者는 그 去來相對者의 營業稅 課稅標準金額이나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을 支給하거나 領收할때에 去來相對者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營業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며 指定源泉徵收義務者는 公演業者가 對象金額을 支給할때, 屠畜場經營者가 屠殺·解體한 獸肉을 引渡할때, 또는 指定種目(40個)에 該當하는 製造業者와 第1次 都賣業者가 指定種目에 該當하는 物品을 販賣하고 代金을 領收할 때에는 그 去來相對者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營業稅를 源泉徵收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稅法에 있어서는

(1) 源泉徵收義務者의 分類에 있어서 그 主體의 業態·行爲 및 性質 등을 勘案하여 이를 調整하였는바 一般源泉徵收義務者와 法定源泉徵收義務者는 改正前과 다름없으나 指定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範圍를 擴大하여 鑛産業者·製造業者 및 都賣業者중 稅務署長이 指定한 者로 하고 源泉徵收할 稅目은 營業稅에 한하도록 하였다.

特別源泉徵收制를 新設하였으나 改正前의 法定 源泉徵收義務者중 輸入業者·輸入委託者 및 賃借料를 支給하는 法人과 指定源泉徵收義務者중 公演業者 및 屠畜場 經營者를 吸收 統合하고 源泉徵收할 稅目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營業稅이기 때문에 源泉徵收의 內容에 있어서는 改正前과 다름이 없다.

去來源泉徵收義務者 新·舊對比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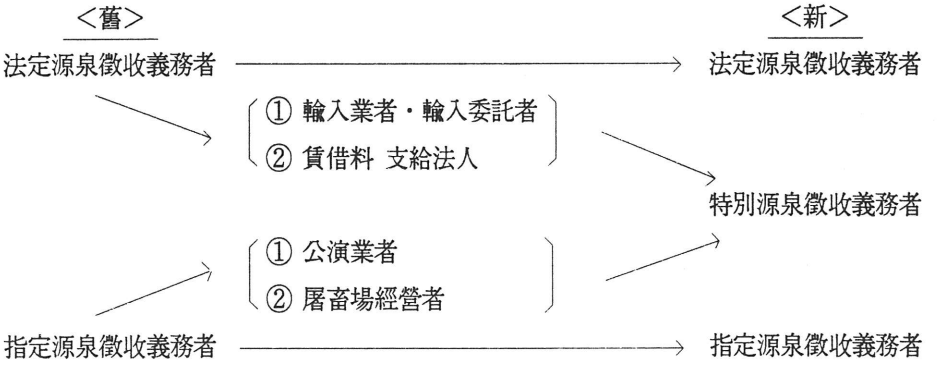

(2) 그리고 改正前에는 販賣한 物品에 대한 源泉徵收 時點이 代金 領收時에 즉, 現金主義 基準에 따라 하던 것을 改正稅法은 販賣時에 즉 發生主義 基準에 따라 源泉徵收하도록 하여 課稅資料 報告義務의 發生主義 基準과 合致되도록 衡平을 維持하였다.

(3) 一般 源泉徵收할 所得은 綜合所得稅制의 實施에 따라 利子所得· 配當所得·自由職業에서 생기는 所得·甲種의 勤勞(退職包含)所得 및 其他所得으로서 源泉徵收한 것 중 綜合所得에 合算되는 所得은 다시 綜合所得稅로 納付하되 이미 源泉徵收 당한 稅額

은 控除되며 分離課稅되는 所得은 源泉徵收만으로써 納稅義務者의 納稅義務가 終結되도록 하였다.

가. 一般源泉徵收(法 §142條~§167條, 令 §190條·§207條)

(1) 源泉徵收의 意義

源泉徵收라 함은 收入金額이나 所得金額을 支給할때 또는 特定去來를 할때에 相對方의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등을 徵收하여 이를 政府에 納付하는 制度이다. 源泉徵收는 一般源泉徵收, 去來源泉徵收로 大別되고 있으며 去來源泉徵收는 다시 法定源泉徵收 特別源泉徵收, 指定源泉徵收로 區分되고 있으나 所得稅는 指定源泉徵收規定이 없고 營業稅만 該當된다.

所得稅法이 정하고 있는 源泉徵收義務는 相對方 또는 特定去來相對方의 所得이나 收入金額이 되는 金額을 支給할 때에 所得稅를 徵收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을 따름이며 여기서는 一般源泉徵收에 關하여만 說明하기로 한다.

(2) 一般源泉徵收義務者(法 §142條)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에 揭記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者는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는데 그 源泉徵收하여야 할 義務者를 一般源泉徵收義務者라고 한다.

(가) 利子所得金額
(나) 配當所得金額
(다) 自由職業에서 發生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라) 甲種에 屬하는 勤勞所得金額
(마) 其他所得金額
(바) 甲種에 屬하는 退職所得金額

(3)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利子所得金額을 支給하는 때에는 그 利子所得金額에 源泉徵收稅率을 適用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는데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다음과 같다.

(가) 銀行預金의 利子와 信用協同組合·마을金庫·單位農業協同組合·地區別 漁業協同

組合이 支給하는 預金의 利子·合同運用信託의 利益, 證券投資信託의 利益과 相互信用金庫가 發行하는 어음이나 債務證書의 利子에 대하여는 100分의 5

(나) 短期金融會社가 發行, 引受, 保證, 賣買한 어음의 利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다) 金融機關, 證券會社등이 募集·周旋한 社債로서 總發行社債의 100分의 3未滿 所有者의 社債의 利子에 대하여는 100分의 15

(라) 그 以外의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4)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配當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다음의 源泉徵收稅率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가) 上場法人·公開法人의 少額株主에게 支給하는 配當과 非公開法人의 우리社株組合員인 少額株主에게 支給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分의 5

(나) 信用協同組合·마을金庫·單位農業協同組合·地區別 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配當,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과 紙上配當에 대하여는 100分의 5

(다) 上場法人·公開法人의 大株主와 非公開法人의 株主에게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에 대하여는 100分의 10

(라) 上場法人·公開法人의 大株主에게 支給하는 配當은 100分의 10

(마) 그 以外의 配當所得全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그런데 배당소득의 源泉徵收는 그 所得을 支給하는 때에 하는 것이 原則이나 法人이 剩餘金處分에 의하여 配當을 決議하고 3月이 되도록 配當金을 支給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支給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때에 源泉徵收하여야 하며 擬制配當이나 紙上配當은 그 配當確定日에 配當金을 支給한 것으로 보고 源泉徵收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5)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가)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簡易稅額表에 의하여 該當所得稅를 每月 源泉徵收하여야 하는데 簡易稅額表는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障害者控除등을 勘案한 月稅額을 計算해 두고 있으므로 1月分부터 11月分까지의 給與 또는 1月分부터 退職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給與에 대하여는 반드시 簡易稅額表에 의한 稅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12月分의 給與 또는 退職하는 달의 給與에 대하여는 年間給與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給與總額에 대하여 基本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年末精算이라고 한다.

勤勞所得者는 年末精算때에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하여야 하는데 簡易稅額表에 依하여 每月分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前年度年末精算때에 받은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 의하여 配偶者의 有無·扶養家族의 有無, 障害者의 有無등을 가려서 簡易稅額表上의 獨身者欄의 扶養家族數 該當欄 또는 配偶者가 있는 者欄의 扶養家族數 當該欄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그런데 簡易稅額表에는 障害者가 表示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障害者가 있는 경우에는 障害者 1人을 扶養家族 2인으로 計算하여 簡易稅額表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扶養家族의 數가 7人을 넘을 때에는 簡易稅額表上 扶養家族 7人 該當欄의 所得稅에서 7人을 超過하는 人員 1人當 500원씩을 控除한 것이 簡易稅額表上의 稅額이 된다.

改正稅法은 今年發生所得부터 適用하게 되는 것이므로 今年 1月分 給與부터 簡易稅額表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하는데 前年度에는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를 한 것이 없으므로 附則에 의하여 1月分給與 支給前에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提出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每月分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고 年末精算때 다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提出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所得稅를 精算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每月分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 簡易稅額表上의 所得稅에서 勤勞所得稅額控除·貯蓄稅額控除·住宅資金稅額控除·外國納付稅額控除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控除하여 源泉徵收하게 되는데 이는 法 規定上 申請이 必要한 것은 申請을 받아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하고 年의 中途에 申請이 없어 所得稅를 控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年末精算때에 稅額控除申請을 하게 되면 모두 控除惠澤을 賦與받게 되는 것이다.

(나) 賞與에 대한 源泉徵收

勤勞所得者는 年間一定金額의 賞與金을 받는일이 많은데 이 賞與를 年末에 一時에 주었을 때에는 年末까지의 給與總額에 대하여 賞與特別控除와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이에서 다시 所得控除를 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計算하면 되니까 別問題가 없으나 年度中에 賞與를 支給하였을 때에는 源泉徵收方法이 조금 複雜하게 되나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하면 된다.

<算式>

B : 年賞與金

W : 月定給與額(賞與支給期間의 最終月分의 賞與以外의 給與額)

S : 賞與支給對象期間의 賞與金以外의 給與總額

N : 賞與支給對象期間의 月數

t : S에 대한 所得稅額(加算稅額除外)

T : B에 대한 所得稅額(源泉徵收稅額)

$$T = \left\{ \frac{B-(W와\ 年\ 12萬원중\ 적은\ 金額)+S}{n} \right\} 에\ 대한\ 簡易$$

稅額表上의 該當稅額×n−t

(註) ① 支給對象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月1日부터 支給日이 속하는 달까지의 期間을 支給對象期間으로 한다.

② 賞與特別控除額(W와 年12萬원중 적은 金額)은 B를 超過할 수 없음.

(다) 從된 勤務地의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勤務處가 둘以上 있을 경우의 每月分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主된 勤務地에서만 所得控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以上의 勤務處가 있는 勤勞者는 主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勤務地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하고 主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는 從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그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이를 通報받은 從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는 從된 勤務地가 되는者의 給與에 대하여는 簡易稅額表上의 獨身者欄 중 扶養家族이 없는 該當欄의 稅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一般源泉徵收義務者로서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所得者別勤勞所得源泉徵收簿를 備置하여야 하며 12月分의 給與 또는 退職하는 달의 給與를 支給하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는 所得者別勤勞所得源泉徵收簿에 의하여 總給與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總給與에 대한 所得稅를 計算하게 되는데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勤務地가 하나인 경우

1) 當該年度에 支給한 勤勞所得의 合計額에서 賞與特別控除, 勤勞所得控除 및 所得控除를 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基本稅率을 適用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2) 위의 算出稅額에서 勤勞所得稅額控除·貯蓄稅額控除, 住宅資金稅額控除·外國納付稅額控除를 하고 이에서 1月부터 11月까지 또는 1月부터 退職하는 전달까지에 이미 源泉徵收納付한 稅額을 控除하고 그 差額을 年末精算稅額으로 納付하게 되는데 그 差額이 負數로 計算될 때에는 이를 還給하여야 한다.

② 勤務地가 둘以上인 경우

主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從된 勤務地에서 支給한 勤勞所得까지를 모두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稅額을 計算하고 前①의 方式에 따라 追加納付稅額 또는 還付稅額을 計算하게 되는데 이때 勤勞者는 從된 勤務地에서 받은 源泉徵收領收證에 의하여 從된 勤務地의 勤勞所得을 주된 勤務地의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러한 方法으로 年末精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다른 綜合所得이 없는 때에는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않아도 된다.

(6)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國內에서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게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그 退職所得에서 退職所得特別控除와 退職所得控除를 하고 綜合所得金額에서 控除하고 남은 所得控除額이 있으면 이를 控除하여 退職所得課稅標準을 計算한 후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된 稅額을 源泉徵收 하여야 한다.

$$\frac{\text{退職所得課稅標準}}{\text{勤 續 年 數}} \times \text{基本稅率} \times \text{勤續年數} = \text{算出稅額}$$

(7)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의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에는 그 支給金額에 100分의 1의 稅率을 곱하여 계산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가) 著述, 書畵, 作曲, 俳優, 聲優등 其他 이와 類似한 自由職業所得

(나) 演芸에 관한 監督, 脚色, 演出등 이와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다) 設計監督, 建築監督, 技術指導, 接待婦, 댄서, 保險加入募集人등 이와 類似한 自由職業所得

(라) 著作者가 받는 著作權 使用料, 講演料, 講師料, 辯護士등의 顧問手當

(마) 校正料, 翻譯料, 速記料, 考證料, 音盤吹込對價, 放送 謝禮金, 기타 人的用役手當(令 §38, §190 參照)

(8)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所得稅法이 정하고 있는 其他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其他所得의 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에 100分의 25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稅額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9) 源泉徵收稅額의 納付와 加算稅

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한 稅額은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韓國銀行, 遞信官署 또는 源泉徵收管轄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러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를 加算하게 되는데 이는 納付하지 아니 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한 稅額의 5%이다.

(10)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였을때에는 源泉徵收領收證을 當該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는데 利子所得, 配當所得, 自由職業所得,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를 하였을 때에는 그 所得金額이나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에 交付하여야 하며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領收證은 當該年度의 다음年度 1月31日까지 交付하여야 하고 退職하는 者의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과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은 그 給與를 支給한 날로 부터 30日 以內에 交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法定 또는 特別源泉徵收

(1) 法定源泉徵收義務者

法定源泉徵收義務者는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 및 特別法과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등으로서 物品을 販賣하거나 引渡할때에 그 物品代金 및 引渡價額에 대하여 去來相對方의 所得稅·法人稅·營業稅등을 源泉徵收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物品代金 또는 用役對價를 支給할 때에도 그 去來相對方의 所得稅·法人稅·營業稅등을 源泉徵收하여, 翌月 10日까지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단지 改正前과 달라진 것은 法定源泉徵收義者가 販賣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代金領收時(現金主義)에 源泉徵收하던 것을 販賣時(發生主義)에 源泉徵收하도록 한것 뿐이다.

(2) 特別源泉徵收義務者

特別源泉徵收義務者는 改正前의 法定源泉徵收義務者이었던 輸入業者·輸入委託者 및 賃貸料를 支給하는 法人과 指定源泉徵收義務者이었던 公演場經營者 및 屠畜場經營者로서 政府가 源泉徵收義務者로 指定하는 節次없이 法에 의하여 當然히 義務가 發生하게 되며 特別源泉徵收는

(가) 공연장경영자가 映面필름의 代金·步金·使用料·公演料등을 支給할 때

(나) 屠畜場經營者가 屠殺·解體한 獸肉과 그 副產物을 引渡할 때

(다) 輸入業者 또는 輸入委託者가 輸入物品을 引渡할 때

(라) 法人이 不動產賃貸料를 支給할때에

特別源泉徵收義務者로서 그 去來相對者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營業稅를 源泉徵收하기 때문에 特別源泉徵收의 內容에 있어서는 改正前과 달라진 것은 없다.

다. 指定源泉徵收

指定源泉徵收는 鑛產業者·製造業者 및 都賣業者로서 稅務署長이 指定한 者가 物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한 경우에는 物品代金 또는 加工料에 대하여 販賣할 때에 그 去來相對 營業者의 營業稅만 源泉徵收하게 된다. 따라서 營業稅法에서만 指定源泉徵收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營業稅法 解說을 參照하기 바란다.

<別表>

牧場의 施設基準 및 免稅範圍

事業別	飼育·成畜頭數	免稅範圍
韓牛·肉用牛 飼育事業	20頭	頭當 1,150㎡
乳牛 飼育事業	20〃	〃 2,300 〃
羊·사슴 飼育事業	200〃	〃 230 〃
돼지 飼育事業	100〃	〃 13 〃
토끼(친칠라 및 밍크를 포함한다)飼育事業	500首	首當 3 〃
家禽飼育事業(種鷄場에 設置된 孵化場을 포함한다)	1,000 〃	〃 3 〃

改正稅法에 의한 源泉徵收制度 圖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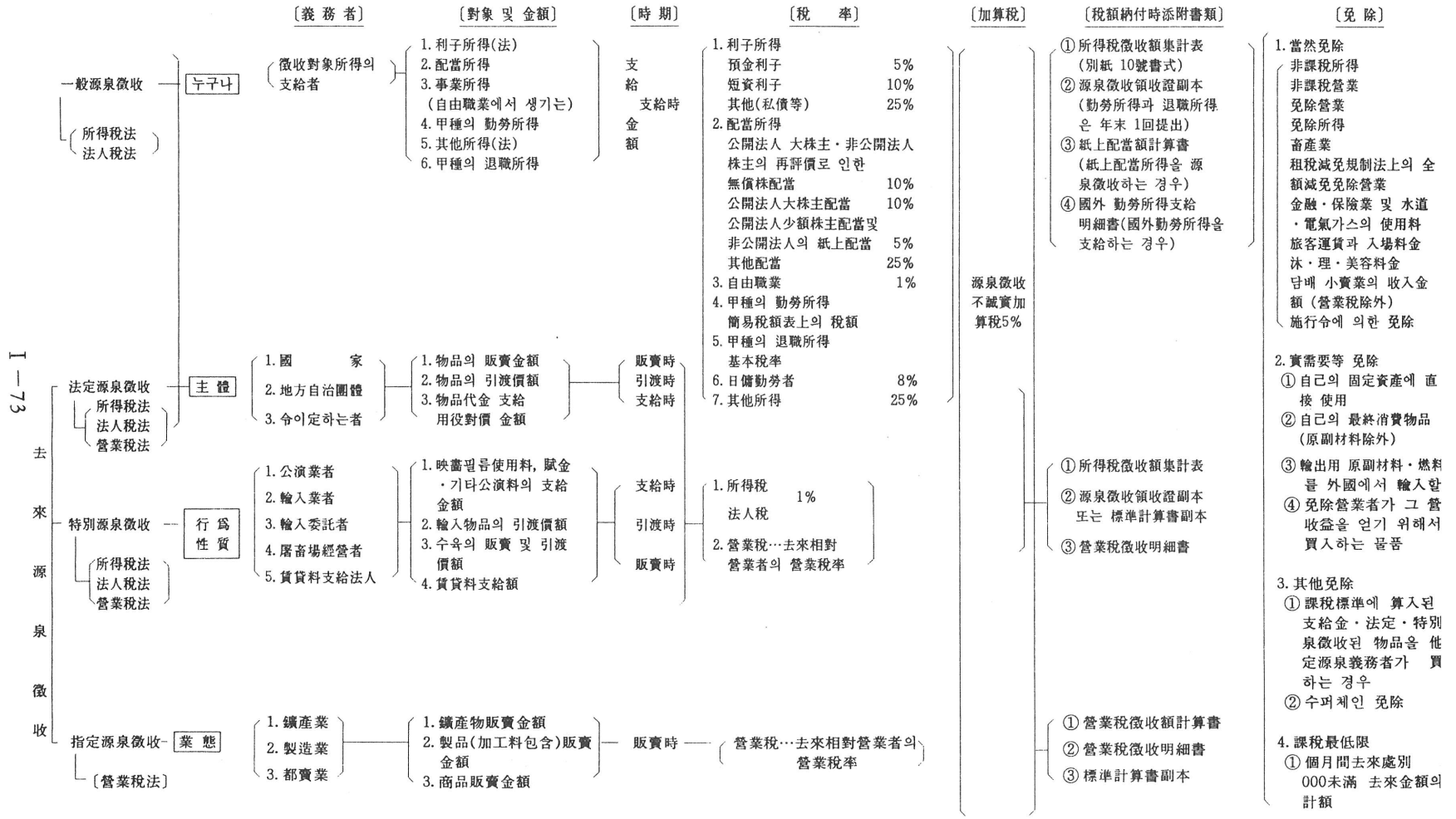

21. 勤勞所得者가 提出할 申告書 書式과 그 記載要領

(별지 제14호 서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납세번호							
	③주소											
④소득공제 연도		년	소득공제내역									
⑤구분 / 공제대상	⑥ 관계	⑦ 생년월일	⑧ 성명	당해연도발생소득금액							⑯공제금액	
				⑨근로	⑩사업	⑪기타	⑫퇴직	⑬양도	⑭삼림	⑮소득계		
⑩1 기초		—	—	—	—	—	—	—	—	—	180,000	
⑩2 배우자												
⑩3 부양가족												
⑩4 〃												
⑩5 〃												
⑩6 〃												
⑩7 〃												
⑩8 〃												
⑩9 〃												
⑪0 장해자												
⑪1 〃												
⑪2 공제액계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

귀하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일시퇴거자동거가족 상황표 1통 ③ 장해자 증명서 1통	수수료 없음

2206-02-37E
19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 作成要領

1. 本申告書는 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所得者)가 생계를 같이하는 家族(住民登錄票에 記載된 家族으로서 一時退去者를 包含)중에서 控除對象者만을 記入하여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한다.

2. 提出時期

   가. 75年 1月分 給與를 支給받기前(75年度에 한한다).

   나. 每年度 12月分의 給與를 支給받기 前

   다. 中途退職者는 最終月分의 給與를 支給받기 전

3. ②納稅番號는 所得者의 住民登錄番號를 記入

4. ⑩①基礎라 함은 "基礎控除"로서 法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年180,000원을 綜合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에서 控除한다.

5. ⑩②配偶者라 함은 "配偶者控除"로서 法第64條의 규정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所得者)와 생계를 같이하는 控除對象配偶者(내연의 관계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年120,000원을 綜合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에서 控除한다.

6. ⑩②~⑨⑩⑪⑫⑬⑭配偶者의 명의로 발생된 당해연도의 소득중 分離課稅所得을 제외한 勤勞所得金額, 事業所得金額, 其他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을 기입한다.

7. ⑩②~⑯은 ⑩②~⑮의 金額≦120,000원일 경우에 한하여 120,000원을 記入하며 ⑩②~⑮의 금액＞120,000원인 자는 記載하지 않는다.

8. 가. ⑩③扶養家族이라 함은 "扶養家族控除"로서 法65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와 생계를 같이하는 控除對象 扶養家族(居住者의 配偶者는 除外)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扶養家族 1인당 年60,000원을 綜合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 중에서 공제한다.

   나. 控除對象 扶養家族의 範圍

(1) 直系尊屬 및 兄弟姉妹로서 60歲 以上.

(2) 兄弟姉妹로서 20歲 以下

(3) 直系卑屬중 20歲 以下인 者. 다만, 直系卑屬은 1974.12.31以前 出生者는 人員에 제한이 없으나 1975.1.1 以後 出生者의 경우 1974.12.31 以前 出生者와 합하여 3인을 超過하는 者는 控除對象扶養家族에서 제외된다.

다. 控除對象扶養家族의 例

摘 要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直系尊屬	兄弟姉妹	直系卑屬	直系尊屬	兄弟姉妹	直系卑屬	直系尊屬	兄弟姉妹	直系卑屬
60歲以上者	2			3			1	1	
74.12.31以前 出生者로서 20歲以下者		4	1		1	4		1	1
75.1.1以後 出生者로서 20歲以下者		2	4			1			1
控除對象 扶養家族數	2	6	3	3	1	4	1	2	2
控除對象扶養家族數 合 計		11			8			5	

9. ⑩3~⑯은 ⑩3~⑮의 金額≦60,000원일 경우에 한하여 60,000원을 기입하며 ⑩3~⑮의 金額>60,000원인 者는 記載하지 않는다.

10. ⑩3~⑩9까지는 控除對象 扶養家族을 기입하되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작성하여도 된다.

11. ⑩3障害者라 함은 障害者控除로서 法66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나 그 居住者와 생계를 같이하는 扶養家族(配偶者包含)중 控除對象 障害者가 있는 경우에는 1人에 대하여 年120,000원을 綜合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讓渡所得金額, 山林所得金額에서 控除한다.

12. ⑩~⑯은

가. 當該居住者本人이 控除對象 障害者일 경우

⑩~⑮의 金額에 관계없이 120,000원을 기입한다.

나. 控除對象配偶者가 控除對象 障害者일 경우

⑩~⑮의 金額≦24,000원일 경우에 한하여 120,000원을 기입하고

24,000원 超過者는 記載하지 않음.

다. 控除對象 扶養家族(居住者와 생계를 같이하는 扶養家族 包含)이 控除對象 障害者일 경우

(1) 控除對象 扶養家族이 控除對象 障害者일 경우

⑩~⑮의 金額≦180,000원일 경우에 한하여 120,000원을 기입하고

⑩~⑮의 金額>180,000원인 者는 記載하지 않음.

(2) 控除對象이 아닌 扶養家族이 控除對象 障害者일 경우

⑩~⑮의 金額≦120,000원일 경우에 한하여 120,000원을 기입하고

⑩~⑮의 金額>120,000원인 자는 記載하지 않음.

18. ⑩~⑪까지는 控除對象 障害者를 기입하되 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도 된다.

나. (별지 제2호 서식)

일 시 퇴 거 자 동 거 가 족 상 황 표				
소득자	①성 명		②납 세 번 호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일시퇴거지주소		⑦ 소득자와의 관계	
	⑧ 직 업		⑨ 퇴 거 사 유	

상기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이므로 소득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소득자 성명 ㊞

귀하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 1통(취학의 경우)

② 요양증명서 1통(요양의 경우)

③ 재직증명서 1통(근무의 경우)

④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본 상황표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의 구비서류임)

2206-02-28A
19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 作成要領

1. 本狀況表는 法第67條第2項 및 令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본인 또는 그 居住者와 생계를 같이하는 配偶者·扶養家族이 就學, 疾病의 療養·勤務上의 形便등으로 本來의 住所 또는 居所를 一時退去하고 전입한 주소지의 住民登錄票上 同居人 또는 世帶員이 없는 世帶主로 된 者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때 勤勞所得者 所得控除申告書 및 確定申告書에 첨부한다.

2. 具備書類

가. 就學의 경우

(1) 一時退去地(轉入地)의 住民登錄謄本

(2) 在學證明書(學校의 長 發行)

나. 療養의 경우

(1) 一時退去地의 住民登錄謄本

(2) 療養證明書(醫療機關의 長 發行)

다. 勤務의 경우

(1) 一時退去地의 住民登錄謄本

(2) 在職證明書(勤務處의 長 發行)

3. ②納稅番號는 所得者의 住民登錄番號 기입

4. ⑨退去事由는 就學·療養·勤務로 구분하여 기입

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10">장 해 자 증 명 서</td></tr>
<tr><td rowspan="2">소득자</td><td>①성 명</td><td colspan="3"></td><td>②납세번호</td><td colspan="4"></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장해자</td><td>④성 명</td><td colspan="3"></td><td>⑤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⑥소득자 와의 관계</td><td></td><td>⑦장해 예상기간</td><td>영 구</td><td>비영구</td><td>자. 지.</td><td>⑧병명</td><td></td><td>⑨장해 내용</td><td>제 호</td></tr>
<tr><td colspan="10">위 장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발 행 자 ㊞

귀하</td></tr>
<tr><td colspan="10">※ 장해내용(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1. 심신상실자와 정신박약아
2.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
3. 벙어리, 봉사와 귀머거리
4.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5. 제1호와 제4호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본증명서는 근로소득자 소즉공제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임.</td></tr>
</table>

2206-02-27A
19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 作成要領

1. 本證明書는 令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本人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配偶者·扶養家族이 本證明書 하단의 障害者에 해당함을 病院, 醫院의 醫師로부터 證明을 받아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 및 確定申告書에 첨부한다.(軍事援護補償法에 의한 傷痍病者의 證明을 받은 者는 그 證明書 寫本으로 갈음한다.)

2. ②納稅番號는 所得者의 住民登錄番號를 기입.

3. ⑦障害豫想期間은 醫師의 판정에 의한 障害豫想期間을 기입.

4. ⑧病名은 醫師가 판정한 병명을 기입.

5. ⑨障害內容은 令第119條 第1項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호수를 기입.

6. 本證明書의 發行者는 住所·商號·姓名 및 住民登錄番號를 기재하고 發行臺帳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주택자금세액공제신청서							처리시간 즉 시
	①성 명			②납세번호			
	③주 소						
⑤주택자금명칭		⑥대출및부금번호		⑦대출금및부금계약액			
⑧주택소재지				⑨대출및부금계약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연도 주택자금의 상환 및 주택부금 월별 납입현황

⑩월 별	⑪상환금및부금납입액	⑫세액공제액	⑬비 고	⑭월별	⑮상환금및부금납입액	⑯세액공제액	⑰비 고
⑩1 1				7			
⑩2 2				8			
⑩3 3				9			
⑩4 4				10			
⑩5 5				11			
⑩6 6				12			
⑩7 연간합계							

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귀 하

구비서류 : 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1통 ②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의 상환금 및 주택부금납입액 증명서를 관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통	수수료 없 음

2206-02-31E
19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 作成要領

1. 本申請書는 無住宅者로서 國家·地方自治團體, 大韓住宅公社, 韓國住宅銀行에 住宅賦金이나 國民住宅資金에 대한 償還金을 納入하는 者(年240萬원 이하의 勤勞所得者에 한한다)가 納入金額에 대한 5/100의 住宅資金稅額을 控除받고자 할때에 月給與를 받기전에 一般源泉徵收 義務者에게 제출한다.

2. ⑤住宅資金名稱은 대출받은 住宅資金의 명칭 또는 拂入하는 住宅賦金의 명칭을 기입한다.

3. ⑧住宅所在地는 住宅資金을 대출받아 新築한 住宅의 所在地를 기입한다.

4. ⑪과⑮ 償還金 및 賦金納入額은 해당월의 住宅資金償還 또는 住宅賦金 納入額을 기입한다.(期別·分期別로 納入하거나 償還하는 경우에는 月額으로 환산한다.)

5. ⑫와⑯ 稅額控除額은 月別償還金 및 賦金納入額에 5/100를 곱하여 산출한 金額을 기입한다.

6. 所得者(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와 住宅資金償還 및 住宅賦金 納入者는 동일인이어야 함.

7. 改正所得稅法施行當時 國民住宅資金의 償還金을 納入하는 者가 1住宅만을 가진 경우에는 無住宅者로 보도록 규정되었으므로 財產稅 未課稅證明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지 제7호 서식)

주택자금상환 및 주택부금납입증명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규정>

납입자	①성명		②납세번호	
	③주소			
④주택자금명칭		⑤대출및부금번호		⑥대출금및부금계약액	
⑦주택소재지				⑧대출및부금계약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연도주택자금의 상환 및 주택부금월별납입현황

⑨월별	⑩납입일자	⑪상환금및부금납입액	⑫비고	⑬월별	⑭납입일자	⑮상환금및부금납입액	⑯비고
⑩① 1				7			
⑩② 2				8			
⑩③ 3				9			
⑩④ 4				10			
⑩⑤ 5				11			
⑩⑥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 주택자금세액공제신청용			

본인이 주택자금의 상환 및 주택부금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위와같이 주택자금의 상환 및 주택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9 년 월 일

귀하 ㊞

2206-02-32A
19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 作成要領

1. 本證明書는 住宅資金稅額控除를 받은 者가 年末精算을 받을 때 住宅資金償還 및 住宅賦金을 納入한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住宅銀行으로부터 發給받아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제출한다.

2. 本證明書의 作成要領은 住宅資金稅額控除申請書와 동일함.

營 業 稅 法

現行 營業稅制度를 將次 附加價値稅制度로 轉換하기 위하여 그 事前準備措置로 現行 營業稅率의 內容을 바꾸고, 附加價値稅制度에 있어서 企業이 去來때마다 그 去來相對者로부터 稅金을 徵收하여 納付하는 것과 類似한 稅金徵收方式인 現行 去來源泉徵收制度를 모든 製造業者, 都賣業者가 去來하는 모든 品目으로 擴大實施토록 하여 附加價値稅制度를 事前에 豫行實施해 보는 것과 아울러 根據課稅確立에 가장 基本이 되는 領收證 授受의 生活化를 이 去來 源泉徵收制度에 依한 標準計算書授受로 達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營業稅 課稅에 있어서 納稅者와 政府間의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政府의 調査決定權限을 大幅縮小하여 自進申告納付와 根據課稅를 發展시키고 公平한 課稅를 期하도록 하였다.

1. 營業의 分類 및 稅率

改正		
營業名	區分	對象業
鑛産業		
製造業	甲	電氣業, 가스業 및 上水道 脫穀 精米 精麥 煉炭 製麵 肥料 飼料 製糸 紡織 織造 製紙 팔프 汽車 電車 軌道車
	乙	(甲)以外의 製造業
建設業		
販賣業	都賣業甲	穀物 소금 담배 煉炭 靑고구마 鮮漁 麥粉 肥料 飼料
	都賣業乙	(甲)以外의 都賣業
	小賣業甲	都賣(甲)과 同一함
	小賣業乙	(甲)以外의 小賣業
運送保管業		
保險業		
金融業		
不動産業		
沐浴湯 및 理髮 美容業		
食品店 및 其他 써비스業		
料理店 및 娛樂 써비스業		

가. 營業의 分類內容(法 §1, 令 §5~§20)

營業稅는 營業의 收益에 대하여 課稅하는 稅金인데 그 課稅對象(課稅客體)이 되는 營業의 分類를 韓國標準產業分類(統計法에 의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告示)의 方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名稱의 一部가 變更되었으나 改正前의 營業稅 課稅對象이 되는 範圍內에서 調整되었으므로 課稅對象의 內容面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1) 電氣·가스 및 水道業을 新設하였다. 따라서 改正前에는 製造業으로 課稅되어 오던 電氣·가스 및 水道業을 獨立된 業態로서 課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電力을 發電·送電 또는 配電하는 電氣業과 가스·스팀 또는 水道물을 生產하여 導管에 의하여 供給하는 가스業 上水道業은 電氣·가스 및 水道業에 該當하게 되며 이와 같은 電氣·가스 및 水道業者가 營業場을 特設하지 아니하고 一般需用家에 대하여 電氣·가스 및 水道에 관한 施設 또는 物品을 貸與하거나 販賣하는 것도 電氣·가스 및 水道業으로 課稅하게 되었다.

(2) 製造業中에서 달라진 것은 改正前의 印刷·謄寫 및 製冊業의 경우에 依賴人이 供給하는 素材物로 印刷, 謄寫 또는 製冊을 하고 報酬를 받는 것은 其他 써비스業으로 課稅하여 왔으나 改正稅法은 이를 製造業으로 課稅토록 하였다.

(3) 都賣業과 小賣業을 新設하고 販賣業을 廢止하였다. 따라서 改正前에는 販賣業으로서 稅率適用에 있어서만 區分되어 오던 都賣業과 小賣業을 各各 獨立된 業態로 分離시켰다. 이는 指定源泉徵收義務의 範圍와 關聯하여 都賣業과 小賣業을 區分하였는바 都賣業의 定義(令§9)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가) 다른 都賣業者 또는 小賣業者에게 販賣用物品을 販賣하거나 多量消費者에게 物品을 販賣하는 營業

(나) 製造業者에게 建設用原材料 副資材로 使用되는 物品을 多量으로 販賣하는 營業

(다) 建設業者에게 建設用資材로 使用되는 物品을 多量으로 販賣하는 營業

(라) 一般 또는 指名 競爭入札에 의하여 納品하는 營業(流札로 因한 隨意契約에 의하여 納品하는 경우를 包含한다)

(마) 一定期間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이에 의하여 繼續 納品하는 營業. 다만, 營業者 其他 事業者가 아닌 最終消費者에게 納品하는 경우는 除外한다.

小賣業의 定義는 都賣業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物品販賣의 營業과 注油所에 設置된

注油機를 通하여 油類를 販賣하는 營業 그리고 行商人의 營業을 小賣業으로 規定(令§10)하고 있다.

(4) 飮食·宿泊業을 新設하였다. 이는 改正前의 料理店 및 娛樂씨비스業중 料理店의 營業과 飮食店 및 其他씨비스業중 飮食店의 營業 및 宿泊의 營業을 統合하여 獨立된 業態로 課稅하게 되었다. 이중 大衆飮食店에 대하여는 甲의 稅率(2.5%)을 適用토록 하고 其他의 飮食·宿泊業에 대하여는 乙의 稅率(3.5%)을 適用토록 하였다.

(5) 그리고 서어비스業을 新設하였다. 이는 改正前의 料理店 및 娛樂씨어비스業중 娛樂씨어비스業에 該當하는 部分과 飮食店 및 其他씨어비스業중 其他씨어비스業에 該當하는 部分 및 沐浴湯 및 理髮·美容業을 合쳐서 서어비스業으로 課稅하게 되었다. 이중 沐浴湯 및 理髮·美容業에 대하여는 甲의 稅率(1.5%)을 適用토록하고 其他의 서어비스業에 대하여는 乙의 稅率(3.5%)을 適用토록 하였다.

나. 大衆飮食店의 範圍(令 §53)

稅率 適用에 있어서 飮食·宿泊業중 甲의 稅率(2.5%)을 適用받는 大衆飮食店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1) 飮食店의 營業으로서 1人1回의 食事代金이 250원 以下의 食事類만을 販賣하는 營業

(2) 酒店의 營業으로서 술값을 除外하고 1器皿의 按酒 값이 250원 以下의 酒肴만을 販賣하는 營業. 다만 麥酒·淸酒·果實酒·銘藥酒·위스키·브랜듸 또는 再製酒만을 主로 販賣하는 營業은 除外한다.

(3) (1)과 (2)를 兼營하는 營業

다. 法人格 없는 團體에 대한 課稅(法 §5)

法人格 없는 社團, 財團, 其他 團體에 대하여는 그 社團, 財團, 其他 團體를 改正前에는 個人으로 보고 課稅하여 왔으나 改正後에는 法人으로 보고 課稅토록 하였다. 國稅基本法 第13條에서도 法人格 없는 社團, 財團, 其他 團體에 대하여는 法人으로 보아 課稅토록 規定하고 있다.

라. 營業承繼者에 대한 課稅(法 第 §8)

營業의 承繼는 營業場마다 種目別로 그 營業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 包括的으로 承繼한 경우에 前營業者에 대한 營業稅로서 承繼日 現在 賦課하지 아니 하였거나 承繼日이 屬하는 課稅期間分의 營業稅를 現營業者에게 모두 賦課하게 되어 있으나, 改正稅法은 이를 前營業者가 承繼日까지의 課稅期間分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納付할 수 있도록 하는 反面, 이와같이 申告納付한 경우에는 現營業者에게 賦課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綜合所得稅制의 實施와 關聯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稅額決定에 있어서 이미 先行하여 決定된 營業稅 課稅標準을 아무런 內容分析이나 檢討함이 없이 그대로 引用하여 決定하는 弊端에서 오는 不合理한 稅負擔을 事前에 除去하여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위한 것이다.

2. 非課稅 및 免除營業의 追加와 免稅點 및 稅額控除制의 擴大

가. 非課稅營業의 追加(法 §9)

改 正 前	改 正 後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市郡組合이 經營하는 營業	① 左 同
② 政府가 發行하는 印紙·郵票類의 販賣業과 官報의 發賣代行業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印紙·證紙 또는 郵票類를 販賣하는 營業과 官報의 發賣代行業
③ 公衆電話의 營業	③ 左 同
④ 營業場을 特設하지 아니하고 自己의 生産物을 販賣하는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	④ 左 同
⑤ 定期刊行物의 發行과 圖書出版의 營業	⑤ 左 同
⑥ (新 設)	⑥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 鑛物을 採掘하는 鑛産業
⑦ 放送法의 適用을 받는 放送業	⑦ 左 同

(1)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鑛物을 採掘하는 鑛産業에 대하여는 非課稅營業에 追加하였는바 이는 國內賦存資源의 開發을 支援하기 위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鑛物이라 함은 鑛業法上 主要鑛種에 該當하는 鑛物로서 鐵, 銅, 鉛, 亞鉛, 텅그스텐, 高嶺土, 滑石, 金, 銀, 모리브덴, 石炭, 黑鉛, 蒼鉛, 망간, 螢石, 蠟石, 石灰石, 核分裂原料 등 18個鑛物이다. 다만, 여기서 注意할 것은 鑛業權者가 德大로부터 分鐵料로서 鑛物로 받아 販賣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록 上記 18個 鑛物에 該當하고 鑛産業으로 課稅될지라도 自己가 採掘한 鑛物이 아니기 때문에 그 鑛業權者가 分鐵料로서 鑛物로 받아 販賣하는 部分에 대하여는 非課稅되지 아니한다.

(2)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證紙를 販賣하는 營業에 대하여도 政府가 發行하는 印紙를 販賣하는 營業과 마찬가지로 非課稅토록 하였다.

(3) 非課稅 營業에 대한 區分經理

非課稅 營業과 그 以外의 營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非課稅營業에 該當하는 部分과 그 以外의 部分에 該當하는 部分을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나. 免除營業의 追加(法 §10)

改 正 前	改 正 後
① 外國航行의 營業	① 左 同
② 外貨를 獲得하는 輸出, 軍納, 用役 및 觀光의 營業	② 左 同
③ 其他外貨獲得營業	③ 左 同
㉮ (新 設)	㉮ 國際下都給業
㉯ (新 設)	㉯ 韓·美行政協定(SOFA)에 의하여 駐韓美國軍에 物品을 納品하거나 用役을 提供하고 一般銀行의 非住居者 원貨計定을 通하여 원貨로 取得하는 營業

(1) 우리나라의 機械製作業者가 借款資金 또는 外國人投資資金에 의한 國內工場施設의 都給을 받은 外國의 建設用役業者와의 直接下都給契約에 의하여 그 國內工場施設用機械 器具 또는 設備物을 製作하여 이를 國內에서 直接納品하거나 設置하여 주고 그 物

品代金 또는 用役對價를 外國換銀行에서 外換證書 또는 원貨로 取得하는 營業 卽 國際下都給業에 대하여는 營業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2) SOFA(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美國軍(公認된 調達 機關을 包含한다)에 物品을 納品하거나 用役을 提供하고 우리나라 銀行의 非居住者 원貨計定을 通하여 원貨로 支給받는 경우에도 外貨獲得營業으로 보아 營業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3) 免除申請에 있어서 保稅貨加工業·輸出品貨加工業 및 輸出品生產業體가 輸出物品의 代金 또는 加工料를 自己名義로 外國換銀行에서 外換證書 또는 원貨로 取得한 때에는 輸出船(機)積完了證明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免除點의 引上(法 §51)

改 正 前	改 正 後
① 定期分算出稅額 2,000원 未滿	① 定期分算出稅額 5,000원 未滿
② 中間豫納算出稅額 2,000원 未滿	② 中間豫納算出稅額 5,000원 未滿
③ (新 設)	③ 納稅組合의 徵收稅額 50원 未滿
④ 去來源泉徵收에 있어서 去來件當 2,000원 未滿	④ 去來源泉徵收에 있어서 去來處別로 1月間의 去來金額의 合計額이 20,000원 未滿

위와 같이 零細商工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免除點을 引上하는 同時에 源泉徵收忌避 및 課稅資料分散 防止를 위하여 源泉徵收의 課稅最低限을 縮小 調整하였다.

라. 記帳에 대한 稅額控除制의 擴大(法 §27)

改　　正　　前	改　　正　　後
① 日記帳義務者에 대하여 記帳金額에 相當하는 算出稅額의 10%를 定期分算出稅額에서 控除	① 左　　同
② (新　　設)	② 簡易帳簿義務者에 대하여도 記帳金額에 相當하는 算出稅額의 10%를 定期分算出稅額에서 控除

위와 같이 營業者로 하여금 誠實하게 帳簿를 備置·記帳하도록 하기 위하여 記帳稅額控除를 簡易帳簿義務者에게까지 擴大하였다.

3. 認定課稅의 縮小

가. 申告決定(法 §33·§33의 2, 令 §70·§70의 2)

(1) 年間收入金額이 1,500万원(保管, 代理, 仲介, 委託賣買·運送周旋 및 都給의 營業등은 400万원) 以下인 者(法人除外)로서 自動賦課率 以上으로 課稅標準을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政府가 稅務調査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한 課稅標準을 그대로 認定하여 받아드리게 된다.

(2) 또한 年間收入金額이 1,500万원을 超過하는 者(法人除外)로서 自動賦課率 以上으로 申告한 者가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의 確認을 받은 調整計算書를 添附하여 課稅標準을 申告한때에도 政府가 稅務調査를 하지 아니하고 그 申告에 依하여 決定하게 된다. 調整計算書는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가 그 營業者의 當該課稅期間分의 帳簿 및 證憑書類를 監査하고 그 內容을 調整計算書(課稅標準調査書를 添附한다)에 依하여 作成하고 그 記載內容에 대하여 正當하다고 確認(署名捺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綠色申告者에 있어서는 改正前과 다름없이 그 申告한 課稅標準을 書面調査 決定받게 된다.

(3) 위에서 "年間收入金額"이라 함은 正常的으로 營業을 1年以上(當該課稅期間 終了日로부터 遡及하여 最小限 1年間을 뜻함) 繼續 營爲한 者에 대한 直前期의 課稅標準으로 決定된 金額의 合計額을 말한다. 따라서 營業稅에 있어서는 課稅期間이 6月이기 때문에 750万원(保管, 代理, 仲介, 委託賣買·運送周旋 및 都給의 營業등은 200万원)을 基準으로 하게 된다.

(4) 위에서 "自動賦課率"이라 함은 前期에 對하여 收益이 增加된 率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國稅廳에 設置될 所得標準率 審議會에서 業種別·地域別로 生産指數·物價指數·經濟成長率 等의 經濟指數를 勘案하여 合理的으로 定할 가장 標準이 되는 收益增加率을 말한다. 따라서 自動賦課率 以上으로 申告한 者라 함은 直前期의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에 自動賦課率을 곱한 金額 以上으로 當該 課稅期間分의 課稅標準金額을 申告한 者를 말한다.

申告決定 對象者(製造·都賣·小賣等)의 例를 들면 75年 第1期分의 課稅標準을 申告함에 있어서 74年6月 以前에 開業하여 一年間 正常的으로 營業을 繼續하였고 74年 第2期分의 決定된 課稅標準金額이 500万원이고 國稅廳長이 定한 自動賦課率이 10%였다고 假定할 때 75年 第1期分 課稅標準金額을 550万원

(500万원 $\times \frac{110}{100}$) 以上으로 申告하는 경우에는 申告決定 받을 수 있으며 그 申告한 金額이 바로 75年 第1期分의 課稅標準金額으로 確定되는 것이다.

(5) 이 경우에 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도 申告決定을 받을 수 있으나 記帳에 대한 稅額控除(10%)의 惠澤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帳簿를 備置·記帳한 者가 그 記帳狀況을 記載한 帳簿記帳事項明細書(別添)를 提出하는 경우에는 帳簿確認調査없이도 記帳稅額控除의 惠澤을 받게 된다.

나. 實地調査決定(法 §34, 令 §70의 3)

申告決定 및 書面調査決定의 對象者가 아닌 者로서 備置·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課稅標準을 調査決定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른바 認定課稅를 하지 아니하고 그 營業者에 대한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가 實地調査決定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課稅標準의 申告有無를 不問하고 帳簿나 證憑書類를 갖추었으면 實地調査가 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帳簿나 證憑書類를 完備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實地調査決定을 하게 된다.

(1) 未備한 帳簿와 證憑書類에서 漏落된 金額을 申告金額에 加算하여 確定申告를 한 때

(2) 國稅廳長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正直 記帳者인 때

(3) 綠色申告者가 租稅犯處罰法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때 또는 綠色申告者의 資格이 取消된 때

다. 推計調査決定(法 §35, 令 §77)

申告決定·書面調査決定 및 實地調査決定할 수 없는 明白한 客觀的 事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課稅標準을 推計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改正稅法에 있어서는 政府의 調査決定權限을 大幅 縮小하였다.

〔별지 제44호서식〕

장 부 기 장 사 항 명 세 서

기장의무	일기장의무자		간 이 장 부 의 무 자								
장부명	일 기 장		현금출납장			매출또는수입장			매 입 장		
구 분 / 월 별	매출액	매입액	수입	지출	잔액	현금매출	외상매출	계	현금매입	외상매입	계
월											
월											
월											
월											
월											
월											
계											

영업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 )장부에 의한 기장사항이 상기와 같음을 영업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영업자 납세번호

영업장소재지

상 호(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세 무 서 장 귀하

※ 매월말의 기장사항에 의한 그 달의 합계금액을 기재하십시오

2206-02-800

74.12.23 승인

(268㎜×190㎜(신문용지 54g/㎡)

4. 記帳義務의 緩和(法 §14)

帳簿種類	營業名	年間外形	
		改正前	改正後
複式記帳義務者	法人;모든法人		
	個人;①保營業, 代理·仲介·委託賣買·運送周旋·都給	年間收入 2千萬원 以上인 者	年間收入 5千萬원 以上인 者
	②上記 以外의 營業	年間收入 8千萬원 以上인 者	年間收益 2億원 以上인 者
簡易帳簿義務者	個人;①保管業·代理·仲介·委託賣買·運送周旋·都給	年間收入 9百萬원 以上인 者	年間收入 1千5百萬원 以上인 者
	②上記 以外의 營業	年間收入 4千萬원 以上인 者	年間收入 6千萬원 以上인 者
日記帳義務者	個人:上記複式 또는 簡易帳簿義務者 以外의 者		

가. 法人에 있어서는 改正前이나 다름없이 모든 法人이 複式簿記에 의한 帳簿의 備置·記帳義務가 있으며

나. 個人에 있어서는 帳簿備置記帳義務의 限度額을 大幅 引上하여 그 義務를 緩和하였는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 또는 簡易帳簿 日記帳義務者를 營業稅法에서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所得稅法解說을 參照하기 바란다.

5. 指定源泉徵收制度의 擴大(法 §3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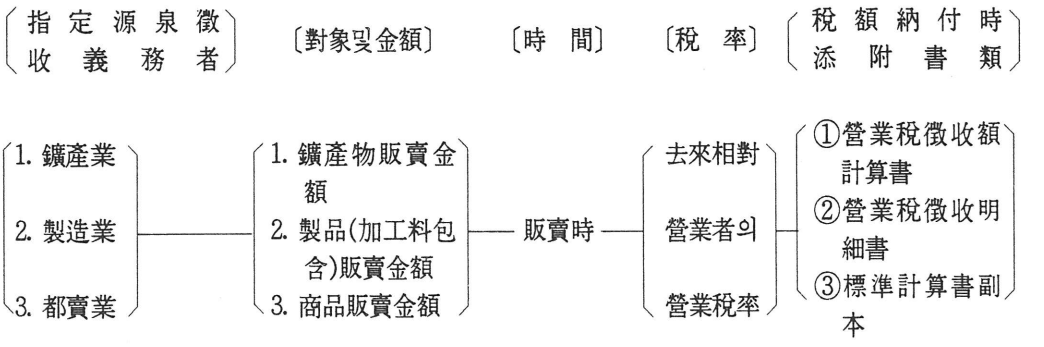

※ 源泉徵收한 稅額은 翌月10일까지 納付하여야 하며, 不履行時에는 源泉徵收 納付不誠實加算稅로서 稅額의 5%에 相當하는 加算稅를 徵收한다.

가. 指定源泉徵收義務의 對象者 및 源泉徵收時期

鑛産業, 製造業 및 都賣業을 하는 者로서 所管稅務署長이 그 鑛産業·製造業 또는 都賣業에 대하여 營業稅의 源泉徵收義務者로 指定한 때에 비로소 指定源泉徵收義務가 發生하기 때문에 그 所管稅務署長이 指定源泉徵收義務者指定書에 의하여 通知하게 되며 그 通知를 받은 者는 通知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物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한 것에 대하여는 그 去來金額에 對하여 營業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所得稅나 法人稅는 源泉徵收 하지 아니한다)

新規로 鑛産·製造 또는 都賣業을 開始한 者가 自進하여 源泉徵收를 하고자 할 때에는 所管稅務署長에게 源泉徵收義務指定申請書(別添)를 提出하고, 그 申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源泉徵收를 할 수 있다.

나. 源泉徵收의 對象 稅額 및 時期

指定源泉徵收義務者는 鑛物·製品 또는 商品을 去來相對方營業者에게 販賣한 때에는 그 物品代金에 대하여 去來相對者의 營業名(業態)에 의한 營業稅率를 곱하여 計算한 營業稅額을 그 物品을 販賣한 때에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物品稅·織物類稅·酒稅·石油類稅 등의

間接稅納稅義務者가 物品을 販賣할때의 그 物品代金의 計算은 當該 間接稅額을 加算한 것을 物品代金으로 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다.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營業稅를 源泉徵收한 때에는 標準計算書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 및 物品代金을 領收(請求)하였다는 事實을 記載하여 去來相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그리고 源泉徵收稅額의 納付는 그 金額과 함께 營業稅徵收額計算書, 營業稅徵收明細書 및 標準計算書副本을 添附하여 그 徵收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當該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所管稅務署 또는 韓國銀行 및 그 代理店, 遞信官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라.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와 罰金등

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徵收한 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할 稅額의 5%를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徵收하게 되며 또한 租稅犯處罰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마. 源泉徵收의 免除등

(1) 다음에 적혀있는 營業과 金額에 대하여는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 營業稅法에서 規定하는 非課稅營業

㉯ 營業稅法에서 規定하는 免除營業

㉰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稅가 全額 免除되는 營業

(2) 商工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하여 指定한 슈퍼체인法人(加盟店鋪를 包含한다)이나 生活必需品販賣業者에게 物品을 販賣할 때에는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에 營業者가 所管稅務署長으로부터 實需要者證明書를 發給받아 指定源泉徵收義務者에게 提出한 때에는 그 實需要物品에 대하여는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 買入者가 自己의 固定資產施設에 直接 使用할 目的으로 買入하는 物品

㉯ 最終消費者가 直接 消費할 目的으로 買入하는 物品(原材料와 副材料를 除外한다)

㉰ 非課稅營業者 또는 免除營業者가 그 營業收益을 얻기 위하여 買入하는 物品(原材料·副材料 및 燃料를 包含한다)

바. 源泉徵收義務者의 取消(變更)申請 및 承繼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鑛產業·製造業 또는 都賣業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承繼 또는 業種을 變更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日內에 所管稅務署長에게 指定源泉徵收義務者 取消(變更)申請書(別添)를 提出하여 源泉徵收義務者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또는 再指定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營業을 承繼받은 者가 同 申請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源泉徵收義務도 自動的으로 承繼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4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신청서</td><td>처 리 기 간
즉 시</td></tr>
<tr><td rowspan="6">신

청

인</td><td>①영 업 자 납 세 번 호</td><td></td><td>②납 세 번 호</td><td></td></tr>
<tr><td>③주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④영 업 장 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⑤상 호</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⑥성 명
(법인은 대표자)</td><td></td><td>⑦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은 대표자)</td><td></td></tr>
<tr><td>⑧영 업 명</td><td>업</td><td>⑨종 목</td><td></td></tr>
<tr><td colspan="5">영업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고자 동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없음</td><td>수 입 인 지
없 음</td></tr>
</table>

2206-02-77E
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42호 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취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영업자납세번호		②납세번호	
	③주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④영업장소재지			
	⑤상호		(전화번호)	
	⑥성명 (법인은 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	
	⑧영업명	업	⑨종목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세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해제(변경)을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입인지 없음

2206-02-78E
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54g/m³

사. 源泉徵收의 課稅最低限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함에 있어서 去來處別로 1月間의 販賣金額의 合計額이 2萬원 未滿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營業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販賣金額이 2萬원 未滿이 되어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同一한 달에 追後 去來를 함으로써 그 合計額이 2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去來處別로 1月間의 2萬원 未滿의 去來金額을 合計하여 그 金額에 대하여 한 묶에 源泉徵收를 하여도 된다.

아. 其　　他

指定源泉徵收義務者가 代理店 또는 委託賣買契約에 의하여 自己의 物品을 販賣하게 하는 경우 그 代理店 또는 委託賣買의 委任을 받은 者의 行爲는 授權 또는 委任의 範圍안에서 그 指定源泉徵收義務者의 行爲로 보도록 되어 있다. 卽, 그 代理店 또는 受託賣買業者가 指定源泉徵收義務者를 대신하여 物品을 販賣할 때 源泉徵收하여 納付하여야 하며, 만일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部分에 대하여 指定源泉徵收義務者에게 그 部分에 相當하는 營業稅와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를 國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徵收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改正前에는 法定源泉徵收義務者였던 輸入業者 및 輸入委託者와 指定源泉徵收義務者였던 公演場經營者 및 屠畜場經營者를 特別源泉徵收義務者로 그 分類를 달리하였으며 物品販賣時의 源泉徵收時期를 現金主義에서 發生主義로 轉換한 것 이외의 其他事項은 終前과 同一하다.

6. 標準計算書制度(法 §55의2, 令 §109)

가. 標準計算書의 作成 및 交付義務者;모든 營業者

나. 標準計算書의 作成時期;

(1) 物品을 販賣한 때

(2) 物品을 引渡한 때

(3) 用役의 提供을 完了한 때이다.

따라서 外上으로 판매한 후 그 代金의 領收時에는 標準計算書를 作成 交付하여서는 안된다.

다. 作成 및 交付要領

(1) 위와 같이 營業者가 去來時마다 標準計算書 4枚를 複寫로 作成하여 去來相對者에게 2枚를 交付하여야 하며 이를 去來雙方이 各各 1枚를 證憑書類로서 保管하고 1枚는 販賣報告書 또는 支給報告書에 갈음하여 所管稅務署長에게 翌月末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2) 이 경우에 指定源泉徵收義務者는 標準計算書에 源泉徵收稅額을 적어서 相對方 去來者에게 줌으로써 源泉徵收領收證에 갈음한다.

(3) 標準計算書의 作成·交付·保管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은 國稅廳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라. 罰　　則

(1) 標準計算書의 作成交付義務不履行에 따른 營業稅法上의 加算稅規定은 없으나

(2) 租稅犯處罰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 또는 事實을 隱匿한 者에 대하여는 秩序犯으로서 5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별지 제43호서식(갑)〕 (적색)

표준계산서(정본 ; 발행자보관용)

일련번호 □□-□□□□□ 책번호 책 호 발행일자 년 월 일

판매자	영업자납세번호	□□□-□□-□□□□□	구입자	영업자납세번호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상호및성명	㊞		상호및성명	

품목(규격)	수량	단가	금액 ㉮	영업세 ㉯ 세율	영업세 ㉯ 세액	소득세(법인) ㉰	적요
			※				
계							

합계금액 (㉮+㉯+㉰) (㉱+㉲+㉳+㉴)	원	현금 ㉱	원	수표 ㉲	원	어음 ㉳	원
		외상미수금 ㉴	원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① 이 계산서는 물품판매시(외상판매포함)마다 4매복사를 선명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기분은 서손하여 보관하여야 함.

② 일련번호란은 월별 및 월별발행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원천세액의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그어야 함.

③ 2건이상의 거래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반드시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함.

2206-02-79(4-1)A
74.12.23 승인

190㎜×134㎜(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3호서식(을)〕 (청색)

제출구분	표준계산서(정본 ; 구입자보고용)

일련번호 □□-□□□□□ 책번호 권 호 발행일자 년 월 일

판매자		구입자	
영업자납세번호	□□□-□□-□□□□□	영업자납세번호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상호및성명	㊞	상호및성명	㊞

품목(규격)	수량	단가	금액 ㉮	영업세 ㉯ 세율	영업세 ㉯ 세액	소득(법인)세 ㉰	적요
			※				
계							

합계금액 (㉮+㉯+㉰) (㉱+㉲+㉳+㉴)	원	현금 ㉱	원	수표 ㉲	원	어음 ㉳	원
		외상미수금 ㉴	원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불명자료	재확인	사유	주무	과장	서장	불명확정	사유	주무	과장	서장

2206-02-79(4-2)A
74.12.23 승인

190㎜×134㎜(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3호서식(병)〕 (청색)

표준계산서(부본 ; 구입자보관용)

일련번호 □□-□□□□□ 책번호 권 호 발행일자 년 월 일

판매자	영업자납세번호	□□□-□□-□□□□□	구입자	영업자납세번호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상호및성명	㊞		상호및성명	㊞

품목(규격)	수량	단가	금액 ㉮	영업세 ㉯ 세율	영업세 ㉯ 세액	소득(법인)세 ㉰	적요
			※				
계							

합계금액 (㉮+㉯+㉰) (㉱+㉲+㉳+㉴)		현금 ㉱	원	수표 ㉲	원	어음 ㉳	원
	원	외상미수금 ㉴	원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① 이 계산서는 물품구입시(외상구입포함)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2매(보고용 및 보관용)를 교부받아야 함.

② 보고용은 물품구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206-02-79(4-3)A
74.12.23 승인

190㎜×134㎜(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3호서식(정)〕 (적색)

제출구분	표준계산서(부본 ; 발행자보고용)			
	일련번호 □□-□□□□□	책번호 권 호	발행일자 년 월 일	

판매자		구입자	
영업자납세번호	□□□-□□-□□□□□	영업자납세번호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상호 및 성명	㊞

품목(규격)	수량	단가	금액 ㉮	영업세 ㉯ 세율	영업세 ㉯ 세액	소득(법인)세 ㉰	적요
			※				
계							

합계금액 (㉮+㉯+㉰) (㉱+㉲+㉳+㉴)	원	현금 ㉱	원	수표 ㉲	원	어음 ㉳	원
		외상미수금 ㉴	원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불명자료 재확인	사유	주무	과장	서장	불명확인	사유	주무	과장	서장

2206-02-79(4-4)A
74.12.23 승인

190mm×134mm(인쇄용지특급 50g/m²)

標準計算書·資料報告 및 去來源泉徵收制度圖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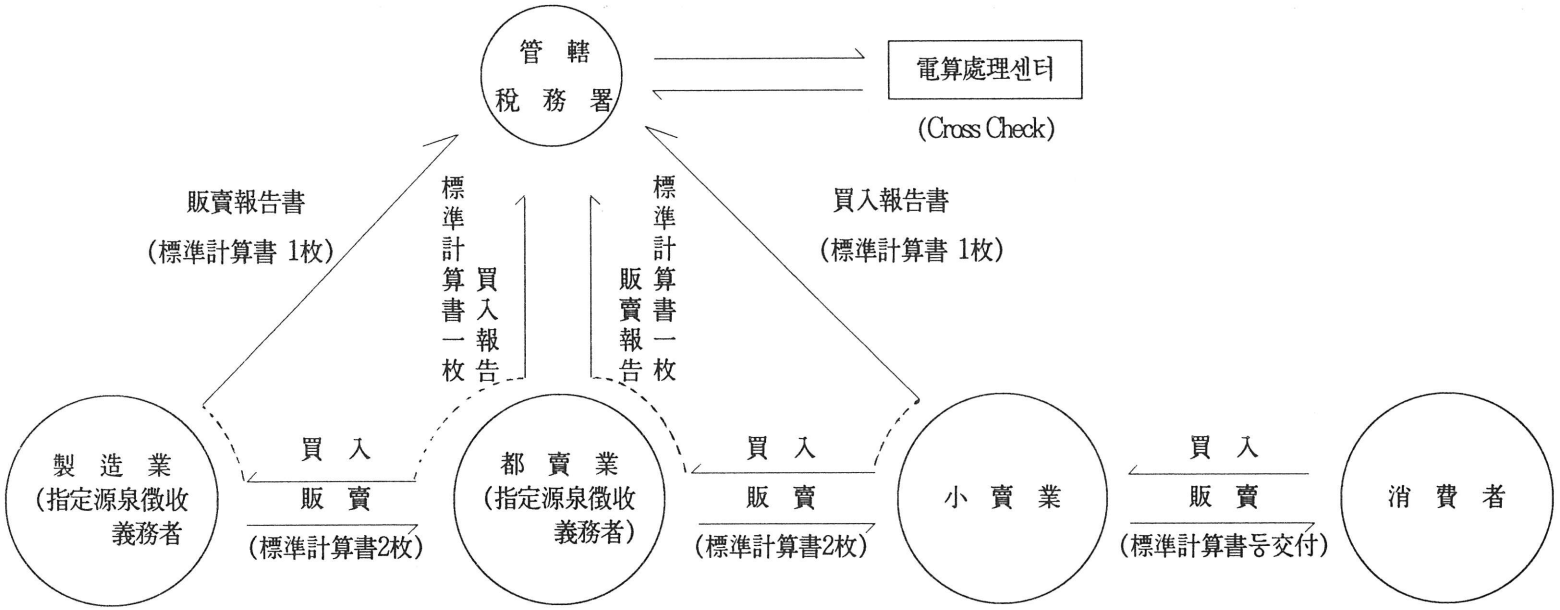

標準計算書交付義務(營業稅法)	資料報告義務(所得稅法 및 法人稅法)	去來源泉徵收義務(營業稅法)	備　　考
對象者;모든 營業者 加算稅;없　음	對象者;① 모든 法人 ② 個人으로서 複式簿記義務者 加算稅;不明資料 및 報告書未提出 加算稅 ① 法人;去來金額 3% ② 個人;　〃　　1.5%	對象者;鑛產·製造 및 都賣業者 加算稅;源泉徵收納付不誠實 加算稅 源泉徵收納付할 稅額의 5%	① 源泉徵收義務 履行으로 資料報告義務에 갈음 ② 源泉徵收領收證 및 資料報告書 提出은 標準計算書의 提出로 갈음.

7. 營業者納稅番號 制度(法 §15)

가. 現行 營業鑑札의 申請·交付·檢閱 및 確認等의 節次面에 있어서는 現行과 마찬가지이나 新規로 營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도 開業에 必要한 營業場施設을 위하여 所要期間이 20日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施設에 着手한 날로부터 20日內에 營業者登錄(別添 營業稅納稅者登錄申請書 參照)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여 營業者納稅番號證을 交付받아 營業準備活動期間中에도 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나. 稅務署長은 課稅資料의 效率的인 處理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營業者納稅番號에 準하는 固有番號를 賦與하여 이를 去來時마다 使用케 하여 去來安定에도 寄與토록 하였다.

(1) 源泉徵收義務者로서 營業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者

(2) 所得稅法에 의한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營業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者

〔별지 제8호서식〕

영 업 세 납 세 자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주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납세번호		
	③성 명 (법인은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19 년 월 일
참고사항	⑥영업장소유자의 주소·성명					
	⑦영 업 장	자가 타가		전세 원		월세 원
	⑧자 금	자본금 원		자기자본 원		타인자본 원
	⑨거 래 처	주요매입처		주요매출처		거래은행
	⑩기 타	전화번호		시설		개업전직업

신 청 내 용			
⑪영업장소재지			
⑫상 호			
⑬성 명 (법인은 대표자)		⑭개업년월일	
⑮영 업 명	업	⑯종목	
⑰교부사유		⑱종전의 영업자납세번호	
⑲영업자의 주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⑳본 영 업 장 소 재 지			
㉑세대주 성 명		㉒영업자와의관계	
㉑세대주 주 소			

영업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납세자등록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개인;주민등록표 등본1통 2.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허가증사본1통 ※ 납세번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206—02—44E
74.12.23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영 업 장 약 도	주 소 지 약 도
	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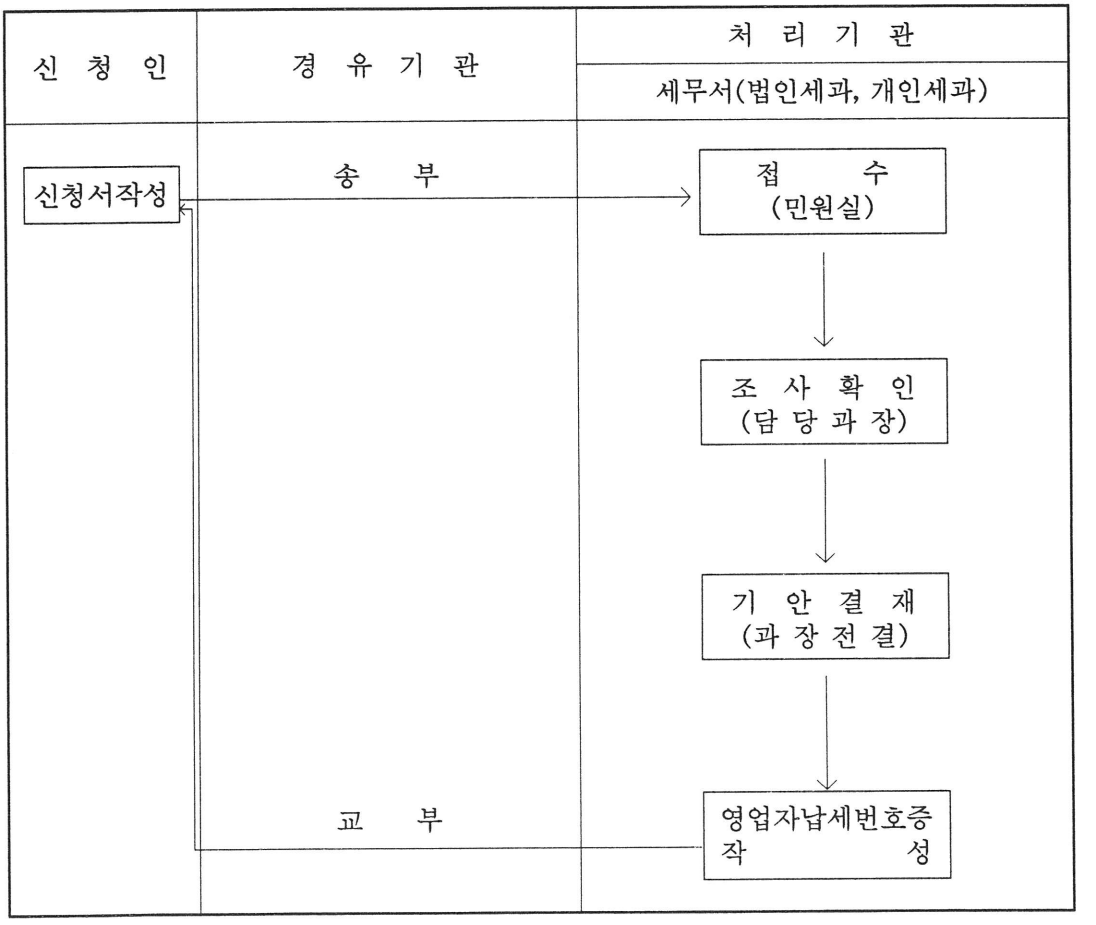

75년도

防衛稅法 制定

머 리 말

國民의 至大한 關心 속에 國會에서 審議 通過된 防衛稅法이 1975년 7月 16日字로 公布 施行되었읍니다.

最近의 韓國을 에워싼 周邊情勢의 深刻性, 이로 因한 앞으로의 韓國의 安全保障의 絶對性은 우리 온 國民이 아무리 크게 받아 들여도 不足한 것이며, 따라서 防衛稅法이 意圖하는 目的과 또한 이 法 制定의 現實的 必要性은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나 共鳴共感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防衛稅는 1980年 末까지의 時限的 國稅이지만 우리나라 稅制史에 있어서 國難을 克服하려는 防衛誠金的 性格을 가진 租稅로서 國民總力安保를 위한 劃期的인 立法임이 틀림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防衛稅의 納付로 因하여 생기게 될 多少의 負擔을 堪耐하고 우리의 生存權 保護와 國家의 安全을 위한 國防力增強에 必要한 國防費自立의 聖스러운 隊列에 參與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防衛稅法은 이 法 新設의 趣旨에 立脚하여 올바르게 執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먼저 防衛稅法의 內容을 全 國民이 소상히 알고 그 執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元來 稅法은 難解한 것이며, 특히 防衛稅는 課稅의 對象이 廣範圍하여 그 內容을 理解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國民 여러분의 理解를 돕고자 조그만 冊子를 마련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防衛稅法을 올바르게 理解하려는 國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防衛稅가 지니고 있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5年 7月

財務部長官 金 龍 煥

目　　次

Ⅰ. 防衛稅法의 目的 및 必要性 …… 119

Ⅱ. 防衛稅法의 基本方向 …… 119
1. 國民皆納의 原則 …… 119
2. 應能負擔의 原則 …… 120
3. 免稅所得과 免稅輸入物品에 對한 課稅 …… 120
4. 防衛稅는 國稅 …… 120
5. 防衛稅法은 時限法 …… 120

Ⅲ. 防衛稅法의 內容 …… 121
1. 納稅義務者 …… 121
2. 非課稅 …… 124
3. 課稅標準과 稅率 …… 126
4. 申告·納付와 賦課·徵收 …… 130
5. 中間豫納 …… 131
6. 源泉徵收와 特別徵收等 …… 131
7. 加算稅 …… 133
8. 國庫納入 …… 133
9. 還給 …… 133
10. 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 134
11. 犯則 …… 134
12. 他法과의 關係 …… 134
13. 施行 …… 135

Ⅰ. 防衛稅法의 目的 및 必要性

防衛稅法의 目的은 國土防衛를 爲하여 國防力을 增強하는데 必要한 財源을 調達하는 데 있다.

越南의 赤化는 韓國도 같은 分斷國이며 가장 好戰的인 北傀와 對峙하고 있다는 點에서 一大 衝擊的 事件이 아닐 수 없다.

休戰以來 各種 最新兵器의 導入等 再侵準備에 狂奔하여온 北傀가 印度支那事態에 鼓舞되어 또다시 全面的 또는 局地戰을 挑發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世界의 輿論이고 向後의 南北關係로 因하여 世界의 耳目이 韓半島에 集中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狀況에 處하여 自主國防의 기틀을 마련하기 爲해서는 國防力增強에 必要한 自主國防 體制의 確立이 時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GNP 對比 國防費規模는 4% 內外로서 他國에 比較할때 顯著히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戰爭의 危險이 없거나 덜한 나라들도 自國의 安全을 爲해서는 우리보다도 높은 水準의 國防費를 負擔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國防費 自立度 向上을 爲한 努力이 未洽하였고 뿐만아니라 一部 援助에 의하여 充當되어오던 國防費는 漸減되거나 有償으로 轉換되고있어 自立的인 國防費調達策講究가 切實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防衛稅는 이러한 狀況을 考慮하여 國土防衛를 爲한 보다 效率的인 國防費 自立策으로서 國家財政에서 約 30%의 比重을 차지하는 國防費의 壓力을 解消하고 한편으로는 國防費의 增加로 因한 經濟開發의 萎縮을 避하면서 自立國防態勢의 確立에 必要한 財源確保의 機能을 하게 될 것이다.

Ⅱ. 防衛稅法의 基本方向

1. 國民皆納의 原則

國家防衛는 全國民이 團結하여 參與할 때에만 可能하며 어느 一部階層의 힘만으로는 安保를 爲한 國民總和에 未洽함을 勘案하여 全國民이 多少라도 負擔하게 하였다.

2. 應能負擔의 原則

防衛稅를 負擔함에 있어서 現行 累進稅率構造의 所得稅體系와 多段階差等稅率構造인 消費稅體系에 다시 差等의 防衛稅 稅率을 適用함으로써 租稅本來의 應能負擔原則이 擴大되도록하여 高所得 및 奢侈性 消費行爲에 대하여는 重課되도록 하였다.

3. 免稅所得과 免稅輸入物品에 대한 課稅

國民皆納의 精神에 立脚하여 稅法이나 租稅減免規制法等에 依하여 國家政策的 支援으로 免稅되는 경우에도 極히 限定된 範圍(輸出用 原材料 및 外貨導入法에 의한 免稅資本財等)內에서의 非課稅를 許容하는 以外에는 全免稅所得과 輸入品에 대하여 課稅하도록 하였다.

4. 防衛稅는 國防力 增強이라는 國家活動을 爲한 것이므로 國稅로 하였다.

5. 防衛稅法은 時限法으로 하였다.

防衛稅는 國防力 增強을 爲한 財源確保에 目的이 있으므로 이러한 目的의 達成에 必要한 一定期間 동안만 施行하도록 하였다.

Ⅲ. 防衛稅法의 內容

1. 納稅義務者

防衛稅의 納稅義務者는 防衛稅가 所得稅, 法人稅, 物品稅 等 一般稅法에 依하여 納付하는 稅金에 附加되는 境遇에는 그 稅金의 納稅者가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되고, 例外的으로 商業廣告, 田·畓·林野의 所有等 獨立된 課稅對象에 賦課되는 경우에는 商業廣告를 하는 營業者, 田·畓·林野의 所有者를 納稅義務者로 하고 있다.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納稅義務者의 區分

(1) 關稅法의 規定에 依한 關稅의 納稅義務者는 輸入物品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2) 所得稅法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所得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데 이 경우 非居住者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만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居住者와 非居住者로 區分하고 있어, 國內에 住所가 있거나 一年以上 居住하게 되면 居住者가 되며 一年以上 居住한 事實이 없으면 非居住者로서 國內源泉所得에 對해서만 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非居住者는 國內源泉所得이 있으면 모두 防衛稅의 納稅義務를 지는 것이 아니고 國內에 支店, 事業場, 營業場, 營業所, 商店 等 所得稅法 第135條에 規定되어 있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者만이 防衛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3)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한 法人稅의 納稅義務者는 法人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가 있다.

法人稅法上의 納稅義務者는 國內法人과 外國法人인데 外國法人은 法人稅法 第56條에 規定하고 있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만이 防衛稅의 納稅義務가 있다.

(4)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納稅義務者는 그 稅金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5) 登錄稅法은 不動產을 登記하거나, 航空機, 自動車 等을 登錄하는 경우 登錄稅를 納付

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登錄稅 納稅義務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6) 酒稅法은 모든 酒類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를 納稅義務者로 規定하고 있다, 酒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는 酒稅法上의 酒稅納稅義務者이다. 다만, 濁酒는 防衛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므로 濁酒製造者는 酒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는 지지 아니한다.

(7) 物品稅法에 依하여 第1種·第2種·第4種物品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는 物品稅의 納稅義務者인 同時에 物品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8) 入場稅法에 依하여 撞球場·골프場·土耳其式湯·카지노·社交땐스場 等 第2種場所의 經營者는 入場稅의 納稅義務者인 同時에 이러한 消費行爲에 對하여 課稅되는 防衛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9) 電話稅法에 依하여 電話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電話料金에 課稅되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電話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公衆電話같은 경우에는 防衛稅도 賦課되지 아니한다.

(10) 鑛産業·製造業·電氣가스業·建設業·都賣業·小賣業·飮食宿泊業 等 營業稅法에 列擧된 營業을 營爲하는 者는 營業稅 納稅義務者이며 이러한 者가 自己營業을 爲한 商業廣告를 하게 되면 廣告料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가 있게 된다.

이 경우 商業廣告라 함은 商品·製品·用役·商號·商標 等의 宣傳을 國內에서 媒體를 通하여 行하는 것을 말하며 國外에서의 廣告는 除外된다. 商業廣告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範圍에 대하여는 防衛稅法施行令 第1條第2項에서 列擧하고 있다.

(11) 地方稅法은 모든 住民을 納稅義務者로 規定하고 있다. 均等割 住民稅는 1家口當 年間 서울은 2,000원, 釜山, 大邱 等 大都市는 1,000원, 小都市는 500원, 郡은 300원을 納付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住民稅均等割의 納稅義務者는 住民稅에 對한 防衛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均等割 住民稅가 免除되는 年間 所得이 240,000원 未滿인 경우에는 防衛稅의 納稅義務도 없다.

(12) 地方稅法에 依하여 建物이나 土地 等에 對한 財産稅를 納稅할 義務가 있는 者는 또한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財産稅는 財産所有者에게 그 財産價額의 一定率 相當額을 每年 賦課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防衛稅의 納稅義務도 發生하게 된다.

(13) 自動車에 對하여는 自動車稅가 賦課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營業用이 아닌 自家用 自動車로서 乘用自動車·小型乘用自動車·其他小型 乘用自動車에 對하여는 防衛稅가 賦課된다. 따라서 이러한 車種의 自動車稅 納稅義務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14) 地方稅法은 遊興飮食稅를 賦課함에 있어서 遊興飮食場所를 세가지로 區分하여 第1種場所는 料理店·호텔 等이고, 第2種場所는 高級飮食店, 第3種場所는 大衆飮食店으로 하고 있

다. 이중 第1種과 第2種場所에서의 遊興·飮食·宿泊에 對한 遊興飮食稅의 納稅義務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15) 競馬場에서 馬券을 사는 경우는 馬券稅額을 負擔하게 되는데 이 때 防衛稅도 같이 負擔하여야 한다. 따라서 馬券稅의 納稅義務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16) 田·畓·林野의 所有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된다. 이 경우 法人의 非業務用 資産으로서 田·畓·林野를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그 田·畓·林野에 對해서는 財産稅가 賦課되므로 財産稅 納稅義務者로서의 防衛稅 納稅義務者가 될 뿐이며, 田·畓·林野의 所有者로서의 納稅義務者는 되지 아니한다.

나. 納稅義務者와 減免關係

(1) 租稅減免規制法과의 關係

關稅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가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 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과 租稅減免規制法 第2條에 揭記하는 當該稅法이나 其他 法令 그리고 經濟의安定과成長에關한緊急命令에 依하여 關稅·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非課稅되거나 減免·控除되는 때에도 防衛稅만은 非課稅·減免·控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租稅減免規制法에 依하여 法人稅의 非課稅團體로 規定하고 있다든지, 所得이 減免된다든지 投資稅額控除 等 稅額控除를 받는다든지 하는 때에도 防衛稅의 納稅義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關稅·所得稅 또는 法人稅以外의 部分에 對한 租稅減免規制法과 當該 稅法 等에 依한 非課稅·減免·控除 等의 効果는 防衛稅에 있어서도 效力을 가지게 된다.

(2) 所得稅法上의 所得控除와 稅額控除

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防衛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 경우에 所得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하면서 勤勞所得控除·退職所得控除를 한다든지, 賞與特別控除·退職所得特別控除·讓渡所得特別控除·山林所得特別控除를 한다든지, 所得稅의 課稅標準을 計算하는 때에 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와 障害者控除를 함으로써 所得稅의 課稅標準이 없는 경우와 所得稅의 算出稅額에서 貯蓄稅額控除·住宅資金稅額控除·配當稅額控除·記帳稅額控除·勤勞所得稅額控除 等의 稅額控除를 함으로써 納付할 所得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所得稅納稅義務者로서의 防衛稅의 納稅義務도 없게 된다.

2. 非課稅

關稅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로서의 防衛稅의 納稅義務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라든지 當該 稅法과 經濟의安定과成長에關한緊急命令에 의한 非課稅·減免·控除 等이 防衛稅法에 의하여 排除되게 하는 한편 非課稅規定을 防衛稅法이 直接 두고 있다.

따라서 防衛稅法 第3條에 의하여 非課稅되는 關稅·所得稅·法人稅만이 이에 대한 防衛稅도 非課稅·減免되는 것이다.

가. 條約과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

國際間의 協約 其他 條約에 의하여 關稅·所得稅·法人稅를 非課稅·減免하는 경우에는 防衛稅도 非課稅·減免한다. 이는 國際間의 信義를 지키기 위하여 防衛稅까지도 非課稅·減免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投資比率에 의하여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으면 防衛稅도 全額 免除되는 것이며 配當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받으면 그에 대한 防衛稅도 減免받게 된다.

나. 關稅法에 의한 無稅物品과 免稅物品

關稅法에 의한 關稅의 無稅物品과 免稅物品중에서도 다음에 揭記하는 것만이 防衛稅가 非課稅된다.

(1) 外交官免稅物品·國際機構의 救護金品 또는 寄贈品·再輸出免稅物品·無條件免稅物品·特殊物品免稅品·再輸入免稅物品

(2) 肥料工場建設用 機械類 및 基礎設備 備品

(3) 郵票·銀行券·設計圖·圖案·金塊·軍用 航空機·軍艦·탱크·장갑차·軍用 銃砲彈·藝術品·其他蒐集品등

다. 所得稅法에 의한 非課稅所得과 減免

所得稅法 第5條에 規定하고 있는 非課稅所得과 同法 第6條에 規定하고 있는 減免所得중에서 防衛稅가 非課稅·減免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田·畓의 利用으로 因한 不動產所得

(2) 勤勞所得·退職所得에 대한 非課稅所得

(가) 兵이 받는 給與

(나) 被動員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다) 負傷·疾病등으로 因한 慰藉의 性質이 있는 給與

(라) 年金이나 一般退職給與

(마) 學資金

(바) 實質辨償的인 給與등

(3) 其他所得중 非課稅所得

(가) 國家有功者 補償金

(나) 反共法上 報勞金

(다) 對日民間請求權 補償金

(라) 賞勳法上 賞金·其他 一定賞金

(4) 讓渡所得중 非課稅所得

(가) 替費地로 因한 讓渡所得

(나) 國稅徵收法·破產宣告등에 의한 處分時 讓渡所得

(다) 8年以上 耕作農地의 讓渡所得

(라) 農地交換으로 因한 讓渡所得

(마) 土地收用으로 因한 讓渡所得

(바) 一世帶 1住宅의 讓渡所得등

(5) 稅額의 減免 對象 所得중

(가) 政府間의 協約에 의한 勤勞所得과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의 勤勞所得

(나) 政府에 讓渡한 資產의 讓渡所得과 工場 移轉時의 讓渡所得

라. 其他 租稅에 賦課되는 防衛稅

關稅·所得稅·法人稅 이외의 稅目에 賦課되는 防衛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나 當該稅法에 의하여 租稅가 非課稅·減免되면 防衛稅도 따라서 減免된다.

3. 課稅標準과 稅率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輸入物品의 價格, 稅額, 電話料金, 田·畓·林野의 價額등을 그 課稅標準으로 하여 0.1% 내지 30%의 稅率을 適用토록하고 있다(表1 參照).

가. 課稅標準의 計算과 稅率

(1) 輸入物品의 價格

輸入物品의 價格은 關稅法 第9條에 의한 課稅價格이나, 無換輸入物品인 경우에는 國內 都賣物價에 의한 價格을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이며 그 稅率은 2.5%이다.

(2) 所得金額

所得稅納稅義務者에 대한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所得稅法 第16條에 의한 所得稅 算出稅額에서 稅額控除를 한 金額이 된다. 이 경우에 所得金額에 防衛稅의 非課稅所得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稅額을 控除한 것을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이다. 稅率은 所得稅課稅標準이 840万원 以下는 10%, 超過時는 20%이다.

(3) 法人稅 算出稅額

法人의 防衛稅 課稅標準은 法人稅 算出稅額이 되는 것이나, 算出稅額에는 讓渡所得特別附加稅가 包含된 稅額을 말하는 것이며 法人稅算出稅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非課稅所得이 包含된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法人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年間의 各 事業年度 所得金額이 5億원 以下이면 20%, 超過하면 25%의 稅率에 의하여 防衛稅를 賦課하게 된다.

(4) 相續稅 및 贈與稅

相續稅와 贈與稅는 相續稅法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며, 그 稅率은 20%이다.

(5) 登錄稅

登錄稅는 納付하여야 할 登錄稅額이 課稅標準이 되고 稅率은 20%이다.

(6) 酒 稅

酒稅는 역시 酒稅法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酒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며 稅率은 酒精과 燒酒등은 10%, 위스키·브랜디·銘藥酒·麥酒등 高級酒는 20%이다.

(7) 物品稅

物品稅 역시 納付하여야 할 物品稅額이 課稅標準이 되는 것이며 稅率은 20%이다.

(8) 入場稅

入場稅額이 防衛稅의 課稅標準이 되며 稅率은 20%이다.

(9) 電話料金

電話稅의 賦課對象이 되는 電話料金이 防衛稅의 課稅標準이 되며 稅率은 10%이다.

(10) 商業廣告

商業廣告를 하는 경우의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商業廣告를 위하여 支給하였거나 支給할 金額으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게되며 세율은 15%이다.

(가) 라디오, 텔레비전, 新聞, 雜誌, 其他 刊行物등의 經營者, 發行人 또는 그 代行者에게 商業廣告를 위하여 支給하는 金額

(나) 廣告物의 製作者 또는 그 代行者에게 商業廣告物의 製作費(代行料를 包含한다)로서 支給하는 金額

(다) 自己가 製作하는 카렌다와 其他 商業廣告物의 製作費

(라) 商業廣告施設物의 製作費, 施設費와 그 維持費(賃借料를 包含한다)

(마) 廣告·宣傳目的으로 寄贈하는 試用品, 見品, 其他 物品의 買入原價 또는 製造原價

(바) 商號 및 商標의 宣傳廣告를 위한 費用

(사) (가) 내지 (바)와 類似한 것으로서 商業廣告를 위하여 支給하는 金額

(11) 均等割 住民税

均等割 住民税 역시 當該 稅額이 課稅標準이 되는데 그 課稅標準額과 防衛稅額은 다음과 같다.

地域別	住民税	税率	防衛税
서울	2,000원	25%	500원
50万以上都市	1,000〃	25〃	250〃
50万以下都市	500〃	10〃	50〃
郡	300〃	10〃	30〃

(12) 財産税, 自動車税, 遊興飮食税, 馬券税

地方稅法에 의하여 賦課되는 財産稅額, 自動車稅額, 遊興飮食稅額, 馬券稅額에 대하여는 20%, 自動車稅額에 대하여는 30%이다.

(13) 田・畓・林野

田・畓・林野에 대해서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評價額을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이며 稅率은 0.1%이다.

나. 非課稅・免除企業등에 대한 課稅標準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非課稅 또는 免除되는 個人이나 法人에 대하여 防衛稅를 賦課할 때에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課稅한 것으로 보고 防衛稅의 課稅標準을 計算하여야 하는 것이나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全額 非課稅 減免됨으로써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申告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者에 대한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當該 企業의 決算財務諸表上 當期純利益을 各 年度 또는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으로 보고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算出하여 이를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이다.

表 I 防衛稅의 課稅標準과 稅率

區分	對象		課稅標準	稅率(%)	納稅義務者
輸入	輸入物品		輸入物品價額	25	
奢侈性消費行爲	酒類	高級酒類(브랜디, 위스키, 맥주, 청주등)와 其他 酒類 差等課稅 濁酒除外	酒稅額	10. 高級酒 20	各稅法에 의한 當該 租稅의 納稅義務者
	入場行爲	入場稅法의 第2種(골프場, 카지노, 私交댄스場등)에 限함	入場稅額	20	
	物品	物品稅法의 第1, 2, 4種(寶石, 耐久消費材, 嗜好食料등)에 限함	物品稅額	20	
	遊興飮食行爲	地方稅法의 第1, 2種(料理店, 호텔, 高級飮食店등)에 限함	遊興飮食稅額	20	
	競馬行爲		馬券稅額	20	
財産	財産	地方稅法에 의하여 財産稅가 賦課되는 財産	財産稅額	20	
	相續	相續稅 및 贈與稅가 부과되는 相續, 贈與財産	相續稅,贈與稅額	20	
	登錄	登錄稅法上의 財産登記 및 登錄	登錄稅額	20	
	自家用乘用車	地方稅法이 規定하는 乘用自動車(小型包含)로서 非營業用의 것	自動車稅額	30	
	農地, 林野	財産稅가 賦課되지 않는 田·畓·林野(新設)	課稅時價標準額	0.1	農地林野의所有者
所得	個人所得	月70萬원以下 所得者와 超過所得者를 差等課稅	所得稅額	10. 月70萬원 超過者 20	各稅法에 依한 當該 租稅의 納稅義務者
	法人所得	年所得 5億以下者와 超過者로 差等課稅	法人稅額	20. 年所得5億 超過 25	
其他	電話使用料	電話稅法에 의한 電話稅가 賦課되는 電話使用料	電話料金	10	
	廣告行爲	營業者가 自己經營에 관하여 行하는 商業廣告(新設)	廣告料	15	廣告主
住民	住民稅均等割	人口 50萬以上 市와 其他地域의 住民에 對하여 差等課稅	均等割住民稅額	10. 人口50만 이상市 25	稅法에 依한 當該 租稅의納稅義務者

4. 申告·納付와 賦課·徵收

가. 稅額에 賦課되는 防衛稅

防衛稅의 申告·納付는 防衛稅가 賦課되는 當該 租稅의 申告·納付와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申告·納付의 義務가 없는 租稅에 賦課되는 防衛稅는 申告·納付할 義務가 없으며 告知書를 받은후 納付하면 된다.

그런데 法人稅나 所得稅를 申告·納付하는 때에 防衛稅를 같이 納付할 때에는 별도의 書式은 必要없고,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申告書式에 防衛稅額을 併記하고 그 合計額을 記載하여 納付하면 되는것이다.

防衛稅를 賦課·徵收하는 때에 告知書를 發付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별도의 防衛稅 告知書를 發付하는 것이 아니고 當該 稅額과 防衛稅額을 併記하여 그 合計額을 記載한다.

防衛稅의 賦課決定은 當該租稅의 賦課決定을 하는 때에 稅關長·稅務署長 또는 市長(서울市와 釜山市는 區廳長)·郡守가 하게된다.

나. 商業廣告에 賦課되는 防衛稅

商業廣告에 對한 防衛稅는 매월 商業廣告를 爲한 支給義務 發生分에 對한 防衛稅를 다음달 末日까지 自進申告·納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自進申告·納付書式이 定해져 있으며, 만약 自進申告를 하지아니 하였거나 不當한 申告를 한것으로 認定되면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隨時調査決定을 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商業廣告의 諸費用에 對한 支給義務發生 基準은 다음에 依하여야 한다.

(1) 라디오, 텔레비전등을 媒體로 하는 廣告는 그 放送, 放映日

(2) 新聞, 雜誌등을 媒體로 하는 廣告는 그 發行日

(3) 廣告物 또는 廣告施設物 製作을 의뢰한 경우는 그 廣告物을 引渡받은 날 또는 施設物 設置日

(4) 廣告物 또는 廣告施設物을 自己가 製作하는 경우는 製作完了 또는 設置日

(5) 廣告施設物 維持費는 支給義務 確定日

(6) 廣告物 買入時는 그 買入日

다. 防衛稅의 精算

防衛稅도 源泉徵收·中間豫納·豫定納付·自進申告·告知納付等에 依하여 納付하거나 賦課되는 것이므로 自進納付를 하거나 賦課決定을 하는 때에는 旣納付稅額을 控除하여 그 差額만을 自進申告納付 또는 告知納付하게 되는 것이다.

5. 中間豫納

所得稅와 法人稅를 中間豫納하는 때에는 防衛稅를 中間豫納하게 되는데 이 境遇 直前年度의 所得稅 課稅標準이 840万원 以下이면 中間豫納稅額의 10%, 840万원 超過이면 20%를 中間豫納하게 되며 法人稅의 直前事業年度 所得金額이 5億원 以下이면 20%, 超過면 25%의 防衛稅를 中間豫納하여야 하는 것이다.

6. 源泉徵收와 特別徵收等

가. 一般源泉徵收

個人에게 利子所得·配當所得·自由職業所得에 對한 收入金額, 勤勞所得, 退職所得 또는 其他所得을 支給하는 때와 法人에게 利子所得 또는 其他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하여 納付하게 되는데 이를 一般源泉徵收라고 한다.

防衛稅는 이와같이 一般源泉徵收의 境遇에만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 10%(所得稅 課稅標準이 年840万원 超過時 20%) 또는 法人稅額의 20%의 防衛稅를 源泉徵收하여 當該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함께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政府에 納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特別徵收와 其他徵收

遊興飮食稅를 特別徵收하는 境遇 防衛稅를 함께 徵收하여야 하며 納稅組合이 勤勞所得에 對

한 所得稅를 徵收하는 境遇 역시 防衛稅를 함께 徵收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源泉徵收인 特別源泉徵收나 法定源泉徵收의 境遇는 防衛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다. 非課稅所得의 一般源泉徵收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非課稅하는 所得으로서 一般源泉徵收 對象이 되는 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도 防衛稅만은 源泉徵收納付하여야 한다.

즉, 財政安定證券의 利子라든지 國債·公債의 利子를 支給하는 때에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하여 이에 對한 防衛稅를 源泉徵收納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경우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源泉徵收 稅率이 所得稅法 第144條 各號에 依하여 定하여진 것은 그 稅率에 의하여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을 計算하는 것이나 同規定에 稅率이 定하여져 있지 아니한 國·公債등의 利子所得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源泉徵收 稅率을 5%로 하여 防衛稅의 源泉徵收 課稅標準을 計算하여야 한다.

라. 防衛稅 源泉徵收의 少額不徵收等

防衛稅의 一般源泉徵收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一般源泉徵收 規定이 그대로 準用된다.

따라서 所得稅의 少額不徵收 部分은 防衛稅도 少額不徵收하게 되는 것이며, 所得稅의 課稅最低限에 對한 所得에 對하여는 防衛稅도 課稅하지 아니 하여야 하는 것이다.

所得稅法 第130條의 規定에 依한 課稅最低限은 分離課稅 利子所得이 6月에 18,000원 以下, 分離課稅 配當所得은 年 36,000원 以下, 其他所得은 件當 5,000원 以下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所得을 支給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하며 또한 防衛稅도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마. 源泉徵收하는 防衛稅의 稅率

法人稅를 源泉徵收하는 境遇 防衛稅의 源泉徵收는 當該稅額의 20%를 하는 것이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境遇 防衛稅의 源泉徵收는 當該稅額의 10% 또는 20%를 하게 된다.

따라서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境遇는 月勤勞所得에 對한 所得稅課稅標準을 計算하여 月 70万원 以下이면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의 10%, 月 70万원을 超過하면 20%의 稅率을 適用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그리고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其他所得 같은 것은 支給者別로 그 支給金額의 年換算額이 840万원 以下면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10%, 840万원 超過이면 20%의 稅率을 適用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하는 것이다.

7. 加 算 稅

防衛稅를 申告·納付하여야 할 者가 申告·納付를 하지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한 防衛稅額의 20%에 相當하는 加算稅를 加算하게 된다. 그러나 所得稅, 法人稅等 當該 租稅에 對한 加算稅에 對하여는 다시 防衛稅를 賦課하는 것은 아니다.

8. 國庫納入

遞信官署는 輸入郵便物에 對한 防衛稅를 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여야 하며 또한 電話料金에 對한 防衛稅도 電話稅와 함께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地方自治團體가 徵收한 防衛稅는 國稅徵收法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9. 還　　給

輸入된 輸出用 原材料에 賦課된 防衛稅는 還給하게된다. 其他 防衛稅의 過誤納金 還給은 防衛稅의 課稅標準이 된 當該 租稅의 還給節次에 따라 防衛稅도 還給하게 되는 것이다.

10. 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가. 防衛稅의 損金不算入

所得稅의 課稅標準이나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計算하는 境遇 所得稅, 法人稅 住民稅等은 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不算入되는 租稅에 賦課된 防衛稅도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할 수 없는 것이다.

나. 紙上配當 課稅所得의 計算

紙上配當 課稅所得의 計算은 法人의 留保된 所得에서 法人稅와 住民稅 및 利益準備金을 控除하고 100分의 50을 紙上配當所得으로 하는 것인데 이境遇 法人稅와 住民稅를 控除할 때에 그 控除하는 法人稅와 住民稅에 賦課된 防衛稅도 함께 控除하여 紙上配當 課稅所得을 計算하여야 하는 것이다.

11. 犯　　則

防衛稅의 逋脫犯에 對하여는 關稅法 또는 租稅犯處罰法과 同節次法이 適用된다.

12. 他法과의 關係

防衛稅는 國稅基本法上의 國稅로 보도록 하였으며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稅基本法이 適用된다.

13. 施　　行

防衛稅는 75年 7月 16日 公布되어 公布와 同時에 施行되고 있다. 防衛稅法은 1980年 12月 31日까지의 時限法으로 되어있으며 具體的 경우의 適用例는 다음表와 같다(表Ⅱ 參照).

<表 Ⅱ> 防衛稅의 適用例

區　　分	適　　用　　例
利子·配當·其他·自由職業所得에 대한 防衛稅의 源泉徵收	1975. 1. 1이후 發生한 所得으로서 施行日以後 支給하는 分부터 源泉徵收
勤勞所得·退職所得에 대한 防衛稅의 源泉徵收	1975. 8. 1이후 發生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課稅
輸入物品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輸入申告分부터 課稅
所得稅에 대한 防衛稅	75. 1. 1이후 發生한 所得分부터 課稅
法人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所得부터 課稅
中間豫納(所得稅·法人稅)	施行日 이후 納期開始日 到來分부터 課稅
相續稅·贈與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相續開始 또는 贈與하는 分부터 課稅
登錄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登錄하는 分부터 課稅
酒稅·物品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搬出·販賣 또는 輸入申告分부터 課稅
入場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이후 入場하는 分부터 課稅
電話使用料에 대한 防衛稅	1975. 8. 1이후 使用分부터 課稅
商業廣告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廣告料 支給義務 發生分부터 課稅
均等割 住民稅에 대한 防衛稅	1976. 3月 納期分부터 課稅
財産稅에 대한 防衛稅	1975. 9月 土地分 財産稅부터 課稅
自動車稅에 대한 防衛稅	1975年 3期分부터 課稅
遊興飮食稅·馬券稅에 대한 防衛稅	施行日 이후 遊興·飮食·宿泊 또는 乘馬投票券을 發賣하는 分부터 課稅
田·畓의 價額에 대한 防衛稅	1975. 9月 土地分 財産稅부터 課稅
林野의 價額에 대한 防衛稅	1976. 9月 納期分부터 課稅

76년도

간추린 改正稅法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資產再評價法
營業稅法
遊興飮食稅法
酒稅法
物品稅法 및 織物類稅法
印紙稅法
防衛稅法
租稅減免規制法
國稅基本法
租稅犯處罰法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
關稅法
附加價値稅法
特別消費稅法
附加價値稅實施에따른稅法調整에關한臨時措置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國會의 審議를 거쳐 18個 稅法을 改正 또는 制定하여 公布하였습니다.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中產層以下의 稅負擔을 輕減하였을 뿐 아니라 複雜多樣한 間接稅體系를 附加價値稅制度로 改編함으로써 稅制의 面貌를 一新시키는 劃期的인 制度의 轉換도 그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第4次 5個年計劃을 效果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많은 改革을 斷行하게 되었습니다.

稅制로 表現되는 租稅政策은 綜合的인 經濟政策의 範疇內에서 遂行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自立經濟基盤의 構築으로 先進國隊列로 발돋움하여 福祉社會를 이룩하고 80年代의 潤澤한 國民生活을 保障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租稅政策이 이러한 國家發展目的을 위해 先導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이번 稅制改革에서 政府는 勤勞者 福祉向上, 輸出增進, 技術人力開發, 企業의 健全한 育成등 國家의 重大한 懸案問題를 打開하는 것에서부터 租稅政策이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些少한 問題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를 깊이 念頭에 두었습니다.

이와같이 尨大한 內容을 包括하는 稅法은 國民生活과 企業經營에 密接한 關係가 있고 그 利害關係가 크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든 國民이 소상히 그 內容을 理解하여야만 蹉跌없는 稅政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今年 7月 1日부터 實施할 附加價値稅法에 關하여는 이 冊子以外에도 「附加價値稅法解說」이라는 別途의 仔細한 冊子를 發刊하여 國民 여러분의 便宜에 提供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改正稅法을 올바르게 理解하려는 國民 여러분의 納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번 稅法改正이 指向하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 보탬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1977年 1月 日

財務部長官 金 龍 煥

目　　次

所得稅法 …… 147

1.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 149

2. 課稅標準의 計算方法 …… 152

3. 所得控除 …… 158

4. 稅　　率 …… 159

5. 臨時投資稅額控除 …… 161

6. 中間豫納 및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 161

7. 讓渡所得 …… 163

8. 源泉徵收稅率의 調整 …… 166

9. 其他 改正事項 …… 167

法人稅法 …… 169

1. 輸出支援制度의 擴充 …… 170

2.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172

3. 公益性寄附金의 損金算入 範圍擴大 …… 173

4. 特別修繕充當金의 新設 …… 174

5. 保險差益의 非課稅範圍 擴大 …… 175

6. 公開法人 差等稅率 適用 …… 175

7. 景氣調節機能 強化 …… 176

8. 課稅標準의 計算 …… 177

9. 法人稅特別附加稅의 調整 …… 180

10.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 …… 181

相續稅法 …… 182

1. 相續稅 諸控除額引上 …… 182

2. 未成年者 控除制限 …… 183

3. 第1回 延納稅額에 대한 利子稅額徵收 …… 183

4. 公益法人事後管理에 의한 課稅時의 課稅價額 …… 184

5. 株式評價方法 改善 …… 184

6. 物納制度의 改善 …… 186

7. 其他 改正事項 …… 187

資產再評價法 …… 189

1. 非業務用資產의 再評價排除 …… 189

2. 合併時 再評價의 效力認定 …… 190

3. 再評價의 議決機關 …… 190

4.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 …… 191

5. 私立學校의 收益事業用 資產에 대한 非課稅 …… 191

6. 修正申告·審査請求에 관한 規定등의 削除 …… 191

營 業 稅 法 …… 192

1. 飮食宿泊業을 營業稅 課稅對象에서 除外 …… 192

2. 防衛産業 支援 …… 193
3. 外貨獲得免除營業의 擴大 …… 193
4.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 …… 194
5. 其　　他 …… 195

遊興飮食稅法 …… 196
1. 課稅場所의 區分 …… 196
2. 納稅義務者 …… 198
3. 課稅標準 …… 198
4. 稅　　率 …… 198
5. 課稅標準申告와 納付 …… 200
6. 免　　稅 …… 200
7. 經營者登錄 …… 200
8. 金錢登錄機의 設置 …… 201
9. 報償金의 支給 …… 201
10.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 …… 201

酒 稅 法 …… 203

物品稅法 및 織物類稅法 …… 205

印 紙 稅 法 …… 209

防 衛 稅 法 …… 215

租稅減免規制法 …… 217

1. 重要產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 …… 217

2.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 支援 …… 218

3. 人口分散政策의 支援 …… 220

4. 中小企業의 統合支援 …… 221

5. 企業의 社內職業訓練促進 …… 222

6. 海外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 …… 222

7.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 …… 222

8. 減免時限 延長 …… 223

國稅基本法 …… 224

租稅犯處罰法 …… 225

1. 逋脫犯등의 財產刑 強化 …… 225

2. 公訴時効期間의 延長 …… 227

3. 金錢登錄機設置使用義務違反 …… 227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 …… 229

關 稅 法 …… 230

1. 關稅制度 …… 231

2. 關 稅 率 …… 235

附加價値稅法 …… 243

1.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 …… 243
2. 納稅義務者 …… 247
3. 課稅期間과 納稅地 …… 247
4. 登錄 및 檢閱 …… 248
5. 零稅率適用과 免稅 …… 249
6. 課稅標準 …… 253
7. 稅　　率 …… 255
8. 稅金計算書 …… 256
9. 附加價値稅의 計算 …… 257
10. 申告와 納付 …… 259
11. 更正·徵收·還給 …… 261
12. 課稅特例 …… 263
13. 記　　帳 …… 265
14. 金錢登錄機 …… 265
15. 納稅管理人 …… 266
16. 代理納付 …… 267
17. 質問·調査 …… 267
18. 附　　則 …… 267

特別消費稅法 …… 270
1. 課稅對象과 稅率 …… 270

2. 納稅義務者 …… 274

3. 課稅時期 …… 275

4. 課稅標準 …… 276

5. 課稅標準의 申告·納付 …… 280

6. 加算稅制의 導入 …… 282

7. 未納稅 또는 免稅 …… 283

8. 稅額의 控除와 還給 …… 284

9. 權利·義務의 承繼 …… 291

10. 經過措置 …… 292

附加價値稅實施에따른稅法調整에關한臨時措置法 …… 294

1. 國稅基本法의 調整 …… 295

2.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의 調整 …… 297

3. 酒稅法의 調整 …… 299

4. 印紙稅法의 調整 …… 300

5. 防衛稅法의 調整 …… 301

6. 租稅減免規制法의 調整 …… 301

7.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의 調整 …… 302

8. 租稅犯處罰法의 調整 …… 302

9. 關稅還給特例法의 調整 …… 304

10. SOFA特例法의 調整 …… 305

所 得 稅 法

[要　約]

所得稅法은 1974年 稅制改革時 綜合所得稅制의 實施를 위하여 全面 改正한 바 있다.

綜合所得稅制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 또는 其他 所得등 여러가지 所得을 그 種類에 不拘하고 所得을 얻은 個人을 中心으로 綜合하여 累進稅率에 의하여 課稅함으로써 所得이 많은 사람에게는 相對的으로 많은 稅金을 賦課하고, 또한 個人의 人的인 事情 卽 配偶者, 扶養家族 또는 家族中에 障碍者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金額의 所得者라 하더라도 그 事情을 考慮하여 擔稅能力에 맞는 稅金을 負擔하게 하는 이른바 公平課稅 및 應能負擔의 原則을 實現할 수 있는 理想的인 制度인 것이다.

그러나 74年에 採擇된 諸控除制度는 그 後 物價의 上昇等 經濟與件이 크게 變動됨에 따라 그 調整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綜合所得稅制의 첫 施行過程에서 여러가지 問題點도 提起되어 이에 대한 補完·改善을 위하여 所得稅法을 改正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은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 低所得層 및 中產層 特히 貯蓄하는 勤勞者를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所得稅負擔을 輕減하며, 勤勞者의 福祉向上을 支援하는 한편 讓渡所得 및 資產所得에 重課함으로써 應能負擔에 의한 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을 強化하려는데 그 基本方向을 두고 있다.

<綜合所得稅>

가. 非課稅所得의 範圍를 擴大함

- ○ 輸出入金融債券의 利子
- ○ 정기간행물에 揭載하는 揷話·漫畵의 稿料
- ○ 農家副業所得
- ○ 法令·條例등에 의하 無報酬委員·會員이 받는 手當
- ○ 國外勤勞者가 받는 給與中 50만원 以下의 所得
- ○ 勤勞者가 받는 福祉厚生的인 給與

나. 課稅標準의 計算方法

- ○ 講演料·出演料등을 其他所得으로 함
- ○ 其他所得中 年 18萬원 以下의 所得에 대하여는 分離課稅함

○ 保險料控除制度를 新設함

○ 勤勞所得控除 및 賞與特別控除額을 引上함

○ 退職所得控除額을 引上함

○ 團體退職保險金을 退職所得에 包含함

다. 紙上配當에 대한 課稅를 緩和함

라. 企業貯蓄의 提高

○ 特別修繕充當金制度를 新設함

○ 保險差益의 非課稅範圍를 擴大함

마. 輸出에 대한 支援

○ 輸出損失準備金制度를 地域別로 差等化함

○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据置 및 還入期間을 延長함

○ 價格變動準備金制度를 新設함

바.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中小企業의 範圍를 擴大함

○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制度를 新設함

○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償却率을 引上함

사. 所得控除制度의 擴充

○ 諸所得控除額을 引上함

○ 扶養家族控除對象範圍를 擴大함

아. 稅率을 引下함

자. 租稅의 景氣調節機能 強化

○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함

○ 中間豫納制度를 彈力化함

차. 中間豫納對象範圍를 縮小함

카. 綜合所得稅의 納稅圓滑化

○ 中間豫納, 確定申告等의 期限을 延長調整함

○ 勤勞所得稅의 年末精算期限을 延長調整함

타. 加算稅賦課의 緩和

○ 一般源泉徵收된 所得에 대하여는 申告不誠實加算稅 適用을 排除함

파. 共同事業場에 대한 調査등의 特例 規定을 新設함

<讓渡所得>

거. 農地에 대한 課稅緩和

○ 農地의 代土에 대하여 非課稅함

○ 8年以上 耕作한 農地의 非課稅節次를 簡素化함

너. 課稅範圍의 調整

○ 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로 因하여 讓渡되는 資產에 課稅함

○ 法院의 決定에 의한 競賣로 因하여 讓渡되는 資產에 課稅함

○ 1世帶 1住宅의 경우에도 高級住宅에 대하여는 課稅함

더. 再評價한 資產의 讓渡差益計算方法을 改善함

러. 讓渡所得控除額을 引上함

<一般源泉徵收>

머. 一般源泉徵收稅率의 調整

○ 再評價無償株配當에 대한 稅率을 引上함

○ 非居住者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稅率을 引上함

1. 非課稅所得의 範圍 擴大

所得稅는 所得稅法이 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賦課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政策的인 考慮에서 一定所得은 課稅所得에서 除外하고 있으니 이를 非課稅所得이라 한다.

非課稅所得은 國家가 租稅의 賦課를 처음부터 抛棄한 所得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節次나 手續의 必要없이 課稅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課稅所得에 合算되지도 않는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와같은 非課稅所得의 範圍를 大幅으로 擴大하였다.

가. 非課稅所得

(1) 利子所得(法 第5條, 令 第5條)

改 正 前	改 正
新 設	韓國輸出入銀行이 發行하는 輸出入金融債券의 利子

(2) 事業所得(法 第5條, 令 第6條・第6條의2)

改 正 前	改 正
<新 設>	○ 新聞・通信登錄等에關한法律에 規定하는 定期刊行物에 揭載하는 挿話・漫畵의 稿料 ○ 農漁民이 副業으로 營爲하는 畜産・養魚・藁工品・其他 農業所得으로서 그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年 108萬원 以下인 所得

非課稅되는 農家副業所得에 있어서 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은 다음에 揭記하는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 農家副業的인 畜産所得에 대하여는 年 108萬원의 金額限度를 制限받지 아니하고 所得稅를 非課稅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家畜別	規 模	備 考
젖 소	7마리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育成牛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소	10 〃	〃
돼 지	50 〃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
산 양	100 〃	〃
면 양	100 〃	〃
토 끼	1,000 〃	〃
닭	1,000 〃	〃
오 리	1,000 〃	〃

(3) 勤勞所得(法 第5條, 令 第8條・第12條・第12條의12)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實費辨償的인 給與所得	○ 法令・條例등에 의하여 無報酬委員등에게 出席日數에 따라 支給하는 手當	○ 法令・條例등에 의하여 無報酬委員(學術院 및 藝術院의 會員을 包含)등에게 支給하는 手當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工場·鑛山등에서 肉體勤勞에 從事하는 者가 不定期的으로 받는 食事·飮食物代金	○ 削除(福祉厚生的인 給與所得으로 非課稅)
國外勤勞所得	○ 國外에서 勤勞를 提供하고 月 50萬원 以下의 給與를 받는 者의 給與所得	○ 國外勤勞所得에서 月 50萬원을 控除함
福祉厚生的인 性質의 給與所得	○ 新　設	○ 月給與額이 3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받는 福祉厚生的인 給與 ① 勤勞者가 子女敎育費補助金으로 받는 臨時給與 ② 勤勞者 또는 그 配偶者와 扶養家族의 醫療費補助金으로 받는 臨時給與 ③ 勤勞者가 鑛山村·島嶼·僻地등에 勤務함으로 因하여 받는 僻地手當 ④ 勤勞者가 延長時間勤勞·休日勤務로 因하여 받는 食事·飮食物代金 ⑤ 肉體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받는 食事·飮食物代金 ⑥ 鑛山에서 肉體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받는 現物給與 ⑦ 勤勞者가 有給休暇에 갈음하여 받는 給與

나. 減免所得(法 第6條)

畜産物에 대한 稅額減免規定을 削除하였으나 이는 租稅減免規制法上의 重要減免制度에 의하여 畜産物을 繼續 支援하고자 하는 것이다.(租稅減免規制法篇 參照)

2. 課稅標準의 計算方法

課稅標準이란 稅額을 計算하기 위하여 稅率을 適用할 所得金額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번 改正에서는 勤勞所得控除額 및 賞與特別控除額을 引上하고, 保險料控除를 新設하였으며 分離課稅할 수 있는 其他所得의 範圍를 定하였다. 또한 事業所得이나 不動產所得의 必要經費의 範圍를 擴大하고 減價償却費의 計算方法을 補完·改善하였다.

가. 綜合所得 課稅標準의 計算

{ 利子所得金額
配當所得金額
不動產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事業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勤勞所得收入金額－(保險料控除＋勤勞所得控除＋賞與特別控除)
其他所得收入金額－必要經費 }

의 合計額－所得控除 {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障害者控除 } ＝ 綜合所得 課稅標準

綜合所得課稅標準은 위와 같은 算式에 의하여 計算되며 이번 改正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事業所得 및 其他所得의 範圍調整(法 第20條·25條, 令 第38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事業所得	○ 雇傭關係없는 者가 多數人에게 講演을 하고 그 對價로 받는 講演料	○ 削除(其他所得으로 課稅)
	○ 라디오·텔레비젼 放送등을 통하여 解說·啓蒙 또는 演技를 行하는 者의 演技의 審査員등이 받는 謝禮金	○ 削除(其他所得으로 課稅)

(2) 分離課稅其他所得의 範圍調整(法 第15條)

其他所得으로서 그 金額이 年 18萬원 以下인 所得은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하지 아니하고 納稅者의 選擇에 따라 分離課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卽, 年 18萬원 以下의 其他所得이 있는 者는 所得發生時에 25%의 源泉徵收稅額을 納付함으로써 納稅義務는 完結되는 것이다. 그러나 當該所得者가 源泉徵收당한 其他所得을 綜合所得으로 課稅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所得을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確定申告를 하면 된다.

(3) 勤勞所得控除 및 賞與特別控除의 引上(法 第21條·第61條 令 第116條)

勤勞所得은 勤勞를 提供한 對價로 받는 俸給·賃金·手當·歲費 其他 보너스등을 말한다.

이러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그 給與의 合計額에서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또한 그 給與額에 賞與가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賞與特別控除를 하고 남은 金額이 勤勞所得金額이 된다.

이번 改正에서는 勤勞者의 稅負擔을 輕減하여 生活安定을 圖謀하고자 勤勞所得控除額 및 賞與特別控除額을 大幅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勤勞所得控除	年18萬원(月 15千원)	年 30萬원(月 25千원)
賞與特別控除	200%, 年 14萬원	400%, 年 36萬원
日傭勤勞者에 對한 勤勞所得控除	日 4,700원	日 6,000원

(4) 保險料控除의 新設(法 第61條의2, 令 第116條의2)

이번 改正에서 勤勞者 特히 貯蓄하는 勤勞者를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保險料控除制度가 新設되었다.

이는 月定給與額이 3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醫療保險에 加入하고 支給하는 醫療保險料는 그 全額을, 生命保險·傷害保險등의 人保險으로서 그 契約期間이 3年 以上인 保險에 加入하고 支給하는 保險料는 年 12萬원을 限度로 하여 給與額에서 控除하여 주는 制度이다.

이 保險料控除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控除를 받을 給料를 支給받는 날(乙種勤勞所得稅納稅組合員인 경우에는 納稅組合이 所得稅를 徵收하는 날)까지 保險會社가 發行하는 保險加入의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 예컨대 保險證書寫本등을 一般源泉徵收義務者(納稅組合)에게 提出하면 된다.

保險料控除를 위하여는 每月마다 保險料納入證明書의 提出을 要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勤勞者에게 많은 不便을 줄 것이므로 一般源泉徵收義務者(納稅組合)가 每月分의 稅額을 徵收함에 있어서는 保險加入의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에 의하여 保險料控除를 하도록 하고, 12月分의 給料支給時 卽 年末精算時에 當該勤勞者로 하여금 保險會社가 發行하는 保險料納入證明書를 단 한번 提出케 함으로써 保險料控除의 節次를 簡素化할 수 있도록 措置하고 있다.

特히 醫療保險에 있어서는 當該勤勞者에 갈음하여 保險會社가 保險料納入證明書等의 書類를 提出할 수 있는 特例規定을 두고 있으며 또한 納稅組合에 加入되어 있지 아니한 乙種勤勞所得者는 課稅標準確定申告時에 保險會社가 發行하는 保險料納入證明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添附하여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함으로써 保險料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事業所得·不動產所得의 必要經費範圍 擴大(令 第60條) (令 第85條·第85條의2·第85條의3)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福祉厚生費	○ 新 設	○ 使用者가 負擔하는 退職保險料 ○ 使用者가 負擔하는 醫療保險料·其他 負擔金 ○ 醫療機關이 새마을診療券등에 의하여 行하는 無料診療의 價額 ○ 家族計劃事業支援費
減價償却費 ①計劃方法 ②卽時償却의 擬制 ③機能的 減價償却	○ 間接法에 의함이 原則임 ○ 去來單位 2萬원 未滿의 少額資產의 卽時償却認定 ○ 新 設	○ 直接法 및 間接法을 不問함 ○ 去來單位 5萬원 未滿의 少額資產의 卽時償却認定 ○ 施設의 改替 또는 技術의 落後로 因하여 固定資產을 廢棄한 경우에는 當該資產의 帳簿價額과 殘存價額의 差額의 範圍안에서 當該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

나. 退職所得課稅標準의 計算(法 第22條·第62條)

團體退職保險金에 대하여는 이를 退職所得에 包含되도록 하였다. 團體退職保險金은 從業員의 退職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制度로서 契約 및 保險料의 負擔은 企業主가 하되 保險金의 收益者는 退職하는 從業員이 되는 保險으로서 이는 相續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 課稅對象이 되는 것이나 事實上에 있어서는 退職金과 같은 것이므로 團體退職保險金에 대하여는 贈與稅의 課稅를 排除하고 退職所得에 包含課稅하도록 함으로써 50%의 退職所得特別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退職所得控除額 18萬원을 30萬원으로 引上하였다.

다. 紙上配當課稅의 緩和(法 第26條第2項, 令 第51條)

紙上配當所得은 非公開法人의 留保所得中 一部를 株主·社員·其他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보고 所得稅를 賦課하도록 한 配當所得金額을 말한다. 이러한 紙上配當課稅制度는 非公開法人이 그 利益을 留保만 하고 配當을 忌避함으로써 그 株主의 稅負擔을 적게 하려는 傾向이 있으므로 綜合所得稅制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不可避하게 採擇된 制度이다. 이번 改正에서는 企業貯蓄의 提高와 綜合所得稅制의 實效性確保라는 兩面을 調和코자 첫째로, 對象法人을 縮小하여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中에 있는 法人 및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은 除外하였으며 둘째로, 課稅所得의 範圍를 크게 완화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留保所得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서 ○ 移越缺損金 ○ 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賞與·退職給與 ○ 追加決定에 의한 法人稅額과 住民稅額 ○ 法人稅法에 의한 社外流出處分額을 控除한 金額	法人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서 ○ 移越缺損金 ○ 利益準備金 ○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에 의한 企業合理化積立金 ○ 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賞與·退職給與 ○ 法人稅額과 住民稅額(追加決定에 의한 法人稅額과 住民稅額 包含) ○ 法人稅法에 의한 社外流出處分額을 控除한 金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紙上配當	留保所得에서 ○ 法人稅額과 住民稅額 ○ 利益準備金 ○ (留保所得－法人稅와 住民稅－利益準備金)×$\frac{50}{100}$ 을 控除한 金額	法人의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에서 ○ 法人稅額과 住民稅額 ○ 利益準備金 ○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에 의한 企業合理化 積立金 ○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法人稅＋住民稅＋利益準備金)]×$\frac{60}{100}$ 을 控除한 金額을 留保所得이 超過하는 경우 그 超過 金額

改正된 紙上配當의 計算方法은 76年 1月 1日 以後 決算을 確定하는 分부터 適用되는 것으로서 改正內容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정전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事　例>

① 當該事業年度의 所得	1,000萬원
② 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賞與	200萬원
③ 留保所得(①－②)	800萬원
④ 法人稅(①×40%)	400萬원
⑤ 防衛稅(④×20%)	80萬원
⑥ 住民稅(④×5%)	20萬원
⑦ 利益準備金	50萬원
⑧ 企業合理化積立金	10萬원

<計 算 例>

① 改正前

㉮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賞與＝留保所得

1,000 － 200 ＝ 800

㈏ 留保所得 − [法人税 / 防衛税 / 住民税 / 利益準備金] − (留保所得 − [法人税 / 防衛税 / 住民税 / 利益準備金]) ×50%＝紙上配當

800 − [400 / 80 / 20 / 50] − (800 − [400 / 80 / 20 / 50]) × 50% = 125

② 改正後

㈎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賞與− [法人税 / 防衛税 / 住民税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積立金] = 留保所得

1,000 − 200 − [400 / 80 / 20 / 50 / 10] = 240

㈏ 留保所得 −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 − [法人税 / 防衛税 / 住民税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積立金])

−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 − [法人税 / 防衛税 / 住民税 / 利益準備金]) × 60% = 紙上配當

240 − (1,000 − [400 / 80 / 20 / 50 / 10]) − (1,000 − [400 / 80 / 20 / 50]) × 60% = 70

440 270

170

라. 諸充當金 및 準備金등 必要經費 算入範圍의 擴大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企業貯蓄의 提高를 支援하고 輸出產業에 대한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諸充當金 및 準備金의 範圍를 大幅 擴大하였다.(具體的인 內容은 法人稅法篇 參照)

(1) 特別修繕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規定 新設(法 第33條의3, 令 第65條의2)

(2) 輸出損失準備金의 必要經費計算規定 改正(法 第35條, 令 第69條)

(3)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必要經費計算規定 改正(法 第36條)

(4) 價格變動準備金의 必要經費計算規定 新設(法 第37條의2, 令 第71條의2)

(5)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의 必要經費計算規定 新設(法 第37條의3, 令 第71條의3)

(6) 保險差益金에 의한 固定資產取得의 경우 必要經費 計算規定 改正(法 第38條)

(7) 寄附金의 必要經費 不算入規定 改正(法 第49條)

(8) 特別償却率의 引上 및 特別償却對象이 되는 中小企業의 基準擴大(令 第92條)

(9) 公課金의 範圍 改正(令 第100條)

(10) 外貨債權·債務의 評價損益規定 改正(令 第110條)

3. 所得控除(法 第62條 내지 第65條)

所得控除의 種類로는 所得이 있는 者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基礎控除와 配偶者 또는 其他 扶養家族의 有無나 그 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등이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中產層 및 低所得層의 稅負擔 輕減을 위하여 所得控除額을 引上 調整하였다. 또한 改正前 稅法에서는 事實上 扶養하고 있으면서도 控除惠澤을 받을 수 없었던 配偶者의 父母(事實上 扶養하고 있는 丈人·丈母 및 媤父母) 別居父母 및 事業上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도 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直系尊屬에 대한 扶養家族控除에 있어서도 直系尊屬이 女子인 때에는 從前의 對象年齡 60歲 以上을 55歲 以上으로 引下하여 控除對象者를 擴大하였다.

그러나 子女控除는 3人에서 2人으로 줄여졌다. 이는 人口政策의 一環으로 "아들·딸 區別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우리의 바램을 稅法에 담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子女控除의 制限은 새 稅法의 施行後인 1977年 1月 1日 以後에 出生하는 세째 子女부터만 그 惠澤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미 出生한 세째 子女나 더욱이 1974年 以前에 出生한

자녀는 네째던, 다섯째던 그 數를 制限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控除惠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以上의 所得控除額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區分	改正前		改正	
	月	年	月	年
	원	원	원	원
基礎控除	15,000	180,000	20,000	240,000
配偶者控除	10,000	120,000	15,000	180,000
扶養家族控除	10,000	120,000	改正前과 같음	改正前과 같음
障害者控除	10,000	120,000	〃	〃

4. 稅　　率(法 第70條)

所得稅의 稅率은 讓渡所得에 대한 稅率만 다르고 綜合所得·退職所得·山林所得은 모두 같은 稅率 卽 基本稅率에 의하여 所得稅가 課稅된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讓渡所得을 除外한 모든 所得에 對하여 稅率이 適用되는 所得階級區分을 上向調整함으로써 稅率이 引下되도록 하였다.

改正前		改正	
課稅標準	稅率	課稅標準	稅率
	%		%
24万원 以下	8	42万원 以下	8
24万원 超過	10	42万원 超過	10
48 〃	12	84 〃	12
72 〃	15	126 〃	15
96 〃	18	168 〃	18
120 〃	21	210 〃	21
150 〃	25	252 〃	25
180 〃	30	312 〃	30

改正前		改正	
課稅標準	稅率	課稅標準	稅率
	%		%
240万원 超過	35	384万원 超過	35
300 〃	40	480 〃	40
480 〃	45	720 〃	45
720 〃	50	960 〃	50
1,200 〃	55	1,440 〃	55
2,400 〃	60	2,880 〃	60
3,600 〃	65	4,320 〃	65
4,800 〃	70	5,760 〃	70

稅率引下에 따른 稅負擔의 輕減을 이미 說明한 勤勞所得控除 및 所得控除와 關聯하여 보면 改正前 所得稅法에서는 5人 家族基準으로 볼 때 勤勞者가 月 90,000원을 받는 경우 人的控除額은 70,000원으로서 課稅所得은 20,000원이 되어 所得稅의 最低稅率 8%를 適用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改正稅法에서는 月 125,000원을 받는 勤勞者가 引上된 人的控除額 90,000万원을 控除받고도 남는 課稅對象所得 月 35,000원에 대하여 8%의 最低稅率이 適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人的控除額의 引上과 稅率의 引下에 따른 複合作用으로 低所得層에 대한 稅負擔은 다음과 같이 大幅的으로 輕減되게 된 것이다.

月所得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원	%	원	%	원	%
9万원	1,600	1.8	—	—	1,600	100.0
10 〃	2,600	2.6	800	0.8	1,800	69.2
15 〃	9,000	6.0	5,300	3.5	3,700	41.1
20 〃	19,100	9.5	11,250	5.6	7,850	41.1
25 〃	33,100	13.2	19,350	7.7	13,750	41.5
30 〃	49,600	16.5	29,400	9.8	20,200	40.7
40 〃	88,600	22.1	56,900	14.2	31,700	35.8
50 〃	130,100	26.0	91,900	18.4	38,200	29.4
70 〃	221,600	31.7	172,400	24.6	49,200	22.2
100 〃	371,600	37.2	312,900	31.3	58,700	15.8

5. 臨時投資稅額控除(法 第78條의2)

景氣의 沈滯나 不況時에 減稅로서 投資를 支援함으로써 景氣의 浮揚을 促進하기 위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不況등 特定한 時期에 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額의 8%(國產機資材에 의한 投資의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投資를 完了한 날이 屬하는 年度의 所得稅에서 控除하는 制度이다.

6. 中間豫納 및 課稅標準確定申告 決定

가. 中間豫納(法 第83條 내지 第84條, 令 第135條·第137條)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는 年度中에 두번의 中間豫納稅額을 納付하게 되는데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中間豫納制度에 대한 部分的인 改正을 함으로써 制度的인 改善을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中間豫納對象 除外者	<新 設>	○ 勤勞所得, 其他所得, 利子所得, 配當所得, 接待婦, 댄서등의 自由職業所得, 募集手當·集金手當등의 自由職業所得, 著作者가 著作權의 使用料로서 받는 金品, 校正·飜譯·打字등의 對價로서 받는 金品만이 있는 者와 隨時賦課하는 事業所得과 不動產所得만이 있는 者
納期의 延長稅額	○ 第1期分 : 9月30日	○ 第1期分 : 10月31日
通知期限의 延長	○ 第1期分 : 9月 1日~9月15日	○ 第1期分 : 10月1日~10月15日
中間豫納稅額의 彈力化	○ 新 設	○ 景氣調節機能의 一環으로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中間豫納基準額의 範圍안에서 中間豫納稅額을 彈力化할 수 있도록 함
中間豫納推計額 申告期限의 延長	○ 第1期分 : 5月31日까지 ○ 第2期分 : 9月30日까지	○ 第1期分 : 8月1日~8月31日까지 ○ 第2期分 : 10月1日~10月31日까지

나.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1)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期限의 調整(法 第100條·第116條·第128條·第131條)

納稅 및 稅務行政의 便宜와 課稅의 適正을 期하기 위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 및 決定期限을 延長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	○ 翌年 2月末	○ 翌年 4月末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期限	○ 翌年 5月31日	○ 翌年 7月31日까지
稅額의 通知	○ 翌年 6月1日~6月15日	○ 翌年 8月1日~8月16日
稅額의 徵收	○ 翌年 6月16日~6月30日	○ 翌年 8月17日~8月31日

(2) 綠色申告의 基準(法 第108條, 令 第155條)

不動產所得·事業所得·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綠色申告資格을 承認받은 者는 綠色의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고 綠色申告者로서의 여러가지 稅制上의 惠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綠色申告者의 承認要件을 緩和하여 改正前에는 居住者 單位로 綠色資格을 承認하던 것을 所得別 卽 不動產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別로 綠色資格을 承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加算稅의 適用緩和(法 第122條)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納稅義務者가 所得金額을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實地所得金額보다 적게 申告한 때에는 誠實申告를 促求하기 위하여 一定額의 加算稅를 賦課하고 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所得金額中 所得稅가 一般源泉徵收된 所得金額에 대하여는 이를 申告에 漏落한 경우에도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改正前 稅法에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얼마간의 自由職業所得이나 其他所得이 있는 경우 稅法의 內容을 잘 알지 못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年末精算에 의하여 이미 納付한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 全額에 대하여 申告不誠實加算稅가 賦課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 源泉徵收納付된 勤勞所得等에 대하여는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4) 共同事業場에 대한 調査特例(法 第133條, 令 第184條의 2)

여러사람이 共同으로 出資하여 事業을 經營하는 경우에 改正前에는 所得金額의 調査決定 및 納稅管理에 많은 隘路點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共同事業場에 대하여 特別한 規定을 둠으로써 納稅와 調査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하였다.

(가) 共同事業場을 하나의 事業者로 보아 共同事業場別로 所得金額을 調査決定하고 帳簿備置記帳業務를 賦與하여 納稅番號를 따로 賦課하도록 하였으며

(나) 所得金額의 調査決定의 管轄은 共同事業者 가운데에서 損益分配의 比率이 가장 큰 代表共同事業者(比率이 같은 경우에는 代表者로 選任된 者)의 住所地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후 다른 共同事業者의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通報하도록 하였으며

(다) 所得金額 또는 加算稅는 各自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比率에 의하여 配分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7. 讓渡所得

가. 課稅對象範圍의 調整(法 第5條, 令 第14條)

資產所得에 대한 重課政策에 따라 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範圍를 縮小하고 1世帶1住宅이라

할지라도 高級住宅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課稅하도록 하는 한편 農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農地의 代土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全面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非課稅所得	○ 國稅徵收法에 의한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 削　　除
	○ 法院의 決定에 의한 競賣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 削　　除
	○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現物出資함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現物出資하는 資產中 業務用 資產
	○ 新　　設	○ 1世帶1住宅인 경우에도 高級住宅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課稅
	○ 新　　設	○ 耕作上 必要에 의하여 代土하는 農地로서 從前農地의 讓渡日로부터 1年內에 새로운 農地를 取得하고(從前農地의 讓渡前에 다른 農地를 取得한 때에는 다른 農地의 取得日로부터 1年內에 從前農地를 讓渡한 때) 새로이 取得하는 農地의 面積이 讓渡한 農地의 面積以上이거나 새로이 取得하는 農地의 價額이 讓渡하는 農地價額의 50% 以上인 때

나. 課稅標準의 計算(法 第23條·第45條)

讓渡所得의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 讓渡差益=讓渡價額-必要經費

○ 讓渡所得金額=讓渡差益-(讓渡所得特別控除+讓渡所得控除)

○ 讓渡所得課稅標準=讓渡所得金額-所得控除

이번 稅法改正에서도 課稅標準의 計算方法은 從前과 同一하나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產의 取得時期와 取得價額의 計算方法을 改正하고 讓渡所得控除額을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再評價資產의 取得時期	○ 再評價日	○ 當初取得日
再評價資產의 取得價額	○ 再評價額	○ 原始取得價額
讓渡所得控除額	○ 年 70萬원	○ 年 90萬원

다. 高級住宅에 대한 課稅

(1) 高級住宅의 基準(法 第5條, 令 第15條)

(가) 住宅의 延面積이 100坪以上이고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延面積이 200坪以上으로서 그 讓渡價額의 合計額이 5,000萬원이상인 住宅

(나) 住宅의 延面積이 100坪以上으로서 그 讓渡價額의 合計額이 5,000萬원이상인 아파트

(2) 讓渡所得의 計算方法(法 第23條, 令 第46條의 2)

高級住宅이라 하여 讓渡所得全額에 대하여 課稅하는 것은 아니며 讓渡價額 5,000萬원까지는 1世帶1住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讓渡差益 및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의 計算에 있어서 一般資產을 讓渡한 경우와 같이 計算한 讓渡差益 및 讓渡所得特別控除額에서 1世帶1住宅에 該當하는 5,000萬원이 차지하는 比率部分을 控除하고 남는 部分에 대하여서만 이를 課稅所得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高級住宅中 住宅部分에 대한 讓渡差益計算

$$\text{一般資產의 讓渡差益} \times \left\{(5{,}000\text{萬원} \times \frac{\text{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價額}}{\text{土地와 建物의 讓渡價額의 合計額}}) \div \text{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價額}\right\}$$

○ 高級住宅中 住宅部分에 대한 讓渡所得特別控除額計算

$$\text{一般資產의 特別控除額} \times \left\{(5{,}000\text{萬원} \times \frac{\text{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價額}}{\text{土地와 建物의 讓渡價額의 合計額}}) \div \text{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價額}\right\}$$

<事　例>

區　分	建　物	土　地	備　考
取得價額	2,000萬원	4,000萬원	
讓渡價額	4,000萬원	7,000萬원	
保有期間	2年	2年	特別控除率 40%

<計 算 例>

區　分	建 物	土 地	備　考
	萬원	萬원	
① 讓渡價額	4,000	7,000	
② 取得價額	2,000	4,000	
③ 讓渡差益	2,000	3,000	讓渡差益(①－②)
④ 住宅部分差減	909	1,369	建物 : $2{,}000\times[(5{,}000\times\frac{4{,}000}{11{,}000})\div4{,}000]=909$ 土地 : $3{,}000\times[(5{,}000\div\frac{7{,}000}{11{,}000})\div7{,}000]=1{,}369$
⑤ 高級住宅의 讓渡差益	1,010	1,631	③－④
⑥ 特別控除額	800	1,600	一般資產의 特別控除額(②$\times\frac{40}{100}$)
⑦ 住宅部分差減	364	726	建物 : $800\times[(5{,}000\times\frac{4{,}000}{11{,}000})\div4{,}000]=364$ 土地 : $1{,}600\times[(5{,}000\times\frac{7{,}000}{11{,}000})\div7{,}000]=726$
⑧ 高級住宅의 特別控除額	436	874	(⑥－⑦)
⑨ 讓渡所得控除	34	56	(90萬원을 建物과 土地에 按分)
⑩ 讓渡所得金額	540	701	[⑤－(⑧+⑨)]

8. 源泉徵收稅率의 調整(法 第144條・第178條)

法人의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無償株配當에 대하여 稅率을 引上하고, 綜合所得에

合算課稅하던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가 發行하는 債權證書의 利子에 대하여 稅率을 引下함과 同時에 分離課稅하도록 하였으며, 外國人의 國內人的用役所得, 예컨대 職業的인 運動選手들이 받는 所得에 대한 稅率을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再評價積立金의 無償株 配當	上場法人의 少額株主 : 5%	10%
	上場法人의 大株主 : 10%	25%
	其他法人의 모든 株主 : 10%	25%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가 發行하는 債務證書의 利子	25% 合算課稅	10% 分離課稅
外國人의 國內 人的用役所得	10%	20%

9. 其　他

가. 總收入金額의 調査決定方法(令 第159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總收入金額의 推計調査決定 方法	○ 新　設	○ 記帳이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同業者의 權衡에 의하여 計算하는 方法 ○ 事業種別로 事業效率을 適用하여 計算하는 方法 ○ 業種別 生産收率을 適用하여 計算하는 方法 ○ 業種別 元單位投入量·費用의 關係比率·商品回轉率 또는 賣買總利益率을 適用하여 計算하는 方法

나. 勤勞所得 年末精算(法 第149條)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는 當該年度의 12月分의 給料를 支給하는 때에는 法 第152條의 規定에 따라 當該所得者의 所得稅를 年末精算, 源泉徵收納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分의 給料를 支給함에 있어서 事務

形便上 年末精算을 完結하지 못한 때에는 12月分의 給料에 대한 稅額은 簡易稅額表에 의하여 源泉徵收納付한 뒤 다음해 1月分의 給料를 支給하는 날까지 年末精算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徵稅事務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하였다.

다.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法 第188條의2, 令 第225條의2)

小賣業·飮食宿泊業 및 서비스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國稅廳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所在地 稅務署長이 指定하는 자는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하여야 하며, 金錢登錄機에 의하여 領收證을 交付하고 감사테이프를 稅法에 의한 賣出帳 또는 收入帳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收益認識基準을 現金主義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改正稅法의 施行과 適用(附則)

改正所得稅法은 1977年 1月 1日以後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나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徵收 및 一般源泉徵收된 稅額에 대하여 無申告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는 規定 및 年間所得金額이 18萬원 以下인 分離課稅其他所得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 排除規定은 1976年에 發生한 所得으로서 1977年 1月 1日以後 申告하는 分에 대하여도 適用되도록 經過規定을 두고 있다.

法 人 稅 法

[要 約]

輸出産業에 대한 稅法上 支援을 強化하여 輸出의 增大를 期하고 競爭力이 相對的으로 脆弱한 中小企業을 保護育成하는 한편 企業의 內部蓄積을 提高함으로써 그 健全한 育成과 經營의 合理化를 圖謀하여 企業의 公開를 促進함으로써 株式 所有의 大衆化를 擴大시키고 租稅의 景氣調節機能을 補強하여 稅制를 彈力化함으로써 景氣의 安定과 經濟의 持續的인 發展을 指向하기 爲하여 法人稅法을 改正한 것이며 이는 1977年 1月 1日以後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였다.

가. 輸出에 對한 支援

- ○ 輸出損失準備金을 地域別로 差等化함
- ○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据置 및 還入期間을 延長함
- ○ 價格變動準備金制度를 新設함

나.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 中小企業의 範圍를 擴大함
- ○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 制度를 新設함
- ○ 中小企業에 對한 特別償却率을 引上함

다. 企業貯蓄의 提高

- ○ 特別修繕充當金制度를 新設함
- ○ 保險差益의 非課稅範圍를 擴大함

라. 企業公開 促進

- ○ 公開法人에 對하여 差等稅率을 適用토록 함

마. 租稅의 景氣調節機能을 強化함

- ○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를 採擇함
- ○ 中間豫納制度를 彈力化함

1. 輸出支援制度의 擴充

가. 輸出損失準備金(法 第12條의4, 令 第17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算 入 率	外貨收入金額의 1%, 輸出 또는 觀光所得의 50%中 적은 金額	商工部長官이 告示한 國家別·地域別 輸出實績이 10%에 未達하는 地域에 輸出한 경우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한 金額
据 置	2 年	從前과 같음
還 入	3 年	〃

輸出損失準備金을 現在까지는 當該事業年度의 輸出事業에서 獲得한 外貨收入金額의 100分의 1 또는 所得金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중 적은 金額을 設定할 수 있었으나, 商工部長官이 告示한 地域別, 國家別 輸出實績이 總輸出實績의 10%에 未達하는 國家 또는 地域에 대한 輸出에는 當該 輸出額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加算하여 輸出損失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海外投資損失準備金(法 第12條의5)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算 入 率	事業年度 終了日 現在의 海外投資額의 10%	從前과 같음
据 置	2 年	3 年
還 入	3 年	4 年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限度는 從前과 같으나 据置期間과 還入期間을 各各 1年間 延長하도록 하였다.

다. 價格變動準備金(法 第12條의7, 令 第17條의7)

輸出事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輸出商品의 海外市場價格의 變動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價格變動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價格變動準備金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1) 適用對象

(가) 輸出 및 軍納業
(나) 輸出品生産業
(다) 國際競爭入札納品業

(2) 範　　圍

事業年度末 現在의 在庫資産中 輸出商品·製品·半製品의 帳簿價額의 5%에 相當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한다. 이때의 在庫資産에는

(가) 信用狀이 到來한 것
(나) 國際競爭入札에서 落札된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3) 還　　入

價格變動準備金을 設定한 경우에는 다음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여야 한다.

(4) 申　　告

價格變動準備金을 損金算入하고자하는 法人은 定期分 法人稅 申告時에 價格變動準備金計定에 計上한 金額의 明細書를 添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2.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

가. 中小企業의 範圍擴大(令 第51條 第2項)

中小企業에 대한 稅制上支援을 增大하기 爲하여 그 適用對象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製造業 또는 鑛業을 營爲하는 法人으로서 事業年度中 계속하여 固定資產總額이 3千萬원 이하인 法人	2億원 以下

나. 中小企業 施設改替準備金(法 第12條의8, 令 第17條의8)

製造業 또는 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이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1) 適用對象

製造業 또는 鑛業을 營爲하는 法人으로서 固定資產總額이 2億원以下인 中小企業

(2) 損金算入範圍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事業別 固定資產인 機械設備의 帳簿價額에 100分의 15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이경우 機械設備에는 運休中에 있는 것은 除外한다.

(3) 還入方法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法人이 實際로 機械設備의 改替를 위하여 使用된 金額이 있을 때에는 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事業年度의 終了日 以後 3年이 경과되는 事

業年度부터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미 損金에 算入된 金額의 3分의 1씩 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하고 機械設備의 改替에 使用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그 3年이 경과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一時에 益金에 算入한다. 또한 準備金을 設定한 法人이 廢業하거나 解散한 때(合併으로 因한 解散인 경우에는 例外)에는 이와같은 事由가 發生한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다.

(4) 申　　告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損金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定期分 法人稅 申告時에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 明細書를 添附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며 3年이 經過한 事業年度에는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使用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償却率의 引上(令 第51條)

中小企業의 機械設備에 대하여는 一般償却範圍額에 그 30%相當額을 加算한 金額을 償却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50%相當額을 加算할 수 있도록 特別償却率을 大幅 引上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一般償却額의 30%	50%

3. 公益性寄附金의 損金算入範圍 擴大(令 第18條)

寄附金과 接待費는 法에서 使用限度가 明白히 定해져 어느科目이나 限度에 餘裕가 있더라도 相互 充當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改正에서는 接待費의 限度에 餘裕가 있는 範圍內에서 寄附金의 限度超過分을 容認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接待費에 餘裕가 있는 경우에 限하는 것이므로 이와 反對로 寄附金限度에 餘裕가 있다고 하여 接待費의 限度超過分이 容認되는 것은 아니다.

<例　示>

接待費限度	1,000萬원
接待費使用額	900萬원(100萬원 未達)
寄附金限度	500萬원
寄附金使用額	700萬원(200萬원 超過使用)

이경우 寄附金 否認額 200萬원中 接待費 限度未達額 100萬원을 損金 容認하고 100萬원만 益金加算하게 되는 것이다.

4. 特別修繕充當金의 新設(法 第12條의9, 令 第17條의9)

特別修繕充當金은 特定 固定資產의 大修繕費에 充當하기 爲하여 設定하는 準備金이다.

가. 對象資產 및 修繕의 範圍

(1)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第1號에 規定하는 定期檢査를 받기 爲한 船舶의 修繕

(2) 銑鐵製造用 鎔鑛爐와 熱風爐 및 유리製造用 連續式 鎔解爐에 使用된 煉瓦의 50% 以上을 改替하는 修繕

나. 損金算入範圍

直前特別修繕費用을 特別修繕週期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當該事業年度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 이 경우 特別修繕週期는 直前前 特別修繕完了日부터 直前特別修繕完了日까지의 月數를 말하며, 船舶의 경우에는 이를 48個月로 한다. 그러나 當該固定資產을 設置한 後 特別修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金額으로 한다.

$$\left[\text{當該資產의 取得價額} \times \frac{\text{當該事業年度의 月數}}{12} \times \frac{5}{100}\ (\text{船舶의 경우 } \frac{1}{1{,}000})\right]$$

※ 이경우 1月未滿의 日數는 1月로 본다.

다. 還入方法

當該固定資產의 特別修繕을 爲하여 支出한 費用은 먼저 特別修繕充當金과 相計하여야 하며, 相計하지 않은 金額이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다. 그리고 特別修繕을 完了하거나, 當該固定資產을 廢棄하거나 廢業·解散(合併으로 因한 解散은 除外)등의 경우에는 特別修繕充當金計定의 金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라. 申　　告

特別修繕充當金을 設定하거나 當該法人이 特別修繕을 한 경우에는 定期分 法人稅申告時에 特別修繕充當金計定에 計上된 金額의 明細書와 特別修繕充當金 使用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5. 保險差益의 非課稅範圍擴大(法 第14條의3)

保險事故에 依하여 받게 되는 保險差益金은 法人의 營業外收益에 該當되지만 綠色申告法人이 이와같은 保險差益을 滅失된 固定資產에 代替하여 同一 種類의 固定資產을 取得하거나 改良한 경우에는 이를 損金에 算入토록되어 있는바, 改正 法人稅法에서는 모든 法人에 擴大하여 保險差益을 損金으로 算入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綠 色 申 告 法 人	內 國 法 人

6. 公開法人 差等稅率 適用(法 第22條·附則 第3條)

今般 改正에서는 公開法人의 要件은 現行과 같이 改正하지 아니하였으나, 公開法人의 稅率適用에 있어서는 一律的으로 同一稅率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公開度에 따라 差等稅率을 適用하도록 改正하였다.

課稅標準	改 正 前	改 正
500萬원以下	100分의 20	大株主持分率 35% 以下 : 100분의 20
		〃 35% 超過 : 100분의 25
500萬원超過	100分의 27	大株主持分率 35% 以下 : 100分의 27
		〃 35% 超過 : 100分의 33

改正된 稅率은 77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하게 된다. 다만 77年 1月 1日 現在의 旣存公開法人과 6個月이상 上場되지 아니하여 公開法人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法人 卽 76年 7月 1日以後 上場하거나 公募增資 또는 募集設立한 法人도 公開法人의 要件(法 第22條 第3項 各號의 要件)을 갖춘 때에는 1978年 12月 31日 이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分까지는 從前의 稅率을 適用하도록 經過措置를 두었다.

7. 景氣調節機能強化

今般 稅法改正에서는 租稅의 景氣調節機能을 強化하기 爲하여 臨時投資稅額 控除制와 中間豫納의 彈力的 運用規定을 新設하였다.

가. 臨時投資稅額 控除制(法 第24條의5)

(1) 時期 및 範圍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大統領令으로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는 除外함)의 範圍를 規定한다.

(2) 控 除 率

投資金額의 $\frac{8}{100}$ (國內에서 生產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使用한 경우에는 $\frac{10}{100}$)

(3) 移越控除

控除稅額이 投資한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을 超過하여 全部 控除를 받지 못한 때에는 4年間

移越하여 控除받게 된다.

나. 中間豫納稅額의 調整(法 第30條)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直前期 納付한 法人稅額을 限度로 하여 當該事業年度의 中間豫納稅額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課稅標準의 計算

가. 損金算入의 範圍擴大(令 第12條·第13條)

다음과 같은 福利厚生費를 法人의 各事業年度의 "損費"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1) 保社部長官이 定하는 無料診療券 또는 새마을 診療券에 의하여 行한 無料診療價額

(2) 團體退職保險의 保險料

(3) 醫療保險法에 의한 醫療保險料 및 其他 負擔金

(4) 家族計劃事業 支援費用

※ 團體退職保險料의 損金限度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 在職하는 使用人의 全員이 退職할 경우에 支給되어야 할 退職給與額의 推計額에서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退職給與充當金을 控除한 金額에 相當하는 保險金에 대한 保險料에서 直前事業年度終了日까지 支給한 保險料를 控除한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改 正 前	改 正
1. 職場體育費	1. 종전대로
2. 職場演藝費	2. 〃
3. 우리社株組合運營경비	3. 〃
<新 設>	4. 無料診療價額
< 〃 >	5. 團體退職保險料
< 〃 >	6. 醫療保險料 및 其他負擔金
< 〃 >	7. 家族計劃事業 支援費用

나. 公課金 範圍의 擴大(令 第25條)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促進基金으로 出捐하는 職業訓練 分擔金은 公課金으로 處理한다.

다. 外貨債權·債務의 評價方法 改善(令 第38條의2)

(1) 改善方向

從前에는 外貨債權·債務에 對한 每年의 評價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償還時에 發生하는 差損金에 限하여 企業의 損益에 反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企業의 財務構造上 架空의 損益이 計上되는 矛盾이 있으므로 이를 是正하고 換率變動이 適時에 企業의 財務構造에 反映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每事業年度마다 이를 評價하게 하고 그 評價差損益이 各年度에 均等하게 配分되도록 하였다.

于先 外貨債權·債務를 長·短期로 區分하여 短期의 것은 當年度의 損益으로 處理하고 長期의 것은 殘存償還期間에 따라 均等하게 配分되도록 하였으며, 每事業年度末에 評價를 하는 한편 實地 償還時點에 發生하는 差損益에 對해서도 損益에 反映케 함으로써 二元的인 處理方法을 擇하고 있다.

(2) 長短期 外貨債權·債務의 區分

○ 短期 外貨債權·債務 : 償還받거나 償還할 期日이 事業年度終了日부터 1年內에 到來하는 外貨債權·債務를 말한다.

○ 長期 外貨債權·債務 : 短期外貨債權·債務 이외의 外貨債權·債務를 말한다.

(3) 差損益의 會計處理

(가) 評價差損益의 處理

○ 短期外貨債權債務 : 當該事業年度의 損益으로 處理한다.

○ 長期外貨債權債務 : 換率調整計定을 設定하여 殘存償還期間에 均等하게 償却 또는 還入한다.

(나) 償還差損益의 處理

○ 短期外貨債權·債務 : 當該事業年度의 損益으로 處理한다.

○ 長期外貨債權·債務 : 換率調整計定을 設定하여 殘存償還期間에 均等하게 償却 또는 還入한다.

(4) 經過措置

換率差損益은 評價日의 換時勢와 帳簿上金額과의 差額을 말하는 것으로 既往의 外貨債權·債務에 對하여도 改正稅法이 適用되는 것이나 다만 評價差損益에 對하여는 改正稅法施行日以後에 變動되는 換率에 對해서만 改正方法을 適用토록 하였다.

따라서 改正法施行後에 發生하는 外貨債權·債務에 對해서는 問題가 없으나 既往에 가지고 있는 外貨債權·債務의 評價差損益을 計算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經過措置에 注意하여야 한다.

(가) 改正法施行後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改正法施行日 現在의 評價額과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評價額의 差額을 그 事業年度分의 評價差損益으로 하며,

(나) 그 다음 事業年度부터는 直前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評價額과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評價額과의 差額을 當該事業年度分의 評價差損益으로 하여야 한다.

라. 減價償却制度의 改善(令 第53條·第56條)

(1) 償却否認額의 追認

"償却否認額"은 그後 事業年度 "是認不足額"을 限度로 하여 損金으로 追認하는바 이때 法人이 減價償却額을 計上하지 않은 경우에도 當該事業年度의 償却範圍額을 限度로 하여 損金으로 追認한다.

(2) 卽時償却限度 引上

減價償却資産으로서 그 取得價額이 去來單位別로 2萬원未滿인 것에 대하여는 當該事業年度에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去來單位限度金額을 5萬원으로 引上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取得價額 2萬원 未滿	5萬원 未滿

(3) 廢棄資産의 一時償却

事業別 固定資産으로서 施設의 改替 또는 技術의 落後로 廢棄한 資産에 대하여는 當該資産의 帳簿價額과 殘存價額의 差額의 範圍안에서 當該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法人稅 特別附加稅의 調整

가. 非課稅範圍의 縮小(法 第59條의3·附則 第5條)

法人稅 特別附加稅의 非課稅範圍를 縮小調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所得은 非課稅對象에서 除外하여 課稅하도록 하였다.

(1) 國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2) 法院의 競賣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3) 成業公社·金融機關 또는 保險公社가 抵當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取得한 土地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

다만, 金融機關등이 抵當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取得한 土地를 1977年12月31日以前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從前과 같이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나. 特別附加稅課稅標準計算(法 第59條의2)

改　　正　　前	改　　正
讓渡價額－〔帳簿價額(再評價한 경우 再評價額)＋施行令에서 定하는 費用〕	讓渡價額－〔取得價額＋施行令에서 定하는 費用〕

法人稅 特別附加稅 課稅標準計算時 讓渡價額에서 帳簿價額(再評價한 경우 再評價額)을 差減하였으나 今般 改正에서는 取得價額을 控除하도록 하여 再評價한 資産이라도 再評價額을 控除하지 않는 것이다.

다. 特別附加稅에 대한 中間豫納排除(法 第30條)

法人이 中間豫納을 하는 때에는 直前期에 納付한 法人稅의 50%를 納付하게 되는바 이때 直前期에 特別附加稅를 納付한 法人이라도 當該 特別附加稅에 對하여는 法人稅 中間豫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0.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法 第62條의2, 令 第127條의2)

가. 設置對象者

小賣業·飮食宿泊業·用役業을 營爲하는 者로서 國稅廳長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所管稅務署長이 指定하는 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하여야 한다.

나. 設置者에 對한 惠澤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가 감사테이프를 保管한 경우에는 複式簿記에 의한 賣出帳 또는 收入帳을 備置한 것으로 認定한다.

다. 設置·確認

(1) 小賣業·飮食 및 宿泊業·用役業等 金錢登錄機의 設置基準에 該當하는 事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그 事業을 開始하기 前에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2) 設置對象事業을 許可하는 官廳은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의 金錢登錄機 設置 確認書를 提出한 경우에 限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相 續 稅 法

[要 約]

이번 相續稅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財産이 적은 일반대중이 상속하는 경우에 相續稅의 負擔을 덜게 하여 日常生活에 필요한 住宅等 기본재산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받지 않도록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을 올리고 其他現行法令의 未備點을 보완하였다.

가.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 水準을 인상함

나. 未成年者 控除는 자녀 2인으로 제한함

다. 年賦延納의 경우 第1回 延納稅額에 대하여도 利子稅額을 徵收토록 함

라. 株式評價方法을 개선함

마. 公益事業 事後管理에 의하여 課稅하는 경우 課稅價額을 명확히 함

바. 物納制度의 改善

- ○ 物納制度의 收納價額을 명확히 함
- ○ 物納對象 財産決定에 執行官署의 裁量權을 배제함
- ○ 物納申請에 대한 許可拒否權을 제한함

사.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함

- ○ 擔保解除時期를 단축함
- ○ 贈與稅 合算課稅를 배제함
- ○ 현저히 저렴한 價額의 基準을 時價보다 30%이상 낮은 價額을 함

1. 相續稅 諸控除額 引上(法 第5條·第7條·第11條第1項)

(單位:千원)

區 分	人 員	改 正 前	改 正
基礎控除	1	6,000	8,000
配偶者控除	1	5,000	8,000
未成年者控除	8세-1 12세-1	100×20세까지의 年數+300	240×20세까지의 年 數

區 分	人 員	改 正 前	改 正
年 老 者 控 除	1	600	1,000
不 具 廢 疾 者 控 除	1	(600)	(1,800)
計		14,200	21,800
生 命 保 險 金		2,000	5,000
信 託 財 產		(新設)	5,000

가. 위와 같이 相續稅의 각종 控除額이 引上되어 配偶者가 있고 未成年者 2인과 年老者 1인이 있는 경우 約 2,200萬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혀 相續稅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相續財產中 信託會社에 金錢信託이 아닌 財產信託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500萬원을 控除하고 나머지 부분만 課稅價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未成年者 控除制度(法 第11條第5項, 令 第8條第3項)

人口政策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2子女 갖기 運動을 稅制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被相續人의 子女中 2인에 한하여 控除받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2인은 처음 출생한 子女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被相續人에게 子女가 셋이 있는 경우 셋모두 未成年者(20歲未滿)인 경우에는 첫째子女와 둘째子女둘만이 控除받는 것이며 또한 그중 첫째 子女가 成年이 된 경우에는 둘째 子女 하나만이 控除받게 된다.

다만 77.1.1以前에 出生한 子女에 대하여는 改正稅法의 控除制度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未成年者인 경우에는 그 數에 제한없이 控除받는다.

3. 第1回 延納稅額에 대한 利子稅額 徵收(法 第28條의2)

相續稅나 贈與稅를 年賦로 延納하는 경우에 第1回 延納分도 延納의 猶豫期間을 주는한 그 猶豫期間에 상당하는 利子稅額을 징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것은 年賦延納者는 대부분 많은 財產을 相續받거나 贈與받는 高所得者이고 일시에 納付하는 一般納稅者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4. 公益事業事後管理에 의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課稅要因이 發生할 당시의 價額으로 課稅하도록 함(令 第3條의2 第8項)

公益事業에 출연된 財産에 대하여 贈與稅를 非課稅하도록 한것은 當該財産이 公益事業에 사용되어 그 利益이 一般社會에 歸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益事業을 運營하는 公益法人이 출연받은 財産을 公益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公益事業이 아닌 다른 目的에 使用했을 때에는 그 출연받은 財産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公益事業出捐財産에 대하여 事後에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贈與稅의 課稅價額을 처음 出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事後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의 價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從前法規定만 볼때 明確하지가 아니하다. 그래서 改正稅法에서는 公益事業에 出捐된 財産은 반드시 公益事業에 使用되도록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事後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의 價額과 稅率에 의하여 課稅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例를 들어 74年에 그 당시의 時價 2,000萬원 相當의 不動産을 出捐받은 公益法人이 그 財産을 2年間이나 公益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課稅要因이 발생한 당시(2年後인 76年)는 出捐받는 不動産의 時價가 3,000萬원이 된 때에는 3,000萬원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는 것이다.

또한 事後에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도 贈與稅의 對象이 되는 것은 出捐받은 財産 그 自體이므로 출연받은 財産에서 분리된 果實은 課稅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例를 들면 출연받은 財産이 株式인 경우 課稅要因이 발생할 당시까지 그 株式에서 配當金을 받은 것이 있어도 그 配當金은 課稅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株式評價方法 改善(令 第5條 第5項 第1號)

가. 非上場株式評價方法

$$\left(\frac{\text{法人의 純資産價額}}{\text{總 株 式 額}} + \frac{\text{최근 3年間 1株當 純利益額}}{\text{1年滿期定期預金利子率}}\right) \div 2 = \text{1株當價額}$$

나. "가"에서 純利益額을 종전에는 法人稅法에 의하여 계산한 法人所得으로 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配當可能所得으로 하도록 하였다.

"純利益額" 對比表

改正前	改正
法人稅法에 의한 法人所得	法人稅法에 의한 法人所得+還給받은 法人稅와 同利子額 – 當該事業 年度에 徵收不履行으로 納付한 稅額 및 加算稅額 – 罰金, 科料, 加算金 등 – 費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公課金 – 業務와 무관한 費用 – 株式發行費 등 移延資産 – 寄附金 및 接待費 限度超過額 – 當該事業年度 所得에 대한 法人稅, 住民稅, 防衛稅額
純利益額	純利益額

株式評價額을 다음과 같은 說例에 의하여 1株當 純利益을 비교하여 보면 改正前에는 480원이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236원이 되어 54%만큼 낮게 計算된다.

事例

(單位 : 千원)

○ 稅務計算上法人所得額 …… 48,000
- 當期純利益 …… 42,000
- 罰金支給額 …… 6,000

○ 當該事業年度法人稅額 …… 18,400
○ 總發行株式數 …… 100,000

1株當純利益計算例

改正前	改正
$\frac{48,000}{100,000}$ = 480원	$\frac{48,000-6,000-18,000}{100,000}$ = 236원

6. 物納制度의 改善

가. 物納財産의 收納價額을 명확히 함(法 第31條)

相續稅 및 贈與稅를 物納하는 경우 物納財産의 收納價額을 從前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現況에 의한다"고 하여 相續開始當時의 價額과 收納當時의 價額에 差異가 있을 때에는 執行上 混亂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 物納財産의 收納價額은 相續稅 課稅價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物價財産이 非上場株式인 경우에 相續開始後 物納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新株를 발행하여 1株當株式價額을 떨어지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 價額을 收納價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無償株를 발행한 경우>

$$\frac{\text{舊株式1株當相續稅課稅價額}}{1+\text{舊株式1株當新株配定數}} = \text{舊株式1株當收納價額}$$

例를 들어 舊株式1株當 相續稅 課稅價額이 3,000원이고 舊株式 1株에 대하여 無償株 1株를 配定한 경우 舊株式1株當收納價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1,500원이 된다.

$$\frac{3{,}000}{1+1} = 1{,}500\text{원}$$

<有償株를 발행한 경우>

$$\frac{\text{舊株式1株當相續稅課稅價額} + \text{新株1株當株金納入額} \times \text{舊株式1株當新株配定數}}{1+\text{舊株式1株當新株配定數}} = \text{舊株式1株當收納價額}$$

例를 들어 舊株式 1株當 相續稅 課稅價額이 3,000원이고, 舊株1株에 대하여 新株1株씩 額面價額 1,000원으로 引受케 한 경우 舊株式 1株當 收納價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000원이 된다.

$$\frac{3{,}000+1{,}000\times 1}{1+1} = \frac{4{,}000}{2} = 2{,}000\text{원}$$

나. 物納對象財産의 範圍(令 第30條 第2號)

現行 相續稅法上 物納을 할 수 있는 財産은 相續財産으로서 不動産과 有價證券에 한정하고 있다. 이중 有價證券에 대하여 종전에는 國債, 公債를 제외한 其他 有價證券은 稅務署長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도록 한 관계로 納稅者가 物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稅務署長의 裁量權을 排除하고 物納할 수 있는 財産을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였다.

다. 物納申請에 대한 許可拒否權制限(令 第33條 第1項)

稅務署長은 物納申請한 財産이 管理處分上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전에는 許可申請을 拒否하거나 物納財産의 變更命令을 택일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物納申請한 財産이 管理處分上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管理處分이 가능한 다른 物納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許可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物納財産의 변경만을 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管理處分이 가능한 다른 物納財産이 없는 경우에만 許可를 拒否할 수 있다.

7.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

가. 擔保解除(令 第28條)

相續稅의 年賦延納 申請時에 提供된 擔保에 대하여 종전에는 相續稅額을 전부 완납하였을 때만 擔保를 解除하도록 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각 回分의 延納稅額을 納付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즉시 解除하도록 하였다.

나. 贈與稅合算課稅의 排除(令 第40條의3)

現行 相續稅法은 贈與를 받은 자가 3년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贈與받은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價額을 加算한 價額을 課稅價額으로 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加算한 贈與價額을 贈與받았을 때 納付한 贈與稅額을 控除하고 나머지 稅額을 納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贈與稅를 合算課稅하도록 한 것은 分割贈與로 인하여 脫漏된 累進差額을 흡수하고 免稅點制度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3年前에 贈與받은 價額에 대하여 納付한 稅額(控除稅額)이 合算課稅한 算出稅額보다 많을 때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음 事例에서 76年 贈與價額 200萬원에 3年以內인 75年에 200萬원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事實이 있어 이를 合算課稅하는 경우 控除한 稅額(1,016,400원)이 합산하여 산출한 稅額(960,000원)보다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200萬원에 대해서만 課稅한다.

<事　例>

贈與日字	贈與稅	3年以內贈與合算額	稅率	算出稅額	既納付稅額(控除稅額)	告知稅額
73.6.1	48,000,000원	원		원	(24,393,600)원	원
74.						
75.6.1	2,000,000	50,000,000	60%	25,410,000	(1,016,400)	
76.6.1	2,000,000	4,000,000	30%	960,000	1,016,400	△56,400

다. 看做贈與의 경우 현저히 저렴한 價額 基準設定(令 第41條第1項)

自己의 親族이나 使用人等 特殊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財產을 時價보다 현저히 저렴한 價額으로 讓渡한 때에는 時價와 讓渡價額과의 差額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저히 저렴한 價額"에 대하여 종전에는 時價以下로 讓渡하는 價額은 모두 저렴한 價額이라고 보아 法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感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價額의 基準을 時價보다 30%이상 낮은 價額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時價 400萬원 住宅을 親族에게 280萬원을 超過하여 받고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問題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80萬원 以下로 讓渡한 경우에만 그 差額(120萬원)을 贈與한 것으로 본다.

資産再評價法

[要　　約]

건전한 企業風土를 조성하고 企業規模의 大單位化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無償株 배당으로 인한 企業의 配當壓迫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가. 非業務用 不動産의 再評價 排除를 명백히 함.
나. 합병으로 한한 경우에는 再評價後 1年內 讓渡制限 規定의 適用을 배제함.
다. 株式會社의 경우 理事會의 결의로써 再評價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登錄稅 非課稅 期間을 연장함.

1. 非業務用資産의 再評價排除(法 第5條, 令 第1條)

資産再評價를 할 수 없는 非業務用資産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가. 非業務用資産의 範圍

(1) 賣買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株式·出資·動産 및 不動産
(2) 金融·保險業者의 債權 保全과 관련하여 취득한 不動産(自己事業에 사용하게 된 때에는 예외)
(3) 建設業者가 工事費의 대가로 讓受받은 土地(그 토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함)
(4) 不動産賃貸業者가 賃貸에 供하는 土地中 1年間의 收入金額이 土地價額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土地
(5) 工場用 事務室用 其他事業에 直接 사용하는 建物의 부속토지로서 건물바닥 面積의 10배를 초과하는 土地
(6) 從業員用 社宅·寄宿舍·合宿所 등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바닥 面積의 10배를 초

과하는 土地

(7) 社內 職業訓練用 建物의 부속토지로서 건물바닥 面積의 10배를 초과하는 土地

(8) 위의 (5)~(7)以外의 土地로서 地上建物이 멸실 또는 손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거나 地上建物을 撤去한 날로부터 6月이 경과된 土地

(9) 再評價日 현재 未收復地區에 있는 資產과 징발된 資產

(10) 法令에 의하여 使用이 禁止되거나 제한된 土地(禁止 또는 制限이 해제된 날로부터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

(11) 遊休土地(從業員의 體育用 또는 職場豫備軍 訓練用 土地는 除外)

나. 再評價의 排除

위 "가"에 해당하는 資產은 再評價를 할 수 없게 하였다.

2. 合併時 再評價의 效力認定(法 第18條)

再評價日 이후 1年內에 再評價한 資產을 讓渡하거나 해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再評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合併으로 인한 讓渡의 경우에는 再評價의 效力을 維持하도록 한 종전의 해석을 명문화하였다.

3. 再評價의 議決機關(法 第25條)

株式會社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再評價를 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再評價承認 機關	株式會社 → 株主總會 其他法人 → 社員總會 其他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	株式會社 → 理事會 其他法人 → 改正前과 같음

4. 再評價 積立金의 資本轉入(法 第30條, 令 第24條)

종전에는 再評價決定通知를 받은 후 30일내에 資本轉入相當額證明書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후 1년내에 資本轉入을 하여야만 登錄稅를 課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再評價決定日(또는 審査決定日)로부터 3年內에 資本轉入을 하면 登錄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資本轉入 前 30日內에 資本轉入相當額證明書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5. 私立學校의 收益事業用 資産에 대한 非課稅(法 第11條, 令 第4條의2)

私立學校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이 收益事業에 사용하는 資産을 再評價하는 경우에도 再評價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6. 修正申告·審査請求에 관한 規定等의 削除(法 第16條·第22條, 令 第7條·第13條)

가. 再評價 審査에 관한 規定과 修正申告에 관한 一部規定은 國稅基本法의 規定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나. 申告期間을 30日以上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所管地方國稅廳長의 承認없이 所管 稅務署長의 承認만으로 가능토록 하였다.

營 業 稅 法

[要　　約]

遊興飮食稅法을 制定施行함에 따라 飮食·宿泊業을 營業稅 課稅對象에서 제외하고, 防衛産業을 支援하며 명랑한 納稅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을 義務化하도록 하였다.

가. 飮食·宿泊業을 營業稅 課稅對象에서 제외함.

나. 製造業中 防衛産業에 대하여는 製造甲($\frac{5}{1000}$)의 稅率을 적용토록 함.

다. 外貨獲得免除 營業을 확대함

- ○ 基地村 주변의 外貨販賣營業을 免除營業으로 함.
- ○ 外國과의 再保險去來로 인한 外貨收入保險業을 免除營業으로 함.

라. 特定營業者에 대하여는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토록 함.

마.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함

- ○ 信用保證營業을 金融業으로 함
- ○ 重機整備業을 製造業으로 함
- ○ 免除對象인 主要鑛物에 硅石을 追加함
- ○ 輸出船積完了證明書를 輸出免狀으로 대체함
- ○ 수퍼체인가맹점이 直接 物品을 買入할때는 源泉徵收 免除規定의 適用을 排除함

1. 飮食·宿泊業을 營業稅 課稅對象에서 除外(法 第7條第1項第7號)

77. 1. 1부터 遊興飮食稅法이 施行됨에 따라 飮食宿泊業에 대하여는 國稅로서 遊興飮食稅가 課稅되며, 營業稅는 課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課稅期間이 76. 12. 31 이전에 개시되어 76. 12. 31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76. 12. 31까지를 그 課稅期間으로 하여 營業稅를 賦課한다.

2. 防衛産業 支援(法 第20條第2項, 令 第54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製造業中 防衛産業	製造丙($\frac{15}{1000}$)	製造甲($\frac{5}{1000}$)

가. 製造業中 防衛産業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1000분의 15의 稅率을 適用하였던 것을 77. 1. 1 以後 申告하는 分부터는 1000分의 5의 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나. 防衛産業이라 함은 軍需調達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된 軍需業體가 同法에 의하여 지정된 軍需物資를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3. 外貨獲得免除營業의 擴大

가. 基地村주변의 外貨販賣營業을 免除營業으로 함(令 第33條第6項第9號)

이는 基地村주변의 營業者로부터 유출되는 外貨를 흡수하기 위한 措置로서 外國軍이 주둔하는 地域에서 營業을 하는 者 中 國稅廳長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稅務署長이 지정하는 자가 外國人에게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고 그 대가를 外貨로 받아 이를 外國換銀行이나 換錢商에서 원貨로 換錢하여 취득하는 收益金額에 대하여는 營業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營業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營業稅 課稅標準申告를 할때에 소정의 免除申請書와 外國換銀行이나 換錢商으로부터 外貨買入證明書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外國과의 再保險去來로 인한 外貨收入保險業을 免除營業으로 함(令 第33條第6項第10號)

保險會社가 外國保險會社와의 再保險去來로 인하여 受再保險料나 出再保險手數料를 外國換銀行에서 外換證書나 원貨로 받는 營業을 外貨獲得免除營業으로 규정하였다.

4.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法 第14條의3, 令 第44條)

領收證 주고 받기를 生活化하기 위하여 金錢登錄機의 設置義務를 신설하였다.

가. 對象者

小賣業과 서어비스業을 영위하는 者 中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할 必要性이 있는 업종과 經營規模등을 고려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所管稅務署長이 지정하는 業體로 하였다.

따라서 對象者指定基準에 해당하는 旣存業體라도 所管稅務署長의 지정이 없으면 設置義務는 없다. 다만 77. 1. 1 以後 對象基準에 해당하는 營業을 新規로 開始하는 者는 지정이 없더라도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나. 稅制上 惠澤

(1) 記帳稅額 控除 認定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가 金錢登錄機에 의하여 領收證을 교부하고 그 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營業稅法上 適法하게 장부를 設置記帳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가 日記帳義務者나 簡易記帳義務者인 경우에는 金錢登錄機에 의하여 記錄된 金額에 상당하는 算出稅額의 10% 相當額을 공제받게 된다.

(2) 現金主義에 의한 課稅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한 者에 대하여는 課稅期間中 실지 收入한 現金收入金額으로 課稅標準을 計算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1) 一般的 制裁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할 者가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設置만하고 이를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租稅犯處罰法에 의하여 50萬원以下의 秩序罰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2) 官許業者에 대한 特別制裁

官許業者中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하여야 할 者가 지정된 期間內에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設置만하고 金錢登錄機에 의하여 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金錢登錄機에 의한 記錄이 虛僞인 사실이 摘發되는 때에는 所管稅務署長은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處分을 當該 許可官廳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許可官廳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5. 其　　他

가.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이 행하는 信用保證의 營業을 金融業으로 규정하였다.(令 第12條第12號)

나. 서어비스業으로 課稅하던 重機整備業을 製造業으로 課稅하는 自動車整備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製造業으로 課稅하도록 하였다.(令 第6條第2項第2號)

다. 鑛產業中 營業稅 免除對象이 되는 主要鑛物에 硅石을 追加하였다. 따라서 규석을 채굴하는 鑛產業은 앞으로 營業稅가 免除된다.(令 第30條의2第18號)

라. 外貨獲得 免除營業者가 免除申請할때에 提出하던 輸出船(機)積 完了證明書 대신에 앞으로는 稅關長이 발급하는 輸出免狀(輸出物品의 船積이 完了되었음을 稅關長이 확인한 免狀에 한한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令 第37條第2項第1號)

마. 수퍼체인가맹점포가 그 본부에서 물품을 供給받지 아니하고 製造業者나 都賣業者로부터 直接 物品을 購入할 때에는 一般 다른 小賣業者와 다를바 없으므로 源泉徵收免除 規定의 適用을 排除하여 源泉徵收를 당하도록 하였다.(令 第86條第12項)

遊興飮食稅法

[要　　約]

이번에 遊興飮食稅를 國稅로 전환한 것은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하여 地方稅인 遊興飮食稅와 國稅인 營業稅가 重複課稅됨에 따라 발생되는 納稅者들의 불편과 稅務行政의 번잡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國稅로 하였다.

가.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한 營業稅를 遊興飮食稅에 통합함
나. 종전 非現實的인 高稅率을 전반적으로 약30% 引下 調整함
다. 根據課稅制度의 확립을 위하여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하여 金錢登錄機 設置를 義務化하는 한편 同業所에서 교부받은 領收證을 政府에 제출하면 일정률의 報償金을 지급함

1. 課稅場所의 區分(法 第1條, 令 第1條)

이번에 制定된 遊興飮食稅는 전술한 바와 같이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한 營業稅를 이에 통합하고 있으므로 종전 地方稅인 遊興飮食稅와는 課稅場所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즉 第1種 내지 第3種의 課稅場所는 從前 地方稅인 遊興飮食稅와 같으나 第1種場所는 새로이 신설하였다.

가. 第1種課稅場所

第1種課稅場所는 食品衛生法의 규정에 의하여 (1) 一般 遊興飮食店 (2) 特殊遊興飮食店 (3) 遊興專門飮食店으로 營業許可를 받은 業所로서 종전 地方稅法에서 규정하는 課稅場所와 동일하다.

나. 第2種課稅場所

第2種課稅場所는 食品衛生法의 규정에 의하여 (1) 專門飮食店으로 營業許可를 받은 업소와 宿泊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2) 호텔로 營業許可를 받은 업소와 (3) 宿泊料金이 乙類호텔과 同額以上인 宿泊業所로 규정하여 종전 地方稅法에서 규정하는 課稅場所와 동일하다.

다. 第3種課稅場所

第3種課稅場所는 食品衛生法의 규정에 의하여 (1) 大衆飮食店 (2) 簡易飮食店 (3) 簡易酒店 (4) 菓子店 (5) 茶房 또는 (6) 休憩室로 營業許可를 받은 場所로서 종전 地方稅法規定과 동일하다.

라. 第4種場所

遊興飮食稅는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한 國稅인 營業稅와 地方稅인 遊興飮食稅를 통합하고 있으므로 종전 遊興飮食稅는 非課稅되면서 營業稅가 課稅되는 장소로서 食品衛生法의 규정에 의하여 大衆飮食店·簡易飮食店·簡易酒店 또는 菓子店으로 營業許可를 받은 業所로서 (1) 주로 식사類를 350원이하의 價格으로 판매하는 業所(떡류·빵류 또는 生菓子類를 판매하는 業所를 제외한다). (2) 탁주·약주 및 소주만을 판매하는 業所 (3) 菓子店을 경영하는 33평방미터(10평) 미만의 業所(生菓子類 또는 케이크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다)와 宿泊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4) 旅館 (5) 旅人宿 (6) 下宿으로 營業許可를 받은 業所를 第4種 課稅場所로 하고 있다.

마. 課稅場所의 擬制

第3種場所中 大衆飮食店·簡易飮食店 또는 簡易酒店에서 350원이하의 食事類(떡류·빵류와 생과자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第4種課稅場所에서 飮食한 것으로 보아 課稅하며, 第4種 課稅場所인 旅館·旅人宿中 客室料金이 호텔과 同額以上인 客室에 대해서는 第2種場所로 課稅한다.

2. 納稅義務者(法 第2條)

國稅로하는 遊興飮食稅는 遊興飮食場所의 經營者를 納稅義務者로 하고 있으며 食品衛生法 및 宿泊業法 등의 營業許可를 받은 者와 사실상의 經營者가 相異할 때에는 營業許可를 받은 者와 經營者를 連帶納稅義務者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遊興食品業所經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經營者와 許可받은 자를 連帶納稅義務者로 하였다.

3. 課稅標準(法 第3條·第4條)

遊興飮食稅의 課稅標準은 飮食料·座席料·演奏料·宿泊料 其他 名目如何에 불구하고 經營者가 遊興飮食行爲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할 모든 金額으로 하고 있으나 써비스료는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課稅標準額 계산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金錢登錄機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現金主義에 의하여 그 課稅標準額을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金錢登錄機의 特殊性의 고려와 또한 金錢登錄機普及을 위하여 現金主義에 의해 稅額을 納付케 하였으며 外上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당월의 課稅標準에서 제외하였다.

4. 稅率(法 第5條)

國稅로 하는 遊興飮食稅는 遊興飮食業所에 대한 營業稅를 遊興飮食稅에 통합하여 料亭等 第1種場所에 대해서 營業稅 3.5%, 遊興飮食稅 30%가 課稅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20%로 引下調整하고 있으며 第2種場所에 대해서는 營業稅 3.5%, 遊興飮食稅 15%가 課稅되는 日式·洋式等과 營業稅 3.5%, 遊興飮食稅 10%가 課稅되고 있는 호텔을 15%로 단일화하여 課稅權衡을 맞추고 大衆飮食店·茶房等 第3種場所는 營業稅 2.5% 및 3.5%와 遊興飮食稅 5%가 課稅되고 있는 것을 5%로 引下調整하고 있으며 旅館·旅人宿等 第4種場所는 營業稅 2.5%와 3.5%가 課稅되고 있는 것을 2%로 引下調整하고 있는데 종전 遊興飮食業所는 高稅率로 인한 非正常的인 業所經營으로 稅負擔을 회피하는 등 社會不條理의 惹起 및 經營萎縮等이 초래되어 왔으므로 이의 稅負擔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稅率을 대폭 引下 調整하였다.

課稅場所와 稅率

種別	課稅場所	稅率	
		改正前	改正
1種	料理店·카바레 等	39.5% 營業稅 3.5 遊興稅 30 防衛稅 6	24% 遊興稅 20 防衛稅 4
2種	高級飮食店	21.5 營業稅 3.5 遊興稅 15 防衛稅 3	18 遊興稅 15 防衛稅 3
	호텔	15.5 營業稅 3.5 遊興稅 10 防衛稅 2	
3種	大衆飮食店	7.5 營業稅 2.5 遊興稅 5	5
	茶房·菓子店	8.5 營業稅 3.5 遊興稅 5	
4種	旅館·旅人宿	2.5 營業稅 2.5 遊興稅 非課稅	2
	菓子店中一部	3.5 營業稅 3.5 遊興稅 非課稅	

5. 課稅標準申告와 納付(法 第6條·第8條·第9條)

改正前	改正
翌月 5日까지	翌月 20日까지

課稅標準申告와 納付는 종전 地方稅에서는 다음달 5日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다음날 20일까지로 하였다. 또한 過少納付 또는 無納付의 경우는 過少 또는 無納付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加算稅를 納付하여야 하는데 종전 地方稅에 있어서의 加算稅(100분의 20)보다는 引下하고 있으며 課稅最低限制度를 도입하여 零細納稅義務者의 稅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월 算出한 稅額이 1,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徵收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6. 免稅(法 第10條)

國稅로 하는 遊興飮食稅는 駐韓外國軍人에 대해서는 第1種 내지 第4種에서 행한 遊興·飮食·宿泊行爲에 대해서 免稅를 하며 外國人團體觀光客(10인이상의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第1種場所 및 호텔에 대하여 免稅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地方稅로서의 遊興飮食稅에서는 個別觀光客과 團體觀光客에 대해서 第1種 및 第2種場所에 대해서 免稅 및 減免하던 것을 그 範圍를 調整한 것으로 團體觀光客의 免稅範圍를 확대하는 한편 個別觀光客에 대해서는 종전에 경감하여 주던 것을 稅務行政의 煩雜性 等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7. 經營者登錄(法 第11條·附則第6條)

遊興飮食稅에서는 모든 遊興飮食場所의 經營者는 同場所를 開業, 移轉, 承繼할 때에는 營業稅法의 규정에 준하여 經營者 登錄을 하거나 納稅番號證의 檢閱·返還·業種變更申告 等을 하여야 하며 또한 業種變更을 하지않고 許可된 營業과 다른 營業을 하고 있을 때에는 業種變更日로부터 당해 場所를 경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8. 金錢登錄機의 設置(法 第14條·第16條)

根據課稅制度의 확립에 필요한 領收證 授受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해서 稅務署長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金錢登錄機의 設置를 義務化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설치사용을 성실히 履行하는 經營者에 대해서는 納付할 遊興飮食稅의 10% 範圍內에서 稅額控除의 혜택을 주어 金錢登錄機의 設置를 유도하였다.

9. 報償金의 支給(法 第17條, 令 第11條)

課稅場所	支給率	課稅場所	支給率
第1種	遊興飮食稅額의 100분의 10	第3種	遊興飮食稅額의 100분의 25
第2種	〃 100분의 15	第4種	〃 100분의 30

遊興飮食業所에서 발행하는 領收證을 그 利用者가 수취하여 政府에 제출한 때에는 10%~30%의 報償金을 지급함으로써 課稅資料의 陽性化를 기하고 또한 그로 인한 稅務公務員과 業所 經營者間의 마찰을 줄이며 稅務行政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10.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法 第19條, 令 第13條)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事由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要求基準
1. 帳簿를 不備置·不記帳 및 虛僞記帳한 때	○ 1回發見—15日間 營業停止
2. 領收證 未交付 및 그 寫本을 보관하지 아니한 때	
3. 遊興飮食稅 逋脫犯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 2回發見—營業의 許可取消 (90日間을 1期間으로 함)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事由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要求基準
4. 金錢登錄機 設置者가 監査테이프를 保管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하거나 領收證을 交付하지 아니한 때	○ 2回發見－15日間 營業停止 ○ 3回發見－營業의 許可取消 (90日間을 1期間으로 함)
5. 納稅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한 때	○ 期限內 提供하지 아니한 때－15日間 營業停止 ○ 營業停止以後, 30日後에도 提供하지 아니한 때－營業의 許可取消
6.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지 아니한 때	○ 期限內 設置아니한 때－15日間 營業停止 ○ 營業停止以後, 30日後에도 設置하지 아니한 때－營業의 許可取消

遊興·飮食·宿泊業所에 대한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는 종전 地方稅에서와 같이 遊興飮食稅 保全에 필요한 最小限의 필요한 範圍內에서 制裁를 하고 있으며 다만,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하는 경우는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자와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즉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지 아니한 자가 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하거나 領收證을 交付하지 않거나 그 寫本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90日을 1期間으로 하여 처음 적발된 때에는 15日間의 營業停止 처분을 받게 되며 2回 摘發된 때에는 營業許可取消를 받게 되는 반면 金錢登錄機를 設置使用하는 자는 金錢登錄機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하지 않거나 監査테이프에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하거나 그 監査테이프를 보관하지 않을 때에는 90日間을 1期間으로 하여 2回 摘發된 때에는 15日間의 營業停止處分을 받게 되며 3回 摘發된 때에 營業 許可取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金錢登錄機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달리 규정한 것이다.

酒 稅 法

1. 麥酒原料로 大麥追加(法 第3條第1項第1號다) 및 高粱酒의 規格追加 (令 第2條第1項第8號)

麥酒製造에 사용되는 主原料는 發芽麥·옥수수·호프等이며 이 중 옥수수 사용량의 일부를 國產大麥으로 代替使用할 수 있도록 大麥을 追加하였으며 高粱酒의 규격을 종전 45度에서 40度, 45度로 다양화하여 消費者의 기호에 따라 飮用할 수 있게 하였다.

2. 酒類原料配定의 一元化(令 第10條의2)

종전 酒類의 原料配定은 銘藥酒의 경우에만 財務部長官이 하도록 하고, 其他酒類는 國稅廳長이 지정하여 所管稅務署長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를 一元化하여 銘藥酒의 경우도 國稅廳長이 原料를 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效果的인 酒稅行政에 기여토록 하였다.

3. 酒稅額控除(法第27條의2)

改 正 前	改 正
還 付	가. 원칙적으로 還給 나. 納付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

輸出用原料酒類等에 대한 酒稅額은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納付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할 수 있게 하여 納稅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特殊用途免稅(令 第39條)

酒精을 火藥製造用·輸出하는 煙草의 醱酵用·燃料用과, 其他工業用 및 醫藥品製造用等에 使用될때는 열거하는 品目에 한하여 酒稅를 免除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醫藥品製造用에 대하여는 열거한 品目에 한정하지 않고 酒稅를 免稅 받도록 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기여토록 하였다.

物品稅法 및 織物類稅法

1. 稅　　率(織・法 第1條)

物　品　名	改 正 前	改　正	備　考
綿　絲(40手以下의 것)	10 %	15 %	輸入依存
化纖絲(別揭이외의 絲類)	24 %	15 %	資源의 節約
化學纖維中 其他 纖維	20 %	15 %	

原料의 國產化가 가능한 化纖絲의 需要를 증가시키고 綿絲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輸入依存資源을 절약하기 위하여 化纖絲 및 同纖維의 稅率을 引下하는 同時에 綿絲의 稅率을 인상조정하였다.

2. 課稅物品의 整備(織・法 第1條, 令 第1條, 物・令 第1條別表)

品　目	改正前	改　正	備　考
化工藥品中 "싸이크로헥산"	非 課 稅	課　稅	石油化學工業育成支援
鄕土豫備軍用 乘用自動車	非 課 稅	課　稅	豫備軍用으로서 실효성 결여
毛織物中 緯編織物	非 課 稅	課　稅	經編織物과 課稅權衡 維持

關稅法 改正에 의하여 關稅率表의 符號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化學藥品의 분류를 정비하고 그 중에서도 "싸이크로헥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非課稅하고 있던 것을 課稅함으로써 그 原料인 "벤젠"이 原料免稅가 되도록 하여 石油化學工業의 육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鄕土豫備軍用지이프車"에 대하여는 豫備軍用으로서의 實效性 缺如와 事後 管理上의 問題點이 있으므로 이의 非課稅規定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毛織物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毛織物自體와 經編織物에 대해서만 課稅하였으나 근래 開發된 緯編織物을 課稅對象으로 追加함으로써 毛織物의 課稅에 있어서 權衡을 維持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織物製品形態로 製造된 成型編은 課稅對象에서 제외하였다.

3. 搬出擬制範圍의 擴大(織·法 第4條)

織物類가 製造場 안에서 使用되거나 消費되는 경우에는 課稅織物類가 製造場으로부터 搬出된 것으로 보아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物品稅法上의 規定과 體制를 같게 하였다.

4. 原料免稅 範圍의 擴大(物·令 第17條第5項, 織·令 第3條第1號)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物品稅	原料 → 製品 ⇄ 中間製品 (課稅) (課稅) (非課稅)	原料 → 製品 ⇄ 中間製品 (課稅) (課稅) (非課稅)
織物類稅	原料 → 製品 (課稅) (課稅)	原料 → 中間製品 → 製品 (課稅) (非課稅) (課稅)

가. 物品稅의 경우

完製品인 課稅物品을 製造하는 자가 그 物品의 附屬品인 中間製品을 製造·加工하는 賃加工業者에게 原料을 搬出할 경우에 종전에는 그 原料의 工場으로부터 일단 完製品工場에 반입한 후에 賃加工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의 改正으로 完製品을 製造者가 그 原料工場에서 購入한 原料를 직접 賃加工業者에게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課稅物品의 生産活動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織物類稅의 경우

課稅物品이 同一製造場 안에서 非課稅物品을 거쳐 課稅織物類의 製造에 所要되는 原料에 대

하여도 原料免稅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二重課稅를 防止토록 하였다.

5. 特殊關係의 範圍擴大(物·令 第2條第7號 織·令 第4條第3項)

改正前	改正
製造者가 販賣場의 資本總額의 51%以上을 出資한 경우에만 特殊關係	販賣者가 製造場의 資本總額의 51%以上을 出資한 경우에도 特殊關係

製造者가 販賣場의 資本總額의 51%以上을 出資한 경우에는 그 製造者와 販賣場과의 關係를 特殊한 關係로 보아 당해 販賣場의 價格을 課稅標準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販賣者가 製造場의 資本을 51%以上 出資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수한 관계로 規定하여 課稅上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6. 免稅販賣對象物品의 追加(物·令 第12條第1項第22號)

外國人 觀光客등 非居住者에게 외화를 받고 販賣할 수 있는 物品으로 滋養強壯品中 人蔘製品을 追加함으로써 外貨獲得事業을 지원하였다.

7. 輸出品原資材의 事後管理規定補完(物·令 第18條第2項第3號 및 第4項 織·令 第10條의2第2項第3號 및 第4項)

輸出品原資材에 대한 輸出履行期間은 최초의 原資材에 대한 未納稅·免稅搬出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을 承認한 法令에 의한 最終狀態의 課稅物品에 대한 稅額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原資材가 最初에 織物類稅法에 의한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承認을 받았으나 製造過程上 物品稅法上 課稅物品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最終課稅物品에 대한 輸出履行期間의 起算日을 織物類稅法의 承認日로부터 起算할 것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稅額을 徵收하는 物品

에 대하여도 비록 織物類稅法에 의한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承認을 얻은 物品이라도 製造過程上 最終物品이 物品稅法上 課稅物品일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物品稅를 課稅토록 補完 規定하였다. 이는 輸出物品의 製造過程에 따른 稅法의 適用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라도 最初의 承認에 관한 適用法規에 불구하고 輸出履行期間을 1年으로 하는 것과 最終物品에 대한 當該稅法을 適用하여 課稅하는 것은 立法趣旨上 당연한 것이다. 물론 物品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받은 物品이 製造過程上 織物類稅法의 規定에 의한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도 같다.

印 紙 稅 法

[要　　約]

從前에 定額稅를 適用받고 있는 一部課稅文書를 應能負擔의 原則과 流通稅로서의 機能을 提高하기 爲하여 差等定額稅로 轉換하였고 그 以外의 大部分의 課稅文書에 對한 稅率을 現實化하기 爲해 現行 定額稅를 引上 調整하였다.

1. 地上權·地役權 또는 傳貰權에 關한 證書(法 第1條第1項第19號)

從前 30원의 定額稅를 適用받고 있는 地上權·地役權 또는 傳貰權에 關한 證書는 土地等 利用의 便益을 增大하거나 讓渡할 수 있다는 點에서 差等定額稅를 適用하고 있는 이와 性質이 類似한 不動產所有權의 移轉에 關한 證書(第1條第1項第1號)等과 같이 差等定額稅로 하되 그 稅負擔은 이보다 낮게 調整하였으며 이는 課稅均衡을 맞추기 爲한 것이다.

2. 動產 또는 有價證券의 讓渡에 關한 證書(法 第1條第1項第29號)

動產 또는 有價證券의 讓渡에 關한 證書는 資產을 讓渡할때 作成하는 文書로서 從前에는 30원의 定額稅를 適用하였으나 差等定額稅가 適用되고 있는 이와 性質이 類似한 營業의 讓渡에 關한 證書(法 第1條第1項第1號)와 比較할때 稅負擔의 衡平을 잃고 있으므로 이를 差等定額稅로 하였으며 이는 課稅均衡을 맞추기 爲한 것이다.

3. 定款 또는 組合契約書(法 第1條第1項第23號)

定款 또는 組合契約書는 從前에 30원의 定額稅가 適用되고 있는데 이는 會社等의 業務執行

에 關한 基本原則을 規定한 證書로서 그 文書의 重要性 및 稅負擔의 能力을 勘案하여 他課稅文書와 比較하여 볼때 稅負擔의 矛盾이 있으므로 이를 調整하기 爲하여 引上(5,000원)한 것이다.

4. 其　　他(法　第1條第1項第10號·第15號·第16號·第17號·第21號·第22號·第23號·第25號·第26號·第28號·第30號·第31號·第32號·第33號)

其他 商品權·委任狀等 14個文書는 그 稅負擔을 現實化하여 經濟活動을 沮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引上調整하였으며 이는 定額稅의 特殊性 때문에 現實化하였다.

印紙稅率改正內容

改正前		改正	
課稅文書	稅額	課稅文書	稅額
1. 不動產·船舶·航空機의 所有權 移轉에 關한 證書 鑛業權·無體財產權 또는 營業의 讓渡에 關한 證書	記載金額 5千원 이하의 것 10원 記載金額 1萬원 이하의 것 20원 記載金額 5만원 이하의 것 80원	1. 改正前과 같음	
2. 消費貸借에 關한 證書	記載金額 10萬원 이하의 것 150원	2. 改正前과 같음	
3. 都給에 關한 證書	記載金額 25萬원 이하의 것 350원	3. 改正前과 같음	改正前과 같음
4. 傭船契約書 (航空機의 경우를 包含한다)	記載金額 50萬원 이하의 것 700원 記載金額 100萬원 이하의 것 1천300원	4. 改正前과 같음 5. 動產 또는 有價證券의 讓渡에 關한 證書(電氣供給에 關한 것을 포함한다)	

改正前		改正	
課稅文書	稅額	課稅文書	稅額
	記載金額 250萬원 이하의 것 3千원 記載金額 500萬원 이하의 것 5千500원 記載金額 1千萬원 이하의 것 1萬원 記載金額 2千5百萬원 이하의 것 2萬2千500원 記載金額 5千萬원 이하의 것 4萬원 記載金額 1億원 이하의 것 7萬원 記載金額 1億원을 超過하는 것 15萬원		
		6. 地上權·地役權 또는 傳貰權에 關한 證書	記載金額 1萬원 이하의 것 10원 記載金額 5萬원 이하의 것 50원

改正前		改正	
課稅文書	稅額	課稅文書	稅額
			記載金額 10만원 이하의 것 100원 記載金額 25萬원 이하의 것 250원 記載金額 50萬원 이하의 것 450원 記載金額 100萬원 이하의 것 850원 記載金額 250萬원 이하의 것 2千원 記載金額 500萬원 이하의 것 3千500원 記載金額 1千萬원 이하의 것 6千500원 記載金額 2千5百萬원 이하의 것 1萬5千원 記載金額 5千萬원 이하의 것 2萬5千원

改正前		改正	
課稅文書	稅額	課稅文書	稅額
			記載金額 1億원 이하의 것 4萬5千원 記載金額 1億원을 超過하는 것 10萬원

改正前	改正	
5. 約束어음 또는 換어음 300원	7. 約束어음 또는 換어음 300원	
6. 繼續的 去來에 關한 證書 200원	8. 繼續的 去來에 關한 證書 200원	
7. 運送에 關한 證書 60원	9. 運送에 關한 證書 60원	
8. 商品券	10. 商品券	50원
9. 出資證券	11. 出資證券	30원
10. 保險證券	12. 保險證券	
11. 株券	13. 株券	
12. 債券	14. 債券	
13. 預金 또는 貯金證書	15. 預金 또는 貯蓄證券	50원
14. 預金 또는 積金通帳	16. 預金 또는 積金通帳	
15. 委任狀	17. 委任狀	
16. 船荷證券	18. 船荷證券	30원
17. 運送貨物 引換證	19. 運送貨物 相換證	
18. 倉庫證券	20. 倉庫證券	
19. 地上權·地役權 또는 傳貰權에 關한 證書		
30원		

改正前		改正	
20. 使用貸借·賃貸借·雇傭 또는 寄託에 關한 證書 21. 信託에 關한 證書 22. 無盡에 關한 證書 23. 定款 또는 組合契約書 24. 權利의 設定·移轉 및 變更에 關한 證書 25. 追認 또는 承認에 關한 證書 26. 領收證 27. 質權·抵當權 또는 典當權에 關한 證書	30원	21. 使用貸借·賃貸借·雇傭 또는 任置에 關한 證書 22. 信託에 關한 證書 23. 相互信用 賦金證書 또는 相互信用契金 證書	50원
		24. 定款 또는 組合契約書	5千원
		25. 權利의 設定·移轉 또는 變更에 關한 證書 26. 追認 또는 承認에 關한 證書	50원
		27. 領收證	30원
		28. 質權(典當權을 포함한다) 또는 抵當權 또는 典當權에 關한 證書	50원
28. 相互保險會社가 作成하는 基金證券		29. 相互保險會社가 作成하는 基金證券	30원
29. 動産 또는 有價證券의 讓渡에 關한 證書 (電氣供給에 關한 것을 포함한다)			
30. 債務의 保證에 關한 證書 31. 入金帳 (100張 이하를 1卷으로 한다)		30. 債務의 保證에 關한 證書 31. 入金帳 (100張 이하를 1卷으로 한다)	50원
32. 集印帳	150원	32. 收金帳	250원
33. 手票帳(20張 이하를 1卷으로 한다)	300원	33. 手票帳(20張 이하를 1卷으로 한다)	500원

防 衛 稅 法

1.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따른 關係條項 整備(法 第2條第1項第5號·第14號第4條第1項第5號·第14號, 第6條第1項第2號·第3號, 第11條第2項·第4項)

地方稅인 遊興飮食稅를 國稅로 國稅인 登錄稅를 地方稅로 하고 이에 關聯된 條項을 整備하였다.

2. 地方稅法의 改正으로 田·畓·林野에 財產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른 關係條項整備(法 第2條第1項第16號, 第3條第4項, 第4條第1項第16號, 第6條第1項第3號)

田·畓·林野에 대하여 地方稅인 財產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라 從前에 그 價額에 賦課하던 防衛稅는 廢止하고 同 財產稅에 대한 附加稅로서만 防衛稅(20%)를 賦課하게 되었다.

3. 政府가 直接輸入하는 軍需品에 대한 防衛稅非課稅(法 第3條第2項第1號)

關稅法 第30條第1號에서 官用의 目的으로 政府에 寄贈된 物品에 대하여만 防衛稅를 非課稅하던 것을 政府가 直接 輸入하는 軍需品도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4. 外國航行所得에 대한 防衛稅非課稅(法 第3條第5項)

國際間의 相互免除原則上 外國航行所得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相互免除하는 경우에는 防衛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5. 法人稅가 全額 免除되는 法人에 대한 防衛稅 課稅標準計算時 適用할 法人稅率의 區分 明示(法 第4條第3項)

租稅減免規制法에 의거 法人稅가 全額 免除되는 法人도 納稅義務가 있으므로 同 法人에 대한 防衛稅 課稅標準이 되는 法人稅額을 算出할 때 適用하는 法人稅率을 明示하여 다음에 列擧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營利法人의 稅率을 適用하고 그 外에는 非營利法人의 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① 韓國投資公社
②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③ 土地金庫
④ 韓國電力株式會社
⑤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⑥ 韓國外換銀行
⑦ 中小企業銀行
⑧ 國民銀行
⑨ 韓國住宅銀行
⑩ 中小企業信用保證基金管理機關
⑪ 山林開發만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6. 所得稅 또는 法人稅 分納時 防衛稅分納許容(法 第7條의2)

가.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의하여 分納하는 경우에는 當該 防衛稅額도 分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全額免除되는 경우에는 納付할 防衛稅額이 1千萬원을 超過하는 分에 대하여 分納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物品稅에 대한 防衛稅課稅標準計算方法 明示(令 第2條第6項·第7項)

物品稅에 대한 防衛稅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防衛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物品을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製品에 대하여는 그 製品에 대한 物品稅額에서 그 原料에 대하여 納付한 物品稅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것을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하였다.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産業과 技術의 高度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重要産業의 範圍를 넓혀 支援하고 技術人力開發에 對한 減免制度를 擴充하며 大都市의 人口集中을 抑制하기 爲하여 地方移轉工場에 對한 減免制度를 新設하는 한편 減免時限을 1981年 12月31日까지 延長함으로써 第4次5個年計劃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가. 重要政策事業法人에 對하여 租稅를 減免함
나. 重要産業의 範圍를 擴大함
　○ 造船工業의 減免範圍를 10萬屯에서 3千屯으로 擴大함
　○ 畜産業 및 防衛産業을 重要産業으로 追加함
　○ 機械 및 電子工業의 範圍를 擴大함
다. 大都市人口集中을 抑制함
　○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를 新設함
　○ 地方移轉事業에 對한 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함
라. 中小企業의 統合을 促進함
마. 企業의 社內職業訓練을 支援함
바. 租稅減免期間을 延長함

1. 重要産業法人에 對한 租稅減免

가. 法人稅·營業稅·登錄稅·取得稅·財産稅의 免除(法 第4條第1項)

技術·人力을 開發하고 輸出戰略事業과 其他政策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特殊法人에 대하여 法人稅·營業稅·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法人

(2) 韓國技術檢定公團

(3) 韓國輸出入銀行

(4) 韓國精密機器센터

(5) 韓國反共聯盟

(6) 漁 村 契

나. 法人稅의 免除(法 第4條第5項)

政府施策事業을 遂行하는 信用保證基金과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管理機關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重要產業에 對한 租稅支援

가. 造船工業 支援(法 第4條의8第2項第2號)

從前에는 積載重量 10萬屯級以上의 船舶建造用 독크 또는 造船臺를 所有한 者가 營爲하는 造船工業에 對하여 大型船 中心의 租稅支援을 하였으나 世界造船 景氣의 趨勢에 따라 中小型 船舶 中心의 支援이 必要하므로 3千屯으로 基準을 擴大 調整하였다.

나. 畜產業의 支援(法 第4條의8第2項第11號, 令 第18條의2)

從前에는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에서 減免하던 것을 租稅減免規制法에서 重要產業으로 定하여 다음과 같이 減免토록 하였다.

(1) 畜產業의 範圍

소·말·양·돼지·토끼·친칠라·사슴·밍크·가금 또는 꿀벌의 飼育·增殖(畜產法에 規定한 부화업자가 아닌 者가 부화업을 하는 경우 除外)·채란·채모·착유등의 事業

(2) 減免期間

改　　正　　前	改　　正
※ 所得稅法·法人稅法에서 規定 1969~1975年(7年間) 100% 減免 1976年~1978年(3年間) 50% 減免	※ 租稅減免規制法에서 規定 所得이 發生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부터 3年間-100% 減免 2年間- 50% 〃

(3) 減免方法

改正稅法에서는 畜產業에서 所得이 發生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부터 3年間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 그 다음 事業年度分부터 2年間은 50%를 減免하게 된다. 그리고 이 法 施行日인 1977年 1月1日 以前의 旣存畜產業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3年間 100%와 2年間 50%를 減免받지 못한 者는 계속하여 3年間 100%와 2年間 50%를 減免받도록 하였다.

다. 防衛產業의 支援(法 第4條의8第2項第12號, 令 第18條의3)

防衛產業에 對하여는 改正前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別表 2>와 <別表 3>에서 限定的으로 減免하던 것을 今般 改正에서는 重要產業으로 定하여 다음과 같이 支援하게 된 것이다.

(1) 防衛產業의 範圍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指定된 軍需業體가 同 法에 依하여 指定된 軍需物資를 製造하는 事業

(2) 減免方法

減免對象이 되는 "重要產業"을 營爲하는 企業의 경우와 같이 防衛產業을 營爲하는 企業도 直接減免·投資控除와 特別償却中 하나의 方法만을 任意로 選擇하여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機械工業 및 電子工業 減免範圍擴大(令 別表 2 및 3, 附則 第3項)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의 繼續的인 育成을 위하여 減免對象業種과 品目을 大幅 擴大調整하였고, 이번 改正前 追加된 品目을 1974年 1月1日 以後 生産해 오던 者는 1977年 1月1日에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도록 經過措置를 두었다.

3. 人口分散政策의 支援

가.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의 新設(法 第4條의12, 令 第24條의4)

大都市內에서 工場施設을 가지고 事業을 營爲하는 企業이 그 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 事業年度와 그 後 2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1) 適用對象

서울·釜山 및 大邱등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서울特別市에 接하는 市·郡, 仁川市 및 水原市를 除外함)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個人 또는 法人

(2) 損金算入 範圍

當該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工場設備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當該事業年度와 그 後 2事業年度에 걸쳐 各 年度마다 損金에 算入한다.

(3) 還入方法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企業이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事業年度의 終了日 以後 3年이 經過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實際로 地方移轉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이 있을 때에는 그 3年이 經過되는 事業年度부터 3年에 걸쳐 各 年度마다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고, 위 3年以內에 地方移轉을 위하여 使用하지 아니한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3年이 經過되는 事業年度에 그 金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에는 當該準備金에 相當하는 稅額 100원에 대하여 1日 10전의 利子相當額을 加算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서 追徵한다.

나. 地方移轉事業에 對한 稅額控除(法 第4條의13, 令 第17條)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이때 大都市 또는 地方의 範圍는 위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1) 適用對象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全部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個人 또는 法人

(2) 控除範圍

地方으로 工場施設을 移轉한 後 그 工場의 固有目的事業에 直接 使用하는 主된 機械施設價額의 100分의 8(國產機資材로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工場施設이 完了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되, 控除받을 稅額보다 納付할 稅額이 적어서 控除殘額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事業年度부터 4年內에 移越되어 控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에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에 의한 惠澤도 併行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4. 中小企業의 統合支援(法 第5條第2項·第10條第2項)

主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合併奬勵業種에 該當하는 中小企業이 合併 또는 統合하는 경우에는 그 後 存續하는 企業이 該當資產을 登記할 때에 登錄稅와 取得稅를 免除받도록 하였다. 이 때 中小企業에는 法人과 個人을 包含하므로 法人과 法人間, 個人과 個人間 또는 個人과 法人間의 合併 또는 統合이 모두 該當된다.

5. 企業의 社內 職業訓練 促進(法 第5條第2項・第9條第13項・第10條第2項・第11條第3項)

企業의 社內職業訓練의 強化를 爲하여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用施設(宿泊施設을 包含함)에 直接 使用되는 土地와 建物에 對하여는 登錄稅・取得稅 및 財産稅를 免除하며 職業訓練에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物資를 外國에서 導入할 때에는 物品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이때 職業訓練用 土地로서 建物바닥 面積의 10倍가 넘는 部分은 免除對象에서 除外된다.

6. 海外用役事業에 對한 租稅減免(法 第4條의10第1項)

從前에는 海外建設事業에 對하여만 減免하였으나 앞으로는 海外建設用役・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까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50%를 5年間 減免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對象事業……海外建設事業 期間 및 減免率……5年間 50% 減免	對象事業……海外建設事業, 海外建設用役・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 期間 및 減免率……改正前과 같음

7.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法 第4條의10第2項, 令 第24條의2)

가. 對　象

海外投資許可를 받은 內國法人이 國外에서 農産物・林産物 또는 鑛物을 開發하는 事業(當該資源의 加工業을 包含)에 投資하여 配當을 받는 경우에 當該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나. 減免條件

위의 海外資源開發事業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無條件 免除하는 것이 아니고 當該資源保有國(投資對象國)에서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한하여 法人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8. 減免時限 延長(法 第18條)

從前 租稅減免規制法은 그 適用時限이 第3次經濟開發5個年計劃에 맞추어 1976年 12月 31日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今般 改正에서는 第4次5個年計劃을 支援하기 爲하여 1981年 12月 31日까지로 時限을 延長하였다.

國 稅 基 本 法

1. 國稅審判官의 分類用語를 從前 "國家公務員인 國稅審判官과 國家公務員이 아닌 國稅審判官"으로 되어 있던 것을 "常任國稅審判官과 非常任國稅審判官"으로 改正하여 用語 解釋上의 問題點을 解消하고, 國稅審判所長을 當然職國稅審判官으로 하는 한편, 所長에 대하여는 國稅審判官에 대한 身分保障이나 資格要件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法 第67條)

2. 異議申請의 請求期間은 不變期間임을 分明히 하였다.(法 第66條第4項)

租稅犯處罰法

[要　　約]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國民의 自發的인 納稅風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所得稅·遊興飮食稅등의 稅率引下와 附加價値稅에 있어 稅金計算書의 義務的 授受, 金錢登錄機 設置·使用의 制度化, 改編되는 間接稅의 自進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등의 稅制改善을 하는 한편, 租稅犯則行爲에 대하여는 그 處罰을 強化함으로써 納稅風土의 刷新을 期하도록 하였다.

가. 逋脫犯·缺損過大計上犯 및 間接稅 帳簿不備置犯의 罰金刑을 強化함
나. 輕微한 犯則을 除外한 租稅犯則行爲의 公訴時效期間을 2年에서 3年으로 延長함
다.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義務違反者를 秩序罰로 處罰함

1. 逋脫犯等의 財産刑強化(法 第9條·第12條의3第1項 및 第3項)

租稅犯은 典型的인 經濟事犯임을 勘案하여 自由刑은 現行대로 두고 財産刑만을 다음과 같이 強化하였다.

犯　則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租稅逋脫犯		
① 間接稅	3倍以下	5倍以下
② 印紙稅		
③ 直接稅	2倍以下	3倍以下
나. 缺損過大計上犯	2倍以下	3倍以下
다. 間接稅帳簿不備置犯	10萬원以下	50萬원以下

가. 租稅逋脫犯

從前의 租稅逋脫犯의 財產刑은 間接稅逋脫의 경우, 印紙稅逋脫의 경우 및 기타 稅目(間接稅)逋脫의 各 경우에 定額罰金(間接稅逋脫 : 300萬원以下, 印紙稅逋脫 : 5萬원以下, 直接稅逋脫 : 300萬원以下)을 原則으로 하되, 高額逋脫에 對備하여 倍數罰金도 併用하고 있었는데 實質的인 罰金最高限度는 이 倍數罰金으로서 間接稅 및 印紙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3倍以下, 直接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2倍以下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間接稅·印紙稅·直接稅 各 逋脫의 경우 罰金의 定額限度額을 없애고 全面倍數罰金으로 轉換하면서 倍數罰金의 上限을 間接稅와 印紙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5倍以下까지로 直接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3倍以下까지로 引上 強化하였다.

全面倍數罰金制에 의하면 逋脫程度에 따라 보다 合理的인 處罰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나. 缺損過大計上犯

從前에는 缺損過大計上犯의 財產刑도 定額罰金과 倍數罰金을 併用하고 있었는데 定額罰金은 200萬원以下까지였으며, 實質的인 罰金最高限度는 倍數罰金으로서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2倍以下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租稅逋脫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缺損過大計上犯의 경우에도 罰金의 定額限度額을 없애고 全面倍數罰金으로 轉換하면서 倍數罰金의 上限을 算出稅額의 3倍以下까지로 引上 強化하여 直接稅逋脫犯과 罰金上限의 權衡을 維持하였다.

다. 間接稅帳簿不備置犯

酒稅法·物品稅法·織物類稅法等 諸間接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從前에는 10萬원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50萬원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改正하여 現行 秩序犯도 50萬원以下의 罰金을 科하고 있는 것과 刑量의 權衡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制定된 遊興飮食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도 間接稅帳簿不備置犯의 對象으로 하였다.

2. 公訴時効期間의 延長(法 第17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輕微한 犯則 ① 自家消費目的酒類無免許製造犯 ② 間接稅帳簿不備置犯 ③ 秩序犯	一律的으로 2年	2　年
나. 기타 犯則		3　年

從前의 租稅犯則行爲에 대한 公訴時効期間은 一律的으로 2年이었는데 이를 原則的으로 3年으로 延長하고 輕微한 犯則에 대하여는 現行대로 2年으로 두었다.

從前의 公訴時効期間 2年은 經濟事犯인 租稅犯의 早期安定을 위하여 一般刑事犯則(一般犯罪로서 主要 租稅犯에 該當하는 刑量의 경우에는 刑事訴訟法上 公訴時効 3年임)에 비하여 比較的 短期로 規定하였던 것이나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租稅犯則도 점차 知能化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一般 刑事犯則과 權衡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公訴時効期間을 延長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自家消費目的의 酒類無免許製造犯, 間接稅帳簿不備置犯, 秩序犯과 같이 自由刑이 없이 少額의 罰金만을 科하여 處罰하는 輕微한 犯則은 從前과 같이 2年으로 두었고 그외의 逋脫犯·滯納犯·源泉徵收不納犯등 모든 租稅犯則에 대해서는 3年으로 하였다.

3. 金錢登錄機設置使用義務違反(法 第13條第12號)

이번 稅法改正의 特徵中 하나는 納稅秩序를 正常化하기 위하여 여러 稅法에서 金錢登錄機設置·使用을 制度化하고 稅制上 많은 惠澤을 주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各 稅法이 規定하고 있는 金錢登錄機設置·使用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法에 의한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義務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하였거나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秩序犯으로서 5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게 하였다.

參考로 各 稅法의 金錢登錄機設置·使用에 관한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遊興飮食稅法 第14條, 同施行令 第9條

② 營業稅法 第14條의3, 同施行令 第44條

③ 所得稅法 第188條의2, 同施行令 第225條의2

④ 法人稅法 第62條의2, 同施行令 第127條의2

⑤ 附加價値稅法 第22條, 同施行令 第80條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높이는 한편 租稅制度와 租稅行政을 簡素化하기 위하여 國稅와 地方稅의 種目을 合理的으로 調整하여 台帳稅的인 登錄稅는 地方稅로 移讓하고 現行 國稅인 營業稅와 同一하게 外形課稅를 하고 있는 遊興飮食稅를 國稅로 移管하였다.(法 第2條 및 第3條)

關 稅 法

[要 約]

國際經濟與件의 變動과 國內產業의 急速한 發展에 따라 야기된 稅率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고 第4次經濟開發計劃의 效率的인 推進을 支援하기 위하여 1973年에 策定된 現行 關稅率을 全面調整하는 한편 加算稅의 徵收根據를 마련하고 關稅減免制度 및 分割納付制度를 改善하며 納稅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關稅에 관한 行政救濟節次를 國稅基本法에 의한 內國稅 審査請求의 경우와 調和시켰다.

關稅法改正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關稅制度(77. 3. 1 施行)

- ○ 輸入申告遲延時 加算稅徵收 : 課稅價格 $\frac{2}{100}$ 範圍內
- ○ 異議 및 訴願制度의 改編 : 國稅基本法과 節次統一
- ○ 關稅減免對象의 一部調整
- ○ 關稅分割納付 許容範圍擴大
- ○ 關稅犯處罰의 強化

나. 關稅率(77. 1. 1 施行)

區 分	稅 率	稅 目 數		構 成 比 (%)	
		改 正 前	改 正	改 正 前	改 正
國 際 慣 例	無 稅	219	44	5.5	1.7
財 政 關 稅	5%	103	—	2.6	—
	10	412	54	10.3	2.1
	15	102	—	2.5	—
	20	1,425	1,209	35.7	48.0
保 護 關 稅	25	13	—	0.3	—
	30	360	238	9.0	9.4
	35	16	—	0.4	—
	40	315	411	7.9	16.3
	50	383	—	9.6	—
	60	246	292	6.2	11.6

區 分	稅 率	稅 目 數		構 成 比 (%)	
		改 正 前	改 正	改 正 前	改 正
規 制 關 稅	70	47	—	1.2	—
	80	215	159	5.4	6.3
	100	99	82	2.5	3.3
	150	11	17	0.3	0.7
其 他	選擇稅	7	—	0.2	—
	從量稅	23	15	0.6	0.6
	計	3,996	2,521	100.0	100.0

段階 : 17 → 10

1. 關稅制度

가. 加算稅制度의 新設(法 第17條·第137條)

關稅法上 加算稅制度를 導入하여 輸入物品을 保稅藏置場등에 搬入한 날로부터 30日을 經過하여 輸入申告하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던 것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率의 加算稅를 徵收하도록 制度를 轉換하였다.

이러한 加算稅의 徵收는 輸入物品의 滯貨防止를 위하여 不可避한 措置이다. 그러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輸入하는 物品·外交官用品·旅行者 및 乘務員 휴대품·이사화물·우편물 등 法 第27條·第30條·第31條 該當物品等에 대하여는 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加算稅의 率은 加算金과의 均衡을 고려하여 決定한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輸入申告遲延時(物品搬入後 30日 經過後 申告)	罰金賦課 : 100만원 以下	加算稅 徵收 :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率 加算 (課稅價格의 $\frac{2}{100}$ 範圍內) ② 算定基準 : 課稅價格 및 經過期間

加算金率 및 加算稅率 比較

區 分			加算金(第17條)	加算稅(第13條)	備 考
經過期間別 加算稅	1月	10日			假定: 課稅價格－百萬원 關稅(10%)－拾萬원
		20日			
		30日	輸入申告履行	輸入申告不履行	
	2月	40日			
		50日	納付不履行	5천원	
		60日			
	3月	70日			
		80日	1萬원	1萬원	
		90日			
	4月	100日			公賣
		110日	1萬5千원	1萬5千원	
		120日			
		130日	2萬원	2萬원	
加算率			<加算金率> ① 納稅告知後 20日經過(1次) :稅額의 10% ② 納稅告知後 50日經過(2次) :稅額의 5% ③ 納稅告知後 80日經過(3次) :稅額의 5% 合計:稅額의 20%	<加算稅率> ① 物品搬入後 30日經過:課稅標準의 0.5% ② 物品搬入後 50日經過:課稅標準의 1.0% ③ 物品搬入後 80日經過:課稅標準의 1.5% ④ 物品搬入後 110日經過:課稅標準의 2.0%	
非適用物品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輸入物品 ② 郵便物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輸入物品 ② 旅行者와 乘務員의 휴대품및우편물 ③ 移徙貨物 ④ 外交官用物品·無條件免稅物品·特殊物品免稅物品	

나. 異議 및 訴願制度의 改編(法 第38條 乃至 第43條의5)

關稅에 관한 異議申請 및 訴願制度를 國稅基本法에 의한 內國稅의 審査請求節次에 준하여 改善함으로써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關稅關係爭訟의 早期確定을 기하도록 하였다.

權利救濟制度 比較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異議申請등의 對象	• 稅關長의 處分(作爲)	• 稅關長의 不作爲 追加
監査院審査請求 / 行政訴訟提起 (期間)	• 處分을 안 날로부터 6月內·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年內 (監査院法·行政訴訟法)	• 處分을 안날(處分의 通知를 받은날)로부터 60日內 (納稅者 外國居住時는 90日內)
異議등의 提起期間	•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1月內 (부득이한 경우 延長可能)	• 處分을 안날(處分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
代 理 人		• 辯護士·關稅士
裁決期間		• 提起日로부터 60日內
關係書類의 열람 및 意見陳述		• 열람 및 意見陳述權 있음
申請書등의 補正期間	• 7日內 稅關長이 定하는 期間	• 10日內 稅關長이 定하는 期間
異議등의 提起機關	• 당해 稅關長에게 / • 당해 稅關長을 경유 關稅廳長에게 (提起)	• 改正前과 같음
異議申請등의 效果	• 당해 處分의 效力을 停止하지 아니함.	• 改正前과 같음
決定의 種類	• 却下·棄却·認容	• 改正前과 같음

다. 關稅減免對象의 調整

關稅減免對象을 다음과 같이 追加 또는 調整하였다.

(1) 特定用途免稅對象의 追加(法 第28條의3)

財務部令으로 定하는 科學技術硏究開發 支援團體에서 硏究開發機關에 供給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試藥類중 主務部長官이 國産이 困難하다고 認定하는 物品

(2) 再輸出減免對象의 調整(法 第29條)

國際運送을 위하여 輸入하는 空콘테이너로서 輸入免許日로부터 3月內에 再輸出하는 것

(3) 再輸出減免對象의 追加(法 第29條의2)

財務部令이 定하는 船舶으로서 輸入免許日로부터 5年內에 再輸出하는 것(例 : 임차준설선등)

(4) 無條件免稅對象의 追加(法 第30條)

輸入國의 公認檢定機關에서 品質등을 保證하기 위하여 發給한 輸出物品貼付用 證票(라벨)로서 財務部令이 定하는 것(例 : UL.마크, C.S.A.마크등).

라. 關稅分割納付制度의 改善(法 第36條)

(1) 敎育 및 技術人力開發의 支援을 위하여 學校 및 國公立職業訓練院에서 輸入하는 物品에 對한 關稅를 2年間 分割納付할 수 있게 하였다.

(2) 重要産業關稅分割納付對象으로 機械類 및 基礎設備品外에 建設用材料 및 그 構造物을 明示하였다.

마. 關稅犯處罰의 強化(法 第179條·第181條)

健全한 納稅風土 造成을 위하여 禁止品輸出入犯 및 無免許輸出入犯에 대한 財産刑을 強化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禁止品輸出入犯	① 懲役 : 1年以上의 有期 ② 罰金 : 500萬원以下 ③ 당해物品沒收	① 現行과 같음 ② 罰金 : 2,000萬원以下 ③ 現行과 같음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無免許輸出入犯	① 懲役 : 5年以下 ② 罰金 : 物品原價의 2倍以下 ③ 당해物品沒收	① 現行과 같음 ② 罰金 : 物品原價의 3倍以下 ③ 現行과 같음

바. 其　他

(1) 國際協約에 의한 關稅讓許品目의 讓許撤回發效節次의 簡素化(法 第7條)

GATT등 關稅에 관한 國際協約에서 우리나라가 關稅率을 讓許한 品目중 一部品目의 讓許를 撤回한 때에는 協約의 一部修正에 불과한 것이며 國民經濟上 撤回의 迅速한 發效가 必要한 것이므로 國會同意節次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關稅未納인 違約物品 再輸出時의 賦課取消(法 第35條)

輸入物品이 契約內容과 相異한 物品으로서 一定期間內에 再輸出하는 경우에는 徵收한 당해 關稅를 還給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徵收猶豫등의 事由로 당해關稅가 徵收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處理節次가 없었으므로 이 때에는 당해 關稅의 賦課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輸出物品에 대한 申告取下 制限의 緩和(法 第142條)

輸出入등의 申告에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取下할 수 있으나 다만 물품을 藏置場에서 搬出한 後에는 取下할 수 없도록 制限하고 있는바, 輸出의 경우에는 輸入國의 事情등에 의하여 藏置場에서 物品을 搬出한 後에도 輸出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輸出支援을 위하여 이를 緩和하여, 輸出申告에 대하여는 藏置場에서 物品을 搬出한 後에도 取下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關 稅 率

가. 關稅率構造 改編의 基本方向

(1) 產業의 均衡的 發展支援

現行 關稅率構造는 產業間 保護稅率의 隔差가 甚하여 效果的인 資源配分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過當保護되고 있는 輕工業製品의 關稅率은 引下하고, 保護에서 疎外되고 있는 重化學工業製品의 關稅率은 引上하여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誘導함과 同時에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促進시키도록 하였다.

〈均一保護體制의 指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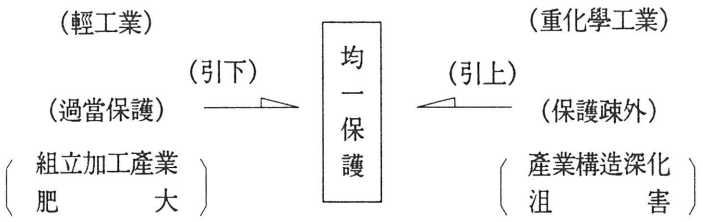

(2) 資源節約과 國產開發促進

지금까지 無稅 내지 低關稅率의 特惠를 받아오던 一部 基礎原資材에 對하여서도 關稅를 賦課하거나 漸進的으로 引上調整되도록 하므로서 國內 賦存資源의 開發을 促進하고 經濟構造의 過度한 海外依存을 減少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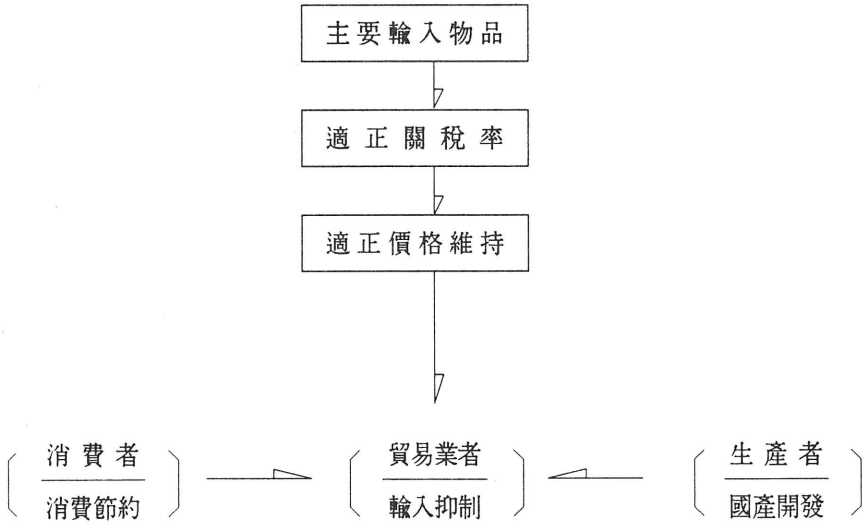

(3) 第4次經濟開發5個年計劃支援

第4次5個年計劃의 優先順位產業인 鐵鋼·產業用機械·電子機器 및 造船業을 重点支援토록 하였다.

(4) 關稅率構造의 單純化

17段階로 多岐化되어 있는 現行 關稅率 構造를 單純化하기 爲하여 中間稅率을 廢止하여 10段階로 縮小統合시키고 類似品目의 稅率을 可能한 限 均一化시킴으로써 關稅行政의 合理化를 期하도록 하였다.

나. 關稅率 調整內容

(1) 總　括

(가) 關稅率構造 單純化

改正 關稅率構造를 現行과 對比하여 보면 中間稅率인 5%, 15%, 35%, 50% 및 70%와 選擇稅가 廢止되어 17段階에서 10段階로 縮小되었다.

(나) 品目數의 縮小調整

同一한 稅審內에 品目數가 過多하게 細分되고 品目마다 相異한 稅率이 策定되어 있을 뿐 아니라 類似한 品目에 對하여도 明確한 區分 基準없이 稅率에 差異를 두었기 때문에 課稅上 納稅者와의 摩擦等 여러가지 問題点이 惹起되어 왔으므로 이번 關稅率 調整에 있어서는 以上과 같은 合理한 分類를 除去하기 爲하여 品目數도 大幅縮小하였고 稅率政策에 있어서도 愼重을 期하였다.

關稅率 構造對比

區　分	稅　率	品　目　數		構　成　比(%)	
		改正前	改　正	改正前	改　正
國際慣例	無　稅	219	44	5.5	1.7
財政關稅	5%	103	—	2.6	—
	10	412	54	10.3	2.1
	15	102	—	2.5	—
	20	1,425	1,209	35.7	48.0

區分	稅率	品目數		構成比(%)	
		改正前	改正	改正前	改正
保護關稅	25	13	—	0.3	—
	30	360	238	9.0	9.4
	35	16	—	0.4	—
	40	315	411	7.9	16.3
	50	383	—	9.6	—
	60	246	292	6.2	11.6
規制關稅	70	47	—	1.2	—
	80	215	159	5.4	6.3
	100	99	82	2.5	3.3
	150	11	17	0.3	0.7
其他	選擇稅	7	—	0.2	—
	從量稅	23	15	0.6	0.6
	計	3,996	2,521	100.0	100.0

段階 : 17→10

(다) 品目別 稅率 變更內容

① 稅率引下品目의 例示(780個)

品名	稅率		品名	稅率	
	改正前	改正		改正前	改正
醫藥品	60%	40%	熔接棒	40%	30%
화이트카본	40	30	船舶用엔진	50	30
男子用外衣類	80	60	冷媒壓縮機	50	40
耐火벽돌	40	30	齒車類	40	30
貯藏탱크	40	30	T·V(天然色)	100	60
드럼	50	40	라디오	80	60
볼트와너트	40	30	小型乘用自動車	150	100
스프링	40	30	繼電器	50	30

② 稅率引上品目의 例示(616個)

品名	稅率		品名	稅率	
	改正前	改正		改正前	改正
麥芽麥	30%	40%	無繼目鋼管	20%	30%
大豆	10	20	壓縮機	20	30
石綿	10	20	工業用爐	10	20
機械油	20	30	製紙機械	10	20
耐火시멘트	20	30	E. D. P. S	10	20
原綿	0	20	貨物自動車	50	60
銑鐵	10	20	트레일러	50	60
古鐵	0	10	버스용샤시	50	60
銅屑	10	20	時計部品	30	40

(2) 關稅機能別 稅率變更內容

(가) 財政關稅品目(10%, 20%)

關稅로서 保護할 必要가 없고 오로지 財政收入만을 目的으로 하는 原材料等의 品目에 對하여는 關稅率을 10% 또는 20%로 策定하였다. 10% 適用을 받는 品目은 原油·有煙炭등과 같이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天然資源과 原木·古鐵등과 같이 國內生產이 一部 可能하나 長期間 그 需要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는 것이며, 其他 品目은 20%를 策定하였다.

그러나 國內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여 無稅 및 10%以下의 低稅率品目은 年度別로 時限을 定하여 段階的으로 引上하였다.

豫示稅率 對象品目

品目	改正前稅率		年次別豫示稅率					備考
	基本	實行	'77	'78	'79	'80	'81	
小麥	10%	0%	0%	0%	0%	5%	10%	糧穀稅率과 均衡
牛脂	20	15	15	20	20	20	20	GATT 30%
소금	10	5	5	7.5	10	10	10	
石綿	15	10	15	17.5	20	20	20	GATT 15%
鑛石	0	0	2.5	5	7.5	10	10	鑛·鉛·亞鉛·銅鑛石除外

品目	改正前稅率		年次別豫示稅率					備考
	基本	實行	'77	'78	'79	'80	'81	
有煙炭	10%	0%	0%	0%	0%	0%	0%	無煙炭코오크스保護
코오크스	5	5	7.5	10	15	20	20	〃
원유	5	0	0	0	0	0	0	財政關稅
프로피렌테트라마	0	0	0	0	5	10	10	稅率均衡(合成洗劑原料)
아루미나	5	5	5	7.5	10	15	20	〃
프로피렌(아크릴모노마用)	15	5 15	5	5	10	20	20	石油化學計劃支援
스티렌(合成고무用)	0	0	0	0	10	20	20	合成樹脂用 20%
EDC(VCM用)	0	0	0	0	20	20	20	他合成樹脂原料 20%
電氣絶緣紙	20	20	25	30	30	30	30	特殊紙開發促進
綿	10	0	5	10	15	20	20	化纖代替促進
銑鐵	10	10	12.5	15	20	20	20	國產充足
古鐵	5	0~10	5	5	7.5	10	10	稅率均衡
解體用船舶	5	5	5	5	7.5	10	10	〃
銅屑	15	10	12.5	15	20	20	20	國內製鍊保護
合金鋼材	5~10	10	10	15	20	20	20	特殊鋼產業保護
알루미늄塊	10	10	12.5	15	20	20	20	GATT 10%
電氣機關車	0	0	0	5	10	15	20	國產化促進
디젤機關車	0	0	2.5	5	5	10	20	〃
電動車	0	0	5	7.5	10	15	20	〃
디젤動車	0	0	5	7.5	10	15	20	〃
船舶(12年未滿)	0	0	0	0	2.5	5	10	現 10年→2年 延長
船舶(12年以上)	5	5	5	10	15	20	20	〃
鐵鋼漁船(12年未滿)	0	0	0	2.5	5	10	20	〃

(4) 保護關稅品目

保護對象을 高率保護와 低率保護로 區分하여 勞動 및 技術集約的이고 附加價值가 比較的 높

은 機械·電子·造船·合成樹脂等 重化學工業을 高率(40%, 60%)로 保護하고, 資本集約的이고 附加價値가 적은 同時에 長期間에 걸쳐 充分한 保護를 받아온 纖維·皮革·고무·製紙等 輕工業은 低率(30%, 40%)로 保護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年次別 引下豫示稅率을 導入하여 企業의 經營合理化를 促求하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爲한 促進劑가 되도록 하였다.

豫 示 引 下 稅 率

年度 / 稅率	1977年	1978年	1979年	1980年	1981年
60%	60%	60%	50%	50%	40%
40%	40%	40%	35%	35%	30%
30%	30%	30%	25%	25%	20%

(다) 輸入規制關稅品目

國內生産이 可能한 不要不急品 및 耐久消費財에 對한 高關稅率을 60% 내지 40%로 大幅 引下하여 이 部門에 過度한 投資誘因을 抑制토록 하였고 菓子·調製食料品·保溫瓶·陶磁器等을 80%에서 60%로, 洋傘·피아노·萬年筆·化粧品等을 100%에서 60%로 引下하였다.

그러나 酒類·담배 高級乘用車等에 對하여는 最高稅率인 同時에 禁止稅率인 150%를 維持하였다.

또한 從前稅制와 改正稅制下에서의 諸稅負担(內國消費稅包含)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物價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線에서 關稅率을 調整하였기 때문에 物價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다. 簡易稅率

旅行者가 携帶輸入하는 物品과 郵便物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簡易稅率을 適用하도록 되어 있는바 簡易稅率 算出의 基礎가 되는 關稅率이 1977年1月1日字로 變更되므로 課稅의 衡平을 期하기 爲하여 簡易稅率도 調整되었다.

關稅率의 水準이 現行 31.3%에서 29.5%로 引下調整되었기 때문에 簡易稅率도 大體로 引下調整되었다.

(1) 引上品目

品名	稅率	
	改正前	改正
香水	55	60
골프用具	70	75

(2) 引下品目 例示(醫藥品等 35個品目)

品名	稅率	
	改正前	改正
커피와 코코아	65	60
其他調製食料品	40	30
醫藥品	30	25
其他化粧品	55	45
고무 또는 人造플라스틱製品	40	35
感光紙	55	40
파충류가죽제품	60	50
기타皮革製品	50	40
織物製品	60	50
卑金屬製裝飾用品	45	30

附 加 價 値 稅 法

[要　　約]

附加價値稅는 現在의 複雜多岐化된 間接稅體系와 租稅行政의 簡素化를 기하여 納稅를 便宜하게 하고 稅金計算書의 接受에 의하여 去來를 陽性化하여 根據課稅의 基盤을 構築할 수 있고 또한 輸出 및 投資에 대한 間接稅의 完全還給에 의한 輸出 및 投資의 促進, 重複課稅의 排除에 의한 物價의 累積的 上昇要因의 除去, 企業의 垂直的 統合利益의 排除에 의한 企業의 系列化 促進등의 長點을 지닌 間接稅制度이다.

이번에 새로이 制定된 附加價値稅法은 同制度의 이와같은 長點을 살려 間接稅制度에 있어서 綜合所得稅制度의 採擇과 같이 間接稅制度를 近代化하기 위한 目的을 갖고 있다.

가. 課稅對象을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과 物品의 輸入으로 함
나. 課稅期間은 6個月로 하되 2個月마다 豫定申告納付를 하도록 함
다. 稅率은 13%의 單一稅率로 하되 景氣調節을 目的으로 同稅率에 3%를 加減한 範圍안에서 調整할 수 있게 함
라. 免稅는 輸出등 外貨獲得物品 및 用役의 提供에 대한 完全免稅 즉, 零稅率適用制度와 基礎生活必需品 및 用役과 國民厚生用役등에 대한 一般免稅의 2種類를 둠
마. 稅金計算書는 買入稅額控除의 必須要件으로서 去來時마다 交付하게 함
바. 年間販賣金額이 1,200萬원 未滿(代理등의 경우에는 300萬원 未滿)인 零細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供給對價의 2%(代理등의 경우에는 3.5%)를 納付토록 하는 課稅特例를 둠

1.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法 第1條·第6條 내지 第8條)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은 物品(附加價値稅法에서는 「財貨」라고 하고 있으나 理解의 便宜를 위하여 本書에서는 「物品」이라고 함)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附加價値細法에서는 「供給」이라고 하고 있으나 理解의 便宜를 위하여 物品의 경우에는 「販賣」로 用役의 경우에는 「提供」이라고 함)과 物品의 輸入이다.

가. 財貨(物品)의 供給(法 第6條)

(1) 物品의 範圍(令 第1條)

物品이라 함은 商品·製品·原料·機械·建物等의 모든 有體物과 動力·熱·개스等의 모든 無體物로서 財産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課稅對象인 物品의 販賣(法 第16條第1項, 令 第14條)

物品의 販賣는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物品을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去來를 말한다.

(가) 現金販賣·外上販賣·割賦販賣·延拂販賣·條件附 및 期限附販賣·委託販賣 其他 賣買契約에 의하여 物品을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

(나) 自己가 主要資材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고 相對方으로부터 引渡받은 物品에 工作을 가하여 새로운 物品을 만드는 加工契約에 의하여 物品을 引渡하는 것

(다) 物品의 引渡對價로서 다른 物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提供받는 交換契約에 의하여 物品을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

(라) 公賣·競賣·收用·現物出資 기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하여 對價를 받고 物品을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

(3) 物品의 販賣로 보는 去來(法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 令 第15條·第16條)

다음과 같은 去來의 경우에는 이를 物品의 販賣로 본다.

(가) 自家消費(自家供給)

事業者가 自己의 事業과 關聯하여 生産 또는 取得한 物品을 自己의 事業을 위하여 直接 使用 또는 消費하는 경우. 다만, 原料·資材등으로 使用 또는 消費하는 在庫去來의 경우에는 物品의 販賣로 보지 아니한다.

(나) 私用消費(私用供給)

事業者가 自己의 事業과 關聯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物品을 自己나 그 使用人의 個人的인 目的을 위하여 使用 또는 消費하는 경우

(다) 免稅轉用

事業者가 自己의 課稅事業과 關聯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物品을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事業을 위하여 使用 또는 消費하는 경우

(라) 事業上 贈與

事業者가 自己의 事業과 關聯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物品을 自己의 顧客이나 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 다만, 주된 거래인 물품의 販賣의 對價에 包含되지 아니한다고 認定되는 것에 限한다.

(마) 廢業時의 在庫物品

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 또는 事業開始日前에 登錄한 경우로서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殘存하는 物品이 있는 경우

(바) 直賣場에의 搬出

事業者가 自己의 事業과 關聯하여 生産거나 取得한 物品을 販賣하기 위하여 特別히 設置한 事業場인 直賣場에 物品을 搬出하는 경우. 다만, 事業者가 物品의 단순한 保管·管理施設만을 갖추고 荷置場設置申告를 한 場所인 荷置場에의 搬出은 物品의 販賣로 보지 아니한다.

(4) 物品의 販賣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法 第6條第6項, 令 第17條)

다음과 같은 去來의 경우에는 物品의 販賣로 보지 아니한다.

(가) 擔保提供

物品을 質權·抵當權과 讓渡擔保의 目的으로 引渡하는 경우

(나) 事業의 讓渡

事業場別로 그 事業에 관한 모든 權利(未收金에 관한 것을 除外한다)와 義務(未支給金에 관한 것을 除外한다)를 包括的으로 承繼시키는 경우

(5)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物品의 賣買(法 第6條5項)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直接 物品을 販賣하거나 購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匿名去來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本人과 受託者 또는 代理人 사이에 그리고 受託者 또는 代理人과 受託者 또는 代理人으로부터 供給을 받은 者 사이에 各各 物品의 賣買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用役의 供給(法 第7條)

(1) 用役의 範圍(令 第7條)

用役이라 함은 物品 以外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役務 및 其他行爲를 말하며 다음의 事

業에 該當하는 모든 役務 및 其他行爲로 한다.

(가) 建設業

(나) 飮食 및 宿泊業

(다) 運輸·倉庫 및 通信業

(라) 金融·保險·不動産 및 用役業. 다만, 不動産賣買業을 除外한다.

(마)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

(2) 課稅對象인 用役의 提供(法 第7條第1項, 令 第18條)

用役의 提供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運送등의 役務를 提供하거나 機械등의 財貨·禮式場등의 施設物 또는 營業權·特許權등의 權利를 使用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建設業의 경우에는 建設業者가 建設資材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는 경우에도 用役의 提供으로 보며 또한 相對方으로부터 引渡받은 物品에 主要資材중 一部도 負擔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가공을 하여 주는 것도 용역의 提供으로 본다.

(3) 用役의 提供으로 보는 去來(法 第7條第2項, 令 第19條)

事業者가 自己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 用役을 提供하는 自家供給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課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用役이 自家供給됨으로써 다른 事業者의 競爭條件이 不利하여지는 現象이 發生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指定하는 用役에 한하여 課稅對象이 되도록 하고 있다.

(4) 用役의 提供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法 第7條第3項)

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에게 用役을 提供하거나 雇傭關係에 의하여 勤勞를 提供하는 것은 用役의 提供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財貨(物品)의 輸入(法 第8條, 令 第20條)

(1) 物品의 輸入은 課稅되지만 用役의 輸入은 課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用役은 提供地, 즉 供給地에서 課稅되기 때문에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부터 用役을 輸入하는 경우에도 그 用役이 國內에서 提供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用役의 國內供給으로서 事實上 課稅되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2) 物品의 輸入은 外國物品(外國船舶이 公海에서 採捕한 水產物을 包含한다)이나 外國으로 輸出하기 위하여 輸出免許를 받은 物品을 우리나라에 引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保稅區域을 거쳐 우리나라에 引渡되는 경우에는 그 保稅區域으로부터 引渡할 때 輸入되는 것으로 본다.

2. 納稅義務者(法 第2條)

營利目的의 有無에 不拘하고 事業上 獨立的으로 物品이나 用役을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者는 附加價値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自然人인 個人 및 國家·地方自治團體등 公法人을 包含한 法人과 기타 法人格없는 社團·財團·其他團體가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事業이라 함은 事業上 또는 職業上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또한 附加價値稅는 一般消費稅이기 때문에 事業者의 營利性 有無에 關係없이 納稅義務者로 規定하고 있다.

3. 課稅期間과 納稅地(法 第3條·第4條)

가. 課稅期間(法 第3條)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個人 또는 法人에 關係없이 劃一的으로 曆法에 의하여 計算한 6月로 하고 있다. 附加價値稅會計는 費用收益對應의 原則이나 期間計算의 原則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法人의 事業年度에 따라 課稅期間을 정할 필요가 없이 1月부터 6月과 7月부터 12月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경우등에 대한 課稅期間은 各各 다음과 같다.

(1)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의 最初의 課稅期間

事業開始日부터 그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

(2) 事業開始日前에 登錄한 경우의 最初의 課稅期間

登錄日부터 그 登錄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

(3) 廢業하는 경우의 最終課稅期間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廢業日까지

(4) 事業開始日前 登錄한 후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課稅期間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

나. 納稅地(法 第4條, 令 第4條 내지 第6條)

附加價値稅는 原則的으로 事業場마다 納付하도록 하고 있으나 2以上의 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所定의 節次를 취하여 주된 事業場인 本店 또는 主事務所(法人의 경우에는 本店以外에 支店도 주된 事業場으로 할 수 있다)에서 總括하여 納付할 수 있다. 여기에서 事業場은 事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常時 駐在하여 去來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하는 場所를 말한다.

4. 登錄 및 檢閱(法 第5條)

가. 登　錄(法 第5條第1項·第2項, 令 第7條·第8條)

附加價値稅業務를 效率的으로 處理하고 納稅義務者의 動態를 정확히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事業者는 所管稅務署에 登錄을 하도록 하고 있다.

(1)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場마다 20일내에 稅務署에 登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事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도 開業準備期間中의 買入稅額을 還給받기 위하여 미리 登錄할 수 있다. 미리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買入稅額을 還給받지 못하므로 그만큼 不利益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는 事業者 또는 事業場마다 固有한 登錄番號가 賦與된 事業者登錄證을 交付한다.

나. 檢　　閱(法 第5條第3項, 令 第9條)

事業者登錄證은 每年 2回 즉, 1月 1日부터 1月 31日까지와 7月 1日부터 7月 31日까지 所管稅務署長에게 檢閱을 申請하여 그 檢閱을 받아야 한다.

다. 休·廢業 및 訂正申告와 登錄抹消(法 第5條第4項·第5項, 令 第10條 내지 第13條)

登錄을 한 事業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商號의 變更·合併등 登錄한 事項에 變動이 發生한 때 또는 앞으로 開業할 것이라고 登錄한 후 事實上 開業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確定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稅務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또한 事業者 廢業하거나 開業할 것이라고 登錄한 후 事實上 開業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事業者登錄證의 惡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稅務署長은 지체없이 登錄을 抹消하고 登錄證을 回收한다.

5. 零稅率適用과 免稅(法 第11條·第12條)

附加價値稅制에서의 免稅制度는 完全免稅인 零稅率適用과 一般免稅의 2種類가 있다.

零稅率適用은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賣出稅額을 計算할 때 供給價額에 대하여 零의 稅率을 適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賣出稅額은 恒常 零이 되므로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에 대하여 그 供給價額 이외에 附加價値稅를 별도로 徵收하지 아니하여도 됨과 同時에 다른 事業者로부터 物品 또는 用役을 購入하거나 提供받을 때 徵收당한 買入稅額은 還給稅額으로서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어 附加價値稅의 負擔이 전혀 없게 되는 免稅制度이다. 附加價値稅制에서의 一般免稅制度인 免稅는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에 대하여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가 免除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免稅對象이 되는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에 대하여는 零稅率適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購入者 또는 用役을 提供받는 者로부터 附加價値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買入稅額에 대하여는 零稅率適用의 경우와는 달리 還給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免稅로 하는 경우에는 當該 免稅事業者 段階에서 發生하는 附加價値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結果가 되어 그 免稅되는 物品 또는 用役을 購入하거나 提供받는 消費者가 그 만큼의 稅負擔을 輕減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免稅規定을 두는 理

由는 事業者의 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物品 또는 用役을 購入하거나 提供받는 消費者의 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한 措置이므로 免稅對象은 基礎生活必需品 및 用役 또는 國民厚生用役等에 局限하고 다만, 附加價値를 形成하게 되는 構成要素인 勤勞用役·金融用役·不動產賃貸등에 대하여도 그 基本原理上 課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對象 및 免稅對象인 物品과 用役은 다음과 같다.

가. 零稅率適用對象인 物品 또는 用役(法 第11條, 令 第24條 내지 第26條)

(1) 輸出하는 物品(內國信用狀에 의하여 供給하는 物品을 包含한다)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 및 이에 附隨되는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으로서 다음에 揭記하는 것

(가) 다른 外國航行事業者가 運用하는 船舶·航空機의 乘船券·搭乘券을 販賣하거나 貨物運送契約을 締結하는 것

(나)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내 또는 航空機內에서 乘客에게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것

(다) 自己의 乘客만이 專用하는 버스를 搭乘하게 하는 것

(라) 自己의 乘客만이 專用하는 호텔에 投宿하게 하는 것

(4) 其他 外貨獲得事業 또는 用役

(가) 外國의 顧客으로부터 依賴를 받아 提供하는 保稅加工·廣告·資料處理 및 物品賣渡確約書發行의 用役

(나)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을 營爲하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內國代理店의 事業

(다)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 및 航空機의 또는 遠洋漁船에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라) 國內에 駐在하는 外國政府機關·國際機構·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에게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마) 觀光事業法에 의한 國際旅行斡旋業者·觀光宿泊業者 또는 觀光記念品販賣業者가 外國人觀光客에게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觀光斡旋用役·宿泊用役 및 觀光記念品

(바) 駐韓國際聯合軍·美國軍이 駐屯하는 地域內의 事業者로서 所管稅務署長이 指定하는 자가 國內에서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나. 免稅對象인 物品 또는 用役(法 第12條, 令 第28條 내지 第39條)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을 包含한다)과 우리나라에서 生產된 食用에 공하지 아니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 다음에 揭記하는 것으로서 加工되지 아니하거나 脫穀·精米·精麥·製粉·精肉·乾燥·冷凍·염장·包裝 기타 原生產物의 本來的 性質이 변하지 않는 程度의 1次加工을 거쳐 食用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가) 穀 類

(나) 薯 類

(다) 特用作物類

(라) 果實類

(마) 菜蔬類

(바) 獸畜類

(사) 獸肉類

(아) 乳卵類(牛乳 및 粉乳를 包含)

(자) 貝 類

(차) 海藻類

(카) (가) 내지 (차) 이외에 食用에 공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林產物과 기타 單純加工食料品

(2) 수도물

(3) 煉炭과 無煙炭

(4) 醫療保健用役(獸醫師의 用役 包含)과 血液

(5) 敎育用役

(6) 顧客運送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貰버스 또는 택시에 의한 用役은 除外한다.

(7) 圖書·新聞·雜誌·官報·通信과 放送. 다만, 廣告는 除外한다.

(8) 郵票(蒐集用 郵票는 除外) 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9) 專賣品

(10) 金融·保險用役

(11) 不動產賃貸

(12) 土 地

(13)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關稅士와 所得稅法施行令 第36條第4號(가)(나)(다)(바)(자) 및 第38條에 規定하는 事業을 하는 자가 職業上 提供하는 人的用役

(14) 藝術創作品·純粹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 競技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17) 다음의 政府業務代行團體가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가) 別定郵遞局

(나) 農地改良組合과 農業振興公社

(다) 農業協同組合과 中央會

(라) 水產業協同組合

(마) 葉煙草生產組合과 聯合會

(바) 大韓住宅公社

(사) 韓國道路公社

(아) 韓國技術檢定公團

(자) 韓國海外開發公社

(차) 韓國造幣公社. 다만, 附帶業務는 除外

(카) 山林契·山林組合과 聯合會

(타) 住宅建設促進法 또는 特定地區開發促進에 관한臨時措置法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建設業體(25坪以下의 住宅을 建築하는 경우에 한함)

(18)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公益團體에 無償으로 贈與하는 物品

다. 免稅對象이 되는 物品의 輸入(法 第12條第2項, 令 法 第40條 내지 第46條)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공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을 包含한다)

(2) 圖書·新聞과 雜誌
(3)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敎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 物品
(4) 宗敎儀式·慈善·救護·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敎團體·慈善團體 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物品
(5) 外國으로부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物品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寄贈받는 자가 直接 使用할 것으로 認定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것
(7) 移徙·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한 物品
(8) 旅行者携帶品·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物品
(9) 輸入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10)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映畵祭 또는 이와 類似한 行事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11)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物品
(12) 輸出된 후 다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
(13) 다시 輸出하는 條件으로 一時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
(14) 其他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物品

라. 免稅의 抛棄(法 第12條第4項, 令 第47條)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 또는 提供으로서 零稅率適用의 對象이 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지 아니하고 課稅 즉 零稅率의 適用을 받을 수 있다.

6. 課稅標準(法 第13條)

가. 課稅標準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物品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에서 附加價値稅를 控除한 金額. 즉, 供給價額이다. 供給價額에는 代金·手數料·料金등 모든 金額을 包含한다. 金錢으로 對價를 받을 때에는 그 金錢의 合計額으로 供給價額이 決定되겠지만 現物로 對價를 받는 경우와 不當하게

낮은 對價를 받거나 對價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己가 販賣하거나 提供한 物品 또는 用役의 時價가 課稅標準이 된다. 그리고 廢業의 경우 殘存하는 物品도 時價에 의하여 課稅하게 된다.

나. 課稅標準에 包含되지 아니하는 金額(法 第13條第2項)

(1) 에누리額
(2) 還入된 物品의 價額
(3) 破損된 物品의 價額
(4) 國庫 또는 公共補助金

다. 課稅標準에 包含되는 金額(法 第13條第3項)

(1) 割引額
(2) 貸損金
(3) 奬勵金

라. 物品의 輸入의 경우(法 第13條第4項)

關稅課稅價格(正常到着價格)에 關稅·特別消費稅와 酒稅를 合計한 金額이 課稅標準이다.

마. 去來形態別 去來時期 및 課稅標準

去來形態別로 物品 또는 用役이 販賣되거나 提供되는 時期 즉, 去來時期와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다.

(1) 物品의 供給

去 來 形 態	去 來 時 期	課 稅 標 準
現金·外上販賣	引渡되는 때	販賣된 物品의 總價額
割賦·延拂販賣	契約에 의하여 對價의 各部分을 받기로 한 때	契約에 의하여 받기로 한 對價의 各部分의 價額
條件附販賣	條件이 成就되는 때	〃
期限附販賣	또는 販賣가 確定되는 때	〃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條件附販賣	契約에 의하여 對價의 各部分을 받기로 한 때	
物品의 賃加工	引渡되는 때	供給된 賃加工物品의 加工料
自家供給	使用·消費되는 때	自家供給된 物品의 時價
廢業時 在庫物品	廢業하는 때	在庫物品의 時價
無人販賣	現金을 引取하는 때	引取한 現金額
其他物品의 移動이 必要한 경우의 販賣	引渡되는 때	去來相對者로부터 받는 對價
其他 物品의 移動이 不必要한 경우의 販賣	利用可能하게 되는 때	〃
委託販賣·代理人販賣	受託者 또는 代理人의 供給時期	〃

(2) 用役의 提供

去 來 形 態	去 來 時 期	課 稅 標 準
通常的인 用役의 提供	役務의 提供이 完了되는 때	去來相對者로부터 받는 對價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 또는 延拂條件附用役의 提供	契約에 의하여 對價의 各部分을 받기로 한 때	契約에 의하여 받기로 한 對價의 各部分의 價額

7. 稅 率(法 第14條)

가. 附加價値稅의 基本稅率은 13%이다.

나. 附加價値稅에서는 景氣調節을 위해 彈力稅率 制度를 두고 있는데 그 範圍는 基本稅率의 上下 3%이다.

8. 稅金計算書(法 第16條, 令 第53條)

가. 稅金計算書는 前段階稅額控除方法에 의한 附加價値稅制下에서 가장 核心的인 書類이며 納付稅額은 이 稅金計算書에 의하여 自動的으로 計算되어지며 또한 稅金計算書는 자기가 物品 또는 用役을 買入할 때 徵收당한 附加價値稅 즉, 買入稅額을 控除할 수 있는 必須的 要件이다.

나. 稅金計算書의 種類와 交付者

稅金計算書의 種類와 交付者는 다음과 같다.

稅金計算書의 種類와 交付者

	種 類	交 付 者
1	稅 金 計 算 書	○ 事業者(簡易稅金計算書 金錢登錄機計算書 交付對象 除外)
2	輸入稅金計算書	○ 稅關長
3	簡易稅金計算書	1.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 포함)·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자로서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과세특례자
4	金錢登錄機計算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다. 稅金計算書의 書式

稅金計算書는 發行하는 者 즉,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者와 購入者 또는 提供받는 者의 保管用과 稅務署提出用으로 4部로 되어 있는데 供給者報告用稅金計算書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保管用은 必要的 記載事項以外에 去來에 必要한 事項을 任意로 記載할 수 있는 欄이 있다.

| 세 금 계 산 서 (공 급 자 보고용) | | |

다.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 計算例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다.

(1) 製造業의 경우

賣出稅額 1,300원(10,000원×13%)에서 買入稅額 910원(7,000원×13%)을 差減하면 納付稅額은 390원이 된다.

製造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賣 出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買 入	原 材 料	4,000	520	
	副 材 料	1,000	130	
	動 力	1,000	130	
	其 他	1,000	130	
	計	7,000	910	買入稅額 910
納 付 稅 額		3,000	390	

(2) 販賣業의 경우

賣出稅額 1,300원(10,000×13%)에서 買入稅額 1,040원(8,000원×13%)을 差減하면 納付稅額은 260원이 된다.

販賣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A 製 品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買 入	A 製 品	7,000	910	
	運 送 費	500	65	
	其 他	500	65	
	計	8,000	1,040	買入稅額 1,040
納付稅額		2,000	260	

(3) 서어비스業의 경우

賣出稅額 1,300원(10,000원×13%)에서 買入稅額 780원(6,000×13%)을 差減하면 納付稅額은 520원이 된다.

서비스業(貨物運送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運 送 費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買 入	디 젤 油	5,000	650	
	其 他	1,000	130	
	計	6,000	780	買入稅額 780
納付稅額		4,000	520	

10. 申告와 納付(法 第18條 乃至 第20條)

가. 豫定申告와 納付(法 第18條, 令 第64條)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6個月이지만 各課稅期間의 初日부터 2個月씩을 豫定申告期間으로 하여 當該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當該 豫定申告期間 終了後 20日內에 政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第1豫定申告期間 : 1.1~2月末 까지
(2) 第2豫定申告期間 : 3.1~4.30. 까지
(3) 第3豫定申告期間 : 7.1~8.31. 까지
(4) 第4豫定申告期間 : 9.1~10.31. 까지

나. 確定申告와 納付(法 第19條, 令 第65條)

事業者는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政府에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다. 稅金計算書의 提出(法 第20條)

事業者는 交付하였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를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時에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토록 하고 있다.

라. 附加價値稅와 現行營業稅, 物品稅 制度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附加價値稅와 現行制度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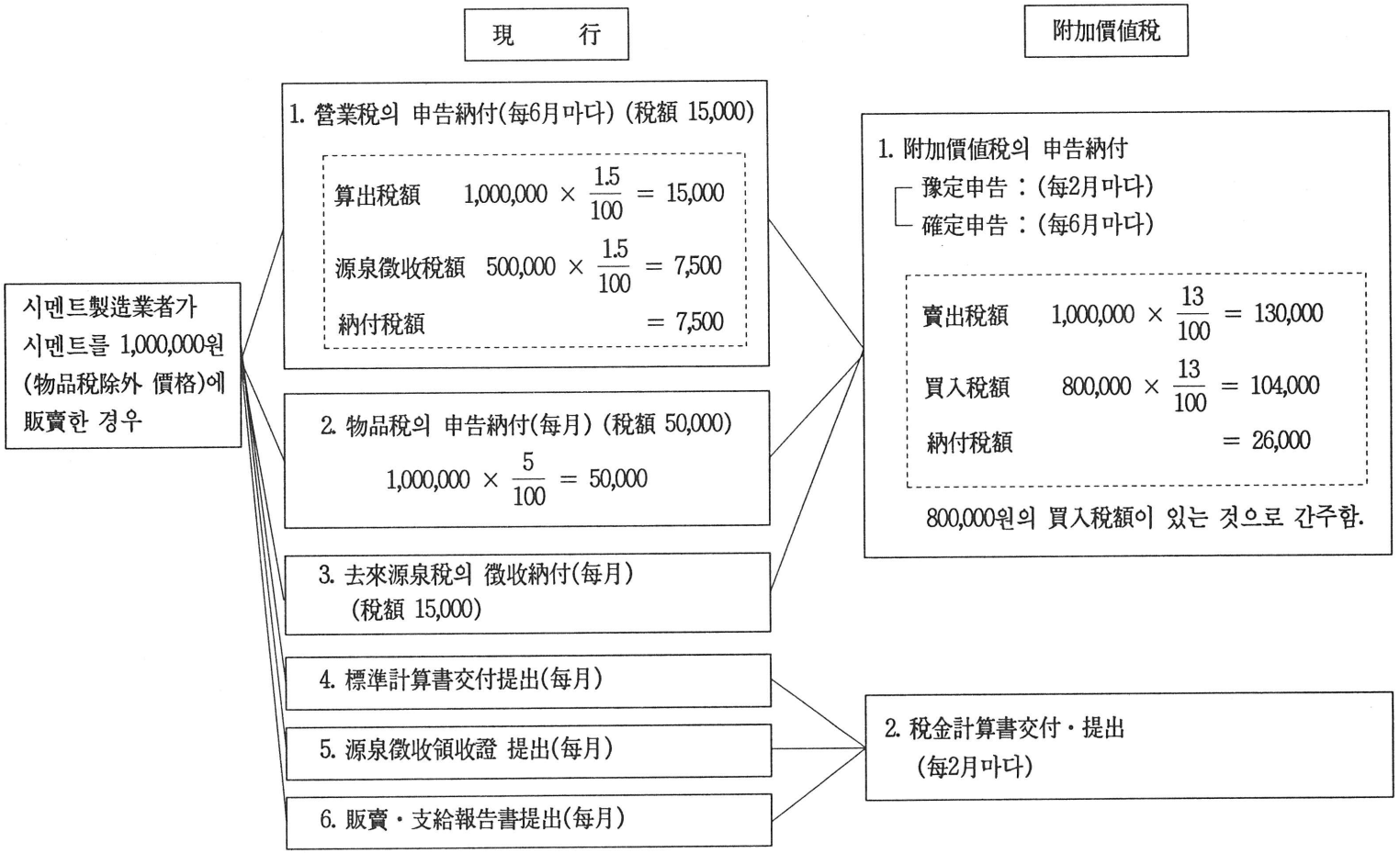

11. 更正·徵收·還給(法 第21條 내지 第24條, 令 第68條 내지 第73條)

가. 更　正

附加價値稅는 事業者의 申告에 의하여 確定되지만 申告가 없거나 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發見되는 때등의 경우에 한하여 各 課稅期間을 單位로 하여 政府의 調査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更正하며 現在와 같은 定期的인 調査決定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政府가 調査하는 때에는 稅金計算書·帳簿등을 根據로 하여 課稅標準 또는 稅額을 計算하되 事業者가 調査할 수 있는 證憑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證憑의 內容이 虛僞인 때에는 現在의 營業稅推計決定과 同一한 方法으로 推計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更正한다.

나. 加 算 額(法 第22條)

(1) 未登錄·未檢閱加算稅

新規 事業者가 事業開始日부터 20日이내에 登錄하지 아니하거나 事業者 登錄을 한 者가 每年 1月과 7月中에 檢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까지의 供給價格에 대하여 個人에 있어서는 1%, 法人에 있어서는 2%에 相當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

(2) 稅金計算書未交付·未提出·不明加算稅

事業者가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交付分에 대한 稅金計算書를 稅務署에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와 提出한 稅金計算書의 內容이 不明인 경우에는 當該 供給價額에 대하여 個人의 경우에는 1%, 法人의 경우에는 2%의 加算稅를 賦課하되,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稅金計算書를 確定申告時에 提出한 경우에는 그 稅金計算書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個人에 있어서는 0.5%, 法人에 있어서는 1%의 遲延提出加算稅를 賦課한다.

(3)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事業者가 豫定申告納付 또는 確定申告納付에 있어서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稅額이 申

告하여야 할 稅額과 다른 경우와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한 稅額이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는 때에는 當該 無申告·不實申告·無納付·過少納付分에 대한 稅額에 10%의 加算稅를 賦課한다.

다. 徵收(法 第23條, 令 第71條)

(1) 不誠實納付稅額에 대한 徵收

事業者가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를 하는 때에 申告한 納付稅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하게 納付한 稅額을, 그리고 政府가 更正 또는 再更正을 함으로써 追加로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 國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徵收한다.

(2) 豫定申告不誠實에 대한 徵收

事業者가 豫定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確定申告에 대한 更正과 마찬가지로 政府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決定하고 徵收할 수 있다.

(3) 物品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는 稅關長이 關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徵收한다.

라. 還給(法 第24條, 令 第72條·第73條)

附加價値稅制下에서는 輸出·投資·販賣不振·在庫增加·原料備蓄등의 경우에는 販賣稅額보다 買入稅額이 많게 되어 還給稅額이 發生하게 된다.

(1) 一般還給

附加價値稅의 還給은 原則的으로 課稅期間마다 確定申告期限經過後 10日內에 事業者에게 還給한다.

(2) 早期還給

一般的인 경우에는 還給稅額이 發生하지 아니하지만 輸出등 零稅率이 適用되거나 事業設備

의 新設·取得·擴張·增設 卽, 投資의 경우에는 通常的으로 還給稅額이 發生하기 때문에 당해 事業者의 資金負擔을 輕減하여 주기 위하여 豫定申告期間別로 그 豫定申告期限經過後 10日內에 事業者에게 還給하도록 하고 있다.

12. 課稅特例(法 第25條 내지 第30條)

附加價値稅制下에서는 零細한 個人小企業에 대하여는 正常的인 方法으로 附加價値稅를 賦課하지 아니하고 外形金額을 基準으로 特例稅率로 課稅하는 것이 納稅者와 行政當局에게 모두 便利한 것이며 이렇게 해도 零細個人小企業은 大部分 小賣商이기 때문에 重複課稅를 排除할 수 있는 附加價値稅의 長點을 毁損시키지 않는다.

가. 課稅特例의 適用對象(法 第25條)

附加價値稅를 包含한 年間 供給對價가 1,200萬원 未滿인 個人事業者는 課稅特例의 適用對象이 된다. 그러나 代理·仲介·周旋·委託販賣 및 都給의 경우에는 年間 供給對價가 300萬원 未滿인 個人事業者에 한하고 이러한 用役의 提供과 기타의 物品 또는 用役의 提供을 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代理등의 供給對價에 4를 곱한 金額과 기타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이 1,200萬원 未滿인때 課稅特例의 適用對象이 된다.

나. 課稅標準과 稅率(法 第26條, 令 74條)

課稅特例者에 대하여는 供給對價를 課稅標準으로 하여 그 金額의 2%(代理등의 경우에는 3.5%)를 納付稅額으로 한다.

다. 申告와 納付(法 第27條, 令 第75條)

課稅特例者도 一般的인 納稅義務者와 마찬가지로 豫定申告納付 및 確定申告納付의 義務가 있다. 課稅特例者가 各 豫定申告期間에 豫定納付하여야 할 稅額은 一律的으로 直前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의 3분의 1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 다만, 休業 또는 廢業의 경우에는 豫定納付를 할 必要가 없고 當該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가 直前課稅期間의 6분의1에 未達하는 때 또는 新規開業의 경우에는 當該 豫定申告期間의 實地供給對價를 基準으로 豫定納付할 수 있다.

課稅特例者가 正規의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아 政府에 提出한 경우에는 그 稅金計算書에 記載된 稅額의 5%相當額을 納付稅額에서 控除한다.

라. 更正과 徵收(法 第28條, 令 第76條·第77條)

(1) 課稅特例者에 대한 更正과 徵收方法 및 節次는 一般的인 納稅義務者와 同一하다.

(2) 課稅特例者가 政府가 정하는 一定率이상으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更正節次를 排除함으로써 零細企業의 納稅便宜와 行政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하고 있다.

(3) 課稅特例者에 대하여는 未登錄·未檢閱加算稅와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만을 賦課한다.

마. 少額不徵收(法 第29條)

課稅特例者의 各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이 7,500원 未滿인 때에는 그 稅額은 徵收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 加算稅도 適用하지 아니한다.

바. 課稅特例의 抛棄(法 第30條, 令 第78條)

課稅特例對象者로서 課稅特例의 適用이 販賣條件上 不利하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課稅期間開始 10日前에 課稅特例의 適用을 抛棄하고 一般的인 方法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計算하고 納付할 수 있다. 또한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個人은 事業者登錄과 함께 課稅特例의 適用對象與否를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一般的인 納稅義務를 진다.

課稅特例를 抛棄한 者는 그 抛棄한 課稅期間으로부터 3年間은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을 수 없다.

13. 記　　帳(法 第31條, 令 第79條)

事業者는 自己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關聯있는 모든 去來事實을 帳簿에 記錄하여야 하며 免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課稅事業과 區分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帳簿는 稅金計算書 또는 簡易稅金計算書와 함께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14. 金錢登錄機(法 第32條)

가. 設置對象(法 第32條第1項, 令 第80條第1項)

다음에 揭記하는 事業을 하는 事業者로서 業種과 經營規模를 基準으로 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管稅務署長이 指定하는 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1) 小賣業
(2) 飮食 및 宿泊業
(3) 用役業
(4)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

나. 新規事業者의 設置義務(令 第80條第2項·第3項)

新規로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國稅廳長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開始前에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또한 許可事業의 경우에는 事業許可(事業許可의 更新을 包含한다) 등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行政官廳은 當該 事業場所在地 所管稅務署長이 發行하는 金錢登錄機設置確認書를 提出받는 경우에 限하여 그 許可등을 하도록 한다.

다. 金錢登錄機設置者에 대한 惠澤(法 第32條第2項·第3項, 令 第81條)

(1) 金錢登錄機를 設置하고 領收證을 交付한 者에 대하여는 그 供給對價의 0.5% 相當額을 納付稅額에서 控除한다.

(2) 現金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課稅標準을 計算한다.

라. 金錢登錄機設置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法 第32條第5項, 令 第82條)

(1) 領收證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그 供給對價를 故意로 造作하는 때에는 그 事實이 2回 發見된 경우에는 事業許可의 取消를 할 수 있다.

(2)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로 指定된 者가 이를 期限內에 設置하지 아니한 때에는 15日間의 事業의 停止를, 事業의 停止期間이 經過한 後 30日內에 設置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業許可의 取消를 할 수 있다.

마. 金錢登錄機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받은 者에 대한 惠澤(法 第32條第6項, 令 第83條)

一般消費者가 金錢登錄機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받은 경우에는 그 供給對價의 1% 相當額을 補償金으로 支給한다.

그리고 事業者의 경우에는 購入하거나 提供받은 者와 附加價値稅額을 別途로 記載하고 發行者가 確認한 때에는 正規의 稅金計算書와 마찬가지로 그 附加價値稅額은 控除할 수 있는 買入稅額으로 본다.

15. 納稅管理人(法 第33條, 令 第84條)

個人事業者가 事業場에 通常的으로 駐在하지 아니하거나 6月以上 國外에 滯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選定하여 稅務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16. 代理納付(法 第34條, 令 第85條)

가. 代理納付

一般的인 用役以外에 施設物·財貨·權利등의 使用에 관한 用役등은 그 利用되는 場所를 基準으로 하여 課稅權이 行使되기 때문에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부터 用役의 提供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課稅된다. 이 경우에는 用役의 提供을 받는 者가 用役을 提供하는 者에 代身하여 附加價値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나. 加 算 稅

代理納付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10%를 加算稅로서 徵收한다.

17. 質問·調査(法 第35條, 令 第86條)

가. 稅務公務員은 附加價値稅의 業務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納稅義務者와 其他 關聯者에게 質問을 할 수 있고 帳簿 等의 證憑書類를 調査할 수 있다.

나. 政府는 附加價値稅의 納稅保全 또는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帳簿등 證憑物件의 提出이나 其他의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8. 附　　則

가. 施行日(法 附則 第1條)

附加價値稅法은 197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經濟與件의 趨移에 비추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그 施行을 延期할 수 있다.

나. 廢止法律(法 附則 第2條)

附加價値稅法과 代替되에 廢止되는 法律은 營業稅法·物品稅法·織物類稅法·石油類稅法·電氣가스稅法·通行稅法·入場稅法 및 遊興飮食稅法등 8個 內國間接稅法이다.

다. 一般的適用例(法 附則 第3條)

(1) 附加價値稅法施行當時 從前의 稅法에 의하여 賦課할 營業稅등 對替間接稅는 從前의 稅法에 의하되 附加價値稅法 施行後에는 去來徵收는 하지 아니한다.

(2) 附加價値稅法施行前의 營業에 대한 營業稅는 個人 또는 法人을 莫論하고 附加價値稅法施行前日까지를 1課稅期間으로 하여 從前의 營業稅法에 의하여 課稅하며 그 告知稅額의 納期는 附加價値稅法施行日부터 45日內로 한다.

라. 在庫品의 舊間接稅에 관한 經過措置(法 附則 第4條)

附加價値稅法施行日 現在의 商品·原資材등의 在庫品에는 從前의 稅法에 의한 營業稅등의 間接稅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舊間接稅를 控除함으로써 重複課稅 및 施行 初期의 物價上昇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課稅特例者 또는 國外나 保稅區域內의 在庫物品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에서 控除될 舊間接稅額은 法施行日 現在의 在庫金額에 財務部令이 定하는 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從前의 物品稅·織物類稅 또는 石油類稅가 賦課되던 物品에 대하여 證憑書類를 갖추어 그 實地의 舊間接稅額에서 特別消費稅 相當額을 差減한 殘額을 控除할 수 있다. 在庫品價額을 虛僞로 申告한 경우에는 虛僞申告額의 10%를 加算稅로서 徵收한다.

마. 去來徵收에 관한 經過措置(法 附則 第6條)

附加價値稅의 課稅時點, 즉 去來時期는 物品에 있어서는 引渡되는 때를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附加價値稅法 施行前에 契約을 締結하고 施行日後에 引渡하는 경우에도 附加價値稅가 課稅된다.

따라서 物品 또는 用役의 販賣者 또는 提供者에게 當初의 契約에 不拘하고 附加價値稅를 調整하여 徵收하도록 함으로써 課稅의 公平을 期하고 있다.

바.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法 附則 第7條)

附加價値稅法施行前에 이미 事業을 開始한 者는 營業稅法에 의한 營業稅納稅者登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附加價値稅法 施行 20日前까지 일제히 事業者登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附加價値稅法施行前 20日以後에 開始한 者는 그 事業開始日부터 20日以內에 事業者登錄을 하면 된다.

사. 課稅特例에 관한 經過措置(法 附則 第8條)

附加價値稅法이 施行되는 最初年度에는 從前의 營業稅法에 의한 收益金額을 供給對價로 보아 課稅特例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課稅特例를 抛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法 施行後 10日內에 그 抛棄를 申告하여야 한다.

特別消費稅法

[要　　約]

現行 間接稅 體系의 全面的인 改編으로 附加價値稅를 採擇하게 됨에 따라 附加價値稅의 單一稅率에서 오는 租稅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한편 奢侈性物品等의 消費를 抑制함으로써 稅制面에서 實質的인 租稅負擔의 衡平을 期하고 附加價値稅의 長點을 살리기 위하여 別途로 特別消費稅法을 制定한 것이다. 따라서 附加價値稅法과 같이 1977. 7. 1부터 施行된다.

가. 現行 消費稅法中 物品稅法·織物類稅法·石油類稅法 및 入場稅法을 統合하고 그 課稅對象品目도 29個品目으로 限定하여 附加價値稅의 補完稅로 둠

나. 稅率은 그 構造를 單純化하는 同時에 附加價値稅의 單一稅率을 補完하기 위하여 高所得層의 消費對象을 重課토록 함

다. 複雜多樣한 各種 免稅制度를 要因別로 整理하는 同時에 原料免稅 및 輸出用原資材免稅를 事前免稅制度에서 事後控除·還給制度로 轉換하여 事後管理를 單純化함

라. 稅額의 賦課·徵收에 關하여 現行 賦課納付制에서 申告納付制로 轉換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加算稅制를 導入함

1. 課稅對象과 稅率(法 第1條第1項 및 第3項)

種別	課稅對象	稅率	
		改正前	改正
第一種	1. 寶石(工業用 다이야몬드 除外)·眞珠·鼈甲·珊瑚·琥珀 및 象牙와 이를 使用한 製品	160%～200%	100%
	2. 貴金屬製品	30%	30%
	3. 毛皮와 同製品(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除外)	200%	100%

種別	課稅對象	稅率	
		改正前	改正
第一種	4. 投錢機·娛樂用 射倖器具 기타 娛樂用品	200%	100%
	5. 撞球 및 골프用品과 狩獵用 銃砲類	150%	100%
	6. 家具(10萬원 以上의 것)	20萬원이상 40%	20%
		20萬원미만 20%	
	7. 特殊化粧品	20%	20%
第二種	8. 空氣調節機와 同關聯製品	65%	40%
	9. 冷藏器(電氣·가스 油類式의 것과 冷藏庫包含)	65%	40%
	10. 電氣洗濯機(乾燥機 包含)	65%	40%
	11. 텔리비젼受像機(大型)	65%	30%
	(小型)	45%	
	12. 電氣音響器機	55%	30%
	13. 가스·電熱利用器具(家庭型의 것)	55%	40%
	14. 乘用自動車		
	가. 1,500씨씨以下의 것과 2輪 自動車	15%	15%
	나. 1,500씨씨~2,000씨씨以下의 것과 4輪 驅動의 지이프車	20%	20%
	다. 2,000씨씨 超過의 것	40%	40%
第三種	15. 커피와 코코아	50%	40%
	16. 砂糖	40%	30%
	17. 淸涼飮料	20%	20%
	18. 嗜好飮料	25%	25%
	19. 氷菓類		20%
	20. 滋養強壯品		
	가. 錠劑	10%	10%
	나. 其他	30%	25%

種 別	課 稅 對 象	稅 率	
		改正前	改 正
第四種	21. 毛絲와 同 織物(編織物을 包含하고 成型編 除外)		
	가. 梳毛絲와 同 織物	30%	20%
	나. 紡毛絲와 同 織物	20%	10%
	22. 絨 緞	40%	30%
	23. 揮發油	300%	160%
	24. 輕 油	40%	10%
	25. 競馬場	50%	50%
	26. 土耳其式湯	250%	100%
	27. 投錢機施設場所	250%	500원
	28. 골프場	3,000원	3,000원
	29. 카지노(內國人)	15,000원	15,000원
	(外國人)	300원	1,000원

가. 課稅對象(法 第1條第1項·第3項)

課稅對象은 大部分 現行 消費稅法上의 課稅對象中에서 選定하였는데 그 選定基準은

(1) 奢侈性品目

(2) 高價耐久性消費財

(3) 消費抑制를 要하는 品目과 行爲를 基準으로 하되 그 品目數를 最少化하는 한편 最終消費財에만 課稅토록 하며, 便宜上 課稅對象을 物品과 場所로 大別하고 다시 課稅物品은 1種 내지 4種으로 分類하였다.

나. 非課稅物品取扱(法 第2條)

그러나 위의 課稅物品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物品에 對하여는 課稅物品으로 取扱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1) 오로지 自己(法人을 除外한다) 또는 自己家族만이 使用하기 위하여 製造하는 物品

(2)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稅率을 適用하는 物品

(3) 人蔘 및 人蔘製品規制에 關한 法律, 藥事法 또는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場에서 收去되는 物品

(4) 알콜분 1度이상을 含有하는 物品으로서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가 賦課되는 物品

(5)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物品을 同一한 製造場에 還入한 경우에 還入된 物品(中古品을 제외한다)을 製造場으로부터 다시 搬出하거나 還入된 物品을 主原料로 하여 새로이 課稅物品을 製造 또는 修繕하여 搬出하는 것으로서 所管稅務署長의 確認을 받은 物品인 경우는 還入한 날로부터 10日內에 還入된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 課稅物品과 課稅場所의 判定基準(法 第1條第4項 내지 第9項, 令 第3條)

課稅物品의 경우는 特히 새로운 商品의 開發로 因하여 課稅物品에 列擧된 品目에 해당하는 物品인지의 判定基準에 問題点이 많으므로 現行 消費稅法의 規定보다 상세히 規定하였다. 즉,

(1) 課稅物品의 判定은 그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形態·用途·性質 기타 重要한 特性에 의한다.

(2) 同一한 物品으로서 課稅物品으로 列擧된 2個以上의 品目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物品의 特性에 의한 物品으로 取扱하되 그 特性이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主用途에 의한 物品으로, 主用途가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 物品으로 取扱한다.

(3) 課稅物品이 分解되었거나 未組立狀態로 搬出하는 경우는 이를 完製品으로 取扱한다.

(4) 數種의 纖維를 混合하여 만든 絲類로서 毛의 混合比率이 100分의 40을 超過하는 것은 毛絲로 보며 그 毛絲의 區分은 毛의 種類中 많은 含量의 것으로 한다.(이 경우는 毛織物의 判定에도 適用한다)

(5) 寶石類 및 貴金屬製品은 그 物品에 使用된 原材料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寶石·眞珠·鼈甲·琥珀·珊瑚·象牙 또는 貴金屬으로 製造된 것을 말하며 이의 區分은 그 物品의 原價의 構成比率에 의하여 判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그 含量의 構成比率도 참작한다.

(6) 消費者가 一定金額을 支拂하고 自動混合製造機로 直接製造飮用하는 物品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7) 課稅物品이 不完全 또는 未完成狀態로 搬出되는 경우에 당해 物品의 주된 部分을 갖추어 그 機能을 나타낼 수 있는 物品은 完製品으로 取扱한다.

라. 稅　　率

稅率은 現行 各 消費稅法上의 稅率을 基準으로 하되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點을 勘案하여 現在의 消費者價格水準과 物價에 미치는 影響을 極小化하도록 하였으며, 現行과는 달리 稅率의 種類도 基本稅率과 彈力稅率을 두고 있다.

(1) 基本稅率

現行 消費稅率은 너무 高率(最高 300%)일 뿐만아니라 그 構造도 複雜(17段階)하므로 그 構造를 最低 10%에서 最高 160%까지 13段階로 單純化함과 아울러 大部分 現行의 稅率水準보다 引下하여 消費者의 負擔을 大幅 輕減토록 하였다.

(2) 彈力稅率의 採擇(法 第1條第5項)

租稅의 景氣調節機能을 위하여 基本稅率을 두는 이외에 彈力稅率을 두는 것이 오늘의 傾向이므로 附加價値稅의 彈力稅率과 步調를 같이 하여 基本稅率의 上下 30% 範圍內에서 政府가 調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納稅義務者(法 第3條)

納稅義務者는 現行 消費稅法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가. 製造場課稅物品을 製造하여 搬出하는 者

나. 販賣場課稅物品을 販賣하는 者

다. 課稅物品을 輸入申告하는 者

라. "다"號 이외의 關稅納稅義務가 있는 者

마. 課稅場所의 經營者

3. 課稅時期(法 第4條)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課稅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에서 製造하여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한 때, 入場行爲에 對한 特別消費稅는 入場을 한 때에 그 販賣·搬出·申告 또는 入場當時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特別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가 있다.

가. 製 造 擬 制(法 第5條, 令 第5條)

課稅物品은 製造場에서 製造하여 搬出하는 것 이외에 製造場以外의 場所에서 다음과 같은 加工行爲를 하는 경우에도 課稅物品을 製造한 것으로 본다.

(1) 特殊化粧品·淸涼飮料 및 嗜好飮料를 販賣의 目的으로 容器에 充塡하거나 改裝하는 것

(2) 中古品을 新品과 同等한 程度로 그 價値의 增大를 위하여 大部分의 材料를 代替 또는 補完하거나 그 部分品의 全部 또는 一部를 材料로 하여 새로운 物品으로 加工 또는 改裝하는 것

(3) 課稅物品에 價値增大를 위한 裝飾·組立·添加 등의 加工을 하는 것

(4) 課稅物品中 織物類에 對하여는 다음의 加工을 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가) 染色(나염을 包含한다) 및 漂白의 加工. 이 경우는 課稅物品인 織物類를 製造하여 同一 製造場 또는 다른 場所에 있는 自己製造場에서 加工하거나 委託하여 加工하는 경우 또는 織物類의 製造를 目的으로 한 原料를 同一 製造場 또는 다른 場所에 있는 自己製造場에서 加工하거나 委託하여 染色하는 경우에 限한다.

(나) 縮絨·起毛와 樹脂等의 加工

(다) 同一 製造場 또는 다른 場所에 있는 自己製造場에서 絲類를 2가닥 以上 合撚하거나 委託하여 絲類를 2가닥 以上 合撚하는 加工

나. 販賣 또는 搬出로 보는 경우(法 第6條, 令 第6條)

(1)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서 사용하거나 消費되는 때 다만, 同一 製造場안에서 課稅物

品의 原資料로 使用되는 경우와 課稅되지 아니하는 石油類의 製造用原材料로 精油工程上 그대로 使用되는 때에는 搬出로 보지 아니한다.

(2)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現存하는 것이 公賣·競賣 또는 破産節次로 換價되는 때

(3) 課稅物品의 販賣 또는 製造를 事實上 廢止한 경우에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現存하는 때, 다만, 販賣 또는 製造를 廢止할 당시 當該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現存하는 課稅物品이 每月分의 通常的인 販賣 또는 搬出數量보다 많은 때에 所管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은 경우는 一定한 期間 동안은 販賣 또는 搬出로 보지 아니하고 一時에 課稅하지 아니한다.

(4)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있는 物品을 附加價値稅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때, 이 규정은 附加價値稅法上의 供給을 特別消費稅法上의 搬出로 보아 課稅時點을 一致시킴으로써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算定에 混亂을 除去하기 위한 것이다.

다. 入場料를 全額領收한 것으로 보는 경우(法 第7條)

課稅場所의 經營者가 所定의 入場料金을 全部 또는 一部를 領收하지 아니하고 入場하게 하거나 設備를 利用하게 한 경우에는 그 入場料를 全額 領收한 것으로 본다.

4. 課 稅 標 準(法 第8條, 令 第8條 내지 第14條)

納 稅 義 務 者 別	改 正 前	改 正
1. 販賣하는 者 2. 製造하여 搬出하는 者	販賣 또는 搬出한 때의 通常價格	販賣 또는 搬出한 때의 實地價格
3. 輸入申告하는 者	輸入申告한 때의 價格(감정가격+關稅 相當額)×1.1	左 同 (課稅價格+關稅 相當額)×1.1
4. 其他 關稅納稅 義務者	上 同	上 同
5. 經營者	入場料金·入場人員	左 同

特別消費稅의 算出基礎가 되는 課稅標準은 現行 消費稅의 경우와 大略 같으나 그 差異點은 販賣 또는 搬出時의 課稅標準이 現行의 通常價格에서 實地價格으로 바뀌어진 것과 自家消費分에 대한 課稅標準은 自家消費한 同一 物品에 대한 價格이 없는 경우에 限하여 原價計算을 하도록 한 點이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販賣 또는 搬出한 物品의 課稅標準(令 第8條)

販賣 또는 搬出한 때의 價格은 販賣者 또는 製造者가 實地로 販賣 또는 搬出한 價格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特殊한 경우에는 例外로 取扱하여 당해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1) 外上 또는 割賦의 方法에 의하여 販賣 또는 搬出하는 경우에는 그 物品을 引渡한 날의 外上 또는 割賦價格

(2) 原料 또는 資金의 供給等을 條件으로 낮은 價格으로 販賣 또는 搬出하거나 自家製造한 物品을 다른 製造者의 製品과 低廉한 價格으로 交換하는 경우에는 販賣·搬出 또는 交換한 날의 實地 販賣 또는 搬出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3) 物品을 販賣 또는 搬出한 後 一定한 金額을 買受者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當初의 販賣 또는 搬出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4) 販賣 또는 搬出되는 物品의 運送費를 그 運送거리의 遠近이나 運送方法의 差異에 구애없이 同一한 金額을 그 販賣 또는 搬出價格에 包含시키거나 그 金額을 別途로 領收하는 경우(運送機關이 運送을 담당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에는 그 運送費를 包含한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5) 入札에 의하여 物品을 販賣 또는 搬出하는 入札見積書에 運送費가 따로 計上되어 있더라도 그 落札價格에 運送費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運送費를 包含한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6) 販賣場 또는 製造場에서 無償으로 搬出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을 搬出한 날의 實地販賣 또는 搬出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7) 換價되는 物品에 대하여는 換價되는 때의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8) 販賣 또는 製造를 廢止한 경우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있는 物品에 대하여는 廢止한

때의 實地販賣價格 또는 搬出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9) 附加價値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物品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때의 實地 販賣 또는 搬出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10) 製造場과 特殊한 關係가 있는 곳에 販賣를 委託하거나 販賣를 專担하게 하는 경우에 通常去來에 있어서 實地販賣價格이 없거나 實地販賣價格에 相當하는 金額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搬出하는 때에는 當該 販賣場의 販賣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이 경우에 "製造場과 特殊한 關係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場所를 말한다(令 第2條第9號)

(가) 製造者가 自己의 製品을 直接 販賣하기 위하여 特設한 販賣場

(나) 製造者와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生計를 같이 하는 者가 經營하는 販賣場

(다) 製造者와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 또는 그의 親族으로서 生計를 같이 하는 者가 經營하는 販賣場

(라) 製造者와 雇傭關係에 있는 者가 따로 經營하는 販賣場

(마) 製造者에게 屬하는 資本 또는 出資總額이 販賣場의 資本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以上이 되거나 販賣者에게 屬하는 資本 또는 出資總額이 製造場의 資本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以上이 되는 販賣場

(바) 製造者가 法人인 경우에 그 法人 또는 그 法人의 株主·社員·出資者(法人稅法 第22條第3項第2號에 規定하는 少額株主는 除外하며, 以上 "出資者"라 한다) 및 이들과 特殊한 關係가 있는 者에게 屬하는 資本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以上이 되는 販賣場

(사) 販賣者가 法人인 경우에 그 法人 또는 出資者 및 이들과 特殊한 關係가 있는 者에게 屬하는 資本 또는 出資의 合計額이 製造場의 資本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以上이 되는 販賣場

나.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서 消費하는 物品의 課稅標準(令 第10條)

製造場안에서 消費하거나 課稅物品이 아닌 物品의 製造用原資材로 供給하여짐으로서 實地價格을 그 物品의 價格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當該 物品의 製造總原價에 通常利潤相當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여기서 通常利潤相當額이라 함은 製造總原價의 100分의 10을 말하며 製造總原價라 함은 原材料費, 補助材料費, 勞務費, 經費, 一般管理費 및 販賣費로서 當該 物品

에 配賦되어야 할 部分으로 構成되는 總金額에 의한다. 그리고 原材料購入價格의 評價方法等의 規定은 現行 消費稅의 경우와 同一하다.

다. 輸入申告하는 物品의 課稅標準(令 第11條)

輸入申告를 한 때의 價格으로서 關稅를 賦課하기 위한 課稅價格에 當該 物品에 賦課하여야 할 關稅에 相當하는 金額과 通常利潤相當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 通常利潤相當額은 課稅價格에 關稅相當額을 合算한 金額의 100分의 10으로 한다. 그리고 輸入物品의 輸入申告價格에 당해 物品의 價格에 算入할 수 없는 無體財產權의 引受對價로 支給하는 金額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金額은 課稅價格에서 控除한 것으로 한다.

라. 課稅物品의 容器代金과 包裝費用의 課稅標準 計算(法 第8條第3項, 令 第13條)

課稅物品을 販賣·搬出 및 輸入申告하는 때에 그 物品에 包含된 容器代金과 包裝費用은 課稅物品에 合算한 것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그러나 課稅物品의 容器 또는 包裝을 將來 當該 販賣場이나 製造場에 返還할 것을 條件으로 그 容器代金 또는 包裝費用을 控除한 金額으로 販賣하거나 搬出하는 것으로서 所管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은 것과 輸入物品의 容器 또는 包裝으로서 그 代金 또는 費用이 課稅物品의 價格보다 高價인 것이 輸入許可日로부터 6月內에 輸出者에게 返還할 것을 條件으로 保稅區域의 所管稅關長의 承認을 얻은 것은 課稅標準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마. 入場行爲에 대한 課稅標準(令 第14條)

入場行爲에 대한 課稅標準은 入場料를 基準으로 하는 경우와 入場行爲를 1回할 때 마다 一定한 稅額을 直接 賦課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入場料"라 함은 그 名目 如何를 不問하고 入場者 또는 設備利用者로부터 入場 또는 設備利用의 對價로 領收하는 金額을 말한다. 그리고 課稅場所의 經營者가 그 設備의 利用者로부터 一定한 期間 동안의 利用料金을 會費 또는 其他의 名目으로 一時에 미리 領收하고 그 設備를 利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利用者가 當該 期間 동안 利用하고자 하는 設備에 對하여 그 利用料金을 支拂한 때에 이미 利用한 것으로 보아 經營者가 領收한 全體金額에 對하여 稅額을 賦課한다.

바. 用途變更等 物品의 課稅標準(令 第12條)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出 또는 搬入한 者가 當該 物品에 대한 用途를 變更하거나 讓渡·所持 기타의 事由가 發生하여 特別消費稅를 徵收하는 경우의 課稅標準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1)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出한 物品에 對하여 所管稅務署長이 指定한 期限內에 搬入證明 또는 用途證明을 提出하지 아니하여 그 稅額을 徵收하는 경우는 未納稅 또는 免稅된 때의 價格

(2) 駐韓外國軍 또는 駐韓外國公館 및 外交官에 免稅로 搬出된 物品을 免稅받은 날로부터 5年내에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他人이 所持한 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를 한 것으로 보아 製造場에서 購入한 物品에 대한 稅額을 徵收하는 경우에는 讓受金額. 輸入한 物品에 대한 稅額을 徵收하는 경우에는 讓受한 金額을 課稅價格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으로 各各 한다.

(3)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販賣할 物品을 外貨로 販賣하지 아니하거나 그 物品을 所持할 수 없는 者가 所持한 경우와 免稅로 購入한 者가 出國時에 所持하지 아니한 경우의 課稅標準은 免稅販賣場의 販賣價格이나 購入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4) 條件附免稅物品에 對하여 그 搬入者가 用途等을 變更한 경우에는 販賣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5. 課稅標準의 申告·納付(法 第9條·第10條, 令 第15條·第16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販賣者 2. 製造·搬出者	申告 : 翌月 10일 納付 : 翌月 末日	申告·納付 : 翌月 20日
3. 輸入申告人	申告 : 輸入申告時 納付 : 輸入免許를 받은 때	申告 左同 納付 左同
4. 經營者	申告 : 翌月 10日 納付 : 翌月 末日	申告·納付 : 翌月 20日

가. 申告·納付制의 採擇

納稅義務者의 自發的인 稅政에의 參與를 期하고 政府의 干涉을 可能한 排除하기 위하여 現行 消費稅의 賦課納付制에서 申告·納付制로 轉換하였다.

나. 申告·納付期限의 變更

販賣者 또는 製造者의 경우에 現行 消費稅法에 있어서는 그 申告期限은 翌月 10日까지이며, 納付는 政府의 告知書를 發付받아 翌月末日까지 하고 있으나 特別消費稅法에서는 申告와 納付期限을 모두 20日로 一致시켰다.

다. 政府調査決定

以上과 같이 申告·納付制로의 轉換에 따라 政府가 納稅者에 대하여 課稅標準을 決定하거나 隨時로 賦課할 수 있는 要件을 規定하여 制限하고 있다.

(1) 決定과 更正決定(法 第11條)

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

(나) 申告의 內容은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2) 推計決定事由(令 第18條)

그러나 이러한 課稅標準의 決定 또는 更正決定은 帳簿 기타 證憑을 根據로 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과 같이 明白한 客觀的인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政府는 그 課稅標準을 推計決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가)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없거나 重要한 部分이 未備 또는 虛僞인 때,

(나) 帳簿 기타의 證憑書類의 內容이 施設規模·從業員數·原材料·商品·製品 또는 各種 料金의 時價等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다) 帳簿 기타의 證憑書類의 內容이 原資材使用量·動力使用量 기타의 操業狀況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3) 隨時賦課(法 第12條)

納稅義務者가 特別消費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事業不振 기타의 事由로 休業 또는 廢業狀態에 있는 때에는 政府는 隨時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 納稅保全을 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加算稅制의 導入(法 第13條)

現行 消費稅는 賦課·納付制이므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않지마는 特別消費稅는 申告·納付制로 轉換함에 따라 誠實申告納付를 誘導하고 納稅風土의 刷新을 위하여 加算稅를 導入하였다. 그러나 無申告加算稅는 두지 않으며 또한 稅額의 還給에 있어서 實地로 還給을 받을 수 있는 稅額보다 超過하여 還給을 받은 경우에도 加算稅를 適用토록 하여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서 租稅의 還給을 받은 경우는 租稅犯處罰法의 適用은 물론 別途로 加算稅를 納付하게 된다.

가. 無納付加算稅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

나. 過少納付加算稅

未達하게 納付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

다. 超過還給에 對한 加算稅

還給稅額을 超過하여 還給받은 때에는 그 超過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

7. 未納稅 또는 免稅(法 第14條 내지 第19條)

改　　正　　前	改　　正
1. 未納稅	1. 未納稅
2. 原料免稅	2. 課稅後 控除
3. 輸出用 原資材免稅	3. 課稅後 控除 또는 還給
4. 輸出等 特殊用途免稅	4. 輸出 및 軍納免稅
5. 特殊用途免稅	5. 外交官免稅
	6.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7. 條件附免稅
	8. 無條件 免稅

가. 種　　類

特別消費稅의 免稅制度는 附加價値稅 및 關稅等 還給特例法과 相互 關聯性이 있으므로 可能한 限 이들과 制度的으로 統一을 期하도록 整備하였다.

(1) 雜多한 免稅를 要因別로 輸出 및 軍納免稅, 外交官免稅,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條件附免稅, 無條件免稅等으로 區分하여 免稅節次 및 事後管理를 體系化하였다. 여기서 條件附免稅는 從來의 特殊用途免稅中에서 事後管理를 要하는 免稅를 말하며 無條件免稅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現行 原料免稅 및 輸出品原資材免稅를 事前免稅에서 事後控除 또는 還給制度로 轉換하였다. 그 理由는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品目이 最終消費財이므로 內需用 또는 輸出品原資材로 使用되는 경우가 現在의 경우보다 極히 적을 뿐만 아니라 附加價値稅法과 關稅等 還給特例法과 같이 事後控除 또는 還給制로 法體系의 統一을 期하기 위한 것이다.

나. 未納稅 또는 免稅要件

(1) 未納稅(法 第14條)

(가) 輸出할 物品을 다른 場所에 搬出하는 것

(나)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 기타 이에 準하는 곳(이하 "博覽會等"이라 한다)에 出品하기 위하여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國內 또는 國外에서 開催한 博覽會等에 出品한 物品을 製造場에 還入하거나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國際的인 博覽會等에 出品할 것을 條件으로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 또는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것으로서 關稅가 免稅되는 것

(다) 原料를 供給받거나 委託工賃만을 받고 製造한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委託者의 製品貯藏倉庫에 搬出하는 것

(라) 製造場 이외의 場所에서 規格檢査를 받기 위하여 租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當該 製造場에 還入하는 것

(마) 위 (가), (다)의 경우와 輸出 및 軍納免稅, 外交官免稅,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條件附免稅 및 無條件免稅의 適用을 받아 搬入한 物品으로서 品質不良 기타 事由로 인하여 製造場에 返還하는 것

(바) 위 (가) 내지 (마)의 경우와 類似한 事由로 인하여 特別消費稅의 保全 기타 團束上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輸出 및 軍納免稅(法 第15條)

(가) 輸出하는 것

(나) 우리나라에 駐留하는 外國軍隊에 納品하는 것

(3) 外交官免稅(法 第16條)

(가)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公館 기타 이에 準하는 機關에서 公用品으로 輸入하거나 製造場에서 購入하는 것

(나)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交官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外交官 또는 援助使節 및 그 家族이 自家用品으로 輸入하는 것

(다)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準하는 機關에서 使用하는 石油類

(4)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法 第17條)

政府가 指定하는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非居住者 또는 國內에 住所나 居所를 둔 駐韓外交官에게 外貨를 받고 販賣할 目的으로 그 販賣場에 搬入하게 하기 위하여 製造場 또는 販賣場으로부터 搬出하는 物品으로서 다음의 것

(가) 寶石과 이를 使用한 製品
(나) 貴金屬製品
(다) 骨牌와 花鬪類
(라) 家　具
(마) 特殊化粧品
(바) 空氣調節機
(사) 冷藏器
(아) 텔리비젼受像機
(자) 錄音機
(차) 電氣밥솥
(카) 砂　糖
(타) 淸涼飮料
(파) 嗜好飮料
(하) 滋養強壯品(人蔘을 原料로 하여 製造한 製品으로서 專賣廳長이 許可하여 國稅廳長에게 通知한 것에 限한다)
(거) 毛絲와 同 織物
(너) 絨　緞

(5) 條件附免稅(法 第18條)

(가) 原子爐·原子力 또는 同位元素의 生産·使用·開發에 供하거나 그 物品의 製造用原料로 使用하는 物品
(나) 觀光호텔 또는 外國人住宅(大韓住宅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住宅公社가 建築한 것에 限한다)의 新築에 所要되는 建築用資材 및 設備用品으로서 다음의 것
① 空氣調節機와 同 關聯製品(윈도우型인 것을 除外하며, 페게이지型의 경우에는 그 容量이 5萬키로 카로리 以上의 것에 限한다)·電氣洗濯機·冷藏器(容量이 3백리터 以上의 것에 限한다)·家具·絨緞으로서 觀光호텔의 新築에 所要되는 建築用資材 및 設備用品

② 空氣調節機와 同 關聯製品(윈도우型인 것을 除外하며 페케이지型인 경우에는 그 容量이 5萬키로 카로리 以上의 것에 限한다)·電氣洗濯機·冷藏器(容量이 3백리터 以上의 것에 限한다)·絨緞으로서 外國人住宅新築에 所要되는 建築用資材 및 設備用品

(다) 寶石으로서 理化學實驗研究用·工業用 및 蓄音機針製作用의 것

(라) 空氣調節機와 同 關聯製品으로서 工業用施設機材로 使用하는 것

(마) 乘用自動車로서 患者輸送專用의 것

(바) 外國으로부터 慈善 또는 救護를 위하여 慈善 또는 救護機關 團體에 寄贈되는 것

(사) 外國으로부터 寺院·教會등에 寄贈되는 式典 또는 禮拜用品으로서 卓子類·佛器·花瓶·念珠·茶器·說教壇·燭台·聖餐用祭器具·法衣(袈裟를 包含)·禮服·聖布·聖幕과 베일

(아) 學校·博物館·物品陳列所 등에 陳列하거나 教材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標本 또는 參考品

(자) 外國으로부터 學術研究 또는 教育用에 使用하기 위하여 學術研究團體 또는 教育機關에 寄贈되는 것

(차) 再輸出할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카) 外國航行船舶·遠洋漁業船舶 또는 航空機에 使用하는 石油類

(타) 醫療用 또는 醫藥品·肥料·農藥製造用原料로 使用하는 石油類

(파) 外國貿易船 또는 遠洋漁業船舶에서 使用할 것으로 認定되는 食飮品 기타 燃料 이외의 消耗品

(6) 無條件免稅(法 第19條)

(가) 外國의 慈善 또는 救護機關·團體에 寄贈하는 것

(나) 外國으로부터 수여되는 勳章·記章 또는 이에 準하는 表彰品과 賞牌

(다) 外國에 航行中인 軍艦 또는 在外公館으로부터 送付되는 公用品

(라) 우리나라의 船舶 기타 運送機關이 遭難으로 因하여 解體된 경우의 解體材와 裝備品

(마) 輸出物品의 容器로서 再輸入하는 것

(바) 外國貿易船 또는 遠洋漁業船舶이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內國貿易船이 된 경우에 船舶에 積載된 것으로서 그 船舶안에 使用할 것으로 인정되는 食飮料·燃料 기타 消耗品中 關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것

(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贈하는 것

(아) 軍事援助에 의하여 輸入하는 援助物品 또는 그 物品을 原料로 하여 製造하는 軍需用 物品. 다만, 援助物品 이외의 物品을 原料로 混用하는 경우에 그 原料에 대하여는 免除하지 아니한다.

(자) 住居移轉 이외의 目的으로 우리나라에 入國하는 者가 入國하는 때에 携帶하여 輸入하거나 別送輸入하는 物品으로서 自己가 直接 使用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것

(차)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受贈者가 使用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物品

(카)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商用見本 또는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타) 外國에서 開催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海外로 搬出되는 것

(파) 特別消費稅가 賦課된 物品으로서 輸出한 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所管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된 후 輸入免許日로부터 6月內에 再輸入됨으로써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에 그 物品의 製造·加工에 使用한 原材料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免稅·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所管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다.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 節次(令 第19條·第22條·第23條·第26條·第30條)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要件에 該當하여 課稅物品을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物品을 販賣 또는 搬出하거나 그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搬出承認申請을 하여 承認을 얻어야 하며, 그 物品을 搬入한 者는 搬入한 날로부터 10日내에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搬出者는 搬入者가 交付받은 搬入證明이나 當該 物品을 所定의 用途에 供하였다는 用途證明을 搬出者所管稅務署長이 指定한 期限內에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稅額을 搬出者로부터 徵收하게 된다. 그러나 物品이 搬入場所에 搬入하기 前에 災害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因하여 滅失된 경우에는 搬出者의 所管稅務署長의 承認을 받은 경우는 徵收하지 아니한다.

라. 免稅物品에 대한 追徵(法 第15條 내지 第18條)

(1) 駐韓外國軍에 納品하는 것과 外交官免稅를 받은 物品을 免稅받은 날로부터 5年內에

他人에게 讓渡·所持하게한 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法 第15條第3項·第16條2項)

(2)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를 받은 物品에 對하여 稅額을 徵收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外國人專用販賣場의 經營者가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入한 物品을 外貨로 販賣하지 아니한 때는 그 經營者로부터 徵收한다.(法 第17條第4項)

(나)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免稅物品을 購入한 者가 出國 당시 그 物品을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購入者로부터 徵收한다.(法 第17條第5項)

(다)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購入할 수 없는 者가 所持한 때에는 그 所持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當該 經營者 또는 購入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 事實이 認定된 때에는 徵收하지 아니한다.(法 第17條第6項)

(3) 條件附免稅를 받은 物品을 그 免稅承認을 받아 搬入地에 搬入한 物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事由가 發生한 때는 그 搬入者로부터 徵收한다.(法 第18條第2項, 令 第33條)

(가) 觀光호텔의 建築用資材 및 設備用品에 있어서는 當該 호텔이 最初로 免稅받은 날로부터 3年內에 觀光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登錄 後 5年內에 登錄이 取消되거나 所定의 目的 이외의 用途에 使用된 때와 登錄事項의 變更 기타 事由로 인하여 그 一部만의 用途를 變更한 때

(나) 外國人住宅의 建築用資材 및 設備用品에 있어서는, 住宅新築工事의 竣工檢查를 받은 후 5年內에 外國人이 賃貸借契約에 의한 基準에 따라 入住하지 아니하거나 所定의 目的 이외의 用途에 使用된 때와 共同 또는 聯立式 住宅에 있어서 그 一部만의 用途를 變更한 때

(다) 航空機에 使用하는 石油類·醫療用 醫藥品·肥料·農藥製造用原料로 使用하는 石油類에 있어서는 당해 石油類를 搬入한 날로부터 6月내에 다음의 書類를 搬入地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搬入地所管稅務署長은 3月의 範圍안에서 그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① 航空機에 使用하는 石油類에 있어서는 使用者의 使用報告書

② 醫療用 醫藥品·肥料·農藥製造用原料로 사용하는 石油類는 使用者의 使用報告書와 主務部長官이 發行한 使用確認書

(라) 外國航行船舶·遠洋漁業船舶에 사용하는 石油類와 食飮料 및 其他 消耗品에 있어

서는 搬入時에 그 搬入事實을 證明하는 船(機)積證明書를 提出한 후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讓渡한 때

(마) 其他 條件附免稅物品의 경우에는 搬入한 날로부터 5年內에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讓渡한 때. 다만, 工業用施設機材로 使用되는 空氣調節機와 同 關聯製品에 대하여는 1年內에 當該 用途에 供하지 아니한 때를 包含하고 있다.

마. 免稅物品의 再免稅(法 第18條第4項)

條件附免稅承認을 얻은 物品을 搬入한 者가 다시 다른 場所에서 條件附免稅 또는 無條件免稅用途에 使用하기 위하여 搬出하고자 할 때에 免稅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用途變更이나 讓渡로 보지 아니하고 免稅로 搬出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現行 消費稅法에는 이런 規定이 없기 때문에 消費稅를 徵收하고 있다.

바. 廢棄承認申請(令 第33條第3項)

條件附免稅承認을 얻어 搬入地에 搬入한 物品이 腐敗·破損 이와 類似한 事由로 所定의 用途에 繼續하여 使用할 수 없게 되어 이를 廢棄하고자 할 경우에 所管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으면 特別消費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8. 稅額의 控除와 還給(法 第20條, 令 第34條)

가. 控除와 還給要件

改 正 前	改 正
	<控除要件>
<新 設>	1. 課稅된 物品으로서 다시 課稅物品을 製造하거나 製造擬制의 加工을 하여 搬出하는 경우
<新 設>	2. 課稅된 販賣場課稅物品을 販賣하는 경우

改　　正　　前	改　　正
	3. 完製品으로 取扱되어 課稅된 物品을 加工하여 搬出하는 경우 <還給要件>
1. 課稅된 物品(原材料包含)을 輸出 또는 駐韓外國軍에 納品하는 때	1. 左　同
2. 課稅된 物品(原材料包含)을 原子爐·原子力·同位元素의 生産·使用·開發에 使用하는 때	2. 左　同
<新　設>	3. 課稅된 原材料로 製造한 製品이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때
4. 課稅된 石油類가 醫療用 醫藥品, 肥料·農藥製造用原料, 航空機·外國航行船舶·遠洋漁業船舶·駐韓外國公館에 使用되는 때	4. 左　同
5. 課稅된 還入物品이 腐敗·破損으로 再搬出할 수 없는 때	5. 左　同
6. 課稅된 物品(原材料包含)을 外國駐屯軍部隊에 納品하는 때	

(1) 現行 消費稅法上의 課稅物品原料와 輸出用原資材에 대하여는 事前에 免稅搬出承認을 얻어 搬出하면 그 原資材에 對한 稅額을 徵收하지 아니하고 製品을 搬出時에 그 製品에 대한 稅額을 徵收하거나 免稅하고 있다. 그러나 特別消費稅法은 課稅對象品目이 最終消費財이므로 그 原資材로 사용되는 物品이 적을 뿐만 아니라 附加價値稅法이나 關稅 還給特例法의 運營方法과 같이 事後 控除·還給制로 轉換하였다. 따라서 現行의 原料免稅에 해당하는 物品, 販賣者가 다른 販賣者에게 貴金屬製品等 販賣場課稅物品을 販賣할 시에 非課稅 取扱받던 物品, 製造擬制에 해당하는 製品의 그 原資材(中古品은 除外한다), 課稅物品을 分解·未組立狀態에서 課稅된 物品 또는 不完全하거나 未完成狀態에서 課稅된 物品에 대하여는 販賣 또는 搬出時에 特別消費稅를 徵收하고 그 製品에 대하여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때에 그 原資材에 대한 稅額을 控除한다.

(2) 그리고 現行 消費稅法에서는 特別用途免稅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中에서 事後에 稅額

을 控除·還給하는 範圍를 制限하고 있으나 特別消費稅法에서는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時에 課稅된 物品을 原資材로 하여 製造·加工한 課稅物品이 免除가 되는 때에도 그 物品의 原資材에 對하여 控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모든 免稅用途에 使用되는 경우는 原資材로부터 製品에 이르기까지 完全 免稅가 되는 것이다.

나. 控除·還給申請(法 第20條第4項, 令 第34條)

控除 또는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6月내에 당해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控除要件에 該當하여 當該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때와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한 課稅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課稅物品이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때는 당해 事由가 發生한 者의 所管稅務署長에게 課稅標準申告時에 申請하며, 이 이외의 還給要件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賦課한 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에게 特別消費稅를 納付한 者와 連名으로 課稅標準申告時에 함께 申請하는 것이다.

다. 控除 또는 還給의 排除(法 第20條第3項·第5項)

未納稅搬出承認을 얻는 物品에 대하여 搬入證明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免稅를 받은 物品의 用途를 變更함으로써 特別消費稅를 徵收하는 경우와 加算稅에 대하여는 控除 또는 還給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해 原材料 또는 購入物品에 대한 稅額이 그 原材料를 使用하여 製造한 物品 또는 販賣物品에 대한 稅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控除할 稅額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權利·義務의 承繼(法 第24條)

納稅義務者의 販賣場·製造場 또는 課稅場所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그 場所의 營業에 關한 包括承繼를 받은 者와 通常的인 納稅義務者는 아니지만 課稅物品을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한 者의 營業에 關한 承繼를 받은 자는 被承繼人이 가지는 權利·義務를 承繼하게 된다.

가. 課稅標準의 申告義務

나. 稅額 및 加算稅의 納付義務

다. 帳簿備置·記帳義務

라.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한 物品으로서 事後 管理를 받는 物品에 대한 權利·義務

마. 稅額의 控除와 還給에 關한 權利·義務

10. 經 過 措 置(附則 第1條 내지 第9條)

現行 消費稅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되지 않거나 이와 反對로 現在에 課稅對象品目이 아닌 物品이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에는 이 法의 施行으로 因하여 一定期間 동안 租稅의 負擔에 不公平을 招來하게 되므로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課稅된 稅額을 控除(還給)하거나 免稅된 稅額을 徵收하여 租稅負擔에 公平을 期하도록 다음과 같이 措置하였다.

가. 稅額의 還給等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控除 또는 還給할 稅額은 現行 消費稅法의 예에 의하지마는 申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할 수 있다.

나. 原材料 課稅額의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稅額을 納付한 原材料를 製造場에서 購入하여 만든 非課稅物品이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될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納付할 製品의 稅額에서 그 原材料에 대한 稅額을 控除한다.

다. 非課稅物品의 原材料에 대한 經過措置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原料免稅를 받은 原材料로 製造한 物品이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所持하고 있는 原材料에 대한 稅額을 所持者로부터 徵收한다. 그

리고 製造場內에 있는 非課稅物品과 그 半製品에 대하여는 이에 所要된 原材料로 換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당해 物品을 所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0日內에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 30日內에 納付하게 된다.

라. 未納稅搬出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未納稅(終局的으로 免稅用途에 使用되는 것은 除外한다)로 搬出된 物品이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物品에 대한 稅額을 搬入者로부터 徵收한다. 이 경우 당해 物品을 搬入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0日내에 그 事實을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 30日내에 納付하게 된다.

마. 免稅物品등의 事後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 消費稅法에 의하여 終局的으로 免稅用途에 使用하기 위한 未納稅 또는 免稅(原料免稅는 除外한다). 非課稅로 搬出된 物品으로서 事後管理中에 있는 物品은 所定用途에 供하여질 때까지 從前대로 事後管理를 繼續한다.

바. 稅額의 還給特例에 關한 經過措置

關稅還給特例法에 의한 控除 또는 還給은 종전의 例에 의하지만 內需用物品에 對한 稅額의 控除는 保稅區域에서 搬入한 原資材로 製造한 物品이 現行 消費稅法上 課稅物品으로서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인 경우에는 그 原資材에 대한 稅額은 이 法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하고, 이 法에 의한 課稅物品이 아닌 경우에는 輸入時에 納付한 稅額은 控除하지 아니한다.

附加價値稅實施에따른稅法調整에關한臨時措置法

[要　　約]

附加價値稅制度의 導入으로 우리나라의 租稅體系 특히 間接稅體系는 全面 改編되며 이러한 制度의 改革으로 因하여 이와 關係있는 關聯稅法中 修正·補完할 事項을 包括하여 調整함으로써 附加價値稅實施에 萬全을 기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 "附加價値稅實施에따른稅法調整에關한臨時措置法"이다. 이 臨時措置法은 11個 稅法을 調整하고 있으며 그 效力은 附加價値稅法施行과 同時에 發效되는데, 그 調整內容은 크게 나누어

첫째, 各稅法中 附加價値稅와 關聯되는 部分의 用語를 整備하고

둘째, 附加價値稅法施行으로 各稅法中에서 不必要하거나 重複되는 制度 또는 規定을 削除하며

셋째, 附加價値稅法施行으로 補完을 要하는 內容을 새로이 規定한 것이다.

11個 稅法別로 調整된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國稅基本法

- ○ 國稅에 關한 通則的인 用語 및 槪念을 整備함
- ○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의 還給稅額도 國稅還給金과 같이 還給하도록 하고 그 還給加算金起算日을 定함

나.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

- ○ 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과 買入稅額을 各己 益金과 損金에 算入하지 않도록 함
- ○ 去來源泉徵收制度를 廢止함
- ○ 販賣 및 支給報告制度를 廢止함

다. 酒 稅 法

- ○ 酒稅納付를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함
- ○ 酒稅의 納付不誠實 加算稅를 新設함

라. 印紙稅法

- ○ 商去來와 關聯된 約束어음·換어음, 繼續的 去來에 關한 證書, 運送에 關한 證書, 船荷證券, 運送貨物相換證, 倉庫證券 및 領收證을 非課稅文書로 함

마. 防衛稅法

石油類를 除外한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者는 特別消費稅額의 100分의 20을 防衛稅로 納付하게 함

바. 租稅減免規制法

營業稅法·物品稅法·織物類稅法·石油類稅法·通行稅法·電氣가스稅法이 廢止됨에 따라 이에 關한 減免條項을 整備함

사.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國稅로 함

아. 租稅犯處罰法

稅金計算書의 故意的인 未交付나 虛僞作成交付한 者등은 別途의 犯則으로 處罰함

자. 關稅還給特例法

○ 內國消費稅에 關聯된 用語를 整備함

○ 內需用物品에 대한 內國消費稅의 稅額控除制度를 削除함

차. SOFA 特例法

內國消費稅에 關聯된 用語를 整備함

1. 國稅基本法의 調整

가.用語의 整備

營業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電氣가스稅·通行稅·入場稅·遊興飮食稅등 8個 稅目이 附加價値稅로 統合되고 特別消費稅가 新設됨에 따라 統合廢止되는 稅目에 關聯된 內容은 關係條文中에서 削除하였고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에 關聯된 用語는 새로이 규정하였다.

나. 定義의 整備

(1) 國稅의 定義에서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를 追加하고 營業稅·物品稅등 廢止되는 稅目을 削除하였다(法 第2條第1號).

(2)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成立時期를 새로이 規定하고, 廢止되는 稅目의 규정을 削除하는 한편 기타 各 稅目의 特殊한 경우의 納稅義務成立時期를 調整하였다 (法 第21條).

(가) 附加價値稅는 課稅期間이 終了되는 때

(나) 特別消費稅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販賣場에서 販賣하는 때 또는 課稅場所에 入場하는 때

(다)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

(라)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豫定申告納付하는 所得稅는 課稅標準金額이 發生한 달의 末日

(마) 中間豫納하는 所得稅·法人稅 또는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는 中間豫納期間 또는 豫定申告期間이 終了하는 때

다. 修正申告期限의 調整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의 課稅標準修正申告書提出은 法定申告期限經過後 10日內에 하도록 하였다.(法 第45條)

라. 還給稅額의 還給節次와 그 還給加算金의 起算日

(1) 調整前의 國稅基本法에 의하면 過誤納付한 金額을 國稅還給金이라 하였으나 臨時措置法에서는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에서 構造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事後 還給稅額도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하고 國稅基本法의 國稅還給金 還給節次에 따라 還給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의 還給稅額은 各稅法이 규정하는 還給稅額의 申告 또는 申請이 있으면 이를 즉시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하고 30日內에 支給하여야 한다.(法 第51條)

(2)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의 還給稅額을 還給함에 있어서 申告한 날로부터 30日이 경과한 後에 支給할 때에는 國家는 國稅還給加算金을 加算하여 支給하게 함으로써 還給稅額을 可能한 限 빨리 還給하도록 措置하였다.(法 第52條第6號)

2.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의 調整

가. 부가가치세의 損金不算入(所得稅法 第30條 및 第48條, 法人稅法 第15條 및 第16條)

個人과 法人의 各課稅期間의 課稅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 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은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은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附加價値稅는 結局 最終消費者가 負擔하는 稅金으로서 企業의 原價와는 無關한 租稅이므로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이를 明白히 한 것이다.

다만, 現行 營業稅와 같이 課稅되는 附加價値稅課稅特例者가 納付한 附加價値稅額과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경우의 買入稅額등은 損金에 算入하게 하였다.

나. 去來源泉徵收制度廢止(所得稅法 第168條 내지 第170條 및 第179條, 法人稅法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0條 等)

現在 源泉徵收制度는 所得稅法·法人稅法 및 營業稅法에서 ①一般源泉徵收 ②法定源泉徵收 ③特別源泉徵收 ④指定源泉徵收의 4가지 種類를 두고 있는데, 크게는 法定源泉徵收·特別源泉徵收 및 指定源泉徵收를 去來源泉徵收라 하여 一般源泉徵收와 2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그런데 去來源泉徵收制度中에서도 營業稅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指定源泉徵收는 附加價値稅制의 導入과 營業稅法의 廢止로 自動的으로 廢止되는 것이며, 法定源泉徵收와 特別源泉徵收에 있어서도 營業稅의 源泉徵收는 마찬가지로 自動的으로 廢止된다.

이와같이 營業稅의 去來源泉徵收制度가 稅金計算書에 의한 全面 去來徵收를 하게 되는 附加價値稅制로 改編됨을 契機로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도 去來源泉徵收에 屬하는 所得稅와 法人稅의 法定源泉徵收와 特別源泉徵收는 이를 모두 廢止하고 一般源泉徵收만을 源泉徵收制度로서 存續시켜 源泉徵收制度를 大幅 簡素化하였다.

源泉徵收制度 簡素化內容

區分 〔根據稅法〕		現行 源泉徵收하는 稅目	現行 源泉徵收義務者	現行 源泉徵收對象 및 金額	調整
1. 一般源泉徵收 〔所得稅法 法人稅法〕		〔所得稅 法人稅〕	〔徵收對象所得의 支給者〕	1. 利子所得 2. 配當所得 3. 自由職業所得의 收入金額 4. 甲種勤勞所得 5. 其他所得 6. 甲種退職所得 ※ 法人은 利子 其他所得만 對象 〉支給金額	源泉徵收制度로 存續 〔所得稅法 法人稅法〕
去來源泉徵收	2. 法定 源泉徵收 〔所得稅法 法人稅法 營業稅法〕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1. 國家 2. 地方自治團體 3. 令이 定하는 者〕	1. 物品의 販賣金額 2. 物品의 引渡價額 3. 物品代金·用役 對價의 支給金額	廢止
	3. 特別源泉徵收 〔所得稅法 法人稅法 營業稅法〕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1. 公演場 經營者 2. 輸入業者 3. 輸入委託者 4. 屠畜場經營者 5. 賃借料支給 法人〕	1. 映畵필름使用料 賦金·기타 公演料의 支給金額 2. 輸入物品의 引渡價額 3. 獸肉의 販賣 및 引渡價額 4. 賃借料 支給額	
	4. 指定 源泉徵收 〔營業稅法〕	營業稅	〔1. 鑛產業 2. 製造業 3. 都賣業〕	1. 鑛物販賣金額 2. 製品(加工料包含) 販賣金額 3. 商品販賣金額	

다. 販賣 및 支給報告制度廢止(所得稅法 第189條 및 第190條, 法人稅法 第66條 等)

現在 稅法上 報告書提出義務는 販賣報告書提出·支給報告書提出 및 支給調査提出의 3가지가 있다.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販賣報告와 支給報告는 附加價値稅의 施行으로 稅

金計算書를 政府에 提出하게 되면 重複될 것이므로 廢止하였다.

그러나 支給調書의 提出은 사실상의 外形去來金額과는 다른 所得金額의 支給에 관한 資料報告制度이므로 附加價値稅制가 實施되더라도 이를 계속 存續시킨다.

라. 去來源泉徵收 및 報告書에 관련된 加算稅와 交付金支給의 調整(所得稅法 第121條第6項·第7項·第9項, 第182條 및 第200條, 法人稅法 第41條第4項·第5項 및 第67條)

去來源泉徵收制度와 報告書提出制度를 廢止함에 따라 去來源泉徵收義務者의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를 廢止하고 報告書提出義務者에 대한 報告不履行加算稅·不明資料加算稅를 廢止하며, 去來源泉徵收納付와 報告書提出에 대한 交付金支給을 廢止하였다.

3. 酒稅法의 調整

가. 酒稅의 申告納付(法 第24條·第25條)

附加價値稅制의 導入을 계기로 間接稅에 대하여는 그 賦課徵收方法을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하였는데 申告納付制度란 納稅義務者 스스로가 自己의 稅金을 計算하여 納付하는 制度이다. 즉 稅額의 決定을 納稅義務者 自身이 하는 것이므로 原則的으로 稅務署長이 稅額을 調査決定하여 納稅義務者에게 告知하는 節次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自己의 稅金을 申告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稅務署長이 이를 調査하여 稅額을 決定하며 納稅義務者가 申告納付하여야 할 稅額보다 적게 申告한 경우에는 稅務署長이 이를 更正決定하여 差額을 告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酒稅에 대한 申告·納付는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現　　行	調　　整
申告	① 每月分을 翌月 10日까지 申告 ② 出庫看做의 경우는 卽時申告	① 每月分을 翌月 20日까지 申告 ② 出庫看做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 부터 10일內에 申告
納付	①의 경우 翌月 말일까지 ②의 경우 卽時 그 酒稅를 徵收	申告와 同時에 納付

나. 納付不誠實등에 對한 加算稅의 新設(法 第25條의3)

酒稅에 있어서도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게 됨에 따라 酒稅를 不誠實하게 納付하거나 還給稅額을 超過하여 還給받은 경우에는 加算稅를 徵收하도록 하였다.

(1) 酒稅法 第25條의 규정에 의한 期限(翌月 20日)內에 酒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稅로서 당해 製造者로부터 徵收한다.

(2) 酒稅法 第27條의2第3項의 규정에 의한 還給稅額을 超過하여 還給받을 때에는 그 超過還給받은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稅로서 당해 製造者로부터 徵收한다.

4. 印紙稅法의 調整

가. 課稅文書의 調整(法 第1條第1項 各號)

附加價値稅는 모든 商去來에 對해서 課稅하고 있으므로 去來와 關聯된 繼續的 去來에 關한 證書·運送에 關한 證書·船荷證券·運送貨物相換證·倉庫證券 및 領收證을 課稅對象에서 除外하여 附加價値稅의 施行에 따른 二重의 稅負擔을 除去하였다.

나. 非課稅文書의 調整(法 第4條 各號)

課稅文書中 運送에 關한 證書가 削除됨에 따라 送品狀을 別途로 非課稅文書로 規定할 必要가 없으므로 削除하였으며, 또한 모든 領收證이 課稅對象에서 除外됨에 따라 從前 非課稅領收證으로 規定된 記載金額 5,000원 未滿인 領收證, 營業에 關한 領收證이 아닌 領收證 및 稅法의 規定에 依한 標準計算書·領收證(金錢登錄機에 依한 領收證을 包含한다)을 削除하였으며 또한 運送에 關한 證書는 民法上 都給에 準하여 處理되고 있으므로 當該文書가 非課稅文書임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新設하였으며, 倉庫證券은 有價證券과 同一視할 憂慮가 있어 이를 明文으로 規定하여 非課稅하였으며, 約束어음 또는 換어음中 融通어음만 課稅對象으로 하기 爲하여 商去來와 關聯된 約束어음 또는 換어음을 非課稅文書로 新設하였다.

5. 防衛稅法의 調整

가. 課稅對象의 調整(法 第2條)

附加價値稅로 代替되는 間接稅에 대한 防衛稅 즉 遊興飮食稅에 대한 防衛稅·入場稅에 대한 防衛稅·物品稅에 대한 防衛稅 및 商業廣告에 대한 防衛稅를 課稅하지 아니하고, 그 代身에 特別消費稅에 대하여 防衛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나. 特別消費稅에 대한 防衛稅(法 第2條·第4條)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中 石油類(第4種 第2類)를 除外한 모든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者는 防衛稅의 納稅義務가 있다.

이 경우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納付하여야 할 特別消費稅額이며 稅率은 20%이다.

6. 租稅減免規制法의 調整

間接稅體系의 改編에 따라 廢止되는 稅目과 代替되는 稅目에 대한 減免條項을 調整하였다.

가. 租稅의 減免에 관한 규정을 定할 수 있는 法中 營業稅法·物品稅法·石油類稅法·通行稅法·入場稅法·電氣가스稅法·織物類稅法·遊興飮食稅法을 削除하고, 附加價値稅法 및 特別消費稅法을 新設함(法 第2條)

나. 營業稅에 關한 減免條項을 削除함(法 第4條)

다. 物品稅의 減免 및 石油類稅의 免除를 特別消費稅의 免除로 代替함(法 第11條·第15條)

라. 通行稅의 減免條項을 削除함(法 第11條의5)

마. 電氣가스稅의 輕減條項을 削除함(法 第11條의8)

7.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의 調整

國稅中 營業稅·通行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電氣가스稅·入場稅·遊興飮食稅등 8個稅目을 削除하고,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國稅로 하였다.(法 第2條)

따라서 國稅와 地方稅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

國 稅 (12種目)	地 方 稅 (12種目)
1. 內國稅(10種目) ① 直接稅 所得稅·法人稅·相續稅(贈與稅를 包含함)·再評價稅·不當利得稅 ② 間接稅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電話稅·印紙稅 2. 關 稅(2種目) 關稅·臨時輸入附加稅	1. 獨立稅(9種目) 取得稅·登錄稅·免許稅·住民稅·財產稅·自動車稅·農地稅·屠畜稅·馬券稅 2. 目的稅(3種目) 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事業所稅

8. 租稅犯處罰法의 調整

가.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逋脫犯의 刑量(法 第9條第1項第1號)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逋脫犯에 대하여는 다른 間接稅逋脫犯의 경우와 같이 3年以下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의 5倍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하였다.

나. 稅金計算書犯則(法 第11條의2)

附加價値稅制는 稅金計算書의 誠實한 授受가 關鍵이므로 稅金計算書에 대한 犯則을 別途로 構成하여 新設하고 그 處罰도 秩序犯보다 重하게 하였다.

稅金計算書犯則으로 處罰되는 類型은 세가지가 있다.

즉 ①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할 者가 故意로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를 處罰할 뿐아니라 ②稅金計算書를 交付받아 政府에 提出하여야 할 者(去來相對方)가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할 者와 通情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強壓的인 方法을 使用하여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去來相對方도 處罰하도록 하여 稅金計算書를 誠實히 授受하지 않으면 去來雙方이 모두 處罰을 받도록 하였고 ③한걸음 더 나아가 稅金計算書授受와는 無關한 第3者가 稅金計算書의 交付를 妨害한 때에도 이를 處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 稅金計算書의 交付義務者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할 者가 故意로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稅金計算書를 交付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供給價額(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에 附加價値稅率(基本稅率 13%)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의 2倍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한다.

(2) 稅金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할 者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아 이를 提出하여야 할 者가 暴行·脅迫·煽動·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은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其他의 者

위 (1), (2)이외의 者 즉 稅金計算書 授受와는 無關한 第3者가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脅迫·煽動·敎唆한 때에도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事　例>

乙에게 製品 500萬원어치를 供給한 甲은 丙의 煽動에 刺戟을 받고 乙과 通情談合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 乙 및 丙의 處罰은?

① 甲에 대한 處罰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3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함.

(罰金算出內容
500萬원×13%×2倍=130萬원)

② 乙·丙에 對한 處罰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함.

다. 帳簿備置·記帳義務違反(法 第12條의3第1項)

附加價値稅法·特別消費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가 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間接稅의 경우와 같이 50萬원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하였다.

라. 事業者登錄違反(法 第13條第17號)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申請하거나 그 登錄事項에 變動이 있어 事業者登錄의 訂正申請을 하여야 할 者가 事業者登錄의 申請·事業者登錄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事業者登錄證의 檢閱을 받지 아니한 때는 50萬원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하였다.

9. 關稅還給特例法 調整

가. 內需用 物品에 對한 稅額控除規定의 削除(法 第4條)

保稅區域에서 引取한 物品을 製造場에 搬入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에 대하여 稅務署長이 內國消費稅를 徵收하는 때에 輸入時에 稅關長이 徵收한 稅額을 控除하던 規定을 特別消費稅法(法第20條)에서 다른 課稅物品의 原料등으로 使用되는 課稅物品에 대한 課稅時 從前의 事前免稅制度를 事後控除制度로 轉換함에 따라 이를 削除하였다.

나. 徵收猶豫에 對한 擔保種類의 追加(法 第5條第2項)

輸出用原材料의 輸入에 대한 關稅의 徵收猶豫時에 提供하는 擔保의 種類에 金錢·國債證券·銀行支給保證·證券去來所에 上場되고 있는 證券·納稅保證保險證券 外에 信用保證基金法의 規定에 依한 信用保證을 追加하였다.

다. 關稅廳長이 定額還給率表 告示(法 第6條)

從前에는 定額還給率表를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였으나 定額還給率表의 擴大 및 節次簡素化를 爲하여 關稅廳長이 工業振興廳長과 協議하여 定하고 이를 告示하도록 하였다.

10. SOFA特例法 調整

이 法은 韓美行政協定(韓美相互防衛條約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區域과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關稅法 및 內國消費稅法등의 特例를 規定하기 위한 法律인 바,

附加價値稅法의 實施에 따라 이와 代替되어 廢止되는 內國消費稅에 關聯되는 關係規定의 用語를 整備하였고 入港手數料로 代替된 噸稅의 徵收 및 免除에 關한 規定을 削除하였으며, 廢止된 臨時特別關稅의 課稅標準에 關한 規定을 削除하고 防衛稅 및 臨時輸入附加稅의 課稅價格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였다.

77년도

附加價値稅法 어떤 稅金인가

머 리 말

지난해에 附加價値稅制의 導入을 그 主要 內容으로 하는 稅制改革을 斷行한 바 있습니다.

附加價値稅制의 導入은 直接稅 制度에 있어서 綜合所得稅 制度의 採擇과 같이 間接稅 制度를 近代化하기 爲한 劃期的인 措置였습니다.

附加價値稅는 처음 施行되는 制度이고 또 납세자 自身이 去來時마다 直接 計算하고 徵收하며 政府에 自進 納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充分한 理解가 必要합니다.

이 책자는 附加價値稅의 主要內容에 대하여 쉽고 간단하게 풀이하여 누구나 새로운 附加價値稅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이 附加價値稅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制度를 成功的으로 施行하는데 寄與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7. 1. 1

財務部長官 金 龍 煥

目　　次

1. 附加價値稅는 어떤 稅金인가 …… 313
2. 附加價値稅는 어떻게 計算하는가 …… 314
3. 附加價値稅施行의 目的은 무엇인가 …… 315
4. 附加價値稅施行의 準備는 되어 있는가 …… 318
5. 附加價値稅는 어떤 間接稅와 代替되는가 …… 319
6. 附加價値稅는 物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20
7. 附加價値稅는 家計負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21
8. 附加價値稅는 企業負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21
9. 附加價値稅는 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22
10. 附加價値稅는 어떤 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가 …… 323
11. 附加價値稅가 施行될 때 納稅義務者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324
12.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는 누구인가 …… 324
13. 納稅義務者는 언제 登錄해야 하는가 …… 325
14.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은 무엇인가 …… 326
15. 附加價値稅의 免稅對象은 어떤 것인가 …… 326
16. 附加價値稅의 零稅率 適用對象은 어떤 것인가 …… 327
17. 輸出入은 어떻게 課稅하는가 …… 328
18. 投資財는 어떻게 課稅하는가 …… 329
19. 農業은 課稅되는가 …… 330
20. 小企業은 어떻게 課稅하는가 …… 331
21.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무엇인가 …… 332
22.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얼마인가 …… 332
23. 附加價値稅는 去來時에 어떻게 徵收하는가 …… 333
24.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은 어떻게 計算하는가 …… 334
25. 稅金計算書는 어떻게 交付하는가 …… 336
26. 簡易稅金計算書는 어떻게 交付하는가 …… 338
27. 附加價値稅는 어디에서 納付하는가 …… 338
28. 附加價値稅는 언제 申告·納付하는가 …… 339
29. 稅金計算書는 언제 提出하는가 …… 340

30. 附加價値稅의 決定節次는 어떤가 …… 340
31. 附加價値稅에는 어떤 加算稅가 있는가 …… 341
32. 附加價値稅의 還給稅額은 언제 還給하는가 …… 342
33. 附加價値稅는 어떻게 記帳하는가 …… 343
34. 金錢登錄機는 누가 設置하며 그 惠澤은 무엇인가 …… 343
35. 在庫品에 대한 經過措置는 어떤가 …… 345

1. 附加價値稅는 어떤 稅金인가

附加價値稅는 物品이나 用役이 生産, 提供, 流通되는 모든 段階에서 賣出金額全額에 대하여 課稅하지 않고 企業이 附加하는 價値 즉 "마진"에 대하여만 課稅하는 稅金이다. 따라서, 모든 去來段階에서 課稅하나 稅金의 歸屬은 小賣段階의 賣上稅와 同一한 性格을 가진 稅金이다.

附加價値稅(Value Added Tax)는 物品이나 用役이 生産, 提供되거나 流通되는 모든 段階에서 企業이 附加하는 價値에 대하여 課稅하는 稅金이다.

즉 附加價値稅는 現在의 營業稅나 物品稅와 같이 企業의 賣出金額全額에 대하여 課稅하는 것이 아니라, 賣出金額에서 買入金額을 控除한 나머지 金額 즉 附加價値(마진)에 대하여 課稅하는 稅金이다.

附加價値의 主要構成要素는 企業이 支給하는 給料, 賃貸料, 利子와 利潤등이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構成要素들을 計算하여 合計(이러한 方法을 加算法이라 함)할 必要가 없고, 企業의 賣出金額에서 買入金額을 控除(이러한 方法을 控除法이라 함)하면, 그 나머지 金額이 이러한 構成要素들의 合計額과 結果的으로 一致하기 때문에 企業의 附加價値는 쉽게 計算할 수 있다.

附加價値稅는 特別히 免稅되지 않는 限, 모든 物品이나 用役의 모든 去來段階에서 課稅하는 點에서 特定한 物品에 對하여 어느 特定段階에서만 課稅하는 現在의 物品稅制度와 다르고, 去來段階마다 賣出金額(外形金額)에 대하여 課稅하지 않고, 各 企業이 加算하는 附加價値 卽, 嚴格한 意味에서의 若干의 差異가 있으나 "마진"에 대하여 課稅한다는 點에서 現在의 營業稅制度와 다르다. 따라서, 去來段階마다 課稅하여도 한번 課稅된 金額이 다시 課稅되거나 稅金에 稅金이 加算되어 消費者에게 稅金이 轉嫁되는 租稅의 累積效果가 없고, 稅金의 消費者에 對한 負擔으로 보아서는 小賣段階에서 課稅되는 單段階賣上稅와 꼭 같은 效果를 가지는 性格의 稅金이다.

2. 附加價値稅는 어떻게 計算하는가

(賣出額×稅率)－(買入額×稅率)＝納付稅額

附加價値稅는 物品이나 用役을 賣出할 때 徵收한 稅額에서 物品이나 用役을 買入할 때 徵收당한 稅額을 控除하여 計算한다.

附加價値稅는 企業이 物品이나 用役을 賣出(또는 提供)할 때 徵收한 稅額에서 다른 企業으로부터 物品이나 用役을 買入할 때 徵收당한 稅額을 控除하여 計算한다.

附加價値稅는 理論上 여러가지 課稅方法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企業이 物品이나 用役을 販賣할 때 現在의 去來源泉徵收制度와 같이 賣出金額에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 이에 關한 稅金計算書를 交付하도록 하여 企業이 賣出할 때 徵收한 稅額(賣出稅額이라고 함)에서 買入할 때 徵收당한 稅額(買入稅額이라 함)을 控除하여 附加價値稅를 計算(이러한 方法을 稅額控除法이라 함)하도록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附加價値稅를 現在의 營業稅 및 物品稅와 比較하여 보면 다음 <表1>과 같다.

原料生產者 A는 다른 企業으로부터 商品이나 用役을 買入하지 않고 1,000원의 原料를 生產하고, 製造業者 B는 이 原料를 使用하여 4,000원의 製品을 生產하고, 販賣業者 C는 이 製品을 消費者에게 5,000원으로 販賣하고, 營業稅率이 2%, 物品稅率이 14%라고 가정한다.

<表 1> 附加價値稅와 現行制度(營業稅 및 物品稅)와의 比較

	附加價値稅								營業稅 및 物品稅	
	賣出			買入			附加價値 ①－③	納付稅額 ②－④	課稅標準	納付稅額
	金額 ①	稅額 ②	計	金額 ③	稅額 ④	計				
A. 原料生產者	1,000	130	1,130	－	－	－	1,000	130	1,000	營 20
B. 製造業者	4,000	520	4,520	1,000	130	1,130	3,000	390	4,000	營 80 物 560
C. 販賣業者	6,000	780	6,780	4,000	520	4,520	2,000	260	6,000	營 120
計	11,000	1,430	12,430	5,000	650	5,650	6,000	780	11,000	780

※ 營業稅率은 2%, 物品稅率은 14%로 가정함.

稅額控除方法에 依하여 附加價値稅를 計算하면 原料生産者 A는 130원(賣出稅額 130 − 買入稅額 0 = 130), 製造業者 B는 390원(賣出稅額 520 − 買入稅額 130 = 390), 販賣業者 C는 260원(賣出稅額 780 − 買入稅額 520 = 260)을 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現在의 營業稅 및 物品稅는 賣出金額에 따라 各各 原料生産業者 A는 營業稅 20원(賣出金額 1,000 × $\frac{2}{100}$ = 20), 제조업자 B는 營業稅 80원(賣出金額 4,000 × $\frac{2}{100}$ = 80)과 物品稅 560원 (賣出金額 4,000 × $\frac{14}{100}$ = 560) 販賣業者 C는 營業稅 120원 (賣出金額 6,000 × $\frac{2}{100}$ = 120)을 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附加價値稅는 各 段階에서 課稅된 金額 즉 附加價値稅는 다음 段階에서 다시 課稅하지 않지만, 現在의 營業稅는 原料生産者 A의 附加價値, 1,000원에 대하여 製造·販賣段階까지 세번 課稅하고 製造業者 B의 附加價値 3,000원에 대하여는 販賣段階까지 두번 課稅하는 制度인 點에서 서로 다르다. 卽 附加價値稅는 租稅의 累積效果가 없는데 比하여 現在의 制度는 累積效果가 있는 것이다.

3. 附加價値稅 施行의 目的은 무엇인가

> 附加價値稅는 ①間接稅制의 簡素化, ②輸出 및 投資의 促進, ③間接稅의 中立性維持를 위하여 施行한다.

政府는 1971年부터 5年間에 걸쳐 附加價値稅의 導入을 위하여 國內外의 租稅專門家들로부터 諮問을 받고 關係公務員이 附加價値稅를 施行하고 있는 나라를 視察하는 등 꾸준히 硏究 檢討한 後 지난해 國會에서 附加價値稅法이 制定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附加價値稅를 施行하는 目的은 무엇인가?

첫째 複雜하고 多岐化된 間接稅制를 簡素化하기 위한 것이다.

現在의 間接稅制를 보면 國稅로서 營業稅·酒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電氣가스稅·電話稅·通行稅·入場稅·印紙稅 및 遊興飮食稅의 11個 稅目이 있고, 地方稅로서 馬券稅가 있어 모두 12個種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稅率의 數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節次도 複雜하여 納稅에 많은 不便을 招來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間接稅制를 統合 整備하여 簡素化함으로써 納稅에 便宜를 期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것이다.

現在의 間接稅制에서는 輸出品에 對하여 主된 原資材에 對한 間接稅는 免稅하고 있으나 完全히 免稅하지 못하고 있다. 例를 들면 輸出品의 原價에 包含되는 副材料費·動力費·運賃과 其他의 附帶費用에 對하여는 免稅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輸出品에도 間接稅가 一部 課稅되어 國產品의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킨다. 그러나 附加價値稅制度는 零稅率制度에 依하여 輸出品에 對해 間接稅를 完全히 免稅할 수가 있다.(17, 表5 參照)

셋째 投資의 促進을 위한 것이다.

現在의 間接稅制에 依하면 投資財價格에 包含되어 있는 營業稅·物品稅등은 減價償却方法에 依하여 長期에 걸쳐 企業에 回收되지만 附加價値稅는 投資財에 대한 買入稅額을 卽時控除함으로써 現在보다 有利한 投資의 與件을 만들 수 있다.(18, 表6 參照)

넷째, 間接稅의 中立性을 維持하기 위한 것이다.

現在의 營業稅는 모든 去來段階에 累積的으로 重複하여 課稅하고 間接稅가 原價에 包含될 뿐만 아니라, 稅金에 대하여도 稅金을 賦課함으로써 租稅의 累積效果가 發生하지만 附加價値稅는 그렇지 않다. 現行間接稅의 累積效果를 附加價値稅와 比較하면 表2와 같다.

<表2> 租稅의 累積效果比較

	現行 (營業稅 1.5% 物品稅11.5%)			附加價値稅 (13%)		
	金額(稅除外)	稅額	價格	金額(稅除外)	稅額	價格
製造	10,000	營 150 物 1,150	11,300	10,000	1,300	11,300
都賣	原價 11,300 마진 1,130 (10%) 12,430	營 188	12,618	原價 10,000 마진 1,000 (10%) 11,000	1,430 (130)	12,430
小賣	原價 12,618 마진 2,528 (20%) 15,142	營 228	15,370	原價 11,000 마진 2,200 (20%) 13,200	1,716 (286)	14,916
稅收入	1,716			1,716(1,300+130+286=1,716)		
累積效果	454(15,370−14,916=454)			0		

※ 營業稅率은 1.5%, 物品稅率은 11.5%로 가정함.

즉 都賣業에서는 10%, 小賣業에서는 20%의 마진을 붙인다고 가정하면 同一한 稅收入 1,716원

을 徵收하지만 現行 間接稅制에서는 454(15,370−14,916=454), 累積效果가 있으며 消費者 價格도 높아진다.

또한 原料에서 完製品에까지 生產段階가 統合된 企業은 營業稅가 한번 課稅되고 그렇지 않은 企業은 두번 이상 課稅되므로 企業의 生產段階統合을 促進하고 產業의 系列化를 沮害한다. 現行 營業稅制度에서의 生產段階統合利益을 附加價値稅와 比較하면 <表 3>과 같다. 즉 現行 營業稅制에 의하면 原料, 中間製品, 完製品의 3段階를 統合한 企業은 다른 모든 條件이 同一하다면 그렇지 않은 企業보다 45원(3,435−3,390=45)만큼 有利한 競爭條件을 갖게 되지만 附加價値稅制度에서는 그렇지 않다.

<表 3> 生產段階의 垂直的統合利益 比較

	金 額	現 行 (營業稅 1.5% 物品稅11.5%)		附加價値稅(13%)	
		統 合	非統合	統 合	非 統 合
原料生產	1,000	−	營 15	−	130
中間製品製造	2,000	−	營 30	−	130
完製品製造	3,000	營 45 物 345	營 45 物 345	390	(260−130=130) 130
計	6,000	390	435		(390−260=130) 390
完製品價格		3,390	3,435	3,390	3,390
垂直的統合利益		45(3,435−3,390=45)		0	

※ 營業稅率은 1.5%, 物品稅率은 11.5%로 가정함.

그리고 物品稅등의 現行 消費稅는 課稅對象이 選擇的이고 稅率도 差別的이므로 國內資源의 합리적인 配分을 歪曲시킬 念慮도 있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는 原則的으로 모든 物品과 用役이 同一稅率로 課稅될 것이므로 間接稅의 中立性이 維持된다.

이와같이 現行의 間接稅制는 여러가지 問題點과 副作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解決할 수 있는 附加價値稅制度가 하루 속히 우리나라에 實施되어야 하는 것이다.

4. 附加價値稅施行의 準備는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는 廣範圍한 營業稅와 오랜 去來源泉徵收의 經驗이 있고, 또한 (1) 納稅者에 對한 弘報·敎育, (2) 行政의 受容態勢, (3) 稅金計算書의 授受, (4) 納稅番號의 賦與등에 관한 附加價値稅의 施行準備는 完了되어 있다.

附加價値稅를 施行하기 위하여는 一般的으로 (1) 納稅者가 새 稅制를 理解할 수 있는 充分한 弘報와 敎育, (2) 課稅範圍의 擴大에 對處할 수 있는 行政能力, (3) 納稅義務者의 登錄, (4) 稅金計算書의 誠實한 授受와 記帳, (5) 課稅資料의 效率的 處理 등에 對한 充分한 準備가 必要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附加價値稅의 課稅範圍와 같은 營業稅制度가 있으며, 10餘年前부터 營業稅納稅義務者의 登錄 및 納稅番號制度를 實施하였고, 形式과 節次에 있어서 附加價値稅와 비슷한 營業稅의 去來源泉徵收制度도 實施하여 왔다. 그리고 1974年의 營業稅法改正時에 附加價値稅導入의 事前措置로서 去來源泉徵收의 範圍를 모든 製造業, 鑛産業, 都賣業에까지 擴大하고 標準計算書制度를 立法化하였는바, 現在 比較的 잘 施行되고 있다. 그리고 政府에서는 附加價値稅의 實施에 앞서 몇 차례의 豫行 演習도 計劃하고 있다. 標準計算書는 附加價値稅에서 말하는 稅金計算書와 꼭 같은 것이고, 去來源泉徵收制度는 附加價値稅를 賣出時에 徵收하고 買入時에 徵收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附加價値稅의 記帳制度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稅金計算書綴로서도 充分한 記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現在 모든 課稅資料는 컴퓨터에 의하여 效率的으로 處理되고 있으며 附加價値稅의 導入을 위하여 그 施設도 擴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廣範圍한 營業稅를 課稅하고 있으므로 納稅人員의 增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附加價値稅를 導入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有利한 立場에 있다. 附加價値稅를 成功的으로 實施하기 爲하여는 納稅者가 附加價値稅를 充分히 理解하여야 한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附加價値稅의 內容을 쉽게 알리는 映畵를 만들어 上映할 것이고 附加價値稅法의 解說冊子와 業種別案內書를 發刊하여 配布할 것이다.

그리고 附加價値稅 施行初期의 物價上昇을 防止하기 위하여 品目別 豫想變動價格을 미리 公表하고 이에 따라 效果的인 價格統制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附加價値稅를 實施할 수 있는 與件도 整備되어 있고 그 實施를 위한 充分한 準備作業도 完了되어 있다.

5. 附加價値稅는 어떤 間接稅와 對替되는가

現行 8個稅目의 間接稅를 代替하여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둔다.

附加價値稅가 實施되면 營業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電氣가스稅·通行稅·入場稅 및 遊興飮食稅등 8個稅種의 間接稅가 統合되어 附加價値稅로 簡素化 된다.

附加價値稅는 原則的으로 모든 物品과 用役을 課稅對象으로 하되, 輸出에 대하여는 零稅率을 適用하고, 生活必需品에 對하여는 免稅하며, 稅率은 하나로 하였다.

特別消費稅는 附加價値稅制度를 補完하기 위하여 奢侈品, 揮發油와 高價의 耐久消費財등을 課稅對象으로 하고 稅率構造도 單純化하였다.

참고로 現在의 內國稅體系와 附加價値稅 實施後의 內國稅體系를 比較하면 <表 4>와 같다.

<表 4> 內國稅體系比較

現行		實施後	
·直接稅	所得稅	·直接稅	所得稅
	法人稅		法人稅
	相續稅		相續稅
	資產再評價稅		資產再評價稅
	不當利得稅		不當利得稅
間接稅	營業稅	·間接稅	附加價値稅
	酒稅		特別消費稅
	物品稅		酒稅
	織物類稅		電話稅
	石油類稅		印紙稅
	電氣가스稅		
	電話稅		
	通行稅		
	入場稅		
	印紙稅		
	遊興飮食稅		
·防衛稅		·防衛稅	

6. 附加價値稅는 物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附加價値稅가 實施되더라도 全體物價水準은 不變이나 個別商品의 價格은 變動될 것이다. 그러나 實施初期의 心理的인 原因에 의한 物價上昇을 效果的으로 統制할 것이다.

附加價値稅를 實施하게 되면 物價가 上昇할 것이라고 憂慮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現在의 間接稅制度에 의한 租稅收入을 確保하는 水準인 13%의 稅率을 가진 附加價値稅를 實施하므로 全體物價水準은 理論的으로 變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附加價値稅는 한번 課稅된 金額을 다시 課稅하지 아니하고 稅金에 稅金이 重複 課稅되는 租稅의 累積效果가 없으므로, 理論的으로는 現行 間接稅의 累積效果만큼 物價水準은 下落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個別商品의 價格은 變動이 있게 될 것이다. 즉 物品稅등의 個別消費稅가 高率로 課稅되던 品目의 價格은 特別消費稅가 課稅되지 않는다면 下落하고, 그렇지 않은 品目의 價格은 上昇할 것이다.

그러나 物品稅등의 個別消費稅가 課稅되지 않거나 低率課稅되는 品目이라도 現在 流通過程이 多段階로 되어 있는 品目의 價格은 큰 變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多段階의 流通過程을 거치는 品目은 한번 課稅된 金額이 다시 課稅되고 稅金에 稅金이 加算되어 累積效果가 크기 때문에 營業稅등 상당히 많은 間接稅를 負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現實的으로는 實施初期의 價格造作과 心理的 要因에 의하여 下落되어야 할 商品의 價格은 下落되지 않고 上昇하여야 할 商品의 價格만이 上昇하는 現象이 發生할 憂慮가 없는 것은 아니다. 物價의 上昇은 반드시 合理的인 上昇要因에 의해서만 騰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不當한 物價上昇을 抑制하기 위하여 政府는 事前에 商品別로 豫想되는 價格變動의 크기를 調査分析하여 強力한 價格統制를 할 것이며, 또한 豫想價格을 國民에게 알리고 이러한 不當한 價格의 造作을 防止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經驗에서도 附加價値稅의 實施에 의하여 物價가 크게 上昇하지 않았다.

여기서 納稅者에게 強調하고 싶은 것은 附加價値稅는 物品이나 用役의 原價計算에 있어서 原價要素로 包含시킬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7. 附加價値稅는 家計負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附加價値稅는 家計負擔에 큰 變動을 일으키지 않으며 生活必需品에 대하여는 免稅함으로써 低所得層의 生活은 保護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附加價値稅가 實施된다 하더라도 家計의 間接稅負擔은 크게 變動이 없을 것이다.

附加價値稅는 未加工飮料品, 水道물, 煉炭등의 生活必需品에 對하여는 免稅 또는 附加價値稅의 稅率을 現在의 間接稅負擔과 꼭 같은 率로 定하였기 때문에 低所得層의 家計負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反面에 奢侈品이나 高價의 耐久消費財에 대하여는 高率의 特別消費稅를 課稅함으로써 高所得層이 많은 間接稅를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附加價値稅가 實施된다 하더라도 全體家計負擔은 큰 變動이 없을 것이고 低所得層의 生活은 保護될 것이다.

8. 附加價値稅는 企業負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附加價値稅는 原則的으로 消費者에게 轉嫁되는 것이나 現實的으로 企業이 負擔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①마진의 크기, ②轉嫁의 程度, ③現行 消費稅負擔의 多寡에 따라 그 負擔은 달라진다.

附加價値稅는 理論上으로 消費者에게 轉嫁되는 것이고 企業이 負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企業이 負擔한다고 가정하면 企業의 間接稅負擔은 相對的으로 變動하게 된다.

첫째, 同一業種에 있어서도 企業間의 附加價値稅負擔은 附加價値率, 즉 利益 또는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마진을 많이 붙이는 企業은 많은 附加價値稅를 負擔하여야 하고 反對의 경우에는 그 負擔이 적어진다. 이와같이 附加價値稅를 同一稅率로 課稅하더라도

企業의 間接稅負擔은 마진, 즉 擔稅力에 따라 公平하게 된다.

둘째, 附加價値稅의 轉嫁의 程度에 따라 달라진다. 企業의 販賣政策 즉 薄利多賣 또는 適正利潤確保與否와 市場의 狀況에 따라 附加價値稅의 全額을 轉嫁시키느냐 一部만을 轉嫁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企業은 적게 負擔하고 다른 企業은 많이 負擔하게 될 것이다.

셋째, 業種間을 比較하면 現在 物品稅등 個別消費稅가 低率課稅되는 業種은 負擔에 큰 變動이 없을 것이고, 營業稅만이 課稅되는 業種은 負擔이 增加할 수도 있을 것이나, 消費者까지의 流通過程에서의 負擔을 考慮할 때에는 一般的으로 轉嫁가 可能하여 반드시 負擔이 커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反面 高率의 物品稅가 課稅되는 業種의 負擔은 特別消費稅가 課稅되지 않는다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生產段階가 多段階로 分化되어 있는 中小企業의 負擔은 現在보다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競爭條件은 現在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生產段階가 垂直的으로 統合된 大企業의 負擔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負擔은 큰 變動이 없을 것이다.

9. 附加價値稅는 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附加價値稅는 ①國際收支改善, ②投資의 奬勵, ③物價安定, ④產業의 系列化, ⑤資源配分의 合理化에 寄與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附加價値稅를 施行할 때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附加價値稅는 輸出등 外貨獲得事業에 대하여 完全히 免稅하므로 輸出이 促進되어 國際收支改善에 寄與할 수 있게 된다.

둘째, 投資財는 附加價値稅의 負擔이 없으므로 投資原價를 輕減시켜 投資를 奬勵한다. 새로운 投資는 技術을 革新시키고 企業의 生產性을 높이며 國民所得을 增加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租稅의 累積效果를 除去시켜 物價의 安定에 寄與할 수 있다. 現在의 營業稅와 物品稅등은 重複課稅하는 制度이기 때문에 物價上昇을 促進하지만 附加價値稅는 그렇지 않다.

넷째, 附加價値稅는 產業의 系列化政策에 寄與할 수 있다. 왜냐하면 現在의 營業稅는 生產段

階의 統合度에 따라 企業의 負擔이 달라지며 製品의 原價도 달라진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는 生産段階의 統合에 의하여 現在와 같은 稅負擔上의 利益이 發生하지 않는다. 따라서 大企業의 不必要한 生産段階統合現象이 줄어 들고 中小企業의 稅制上 地位도 有利하여질 것이다.

끝으로, 附加價値稅는 資源配分의 合理化에 寄與할 수 있다.

現在의 物品稅등 個別消費稅는 課稅品目이 選擇的이고 稅率의 差가 심하여 國內의 資源配分을 歪曲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는 모든 物品과 用役에 대하여 同一하게 課稅하므로 國內資源은 市場價格機能에 의하여 配分되게 하고, 現在의 價格體系도 中立的으로 再編成하게 되어 資源配分의 合理化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國家가 育成해야할 産業은 所得稅나 法人稅등의 直接稅政策, 關稅率調整에 의한 關稅政策과 金融政策에 의하여 支援하는 것이 效果的이며 확실하다.

그러나 奢侈品등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高率課稅하여 奢侈性 消費를 抑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附加價値稅는 어떤 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가

附加價値稅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23個國에서 實施하고 있고 10個國에서 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附加價値稅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實施되었고 그후 유럽共同體의 共通賣上稅制로 採擇되었다. 그리고 現在 北유럽諸國과 라틴아메리카諸國 그리고 佛語를 使用하는 아프리카諸國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附加價値稅制의 導入을 推進하고 있는 나라까지 합치면 약 30餘個國에 이르고 있는데 그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附加價値稅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

① 유럽諸國~프랑스, 서독, 英國,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② 라틴아메리카諸國~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③ 아프리카諸國~알제리, 아이보리코스트, 말라가시,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나. 附加價値稅導入을 推進하고 있는 나라

自由中國, 日本,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그리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11. 附加價値稅가 施行될 때 納稅義務者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納稅義務者는(1) 事業者登錄을 하고(2) 在庫品의 申告를 하며(3) 去來時마다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4)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하고(5) 2個月마다 豫定申告와 納付를 하고 (6) 6個月마다 確定申告와 納付를 하여야 한다.

附加價値稅가 施行될 때에는 먼저 納稅義務者는

(1) 附加價値稅法 施行 20日前까지 소관세무서에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하며

(2) 自己가 갖고 있는 販賣用 商品과 事業用原資材의 在庫品을 施行日로부터 14日 內에 申告하고

(3)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할 때마다 附加價値稅를 徵收하여야 하고 또한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4) 또한 2個月마다 豫定申告 및 6個月마다 確定申告를 하고 附加價値稅를 納付하며, 同時에 稅金計算書를 소관세무서에 提出하여야 한다.

(5)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도록 指定된 事業者는 設置期限內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2.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는 누구인가

附加價値稅는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事業者를 納稅義務者로 한다.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는 營利目的의 有無에 不拘하고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事業을 하는 者(事業者)로 한다.

事業에는 製造業, 販賣業, 서어비스業등 모든 業種이 包含되고 事業者에는 個人, 法人 또는 法人格없는 모든 團體가 包含된다. 그리고 法人에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도 包含되는 것이다.

事業者인 納稅義務者는 稅務署에 登錄하여야 하고 物品이나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供給받는 者로부터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 稅金計算書를 交付할 義務가 있다.

物品의 輸入者는 物品을 輸入할 때에 附加價値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13. 納稅義務者는 언제 登錄해야 하는가

새로 事業을 始作하는 事業者는 事業開始日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에 登錄해야 한다.

새로 事業을 始作하는 事業者는 事業場마다 事業開始日부터 20日內에 事業者登錄申請書를 소관세무서에 提出하고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가. 個人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法人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許可事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다. 事業場을 賃借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登錄된 事業者에게는 登錄番號가 기재된 事業者登錄證을 交付하게 되며 事業者는 每年 1月 1日부터 1月 31日까지와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소관세무서에서 檢閱을 받아야 하다.

그러나 附加價値稅施行當時에 事業을 繼續하고 있는 事業者는 附加價値稅施行 20日前까지 登錄을 하여야 한다.

14.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은 무엇인가

附加價値稅는 事業者가 供給하는 모든 物品과 用役 및 輸入하는 物品을 課稅對象으로 한다.

附加價値稅는 事業者가 供給하는 모든 物品과 用役 및 輸入하는 物品을 課稅對象으로 한다.

物品이라 함은 製品, 原料, 機械등 財産的 價値있는 모든 物件을 말한다.

建物은 課稅되는 物品에 包含되지만 土地는 免稅對象으로 하고 있다.

用役이라 함은 物品以外의 財産的 價値있는 모든 役務 즉 서어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雇傭關係에 있는 勤勞用役은 除外하고 營業權, 特許權등의 權利는 用役에 포함된다.

供給이라 함은 販賣, 賃貸등에 의하여 物品을 引渡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原則的으로는 代價를 받는 物品이나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지만, 例外的으로 代價를 받지 않고 物品을 供給하는 경우도 課稅되는 때가 있다. 例컨대 事業者가 販賣用으로 生産하거나 取得한 物品을 自己의 個人的으로 目的으로 使用 또는 消費하는 경우이다.

物品의 輸入은 課稅되지만 用役의 輸入은 課稅되지 않는다.

15. 附加價値稅의 免稅對象은 어떤 것인가

生活必需品 등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가 免除된다.

附加價値稅의 免稅制度는 一般免稅와 完全免稅의 두 가지가 있다. 完全免稅制度는 다음에서 說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一般免稅制度에 대해서만 說明한다.

一般免稅制度는 自己의 賣出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稅하지만 買入할 때에 徵收당한 附加價値稅는 還給받지 못하는 制度인데 現在의 營業稅法上 免稅制度와 같다.

一般免稅의 對象은 나라에 따라 그 範圍를 다르게 定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生活必需品, 厚生과 關聯이 많은 用役등에 對하여는 附加價値稅의 負擔을 없애고 國民生活을 保護하기

爲하여 免稅하고 있다.

첫째, 穀物, 채소등의 加工되지 아니한 飮料品과 水道물, 煉炭과 無煙炭등의 生活必需品과 市內 버스 등에 對하여는 免稅한다. 이러한 生活必需品을 免稅함으로써 低所得層의 生活을 保護하고 農業도 아울러 保護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둘째로 醫療保健用役, 敎育用役, 保險用役등도 國民厚生的인 觀點에서 免稅한다. 또한 新聞, 放送, 圖書등 文化用役도 最大限의 文化生活을 保護하기 爲하여 免稅하고 있다.

세째, 辯護士, 會計士, 稅務士, 歌手, 俳優등의 入的用役은 勤勞用役과 事實上 類似하기 때문에 免稅한다.

넷째로 附加價値稅의 構成要素가 되는 給料, 賃貸料, 利子, 利潤등의 發生根據가 되는 勞動, 不動產賃貸, 金融 등은 理論上의 理由로 免稅된다.

16.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對象은 어떤 것인가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對象은 輸出物品, 外國에서 提供하는 用役,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 用役 및 其他 外貨獲得 物品 또는 用役이다.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은 賣出에 適用하는 稅率을 零으로 하는 制度로서 買入稅額이 전부 還給되므로 完全免稅制度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輸出以外에 外國에서 提供하는 用役이나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및 다음과 같은 其他의 外貨獲得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도 零稅率을 適用하고 있다.

(1) 保稅加工·廣告·資料處理 및 오파業의 用役

(2) 外國船舶 또는 航空機의 國內處理店의 用役

(3) 外國船舶 및 航空機 또는 遠洋漁船에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4) 國內에 駐在하는 外國機關·美國軍등에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5) 國際旅行斡旋業者·觀光宿泊業者 또는 觀光記念品販賣業者가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용역

(6) 駐韓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이 駐屯하는 地域內의 事業者가 外貨로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17. 輸出入은 어떻게 課稅하는가

輸出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適用하여 完全免稅(還給)하고 輸入은 關稅와 같이 課稅한다.

輸出과 輸入에 對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方法은 現在의 營業稅와 다르다.

附加價値稅制度에서는 物品의 輸出, 國際運送用役, 觀光호텔등 外貨를 獲得하는 物品과 用役에 대하여 零의 稅率을 適用하는등 이른바 完全免稅制度에 의하고 있다.

즉 (輸出金額×0)－(買入金額×稅率)＝0－買入稅額＝還給稅額이 된다.

零稅率適用對象者는 形式的으로는 納稅義務者가 되고 課稅되지만 自己의 賣出 즉 輸出등에 適用되는 稅率이 零이다. 따라서 賣出額은 항상 0이고 買入은 正常的으로 課稅되기 때문에 買入稅額만 있게 된다. 이러한 買入稅額은 還給稅額(0－買入稅額＝還給稅額)으로서 政府로부터 還給받게 되므로 零稅率制度는 賣出뿐만아니라 買入에 대하여도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完全免稅制度라고 한다. 現在의 營業稅나 物品稅制度에 있어서의 輸出免稅는 原材料以外의 副材料나 動力費등 附帶費用에 對하여는 免稅가 되고 있지 않지만 附加價値稅의 零稅率制度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도 免稅하는 制度이다.

輸入되는 物品은 輸入段階에서 關稅와 같이 正常的으로 課稅되며 輸入者가 事業者인 경우에는 輸入時에 徵收당한 附加價値稅를 買入稅額으로서 自己의 賣出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용 原資材의 輸入에 대하여는 課稅 또는 徵收를 猶豫하는 制度를 두지 아니하고, 이 때에도 正常的으로 課稅하고 事後에 還給받게 한다.

輸出入의 課稅를 例示하면 다음 <表 5>와 같다.

<表 5> 輸出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輸 出	10,000	0	$10{,}000\times\frac{0}{100}=0$
	計	10,000	0	賣出稅額 0
買 入	輸入原材料	4,000	520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買 入	副 材 料	1,000	130	
	動 力	1,000	130	
	其 他	1,000	130	
	計	7,000	910	買入稅額 910
納付稅額			△910	還給稅額 910

즉 어떤 輸出業者가 外國으로부터 4,000원의 原材料를 輸入하고 國內에서 副材料, 動力 등 3,000원의 物品과 用役을 買入하여 輸出品을 製造하여 10,000원에 輸出하였다면 이때 賣出稅額은 $0(10{,}000\times\frac{0}{100}=0)$이고 買入稅額은 $910원(4{,}000\times\frac{13}{100}+3{,}000\times\frac{13}{100}=910)$이므로 910원의 稅額(0－910＝△910)을 政府로부터 還給받게 된다. 따라서 輸出에는 間接稅의 負擔이 全혀 없게 된다.

18. 投資財는 어떻게 課稅하는가

投資財의 買入稅額은 全額 控除 또는 還給함으로써 附加價値稅를 負擔시키지 않는다.

機械, 建設資材등의 投資財도 正常的으로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며 이러한 投資財를 買入할 때 徵收당한 附加價値稅는 買入稅額으로서 控除 또는 還給(이러한 形態를 消費型附加價値稅라고 함)받도록 하여 事實上 投資財는 附加價値稅를 負擔하지 않게 한다.

企業의 投資를 하는 경우의 附加價値稅를 計算하면 다음의 <表 6>과 같다.

<表 6> 投資하는 企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金 額	備 考
賣 出	賣 出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摘　要	金額(稅除外)	金　額	備　考
買　入	原材料	4,000	520	
	副材料	1,000	130	
	動力	1,000	130	
	其他	1,000	130	
	機械	10,000	※1,300	
	建物	10,000	※1,300	
	計	27,000	3,510	買入稅額 3,510
納付稅額		△17,000	△2,210	還給稅額 2,210 投資가 없었을 경우 納付稅額 390

즉 어떤 企業이 4,000원의 原材料와 3,000원의 副材料 動力과 其他의 物品과 用役을 買入하여 10,000원의 物品을 製造, 販賣하였는데 이 때 10,000원의 機械를 設置하고 10,000원의 建物을 建設하였다고 가정하자. 附加價値稅率이 13%이므로 이 企業은 2,210원(1,300－3,510＝△2,210)을 政府로부터 還給받게 된다.

만약 이 企業이 投資를 하지 않았다면 390원(1,300－910＝390)의 附加價値稅를 納付하여야 하는데 2,210원을 還給받았기 때문에 投資財의 買入稅額 2,600원은 附加價値稅을 負擔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19. 農業은 課稅되는가

農業에 대하여는 免稅한다.

農業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낮은 稅率로 附加價値稅를 課稅한다.

그러나 農民이 實際로 附加價値稅를 計算하고 納付하는 것이 아니라 農民으로부터 農產物을 買入하는 事業者가 農民의 附加價値稅를 代身하여 計算하고 納付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들은 農業에 對하여 附加價値稅를 免除하고 있다. 왜냐하면 開發途上國의 農業은 零細하고 또한 農產物은 低所得增의 家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農業은 免稅한다.

20. 小企業은 어떻게 課稅하는가

個人企業에 대하여는 課稅特例를 두고 있다.

一般的으로 小企業은 숫자도 많고 記帳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年間去來金額이 一定額 이하의 零細한 個人小企業에 대하여는 免稅하거나 特別課稅하고 있다.

예를 들면 英國에서는 年間去來金額 5,000파운드(약 4백2십만원)이하의 企業은 原則的으로 免稅하고, 다만 本人이 納稅義務者가 되겠다고 申請하는 경우에만 附加價値稅가 課稅된다. 그리고 西獨에서는 年間去來金額 60,000마르크(약 1,240만원)以下의 小企業에 대하여는 去來金額의 4%로 特例課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年間去來金額 1,200만원(代理·仲介·周旋·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300萬원)에 未達되는 個人小企業에 대하여 그 去來金額의 2%(代理등에 경우에는 3.5%)를 納付稅額으로 하는 課稅特例를 두고 있으며 또한 6月間의 納付稅額이 7,500원 未滿인 경우에는 徵收하지 아니하는 方法을 擇하고 있다.

그리고 課稅特例者는 一般課稅者와 같이 2個月마다 豫定申告納付 6個月마다 確定申告納付하여야 하지만 豫定申告納付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前年度 納付稅額의 $\frac{1}{3}$을 申告하고 納付하면 된다.

또한 課稅特例者가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아 稅務署에 提出하면 記載된 稅額의 5%相當額의 稅額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수많은 個人小企業에 대하여 特別課稅함으로써 納稅와 行政이 쉬워지는 것이다.

21.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무엇인가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物品이나 用役의 供給價額이다. 物品輸入의 경우는 關稅의 課稅價格과 關稅 및 特別消費稅 또는 酒稅의 合計額이 된다.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物品과 用役의 供給價額이다. 供給價額에는 附加價値稅를 包含하지 아니한다. 課稅標準은 金錢으로 그 代金을 받는 경우에는 그 代金이고, 金錢 이외의 代金을 받는 경우 또는 不當하게 낮은 代金을 받거나 代金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己가 供給하는 物品 또는 用役의 時價로 한다.

에누리額, 還入額, 破損된 物品의 價額, 國庫補助金, 公共補助金 등은 課稅標準에 包含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割引額, 貸損金, 奬勵金 등은 課稅標準에서 控除되지 아니한다.

物品을 輸入하는 경우의 課稅標準은 關稅를 課稅할 때의 關稅의 課稅價格 즉 正常到着價格에 關稅와 特別消費稅 또는 酒稅를 合計한 金額으로 한다.

22.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13%의 單一稅率制度를 採擇하였으며 稅率의 크기는 附加價値稅와 代替되는 現行 間接稅 收入과 同一한 水準에서 결정되었다.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單一稅率制度와 複數稅率制度가 있다.

單一稅率制度는 모든 物品과 用役에 대하여 하나의 稅率로 課稅하는 制度이다. 그리고 複數稅率制度는 一般消費財에 대하여는 標準稅率, 生活必需品에 대하여는 輕減稅率, 奢侈品에 대하여는 加重稅率로 課稅하는 制度이다.

複數稅率制度는 納稅와 行政을 複雜하게 하며 一般財와 生必品 및 奢侈品의 區分도 困難하기 때문에 單一稅率制度가 좋은 制度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3%의 單一稅率만 있는데 單一稅率制度에 의하더라도 生活必需品은 免稅하고

奢侈品은 特別消費稅를 課稅함으로써 實際에 있어서는 複數稅率과 같은 效果를 내도록 하고 아울러 納稅와 行政의 便宜를 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의 稅率은 國民의 追加的인 稅負擔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附加價値稅와 代替되는 8個 現行 間接稅收入과 同一한 水準에서 決定되었다. 따라서 國民의 稅負擔이 무거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稅率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水準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內國收入中 間接稅가 60% 以上이며 이와 같이 間接稅의 比重이 높은 나라에서의 基本稅率이 프랑스가 23%, 아일랜드가 20%인 것과 比較하면 알 수 있다.

23. 附加價値稅는 去來時에 어떻게 徵收하는가

事業者가 物品 또는 用役을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때에는 課稅標準에 稅率을 곱하여 계산한 附加價値稅를 去來 相對方으로부터 徵收한다.

事業者는 去來時 卽 物品 또는 用役을 販賣하거나 提供하는 때에는 課稅標準에 稅率을 곱하여 계산한 附加價値稅를 去來相對方으로부터 徵收하여야 한다. 이 때에 물품의 去來時期는

(1) 物品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物品이 引渡되는 때

(2) 物品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物品의 利用可能하게 되는 때

(3) 그 밖의 경우에는 物品의 販賣가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用役의 去來時期는

(1) 通常的으로는 그 用役의 提供이 完了되는 때이고

(2) 完成程度에 따라 또는 延拂條件附로 用役을 提供하는 경우에는 그 對價의 各部分을 받기로 한때로 하고 있다.

24.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은 어떻게 計算하는가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은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賣出稅額을 超過하는 買入稅額은 還給한다.

事業者인 納稅義務者가 稅務署에 納付해야 할 附加價値稅는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을 控除한 金額이다. 賣出稅額은 物品이나 用役을 供給할 때 徵收했거나 徵收할 附加價値稅를 말하고 買入稅額은 物品이나 用役을 供給받거나 輸入할 때 徵收당했거나 徵收당할 附加價値稅를 말한다.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은 各豫定申告期間 또는 各課稅期間을 單位로 計算되는데 豫定申告期間은 2個月, 課稅期間은 6個月로 하였다.

買入稅額가운데 一部는 控除되지 않는다. 事業과 關聯이 없는 支出, 自家用乘用車의 購入維持費 등에 대한 買入稅額은 控除되지 않으며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않았거나 記載內容이 不分明한 경우의 買入稅額도 控除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買入稅額을 控除하지 않은 것은 主로 行政的인 理由에서이다.

어떤 納稅義務者가 免稅事業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 免稅事業에 關聯된 買入稅額은 당연히 控除되지 않겠지만 그 區分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課稅되는 供給金額과 免稅되는 供給金額의 比率에 따라 按分計算 하여야 한다.

그런데 輸出, 또는 投資를 하는 경우와 買入만 있고 賣出은 없거나, 買入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賣出하는 경우에는 買入稅額이 賣出稅額을 超過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超過稅額은 政府로부터 還給을 받게된다.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計算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例 1)製造業의 附加價値稅를 計算하여 보면 <表 7>과 같다.

<表 7> 製造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賣 出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買 入	原 材 料	4,000	520	
	副 材 料	1,000	130	
	動 力	1,000	130	
	其 他	1,000	130	
	計	7,000	910	買入稅額 910
納付稅額		3,000	390	

A라는 製造業者는 다른 企業으로부터 4,000원의 原材料, 1,000원의 副材料, 1,000원의 動力과 1,000원의 기타 物品 및 用役을 買入하여 製品을 만들어 販賣業者에게 10,000원에 賣出하였을 때 製造業者 A가 納付해야 할 附加價値稅는 自己가 製品을 賣出할 때 徵收한 稅額 1,300원에서 物品 또는 用役(原材料, 副材料, 動力, 其他)을 買入할 때 徵收당한 稅額 910원을 控除한 390원(1,300−910=390)이 되는 것이다.

(例 2)販賣業의 附加價値稅를 計算하면 <表 8>과 같다.

<表 8> 販賣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A 製 品	12,000	1,560	
	計	12,000	1,560	賣出稅額 1,560
買 入	A 製 品	10,000	1,300	
	運 送 費	500	65	
	其 他	500	65	
	計	11,000	1,430	買入稅額 1,430
納付稅額		1,000	130	

B라는 販賣業者가 製造業者로부터 10,000원의 A製品을 買入하여 消費者에게 12,000원에 매출하였다. 그런데 販賣業者 B는 A製品을 買入할 때 500원의 運送費를 支給했고, 또한 自己 店舖에서 使用한 電氣, 電話와 事務用品 등에 대한 費用으로 500원을 支給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納付稅額은 130원(1,560−1,430=130)이 된다.

(例 3)서어비스(用役)業의 附加價値稅를 計算하면 <表 9>와 같다.

<表 9> 서비스業(貨物運送業)의 附加價値稅計算

	摘 要	金額(稅除外)	稅 額	備 考
賣 出	運 送 料	10,000	1,300	
	計	10,000	1,300	賣出稅額 1,300
買 入	디 젤 油	5,000	650	
	其 他	1,000	130	
	計	6,000	780	買入稅額 780
納付稅額		4,000	520	

서어비스業中, 貨物運送業을 營爲하고 있는 C라는 企業은 10,000원의 運送料收入이 있고 다른 企業으로부터 5,000원의 디젤油와 電氣料金, 電話料金, 事務用品費등으로 1,000원을 支給하였다.

이때 運送業者 C의 納付稅額은 520원이 된다.

25. 稅金計算書는 어떻게 交付하는가

事業者가 物品이나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 附加價値稅額을 表示한 稅金計算書를 去來相對方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稅額控除法에 의한 附加價値稅制度 아래에서는 納稅義務있는 事業者가 物品이나 用役을 供給할 때에는 附加價値稅額을 表示한 計算書 卽 稅金計算書를 去來相對方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하나의 稅金計算書는 賣出者가 納付해야 할 稅額의 根據가 될 뿐만아니라 買入者가 買入稅額을 控除 또는 還給받을 수 있는 根據가 되기 때문에 附加價値稅制度에서는 가장 重要한 書類이다.

만약 物品이나 用役을 買入할 때 附加價値稅는 徵收하고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

우에는 徵收당한 稅額을 控除 또는 還給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만큼 損害가 될 뿐 아니라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 加算稅가 賦課된다.

稅額控除法에 依한 附加價値稅制度는 現在의 營業稅去來源泉徵收制度와 비슷하다. 그러나 營業稅去來源泉徵收는 相對方이 納付할 稅額을 徵收하는 것이지만 附加價値稅의 徵收는 自己가 納付할 稅額을 徵收하는 點에서 다르다.

그리고 稅金計算書制度는 우리나라가 過去부터 施行해 오던 去來源泉徵收領收證制度와 販賣報告義務制度와 비슷하다. 또한 1974年의 營業稅法 改正時에 標準計算書制度를 立法化하여 이미 稅金計算書制度와 비슷한 것을 實施하고 있다.

稅金計算書의 形式은 各國이 약간씩 다르게 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稅金計算書의 記載事項을 大幅的으로 簡素化하여 (1) 供給하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2) 供給받는 者의 登錄番號 (3) 供給價額 (4) 附加價値稅額 (5) 作成年月日 등을 記載하도록 함으로써 納稅義務者가 간편하게 作成交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稅金計算書作成의 번거로움을 덜게 하기 위하여 繼續的으로 去來를 하는 去來相對者에게는 1個月에 한번 總去來額에 對한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도 無妨하도록 하였다.

세 금 계 산 서

공급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년	월	일	공란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불명사유	담당	주무	과장	서장

26. 簡易稅金計算書는 어떻게 交付하는가

簡易稅金計算書는 正規의 稅金計算書를 交付할 實益이 없는 小賣業者·飮食店業者 등을 그 交付對象者로 하고 있다.

簡易稅金計算書는 物品을 購入하거나 用役을 提供받는 사람의 姓名과 附加價値稅額을 따로 記載하지 않은 計算書로서

(1) 小賣業

(2) 飮食店業(다과점업을 포함)

(3) 宿泊業

(4) 목욕, 이발, 미용업

(5) 旅客運送業

(6) 入場券을 發行하는 事業

(7)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事業者와 課稅特例者 등 주로 最終消費者에게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事業을 하는 事業者를 그 交付義務者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稅金計算書와는 別途로 簡易稅金計算書制度를 만든 理由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去來하는 事業인 경우에는 物品을 購入하거나 用役을 供給받는 사람을 일일이 確認할 수도 없고 또한 그 實益이 없기 때문이다.

簡易稅金計算書의 書式은 金錢登錄機領收證·버스乘車券이나 劇場入場券 등과 같이 現在 使用되고 있는 各種 領收證이나 去來證票가 그대로 使用될 것이다.

27. 附加價値稅는 어디에서 納付하는가

附加價値稅는 事業場마다 納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主事業場에서 總括하여 納付할 수도 있다.

事業者는 附加價値稅를 그 事業場마다 納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現行 營業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所得稅에서의 住所地別 納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事業場은 事業者가 그 使用人이 항상 근무하며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場所로서 예를 들면 製造業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完成하는 場所, 建設業이나 運輸業·不動産 賣買業에 있어서는 法人의 登記簿上 所在地나 個人이 그 事務를 총괄적으로 取扱하는 場所를 말한다.

그러나 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事業者의 住所를 事業場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事業者에게 2個以上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主된 事業場에서 總括的으로 納付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 申請을 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같이 總括納付를 인정하는 理由는 事業場이 몇개로 分析되어 있는 경우 어느 事業場에서는 納付稅額이 發生하고 또 다른 事業場에서는 還給稅額이 發生하게 되는 때의 追加 資金負擔을 輕減시켜주기 爲한 制度的 措置이다.

28. 附加價値稅는 언제 申告·納付하는가

附加價値稅는 2個月마다 稅務署에 미리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하며 6個月마다 確定申告를 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附加價値稅는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終了後 20日內에 所管稅務署에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豫定申告期間의 區分은

第1豫定申告期間	1月1日부터 2月末日까지
第2豫定申告期間	3月1日부터 4月30日까지
第3豫定申告期間	7月1日부터 8月31日까지
第4豫定申告期間	9月1日부터 10月31日까지

課稅期間의 區分은

第1期	1月1日부터 6月30日까지
第2期	7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

로 하고 있다. 다만 確定申告는 豫定申告를 한 金額에 變動이 없을 때에는 最終 2個月分만을 申告하고 納付하면 되는 것이다. 外國으로부터 物品을 購入하는 輸入業者의 경우에는 關稅의 納付節次와 같이 通關時에 稅關에 附加價値稅를 納付하고 2個月 또는 6個月마다 國內에서 販賣時에 徵收한 賣出稅額에서 通關時 納付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을 稅務署에 納付하면 된다.

29. 稅金計算書는 언제 提出하는가

稅金計算書는 豫定申告를 할 때나 確定申告를 할 때에 申告書와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事業者는 豫定申告期間 동안에 交付하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를 豫定申告를 할 때에, 豫定申告期間이 끝나고 2個月 동안에 交付하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는 確定申告를 할 때에 申告書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提出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豫定申告 때에 提出하지 않은 稅金計算書는 確定申告때에 提出하여도 되나 이 경우에는 加算稅가 賦課된다. 또한 稅金計算書를 交付한 稅關長과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가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事業者로서 所得稅·法人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 等도 豫定申告期限이나 確定申告期限內에 소관세무서에 稅金計算書를 提出하도록 協力義務를 賦與하고 있다.

그리고 課稅特例者가 稅金計算書를 提出한 경우에는 그 記載된 稅額의 5%를 稅額에서 控除하는 惠澤이 주어진다.

30. 附加價値稅의 決定節次는 어떤가

附加價値稅는 事業者가 附加價値稅의 確定申告를 함으로써 결정된다.

現行 營業稅·所得稅·法人稅·等의 경우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이 納稅義務者의 申告가 있은 後, 政府가 決定하도록 하고 있으나 附加價値稅는 事業者가 課稅期間 終了後 20日內에 附加價値稅 確定申告를 하면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은 確定되는 것이므로 政府가 다시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確定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거나, 租稅의 逋脫우려가 있거나, 稅金計算書의 提出이 誠實하지 않은 경우 等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調査 또는 推計의 方法에 의하여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更正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가 決定하는 政府賦課制度에 依하고 있었으나, 附加價値稅에서는 納稅義務者 스스로 自己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함으로써 確定되는 自進申告納付制度에 依하고 있으므로 誠實하게 申告하고 納付하는 納稅者는 政府로부터 稅務調査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31. 附加價値稅에는 어떤 加算稅가 있는가

附加價値稅의 加算稅에는 (1) 未登錄·未檢閱加算稅 (2) 稅金計算書 不誠實加算稅 (3)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가 있다.

附加價値稅는 納稅者 自身이 直接計算하고 去來對象者로부터 徵收하여 自己 스스로 申告納付하는 制度이므로 外國에서는 附加價値稅에 關한 加算稅 및 罰則은 매우 엄하게 規定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制度는 加算稅로서

첫째 未登錄·未檢閱加算稅로서

事業者가 事業者 登錄을 하지않거나 每年 1月1日부터 1月31日까지와 7月1日부터 7月31日까지의 檢閱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販賣金額 또는 用役提供代價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1%, 법인의 경우에는 2%의 加算稅를 賦課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稅金計算書不誠實加算稅로서

事業者가 (1)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않거나(未交付) 交付한 分에 대한 稅金計算書를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未提出)와 (2) 稅金計算書를 提出하였으나 必要的記載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가 記載되지 않거나 事實과 다른 경우(不明)에는 販賣金額 또는 用役提供代價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1%, 법인의 경우에는 2%의 加算稅를 賦課하되 豫定申告를 할 때에 提出하지 않은 稅金計算書를 確定申告時에 提出하는 때에는(遲延提出)개인의 경우에는 0.5%, 법인의 경우에는 1%의 加算稅를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로서

(1)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를 하지 않거나 申告한 納付稅額이 申告해야할 納付稅額에 未達하거나 申告한 還給稅額이 申告해야 할 還給稅額을 超過하는 경우(申告不誠實)에는 그 未達하거나 超過申告한 稅額의 10%

(2) 豫定申告納付 또는 確定申告納付를 하지 않거나 納付한 稅額이 納付해야 할 稅額에 未達하는 경우(納付不誠實)에는 未納付하거나 未達 納付한 稅額의 10%를 加算稅로서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32. 附加價値稅의 還給稅額은 언제 還給하는가

(1) 一般還給의 경우에는 6個月 즉 課稅期間別로 그 確定申告期間 經過後 10日內에 還給하며,

(2) 輸出등 零稅率이 適用되거나 投資의 경우에는 2個月 즉 豫定申告期間別로 그 豫定申告期限經過後 10日內에 早期還給한다.

事業者가 1課稅期間동안 賣出稅額보다 買入稅額이 많은 경우 卽 事業不振이나 在庫投資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還給稅額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確定申告期限經過後 10日內(1期:7月 30日까지, 2期:1月 30日까지)에 事業者에게 還給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事業者가 輸出등 零稅率 適用對象이 되는 事業을 하거나 事業設備에 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通常的으로 還給稅額이 發生하게 되므로 事業者의 資金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2個月마다 豫定申告期限 經過後 10日內에 早期還給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還給期限은 다음과 같다.

第1豫定申告期間分:3月 30日. 第2豫定申告期間分:5月 30日

第1課稅期間 最終2個月分:7月 30日

第3豫定申告期間分:9月 30日. 第4豫定申告期間分:11月30日

第2課稅期間最終2個月分:1月 30日

33. 附加價値稅는 어떻게 記帳하는가

事業者는 自己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關係되는 去來事實을 帳簿에 記錄하여야 한다.

事業者는 自己가 供給하거나 또는 供給받은 物品과 用役에 對하여 去來相對者·金額·品目·日字·買入稅額·賣出稅額·其他 參考事項을 帳簿에 記錄하여야 한다.

附加價値稅의 記帳은 特別히 어려운 것이 아니며 現在의 日記帳이나 賣出帳 또는 買入帳과 같이 이와 같은 事項이 記載된 帳簿이면 充分하다.

그러나 課稅特例者를 비롯하여 특별히 指定한 경우에는 自己가 交付하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 또는 簡易稅金計算書를 保管한 경우도 記帳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金錢登錄機의 設置者가 金錢登錄機에 의하여 計算書를 交付하고 감사 테이프를 保管할 때에도 記帳한 것으로 본다.

34. 金錢登錄機는 누가 設置하며 그 惠澤은 무엇인가

金錢登錄機設置義務者는 (1) 小賣業 (2) 飮食 및 宿泊業 (3) 서이비스業을 하는 者로서 소관세무서장이 指定하는 者이다.

金錢登錄機는 汎國民的인 領收證 주고받기의 生活化를 위해 이번 稅制改革에서 各稅法을 通하여 그 設置의 義務化 및 履行者에 對한 惠澤과 不履行者에 對한 制裁를 規定하고 있다.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하는 者는

(1) 小賣業

(2) 飮食 및 宿泊業

(3) 各種 서어비스業을

하는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者가 그 對象이 된다. 또한 새로 事業을 하는 者도 金錢登錄機의 設置對象基準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事業開始前에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야 하며 官許事業을 하는 때에는 그 許可官廳은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金錢登錄機設置確認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許可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金錢登錄機를 設置하고 計算書를 交付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1) 그 賣出額의 0.5%를 納付稅額에서 控除하거나 還給稅額에 加算해 주며 (2)金錢登錄機의 計算書를 交付하고 監査테이프를 保管하는 경우에는 簡易稅金計算書를 交付하고 記帳義務를 履行한 것으로 보며 (3)現金收入을 基準으로하여 課稅할 수 있도록 惠澤을 주고 있다.

또한 그 計算書를 稅務署에 提出하는 一般消費者에게는 購入金額의 1%에 相當하는 報償金을 支給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金錢登錄機에 의한 計算書를 交付받은 去來相對方이 事業者인 경우에는 그 計算書에 供給받은 者의 姓名이 記載되고 發行者가 確認한 경우에는 그 附加價値稅額은 控除할 수 있는 買入稅額으로 본다.

그러나 (1) 金錢登錄機의 設置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事業者에 대하여는 15日間의 事業의 停止를 그 以後 30日間에 設置를 하지 않으면 事業許可의 取消를 할 수 있으며

(2) 金錢登錄機는 設置하였지만 計算書를 交付하지 않거나, 故意로 販賣金額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 事實이 2回 發見되면 15日間의 事業停止를 3回 發見되면 事業許可의 取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 在庫品에 대한 經過措置는 어떤가

在庫品에 대하여는 過去의 間接稅를 控除 또는 還給한다.

現在의 營業稅와 物品稅등의 8個 間接稅를 統合하여 附加價値稅로 轉換하기 때문에 附加價値稅가 施行되는 날의 在庫品에는 過去의 間接稅가 이미 賦課되어 있다. 이러한 過去의 間接稅를 施行後의 附加價値稅에서 控除하지 않거나 還給하지 아니하면 物價가 上昇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過去의 間接稅를 控除하거나 還給하여 物價의 上昇을 막도록 하는 經過措置를 두고 있다. 在庫品에 대한 舊間接稅를 控除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附加價値稅施行日부터 14일이내에 在庫品의 品名·數量·金額등을 記載한 申告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그리고 在庫品의 舊間接稅額은 政府가 定하는 一定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還給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從前의 物品稅·織物類稅 또는 石油類稅가 부과되던 在庫品에 대하여는 그 實地의 舊間接稅를 證明하는 경우에는 그 實額을 還給하도록 하고 있다.

政府가 정하는 舊間接稅의 控除率은 追後에 決定할 것이다.

決定된 舊間接稅의 控除金額은 처음 4個月동안에 $\frac{2}{3}$의 범위 내에서 納付稅額에서 控除하고, 그 나머지 金額은 그 다음 2個月동안에 控除한다. 그러나 6個月 동안에 控除되지 않은 金額은 6個月이 경과된 후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休業으로 인하여 控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控除期限을 延長받을 수 있다.

그리고 課稅特例者의 在庫品의 舊間接稅는 控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간추린 改正稅法

78년도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租稅減免規制法
附加價値稅法
特別消費稅法
證券去來稅法
酒稅法
國稅基本法
稅務士法
關稅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國會의 審議를 거쳐 10個 稅法을 改正 또는 制定하여 公布하였습니다.

지난 60年代以後 成長과 安定을 基本目標로 經濟開發計劃을 성공적으로 推進하여 온 우리나라는 이제 初期段階에서 불가피했던 所得과 富의 偏在를 合理的으로 시정하고, 開發成果를 再分配하여 社會의 中樞機能을 擔當하는 中產層과 勤勞所得者를 보호하며, 건전한 經濟發展을 위하여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균형있는 發展을 기함으로써 自立經濟의 基盤위에 福祉社會를 이룩하고 80年代의 繁榮된 福祉社會를 기약해야 할 時期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中產層 및 勤勞所得者의 生活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稅負擔을 경감하고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稅制支援을 확대하며 不動產投機抑制와 財產所得 및 高所得層에 대한 重課로 衡平課稅를 深化하는 한편, 企業의 海外資源開發 및 社會開發을 支援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1年餘동안 시행되어온 附加價値稅를 早期 定着·發展시키기 위한 補完策을 아울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하고 物價安定을 도모하는 한편 輸入自由化에 부응하기 위하여 關稅率體系를 再調整하고 지속적 輸出伸張을 위하여 關稅上 輸出支援制度를 보강하였습니다.

政府는 이번 稅制改革에서 安定的 成長, 所得再分配機能의 強化, 社會福祉稅制의 확충, 經濟의 國際化에 대한 能動的 對處等 長期 租稅政策의 방향을 깊이 염두에 두고 사소한 問題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稅法은 國民經濟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고 國民生活과 밀접한 利害關係가 있으므로, 이와같이 방대한 改正稅法에 대해 모든 國民이 소상히 그 內容을 이해하여야만 차질없는 稅政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改正稅法의 內容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國民여러분과 稅務公務員의 공정한 納稅와 원활한 稅政의 遂行에 도움이 되고 이번 稅法改正이 지향하는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1979年 1月

財務部長官 金 元 基

目　　次

所得稅法 …… 357

＜綜 合 所 得＞ …… 360

1. 非課稅所得의 範圍 …… 360

2. 中產層勤勞者의 所得限界引上 …… 362

3. 勤勞所得에 대한 諸所得控除의 擴充 …… 362

4.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合理化 …… 364

5.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擴大 …… 367

6. 船舶·機械등 輸出事業 및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 …… 368

7. 確定申告 및 中間豫納期間調整 …… 368

8. 計算書提出制度 新設 …… 368

9. 事業者登錄義務 新設 …… 370

10. 確定申告決定 및 書面決定對象者 擴大 …… 371

11. 勤勞所得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 …… 373

12. 其　　他 …… 373

＜讓 渡 所 得＞ …… 376

1. 實需要土地稅額 還給制度 新設 …… 376

2. 讓渡所得稅率의 調整 …… 377

3. 讓渡所得控除의 縮小 …… 377

4. 未登記讓渡에 대한 非課稅·減免排除 …… 378

5. 1世帶 1住宅의 範圍縮小 …… 378

6. 基準時價의 決定方法 …… 380

7. 官認契約書提出制度 新設 …… 381

8. 課稅對象資產의 範圍擴大 …… 382

9. 有償讓渡의 範圍擴大 …… 383

法人稅法 …… 384

1. 船舶·機械 輸出產業에 대한 支援強化 …… 385

2. 海外資源開發投資에 대한 支援強化 …… 387

3.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388

4. 配當課稅制度의 改善 …… 389

5. 法人稅率調整 …… 390

6. 公開法人의 要件 緩和 …… 392

7.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 …… 394

8. 法人稅特別附價稅의 強化 …… 395

9. 契約書副本提出 및 不誠實加算稅 …… 399

10. 事業者登錄 …… 400

11. 計算書作成·交付 …… 401

12. 其他事項 …… 401

相續稅法 …… 406

1. 保險金控除額 및 信託財產控除額 引上 …… 406

2.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 …… 407

3. 農地相續控除 …… 407

4. 公益事業의 範圍擴大 …… 409

5. 土地와 建物의 評價方法 改善 …… 409

6. 贈與稅課稅時 控除對象親族의 範圍 …… 410

7. 親族控除의 計算方法 …… 410

租稅減免規制法 …… 412

1. 重要產業의 範圍擴大 …… 413

2. 土地에 대한 租稅減免 …… 414

3. 海外資源開發事業과 產業 …… 416

4. 敎育硏究機關에 대한 支援 …… 417

5. 重要機關法人에 대한 法人稅免除 …… 417

6.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制度 …… 418

7. 間接稅免除 …… 418

8. 地方稅免除 …… 419

9. 其 他 …… 419

附加價値稅法 …… 421

1. 供給時期 …… 421

2. 零稅率範圍 調整 …… 423

3. 免稅範圍의 調整 …… 423

4. 課稅標準 …… 423

5. 稅金計算書 …… 424

6. 零稅率適用과 加算稅 …… 425

7. 豫定申告回數의 縮小 …… 425

8. 課稅特例者 …… 426

9. 早期還給期間의 短縮 …… 428

特別消費稅法 …… 429

1. 課稅對象과 稅率 調整 …… 429

2. 免稅對象의 調整 …… 432

3. 課稅標準의 明瞭化 …… 433

證券去來稅法 …… 434

1. 課稅對象 …… 434

2. 納稅義務者 …… 435

3. 納稅地 …… 435

4. 讓渡의 時期 …… 435
5. 非課稅讓渡 …… 436
6. 稅　　率 …… 437
7. 去來徵收 …… 437
8. 課稅標準의 計算 및 申告와 納付 …… 438
9. 更　　正 …… 439
10. 隨時賦課 …… 439
11. 加算稅 …… 439
12. 帳簿의 備置·記帳 …… 440

酒稅法 …… 441
1. 濁·藥酒擬制販賣免許業者의 直去來認定 …… 441
2. 麥酒缺減量의 現實化 …… 441
3. 外信記者클럽에 대한 酒稅免除 …… 441

國稅基本法 …… 442
1. 證券去來稅新設에 따른 調整 …… 442
2. 行政救濟制度의 改善 …… 442
3. 國稅審判官의 資格緩和 …… 443

稅務士法 …… 444
1. 職務範圍의 調整 …… 445

2. 缺格事由의 強化 …… 445
3. 登錄의 取消 …… 445
4. 教育履修義務 …… 445
5. 合同事務所 …… 446
6. 權限委任 …… 446
7. 適用範圍 …… 447
8. 試驗科目의 一部調整 …… 447

關稅法 …… 448
1. 關稅制度改善 …… 449
2. 關稅率 調整 …… 456

所 得 稅 法

[要 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稅制는 1960年初부터 始作된 經濟開發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한 開發支援稅制의 性格과 所得再分配를 爲한 衡平負擔의 理想을 調和하는 方向에서 定立되어 왔으나 어느정도 衡平負擔을 희생하면서 高所得層에 대한 破格的인 稅制支援을 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3次에 걸친 經濟開發의 成果를 바탕으로 社會福祉部門에 대한 支援과 經濟開發에 參與하였으면서 그 成果分配를 充分히 누리지 못한 勤勞者를 中心으로 한 低所得層 및 中產層의 稅負擔을 輕減하여 所得階層間 富의 隔差를 줄임으로서 各階層間의 均衡있고 調和된 發展을 期하여야 할 轉換點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成長指向的인 經濟開發政策의 遂行過程에서 惹起된 投機性向과 奢侈風潮를 鎭靜시키고 物價를 安定시켜 우리 經濟가 安定基調위에서 繼續的으로 發展되도록 하기 위해 關聯稅制의 改正이 不可避하게 된 것이다.

이번 所得稅法의 改正內容은

첫째, 高所得層의 財產所得에 重課하는 反面, 勤勞者 및 中產層의 稅負擔을 輕減하였고,

둘째, 投機目的으로 不動產을 去來하는 者는 重課하되, 實需要者를 中心으로 한 土地去來는 圓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社會開發, 人力開發, 海外資源開發 等 國家政策의 圓滑한 遂行과 中小企業의 支援制度를 強化 發展시키고,

넷째, 其他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데 그 基本方向을 두었다.

<綜合所得>

가.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 ○ 大韓住宅公社가 發行하는 住宅償還社債의 利子
- ○ 非課稅되는 農家副業所得限度의 引上
- ○ 福祉厚生的인 給與의 範圍擴大

나. 中產層 勤勞者의 所得限界引上

다. 勤勞所得에서 控除되는 各種控除額 引上

○ 保險料控除를 引上하고 控除對象保險의 範圍擴大

○ 賞與特別控除引上

○ 勤勞所得控除引上

라. 所得控除額引上

○ 配偶者控除引上

○ 扶養家族控除引上

마. 配當所得에 對한 課稅의 合理化

○ 配當稅額控除 縮小

○ 資本準備金 無償株配當을 課稅除外함

○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에 대한 分離課稅稅率引下

○ 少額株主 및 少額社債權者의 範圍調整

바. 中小企業의 支援擴大

○ 中小企業의 範圍擴大

○ 海外市場開拓準備金 限度引上

사. 船舶, 機械등의 輸出事業支援

아. 確定申告 및 中間納稅期間調整

자.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에 대한 計算書 提出 및 事業者登錄制度의 新設

차. 確定申告決定 및 書面調査決定對象者의 範圍擴大

카. 勤勞所得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

타. 其 他

○ 資產合計對象家族의 連帶納稅義務를 新設

○ 綠色申告者의 資格要件을 調整

○ 分離課稅하는 社債의 賣出·募集周施機關의 範圍擴大

○ 退職給與充當金의 範圍를 緩和

○ 公益性寄附金의 限度額引上

○ 蠶業振興基金을 公課金으로 함

○ 綠色申告者는 保險差益 國庫補助金등의 一時償却充當金을 調整計算書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함

<讓渡所得>

가. 讓渡所得에 대한 稅率의 引上 調整

○ 稅率을 土地·建物區分없이 單一化

○ 2年以內 保有資產의 讓渡와 未登記讓渡는 높은 稅率로 差等課稅

나. 讓渡所得控除의 縮小

○ 讓渡所得特別控除 廢止

○ 2年以內 讓渡와 未登記讓渡의 경우에 讓渡所得基礎控除를 排除

다. 讓渡所得 課稅對象資產의 範圍擴大

라. 未登記讓渡에 대하여는 非課稅 및 減免의 規定 排除

마. 1世帶 1住宅의 範圍 縮小

바. 基準時價의 決定方法을 定함

사. 官認契約書 提出 및 加算稅制度 新設

아. 有償讓渡의 範圍擴大

자. 實需要土地에 대한 稅額還給制度 新設

〈綜 合 所 得〉

1.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所得稅는 所得稅法이 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政策的인 考慮에서 一定所得 또는 一定所得의 一定金額은 課稅所得에서 除外하고 있으니 이를 非課稅所得이라 하고 있다.

非課稅所得은 國家가 租稅의 賦課를 처음부터 抛棄한 所得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節次나 手續의 必要없이 課稅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課稅所得에 合算되지 않는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와같은 非課稅所得의 範圍를 部分的으로 擴大하였다.

가. 利子所得(法 第5條, 令 第5條)

改 正 前	改 正
<新 設>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大韓住宅公社가 發行하는 住宅償還社債

나. 事業所得(法 第5條, 令 第6條의 2)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農·漁家副業所得의 非課稅限度額	年 120萬원	年 156萬원

非課稅되는 農家副業所得에 있어서 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은 다음에 揭記하는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 農家副業的인 畜産所得에 대하여는 年 156萬원의 金額限度를 制限받지 아니하고 所得稅를 非課稅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家 畜 別	規 模	備 考
젖 소	7마리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育成牛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家畜別	規模	備考
소	10 〃	〃
돼지	50 〃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
산양	100 〃	〃
면양	100 〃	〃
토끼	1,000 〃	〃
닭	1,000 〃	〃
오리	1,000 〃	〃

다. 勤勞所得(法 第5條, 令 第12條의 2)

區分	改正前	改正
非課稅되는 福祉厚生的인 給與	○ 勤勞者가 그 子女의 敎育費補助金으로 支給받는 臨時給與	○ 勤勞者가 그 子女의 敎育費補助金(使用者를 保險契約者로 하고 勤勞者의 子女를 保險受益者로 하는 敎育保險契約의 保險料로 支給받는 金額을 包含한다)으로 支給받는 臨時給與 但, 月納保險料 5萬원이하
	○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使用者가 負擔하는 保險料	○ 醫療保險法 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하여 使用者가 負擔하는 保險料
	○ 肉體勞動에 從事하는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 其他 飮食物	○ 모든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 其他 飮食物
	○ 勤勞基準法에 위하여 勤勞者가 有給休暇에 갈음하여 支給받는 給與	○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有給休暇에 갈음하여 支給받는 月次, 年次, 手當(公務員이 法令에 의하여 支給받는 精勤手當을 包含한다)
	<新 設>	○ 職場새마을運動의 推進實績에 따라 優秀勤勞者에게 支給하는 賞金 또는 賞品

2. 中產層의 所得限界引上(令 第12條의 2·第116條의 2·第116條의 3·第116條의 4)

中產層以下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稅負擔의 輕減 또는 免除를 위한 特別한 支援制度를 두고 있는바,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그 惠澤을 받을수 있는 對象을 아래와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月定給與 40萬원以下의 勤勞者	月定給與 50萬원以下의 勤勞者

※ 中產層勤勞者에게만 適用하는 支援制度

區 分	內 容
特別控除制度	○ 保險料控除
	○ 醫療費控除
	○ 勤勞學生控除
稅額控除制度	○ 財形貯蓄稅額控除
非課稅所得制度	○ 福祉厚生的인 性質의 給與

3. 勤勞所得에 대한 諸所得控除擴充

가. 必要經費控除額의 引上(法 第21條·第61條·第61조의 2)

勤勞所得金額은 勤勞所得의 總收入金額에서 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勤勞學生控除, 賞與特別控除, 勤勞所得控除 等을 하고 남은 金額이 된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勤勞者의 稅負擔을 輕減하여 生活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諸控除額을 大幅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保險料控除	年 12萬원	年 15萬원
賞與特別控除	400%, 年 40萬원	400%, 年 52萬원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勤 勞 所 得 控 除	年 36萬원	年 48萬원
日傭勤勞者에 대한 勤勞所得控除	日 6,700원	日 8,700원

나. 保險料控除 對象保險의 擴大(法 第61條의 2, 令 第116條의 2)

79年 1月 1日부터 施行되는 公務員 및 私立教育教職員醫療保險法과 貯蓄性이 있는 損害保險 및 農·水協의 生命共濟도 保險料控除對象으로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支給하는 保險料	○ 醫療保險法 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支給하는 保險料
<新　　設>	○ 家計貯蓄性損害保險
	○ 農·水協法에 의한 共濟中 生命共濟

※ 家計貯蓄性 損害保險

火災·盜難 其他의 損害를 擔保하는 家計에 關한 保險으로서 滿期還給金이 納入保險料를 超過하는 保險

다. 所得控除額의 引上(法 第64條·第65條)

所得控除의 種類로는 所得이 있는 者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基礎控除와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의 有無나 그 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害者控除등이 있고, 이 所得控除는 所得稅法上 各所得의 所得金額計算에서 控除되는 諸控除와는 달리 綜合所得金額에서 控除된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配偶者控除와 扶養家族控除가 各各 年 6萬원이 引上되었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月	年	月	年
基 礎 控 除	20,000원	240,000원	改正前과 같음 원	改正前과 같음 원
配 偶 者 控 除	20,000	240,000	25,000원	300,000원
扶 養 家 族 控 除	10,000	120,000	15,000	180,000
障 害 者 控 除	10,000	120,000	改正前과 같음	改正前과 같음

參考로 이번 稅法改正에서 人的控除額 引上으로 所得階級別 稅負擔은 아래와 같이 輕減된다.

勤勞所得階級別稅負擔比較(5人家族基準)

月 給 與	改 正 前		改 正		輕 減	
	稅 額	負擔率	稅 額	負擔率	稅 額	輕減率
13만원	2,820원	2.1%	-원	-%	2,820원	100%
15	4,700	3.1	1,880	1.2	2,820	60.0
17	7,050	4.1	3,760	2.2	3,290	46.7
20	10,575	5.3	7,050	3.5	3,525	33.3
25	17,625	7.0	13,395	5.3	4,230	24.0
30	26,437	8.8	21,150	7.0	5,287	20.0
40	49,350	12.3	41,947	10.4	7,403	15.0
50	79,312	15.8	69,795	13.9	9,517	12.0

※ 稅額은 防衛稅·住民稅 包含임.

4.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合理化

가. 配當稅額控除의 縮小(法 第71條)

(1) 縮小의 理由

配當稅額控除制度는 國內의 資本市場이 發達되지 못하고 또한 新投資를 위한 財源을 大部分 外債에 依存하던 1960年代에 資本市場育成과 內資動員을 支援하기 爲하여 採擇한 制度였으나 이제 國內資本의 蓄積을 通하여 어느정도 投資財源의 調達이 可能한 段階에 왔으며 國民福祉와 稅負擔의 衡平을 重視할 必要性이 提高되어 配當稅額控除制度에 대한 再評價가 要求되었다.

따라서 資本市場育成을 沮害하지 않으면서 衡平課稅의 理想에 接近해가는 方向에서 配當稅額控除를 廢止하되 上場法人에 대한 控除는 存置하도록 調整하였다.

(2) 內 容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非公開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	配當所得×法人稅率×50%	廢 止
○ 公開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	配當所得×法人稅率×50% +配當所得×15%	配當所得×15%(上場法人)

(3) 稅額控除의 限度

$$綜合所得算出稅額 \times \frac{上場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綜合所得金額}$$

(4) 適用例

配當稅額控除의 縮小는 79年 5月의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分부터 適用한다.

나. 無償株配當에 대한 課稅緩和(法 第26條·第144條)

企業會計上 無償株配當은 所得發生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無償株가 實質資本의 增加를 通하여 配當되는 것이 아니므로 無償株 配當後의 全體的인 所有株式評價額은 變動이 없다는 論理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無償株配當後 實際株價에 反映되는 狀況은 論理的인 것과는 相當한 距離가 있기 때문에 稅法上으로는 無償株配當도 配當所得中 擬制配當으로 보아 所得稅를 課稅하여 왔다. 이번 改正에 있어서는 企業의 內部留保에 의한 投資擴大를 支援하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를 調整하는 方向에서 無償株配當에 대한 課稅를 緩和하였다.

(1) 資本剩餘金의 課稅除外

商法 第459條에 規定하는 資本剩餘金으로서 合併差益, 株式發行超過金, 減資差益 等의 資本準備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에 대하여는 配當所得에서 除外하여 所得稅가 課稅되지 않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公開法人少額株主	5%分離課稅	課 稅 除 外
〃 大株主	10%源泉徵收綜合課稅	〃
○ 非公開法人株主	25%源泉徵收綜合課稅	〃

(2)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無償株配當에 대한 稅率引下

再評價無償株配當에 대하여는 從前에 高率分離課稅하였으나 公開法人株主, 中小企業株主들을 中心으로 分離課稅稅率을 大幅 引下하였다.

再評價積立金의 無償株配當課稅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公開法人		
少額株主	10%	5%
大 株 主	25%	10%
中小企業法人株主	25%	10%
其他의 法人株主	25%	20%

다. 少額株主·少額社債權者의 範圍擴大(法 第144條, 令 第193條)

이제까지 分離課稅하는 少額株主基準을 法人稅法上의 基準을 準用하였으나 所得課稅의 方向과 資本市場育成을 위하여 所得稅法에서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고 少額社債權者의 範圍에 있어서 無條件 總發行社債의 3%未滿인 從前의 規定은 中小企業에는 相對的으로 不利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中小企業의 社債發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定
少額株主의 範圍	資本金의 1%와 額面價額 5千萬원中 적은 金額	資本金의 1%와 額面價額 1億원中 적은 金額
少額社債權者의 範圍	總發行社債의 3%未滿所有者	總發行社債의 3%와 1億원中 적은 金額(다만, 3千萬원을 下限으로 함)

5.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擴大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稅法上(所得稅法, 法人稅法, 租稅減免規制法) 여러가지 支援制度를 두고 있다.

所得稅法上 支援制度에는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特別償却制度등이 있으며,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中小企業範圍를 擴大하고 中小企業에 대하여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限度額을 引上하였다.

가. 中小企業의 範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業　種	製造業, 鑛業	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 水產業
規　模	固定資產總額 3億원以下	固定資產總額 3億원以下이거나 常時從業員數300(建設業은 50)名以下 : 選擇的

나. 中小企業의 海外市場開拓準備金 範圍擴大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設定範圍	外貨收入金額의 1%(特定地域輸出의 경우는 外貨收入金額의 2%)	外貨收入金額의 2%(特定地域輸出의 경우는 外貨收入金額의 3%)
還入期間	2年据置 3年間 均等 總輸入金額에 算入	改正前과 같음

6. 船舶·機械등 輸出事業 및 海外資源開發事業支援

法人稅法編 參照

7. 確定申告 및 中間豫納期間調整(法 第83條, 第100條)

附加價値稅의 納期調整에 따라 綜合所得稅 課稅標準確定 申告納付期間 및 中間豫納期間을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確定申告	다음年度 4月1日부터 4月30日	다음年度 5月1日부터 5月31日
中間豫納		
1期	10月31日	9月30日
2期	12月31日	改正前과 같음

8. 計算書提出制度新設(法 第189條, 令 第226條)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作成·交付·提出하는 경우에는 所得稅課稅에 있어서 提出된 稅金計算書 等을 課稅資料로 活用할 수 있지만,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事業의 경우에는 稅金計算書의 作成·交付·提出義務가 없으므로 課稅資料를 確保할 수 없게 되어 根據課稅가 困難하게 되기 때문에 計算書 또는 簡易計算書의 作成·交付·提出등을 義務化한 것이다.

이 計算書提出制度는 그 동안 國稅廳訓令에 의하여 運用되어 왔으나, 國民에 대한 協力義務로서 法制化한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計算書의 體系

이번 改正으로 所得稅課稅目的에 活用되는 去來資料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區　　分	計　算　書	根　　據
○ 附加價値稅課稅去來	稅金計算書 또는 簡易稅金計算書	附加價値稅琺
○ 附加價値稅免除去來	計算書 또는 簡易計算書	所 得 稅 法

나. 計算書의 作成·交付·提出

所得稅法上 廣義의 計算書에는 附加價値稅法上의 稅金計算書 等을 包含한 所得稅課稅에 活用되는 모든 財貨·用役의 去來資料를 말하나 여기서 설명하는 計算書는 所得稅法에 根據하여 作成·交付·提出되는 것으로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財貨·用役의 供給에 隨伴하여 作成·交付·提出되는 狹義의 計算書等을 말한다.

(1) 計算書의 作成·交付

作成·交付義務者 :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

作成·交 付 時 期 : 所得稅法施行令 第57條에 規定하는 總收入金額의 收入時期

樣式 및 記載事項 : 計算書 等의 樣式은 다음 各號의 事項이 記載된 것으로 稅金計算書樣式을 基準으로 國稅廳長이 定하며 計算書 4枚를 作成하여 그중 2枚를 供給받은 者에게 交付

① 供給하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② 供給받는 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③ 供給價額, 收入時期

④ 其他參考事項

(2) 提出期限

事業者는 交付하였거나, 交付받은 計算書를 附加價値稅法 第20條에 規定하는 期限內(稅金計算書의 提出期限과 같음)에 事業場管轄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簡易計算書의 交付義務者

다음에 該當하는 者는 計算書와는 달리 供給받는 者를 따로 記載하지 아니한 簡易計算書를

交付할 수 있다.

① 小賣業者

② 金錢登錄機를 設置하고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

③ 主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으로서 國稅廳長이 定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

以上 列擧한 簡易計算書를 作成·交付하는 事業者가 慣行에 따라 領收證 其他 이에 準하는 計算書類를 交付한 경우는 簡易計算書를 交付한 것으로 본다.

다. 計算書 또는 簡易計算書 交付義務免除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 計算書 또는 簡易計算書의 交付義務를 免除한다.

(1) 露店商人, 行商人 또는 無人販賣機를 利用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2) 市內버스用役

(3)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지 아니한 小賣業者가 供給하는 財貨

(4)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去來되는 財貨 또는 用役

(5)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 簡易稅金計算書의 交付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

라. 計算書등의 作成·交付·提出에 관한 附加價値稅法의 準用

計算書 또는 簡易計算書의 作成·交付 및 提出에 관하여는 所得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附加價値稅法 第16條 및 第20條와 同法施行令 第54條 내지 第59條·第66條 및 第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9. 事業者登錄義務新設(法 第197條의 2)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에 대한 計算書作成·交付·提出義務와 함께 事業者登錄規定을 新設

하였다.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에 대한 事業者登錄에 必要한 節次上의 規定은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附加價値稅課稅事業者의 登錄과 같이 義務履行을 하면 된다.

따라서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場마다 當該事業의 開始日로부터 20日以內에 事業者登錄申請書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事業者登錄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事業者登錄番號와 함께 事業者登錄證을 申請日부터 7日以內로 申請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其他 登錄證의 檢閱, 登錄의 訂正, 登錄의 抹消에 關한 事項도 附加價値稅 課稅事業者에 準하여 處理된다. 다만, 事業者登錄과 關聯하여 履行한 開業·廢業의 申告는 所得稅法 第194條의 規定에 依한 開業·廢業의 申告에 갈음하여 效力을 갖는다. 이러한 事業者登錄에 關한 規定은 1979年 1月 1日以後에 事業을 開始하는 者부터 適用하되 1978年 12月 31日以前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1979年 2月末까지 事業者登錄을 마쳐야 한다.

10. 確定申告決定 및 書面決定 對象者의 擴大
(法 第117條·第119條, 令 第164條·第167條)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은 原則的으로 申告에 의하여 決定하도록 所得稅法上 訓示的 規定을 두고 있다. 推計調査決定을 除外한 確定申告決定, 書面調査決定, 實地調査決定은 根據課稅의 側面에서 繼續發展시켜 그 對象을 擴大해 나가는 것이 政府의 基本立場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稅務公務員과 納稅者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確定申告決定과 書面調査決定을 大幅擴大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申告納付制度를 發展시키기 위해 申告決定對象者를 收入金額이 一定額以下인 零細事業者에 대하여만 申告대로 決定할 수 있었던 것을 그 收入金額을 引上하고 一定收入金額 超過者에 대하여도 政府가 定한 一定率 以上을 申告할 때에는 申告대로 決定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다.

또한 書面調査決定에 있어서는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誠實事業者에 대하여도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對象을 擴大하였다. 確定申告決定對象者와 書面調査決定對象者의 具體的인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申告納付制度의 擴充은 1979年에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여 가급적 早期에 申告容認, 書面決定의 惠澤을 받도록 하였다.

가. 確定申告決定(申告容認)對象의 擴大

(1) 從　　前

－ 自動賦課對象者

① 年間收入金額

不動產所得 : 400萬원以下

事 業 所 得 : 1,500萬원以下

事業所得中 保管業, 代理, 仲介 都給의 營業등 : 400萬원以下

② 國稅廳長이 定하는 自動賦課率以上을 申告한 者

(2) 改　　正

－ 自動賦課對象者範圍擴大

年間收入金額

不動產所得 : 500萬원以下

事 業 所 得 : 2,000萬원以下

事業所得中 保管業·代理 仲介·都給의 營業등 : 500萬원以下

－ 自動賦課對象者 以上인 事業者로서

① 最近 2年間 實地調査決定 또는 書面調査決定을 받고 課稅標準의 申告對比決定의 差額이 申告額의 100분의 5에 未達하고 資料提出不誠實率이 100분의 15에 未達하는 者이어야 하며,

② 國稅廳長이 所得標準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業種別·地域別로 定한 總收入金額과 所得金額의 直前年度比增加基準率과 申告所得率 以上인 者

나. 書面調査決定 對象의 擴大

(1) 對　象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國稅廳長이 特別히 誠實하다고 認定하여 指定하는 者(誠實事業者)에 대하여는 書面調査決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國稅廳長의 誠實事業者指定基準

國稅廳長은 申告한 收入金額과 所得金額이 規模 및 業種別로 定한 基準率 以上인 者로서 生産收率·源泉徵收·附加價値稅去來徵收·資料報告등의 義務履行程度를 勘案하여 誠實事業者를 指定한다.

11. 勤勞所得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令 第233條의 2)

年末精算時 勤勞所得의 總收入金額이 本人의 申請등이 必要없이 當然히 控除되는 勤勞所得控除·基礎控除·賞與特別控除額 以下인 居住者에 대하여는 勤勞所得支給調書의 提出에 갈음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勤勞所得支給明細書의 提出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提出義務者의 負擔을 덜도록 하였다. 다만, 이 規定은 從된 勤務地가 없는 居住者에 限하여 適用하며, 年의 中途에 就職 또는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年으로 換算한 給與額을 基準으로 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勤勞所得의　總收入金額≦勤勞所得控除＋基礎控除＋賞與特別控除	無條件　所得者　個別的으로 勤勞所得支給調書를 提出	國稅廳長이 定하는 勤勞所得支給明細書 提出

이러한 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도 1978年 年末精算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였다.

12. 其　　他

가. 資產合算對象家族의 連帶納稅義務新設(法 第2條)

綜合所得中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은 資產合算對象所得으로, 이들 所得은 單純히 名義에 따라 그 所得者를 달리하여 累進課稅의 回避가 可能한 것이므로, 生計를 같이하는 同居家族으로서 主된 所得者의 配偶者, 直系尊屬,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 兄弟姉妹와 그 配偶者의

資產所得은 主된 所得者에게 그 所得이 있는 것으로 보아 主된 所得者는 다른 사람의 資產所得에 대하여도 納稅義務를 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稅務改正에서는 主된 所得者뿐만 아니라 其他의 資產合算對象家族에게도 連帶納付義務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資產合算課稅의 實效를 거두도록 改正하였다.

나. 綠色申告者의 資格要件調整(法 第110條)

綠色申告者는 書面調査決定을 받을 수 있는 惠澤을 누리고 있는바,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그 綠色申告者의 資格要件을 定함에 있어서 77. 7. 1부터 附加價値稅 施行으로 因하여 販賣 또는 支給報告義務履行의 誠實度基準을 廢止한 것에 代替하여 計算書提出義務에 관한 誠實度基準을 追加하여 綠色申告者의 資格要件을 調整하였다.

綠色申告者의 資格要件

改 正 前	改 正
○ 2年以上 繼續하여 政府調査決定(推計決定은 除外)을 받고 最近 2年間에 申告한 課稅標準과 政府調査決定 課稅標準의 差額이 10%未滿일 것.	○ 改正前과 같음
○ 綠色申告者의 承認이 取消된 者에 있어서는 그 承認이 取消된 年度의 終了日부터 2年以上 經過한 者일 것.	○ 改正前과 같음
○ 2年間에 걸쳐 報告書 또는 支給調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不分明한 提出金額이 提出할 金額의 15%未滿일 것.	○ 2年間에 걸쳐 計算書 또는 支給調査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不分明한 提出金額이 提出할 金額의 15%未滿일 것.

다. 分離課稅對象社債의 賣出·募集周旋機關 擴大(法 第144條)

韓國産業銀行, 銀行法에 依한 金融機關등이 賣出하거나 募集을 周旋한 社債中 一定金額未滿(少額社債權者의 範圍調整 參照)을 所有한 居住者의 社債의 利子에 대하여는 5%의 源泉徵收

로서 分離課稅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分離課稅를 받을 수 있는 社債의 賣出·募集 周旋機關에 綜合金融會社를 追加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韓國產業銀行, 銀行法에 依한 金融機關, 短期金融會社, 韓國投資公社, 信託會社, 證券會社, 韓國開發金融株式會社 ○ 新 設	○ 韓國投資公社 削除 ○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라. 退職給與充當金의 範圍緩和(法 第33條)

法人稅法篇 參照

마. 公益性寄附金의 限度引上(法 第49條)

法人稅法篇 參照

바. 蠶業振興基金을 公課金으로 함(令 第100條)

法人稅法篇 參照

〈讓 渡 所 得〉

1. 實需要土地稅額還給制度 新設(法 第78條의 3, 令 第130條의 3)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을 圖謀하기 爲하여는 實需要土地의 供給圓滑化와 投機性土地去來의 抑制가 前提되어야 한다.

不動產投機抑制方案이 副作用을 招來하게 되는 것은 實需要去來까지도 制限을 받기 때문에 全般的인 不動產景氣의 沈滯를 惹起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讓渡所得課稅의 調整에 있어서는 短期投機性讓渡, 未登記讓渡 等에 대한 重課에 앞서 實需要土地의 供給圓滑化方案을 講究하였다.

實需要土地稅額還給制度는 租稅減免規制法에 反映된 實需要土地去來의 圓滑化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본다.

가. 對象土地

建築法에 依한 建築物의 建築用地로 讓渡하는 土地로서 讓渡日現在 建築物이 없는 土地이어야 하며 建築物의 定着面積의 10倍를 限度로 한다.

나. 建築期限

實需要土地稅額還給을 받으려면 當該 建築物을 讓渡日以後 3年內에 完工하여야 한다.

다. 還給額

實需要土地稅額還給額은 當該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決定稅額의 50%로 한다.

라. 還給權의 讓渡

土地를 實需要者에게 讓渡한 者는 實需要土地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는 權利를 當該土地의 讓受人 즉 當該 實需要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마. 還給節次

實需要土地稅額의 還給을 받고자하는 者는 當該 建築物의 竣工日로부터 30日內에 當該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徵收한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2. 讓渡所得稅率의 調整(法 第70條)

土地 50%, 建物 30%의 稅率을 資產別로 區分하지 않고 50%의 單一稅率을 基本稅率로 하고, 2年以內 讓渡와 未登記轉賣에 대하여는 投機防止를 위해 높은 稅率로 差等適用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土地 : 50% 建物 : 30%	○ 土地·建物區分없이 50%로 單一化함. ○ 2年以內讓渡 : 70% ○ 未登記轉賣 : 80%

3. 讓渡所得控除縮小(法 第23條)

取得價額에 保有期間의 都賣物價上昇率 相當額을 控除해주는 讓渡所得特別控除는 다른 所得에서는 認定하지 않고 있는 物價要因의 課稅排除를 不勞所得인 讓渡所得에만 認定할 理由가 없으므로 全面 廢止하고, 投機性 讓渡로 볼 수 있는 2年以內讓渡와 未登記轉賣의 경우는 讓渡所得基礎控除를 排除하도록 改正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讓渡所得特別控除	都賣物價上昇率 相當額을 控除	廢 止
讓渡所得控除	年 90萬원	存置(다만, 2年以內讓渡 및 未登記轉賣는 適用排除)

4. 未登記讓渡에 대한 非課稅·免稅規定排除(法 第6條의 2)

未登記轉賣는 投機者들이 法의 未備點을 利用하여 登記없이 轉賣하여 資料를 漏落시키고, 經濟秩序를 혼란케 하는 行爲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또는 其他 法令에 規定하는 非課稅 및 減免을 一切 排除하였다. 다만 未登記讓渡가 故意的이 아닌 경우 未登記讓渡에서 除外되는 資產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未登記讓渡除外資產의 範圍(法 第70條, 令 第121條의 2)

가. 割賦·延拂로 取得한 資產으로서 契約條件의 內容에 따라 讓渡當時 그 資產의 取得에 관한 登記가 不可能한 경우

나. 法律 또는 法院의 決定에 의하여 讓渡당시 그 資產의 取得에 관한 登記가 不可能한 경우

다. 農地로서 8年이상 自耕, 交換·分合·代土의 경우

5. 1世帶 1住宅의 範圍縮小(令 第15條)

1世帶 1住宅을 憑藉한 投機所得을 租稅로 吸收함으로써 不動產投機를 根絶하기 위하여 1世帶 1住宅으로 非課稅되는 範圍를 보다 嚴格하게 適用토록 하였다.

가. 1世帶 1住宅의 範圍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이라함은 原則的으로 居住者 및 그 配偶者가 그들과 同一한 住所 또는 居所에서 生計를 같이하는 家族과 함께 構成하는 1世帶가 國內에 1個의 住宅을 所有하고 그 住宅에서 6月以上 居住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配偶者가 없는 者는 讓

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 1住宅으로서의 惠澤을 받지 못하며 또한 從前에는 아파트에 한하여서만 6月以上의 居住를 非課稅要件으로 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모든 住宅에 대하여도 6月以上의 居住를 非課稅要件으로 하였다.

다만 住宅建設의 促進이라는 政策的인 側面에서 無住宅者가 單獨住宅을 新築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 居住期間의 制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配偶者없이 1世帶 1住宅으로 認定하는 경우

改正稅法이 配偶者가 없는 者는 1世帶로서 認定하지 아니함이 原則이나 이를 너무나 嚴格하게 適用하는 때에는 一般國民에게 지나친 不便과 被害를 주기 때문에 配偶者없이도 1世帶 1住宅의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는 몇개의 例外를 認定하고 있으며, 그 例外는 다음과 같다.

(1) 1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者의 年齡이 30歲以上인 경우

(2) 配偶者가 死亡하거나 離婚한 경우

(3) 居住者가 1住宅을 相續받은 경우

다. 居住月數의 計算

1世帶 1住宅으로서 非課稅惠澤을 받기 위하여는 그 住宅에서 6月以上 居住를 要件으로 한다. 그러나 그 居住月數의 計算에는 事實上의 居住月數를 基準으로 할 것인지 또는 居住登錄票上의 居住月數를 基準할 것인지에 따라 2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調査者의 裁量을 縮小하고 그 調査의 便宜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그 居住月數는 住民登錄票上의 轉入日字로부터 轉出日字까지의 月數에 의하여서 計算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特히 留意하여야 할 점은 1住宅을 所有한 者가 그 住宅에서 事實上 6月以上 居住함을 前提로 한 것이므로 예컨대 住民登錄票上에는 6月以上 登載되어 있는 경우라도 事實上 그 住宅에서 居住하지 아니한 것이 判明된 때에는 1世帶 1住宅으로서의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 2住宅 保有期間에 대한 特例(規則 第6條)

現行稅法에서 住居移轉을 目的으로 다른 住宅을 取得하여 移轉한 때에는 다른 住宅을 取得한 날로부터 1年內에 從前住宅을 讓渡하면 그 從前住宅을 1住宅으로 認定하고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 있어서는 이 以外에 2住宅의 所有期間에 대한 또다른 特例를 認定하였다.

卽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으로 因하여 從前住宅의 一部 또는 全部가 撤去됨에 따라 다른 住宅을 取得하여 移轉한 때에는 다른 住宅의 取得과는 관계없이 從前住宅의 撤去에 따른 損失補償을 받은 날로부터 1年內에 撤去後 殘在하는 從前住宅(附隨土地包含)을 讓渡하는 때에도 이를 1世帶 1住宅으로 보도록 하였다.

마. 1世帶 1住宅의 施行日(附則 第3條)

이번 改正된 1世帶 1住宅에 關한 規定은 1979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讓渡契約을 締結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따라서 그 契約日字가 1978年 12月 31日以前인 때에는 中渡金을 1979年 1月 1日이후에 받는 경우라도 이번 改正된 稅法이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6. 基準時價의 決定方法(法 第60條, 令 第115條)

讓渡所得課稅에 있어서 讓渡資產의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의 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 適用할 基準時價의 決定方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區　　分	決　定　方　法
○ 土地·建物과 不動產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1.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特定地域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2. 其他地域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 土地權, 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產賃借權	相續稅法施行令 第6條第1項第1號의 規定準用
○ 其他資產(株式 등)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第1號의 規定準用

※ 倍率方法이란?

地方稅法上 課稅時價標準額과 賣買實例價額을 基準하여 國稅廳長이 定함.

7. 官認契約書提出制度新設

不動產去來資料의 適期蒐集과 課稅資料의 은닉을 防止하기 爲하여 官認契約書 副本의 提出義務를 지우고 이를 不履行한 때에는 一定額의 加算稅를 賦課하거나 事業의 停止를 要求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하였다.

가. 契約書副本의 提出(法 第193條의 2 第1項·第2項, 令 第233條의 4)

(1) 不動產紹介業者

土地등의 賣買契約이나 讓渡所得稅 課稅對象이 되는 資產의 讓渡에 관한 契約書를 作成한 때에는 그 契約書作成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不動產登記法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官認契約書 副本을 事業場을 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事由로 위의 期限內에 그 契約書副本을 提出하지 못한 때에 그 期限이 經過한 날로부터 30日內에 追加로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不動產賣買業者 및 讓渡所得稅納稅義務者

不動產紹介業者와 마찬가지로 不動產登記法 第40條第2項에 規定하는 官認契約書副本을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期限內 또는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期限內에 住所地管轄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나. 官認契約書 提出不誠實 加算稅(法 第189條第8項·第9項)

(1) 未提出加算稅

不動產紹介業者, 不動產賣買業者 및 讓渡所得이 있는 納稅義務者가 契約書作成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또는 土地等 賣買差益豫定申告期限 및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期限內에 그 契約書副本을 提出하지 못한 때에는 그 去來金額의 2%를 加算稅로서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2) 遲延提出加算稅

不動產紹介業者가 契約書作成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提出하지 못하고 그날로부터 30日內에 提出한 때에는 未提出加算稅 대신에 0.2%의 遲延提出加算稅를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 事業의 停止 要求(令 第233條의 4)

不動產紹介業者가 契約書副本을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虛僞로 提出한 경우에는 稅務署長은 그 發見件數에 따라 事業의 停止를 主務官廳에 要求할 수 있다.

그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그 發見件數가 每月을 基準으로 10件 未滿인 때에는 1月, 10件以上인 때에는 3月, 20件以上인 때에는 6月間의 事業停止를 要求할 수 있는 것이다.

8. 課稅對象資產의 範圍擴大(法 第23條, 令 第44條)

讓渡所得稅가 課稅되는 資產의 範圍를 擴大하여 不動產에 關한 權利 및 一定한 要件을 갖춘 有價證券을 其他資產으로 하여 새로운 課稅對象으로 追加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不動產에 關한 權利	<新 設>	○ 不動產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① 中渡金支給前에 賣買契約을 締結한 不動產의 轉賣 ② 建物이 完成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를 取得할 수 있는 權利(아파트 入住權 등) ○ 地上權, 傳貰權 및 登記한 不動產 賃借權
其他資產	○ 建物이 完成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를 取得할 수 있는 權利(아파트 入住權)	○ 다음의 要件을 갖춘 法人의 株主1人과 그와 國稅基本法施行令 第20條에 規定하는 親族 기타 特殊關係者가 그 法人의 株式등의 合計額의 100分의 50이상을 讓渡하는 경우 當該 株式 ① 法人의 資產總額中 土地·建物等 資產價額의 合計額이 차지하는 比率이 100分의 50以上인 法人 ② 株主1人과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 法人의 株式등 合計額의 100分의 50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其他資產에 對한 課稅에 있어서는 株主1人과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들이 株式等을 數回에 걸쳐 分割讓渡함으로써 課稅要件이 充足되는 事例를 回避할 우려가 있으므로 株主1人과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들이 3年間에 걸쳐 讓渡한 株式等을 合算하여 課稅要件의 充足與否를 判定하도록 하였다.

9. 有償讓渡의 範圍擴大(法 第4條)

所得稅法上 讓渡所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讓渡라 함은 有償契約을 前提로 한 것이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이와같은 法의 맹점을 이용하여 巨額의 不動產을 擔保로 提供하여 起債한 後에 이 不動產을 贈與形式으로 讓渡함으로써 讓渡所得稅를 免脫함은 물론 擔保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方法을 통하여 贈與稅負擔까지도 回避하는 교묘한 手法이 惡用되어 이를 規制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負擔附 贈與의 경우에 있어서 贈與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贈與者契約에 대하여는 贈與價額中 그 債務額에 相當하는 部分은 그 資產을 有償으로 事實上 讓渡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事　例>

時價 1億원의 土地를 79年 1月 1日 父가 子에게 贈與하였다. 이때 同土地에는 銀行負債 6千萬원이 擔保되어 있었으며 同負債는 受贈者인 子가 引受하는 條件이였고, 同土地의 取得價額은 5千萬원이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後	
	讓渡所得稅	贈與稅	讓渡所得稅	贈與稅
課稅標準	—	4千萬원	3千萬원	4千萬원

<註>

① 讓渡所得稅 課稅標準計算方法

$$6\text{千萬원} - \left(5\text{千萬원} \times \frac{6\text{千萬원}}{1\text{億원}}\right) = 3\text{千萬원}$$

② 贈與稅 課稅標準

1億원－6千萬원＝4千萬원

法 人 稅 法

[要 約]

企業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 稅負擔을 輕減하는 反面, 公開企業등 大企業에 대하여는 課稅를 強化하고, 資產讓渡所得에 대한 特別附加稅를 重課하며, 輸出事業 및 海外資源開發投資에 대한 支援制度를 擴充함으로써 景氣의 安定과 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가. 船舶·機械 輸出事業에 대한 支援 強化

○ 海外市場開拓準備金制度의 擴充

○ 輸出損失準備金制度의 擴充

나. 海外資源開發投資에 대한 支援 強化

○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限度額 引上

다.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中小企業의 範圍 擴大

○ 海外市場開拓準備金 限度額 引上

○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 引下

라. 配當課稅制度의 改善

○ 受入配當稅額 控除制度의 廢止

○ 擬制配當의 範圍 縮小

마. 法人稅率 調整

○ 中小企業의 法人稅率 引下

○ 公開法人의 法人稅率 引上

○ 非營利法人의 稅率適用 特例

바. 公開法人의 要件 緩和

○ 少額株主의 基準 單一化

○ 少額株主의 所有株式의 占有比計算方法

○ 公開法人의 要件 確認

○ 처음으로 公開法人이 된 法人에 대한 特例

사.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

○ 移延資產 調整

○ 保險差益등의 壓縮記帳

아. 法人稅 特別附加稅의 強化

○ 課稅對象의 擴大

○ 課稅標準의 計算

○ 稅率 調整

○ 學校法人의 土地등에 대한 非課稅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

자. 契約書副本 提出 및 不誠實加算稅

차. 事業者登錄

카. 計算書作成·交付

타. 其他 事項

○ 退職給與充當金 設定要件 緩和

○ 指定寄附金 限度額 引上

○ 公課金의 範圍 擴大

○ 特需關係者의 範圍 調整

○ 減價償却資產의 殘存耐用年數 調整

○ 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

1. 船舶·機械 輸出事業에 대한 支援 强化

가. 海外市場開拓準備金制度의 擴充

(1) 算入率 및 据置期間(法 第12條의 2, 令 第17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算入率	①外貨收入金額의 1% 단, 特定地域輸出의 경우는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	①從前과 같음.

區 分	改 正 前	改 正
		②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과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①에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
据 置	2 年	2 年 단,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
還 入	3 年	3 年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과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從前 範圍額에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하여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는 準備金의 据置期間도 2年에서 5年으로 延長하였다.

따라서 特定地域에 船舶·機械등을 輸出하는 경우는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3%까지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게 되었다.

(2) 船舶·機械등 輸出事業의 定義(令 第17條의 5)

船舶·機械등이라 함은 船舶法에 의한 船舶(浚渫船등 特殊船舶과 水上構造物을 포함한다.)과 機械工業振興法施行令 別表에 게기한 機械등을 말한다.

(3) 適 用 例

'79.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부터 적용하며, 延長된 据置期間은 '79. 1. 1이후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設定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輸出損失準備金制度의 擴充

(1) 算入率 및 据置期間(法 第12條의 4, 令 第17條·第17條의 5)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算入率	①外貨收入金額의 1%나 輸出事業所得의 50%중 적은 金額	①從前과 같음.

區 分	改 正 前	改 正
	단, 特定地域輸出의 경우는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	
		②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과 延拂輸出의 경우는 ①에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
据 置	2 年	2 年 단,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
還 入	3 年	3 年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과 延拂輸出에 있어서는 從前 範圍額에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1%를 加算하여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船舶·機械등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는 準備金의 据置期間을 2年에서 5年으로 延長하였다.

따라서 特定地域에 船舶·機械를 輸出하거나 延拂로 輸出하는 경우는 당해 外貨收入金額의 3%까지 輸出損失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게 되었다.

(2) 適 用 例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2. 海外資源開發投資에 대한 支援 強化

가.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限度額 引上(法 第12條의 5, 令 第17條의 5)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算入率	海外投資額의 10%	海外投資額의 10% 단, 海外資源開發投資는 投資額의 20%
据 置	3 年	3年
還 入	4 年	4年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는 海外投資額의 20%에 해당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海外資源開發事業이라 함은 國外에서 農產物·畜產物·水產物·林產物·鑛物을 開發하는 사업을 말하며, 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事業을 포함한다.

3. 中小企業 支援

가. 中小企業의 範圍擴大(令 第68條)

中小企業에 대한 稅制上 支援을 增大하기 위하여 그 適用對象 범위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製造業, 鑛業을 主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事業年度중 계속하여, 固定資產總額이 3億원이하인 法人	①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 및 水產業을 主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事業年度중 계속하여 固定資產總額이 3億원이하이거나, 常時 使用하는 從業員數가 300人이하(建設業은 50인이하)인 法人 ②相互信用金庫業을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資本金이 事業年度중 계속하여 5億원이하인 法人

위 表와 같이 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 및 水產業의 경우 中小企業의 해당여부는 固定資產總額이나 從業員數에 의하므로 固定資產總額이 3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從業員數가 300人(建設業은 50人) 이하이면 中小企業으로 본다. 또한 中小企業該當事業과 기타의 事業을 겸영하는 法人에 있어서는 中小企業該當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中小企業으로 보며, 이 경우 主된 事業은 事業別 收益金額 또는 당해 事業에 直接 使用되는 固定資產金額이 큰 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事業別 收益金額이나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固定資產金額중 어느 하나라도

中小企業該當事業의 金額이 큰 경우에는 中小企業으로 본다.

中小企業의 範圍에 관하여 改正된 이 規定은 '79. 1. 1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하나, 新設된 中小企業은 法人稅率 適用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範圍는 稅率適用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나. 海外市場開拓準備金 算入率 引上(法 第12條의 2)

다.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 引下(法 第22條)

4. 配當課稅制度의 改善

가. 受入配當稅額控除制度의 廢止(法 第24條의 4)

法人이 받은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당해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던 受入配當稅額控除制度는 이를 廢止하였다.

$$\text{算出稅額} \times \frac{\text{配當所得}}{\text{課稅標準}} = \text{控除額}$$

또한 이 廢止規定은 1978. 12. 5이후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되므로 1978. 12. 5이후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配當받은 配當所得分부터는 配當稅額控除를 받지 못한다.

나. 擬制配當의 範圍縮小(法 第19條, 令 第45條의 3)

剩餘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써 받은 無償株는 이를 配當所得(擬制配當)으로 보아 法人稅를 課稅하였으나, 無償株中 商法 第459條의 規定에 의한 資本準備金 즉, 合併差益, 減資差益, 株式發行超過金의 資本轉入으로 因하여 받은 無償株는 配當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資本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받는 無償株에 대하여는 法人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며, 그 會計處理는 企業會計의 경우와 같이 1株當 帳簿價額을 다음 算式에 따라 새로이 算定하여 補助記入만 하면 된다.

○ $\text{1株當帳簿價額} = \frac{\text{舊株式1株當帳簿價額}}{1 + \text{舊株式1株當新株配定數}}$

5. 法人稅率 調整(法 第22條)

公開法人의 稅率은 引上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稅率은 引下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非公開 營利法人

從前과 같다.

課 稅 標 準	稅 率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나. 公開法人

課稅標準	大株主比率 35%이하		大株主比率 35%초과	
	改 正 前	改 正	改 正 前	改 正
500만원이하	20%	20%	25%	25%
500만원초과	27%	30%	33%	35%

改正된 稅率은 '78. 12. 5 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그리고 '76. 12. 31 이전에 公開된 法人에 대하여는 大株主比率이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78.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分까지는 大株主比率 35% 이하에 대한 稅率(500만원이하 20%, 500만원초과 30%)을 적용한다.

다. 中小企業法人

課 稅 標 準	改正前(非公開營利法人)	改 正
300만원 이하	20%	15%
300만원 초과	30%	25%
500만원 초과	40%	35%

新設된 中小企業法人에 대한 稅率은 '78. 12. 5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하며, 稅率適用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範圍는 改正된 규정에 의한다.

또 中小企業該當事業과 기타의 事業을 겸영하는 法人의 경우는 中小企業該當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營爲하고 있는 때에 限하여 그 法人全體의 所得에 대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을 적용한다.

그러나 겸영의 경우 中小企業該當事業이 主된 事業이 아닌 때에는 中小企業該當事業에서 생긴 所得에 대하여도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例> 製造業과 販賣業을 겸영하는 甲法人의 事業別 固定資產金額, 收益金額등이 다음과 같을 경우 適用할 稅率은?

(事例 1)

事業別 金額

	製 造 業	販 賣 業	合 計
固定資產	2억원	1억원	3억원
收益金額	5억원	10억원	15억원
所得金額	1억원	2억원	3억원

中小企業該當事業인 製造業의 收益金額은 販賣業의 收益金額보다 적으나, 固定資產金額은 製造業이 販賣業보다 많으므로 甲法人은 中小企業該當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營爲하고 있다.

따라서 甲法人의 全體所得金額 3억원에 대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을 適用한다.

(事例 2)

事業別 金額

	製 造 業	販 賣 業	合 計
固定資產	1억원	2억원	3억원
收益金額	5억원	10억원	15억원
所得金額	1억원	2억원	3억원

中小企業該當事業인 製造業의 固定資產金額이나 收益金額중 어느 하나도 販賣業의 金額보다 적으므로 中小企業該當事業인 製造業이 主된 事業이 아니다.

따라서 製造業의 所得金額 1억원에 대하여도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라. 非營利法人

從前과 같다. 그러나 非營利法人으로서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그 選擇에 따라 中小企業法人稅率이나 非營利法人稅率을 適用한다.

6. 公開法人의 要件緩和

가. 少額株主의 基準 單一化(法 第22條第3項)

少額株主의 基準을 다음과 같이 單一化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發行總株式數의 1% – 5,000만원을 額面價額으로 나눈 株式數	중 적은 數에 未達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	發行總株式數의 1%에 未達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
단, 銀行, 韓國電力(株), 資本金을 增加한 法人은 發行總株式數의 1%에 未達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		

나. 少額株主의 所有株式의 占有比 計算(令 第67條의 3 第3項)

公開法人의 要件의 하나인 少額株主의 所有株式數 占有比 計算에 있어서 다음에 게기하는 機關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도 少額株主의 總所有株式數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機關投資家가 公開法人의 第1大株主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開法人의 株式은 除外한다.

(1)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2) 銀行法에 의한 銀行(韓國產業銀行 및 外換銀行을 포함한다)

(3)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會社

다. 公開法人의 要件確認(令 第67條第7項)

公開法人으로서의 適用을 받기 위하여는 事業年度중 계속하여 그 要件을 갖추어야 하고 그 要件은 株主總會가 있을 때마다 확인되어야 하며, 株主總會의 확인이 있은 때에는 그 確認된 要件은 直前 株主總會 召集基準日의 다음날부터 당해 株主總會의 召集基準日까지 계속하여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라. 처음으로 公開法人이 된 法人에 대한 特例 (令 第67條第3項·第5項, 第67條의 2)

(1) 公開法人의 適用을 받는 法人은 韓國證券去來所를 통하여 去來된 株式의 月平均賣買量이 發行總株式數의 1,000分의 3 이상이어야 하나, 처음으로 公開法人이 된 경우에는 株式이 上場된 날로부터 6月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期間은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事業年度中에 처음으로 株式을 上場하여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要件을 갖춘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公開法人으로 보는 것이며, 公開法人 要件의 確認은 上場申請書에 첨부된 株主名簿에 의하여 確認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公開法人의 要件은 당해 株式의 株金納入日에 갖춘 것으로 본다.

(3) 事業年度中에 公開法人이 된 法人에 대한 法人稅算出稅額은 公開前과 公開後의 期間으로 나누어 按分計算하는 바 그 算式은 다음과 같다.

① 事業年度가 1年인 경우

$$\left[\text{課稅標準} \times \text{非公開法人稅率} \times \frac{\text{公開前月數}}{12}\right] + \left[\text{課稅標準} \times \text{公開法人稅率} \times \frac{\text{公開後月數}}{12}\right] = \text{算出稅額}$$

② 事業年度가 1年未滿인 경우

$$\left[\left\{\text{課稅標準} \times \frac{12}{\text{事業年度月數}} \times \text{非公開法人稅率} \times \frac{\text{公開前月數}}{\text{事業年度月數}}\right\} + \left\{\text{課稅標準} \times \frac{12}{\text{事業年度月數}} \times \text{公開法人稅率} \times \frac{\text{公開後月數}}{\text{事業年度月數}}\right\}\right] \times \frac{\text{事業年度月數}}{12} = \text{算出稅額}$$

마. 適 用 例

上記 가~라의 규정은 '79. 1. 1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7.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

가. 移延資產調整(法 第17條, 令 第38條)

移 延 資 產 의 種 類

改 正 前	改 正
①創業費와 開業費	①
②株式發行費	②
③社債發行差金	③ 從前과 같음.
④社債發行費	④
⑤試驗硏究費	⑤
⑥株式割引發行差金	⑥開發費

(1) 開 發 費

開發費라 함은 新技術의 開發 및 導入, 新經營組織의 採用, 資源의 開發, 新市場의 開拓등을 위하여 특별히 支出한 費用을 말한다. 開發費는 無形固定資產으로서 3年間 均等償却하였으나 移延資產으로 規定함에 따라 法人이 損金으로 計上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導入할 수 있게 되었다.

改正前 이 規定은 '79.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하는 것으로써 '78.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發生된 開發費로서 '79. 1. 1현재 未償却分은 移延資產으로 處理한다.

(2) 株式割引發行差金

株式割引發行差金이라 함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株式을 발행한 경우의 그 額面未達金額을 말하며 이를 移延資產으로 취급하였으나, 改正稅法은 이를 損金不算入 項目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株式割引發行差金은 損金으로 算入할 수 없고 企業會計에서와 같이 그 金額은 剩餘金에서 相計處理한다.

나. 保險差益등의 壓縮記帳(令 第22條 내지 第23條의 2)

保險差益, 工事負擔金 또는 國庫補助金을 損金으로 認定받기 위하여는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을 一時償却充當金으로 計上하고, 그 保險差益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의 減價償却費는 一時償却充當金의 범위안에서 一時償却充當金과 相計하여야 한다.

그러나, 綠色申告法人은 一時償却充當金을 調整計算書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하여 企業會計와의 不一致로 因한 不便을 解消하였다.

이 規定은 '78. 12. 5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8. 法人稅特別附加稅의 強化

가. 課稅對象의 擴大(法 第59條의 2, 令 第124條의 3 第4項)

改 正 前	改 正
土 地 建物(不動産 賣買業에 限함)	土 地 建 物 不動産에 관한 權利

從前은 土地에 限하고 建物은 不動産 賣買業에 限하여 課稅對象으로 하였으나, 改正稅法은 法人이 所有하는 모든 土地와 建物 및 不動産에 관한 權利까지도 課稅對象으로 擴大하였다.

不動産에 관한 權利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建物이 完成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取得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2) 地上權

(3) 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 賃借權

나. 課稅標準의 計算(法 第59條의 2, 第124條의 2)

(1) 物價上昇率 控除制度 廢止

改 正 前	改 正
讓渡差益 =讓渡價額 －(①取得價額 ②讓渡費用 ③取得價額×物價上昇率×保有期間)	讓渡差益 =讓渡價額 －(①取得價額 ②讓渡費用)

特別附加稅의 課稅標準은 土地등의 讓渡差益이며, 讓渡差益은 讓渡價額에서 取得價額과 費用을 控除한 金額이다. 讓渡價額에서 控除하는 費用으로서, 從前에는 土地등의 讓渡費用과 取得價額에 物價上昇率과 保有期間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 取得價額에 物價上昇率과 保有期間을 곱하여 계산한 金額을 費用으로서 控除하는 規定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79. 1. 1이후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物價上昇率에 의하여 計算한 費用을 控除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의 價額決定

取得價額이나 讓渡價額이 不分明한 경우 從前에는 時價標準額에 의하였으나 基準時價에 의하도록 하였다.(基準時價 : 所得稅法編 參照)

다. 稅率調整(法 第59條의 4 第1項, 令 第124條의 9)

改 正 前	改 正
25%	①保有期間 2年以上 : 25% ②保有期間 2年未滿 : 35% ③未登記 讓渡 : 40%

(1) 稅率의 差等化

特別附加稅率은 讓渡資產의 保有期間 및 登記與否에 다라 差等化하였으며, 특히 未登記 轉費에 대하여는 稅率을 大幅 引上하였다.

(2) 保有期間의 計算(法 第59條의 4 第3項)

保有期間은 당해 土地등의 取得日로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으로 하며, 取得日 또는 讓渡日은 契約金外에 代金의 一部를 授受한 날을 말한다.

(3) 未登記讓渡(法 第59條의 4 第4項, 令 第124條의 9)

未登記 讓渡의 경우에는 保有期間에 不拘하고 40%의 稅率이 適用되며, 法人稅法이나 其他 法律의 規定에 의한 減免이나 非課稅 및 實需要土地稅額還給에 관한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未登記讓渡라 함은 土地등을 取得한 法人이 取得에 관한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게기하는 資產은 未登記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① 割賦 또는 延拂로 取得한 資產으로서 그 契約條件에 의하여 讓渡當時까지 그 資產의 取得에 관한 登記가 不可能한 資產

② 法律의 規定 또는 法院의 處分에 의하여 讓渡當時까지 그 資產의 取得에 관한 登記가 不可能한 資產

③ 法 第59條의 3 第4號 및 第5號에 規定하는 土地(8年以上 耕作農地등)

(4) 金融機關에 대한 稅率 適用의 特例(法 第59條의 4 第5項, 令 第124條의 10)

成業公社와 金融機關이 抵當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取得한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그 保有期間에 不拘하고 25%의 稅率을 適用하며, 이 경우 金融機關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② 韓國產業銀行
③ 中小企業銀行
④ 國民銀行
⑤ 韓國住宅銀行
⑥ 韓國輸出入銀行
⑦ 韓國外換銀行
⑧ 短期金融會社
⑨ 綜合金融會社
⑩ 相互信用金庫
⑪ 農協 및 水協

라. 學校法人의 土地등에 대한 非課稅 (法 第59條의 3, 令 第124條의 4 第7項, 第124條의 8)

(1) 學校法人의 非教育用 土地등에 대한 非課稅

學校法人이 所有하는 基本財產(不動產)中 教育事業에 直接 使用되는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만 特別附加稅를 非課稅하여 왔으나, 이를 擴大하여 學校法人이 教育事業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는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도 그 讓渡金額을 教育事業에 使用하는 것을 條件으로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2) 事後管理

教育目的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는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은 學校法人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① 讓渡金額을 教育事業이외의 目的에 使用한 때

② 讓渡金額을 讓渡日로부터 3年內에 教育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3年內에 使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3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1次에 限하여 所管稅務署長의 承認을 받아 使用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마. 實需要土地稅額還給(法 第59條의 6, 令 第124條의 11)

內國法人이 建築法上 建築物의 建築用地로 土地를 讓渡한 경우에 이를 取得한 者(實需要者)가 3年內에 建築物을 建築한 때에는 特別附加稅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讓渡者에게 還給하도록 하였다.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에 관한 具體的인 節次는 所得稅法篇 참조

9. 契約書副本의 提出 및 不誠實加算稅

가. 提出義務者 및 提出期限(法 第66條의 2, 令 第130條)

(1) 契約書作成者(不動產紹介業者)

土地등의 讓渡契約에 관한 契約書를 作成하는 者는 不動產登記法의 규정에 의한 契約書副本을 契約書作成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提出하여야 한다.

(2) 土地등의 讓渡者

契約書副本을 法人稅課稅標準申告期限內에 政府에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別附加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提出하지 아니한다.

나. 遲延提出(法 第66條의 2 第3項)

위 期限내에 提出하지 못한 契約書副本은 當初期限經過日로부터 30日내에 이를 提出할 수 있다.

다. 不誠實提出에 대한 制裁

(1) 事業의 停止등의 要求(法 第66條의 2 第5項)

契約書作成者가 契約書副本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作成하여 提出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事業의 停止,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를 主務官廳에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要求를 받은 主務官廳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2) 不誠實加算稅(法 第41條)

未提出加算稅 : 去來金額의 2%
遲延提出加算稅 : 去來金額의 0.2%

라. 提出節次

所得稅法施行令 第233條의 4 第2項 내지 第5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10. 事業者登錄(法 第67條, 令 第131條)

가. 新規事業者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法人은 事業場마다 당해 事業의 開始日로부터 20日內에 事業者登錄申請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附加價値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事業에 관하여 法人稅法의 규정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나. 登錄의 檢閱

登錄에 관하여는 附加價値稅法 第5條, 同法施行令 第7條 내지 第13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다. 經過措置

事業者登錄에 관한 규정은 '79. 1. 1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하는 分부터 적용하며, '78. 12. 31 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1979年 2月末日까지 改正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물론 附加價値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者는 이 규정에 의한 登錄은 하지 않아도 된다.

11. 計算書의 作成·交付(法 第66條, 令 第129條)

(具體的인 事項은 所得稅法編을 參考)

12. 其他事項

가. 退職給與充當金의 設定 要件 緩和(法 第13條)

改 正 前	改 正
(1) 當期充當金限度額 ①(당해事業年度末退職金推計額) －直前事業年度末推計額) ②(年間支給總給與額－年間賞與金 支給總額)×10%	(1) 當期充當金限度額 廢止 ①廢止 ②(年間支給總給與額)×10%
(2) 充當金累積額 당해 事業年度末 推計額의 50%	(2) 充當金 累積額 당해 事業年度末 推計額의 50%

나. 指定寄附金 限度額引上(法 第18條, 令 第42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一般法人	所得金額의 5%+資本金의 1%	所得金額의 10%+資本金의 2%
非營利公益法人	所得金額의 50%	所得金額의 60%
學校法人	教育費로 支出時는 所得金額 全額	從前과 같음.

위 表와 같이 指定寄附金의 限度額을 引上하고,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法人에 教育費, 研究費등으로 支出하는 金額도 指定寄附金으로 하였다.

다. 公課金의 範圍擴大(令 第25條)

蠶業法에 의한 蠶業振興基金으로 積立하는 金額은 公課金으로서 法人의 所得金額計算上 損金에 算入토록 하였으며, 이 規定은 法律 第2964號 蠶業法中 改正法律의 施行日('76. 3. 1)이후 積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調整(令 第46條)

不當行爲計算否認의 대상이 되는 特殊關係人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縮小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①出資者(少額株主를 除外한다. 이하 같다)와 그 親族	①從前과 같음.
②法人 또는 出資者의 使用人이나 使用人이외의 者로서 法人 또는 出資者의 金錢 기타 資産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者와 이들과 生計를 함께하는 親族	②法人 또는 出資者의 使用人(出資者에 있어서는 營利法人인 경우에는 任員에 한하고, 非營利法人인 경우는 理事 및 設立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使用人이외의 者로서 法人 또는 出資者의 金錢 기타

改 正 前	改 正
	資産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者와 이들과 生計를 함께하는 親族
③出資者 또는 前各號에 게기하는 者가 出資하고 있는 다른 法人	③出資者 또는 第1號 및 第2號에 게기하는 者가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의 35%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다른 法人
④前各號에 게기하는 者가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의 5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	④第3號에 게기하는 者가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의 5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다른 法人
⑤당해 法人에 5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에 5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이나 個人	⑤從前과 같음.
⑥法人의 商品 또는 製品을 特約販賣하는 者	⑥從前과 같음.
⑦第1號에 규정하는 者가 理事의 과반수이거나, 그 1人이 設立者인 非營利法人	⑦第1號에 게기하는 者가 理事의 과반수이거나, 出捐金(設立을 위한 出捐金에 한한다)의 50%이상을 出捐하고 그중 1人이 設立者로 되어있는 非營利 法人

特殊関係者 (改正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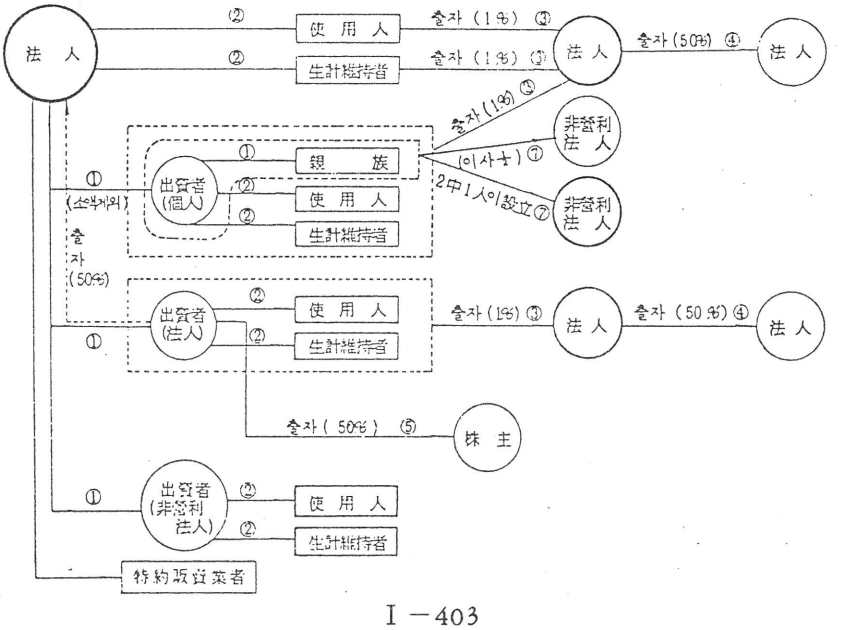

特殊関係者（改正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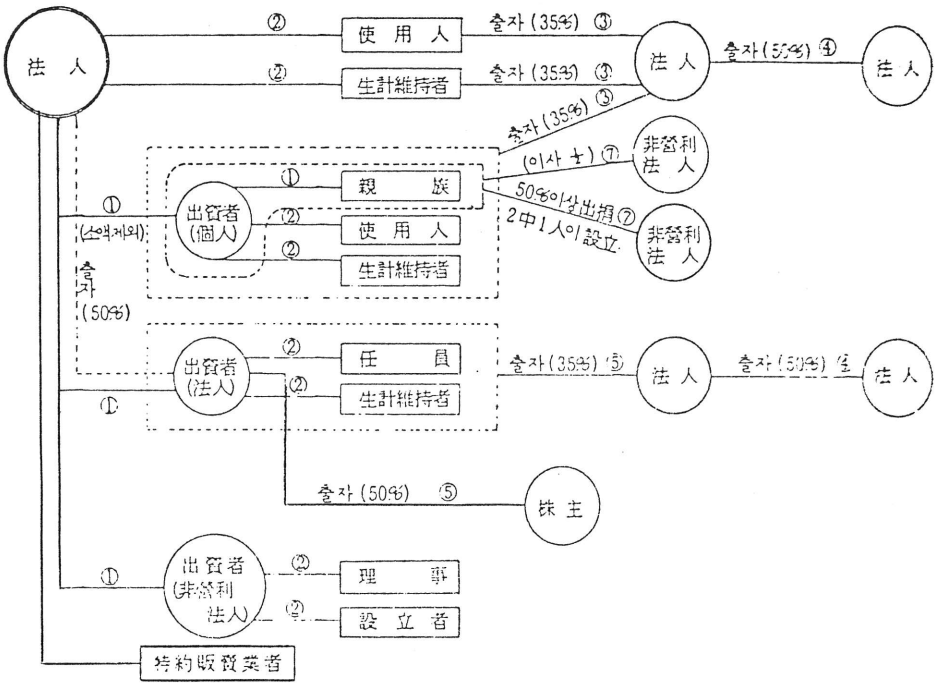

마. 減價償却資産의 殘存耐用年數의 調整(令 第59條)

中古資産을 取得하거나 資産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産의 修正된 耐用年數가 2年 미만인 경우는 2年으로 하며, 資産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産으로서 再評價差額이 發生하지 아니한 資産은 耐用年數를 修正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바. 支給調書提出의 簡素化(令 第128條의 2)

(1) 勤勞所得에 대한 支給調書

年間 勤勞所得의 總收入金額이 所得稅法에 規定한 賞與特別控除額·勤勞所得控除額과 基礎

控除額의 合計額 이하인 使用人에 대하여는 支給調書의 제출에 갈음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勤勞所得支給明細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支給調書

所得稅法施行令 第38條第7號에 規定하는 自由職業에서 發生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경우 이에 대한 支給調書는 該當年度 12月分의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에 該當年度에 支給한 總收入金額에 대한 支給調書를 一括하여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相 續 稅 法

[要 約]

이번 相續稅法을 改正함에 있어서는 相續財産에서 控除하는 保險金 控除額 및 信託財産 控除額을 各各 引上하고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와 農地相續人에 대한 農地相續 控除制度를 新設하였으며 其他 現行法令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가. 保險金控除額 및 信託財産控除額을 引上함
나.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를 新設함
다. 農地相續 控除制度를 新設함
라. 公益事業의 範圍를 擴大함
마. 土地와 建物의 評價方法을 改善함
바. 賦與稅 課稅時 控除對象이 되는 親族의 範圍를 定함
사. 親族控除의 計算方法을 定함

1. 保險金控除額 및 信託財産控除額 引上(法 第7條第1項·第3項)

相續財産 價額에서 控除하는 保險金 控除額 및 信託業法 및 證券投資 信託業法에 의한 金錢信託 이외의 信託財産 控除額을 現行 500萬원에서 700萬원으로 各各 引上하였다.

(單位 : 千원)

控除區分	改正前	改正
生命保險金	5,000	7,000
信託財産	5,000	7,000

2.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

은닉되어 있는 文化財를 陽性化하기 위한 稅制의 支援策으로서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相續稅의 徵收猶豫(法 第8條의 3 第1項)

相續財産에 文化財 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指定 文化財가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相續稅額中 文化財 價額에 相當하는 相續稅額에 대하여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그 徵收를 猶豫한다.

나. 徵收猶豫한 相續稅 追徵(法 第8條의 3 第2項)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의 徵收猶豫 制度는 相續人이 相續받은 文化財를 영속적으로 保存함을 前提로 한 것이므로 相續人이 그 文化財를 타인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을 지체없이 徵收한다.

다. 徵收猶豫한 相續稅의 賦課철회(法 第8條의 3 第3項)

指定文化財에 대한 相續稅額의 徵收猶豫 期間中에 그 文化財에 대하여 다시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는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를 撤回하고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3. 農地相續控除

사실상 被相續人과 相續人의 共同 營農에 의하여 形成된 財産인 農地에 대한 相續稅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農地相續控除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農地相續控除額의 計算(法 第11條의 2 第1項)

被相續人의 相續財産價額에 農地稅 課稅對象이 되는 農地의 價額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에는

120萬원에 相續人이 21세가 되는 해부터 相續이 개시되는 해까지 農耕에 從事한 年數를 곱한 金額을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한다.

나. 農地相續控除 對象 相續人의 範圍(法 第8條의 2 第1項)

農地相續控除를 받을 수 있는 相續人은 相續 開始 當時에 相續財産인 農地를 직접 耕作하는 相續人이다. 따라서 相續人이 過去에 農耕에 從事한 경우라도 相續日 현재 相續農地를 直接 耕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農地의 範圍(令 第8條의 2 第2項)

農地相續控除 對象이 되는 農地는 田·畓으로서 地籍 公簿上 地目에 關係없이 實地로 耕作되는 土地를 말하며 農地經營에 직접 필요한 農幕·堆肥舍·揚水場·池沼·農道·水路등을 包含한다.

라. 農耕에 從事한 年數의 計算(令 第8條의 2 第3項)

農地相續控除額 計算에 있어서 計算基礎가 되는 農耕에 從事한 年數의 計算은 農地相續控除를 받은 相續人이 21세가 되는 날부터 相續이 開始되는 날까지 總日數에서 相續人이 勤務上·事業上 事由로 農耕에 從事하지 아니한 日數를 差減한 日數를 365로 나누어 計算하며 이 경우 그 年數가 1年 未滿일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事 例>

被相續人과의關係	總 日 數	農耕에從事하지아니한日數	差減日數	農耕從事年數	年控除額	農地相續控除額
長 男	6,785日	2,555日	4,320日	11.8年	120萬원	1,440萬원
次 男	5,350	1,825	3,525	9.6	〃	1,200
計	12,225	4,380	7,845		〃	2,640

農耕從事 年數 計算은 1年未滿은 1年으로 하므로 長男의 11.8年은 12年으로 次男의 9.6年은 10年으로 計算한다.

4. 公益事業의 範圍擴大(令 第3條의 2 第2項第13號)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이 運營하는 事業을 公益事業으로 規定하여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이 運營하는 事業에 出捐하는 財產價額에 대하여는 相續稅 및 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5. 土地와 建物의 評價方法 改善

가. 財產評價의 合理化(令 第5條第2項第1號·第2號)

相續財產의 價額은 相續開始 當時의 時價에 의하게 되어 있으나 相續開始 當時의 時價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土地와 建物은 地方稅法에서 規定하는 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번 稅法 改正에서는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있는 土地 建物은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하고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 以外의 地域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에 의한 價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나. 倍率方法의 意義(令 第5條第6項)

倍率方法이란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에 一定 地域마다 그 地域에 있는 價格 事情이 類似한 土地 및 建物의 賣買實例 價額을 基準으로 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 의하여 評價하는 方法이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土地 및 建物의 評價	○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 特定地域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은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 其他地域 特定地域 以外의 地域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6. 贈與稅 課稅時 控除對象 親族의 範圍(法 第31條第3項, 令 第39條의 2)

贈與稅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 親族의 範圍에 따라 贈與價額에서 控除되는 親族控除額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相續稅法에서는 親族 範圍에 關한 明文規定이 없어 親族의 範圍가 民法上의 親族인지 國稅基本上의 親族인지 不分明하였다. 따라서 이번 相續稅法 改正에서는 贈與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親族控除를 받을 수 있는 親族의 範圍를 國稅基本法施行令 第20條 第1號 내지 第8號의 關係가 있는 자를 親族으로 하는 明文 規定을 두었다.

7. 親族控除의 計算方法

現行法上 親族으로부터 贈與를 받는 경우에는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으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150萬원, 其他 親族으로부터 贈與받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限度로 하여 3年內에 한번만 控除하고 잇다.

그러나 3年內에 數人의 親族으로부터 贈與받는 경우 贈與財産에서 控除할 親族控除의 順序가 없어 贈與稅의 申告決定에 있어 혼란이 있었으므로 親族控除의 方法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贈與時點을 달리하는 경우(令 第40條第1號)

2이상의 贈與가 그 贈與時點을 各各 달리하는 경우에는 各各의 贈與中 最初에 있은 贈與價額에서부터 順序로 控除한다.

나. 同時 贈與의 경우(令 第40條第2號)

2이상의 贈與가 同時에 있는 경우에는 各各의 贈與價額에서 按分하여 控除한다.

<事　例>

區　分	贈與日字	贈與價額	控除額	課稅價額
贈與時點을	79. 1. 1 父	150萬원	150萬원	0
달리하는 경우	79. 6. 1 母	150萬원	0	150萬원
同時贈與의 경우	79. 1. 1 父	150萬원	75萬원	75萬원
	79. 1. 1 母	150萬원	75萬원	75萬원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80年代의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環境保全을 위하여 重要産業의 範圍에 航空工業과 環境保全業을 추가하였으며, 中小企業의 法人전환, 公共事業用地,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을 완화하였고, 教育研究機關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기 위하여 重要學術研究機關에 法人稅를 免除하고, 農業 工業, 水産業, 海洋에 관한 각급학교에 支出하는 寄附金은 5年間 이월하여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또 海外資源開發事業과 플랜트수출의 減免을 擴大하고, 에너지節約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으며 또한 法人과 個人의 減免의 衡平을 위하여 그 減免率을 調整하였다.

가. 重要産業의 範圍擴大

- ○ 航空工業
- ○ 環境保全用物品製造業
- ○ 環境汚染防止施設業
- ○ 産業廢棄物處理業

나. 土地에 대한 租稅를 減免

- ○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減免
- ○ 實需要土地에 대한 減免
- ○ 中小企業의 法人轉換對象土地에 대한 減免
- ○ 其他의 減免

다. 海外資源開發事業과 産業設備輸出支援

라. 教育·研究機關에 대한 支援

- ○ 教育機關에 대한 支援
- ○ 研究機關에 대한 支援

마. 重要機關法人에 대한 法人稅免除

바.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制度

사. 間接稅免除

○ 印紙稅免除

○ 特別消費稅免除

아. 地方稅免除

○ 登錄稅免除

○ 財產稅免除

○ 取得稅免除

자. 其　　他

○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에 대한 在評價特例

○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期限調整

○ 個人事業者의 減免率調整

1. 重要產業의 範圍擴大

產業構造와 技術의 高度化를 促進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重要產業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가. 航空工業(法 第4條의 8 第2項第13號)

航空工業 振興法에 의한 許可事業者로 하였다.

나. 環境保全用物品製造業(法 第4條의 8 第2項第14號)

機械工業育成法에 의하여 登錄한 자가 營爲하는 탈유황장치, 폐수처리장치, 폐유처리장치, 해수담수화장치제조업으로 規定하였다.

다. 環境汚染防止施設業(法 第4條의 8 第2項第14號)

環境保全法에 의한 防止施設業으로 規定하였다.

라. 産業廢棄物處理業(法 第4條의 8 第2項第14號)

環境保全法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業으로 規定하였다.

2. 土地에 관한 租稅減免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減免하였다.

가. 公共事業用地에 對한 減免(法 第3條의 3 第10項, 令 第2條의 7)

(1) 對象土地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한 韓國土地開發公社 또는 韓國住宅公社法의 規定에 의한 大韓住宅公社에 讓渡하는 土地와 公共事業施行者(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告示前에 讓渡되는 것에 한함)에게 讓渡하는 土地에 대하여 適用한다.

(2) 申請方法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標準申告)期限內에 別紙 第14號 書式을 準用하여 作成된 申請書에 登記簿謄本과 賣買契約書 寫本 및 公共事業用地임을 確認하는 書類(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開發公社의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買入者가 讓渡者의 納稅地所管稅務署에 申請하도록 하였다.

(3) 減免方法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50% 減免하도록 하고, 다만, 韓國土地開

發公社法의 規定에 의한 土地買入債券으로 償還받는 경우는 100% 減免하도록 하였다.

(4) 制　　限

다만, 法 第3條의 3 第5項 및 第6項의 住宅建設用地로도 減免對象이 되는 경우는 選擇的으로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實需要土地에 대한 減免(法 第3條의 3 第12項第13號)

(1) 對象土地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로 하였다.

(2) 申請方法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課稅標準申告)制限內에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寫本과 讓渡土地의 登記簿謄本 및 賣買契約書 寫本을 첨부하여 별지 第14號 書式을 準用하여 作成한 減免申請書와 함께 讓渡者의 納稅地所管稅務署長에게 하도록 하였다.

(3) 減免內容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法人稅特別附加稅의 100分에 50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하였다.

(4) 制　　限

土地取得日로부터 3年內에 建築物을 竣工하지 않으면 減免稅額을 追徵하도록 하였다.

다. 中小企業의 法人轉換對象土地에 대한 減免

(1) 對象土地

中小企業(所得稅法 第66條의 2)의 事業用固定資產의 現物出資로 法人設立하는 경우에 現物出資되는 土地로 하였다.

(2) 條　　件

法人轉換時點에서 1年間 소급하여 계산한 出資金額의 平均의 100分의 150以上 法人에 出資하여야 하며 여기서 出資金額은 資產에서 負債를 差減한 每月末의 金額을 말한다.

(3) 減免內容

現物出資時에 發生하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와 登錄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라. 其他의 減免(法 第3條의 3 第17項·第18項)

農業協同組合法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組合(漁村契를 包含한다)혹은 中央會 상호간의 建物 및 土地의 讓渡와 都市再開發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再開發地域內의 土地를 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 開發事業에 관한 公告日이후 1年內의 期間中의 土地의 讓渡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3. 海外資源開發事業과 產業設備輸出支援(法 第4條의 10, 令 第24條의 2)

海外資源開發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고, 產業設備輸出(플랜트수출)에 대해서는 海外建設業과 마찬가지로 事業開始年度와 그후 5年間事業所得의 法人稅 50%(個人인 경우에는 25%)를 減免하도록 하였다.

海外資源開發事業의 範圍

改正前	改正
農產物	農產物
林產物	畜產物
鑛物	水產物
	林產物
	鑛物

4. 教育研究機關에 대한 支援

가. 教育機關에 대한 支援(法 第13條第7項·第8項)

(1) 學校法人이 全額出資한 收益事業體가 당해 學校法人에 教育用寄附金으로 支出한 경우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範圍內에서 全額을 損費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2) 農業·工業(航空工業包含)·水產海洋에 관한 各級學校에 대하여 支出되는 寄附金은 當該事業年度의 寄附金 限度額을 초과하더라도 5年內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 이월하여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하도록 하고 各事業年度에 支出한 指定寄附金中 學校寄附金과 기타의 寄附金이 있는 경우 또는 當該事業年度에 지출하는 學校寄附金과 移越된 學校寄附金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寄附金 또는 移越된 寄附金을 먼저 損金算入하도록 하였다.

나. 研究機關에 대한 支援(法 第13條第1項)

다음 法人에 支給하는 出損金 혹은 委託研究費는 支給한 者의 所得計算上 必要經費 혹은 損金算入하도록 하였다.

(1) 韓國科學技術研究所

(2) 國際經濟研究院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5) 國土開發研究院

(6)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研究機關

5. 重要機關法人에 대한 法人稅免除(法 第4條)

다음 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① 中小企業振興工團

② 大韓赤十字社

③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敎職員醫療保險管理工團

④ 韓國精神文化硏究院

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⑥ 國土開發硏究院

⑦ 韓國工業標準協會

6.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 控除制度(法 第4條의 7)

에너지利用을 合理化하여 경제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 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減免對象은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投資이고 減免方法은 주된 機械設備投資金額의 8%(國産機資材의 경우 10%)를 投資稅額控除하도록 하였다.

事業者가 個人인 경우는 減免率調整으로 인하여 4%(國産機資材의 경우 5%)가 되도록 하였다.

7. 間接稅免除

가. 印紙稅免除(法 第6條)

(1)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게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의 適用을 받는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 讓渡節次상 必要에 의해 作成되는 書類

(2)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組合員 또는 農漁民의 農協, 水協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인 경우에 한함)

(3) 農業協同組合으로부터 農村改良住宅資金融資를 받는 경우 혹은 住宅建築用資材의 外上購入시 作成되는 書類

(4) 農漁民이 農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物品을 외상으로 購入하기 위해 作成하는 書類

(5)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農地造成事業에 관련되어 作成되는 書類

나. 特別消費稅 免除(法 第11條)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이 國內生産 不可能한 物資를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導入하는 物品에 대해서 特別消費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8. 地方稅免除

가. 登錄稅免除(法 第5條)

1) 韓國外換銀行
2) 個人中小企業의 法人轉換시 現物出資에 따라 取得되는 事業用 資産에 대한 登記

나. 財産稅免除(法 第9條)

韓國外換銀行

다. 取得稅免除(法 第10條)

個人中小企業의 法人轉換時 現物出資에 따라 取得되는 事業用資産에 대한 取得稅

9. 其　　他

가.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에 대한 再評價特例(法 第14條)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을 株主의 權益은 保護하기 위해 每月 1日을 再評價日로 하여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는 資產再評價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나.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期限 調整(令 第2條의 4)

法 第3條의 3 第5項·第6項의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은 從前에는 所得稅課稅 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課稅標準申告, 이하 같다)期限內였으나 이번에 土地를 讓受한 날 또는 集合住宅地區開發事業施行者指定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讓渡者의 納稅地所管稅務署長에게 하도록 하고 다만, 事業者指定의 지연으로 인하여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 이후에 減免申請을 하게 된 경우에는 讓渡者가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 또는 還給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法施行으로 인하여 減免申請期限이 경과된 土地에 대한 減免申請은 1979年 2月 28日까지 하도록 附則에서 規定하였다.

다. 個人事業者의 減免率調整(法 第17條의 2)

個人事業者와 法人事業者間의 租稅의 衡平을 위하여 個人事業者의 減免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1) 對　　象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法 第4條의 7)
特別減價償却, 新技術企業化事業, (法 第3條의 8 第3項·第4項)
海外建設業 產業設備輸出事業 技術用役事業(法 第4條의 10 第1項·第3項)
地方移轉事業稅額控除(法 第4條의 13 第1項)
畜產業을 除外한 重要產業(法 第4條의 8 第2項)

(2) 方　　法

法人事業者의 減免率, 控除率, 償却率의 50%로 하였다.

附加價値稅法

〔要　約〕

이번에 改正된 附加價値稅는 納稅者의 不便을 解消시키기 위해 一般課稅者의 豫定申告回數를 年 4回에서 2回로 줄이고 記帳能力이 不足한 小規模 零細商人이 大部分인 課稅特別者에 對하여는 豫定申告를 廢止하여 事業不振者의 경우等을 除外하고는 前期稅額의 1/2을 中間告知納付토록 하는 한편 新規事業者中 地域別·業種別·規模別 基準에 따라 特例課稅를 彈力的으로 運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輸出에 대한 稅制上 支援을 強化하기 위하여 早期還給을 每月 또는 2月마다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輸出物品賃加工用役等에 대하여 零稅率을 適用하는 等 其他 現行法令上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가. 豫定申告回數를 年 4回에서 年 2回로 줄임

나. 零稅率 適用對象 課稅標準의 申告懈怠의 경우에는 그 懈怠分의 100分의 1의 加算稅를 適用함.

다. 課稅特別者의 申告納付制度를 告知納付制度로 轉換함.

라. 輸出物品賃加工用役, 非居住者에게 供給되는 宿泊用役 및 外信記者클럽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에 대하여는 零稅率을 適用함.

마. 稅金計算書의 必要的 記載事項中 一部誤謬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記載事項에 의하여 去來事實이 確認될 때에는 正當하게 交付된 稅金計算書로 認定함.

바. 輸出等에 대하여 各 豫定申告 基準으로 早期還給하게 되어 있는 것을 每月 또는 每2月마다 還給하도록 함.

1. 供給時期

附加價値稅法에서 供給時期라 함은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 納稅義務가 發生되는 時期를 말한다.

이와 같은 供給時期에 대하여 現行規定에는 事業者가 事業場을 廢止할 때 및 保稅區域에서

財貨를 引取할 때의 供給時期等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改正令에서 이를 補完하고 있다.

가. 事業場廢業時 財貨나 用役 供給時期(令 第21條·第22條)

財貨나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가 그 事業場을 廢止하는 때는 廢業前에 供給한 財貨나 用役의 供給時期가 廢業日 이후에 到來하는 경우

(例 : 中間支給條件附, 完成度支給條件附等)에는 當該 事業場을 廢止하는 날을 供給時期로 規定하고 있다.

나. 保稅區域에서 引取하는 財貨의 供給時期(令 第21條)

附加價値稅法에서는 保稅區域을 別途로 認定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國內에서 保稅區域으로, 保稅區域內에서 國內로 財貨나 用役을 各各 供給하는 경우에도 어느 경우나 附加價値稅의 課稅去來에 該當되므로 稅金計算書의 交付 및 去來徵收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保稅區域內에서 國內로 財貨를 供給하는 때에는 總課稅標準에서 稅關長이 徵收하는 部分을 除外하고는 財貨를 供給하는 事業者가 去來徵收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該當財貨의 供給이 中間支給條件附 또는 完成度基準支給일 때는 稅關長이 徵收할 稅額을 알 수 없기 때문에(關稅는 當該財貨를 完成하여 保稅區域에서 引取하는데 課稅됨) 過多 또는 過少 徵收現象이 일어남으로 改正令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當該財貨의 供給時期를 輸入免許日로 規定하여 執行上의 不便을 除去하였다.

다. 其他 供給時期의 調整(令 第21條·第22條)

輸出免許를 받는 輸出財貨의 경우는 輸出免許日을 供給時期로 明文化하였으며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以外에 其他條件附의 경우를 補完하였다.

2. 零稅率範圍調整(令 第26條)

改正令에서는 輸出業者와 直接都給契約에 의하여 輸出財貨를 賃加工하는 輸出財貨 賃加工用役에 對하여 零稅率를 適用함으로써 零細事業者의 資金負擔을 덜어주고 있으며 外貨稼得率이 높은 觀光事業에 對하여 稅制上의 支援을 強化하기 위하여 外國人인 觀光客의 範圍를 擴大하여 宿泊用役의 境遇에는 非居住者는 모두 零稅率이 適用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其他 外信記者클럽이 供給하는 財貨나 用役에 對하여도 零稅率이 適用되도록 하고 있다.

3. 免稅範圍의 調整(令 第32條·第38條)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에서 텔레비전의 中繼放送用役을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放送用役에 包含시키므로써 山間僻地의 視聽者負擔을 輕減하고 漁村契, 畜産進興會, 人蔘耕作組合등을 政府業務代行團體에 包含시켜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도록 하고 있다.

4. 課稅標準

가. 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의 겸영(令 第48條)

現行規定에 의하면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을 겸영하는 事業者가 당해사업에 共通으로 使用되는 財貨를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경우에는 買入稅額 및 供給時 去來徵收하여야 하는 課稅標準을 同事業者의 免稅供給價額 및 課稅供給價額을 감안하여 區分하도록 規定하고 있다.(令 第48條 및 第63條 參照) 이와같은 區分計算은 執行上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改正令에서는 一定한 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區分計算을 排除하여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고 있다.

즉 買入稅額의 按分計算이 排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共通으로 使用되는 財貨를 供給받은 당해 課稅期間의 總供給價額中 免稅供給價額이 100分의 5未滿인 경우

(2) 當該 課稅期間中의 共通買入稅額이 2萬원 未滿인 경우

또한 共通으로 使用되는 財貨를 供給하는 경우에 供給價額 全額을 去來徵收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共通으로 使用되는 財貨를 供給하는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直前課稅期間의 總供給價額中 免稅供給價額이 100分의 5未滿인 경우

(2) 共通으로 使用되는 財貨의 供給價額이 20萬원 未滿인 경우

나. 不動產供給時 課稅標準(第 49條의 2)

事業者가 建物이나 아파트等을 供給하는 경우에 당해 不動產에서 差減하여야 할 免稅되는 土地의 價額은 供給契約日 現在 所得稅法 規定에 의한 當該 土地의 基準時價에 의하도록 規定함으로써 不動產供給時에 課稅標準計算을 分明히 하였다.

다. 自家供給時의 課稅標準(令 第50條)

2以上의 事業場이 있는 事業者가 販賣할 目的으로 한 事業場에서 다른 事業場으로 財貨를 搬出하는 경우에는 課稅去來로써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나 課稅標準에 대해서는 現行 規定上으로는 分明히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執行上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경우 한 事業場에서는 賣出稅額으로 計算되고 다른 事業場에서는 買入稅額으로 控除되므로 課稅標準을 어느 金額으로 하더라도 實益은 없으나 執行上基準을 定하기 위하여 改正令에서는 당해 財貨의 取得價額을 原則的인 課稅標準으로 하되 당해 取得價額에 一定額을 加算하는 경우에는 그 加算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特別消費稅 및 酒稅가 부과되는 財貨에 대하여는 당해 特別消費稅 및 酒稅와 課稅標準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特別消費稅 및 酒稅의 課稅標準에 방위세상당액을 合計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5. 稅金計算書(令 第54條)

가. 稅金計算書 交付特例(令 第54條)

固定去來處에 대한 月合計 稅金計算書를 당해 月의 末日字로 다음달 5日까지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月 2回로(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나누어서도 交付할 수 있도록 하고 交付時期도 10일로 늦추고 있다.

나. 不明資料 範圍의 완화(令 第60條)

附加價値稅 運用上 가장 중요한 部分중의 하나가 稅金計算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稅金計算書에 대하여는 그 交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法令上 여러가지의 制裁가 있으며 더욱이 必要的 記載事項의 記載漏落 및 誤記에 대하여는 交付한 者는 加算稅가 부과되고 交付받은 者에 대하여는 買入稅額이 不控除되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改正令에서 이를 다소 완화하여 交付하였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의 必要的 記載事項中 一部가 착오로 記載된 경우에도 당해 稅金計算書의 必要的 記載事項 또는 任意的 記載事項으로 보아 去來事實이 確認되는 때에는 必要的 記載事項中 一部가 잘못 記載되었다 하더라도 交付한 者에 대하여는 加算稅 適用을 排除하고 交付받은 者는 買入稅額이 控除되는 稅金計算書로 간주하고 있다.

6. 零稅率適用과 加算稅(令 第64條·第65條)

納稅義務者가 零稅率適用對象인 去來에 대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過少申告를 하였을 경우 10%의 課稅去來로 보아 10%의 稅率로 更正을 하느냐 零稅率을 適用하느냐 하는 問題는 附加價値稅 申告納付制度의 特殊性 즉 申告義務不履行에 대하여는 加算稅를 適用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零稅率適用對象去來에 대하여는 更正을 하여도 零稅率은 適用하되 申告義務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未達申告한 去來分의 1%상당액의 加算稅를 適用토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零稅率課稅標準을 申告만을 하고 添附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하였을 때 添附書類提出義務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하여 添附書類가 없는 零稅率課稅標準申告部分에 대하여는 申告가 없는 것으로 보아 加算稅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小包 郵便에 의한 輸出, 外國航行用役等에 대한 添附書類도 補完하였다.

7. 豫定申告回數의 縮小(法 第18條)

納稅者의 申告義務의 煩雜性을 덜어주기 위하여 現行 2個月마다 申告納付하게 되어었는 豫定申告를 3個月로 延長하였다. 그러므로 課稅期間은 從前과 같이 6個月이나 豫定申告는 從前 1課稅期間中 2個月마다 2回하여야 하나 79年부터는 3個月마다 申告하므로 1課稅期間中 1回의 豫定申告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8. 課稅特例者

가. 課稅特例範圍의 擴大

小賣業 大衆飮食店等의 零細事業者를 保護하고 納稅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課稅特例範圍를 現行 1,200萬원에서 2,400萬원으로(代理, 仲介·周旋, 委託賣買 및 都給의 境遇 300萬원에서 600萬원으로 擴大) 擴大하였다.

(1) 適用時期

이와 같은 擴大된 特例者의 適用은 1979年 第1期 課稅期間부터(1979年 1月 1日 以後 去來分부터) 適用된다.

(2) 課稅特例轉換 判定基準

① 繼續事業者

從前 一般課稅者였던 事業者가 1978年 第1期課稅期間과 第2期 第3豫定申告期間 및 第3豫定申告期間에 대한 旣確定된 課稅標準(更正分包含)에 第2期 確定申告한 課稅標準額의 合計額이 2,400萬원 未滿(代理 等 600萬원)인 境遇에는 1979年부터는 課稅特例適用을 받게 된다.

또한 1978年中 一部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更正으로 인하여 課稅標準이 決定된 境遇는 除外)에는 直前課稅期間의 課稅標準에 當該期 標準申告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6으로 나눈 金額에서 그 課稅標準이 없는 期間의 月數로 곱한 金額을 無申告한 豫定申告나 確定申告期間의 課稅標準으로 보아 2,400萬원 以下인지 여부를 判定하여야 한다.

② 新規開業者

1978年中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者로서 一般事業者의 適用을 받고 있는 境遇에는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課稅期間에 對한 課稅標準의 年內 換算한 金額이 2,400萬원 未滿인 때에는 1979年 1月 1日부터 特例適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課稅特例轉換通知

所管稅務署長은 課稅特例者로 變更된 事業者에게 그 變更에 關한 本項(事業者등록증갱신 특례적용사실등)을 施行日로부터 10日以內에 通知하여야 한다.

(4) 課稅特例抛棄

特例範圍의 擴大로 인하여 一般事業者 適用을 받지 못하게 되는 事業者中 商去來上 또는 輸出 等의 理由로 課稅特例를 抛棄하고자 하는 者는 特例轉換通知日로부터 10日(施行日로부터 20日)以內에 課稅特例抛棄申告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는 境遇에는 一般事業者適用을 繼續받을 수 있게 된다.

(5) 稅金計算書

課稅特例轉換者는 課稅特例轉換通知日의 다음날부터는 簡易稅金計算書를 交付하여야 하며 1979年 1月 1日부터 通知日까지 旣 交付한 稅金計算書는 正當하게 交付된 稅金計算으로 보아 交付받는 事業者가 一般課稅者인 境遇에는 買入稅額控除가 되며 特例者인 境遇는 稅金計算書 提出 控除를 받을 수 있다.

(6) 在庫品申告排除

一般課稅者가 課稅特例者로 轉換되는 境遇에는 轉換되는 現在日의 在庫品에 대하여는 旣 買入稅額控除를 받았으므로 그 部門에 대하여는 特例者로 轉換된 課稅期間內의 納付稅額에 加算하여 納付케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在庫納付稅額을 排除하여 零細事業者의 負擔을 輕減하였다.

(7) 直前期納付稅額의 計算

特例者의 境遇는 1979年부터는 豫定申告를 廢止하고 直前期納付稅額의 $\frac{1}{2}$을 政府告知制度로 轉換하였는데 이 境遇 課稅特例轉換者의 境遇의 直前期納付稅額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直前期納付稅額＝{供給價額＋附加價値稅額(賣出稅額)}×2%(3.5%)

나. 告知制로 轉換(令 第75條)

課稅特例者의 豫定申告는 現行 直前期納付稅額의 1/2씩 申告納付하게 되어 있으나 事實上 自動的으로 納付稅額이 決定되고 있으므로 申告納付에 따른 절차만 복잡하여 改正令에서는 政府告知制로 轉換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는 正常事業者인 課稅特例者의 豫定申告는 直前期納付稅額의 1/2씩 第1期分 豫定申告期間分은 4月 1日부터 4月 10日까지 第2期分 豫定申告期間分은 10月 1日부터 10月 10日까지 告知하도록 하고 있으며 事業不振者나 新規開業者인 課稅特例者에 대하여는 現行과 같이 實績에 따라 申告納付하게 함으로써 一律的 告知로 因한 負擔의 衡平을 기하고 있다.

다. 新規開業者의 特例適用排除(令 第74條)

新規開業者가 課稅特例適用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現行法上 特例適用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制度的 未備點을 惡用하여 위장휴폐업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改正法에서는 客觀的으로 明白한 基準 즉 地域別, 業種別, 規模別로 보아 國稅廳長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는 者가 新規開業時 特別適用申告를 하더라도 이를 排除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하고 있다.

9. 早期還給期間의 短縮(令 第73條)

改正法에 의하여 豫定申告期間이 從前 2個月에서 3個月로 延長됨에 따라 輸出 및 設備投資에 대한 早期還給도 自動的으로 3個月로 늦어짐에 따라 輸出業體 및 企業의 設備投資에 따른 資金負擔이 加重될 것으로 豫想되어 이의 早期還給을 納稅者의 選擇에 따라 每月·每2月 또는 各 豫定申告期間마다 早期還給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早期還給을 받을 事業者는 早期還給을 받고자 하는 期間의 買入賣出 內容을 政府에 申告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零稅率 添附書類 및 交付하였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도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特別消費稅法

〔要　約〕

國民所得의 向上에 따른 消費構造의 變化에 따라 奢侈性 및 高價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를 抑制하고 國民의 健全한 消費生活을 誘導하기 위하여 一部 物品을 課稅對象으로 追加하는 한편 庶民 用品에 대한 稅負擔을 輕減토록 하고, 各種 政府의 施策을 支援하였다.

가. 課稅對象과 稅率을 調整함.
나. 現行 課稅物品과 새로이 課稅하는 物品이 特殊한 用途에 使用되는 것은 免稅토록 함.
다. 賃加工物品 等에 대한 課稅標準 計算方法을 明瞭히 함.

1. 課稅對象과 稅率調整

가. 課稅對象 追加品目(法 第1條第2項, 令 第1條)

品　　目	稅　率
1. 電氣利用器具	40%
眞空掃除機, 冷水機, 製氷機, 커피粉碎機, 아이스크림製造機, 食器洗滌機, 얼음粉碎機.	
2. 모터보트·요트와 同 關聯製品	40%
모터보트(船長 15m이하의 것)와 요트·船體·船外內燃機關	
雪上스쿠터와 水上스키 用品	
3. 피아노 그랜드 型의 것	20%
其他의 것(電子오르간을 포함)	10%
4. 高級時計(1個 15萬원 이상의 것)	30%

品　　目	稅　率
5. TV映像·音響記錄機와 同 關聯製品 비디오테이프, TV카메라	40%
6. 映寫機와 撮影機(高級寫眞機 包含) 映寫機와 撮影機(16㎜ 이하의 것) 高級寫眞機(1個 15萬원 이상의 것)	40%
7. 캠핑용自動車(캠핑용트레일러 包含)	40%

새로이 課稅物品으로 追加한 物品은 現在 特別消費稅가 課稅되고 있는 高價 또는 奢侈性 耐久 消費財와 同一한 性質의 物品이거나 中間所得層 이상이 購入하여 使用할 수 있는 物品을 選定하여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租稅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토록 하였다.

나. 稅率調整品目(法 第1條第2項, 令 第1條)

品　　目	改正前	改 正
1. 天然色 T·V	30%	40%
2. 6氣筒乘用自動車(2,000cc이하의 것)	20%	30%
3. 永菓類와 醱酵乳 및 이와 유사한 酸性食料	20%	10%
4. 滋養強壯品(錠劑의 것은 除外)	25%	20%

高價의 奢侈性 物品에 대하여는 稅率을 引上하였고 乳製品에 대하여는 酪農振興施策上 稅率을 引下하였으며, 드링크류인 滋養強壯品은 一般 消費品으로서 淸涼飮料와 衡平을 維持하기 위하여 稅率을 引下하였다.

다. 課稅對象範圍調整品目(法 第1條第2項, 令 第1條)

改正前課稅品目	改　正	
	新規課稅品目	非課稅品目
1. 家　具 1個 10萬원이상	1個 20萬원 이상	工藝創作品

改正前課稅品目	改正	
	新規課稅品目	非課稅品目
2. 가스移用器具	—	(削 除)
3. 特殊化粧品 마스카라外 22種	산탠, 연향, 헤어트리트먼트, 세트로션, 스멜링솔트, 페이스팩	웨이브劑
4. 空氣調節機 팬코일유니트, 에어핸드링유니트	緩房溫風機	팬코일유니트
5. 冷藏器 電氣·가스油類式의 것 을 말하며 冷凍庫를 包含		特殊用途의 것 (혈액저장용, 恒溫裝置用, 쇼케이스, 工業用)
6. 電氣音響器機 蓄音機·錄音機	뮤지컬 앰플리파이어 同 스피커시스템·주크박스	—
7. 電熱移用器具 電氣솥外 14種	—	電氣솥, 電氣保溫밥통, 헤어드라이어, 暖房溫風機
8. 氷菓類 乳脂肪分을 含有한 것.	牛乳 및 乳製品(代用粉乳 包含)을 含有한 것.	—
9. 淸涼飮料 사이다, 天然사이다 等	—	天然藥水
10. 嗜好飮料 커피시럽, 合成飮料, 類似滋養強壯品	—	專賣品

課稅範圍를 調整한 品目은 에너지節約·流通課程의 近代化 酪農振興施策의 支援과 庶民用品 또는 特殊目的으로 製作된 品目을 課稅對象에서 除外하고, 기타 課稅對象의 範圍를 分明히 하기 위하여 調整하였다.

2. 免稅對象의 調整(法 第18條第1項, 令 第25條第1項)

現行 課稅物品과 새로이 課稅하는 物品中에 重化學工業支援을 위한 石油類 또는 國防用·教育用 物品等에 대하여 免稅토록 하였다.

가. 現行 課稅物品에 대한 免稅

改 正 前	改 正	備 考
1. 醫療用·의약품·肥料·農藥製造用 石油類	石油化學나프타 分解工業用의 것을 追加	重化學工業支援
2. 外國貿易船, 遠洋漁業船舶에 使用하는 食飮料와 消耗品	外國航行 航空機用의 것을 追加	他稅法과 衡平維持
3. (新 設)	化工藥品 製造用 砂糖을 免稅	工業用原料物品
4. (新 設)	外信記者클럽이 使用하는 淸涼飮料·嗜好飮料를 免稅	外交政策上

나 新規課稅物品에 대한 免稅

課 稅 物 品	免 稅 用 途
1. 모터보트·요트와 同 關聯製品(雪上스쿠터와 水上스키用品 包含)	國防用 또는 警察用의 것
2. 피아노(電子오르간 包含)	學校教育用 또는 宗教儀式用의 것
3. 映寫機와 撮影機(高級 寫眞機 包含)	放送·新聞·通信用과 學校教育用의 것

3. 課稅標準의 明瞭化(令 第8條第12號, 令 第9條第1項 但書)

賃加工을 委託한 物品이나 直賣場을 통하여 販賣하는 物品에 대한 課稅標準을 實際로 販賣하는 價格과 一致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受託加工한 物品	原價計算 또는 受託者의 販賣價格	受託物品을 委託者에게 引渡한 날에 委託者가 實地로 販賣하는 價格
2. 直賣場에 搬出한 物品	直賣場에서 販賣한 物品의 平均單價를 製造場에서 搬出한 數量에 適用하여 算定	…… …… …… …… 但, 直賣場에서 實際로 販賣한 價格과 다를 경우에는 每6月마다 精算하여 申告토록 함.

證券去來稅法

〔要　約〕

資本市場은 그간 政府의 育成施策에 힘입어 그 規模面에서 77年 約定金額 13,752億원으로서 證券去來稅가 廢止된 63年 對比 53倍에 달하여 刮目할 만한 成長을 하였으며 收益性面에서도 貯蓄性預金이나 私債利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應能負擔의 原則이라는 租稅原則에 따라 證券去來稅를 新設하였다.

가. 課稅對象은 株券 또는 持分의 有償讓渡로 함.
나. 納稅義務者는 對替決濟會社, 證券會社 또는 讓渡者로 함.
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券等을 讓渡하는 境遇, 企業公開·消費貸借·證券投資信託等의 境遇의 株券讓渡의 境遇를 非課稅로 함.
라. 課稅標準은 讓渡價額으로 함.
마. 稅率은 1,000分의 5로 하되, 證券去來所에서 去來되는 額面價以上, 發行價以下 銀行株券은 1,000分의 0으로 하고 其他金融株券은 1,000分의 3으로 함.
바. 證券去來稅는 每月分을 다음달 10日까지 申告納付하도록 함.
사. 納付不誠實의 境遇에는 未納稅額의 100의 10의 加算稅를 適用함.

1. 課稅對象

商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株式會社,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인 法人의 株券 및 持分(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을 契約上·法律上 原因에 의하여 有償으로 所有權이 移轉되는 경우(이하"讓渡"라 한다.) 證券去來稅가 賦課되며 이 法에서 株券의 發行前株式, 株式의 引受權, 新株引受權과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發行하는 出資證券은 株券으로 보아 證券去來稅를 課稅한다.

2. 納稅義務者

證券去來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株券등을 讓渡하는 去來形態에 따라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去 來 의 形 態	納稅義務者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가 締結되어 當該 株券 및 代金을 對替決濟會社에서 對替決濟하는 경우	當該 對替決濟會社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를 하지 아니하고 證券會社가 自己計算下에 株券等을 賣買하거나, 他人의 計算下에 委託賣買, 賣買의 仲介, 代理를 하는 경우	當該證券會社
證券去來所나 證券會社를 통하지 아니하고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當該讓渡者

3. 納稅地

證券去來稅의 納稅地는 納稅義務者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納稅義務者	納 稅 地
對替決濟會社	對替決濟業務를 行하는 事業場 所在地
證券會社	株券등의 賣買·委託賣買·賣買의 仲介代理를 行하는 當該 事業場
讓渡者	法人의 경우—그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 所在地 個人의 경우—住所地.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 居所地

4. 讓渡의 時期

株券등의 讓渡時期는 그 去來形態에 따라 다음과 같다.

去 來 形 態	讓渡時期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가 締結된 株券의 경우	賣買代金이 決濟되는 때

去 來 形 態	讓 渡 時 期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를 하지 아니하고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證券會社가 自己計算下에 株券등을 賣買하거나, 他人의 計算에 의한 委託賣買, 賣買의 仲介·代理를 하는 경우	그 代金의 全部를 決濟하거나, 받을 때
上記 이외에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가) 그 代金의 全部를 받고 株券등을 引渡하는 경우	그 代金의 全部를 받는 때
나) 株券등을 引渡後 그 代金의 全部를 받는 경우	株券등을 引渡하는 때
다) 權利가 移轉된 後 그 代金의 全部를 받거나 또는 株券등을 引渡하는 경우	權利가 移轉되는 때

5. 非課稅讓渡

다음에 揭記하는 株券등의 讓渡에 대하여는 證券去來稅가 賦課되지 아니한다.

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나.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을 賣出하는 경우(請約된 株券 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株式引受機構가 引受하는 경우를 包含한다.

다.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을 募集 또는 賣出함에 있어서 請約된 株券總數가 募集 또는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株式引受機構가 引受한 후 6개월내에 讓渡하는 경우

라. 株券을 目的物로 하는 消費貸借의 경우

마. 證券投資信託에 있어서 當該 委託會社가 信託財產에 株券을 編入 또는 引出하는 경우

바. 證券投資信託에 있어서 當該 委託會社가 信託財產에 속하는 株券을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사. 證券投資信託業法의 規定에 의한 委託會社(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第3條第2項第2號

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營爲하는 委託會社인 綜合金融會社는 除外한다.)가 所有株券을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아 證券貯蓄에 있어서 證券會社가 證券貯蓄加入者에게 株券을 讓渡하는 경우

자. 韓國電力株式會社의 株券을 政府에 讓渡하는 경우

6. 稅　　率

株券등의 讓渡에 대한 證券去來稅의 稅率은 5/1000로 하고,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가 締結되는 株券으로서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다음의 株券의 讓渡에 대하여는 輕減稅率을 適用한다.

種　　目　　別	稅　　率	備　　考
讓渡價額이 額面價額 以下의 株券	0/1000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 또는 賣出한 株券으로서 讓渡價額이 募集 또는 賣出한 價額 以下인 株券	0/1000	當該株券이 上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經過前에 配當이 되는 경우 配當基準日의 다음날부터 5/1000의 稅率을 適用함.
銀行法의 規定에 의한 銀行의 株券	0/1000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 또는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綜合金融會社의 株券	3/1000	

7. 去來徵收

對替決濟會社와 證券會社인 納稅義務者에게 이 條項이 適用되는 것으로서

가. 對替決濟會社

對替決濟會社는 株券을 讓渡한 證券會社別로 讓渡株券의 稅率別로 區分한 讓渡總額에서 當該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證券去來稅를 去來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課稅讓渡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別紙 第1號 書式에 그 內容을 記入하여 證券會社가 對替決濟會社에 提出하는 경우 當該 讓渡金額은 去來徵收 對象에서 除外된다.

나. 證券會社

證券去來所에서 賣買去來가 締結되어 對替決濟되는 株券과 當該 證券會社 自己計算下에 讓渡하는 株券등을 除外하고 他人의 計算에 의한 委託賣買·賣買의 仲介·代理에 의하여 讓渡된 株券등의 경우에는 當該 讓渡者로부터 株券등의 讓渡價額에 $\frac{5}{100}$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證券去來稅로 去來徵收하여야 한다.

8. 課稅標準의 計算 및 申告와 納付

가. 申告와 納付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每月 初日부터 末日까지 讓渡한 株券등의 讓渡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다음달 10日까지 對替決濟會社 및 證券會社인 納稅義務者는 別紙 第2號 甲書式, 讓渡者인 納稅義務者는 別紙 第2號 乙書式에 課稅標準과 그 稅額 및 其他 事項을 記入하여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나. 廢業時 申告와 納付

對替決濟會社 및 證券會社인 納稅義務者가 事業場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廢止한 날로부터 10日內에 當該月의 初日부터 廢止한 날까지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9. 更　　正

納稅義務者가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가 없거나 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하고 納付할 稅額을 徵收한다. 이경우 課稅標準은 當該 納稅義務者가 備置하고 있는 帳簿 또는 其他의 證憑書類에 의하여 實地讓渡價額으로 하되, 帳簿 또는 其他의 證憑書類가 없거나, 重要한 部分이 未備 또는 虛僞이거나, 帳簿 또는 其他의 證憑書類의 內容이 株券등의 去來量에 비추어 信憑性이 없는 경우에는 實地調査에 의하여 確認된 株券등의 讓渡數量에 다음의 金額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가.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株券의 경우에는 讓渡한 날에 證券去來所에서 去來된 당해 株券의 平均時價에 의하되, 당해 去來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에 있어서의 당해 株券의 평균시가로 한다.

나. 第1號 이외의 株券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계산한 價額으로 한다.

10. 隨時賦課

政府는 納稅義務者가 休業 또는 廢業을 하거나 其他 證券去來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法定申告納付日前이라도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하고 徵收한다.

11. 加算稅

納稅義務者가 證券去來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한 稅額이 納付하여야 할 稅額에 未達하는 때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稅로서 徵收 또는 納付한다.

12. 帳簿의 備置·記帳

證券去來所의 納稅義務者中 法人은 讓渡年月日·株券등의 種類·株式數·1株當價額·讓渡金額·證券去來稅·課稅와 非課稅 讓渡區分등을 記載할 수 있는 帳簿(別紙 第3號 書式)를 備置하고 當該 納稅義務者가 株券등의 讓渡에 대한 去來實績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別紙 第3號 書式의 帳簿에 의하지 아니하고 上記 內容의 全部가 記載된 帳簿를 備置記帳한 경우에는 帳簿가 備置記帳된 것으로 본다.

酒 稅 法

〔要 約〕

本法인 酒稅法은 이번 稅法改正에서 除外되었고 同法 施行令中 改正에서 濁·藥酒 擬制販賣免許業者는 製造業者로부터 酒類를 直接 購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麥酒의 缺減量을 現實化하고, 外信記者클럽에 納品하는 酒類에 대하여는 酒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가. 濁·藥酒 擬制販賣免許業者의 直去來 許容함.

擬制販賣免許業者中 濁·藥酒 販賣業者의 경우는 製造業者로부터 酒類를 直接 購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第15條)

나. 麥酒缺減量을 現實化함.

麥酒의 製造過程中 발생되는 缺減量許容限度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다.(令 第27條1號)

酒 名	改 正 前	改 正	備 考
麥 酒	10,000분의 3 이내	1,000분의 35 이내	缺 減 量 現 實 化

다. 外信記者 클럽에 대한 酒稅를 免除함.

文化公報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外信記者 클럽에 納品하는 酒類에 대하여는 酒稅를 免除토록 하였다.(令 第36條)

國 稅 基 本 法

〔要　約〕

證券去來稅法의 制定에 따라 證券去來稅의 課稅標準修正申告期限을 추가하여 納稅義務者의 편의를 위해 異議申請을 地方國稅廳長에게도 提起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監査院의 更正要求에 의한 처분도 國稅審査請求對象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가. 證券去來稅新設에 따른 調整

○ 納稅義務成立時期와 課稅標準修正申告 期限을 정함.

나. 行政救濟制度의 改善

○ 地方國稅廳長에게도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

○ 監査院 更正要求에 의한 처분도 審査請求對象에 포함되도록 함.

다. 國稅審判官의 資格緩和

○ 關稅從事者도 포함되도록 함.

1. 證券去來稅新設에 따른 調整(法 第2條・第21條・第45條)

國稅의 範圍에 證券去來稅가 포함되도록 하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를 賣買去來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한편,

課稅標準修正申告期限을 다른 間接諸稅와 같이 法定申告期限 經過後 10일내로 하였다.

2. 行政救濟制度의 改善

가. 從前에는 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處分(積極的處分) 또는 하였어야 할 處分(消極的處分)

에 대하여 稅務署長에게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地方國稅廳長에게도 선택적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法 第66條)

對象處分	對象機關	
	改正前	改正
稅務署長의 處分	稅務署長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
地方國稅廳長의 處分	地方國稅廳長	地方國稅廳長

나. 國稅審査請求對象擴大

從前에는 監査院法에 의한 是正要求에 의한 처분은 國稅基本法에 의한 審査請求對象이 되니 아니 하였으나 納稅者의 行政救濟의 편의를 위하여 國稅基本法에 의한 審査請求(異議申請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第55條)

3. 國稅審判官의 資格緩和

關稅에 대한 不服도 國稅審判所에서 統合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關稅業務從事者도 國稅審判官이 될 수 있도록 資格要件을 補完하였다.(法 第67條)

가. 關稅業務에 3甲以上으로 3年以上 從事한 者

나. 關稅士의 職에 6年以上 재직한 者

稅 務 士 法

[要 約]

自進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에 따라 稅務士의 誠實한 業務遂行을 유도함으로써 納稅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稅務士에 대한 監督을 強化하고 그 資質을 향상시키고자 職務敎育을 義務化하는 한편, 稅務士가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게 함으로써 稅政秩序의 확립과 公信力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職務範圍의 調整

○ 記帳代理의 明文化

나. 缺格事由의 強化

○ 缺格期間의 延長

다. 登錄取消事由의 擴大

○ 他法에 의한 登錄取消

라. 敎育履修義務

마. 合同事務所

○ 國稅廳長에 設置申告를 함.

○ 合同事務所 名稱 使用을 義務化함.

○ 民法의 組合規定을 準用함.

○ 法人은 商法中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함.

바. 權限委任

○ 國稅廳長에 委任 : 事務所 移轉 休廢業 報酬基準, 兼任承認

아. 適用範圍

○ 公認會計士, 辯護士에 대한 特例는 稅務士會加入, 敎育履修義務 排除

사. 試驗科目中 稅法의 細分化

○ 稅法 1部 : 通則法, 關稅法.

○ 稅法 2部 : 直稅法.

1. 職務範圍의 調整

稅務士의 職務範圍中 申告等을 類型化하여 구분함.(法 第2條)

가. 申　　告 : 申告를 위한 記帳代理業務 포함

나. 申　　請 : 稅務士의 各種申請

다. 請　　求 : 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 포함

2. 缺格事由의 強化

다음 各號의 경우 缺格期間을 從前"2年"에서 "3年"으로 延長하였다.(法 第4條)

가. 彈劾, 罷免, 除名된 경우

나. 禁錮, 罰金, 通知處分의 경우

3. 登錄의 取消

登錄取消事由에 다음 事由를 추가하였다.(法 第7條)

가. 廢業申告를 한 때

나. 公認會計士法이나 辯護士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4. 敎育履修義務(法 第12條의 2)

빈번한 稅法改正에 따라 稅務士의 資格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業務遂行에 필요한 敎育을 履修하도록 하였다.

5. 合同事務所(法 第13條의 2)

가. 設置申告(令 第32條의 3)

稅務士의 職務를 組織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3人以上으로 구성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設置時에는 合同事務所規約을 첨부하여 國稅廳長에게 申告하도록 하였다.

나. 商　　號(令 第32條의 2)

合同事務所를 設置하는 者는 그 商號中에 "合同事務所"의 名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施設基準(令 第32條의 4)

合同事務所, 施設基準, 其他 設備에 관하여는 國稅廳長이 정하도록 하였다.

라. 法人設立(法 第13條의 2 第3項 내지 第5項)

合同事務所를 法人으로도 設立할 수 있는 規定을 두고 있는바, 法人에 대한 劃一的인 監督 및 規制의 필요상 商法中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과 稅務士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였다.

6. 權限委任

稅務代理業務를 효율적으로 執行할 수 있도록 다음의 權限을 國稅廳長에게 위임하였다.(令 第34條의 2)

가. 稅務士의 開·休·廢業 및 事務所의 設置 移轉의 申告에 관한 事項

나. 稅務士의 報酬基準에 관한 事項

다. 稅務士의 兼業承認에 관한 事項

7. 適用範圍(法 第20條의 2)

公認會計士 및 辯護士에 대하여는 稅務士會의 加入과 敎育履修業務를 배제하는 한편, 登錄等 여타 모든 規定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8. 試驗科目의 一部調整(別表)

學科試驗科目中 稅法을 稅法 1部와 稅法 2部로 區分하여 配點比重을 높이는 한편, 實務試驗科目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科　目	備　考
稅法 1部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稅法 2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방위세법, 자산재평가법.

關　稅　法

[要　約]

輸入自由化에 부응하고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하며 생필품의 物價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關稅率을 조정함과 동시에 輸出入 規模의 擴大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通關體制를 확립하고 關稅行政의 國際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現行 關稅法을 改正한 것이다.

關稅法改正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關稅制度>

가. 特例稅率制度의 補完

○ 簡易稅率適用對象 擴大함

○ 合議稅率適用制度 新設함

나. 評價制度의 改善

○ 價格申告制度 新設함

○ 課稅價格決定方法 改善함

다. 彈力關稅制度의 補完

○ 不當廉賣防止關稅·相計關稅制度 補完함

○ 物價平衡關稅制度 新設함

○ 關稅割當制度 補完함

라. 賦課·徵收制度의 改善

○ 申告納稅制度 採擇함

○ 包括擔保制度 新設함

마. 關稅減免制度의 改善

바. 行政救濟制度의 強化

○ 直接訴願提起 許容함

○ 關稅審判制度 認定함

사. 國際關稅協力「章」新設

아. 保稅制度의 補完

○ 解體, 切斷등의 作業許容함

○ 物品藏置期間 延長함

○ 保稅建設場域外作業 許容함

자. 通關制度의 改善

○ 申告人 制限 撤廢함

○ 通關規制法令 整備함

○ 指定稅關通關管理制度 新設함

<關稅率>

가. 關稅率의 水準을 전반적으로 引下하여 輸入自由化에 부응하고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함

나. 新「CCCN」制度를 채택하여 關稅制度의 國際化와 標準化를 기함

1. 關稅制度

가. 特例稅率制度

(1) 簡易稅率 適用對象 擴大(法 第8條)

모든 輸入物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關稅·防衛稅·內國消費稅등을 각각 賦課·徵收하도록 하고 있으나 輸入物品의 種類·特性에 따라서는 稅額이 과소할 뿐만 아니라 각기 개별 課稅함으로써 稅關業務의 번잡을 초래하고 通關의 遲延을 야기할 뿐 實益이 적음으로 이러한 物品에 대하여는 각개의 稅率을 합산하여 單一稅率로 賦課·徵收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稅率을 簡易稅率이라 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簡易稅率 適用對象物品을 携帶品과 郵便物에 한정하였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別送品·託送品과 海外船舶修理物品을 추가하여 別表 簡易稅率表에서 정한 稅率을 適用하

도록 하였다.

(2) 合議稅率 制度 新設(法 第8條의 2)

一括하여 輸入 申告된 物品으로서 物品別 稅率이 相異하고 그 物品別로 課稅價格이 분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貨主의 申請에 의하여 그 稅率中 가장 높은 稅率을 適用받을 수 있는 새로운 制度를 마련하였다.

이는 輸入去來 形態의 변화에 따라 物品別로 課稅價格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物品의 通關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評價制度

(1) 價格申告制度 新設(法 第9條의 2)

價格申告는 關稅의 徵收方式을 종래의 稅關長이 賦課·徵收하는 方式에서 貨主가 課稅標準·稅率·稅額등을 申告하여 納付하게 하는 申告納稅方式으로 轉換함에 따라 貨主가 申告한 課稅價格에 대한 算出基礎를 申告하게 한 것으로 貨主가 輸入申告를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設問式의 價格申告書의 해당란에 표시하여 稅關長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① 去來價格 및 支拂條件
② 당해 去來가 特殊契約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內容
③ 당해 去來當事者間에 特殊關係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內容
④ 당해 物品의 送品狀등의 價格이 特殊契約 또는 特殊關係에 기인한 價格인지의 여부 및 그 內容
⑤ 당해 申告價格에 대하여 送品狀등의 價格 이외에 課稅對象이 되는 金額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內容

(2) 課稅價格 決定 方法 改善(法 第9條의 3)

貨主의 申告價格이 委託販賣·割賦販賣등의 特殊契約에 의한 거래이거나 本支店·代理店등의 特殊關係者間의 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告價格을 課稅價格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래 申告價格을 課稅價格으로 인정하거나 불인정하는 具體的 基準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補完하여 申告價格의 인정·불인정 基準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通關의 遲延과

納稅者와의 마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CCC評價協約과 일치되도록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다. 彈力關稅制度

(1) 不當廉賣防止關稅·相計關稅制度 補完(法 第10條·第13條)

종전에는 不當廉賣防止關稅와 相計關稅는 不當廉賣 또는 補助金·奬勵金을 지급받은 物品이 輸入됨으로서 國內產業이 沮害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利害關係者의 청구에 의하여 事實調査를 하고 調査結果 不當廉賣등의 事實이 판명된 때에는 이 制度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改正 關稅法에서는 종래의 發動要件外에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國內產業의 확립을 방해하는 경우를 追加하여 發動要件을 強化하였고, 또한 不當廉賣 또는 補助金·奬勵金의 지급사실에 대한 調査를 利害關係者의 청구에 의한 경우외에 政府도 直接 事實 調査를 할 수 있게 하였다.(法 第10條①·法 第13條①)

그리고 종전에는 단순히 不當廉賣 또는 補助金·奬勵金을 지급받은 事實이 판명된 때에는 不當廉賣防止關稅 또는 相計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만 規定하고 있을 뿐 그 節次規定이 미비하였음으로 이러한 節次規定의 미비점을 보강하였다.

(2) 物價平衡關稅制度 新設(法 第15條)

國內產業保護 및 物價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制限的 關稅授權制度를 보완하여 새로이 物價平衡關稅制度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區 分	發 動 要 件	發 動 範 圍
差額關稅(法 第15條①)	基準價格>CIF價格	差額徵收
滑尺關稅(法 第15條②)	〃 < 〃	差額非課稅
季節關稅(法 第15條③)	季節價格變動	± 50%

(3) 關稅割當制度 補完(法 第16條)

종전에는 一定 수량까지 輸入되는 分에 대하여 基本關稅率을 適用하고 일정 수량을 超過하는 分에 대하여는 基本關稅率의 100분의 50을 割增賦課하여 왔으나, 改正關稅法에서는 현행 關稅割當制度를 보완하여 國內에서의 物資需給上 부족한 물량을 適期에 導入해 오는 경우에는

基本關稅率의 100분의 50의 範圍안에서 關稅上 支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라. 賦課·徵收制度

(1) 申告納稅制度 採擇(法 第17條)

종래에는 輸入物品에 대하여 稅關長이 關稅를 賦課·徵收하였으나, 改正關稅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輸入物品에 대하여 納稅 義務者가 輸入申告를 할 때에 課稅標準·稅率 및 納付稅額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하였다. 다만 申告納稅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物品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稅關長이 賦課·徵收하도록 하였는데 그 對象物品은 다음과 같다.

① 貿易去來法 施行令 第46條 및 第47條에 규정하는 수입의 특례에 해당하는 物品

② 關稅法 第10條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의 적용을 받는 物品

③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關稅를 賦課·徵收하는 物品

④ 其他 納稅申告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關稅廳長이 지정하는 物品

또한 納稅義務者가 納稅申告한 稅額에 대한 정정은 修正申告와 更正의 2가지 方法을 許容하고 있다.

修正申告는 納稅義務者가 納稅申告한 稅額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申告事項을 修正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關稅를 納付하기전에 稅關長에게 修正申告書를 제출하여 申告稅額을 修正할 수 있도록 하였고, 更正은 納稅義務者가 納稅申告한 稅額이 納付하여야 할 稅額과 다른 때에는 稅關長이 關稅徵收의 消滅時效 期間內에 申告稅額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納稅義務者에게 更正請求書를 交付하도록 하였다.

(2) 包括擔保制度 新設(法 第21條)

종래에 없던 綜合擔保制度를 채택하여 納稅義務者가 계속하여 擔保를 提供하여야 할 事由가 있을 때에는 一定期間 提供하여야 할 擔保를 일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래 擔保提供事由가 있을 때마다 件別로 제공함에 따른 貨主의 불편과 稅關業務의 번잡을 제거하여 通關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關稅減免制度

重要產業 減免에 관한 종전의 規定을 重要產業減稅, 資源開發產業減免稅 및 防衛產業用品減免稅로 機能別로 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關稅上의 지원을 각각 달리 하였으며, 기타 關稅減免에 관한 종전의 規定을 보완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重要產業의 機能別 區分支援

	資源開發產業	防衛產業	重要產業
業種	農業·水產業·鑛業·發電業(4)	防衛產業(1)	14個中殘餘(9)
對象物品	施設機械類·基礎設備品	左同	施設機械類(化學工業·造船業 例外)
支援形態	減免稅	減免稅	減稅

(2) 減免規定의 補完

① 發·送電設備 國內製作支援 — 당해 業種 아닌 者의 製作供給
② 防衛產業製品 製造用 試製品 開發用物品 減免稅
③ 製造用 原材料 減免對象追加 — 農藥
④ 特定用途 物品 減免擴大 — 公害防止 農村住宅改良·干拓地 開發·身體障碍者用
⑤ 再輸出期間 經過時 加算稅 徵收
⑥ 政府委託代行輸入 軍需品 免稅

바. 行政救濟制度 強化(法 第38條·第43條의 6)

關稅에 관한 稅關長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종전에는 異議申請을 거쳐 訴願을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改正 關稅法에서는 異議申請없이 直接訴願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申請人이 원할 때에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異議申請이 處分廳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므로 行政救濟制度로서는 불완전하므로 신속한 權利救濟를 위하여 直接 關稅廳長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納稅者의 權利救濟의 強化를 기하고 內國稅의 權利救濟手段과의 均衡維持를 위하여 關稅에 관하여도 審判制度를 인정하여 關稅審判所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國際關稅 協力強化

國家間의 商品移動을 對象으로 하는 關稅行政은 國際貿易의 擴大에 따라 그 主要性이 漸高되고 잇다. 특히 최근 貿易環境이 각국의 保護主義 強化와 輸出增大 政策으로 自國의 實利를 추구하는 치열한 競爭을 의식해야 됨에 따라 關稅政策의 國際化가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環境을 적기에 대응해 가며 國家間의 相互利益 增進과 國際通商交易의 活路를 開拓할 수 있도록 改正 關稅法에서 새로이 國際關稅協力章을 新設하였다.

아. 保稅制度 補完

(1) 解體·切斷등의 作業許容(法 第69條의 2)

종래에는 保稅區域에서 할 수 있는 作業은 現狀維持 또는 物品의 性質을 변질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補修作業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改正 關稅法에서는 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許可를 받아 物品의 原型을 變更하거나 解體·切斷등의 作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物品 藏置期間 延長(法 第74條·第91條)

종래에는 指定保稅區域과 保稅藏置場의 物品 藏置期間은 그 物品搬入日로부터 2月로 하고 있어 稅關實務上에 있어 藏置期間을 경과한 物品을 公賣하기 위하여 滯貨目錄作成, 滯貨 通告 및 公賣公告를 거치는 동안 通關搬出되는 事例가 많아 稅關業務의 번잡만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保稅區域에 物品을 搬入한 날로부터 30日內에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稅를 賦課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滯貨防止 및 通關促求를 加算稅에 의하여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貨主의 資金負擔을 輕減하고 市場動向에 따라 輸入通關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의 2月에서 4月로 연장하였다.

(3) 保稅建設場 域外作業 許容(法 第116條)

종전에는 保稅工場의 경우에만 保稅工場外 作業을 許容하고 保稅建設場에 있어서는 保稅建設場外 作業을 許容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改正 關稅法에서는 保稅建設場의 경우에도 그 域外作業을 허용하여 產業施設의 國產化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通關制度의 改善

(1) 申告人制限撤廢(法 第137條의 3·第158條)

輸出·輸入·返送의 申告人은 종래에는 關稅士에 한정하였으나 改正關稅法에서는 종래의 賦課·徵收方式에서 申告納稅方式으로 制度를 轉換함에 따라 輸出·輸入·返送의 申告를 貨主·關稅士 또는 通關法人의 명의로 하도록 하여 貨主의 直接申告를 許容하였고

아울러 運送·保管·荷役業을 영위하는 法人도 그 受託받은 물품에 대하여 通關業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輸出入 貨物의 통관절차를 關稅士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運送·保管·荷役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通關業까지 포함하여 일괄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貨主는 運送會社·荷役會社·倉庫業者·通關業者등 여러 業體를 상대로 依賴·確認·手數料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貨主의 불편과 화물의 원활한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므로 一貫作業이 가능한 法人體에게 通關業을 許容한 것이다.

(2) 通關規制法令 整備(法 第145條)

輸出·輸入·返送에 관하여 許可·承認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物品에 대하여 종래에는 稅關長에게 그 許可·承認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證明하도록 하여 通關時 이를 稅關公務員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現在 32個나 되는 通關規制法令이 난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法令의 改正에 따라 規制內容이 수시 변동되어 個別法令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稅關公務員의 專門知識 결여로 業務遂行에 많은 곤란이 있었으므로 改正 關稅法에서 通關時 規制法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規制對象法令과 規制方法을 통합 단일화하여 大統領令으로 공시하여 規制해야 할 事項을 명확히하였다.

(3) 指定稅關 通關管理制度 新設(法 第149條의 2)

종래에 없던 制度로서 關稅廳長은 通關의 迅速과 稅關業務의 능률적수행을 위하여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企業別로 稅關을 지정하여 輸出入業體로 하여금 登錄하게 하고 당해 業體의 성실성에 따라 課稅價格 評價의 省略, 物品 檢査省略등에 의한 간이한 方法으로 通關할 수 있도록 새로운 制度를 마련하였다.

이는 종전의 通關管理制度가 物品別 個別管理方法에 의함으로서 業體別로 通關狀況을 종합적으로 管理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고 企業의 성실성 여부에 불문하고 劃一的 節次를 행하

게 함으로써 通關遲延을 야기하고 있어 通關管理를 종전의 物品別·個別管理方式에서 業體에 대한 指定稅關 綜合管理方式으로 轉換하여 窓口에서의 對物管理를 지양하고 事後에 企業에 대한 綜合管理를 하도록 하여 輸入規模의 증대에 부응하여 迅速通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關稅率調整

가. 關稅率調整의 背景

1978年度 關稅率調整은 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 強化, 中進國規制論의 擡頭 等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輸入自由化, 產業構造의 高度化, 物價安定 等 당면한 國內의 主要經濟政策에 부응하기 위하여 취해진 措置이다. 즉 對外的으로는 先進國들이 「互惠·無差別原則」에 입각한 自由貿易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두텁게 쌓아가면서 保護貿易을 強化하는 一方, 우리나라와 같은 中進工業國에 대해서는 輸出의 急伸張과 工業化를 의도적으로 制約하기 위해서 中進國輸出品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輸入을 規制하려는 所謂 「Selectivity of Sefeguard」를 制度化하려는 움직임이 GATT/MTN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開發程度에 따라서 自國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所謂 「Enabling Clause」를 GATT 및 OECD에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組織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國際的 조류에 能動的으로 對處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輸出伸張과 經濟成長을 기하고 國際經濟社會에서 책임있는 一員으로서 自由貿易秩序의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輸入自由化의 推進과 함께 關稅率을 전면적으로 調整하기로 했다.

한편 對內的으로는 高度의 產業國家로의 발돋음을 위한 產業構造의 高度化 推進과 함께 最近의 國內經濟狀況과 관련한 「輸入自由化」, 「價格安定」, 「輸出支援」, 「社會開發」등의 政府施策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關稅行政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關稅率의 體系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國內外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政策調節 手段으로서 關稅率의 役割을 높이 評價한 政府는 1978年을 「關稅의 해」로 정하고 연초부터 關稅率調整作業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나. 關稅率調整의 基本方向

1978年度 關稅率調整의 基本方向은 다음의 여섯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첫째, 輸入自由化에 부응하기 위하여 關稅率의 體系를 재정립한다.

- 貿易計劃上의 輸入自由化 推進과 함께 關稅率에 있어서도 輸入規制的 요인을 최소화 한다.
- 特定無稅物品과 금지적 高關稅率品目은 國際的 基準에 따라 현실화한다.
- 實質的인 保護效果를 높일 수 있도록 關稅率 體系를 재조정한다.

둘째,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하는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하며 過當保護部分의 産業合理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重化學工業分野는 「保護」보다는 「支援」의 방향에서 關稅率을 調整한다.
- 輕工業部分의 過當保護 및 輸入規制的 稅率을 완화한다.

셋째, 物價安定을 위하여 生必品의 關稅率을 引下한다.

- 基礎生必品의 備蓄을 支援할 수 있도록 關稅率을 引下한다.
- 輸入物價 主導部門의 關稅率을 引下한다.

넷째, 政府의 重點施策과 관련된 物品의 關稅率을 재조정한다.

- 輸出專用原材料의 關稅率을 引下하여 輸出業界의 負擔을 완화한다.
- 醫療施惠의 擴大, 農漁村開發, 資源開發 等과 관련된 物品의 關稅率을 下向調整한다.

다섯째, 産業間의 關稅負擔의 공평성을 제고하여 모든 輸入物品에 대한 최소한의 財政負擔原則을 確立한다.

- 無稅物品은 國際慣例物品에 한하여 現實化하되 최소한에 그친다.
- 一般物品으로서 原資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5% 財政關稅는 부과한다.

여섯째, 品目分類는 가능한 한 단순화하며 類似物品의 關稅率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關稅行政의 능률화를 기한다.

- 1978年 1月 1日 발효한 「新 CCCN」을 채택한다.
- 類似物品을 통폐합한다.
- 用途稅率은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다. 關稅率體系의 改編

(1) 關稅率種類

현행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法定稅率, 協定稅率, 彈力稅率로 대별될 수 있으며 法定稅率은 다

시 「基本稅率」「暫定稅率」「引上豫示稅率」「引下豫示制度」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다.

한편 協定稅率로서는 GATT가입 및 Kennedy Round 協商에서 관세를 양허한 GATT양허세율 이외에도 GATT 開發途上國의 貿易協商에서 양허한 GATT TNDC양허세율(Trade Negoti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이 있으며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開發途上國間의 特惠稅率인 ESCAP 開發途上國間의 特惠稅率이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稅率의 種類가 다양 다기화되어 基本關稅率 適用이 극히 제한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稅率適用의 우선순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선의의 輸入者가 피해를 볼 우려도 없지않을 뿐더러 稅關行政의 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國際的으로 약속한 양허세율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대내적인 法定稅率만은 稅率의 種類를 단순화하여 關稅行政의 能率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關稅法附則에 따른 個別物品別 「引上豫示稅率」과 稅率構造別 「引下豫示制度」는 금번 關稅率調整에서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法定稅率로서는 基本稅率과 暫定關稅率만 남게 되는데 暫定關稅率도 그 品目數에 있어서는 필요한 最小限에 그치게 함으로써 基本關稅率의 실질적 適用範圍를 확대하여 基本稅率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즉 改編 關稅率體系에 있어서는 暫定稅率品目이 현재의 7百59個(總細目의 30%)에서 62個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暫定稅率設置의 의미가 뚜렷한 것에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關稅率調整에서의 暫定稅率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의 유형은 暫定的으로 國內產業의 保護이고 둘째의 유형은 暫定的인 財政收入의 확보이다.

暫定的인 國內產業의 保護를 목적으로 설치된 暫定稅率은 物品間 및 產業間의 稅率構造面에서는 基本稅率이 타당하지만 현시점에서의 新規國內產業의 保護라는 관점에서 이들 產業의 國際競爭力이 배양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保護關稅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暫定稅率이 설치되었으며 暫定的인 財政關稅品目은 關稅負擔의 공정이란 견지에서 최소한의 재정기여의 목적으로 2.5%의 暫定稅率이 설치된 品目이 있는가 하면 關稅率構造上으로는 基本關稅率이 타당하지만 關稅率調整으로 인한 關稅收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關稅收入의 정착시까지 財政收入을 保護하기 위해서 暫定稅率이 설치된 품목이 있다.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暫定稅率은 基本稅率과의 稅率隔差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종국적으로 基本稅率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關稅率體系의 改編에 있어서는 基本稅率의 適用範圍를 대폭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설정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2) 品目分類

品目分類에 있어서는 「新 CCCN」을 導入함으로써 현재의 CCCN Heading 1,097個가 1,010個가 되어 현행보다 87個가 축소되었다.

4單位 Heading의 변경과 이에 따른 稅目의 재분류 및 類似物品의 稅目分類를 간소화 시킴으로서 總稅目數는 현행의 2,519個에서 2,209個로 개편되어 310個의 稅目數가 감소되었다.

<表 1> 品目分類 變更內容

	現 行 → 改 正	增 減
CCCN Heading	1,097→1,010	△87
稅 目	2,519→2,209	△310

(3) 稅率段階

현행의 우리나라 關稅率段階는 基本稅率基準으로 11段階이고 實行稅率基準으로 18段階이다.

그런데 改編關稅率體系에 있어서는 基本稅率基準으로 14段階이고 實行稅率基準으로는 暫定稅率에서 「2.5%」段階가 있기 때문에 15段階가 된다.

基本稅率基準으로 볼 때 改編關稅率段階는 현행의 11段階에서 「選擇稅」가 삭제되고 5%, 15%, 25%, 50%의 從價稅가 추가됨으로써 14段階가 되었다.

즉 改編關稅率 構造는 (0)－(5)－(10)－(15)－(20)－(25)－(30)－(40)－(50)－(60)－(80)－(100)－(150) 「從量稅」로 구성된다.

금번의 改編關稅率段階의 특징은 30%以下의 低稅率構造는 5%단위로 세분화되었고 中間稅率에 속하는 80－100－150은 現在段階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0%以下의 低稅率構造를 5%단위로 세분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점차로 高度化됨에 따라 生産物品이 다양화되어 감을 감안할 때 현행의 劃一的인 10%, 20% 단위설정은 실제적용과정에서 非現實的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輸入比重이 큰 低稅率部分은 5%단위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稅率構造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현행 鹿茸에 한해서만 選擇稅를 從量稅로 평가한 關稅額과 從價稅로 평가한 關稅額이 많은 關稅를 징수하도록 하는 稅率制度로서 다분히 輸入規制的 내지는 租稅收入的 측면이 강조되는 稅率制度이다.

금번 稅率構造 改編에서는 選擇稅가 稅關과 輸入者間에 通關上 마찰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녹용에 대한 選擇稅制度를 폐지함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關稅率 制度에서 選擇稅制度는 없어졌다.

關稅率段階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關稅率構造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

하고 있으나 그것은 國際的인 關稅率構造를 잘못 이해한 데에 기인하는 오해이다.

즉 先進國의 稅率構造를 살펴보면 日本 76段階 美國 44段階로 一般的으로 先進國의 稅率構造는 대단히 복잡하다.

先進國의 경우는 貿易 조절기능으로서 關稅率의 役割이 클 뿐만 아니라 過去 Kennedy Round 協商에서 연차적으로 一定率씩 關稅率을 일괄인하(Linear Cut)하였기 때문에 關稅率構造가 소수점이하까지 분포되어 매우 복잡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開發段階에 있는 自由中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關稅率段階가 43段階로 매우 복잡하다.

國際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關稅率構造는 순수하게 財政關稅를 목적으로 하는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一部 中東 國家를 제외하고는 아주 단순한 편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低稅率部分은 5%단위, 中間稅率部分은 10% 단위로 規則的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表 2> 關稅率構造의 改編

	格 差	段 階	稅 率
低稅率部分(30%以下)	5%	7	0−5−10−15−20−25−30
中間稅率部分(40~60)	10%	3	40−50−60
高稅率部分(80~150)	20.50	3	80−100−150
從 量		1	
計		14	

<表 3> 國際關稅率 構造比較

國 名	韓 國	臺 灣	日 本	美 國	E C
段 階	14	43	76	44	68

(4) 稅率變更

改編關稅率表上의 세목은 現行의 2천5백19個에서 2천2백9個로 調整되어 3百10個의 세목이 減少되었다.

이는 新關稅率表에서는 「新 CCCN」을 도입하므로 4單位의 Heading수가 現行의 1千10個로 되

어 87個의 品目 카테고리가 削除된 이유이외에도 類似物品의 세목을 통·폐합하여 品目分類를 간소화한데 기인한다.

개편세목수 2千2百9個의 稅率變動狀況을 基本稅率基準으로 分析해 보면 1千4百47個세목(66%해당)의 關稅率이 인하되었고 56個세목(2%해당)의 關稅率이 인상되었으며 7百6個세목(32%해당)의 關稅率은 現行 稅率이 거치되었다.

따라서 基本稅率體系로 볼 때 關稅率水準을 全般的으로 하향 調整하는 關稅率 改編이라고 할 수 있으며 物品間의 稅率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一部物品의 關稅率을 引上調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금번의 關稅率調整으로 인한 단순산술평균(=總稅率/總稅目)은 現行의 36%에서 25%로 大幅引下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여건에 있는 自由中國의 단순산술평균이 43%인 것을 勘案한다면 劃期的인 改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산술평균이 引下된 주요인은 주로 형식적이고 輸入規制的인 高關稅率을 大幅 引下함과 同時에 金屬, 資本財生必品의 關稅率을 全般的으로 下向調整한데 기인한다.

한편 加重平均關稅率〔=(수입액×관세율)/總輸入額〕이나 實効關稅率(=關稅徵收額/總輸入額)면에 있어서는 現行보다는 크게 引下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歲入豫算形便上 大幅的인 引下에는 限界가 있다.

이제 금번 關稅率改編 內容을 稅率構造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우선 高稅率部分을 80%~1百50%에 속하는 品目과 40%~60% 구간에 속하는 品目으로 區分해 볼 때 80%~1百 50%에 속하는 品目은 現行의 2百58個品目에서 29個品目으로 縮小되었으며 40%~60%에 속하는 品目도 7百3個에서 4百15個로 大幅 縮小되었다.

이는 輕工業品 내지는 사치성물품이란 기준하에서 盲目的으로 高稅率을 維持하던 品目을 實行稅率을 基準으로 現實化하거나 또는 과당보호세율을 인하한데 기인한다.

한편 現行의 20% 균일 稅率品目은 物品의 성질 및 가공도등을 勘案하고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勘案하여 25%-20%-15%-5%-0%까지 均等하게 분포되게 하여 現實性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卽 現行의 20%稅率의 稅目數가 1千2百10個인데 반하여 改編關稅率에 있어서는 20%세목이 6百57個로 반감되었으며 그 대신 新設된 25%稅率의 稅目이 68個, 15%가 2百52個, 5%가 73個이며 現行의 10%稅目은 52個에서 2百49個로 增加되었으며 無稅는 現行의 44個에서 1百53個로 現實化되었다.

이처럼 금번 關稅率調整에서 20% 均一體制를 지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76關稅率調整當時에는 國際收支가 不安하여 수입재원의 節約과 實効稅率의 제고가 重要한

과제로 되어 있었으며 關稅의 機能은 두터운 직접규제하에서 20% 均一關稅를 지향하였으나 이제는 輸入自由化 推進과 함께 關稅의 機能이 財政關稅的 측면보다는 貿易조절 機能이나 産業關稅로서의 機能이 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關稅率調整의 基本方向을 시기에 맞게 전환한데 연유하는 것이다.

<表 4> 基本稅率 基準稅率 構造別 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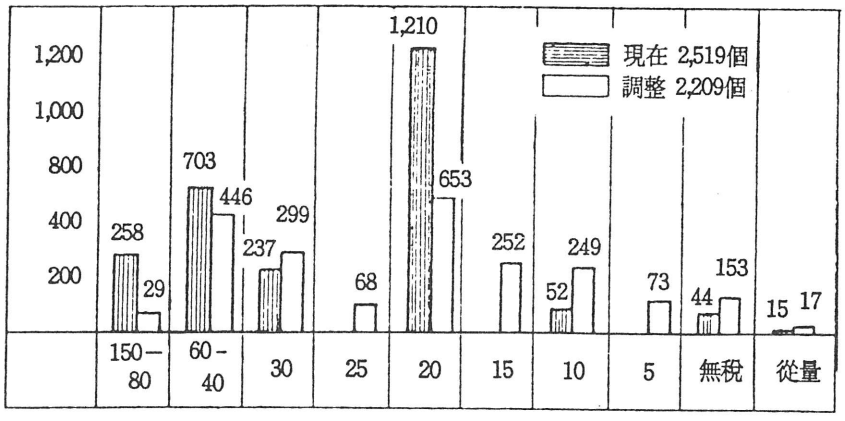

註 : 1. 高關稅率 品目數의 減少(150~80, 60~40)

2. 劃一的인 20% 均一關稅品目

→ 30,25,20,15,10,5,0으로 均衡分析

<表 5> 關稅率 變更品目總括

區 分	品 目 數	比 率
引 下	1,447	66%
引 上	56	2%
据 置	706	32%
計	2,209	100%

라. 部門別 調整內容

(1) 1次産品(農・畜・水産物)

1. 1次產品

<農·畜·水產物>

CCCN 1類부터 24類까지의 1次產品에 대한 關稅率은 基本的으로 必要物量의 充分한 비축을 지원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도모한다는 方向에서 關稅率이 調整되었다.

農畜產物인 境遇에는 비록 一部物品의 自給自足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生產의 季節性과 營農規模의 한계로 自給率에 관계없이 國內 生產價格이 國際價格에 比하여 과도하게 높은 구조적 比較 劣位產業이다.

1次產業이 비록 構造的劣位產業이라 할지라도 1次產業은 전통적인 產業인 同時에 國民의 基本生活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성질이 못된다. 따라서 國際的으로도 農產物에 대한 輸入規制는 一般的으로 용인된다.

이처럼 農畜產物은 일면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통하여 소비대중의 生活을 安定化시켜야 함과 同時에 다른면 農·漁民등 영세생산자를 保護해야 할 2중구조적 정책 調整이 필요한 部門이다.

이에 關稅政策은 物資需給의 원활화와 비축지원이란 측면에서 財政關稅的性格을 맡고 國內產業의 保護와 支援은 特別法에 의존하는 方向에서 關稅率이 調整됐다.

이러한 方向 아래서 금번 關稅率改編에 있어서 主穀分野의 쌀·밀·보리등은 現行의 20%에서 5%로 關稅率이 大幅 引下되었으며 各種畜產物·낙농제품의 원료 및 水產物은 現在는 20~60%로 다양한 稅率構造로 되어 있는데 改編關稅率로서는 쇠고기의 GATT협정세율을 基準으로 전부 25%로 均衡化시켰다.

즉 쇠고기·돼지고기·各種肉類·각종생선·우유·훼이등이 전부 25%가 되어 식료품으로서 同一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한편 1次產品中 우리生活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은 油脂의 원료로서 이것은 식물성유지와 동물성유지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植物性油脂 原料로서는 대두·채종·낙화생·팜넛·코푸라·아마인·면실등 12個種이 있고 動物性油脂 原料로는 우지·돈지·어유등 8種이 있다.

現行稅率은 物品에 따라서 20%~60%로 稅率構造가 다양화되어 있고 또 一部物品은 탄력관세로 特別히 낮은 稅率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生產構造의 왜곡 내지는 소비패턴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차별적인 稅率構造로 인해 實質的인 차별무역을 하고 있다고 수출원산국에서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금번 關稅率調整에서는 20여종의 모든 유지원료의 關稅率을 동등하게 20%로 均衡化시킴으로써 동일용도의 物品은 동일세율적용이란 원칙을 確立하였다.

마직막으로 國內生產과는 경합관계가 없는 원당, 당밀, 커피豆, 코코아豆등은 財政關稅的 측면에서 現行稅率을 當分間 유지하되 品質이 均一하고 價格의 변동폭에 큰 차이가 없는 코코아豆·糖蜜등은 現行의 從價稅體系에서 從量稅體系로 전환함으로써 關稅는 物價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國際價格의 앙등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關稅로 인해 國內物價가 引上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 輕工業

① 天然纖維 人造纖維

纖維工業은 일찍이 英國의 產業革命을 주도하여 오늘날의 高度產業社會를 가능케한 原始的인 工業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0年代의 經濟開發과 輸出成長을 가능케한 노동집약적 產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纖維產業은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總輸出額의 30%以上을 纖維製品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經濟의 纖維產業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纖維產業은 크게 天然纖維와 人造纖維로 區分할 수 있으며 纖維製品의 중간재인 系類以上의 加工段階는 상호대책 또는 混合가능한 보완재 관계에 놓여있다.

天然纖維의 基礎原料인 원면이나 원모는 全部를 해외에 수입의존하고 있으며 人造纖維의 基礎原料는 纖維化學系統의 製品으로 되어 있다.

現在 天然纖維의 基礎原料인 원면 및 원모는 基本關稅率이 各各 20% 및 40%로서 天然의 基礎原料라는 點을 勘案하고 그 輸入의 80%以上이 輸出用原資材로 輸入되고 있음을 勘案할 때에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아니하다.

特히 各種人造纖維의 原料가 되는 카프로락탐, 아크릴로니트릴모노머, DMT, TPA등이 모두 20%인 점을 勘案하여 금번의 關稅調整에서는 원모의 基本 關稅率도 同一하게 20%로 設定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總歲入豫算에 대한 關稅의 財政기여도가 높은 점을 勘案하여 一時에 20%까지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暫定稅率로 30%를 設定하여 暫定的으로 30%가 適用되게 하였다.

한편 원면의 경우도 物品間의 稅率均衡만을 고려할 때에는 現行稅率이 타당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탄력關稅로 無稅가 適用되어 온 現實性을 勘案하여 改編關稅率에서는 最小限의 재정기여 關稅率로서 5%를 設定하여 같은 天然纖維로서 원모와의 實質的인 稅率格差를 緩和하도록 하였다.

한편 各種天然纖維製品 및 人造纖維製品의 중간재에 속하는 各種 絲類(면사·모사·나일론사·폴리에스테르사·아크릴릭사·레이온사)는 90%이상이 輸出用原資材로 輸入되고 있음을 勘案하여 輸出業界의 資金負擔緩和로 輸出을 支援한다는 뜻에서 現行의 60% 또는 40%에서 일률적으로 30%로 인하하였다.

纖維製品이 중간재로서 各種絲類를 30%로 設定한 뜻은 製造段階나 수입패턴에 따른 배려이외에도 纖維製品을 生産하는데 소요되는 各種染料 調製의 대부분의 關稅率이 30%이기 때문에 모든 중간재의 關稅率을 30%로 同一化함으로써 환급제도의 運營이나 稅關行政의 能率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點에서 各種 絲類를 30%로 設定하였다.

마지막으로 纖維의 最終製品이라 할 수 있는 各種 衣類와 織物은 現行의 基本稅率 80% 내지 100%인 稅率을 暫定稅率 水準인 60%線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 纖維製品의 國際競爭力을 내외 價格差率에 따른 價格競爭力과 선호도등 非價格競爭要素를 勘案하여 評價한다 하더라도 現行의 關稅率은 輸入規制的性格이 없지 않음을 勘案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纖維輸出 대국인 점을 勘案하여 纖維의 最終物品 關稅率을 現行의 暫定稅率水準인 60%로 인하하였다.

改編關稅率 60%도 國際的으로는 과당 保護라는 印象을 주겠지만 이 分野에서는 輸入自由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追加的인 關稅率引下는 輸入自由化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現行의 暫定稅率을 基本稅率化 하는 선에서 調整되었다.

② 木製品·紙製品·고무·皮革

<木製品·紙製品·고무·皮革>

纖維製品을 제외한 나머지 輕工業物品으로서는 원목을 原料로 하는 木製品(44類)·펄프를 原料로 하는 紙製品(48類)·天然고무 및 합성고무를 原料로 하는 고무製品(40類)·원피를 原料로 하는 皮革製品(42類)이 있다.

이들 物品 역시 우리生活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物品인 同時에 이들의 中間 내지 最終製品은 우리나라의 輸出大宗品目이다.

우선 이들 製品의 基礎原料의 關稅率부터 살펴보자

現行 基本關稅率 基準으로 볼 때 원목 펄프 및 天然고무의 關稅率이 30%이나 實行關稅率로 볼 때는 원목(나왕원목)이 탄력관세로 5%가 適用되고 있으며 펄프가 역시 탄력관세로 10%가 適用되고 있다.

따라서 改編關稅率에 있어서는 나왕원목이 동남아시아의 生産國에서 輸出稅를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등 미가공원목의 輸出을 抑制하고 있음을 勘案하고 이와같은 유형의 物品으로서 원면의 關稅率을 5%로 책정한 점을 勘案하여 物品間의 財政負擔

의 형평이란 관점에서 최저한의 재정기여 稅率로서 원면·고철·소맥·대맥·경유등과 함께 5%를 基本稅率로 設定하였다.

한편 펄프의 關稅率은 現在 펄프의 種類에 따라 10~20%로 분포되어 있으나 改編關稅率에서는 모든 펄프의 關稅率을 동등하게 10%로 책정하였다.

펄프의 關稅率을 10%로 책정한 이유는 實際適用되고 있는 化學펄프의 關稅率이 10%인 점 이외에도 펄프의 原料인 펄프용재(원목)의 關稅率이 5%이고 또한 펄프의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古紙의 關稅率이 10%이기 때문에 10%로 책정함과 同時에 모든 關聯펄프의 稅率을 10%로 均衡시켰다.

한편 天然고무는 現行의 基本關稅率 20%를 그대로 거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天然고무와의 대체재인 합성고무(SBR등)가 國內에서 生産되고 있으며 합성고무의 關稅率은 석유화학 製品의 계열체계상 20%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합성고무와 함께 天然고무의 關稅率을 20%로 책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피는 現在 그 원피의 種類에 따라서 比較的 높은 稅率로서 30~60%로 다양하게 稅率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종전의 關稅率調整에서 奢侈性 소비재 原料란 槪念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關稅率調整에서는 各種原皮의 90% 이상이 輸出用原資材로 輸入되고 있으며 이 物品이 國內生産과 경쟁 내지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稅率을 天然고무 原毛등과 같은 水準인 20%로 策定하였다.

따라서 原皮의 금번 關稅率引下로 輸出業界에서는 資金負擔이 일층 緩和되리라고 믿어진다.

한편 이들 原料로 製造加工되는 중간재 내지 最終製品은 輕工業製品相互間의 均衡的인 産業發展을 기하고 輸出支援 내지는 過當保護稅率을 現實化한다는 뜻에서 纖維의 중간재와 같이 이들의 중간재를 대부분 現在의 40%線에서 30%水準으로 引下하였으며 最終製品인 木製品·지제품·신발류·혁제품도 纖維의 最終製品인 織物, 衣類와 함께 基本稅率을 60%로 均衡化시켰다.

(3) 化工品

— 에너지·石油化學·醫藥品 —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에너지源이 가장 긴요한 物品群에 속한다.

에너지源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物品은 原油·無煙炭 및 核物質을 들 수 있는데 금번 關稅率調整에서는 이들 物品의 安定的供給이란 측면에서 實行稅率을 모두 無稅로 하였다.

또한 原油를 정제할 때 나오는 各種 연료유로서 重油·輕油·揮發油·燈油등도 物資需給의 원활화란 측면에서 現行의 40% 關稅率을 5%로 大幅引下하였으며 太陽熱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뜻에서 太陽熱集熱器도 現行 60%에서 15%로 大幅引下하여 自然에너지 活用을 촉진토록 하였다.

한편 石油化學製品은 重化學工業의 일환으로서 4次 經濟開發計劃上 重點的으로 開發하려는 分野로 되어 있으며 이들 製品은 産業用으로 뿐만 아니라 纖維 및 合成樹脂製品의 原料가 되고 있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物品들이다.

石油化學製品의 現行關稅率은 20% 내지 40%로 다양하게 設定되어 있는데 改編關稅率에서는 이들 石油化學 製品의 國際競爭力과 製造段階를 고려하여 關稅率을 體系的으로 改編·調整하였다. 卽 납사 분해에서 發生되는 3가지 基本物品(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과 BTX(벤젠, 키실렌, 톨루엔)는 모든 石油化學製品의 基礎原料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關稅率을 現行의 20%에서 다같이 10%로 크게 引下하였다.

이들 여섯종류의 基礎物品은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國際的인 水準에서 價格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石油化學工業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關稅率體系를 調整함에 있어서도 基礎物品의 低稅率策定을 가능케 하여 중간재이상의 연관물품의 實效保護率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한편 石油化學製品의 中間段階 그룹에 속하고 있는 人造纖維製品의 소재로서 各種 石油化學 中間財는 製造段階에 따라 順次的으로 20%로 稅率이 均衡化되었다. 卽 나일론纖維의 原料인 아크릴로니트릴모노머, 폴리에스테르纖維의 原料가 되는 DMT, TPA가 다같이 20%가 되었다.

또한 各種 産業用 化工品의 中間原料가 되는 무수푸탈산아세트알데히드등의 物品도 製造段階와 國際競爭力을 고려하여 人造纖維 原料인 各種 石油化學中間財의 關稅率과 均衡을 시킴으로써 이들 物品의 關稅率은 現行의 40%에서 20%로 크게 引下되었다.

石油化學製品의 최종단계그룹에 속하는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수지(HDPE, LDEE), PVC수지, 폴리스티렌수지등도 製造段階에 따라 現在의 基本關稅率 40%가 30%로 引下됨으로써 石油化學製品의 最高稅率은 30%線으로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의료수가의 安定과 藥品需給의 원활화를 위하여 항생제합성의 基礎原料가 되는 物品은 現行의 20%에서 10%로 大幅 引下되었으며 대중의 藥品으로 主로 使用되는 항암제, 피임제, 항결핵제, 구충제의 關稅率은 타약품과는 달리 現在의 20%에서 15%로 關稅率이 引下되었다.

(4) 重工業

① 鐵鋼, 非鐵金屬

金屬工業은 모든 產業의 基礎가 되는 產業이며 特히 鐵鑛의 生產 및 消費는 그 國家經濟發展의 尺度가 된다.

우리나라의 鐵鑛產業은 浦項製鐵을 中心으로 하는 일관제철과 古鐵을 原料로 하여 주로 鐵筋을 生產하는 傳統的인 平電爐產業으로 2원화되어 있다.

一貫製鐵產業 측면에서 關聯物品의 關稅率을 보면 現在 基本稅率로서 鐵鑛石이 無稅이고 그 이후 段階의 예를들면 선철·잉고트·슬랩·핫코일·철판의 實行稅率이 다 같이 20%로 되어 있다.

따라서 現行稅率體系에서는 一貫製鐵產業의 保護는 충분하겠으나 그 이후의 전방연관산업은 競爭力의 약화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特히 最近의 國際鐵鋼 貿易은 美國등 先進國의 Trigger Price, 日本高爐業界의 生產短縮이 있고 國內에서는 生產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國內의 鐵鋼業界에서는 國際鐵鋼 價格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國內生產(Capacity)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關稅率調整의 基本方向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基礎 素材產業은 製品(Output)의 保護槪念에서 轉換하여 投入되는 原料(Input)의 支援이란 槪念에서 關稅率을 策定함으로써 鐵鋼製品은 다음과 같이 關稅率이 調整되었다. 卽 鐵鑛石(0→0) 선철(20→5) 슬랩·빌레트(20→10) 핫코일(20→15) 철판(20→20)

여기서 基礎素材產業은 여러가지 政策手段을 相互調和시켜 生產規模의 國際化와 價格競爭力의 培養을 위하여 支援해야 할 것이다.

한편 傳統的인 鐵鋼產業으로서 평전로 業界에 主要原資材로 輸入되고 古鐵의 關稅는 現在의 基本關稅率 10%를 5%로 引下하였다.

古鐵의 關稅率이 5%가 된 이유는 우선 古鐵은 高爐의 製造段階로 볼 때는 鐵鑛石과는 달리 銑鐵과 비슷한 段階의 金屬化된 物品으로 볼 수 있으며 古鐵用으로 輸入되

는 해체용선박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物品과 稅率을 均衡시킬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主要原資材로서 原綿·原木·小麥·大麥등이 모두 5%인 점을 勘案할 때 主要資源 相互間의 稅率을 均衡시키기 위해서도 古鐵에 대한 5%의 關稅率은 현시점에서는 適正한 것이다. 古鐵이 主要資源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開發段階에 있는 自由中國의 古鐵 및 解體用船舶이 實行稅率로서 10%인 점을 勘案한다면 높은 水準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非鐵金屬 分野에 있어서의 銅·알루미늄·鉛·亞鉛·朱錫은 모두 鐵鋼製品과 類似한 原則과 基準에 따라 關稅率이 策定되었다.

卽 各種鑛物類로서 알루미늄鑛(보크사이트)·鉛鑛·亞鉛鑛·朱錫鑛은 現行의 基本關稅率 10%를 無稅로 引下하였으며 各種 塊의 關稅率은 現在의 基本關稅率 20% 내지 40%를 均衡化시켰다.

또한 非鐵金屬에 있어서도 重要한 屑은 原料의 用途로 輸入되고 있는 點을 勘案하여 現在 20%로 되어 있는 銅屑·알루미늄屑·鉛屑의 關稅率을 10%로 引下하였다.

② 機　械

機械類는 關稅率表上의 品目 區分으로는 16部의 84類에 속하는 物品을 意味한다.

機械類는 原資材나 消費財와는 달리 生產施設의 基礎가 되는 물품으로서 產業의 生產性과 競爭力을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資本財이다.

現在의 機械類의 關稅率은 20%에서 40%까지 品名에 따라서 다양하게 分布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機械工業이 高度로 發達되지 못한 나라에서 機械產業에 높은 保護關稅를 賦課하는 境遇에는 불가피하게 關稅減免을 誘發하게 되고 關稅減免이 방만하게 誘發되면 減免惠澤을 받을 수 있는 業種과 받을 수 없는 業種間에는 심한 不公平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또한 機械類는 標準商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能率性이 높은 새로운 機械가 開發되고 있으며 能率과 내구연한에 따라서 國產化槪念이 相異하므로 특정시점의 國產可能性을 基準으로 關稅率을 策定한다는 것은 不合理한 것이다.

이에 改編關稅率 體系에 있어서는 機械類에 대한 外國의 關稅率, 우리나라의 徵收率 및 減免率등을 勘案하여 中心稅率을 採擇하였다.

卽 重化學工業機械類는 現在 品名에 따라 20%~30%인 것을 統一的으로 15%로 引下 調整하였으며 輕工業 機械는 品目에 따라 現在 20~40%인 것을 一律的으로 20%

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改編關稅率體系에 있어서는 모든 機械類를 同一하게 取扱함으로써 過多保護나 過少保護問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機械類自體의 稅率水準을 低水準으로 策定함으로써 設備投資를 促進하고 全產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契機가 되도록 하였다.

參考로 이웃나라 日本의 境遇도 84類의 機械類의 基本關稅率은 一律的으로 15%로 策定하고 있는 것을 勘案한다면 우리나라의 機械類의 關稅率은 결코 높은 水準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機械類의 關稅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機械類의 本體와 部分品間에 稅率格差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구성소비재가 아닌 產業用機械나 要素機械의 稅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本體의 部品을 同一物로 稅率을 策定하는 것이 理論的으로 確立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關稅率策定의 實際的인 例도 그러하다.

卽 一般的으로 機械의 本體는 주로 大企業이 알고 있는 組立產業인 境遇가 一般的이며 部分品은 수많은 中小企業이 生產하는 境遇가 많은 바 이들 組立產業과 部分品產業이 相互 密接하게 系列化되어야 하는 것이 機械工業의 基本要諦이다.

그런데 만약 部分品을 機械의 本體와 차등을 두어 극히 低稅率로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機械類 組立產業과 外國의 部分品產業의 系列化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意味의 機械 國產化는 아니다.

따라서 今番의 機械類의 關稅率은 本體와 部分品을 同等하게 取扱하여 物品間의 稅率格差等現象도 역진현상도 없도록 하였다. 다만 紡績機 및 그 部分品에 있어서는 本體가 GATT에 양허되어 있고 그 部分品이 彈力關稅로 5%의 稅率이 適用되고 있는 現實性을 勘案하여 部分品을 一時에 20%로 할 때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部分品에 대하여 10%의 暫定稅率을 策定하여 漸進的으로 基本稅率에 接近하도록 하였다.

③ 自動車·船舶·航空機·엔진

自動車와 船舶은 그간의 積極的인 開發計劃에 따라 이제 輸出產業으로 成長하게 되었으며 航空機產業은 이제 막 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自動車의 關稅率은 先進國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國內的으로도 經濟的理論 側面보다는 社會的·國民總和的 精神面을 고려하여 關稅率을 策定해야 할 品目이다.

특히 乘用車인 境遇에는 最近의 환물투기와 사치풍조등을 고려하여 純粹理論的인 면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現行關稅率이 다소 높은 감은 있으나 高級乘用車는 150%, 小型乘用車는 100%의 現行稅率을 그대로 維持하도록 하였다.

한편 船舶의 關稅率策定에 있어서도 二重 構造的인 政策調整이 불가피한 部門으로서 일면 船腹量을 大幅 늘려 輸出入物品의 국적선적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船舶의 關稅率을 大幅引下하여 海運業界의 船腹量 擴大를 支援해야 할 것이나 他面 우리나라의 造船業界와 體系的인 造船不況을 고려한다면 船舶의 關稅率은 어느정도 水準의 最小限의 保護機能이 될 수 있도록 關稅率을 設定하여 國內에서의 조선건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今番 關稅率調整에서는 造船業界와 海運業界의 2중구조적인 애로점을 조화하기 위해서 船舶의 關稅率을 基本關稅率은 15%로 設定하고 實行稅率로서 暫定稅率을 2.5%로 設定함으로써 造船과 海運의 2중구조적 政策目標에 調和를 꾀하도록 하였다.

航空機는 高度의 技術集約的 勤勞集約的인 物品으로서 그 國家의 國威宣揚의 象徵으로 産業의 擴張을 支援하기 위하여 國際慣例的으로 無稅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今番 關稅率 調整에서 航空機의 關稅率은 現在의 無稅를 그대로 維持하도록 하였다.

한편 自動車 船舶등의 關稅率과 關聯하여 가장 重要한 것은 엔진 및 엔진을 製造하는 部分品의 關稅率을 여하히 策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엔진工業은 엔진의 種類에 따라 開發段階가 엄청나게 상이하므로 一律的인 關稅率의 策定이 어렵게 되어있다.

즉, 乘用車 엔진인 가솔린엔진은 1968年부터 組立을 시작하여 이제는 거의 國産化가 성숙되어 있으며 버스 및 貨物車用의 디젤엔진은 1975年부터 組立을 시작하여 現在는 상당한 정도로 國産化가 이루어져 있으나 船舶用엔진은 이제 造船의 國産化率 제고의 일환으로 가까스로 開發을 推進中에 있다.

現行關稅率表上 自動車 및 船舶用의 엔진은 그 種類와 規格에 따라 10~60%로 다양하나 改正關稅率에서는 이들의 部分品과 車輛의 部分品關稅率이 同一하게 30%인 점을 고려하여 엔진의 基本關稅率을 다같이 40%로 均衡시켰다.

다만 엔진의 그룹에 따라 開發段階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基本 關稅率의 劃一的 適用에 따른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해서 엔진部分品에 대해서는 暫定稅率制度와 原材料減免稅規定을 두어 現實性을 反映하도록 하였다.

즉 乘用車用의 가솔린 엔진은 최초의 開發品으로서 이들의 部分品에 대해서는 1968

~1973年까지 部分品의 減免稅制度에 의하여 支援을 받아 이제 성숙단계로 發展했으므로 別途의 追加的인 支援措置가 必要치 않아 部分品에 대한 別途의 措置가 없으나 貨物車나 버스用의 디젤엔진은 그다음 段階의 開發品으로 76年 1月부터 지금現在까지 國內保稅工場生產分의 반입시에 彈力關稅로 10%의 關稅率을 適用하고 있으므로 이의 部分品이 實質的으로 10%의 關稅適用惠澤을 받는 結果가 되고 있으나 改編關稅率에 있어서는 現在의 彈力關稅 10%를 暫定稅率 20%로 대체함으로써 漸進的으로 基本 稅率에 接近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제 막 開發을 推進中에 있는 船舶과 航空機用 엔진의 國產開發을 위해서는 原材料減免稅 規定에 따라 部分品에 대해서 支援할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마. 機能別 調整內容

(1) 輸入自由化와 關稅率調整

우리나라 經濟의 開放化推進과 함께 輸入自由化에 副應할 수 있도록 關稅率 體系를 全面的으로 調整하였다.

즉 單純算術平均 關稅率을 現在의 36%에서 25%로 引下하여 11%를 引下함으로써 그 引下率은 무려 15%에 달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緩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貿易計劃上의 輸入自由化 推進에 발맞추어 關稅上에 있어서도 現在의 輸入規制的 高關稅率 品目을 最少化 함으로써 60%를 超過하는 금지적 關稅率 品目은 大幅縮小하였다.

즉 「殘存高關稅率」品目으로서는 80%가 8個品目, 100%가 13個品目, 150%가 8個品目에 불과하여 80%이상 150%까지의 금지적 高關稅品目은 現在의 258個에서 29個에 불과하게 되었다.

80%品目에는 초콜릿, 커피엑스, 상아가공품, 엽총, 공기총이 있으며 100% 품목에는 주정, 다이아몬드, 乘用車, 오토바이, 貴金屬, 身邊裝飾品, 高級時計등이 있고 150% 品目에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담배, 高級乘用車등이 있을 따름이다.

한편 貿易計劃上의 輸入自由化 推進에 따라 國內產業의 實質的인 保護效果와 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 내지 중간재의 關稅率 策定에 있어서는 現行의 20%均一指向的 關稅率體系를 탈피하여 國內의 附加價値를 고려하여 投入되는 原料와 生產되는 製品間의 稅率格差를 둠으로써 實效保護率의 槪念에 따른 保護效果를 높이도록 하여 輸入自由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品目들에는 鐵鋼 關聯 品目과 石油化學 關聯 品目들이 있다.

한편 輕工業製品과 내구소비재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 競爭力評價에 있어서 내외가격차율에 따른 價格競爭力보다도 선호도, 상표등 非價格 競爭力이 높이 作用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이들 製品의 關稅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非價格 競爭要素까지 關稅率에 포함시켜 調整하였으므로 貿易計劃上 輸入自由化를 推進한다 해도 國內産業에 충격이 없도록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品目들은 織物, 衣類, 신발류, 冷藏庫, 선풍기등 가전제품, TV, 라디오등 家庭用 電子製品등이 있다. 한편 貿易計劃上의 輸入自由化推進과 關稅率表上의 全般的인 關稅率의 下向調整을 틈타서 海外의 輸出業者가 덤핑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外國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여 當該國의 輸出品이 國內産業에 피해를 줄 憂慮가 있거나 國內市場을 교란할 우려가 있을 때는 「不當廉賣防止 關稅」나 「相計關稅」를 즉각적이고 效率的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이들 제도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보강하였다.

또한 國際的不公正去來가 아닐지라도 新規開發되는 國內産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境遇에는 「緊急關稅」制度로 또 農畜産物과 같은 구조적 비교열위산업은 「差額關稅」制度로 國內産業을 保護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했다.

따라서 貿易計劃 및 特別法上의 輸入制限制度가 自由化된다 할지라도 關稅機能으로 國內産業을 保護할 준비태세는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6> 殘存高關稅率 品目

稅 率	品目數	主 要 品 目
80%	8	초콜릿・커피엑스・상아가공품・엽총・공기총
100%	13	주정・다이아몬드・승용차・오토바이・귀금속・신변장식품・고급시계
150%	8	맥주・포도주・위스키・담배・고급승용차

[例 1] 鐵鋼製品(重工業)

銑 鐵	스랩, 비렛드	핫 코 일	鐵 板
20→5	20→10	20→15	20→20

[例 2]　　신　　발 (輕 工 業)

	기　　초 (부타디엔)	중　간　재 (SBR)	최 종 제 품 (신　발)
가 격 경 쟁 력	(10~45)→0	+11~+15	0~+10
비 가 격 경 쟁 력	10	+10	+50
관　세　율	10	20	60
연 관 물 품	에 틸 렌 : 10 프로필렌 : 10	천연고무 : 20 원　피 : 20	의 복 : 60 목제품 : 60

<表 7>　　現行產業別 關稅率構造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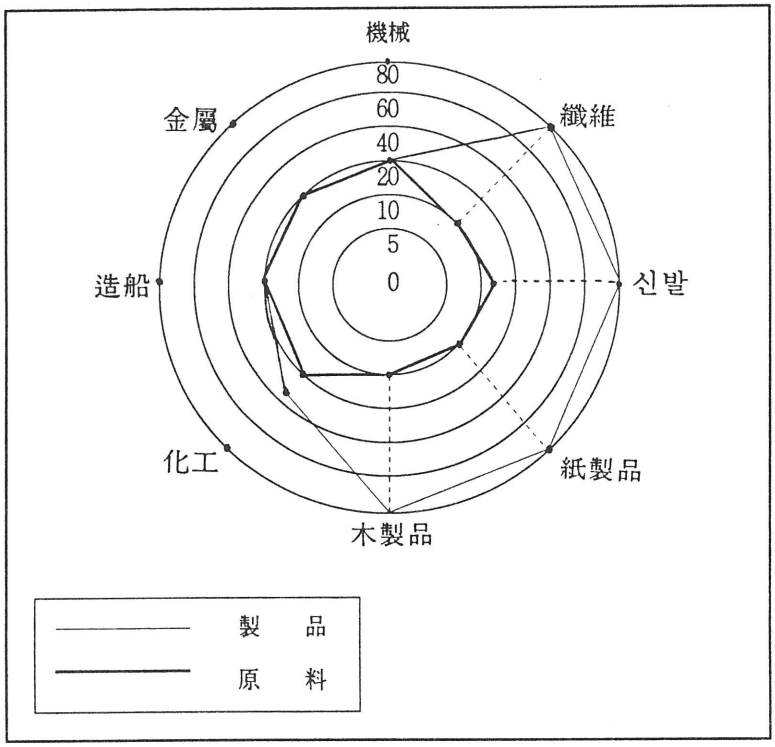

註 ① 輕工業의 過多保護
製品 : 高稅率, 輸入規制
原料 : 低稅率
② 重化學工業의 過少保護
製品 ┐
原料 ┘ 均一稅率

<表 8>　　輕工業製品의 關稅率

— 過多保護「基本關稅率」의 引下 — 產業合理化 誘導

	基本(暫定)改正	備　　考
纖維製品	80(60)→60	暫定稅率의 現實化
신발	80(60)→60	
木紙製品	80(60)→60	

<表 9>　　重化學工業投入原料 關稅率引下

— 投入原料, 施設材의 稅率引下 — 國際競爭力 涵養

		(現行) (改正)	備　　考
原料	鑛物類	10 → 0	製鍊
	金屬類	20 → 10	機械, 造船, 自動車, 電子
	基礎化工	20 → 10	化學工業
施設材	機械類	30.20 → 15	全產業

(2) 產業政策과 關稅率調整

市場經濟 秩序속에서 完全競爭이 가능한 與件 아래에서는 關稅率은 產業에 대해서 中立性을 維持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즉 關稅率에 의해서 資源分配에 지난친 왜곡화 現象이 일어나는 것은 長期的인 관점에서 마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產業政策이 追求해 나가야 할 2대지주는 產業의 合理化追求와 함께 產業構造의 高度化推進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長期間 國內產業에 대하여 關稅上, 貿易計劃上의 重複的인 過多保護 장벽은 生產企業의 體質改善이나 消費大衆의 權益保護를 위해서도 漸進的으로 緩和해나가야 할 段階에 와있다.

우리나라의 產業別 關稅率構造를 보면 우선 輕工業分野에 있어서는 이에서 生產되는 製品은 60% 내지 100%의 높은 關稅率과 함께 각종의 輸入制限 措置로 二重的인 保護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 輕工業部門에 投入되는 原料의 關稅率은 무세 내지 10%線으로서 低關稅率의 支援惠澤을 받고 있다. 따라서 生產되는 製品(Output)에 대한 關稅率과 投入되는 原料의(Input)

關稅率을 同時에 勘案하여 國內에서 發生한 附加價値가 關稅率에 의해 保護받고 있는 정도(實効保護率)는 輕工業인 境遇 매우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過多保護現象은 國內企業의 企業經營을 政府의 保護 내지 支援體制에 지나치게 의존시키게 하는 原因이 될 수 있으며 生産性向上이나 品質向上, 技術開發등의 積極的인 經營合理化로 企業이 自律的으로 國際競爭力을 높이려는 努力을 沮害 내지 遲延시킬 憂慮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금번 關稅率調整에서는 輕工業分野에 있어서 最終製品의 關稅率은 現在의 60% 내지 100%를 實行稅率인 暫定稅率 60%線으로 引下調整하였다.

産業政策과 關聯하여 우리나라 經濟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施策은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産業構造와 高度化 政策이다.

4次 5個年計劃에 의하면 75年度의 輕工業 對 重化學工業 比率이 58 對 42인 것을 4次計劃이 끝나는 1981年度에는 48 對 52로 重化學工業의 比率을 大幅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産業構造 高度化政策과 關聯하여 이들 關聯物品들의 關稅率構造도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重化學工業製品을 保護하기 위해서 이에서 生産되는 製品에 對하여 20% 내지 30%의 保護關稅的 性格의 比較的 높은 稅率을 策定하였으나 금번 關稅率 調整에서는 重化學工業 製品은 그 自體가 다시 모든 産業의 基礎設備나 原料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保護關稅는 行政面에서는 關稅減免과 彈力關稅를 유발하여 不公平을 招來할 憂慮性이 있었고 産業面에 있어서는 모든 産業의 投入費用을 높이게 되어 國際競爭力을 약화시켜 이의 波及効果로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副作用을 일으킬 可能性이 있음을 勘案하여 重化學工業에 投入되는 原料와 資本施設材의 關稅率을 全般的으로 下向調整하였다.

즉 重化學工業分野에 있어서는 從前의 保護槪念(Protection) 대신에 支援槪念(Promotion)에 立脚하여 製品에 대하여 保護關稅를 設定하지 않는 대신 投入되는 原料와 資本財에 支援關稅를 設定함으로써 重化學工業뿐만 아니라 産業全般의 設備投資를 促進시키고 國際競爭力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物價安定과 關稅率調整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 安定된 基盤위에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物價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點을 勘案하여 금번 關稅率調整에서는 物價安定을 위한 措置가 여러 곳에서 配慮되었다.

國民總生産에 대한 輸入依存度가 30%를 超過하고 있는 것을 勘案할 때 실물적인 側面에서는 우리나라의 物價는 輸入物品의 價格과 物量에 크게 左右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또한 輸入物品의 價格과 物量을 조절할 수 있는 關稅率이 物價安定과 깊은 關聯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今番 關稅率調整에 있어서는 最近에 物價引上을 주도한 部分을 中心으로 하여 重點的인 關稅率引下措置가 이루어졌는데 그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매물가의 주도적인 引上部門인 食料品을 中心으로 하는 生必品과 建築資材部門의 關稅率이 下向調整되었다 卽, 主穀分野에 있어서는 쌀(20→5) 찹쌀(20→5) 밀(20→5) 보리(20→5)등의 關稅率을 大幅引下함으로써 主穀의 備蓄을 항상 支援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으며 또한 食用油原料가 되고 있는 各種油脂의 關稅率도 現行의 20% 내지 60%인 것을 20%線으로 均衡있게 引下調整하였는데 重要한 것으로서는 낙화생(60→20) 팜넛(30→20) 우지(30→20) 돈지(40→20) 채종(30→20)等이 있다.

뿐만 아니라 酪農品의 原料로 使用되는 우유(40→25) 유장분말(40→25) 전지분유(60→25)等도 大幅 關稅率을 引下하였다.

建築景氣의 振幅에 따른 建築資材의 需給圓滑化와 物價安定을 위하여 建築資材의 關稅率도 引下調整되었는데 이의 重要한 物品으로서는 시멘트(30→10) 鐵筋(20→15) 타일(80→30) 합판(40→30) 等이 있다.

한편 最近 輸入物價部門의 主導的引上 要因으로 등장했던 油類와 金屬部門에 대해서도 關稅率이 全般的으로 下向調整되었다.

卽 燃料分野에 있어서는 無煙炭(20→0) 원유(0→0) 벙커C유(40→5) 경유(40→5)等이 있으며 金屬物品으로서는 선철(20→5) 잉고트(20→10) 빌레트(20→10) 핫코일(30→15)等이 있다.

이와 같이 物價引上의 主導的인 部門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關稅率을 引下하는 한편 制度的으로도 物價安定을 위하여 彈力關稅 制度를 體系的으로 再定立하였다.

卽 現在의 包括的인 制限的 關稅授權制度를 物價引上의 原因別 機能別로 體系化하여 활척관세제도·季節關稅制度·할당관세제도를 創設하여 物價의 自動調節機能을 強化하였다.

활척관세제도는 特定品의 國際價格 引上時에는 課稅價格 구간에 따라 稅率을 段階的으로 引下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際價格 上昇時에는 關稅負擔을 緩和하도록 하는 制度이며 「季節關稅制度」는 國內의 出荷期에는 生産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基本稅率을 適用하고 非出荷期에는 消費者를 위하여 關稅率을 引下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또한 割當關稅 制度는 國內生産이 國內需要에 미치지 못하여 物資需給의 圓滑을 沮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不足物資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한 制度로서 일정한 數量을 정하여 關稅를 引下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들 物價安定을 위한 制度는 法律로서 정하여진 基本稅率을 變更하는 制度인 點을 勘案하여 國民經濟 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부득이한 境遇에 한정하여 選別的으로 신중하게 運用하여야 할 것이다.

<表 10> 食料品을 中心으로 하는 生必品의 關稅率引下

穀 物	쌀(20→5), 찹쌀(20→5), 밀(20→5), 보리(20→5)
油脂原料	낙화생(60→20), 팜넛(30→20), 牛脂(30→20), 돈지(40→20)
酪 農 品	우유(40→25), 유장분말(40→25), 전지분유(60→25)

<表 11> 輸入物價 主導部門의 關稅率引下

燃 料	無煙炭(20→0), 벙커C油(40→5), 輕由(40→5)
金 屬	銑鐵(20→5), 잉고트(20→10), 비렛트(20→10), 핫코일(30→15)

(4) 輸出支援과 關稅率調整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는 原資材의 海外依存이 當分間은 不可避할 것임을 勘案하여 輸入「패턴」으로 보아 內需用으로 보다 輸出用原資材로 보다 많이 輸入되는 物品에 대해서는 <表 12>와 같이 關稅率을 大幅引下하였다.

이들 中間財中 一部는 國內에서 生産되기는 하나 物量이나 國際競爭力面으로 보아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보다는 輸出을 支援하는 關稅率體系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關稅率을 大幅引下하였다.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이번의 關稅率引下는 輸出業界의 資金負擔緩和와 國際競爭力提高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展望된다.

<表 12>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率引下

	主 要 物 品
纖 維	原毛(40→30), 人造纖維(40→30), 絲類(40→30)
皮 革	牛原皮(30→20), 면양原皮(60→20)

	主 要 物 品
木 材	羅王原木(10→5), 製材原木(20→5)
電 子 等	電子回路原版(30→20), 완구부분품(60→30), 재봉기부분품(40→20), 피아노部分品(60→30)

(5) 政府의 重點施策支援과 關稅率調整

第4次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中에 있는 社會開發, 農漁村開發, 資源開發等을 支援하기 위한 措置로서 關稅率을 下向調整하였는바 그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醫療施惠의 擴大를 支援하고 醫療酬價의 引下를 거둘 수 있도록 醫療品基礎原料와 醫療機器의 關稅率을 <表 13>과 같이 調整하였으며 不具者 專用物品은 社會政策的見地에서 無稅로 하였다.

<表 13> 醫療關聯物品의 關稅率調整

醫 藥 品 基 礎 原 料	抗生劑 合成基礎原料(20→10), 縫合絲原料(60→30), 초산(30→20), 스테아린산(40→20)
醫 療 機 器	機械療法機(40→15), 산소흡입기(40→15), 醫療器機(30→15), X-Ray 필름(40→20)
不 具 者 專 用 物 品	補聽器(20→0), 義足(20→0), 휠체어(40→0), 骨折治療具(20→0)

둘째, 農漁村所得增大 事業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種子類 및 農機械의 關稅率을 <表 14>와 같이 下向調整하는 한편 各種 漁具類의 關稅率을 大幅引下하므로서 沿近海漁民의 所得增大事業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表 14> 農漁村 所得增大事業關聯物品

農 村	農藥撒布機(30→15), 收穫機(20→15), 移秧機(20→15), 種子(20→0), 칼륨비료(20→0), 農藥原料(原料免稅規定新設)

漁　村	漁網原絲(60→20), 오징어 自動釣上機(20→10), 魚群探知機(20→10), 無電機(30→20), 레이더(30→20), 漁船(20→2.5), 실뱀장어(減免稅)

셋째, 太陽熱에너지開發 및 鑛物探査 等 各種 資源開發事業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이에 所要되는 各種 開發裝備와 安全施設의 關稅率을 〈表 15〉와 같이 引下調整하였다.

<表 15>　　資源開發事業의 支援

太陽熱에너지사업	熱感知機(30→20), 集熱施設(60→15), 特殊밸브(30→15), 無繼目鋼管(40→25)
資源開發裝備	採鑛地質測定機(30→20), 굴착기(40. 20→15) 시추기(20→15), 海上構造物(20→5)
安全施設	排가스기(60→15), 매몰갱관통기(20→15), 가스검출기(30→20), 인공호흡기(40→15), 방열복(40→20)

바. 關稅率 政策의 運營方向

以上과 같이 '78年度 關稅率調整은 國內外經濟與件의 變化와 當面한 主要經濟政策에 副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複合的인 經濟目標를 關稅率이란 政策手段으로 體系化하는 方向에서 調整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關稅의 總歲入에 대한 寄與率이 14%를 上廻하고 있기 때문에 財政關稅란 側面을 無視하고는 關稅率改編을 考慮할 수 없는 制約要因이 있으나 今番의 關稅率調整은 政策과 理論을 調和하는 方向에서 여러가지 分析方法을 總動員하여 調整作業을 시도하였다.

法定關稅率은 이제 法律로서 確定되었으나 「貿易自由化」「産業의 高度化」,「物價의 安定」이 앞으로도 계속 關稅政策과 直接的인 關聯性이 있는 政策課題라고 볼 때 우리는 이와 關聯된 彈力關稅制度를 보다 有效適切하게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今番 關稅法改正에서는 國際的인 不公正去來로부터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로서 「不當廉賣防止關稅」와 「相計關稅」의 要件을 實際 發動할 수 있도록 補強하였고 현저히 低廉한 外國物品으로부터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差額關稅」까지 新設하여 輸入自由化가 되어도 關稅率制度에 의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할 수 있도록 充分한 保障措置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物價의 安定化制度로서는 「滑尺關稅制度」, 「季節關稅制度」, 「割當關稅制度」를 新設 또는 補強함으로써 物資需給의 圓滑化와 國內物價의 安定을 기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自動調整制度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諸制度는 基本關稅率에 變更을 課하는 制度이므로 濫用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政策目的에 副應할 수 있도록 運營의 妙를 期해야 할 것이다.

간추린 改正稅法

79년도

國稅基本法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附加價値稅法
特別消費稅法
酒稅法
防衛稅法
租稅減免規制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國會의 審議를 거쳐 6個稅法을 改正 公布하였습니다.

지난 70年代 우리나라는 어려운 國內外與件속에서도 年平均 10%가 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今年에는 產油國의 油價引上과 이에 따른 物價上昇, 國際收支의 惡化 및 經濟成長의 鈍化, 그리고 이번에 斷行된 換率 및 金利引上 措置로 物價上昇壓迫이 더욱 加重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國內外的으로 커다란 難局에 處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80年代의 풍요로운 福祉社會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어려운 經濟與件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먼저 租稅負擔의 適正과 公平을 期하여 所得稅率과 相續稅率을 引下하고 控除額을 引上하여 一般國民의 稅負擔을 輕減하고, 國防財源의 擴充을 爲하여 一部 減免惠澤을 받고 있는 部門과 不要不急한 消費에 課稅되는 防衛稅率을 引上하고 防衛稅의 適用時限을 延長하는 한편, 資本市場 育成, 大衆交通難 解消等 當面施策을 最大限 支援하고, 인플레이션을 抑制하기 위하여 企業의 接待費限度를 縮小하며, 法人稅의 申告納付制 採擇을 通하여 稅務行政의 改善을 圖謀하였습니다.

稅法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고 納稅者와 密接한 利害關係가 있는 것이지만, 그 內容이 너무 專門的이고 複雜하여 理解하기 어렵다는 意見이 많습니다.

이제, 改正稅法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理解할 수 있도록 改正內容을 알기 쉽게 풀이한 冊子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改正稅法을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圓滑한 稅政運營과 健全한 納稅風土 造成의 기틀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80年 1月

財務部長官 金 元 基

目　　次

國稅基本法 …… 491

1.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는 國稅 …… 491
2 課稅標準修正申告 …… 492
3. 追加自進納付 …… 494
4. 追加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이 排除되는 加算稅 …… 494
5. 法人稅 還給加算金의 起算日 …… 495
6. 國稅審査委員會 委員 …… 496

所得稅法 …… 497

<綜合所得> …… 499

1.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 499
2.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非課稅 …… 501
3. 學資金의 範圍調整 …… 501
4. 文藝·創作所得課稅 …… 502
5. 分離課稅 其他所得金額引上 …… 502
6. 諸所得控除額引上 …… 503
7. 基本稅率構造의 改編 …… 504
8. 納稅節次簡素化 …… 506
9. 接待費限度縮小 …… 508
10. 其　　他 …… 508

<讓渡所得> …… 511

1. 基準時價의 決定方法改善 …… 512
2.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方法改善 …… 512
3. 未登記讓渡除外 資產範圍擴大 …… 514
4. 取得時期의 調整 …… 514

法人稅法 …… 515

1. 法人稅의 申告納付制度採擇 …… 516
2. 證券市場浮揚을 위한 稅制支援強化 …… 518
3. 接待費限度의 縮小 …… 519

4. 中間豫納의 調整 …… 520
5. 綠色法人要件強化 …… 521
6. 法人稅의 物納制度新設 …… 523
7. 加算稅制度의 強化 …… 524
8. 精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525
9. 其 他 …… 526

相續稅法 …… 530
1. 相續稅調査決定官署調整 …… 530
2. 非居住者의 事業上 債務控除 …… 530
3. 稅率引下 및 人的控除額 引上 …… 531
4. 年賦延納調整 …… 536
5. 合算課稅와 控除稅額調整 …… 536
6. 顯著히 低廉한 代價로서의 利益範圍調整 …… 537

附加價値稅法 …… 538
1. 納稅節次 …… 538
2. 免稅範圍의 調整 …… 539
3. 補償金支給制度의 廢止 …… 540

特別消費稅法 …… 541
1. 輸出用物品의 搬出節次簡素化 …… 541
2. 未納稅搬出對象調整 …… 542
3. 外國人專用販賣場指定 …… 542
4. 課稅物品의 範圍調整 …… 543

酒 稅 法 …… 544
1. 酒類製造 및 販賣免許申告期限設定 …… 544
2. 內國輸出業 許可制度廢止에 따른 條文整理 …… 544
3. 內服藥의 原料로 酒精을 使用할 경우 免稅節次 合理化 …… 544

防衛稅法 …… 545
1. 防衛稅率의 引上 …… 545

2.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 ····· 547
3. 防衛稅適用時限 ····· 549

租稅減免規制法 ····· 550
1. 所得稅의 免除 및 非課稅 利子·配當所得의 範圍擴大 ····· 551
2. 住宅建設業者에게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算) 事前減免 ····· 551
3.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等 ····· 552
4. 重要政策事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 ····· 553
5. 增資所得控除期間의 延長 ····· 554
6. 新技術企業化事業의 範圍擴大 ····· 554
7. 大衆交通手段인 버스旅客運送事業에 대한 法人稅 免除 ····· 555
8. 間接稅의 免除 ····· 555
9. 地方稅의 免除條項補完 ····· 556
10. 關稅의 減免 ····· 558
11. 其 他 ····· 558

國 稅 基 本 法

[要　約]

法人稅를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함에 따라 納稅者의 誠實한 申告納付를 保護하고 이를 誘導하기 위하여 課稅標準修正申告의 期限을 延長하고, 그 範圍도 擴大하였다.

가.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는 細目에 法人稅를 追加함.
나. 課稅標準修正申告
　○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提出期限을 延長함.
　○ 課稅標準修正申告의 範圍를 擴大함.
　○ 減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理義務 및 期限을 規定함.
다. 修正申告時의 追加自進納付稅額
라.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이 排除되는 加算稅
　○ 法人稅過少申告加算稅
　○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修正 申告한 경우
마. 法人稅還給加算金의 起算日
바. 國稅審査委員會의 委任을 7人에서 9人으로 增員함.

1.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는 國稅(令 第10條의 2)

申告納付方式에 의한 稅目에 法人稅를 追加하였다. 政府賦課制度와 申告納付制度의 가장 큰 差異點은 稅額의 確定方式에 있는 것으로서 政府賦課制度는 稅額의 確定에 있어 政府의 決定을 要하나, 申告納付制度는 納稅者의 申告에 의하여 稅額이 確定되는 것으로서 즉 納稅者 스스로가 스스로의 稅金을 計算·確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申告納付制度에서는 納稅者가 잘못 申告한 경우나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만 政府가 調査하여 稅額을 決定하거나 更正하는 것이므로 納稅者와 稅務公務員間의 接觸에서 發生하는 摩擦을 解消할 수 있으며, 行政의 效率的 活用을 기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間接稅의 경우는 附加價値稅制가 導入된 '77. 7. 1부터 申告納付制度에 의하였으며, 이번에 法人稅를 追加하였다.

2. 課稅標準修正申告

가.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提出期限 延長(法 第45條第1項)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直 接 稅		
• 法 人 稅	30日	6月
• 其 他	30日	1月
間 接 稅		
• 附 加 價 値 稅 (確 定 申 告)	10日	6月
• 附 加 價 値 稅 (豫 定 申 告)	—	3月
• 其 他	10日	1月

위 表와 같이 改正前 修正申告期限은 直接稅는 30日, 間接稅는 10日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延長하여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것으로서 課稅期間이 6月以上인 法人稅나 附加價値稅는 6月로 하고 課稅期間이 1月인 間接稅(特別消費稅·酒稅等)와 政府賦課制度에 의하는 直接稅(所得稅·相續稅等)는 1月로 하였다.

그리고 改正前에는 國稅基本法에 의한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附加價値稅 豫定申告에 대하여도 修正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고, 修正申告期間을 3月로 하였다.

修正申告의 效力에 관하여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國稅의 경우 納稅者가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는 때 稅額이 確定되며, 租稅逋脫犯의 旣遂時期는 納稅期限이 經過하는 때 成立하므로, 修正申告는 이미 確定된 稅額의 納稅義務나 租稅犯의 旣遂時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修正申告의 範圍擴大(令 第25條)

改　　正　　前	改　　正
① 當初 申告書 作成前에 이미 發生한 源泉的인 誤謬·漏落은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함.	①修正申告可能
② 附加價値稅 豫定申告는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함.	② 修正申告可能

附加價値稅 豫定申告에 대하여도 修正申告의 對象에 包含시키는 한편 修正申告의 範圍에 관하여 規定한 國稅基本法施行令 第25條第3項을 削除함으로써 課稅基準修正申告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다. 減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理 義務 및 期限(法 第45條第2項)

申告納付制度를 擇하는 國稅 즉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나 證券去來 等에 관하여 當初 申告한 課稅標準이나 納付稅額을 減少시키거나 還給稅額을 增加시키는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政府는 이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該當 修正申告書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에 申告人에게 通知하는 동시에 更正할 事項은 更正하도록 하였다.

政府賦課制度를 擇하고 있는 國稅의 경우는 課稅標準申告後 政府의 決定이 항상 뒤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規定이 必要하지 아니하나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國稅의 경우는 當初 申告時 過多納付한 稅額을 還給받기 위하여는 政府의 更正節次가 必要하며 政府가 이를 怠慢히 할 경우 納稅者는 不利益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處理期限을 明示하였다.

그리고 納稅者가 減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 例를 들면 納稅者는 1千萬원을 減額하는 修正申告를 하였으나 政府는 이에 대하여 5百萬원만 減額更正함으로써 政府의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國稅基本法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또는 異議申請)을 提起할 수 있다.

라. 適 用 例

修正申告에 관하여 改正된 規定은 1980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3. 追加自進納付(法 第46條)

納稅者가 當初 申告時 納付한 稅額이 課稅標準 修正申告額에 相當하는 稅額에 未達한 때에는 그 不足額을 修正申告와 同時에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하는 바, 이번 改正法律에서는 그 不足額과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3號에 規定한 過少納付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輕減되는 分을 除外한다)를 함께 納付하도록 하였다.

法人稅過少納付加算稅는 未納付稅額의 10%이었으나 이번 稅法改正時 法人稅에 대하여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는 것을 계기로「未納付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로 計算한 金額」을 過少納付加算稅로 徵收하게 되었다.

修正申告와 同時에 當初 申告時의 不足額을 追加自進納付하면 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過少納付加算稅의 50%를 輕減받는다. 따라서 法人稅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할 加算稅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過少納付加算稅額의 50%이다.

4.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이 排除되는 加算稅

修正申告와 同時에 追加自進納付稅額을 納付하게 되면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免除惠澤을 받는다. 즉 過少申告加算稅는 全額, 過少納付加算稅는 50%를 免除받는다. 그러나 이번 改正時 修正申告를 하였다 하여도 加算稅 免除惠澤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過少申告加算稅 免除의 排除(法 第49條)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2號 但書에 規定한 加算稅 즉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以外의 原因으로 發生한 過少申告加算稅에 대하여는 修正申告에 의한 過少申告加算稅 免除惠澤을 주

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번 改正前의 法人稅法에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 過少申告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法人稅法 改正時

①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는 10%

② ①以外의 原因으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는 30%의 過少申告加算稅를 徵收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30%의 稅率이 適用되는 法人稅過少申告加算稅에 대하여는 80年 1月 1日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分부터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過少申告·納付加算稅免除의 排除(法 第49條·第50條)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提出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관하여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提出한 경우에는 修正申告에 의한 過少申告加算稅 및 過少納付加算稅免除惠澤을 주지 아니한다.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提出한 경우」라 함은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國稅로서 當初申告書提出後 稅務公務員이 調査에 着手한 것을 알고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提出하는 경우를 말한다.

政府賦課制度를 採擇하는 國稅의 경우에는 納稅者의 課稅標準申告後 政府의 決定이 항상 뒤따르게 되므로 이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는 國稅의 경우는 當初 納稅者의 申告에 의하여 稅額이 確定되며 當初 納稅者가 申告한 事項中 誤謬·漏落이 있는 경우만 政府가 이를 更正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規定은 申告納付하는 國稅에 대하여만 適用된다.

修正申告는 어디까지나 誠實한 納稅者를 保護하는 制度로서 稅務調査를 着手한 後에 修正申告하는 경우는 納稅者의 自發的인 誠實申告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修正申告한 경우」는 修正申告에 따른 加算稅免除의 惠澤을 排除한 것이다.

5. 法人稅 還給加算金의 起算日(法 第52條)

法人稅를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함에 따라 法人稅 還給加算稅의 起算日을 申告納付制度를 擇하고 있는 附加價値稅等과 같이 申告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또

는 決定 또는 更正으로 因하여 發生한 還給稅額에 있어서는 決定 또는 更正決定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였다.

改正된 이 規定은 80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法人의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6. 國稅審査委員會 委員

國稅審査委員會의 委員을 7人에서 9人으로 增員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委 員 長 : 國稅廳次長 ○ 副委員長 : 國稅廳企劃管理官 ○ 委　　員 : 國稅廳審査局長 民間人 4人	○ 委 員 長 : 國稅廳次長 ○ 委　　員 : 國稅廳局長級 3人 民間人 5人

所 得 稅 法

[要 約]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를 全面 改編함으로써 稅負擔의 適正을 기하고 油價引上에 基因한 家計費 支出의 增加에 따른 庶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人的控除額을 引上하였으며 低所得層의 家計貯蓄支援을 위한 保險料 控除額을 引上하고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方法을 改善하여 租稅摩擦의 要因을 除去하였다.

<綜 合 所 得>

가.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 ○ 信託會社가 發行하는 開發信託 受益證券利子
- ○ 非課稅되는 農家 副業所得의 範圍擴大
- ○ 年·月次手當 및 精勤手當非課稅 受惠者 範圍擴大
- ○ 優秀發明에 대한 所得

나.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 非課稅

다. 學資金의 範圍調整

라. 文藝·創作所得 課稅
- ○ 創作所得 特別控除 新設

마. 分離課稅 其他 所得金額 引上

바. 勤勞所得에서 控除되는 各種 控除額 引上
- ○ 勤勞所得 控除額 引上
- ○ 保險料 控除額 引上

사. 所得控除額 引上
- ○ 基礎控除額 引上
- ○ 扶養家族控除額 引上

아. 基本稅率構造 改編

자. 納稅節次 簡素化
- ○ 自動賦課對象者 範圍擴大

○ 書面調査 決定對象 擴大

차. 接待費限度 縮小

카. 其　　他

○ 代理 源泉徵收 範圍調整

○ 少額株主 範圍調整

○ 漁村契의 配當金 分離課稅

○ 課稅標準 決定猶豫 範圍擴大

○ 事業場別 收入金額 決定時期 調整

○ 讓渡資産의 償却 是否認

○ 移越缺損金 控除 範圍調整

○ 擬制配當 範圍調整

○ 職業訓練施設의 特別償却

○ 團體 退勤保險 定義

○ 公課金 範圍擴大

○ 寄附金의 範圍調整

○ 臨時 投資稅額 控除對象 擴大

<讓 渡 所 得>

가. 基準時價 決定方法 改善

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方法 改善

다. 未登記讓渡除外 資産範圍 擴大

라. 取得時期의 調整

<綜 合 所 得>

1. 非課稅所得의 範圍擴大

所得이 發生하면 所得稅가 賦課되는 것이 원칙이나 政策的인 또는 行政的 理由로 所得稅法에서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지 아니하고 一定範圍의 所得을 課稅對象所得으로 하고 있다.

所得稅가 課稅되지 않는 것은 非課稅와 免稅가 있는데 非課稅와 免稅의 實質的인 差異는 非課稅는 積極的인 免稅로서 一定한 申請等을 要求하지 아니한다는 點이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러한 非課稅所得의 範圍를 넓혔다.

가. 利子所得(法 第5條, 令 第5條)

改 正 前	改 正
新 設	信託會社가 發生하는 開發信託 受益證券의 利子

나. 事業所得(法 第5條, 令 第6條의 2)

農·漁民이 副業으로 영위하는 畜産·養魚·藁工品의 所得에 대하여는 農家 副業所得으로 一定金額을 한도로 非課稅하고 있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農家 副業所得 非課稅 制度	年 156萬원	年 186萬원

農家副業所得 非課稅 限度를 適用받지 아니하는 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중 規模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家畜別	規模		備考
	改正前	改正	
	마리	마리	
젖소	7	10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育成牛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소	10	20	〃
돼지	50	100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
산양	100	改正前과 같음	〃
면양	100	〃	〃
토끼	1,000	〃	〃
닭	1,000	〃	〃
오리	1,000	〃	〃

※ 飼育두수는 每月末現況에 의한 平均頭數에 의한다.

다. 勤勞所得(法 第5條, 令 第12條의2)

福祉厚生的인 性質의 給與에 대하여는 月定給與額이 50萬원 以下인 勤勞所得者가 支給받는 경우에만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중 醫療保險法 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敎職員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使用者가 負擔하는 保險料에 대하여는 全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非課稅하고 있다.

이번에 稅法改正에서는 使用者가 負擔하는 醫療保險料 以外에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有給休暇에 갈음하여 支給받는 年·月次手當 및 公務員의 精勤手當에 대하여도 全 勤勞所得者가 支給받는 것중 年 50萬원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하는 方法으로 改正함으로써 모든 勤勞者가 非課稅惠澤을 公平하게 받도록 하였다.

라. 其他所得(法 第5條, 第13條의 2)

改 正 前	改 正
新 設	○使用人의 職務發明에 대한 報償金 ○ 特許權·實用新案權의 使用料중 外國으로부터 支給받는 것.

2.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 非課稅(法 第26條·第114條)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所得을 擬制配當에서 除外함으로써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을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上場法人의 少額株主	5%分離課稅	非 課 稅
上場法人의 大株主	10% 〃	〃
中小企業의 株主		
其 他	20% 〃	〃

3. 學資金의 範圍調整(法 第5條, 令 第7條의2)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從業員이 使用者로부터 支給받는 學資金 非課稅	學資金 全額	大學院을 除外한 學校의 入學金·授業料 其他 公納金 限度

學資金非課稅와 類似한 規定을 보면 月定給與額이 50萬원 以下인 勤勞所得者가 支給받는 從業員 子女의 敎育費補助金(敎育保險契約의 保險料 包含)은 福祉厚生的인 性質의 給與로 非課稅되며, 또한 從業員(月定給與額이 50萬원 以下인 勤勞者)自身이 負擔하는 學資金에 대하여는 勤勞學生控除制를 採擇하고 있다.

4. 文藝·創作所得課稅(法 第5條第3號(가)·第5號(가), 令 第49條의 2·第120條의 2, 法附則 第3條·第5條)

區 分	改正前	改 正
事業所得에 屬하는 文藝·創作所得	非課稅	課 稅
其他所得에 屬하는 文藝·創作所得	非課稅	課 稅

文藝·學術·美術·音樂·寫眞 其他 創作所得에 대하여는 文藝·學術의 振興이라는 側面에서 所得稅를 非課稅하여 왔으나 國民所得 및 生活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文藝·創作所得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全面的인 非課稅는 課稅의 公平이라는 面에서 批判의 對象이 되어왔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이들 所得을 課稅所得의 範圍에 包含하여 所得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課稅所得에 包含하였다 하여 1980年 1月 1日 以後 發生하는 모든 文藝·創作所得이 課稅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며 文藝·創作所得이라 하더라도 事業所得에 속하는 文藝·創作所得에 대하여는 1981年 12月 31日까지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創作所得 特別控除制度를 두어 年 360萬원에 相當하는 金額을 文藝·創作所得에서 控除함으로써 低所得水準에 있는 文藝人과 全般的인 制度轉換에서 오는 衝激를 緩和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均衡을 맞추기 爲하여 其他所得에 屬하는 非職業的인 文藝·創作所得에 있어서는 1981년 12月 31日까지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그 課稅를 猶豫하고 있다.

따라서 高額의 文藝·創作所得을 얻는 一部 職業的인 文藝人을 除外하고는 實質的인 課稅는 1982年 1月 1日以後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所得稅가 課稅되는 것이다.

5. 分離課稅 其他所得金額 引上(法 第15條)

其他所得은 大部分 一時的인 所得으로서 이러한 一時的이고 少額의 所得에 대하여 綜合課稅토록 하는 것은 當該 納稅者에게 번거로움을 줄 뿐 아니라 行政의 번잡만을 가져오므로 一定額以下의 其他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納稅者의 選擇에 의하여 綜合課稅 또는 分離課稅를 하고 있으며 이번 稅法改正時 이 金額을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分離課稅 其他 所得金額	年 36萬원 以下	年 120萬원 以下

6. 諸所得控除額 引上

가. 勤勞所得에서 控除되는 各種 控除額 引上(法 第61條·第61條의2)

勤勞所得에서 控除하는 必要經費的 控除에는 保險料控除·醫療費控除·勤勞學生控除와 勤勞所得控除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중 保險料控除와 勤勞所得控除를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保險料 控除	月 12,500원	年 150,000원	月 20,000원	年 240,000원
勤勞所得 控除	月 40,000원	年 480,000원	月 45,000원	年 540,000원
日庸勤勞者의 勤勞所得控除	日 8,700원		日 10,300원	

保險料控除와 關聯하여 控除對象이 되는 其他 家族의 範圍에 대하여 이번 改正에서 그 家族의 範圍를 居住者의 配偶者와 그 直系尊卑屬 및 兄弟姉妹로 定하여(令 第116條의 2) 執行上에 混亂이 없도록 하였다.

나. 所得控除額의 引上(法 第63條·第65條)

所得控除의 種類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種類에는 所得이 있으면 누구나 控除받을 수 있는 基礎控除와 配偶者 및 扶養家族의 有無에 따라 控除받는 配偶者控除와 扶養家族控除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 있어서는 所得控除額中 配偶者控除額과의 衡平을 爲하여 基礎控除額을 調整하고 家族數에 따라 控除받는 扶養家族控除額을 各各 年 6萬원씩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基礎控除額	月 20,000원	年 240,000원	月 25,000원	年 300,000원
配偶者控除	月 25,000원	年 300,000원	改正前과 같음	
扶養家族控除	月 15,000원	年 180,000원	月 20,000원	年 240,000원
障害者控除	月 10,000원	年 120,000원	改正前과 같음	

參考로 諸所得控除額의 年度別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區 分	'75	'76	'77	'78	'79	'80
勤勞所得控除	180,000	180,000	300,000	360,000	480,000	540,000
基礎控除	180,000	180,000	240,000	240,000	240,000	300,000
配偶者控除	120,000	120,000	180,000	240,000	300,000	300,000
扶養家族控除(3人)	180,000	360,000	360,000	360,000	540,000	720,000
5人家族基準	660,000	840,000	1,080,000	1,200,000	1,560,000	1,860,000
障害者控除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保險料控除			120,000	120,000	150,000	240,000
醫療費控除				240,000	240,000	240,000

7. 基本稅率 構造의 改編(法 第70條)

改正前 稅率下에서는 防衛稅와 住民稅를 包含한 總負擔水準이 最高 89.25%에 달하므로 高所得者들의 所得稅 回避를 招來하고 나아가서는 企業意慾을 減退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러한 稅率體系가 中產層에 대한 相對的인 高率負擔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現實이므로 健全한 社會階層으로 育成되어야 할 中產層의 勤勞意慾·企業意慾을 沮害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實情을 勘案하여 物價高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低所得層의 家計를 保護할 必要性을 認識하여 所得稅等 總 負擔을 最高 80%를 넘지않는 線에서 決定하고 月 70萬원 以下의 中·低所得層의 家計에 集中的인 輕減惠澤이 있도록 다음과 같이 基本稅率을 改編하였다.

가. 基本稅率(法 第70條)

改 正 前		改 正	
600千원以下	8 %	1,200千원以下	6 %
600千원超過	10	1,200千원超過	8
1,200	12	1,800	10
1,800	15	2,400	12
2,400	18	3,000	15
3,000	21	3,600	18
3,600	24	4,500	21
4,200	27	5,400	24
4,800	30	6,900	28
6,000	35	8,400	32
8,400	40	10,800	36
10,800	45	13,200	40
14,400	50	18,000	44
21,600	55	24,000	48
36,000	60	33,000	52
54,000	65	45,000	56
84,000	70	60,000	62

나. 日傭勤勞者에 대한 稅率(法 第144條)

改 正 前	改 正
8%	6%

이러한 稅率引下와 人的控除額의 引上으로 所得 階級別 稅負擔 및 階層別 平均輕減率을 改正前과 改正한 後의 負擔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勤勞所得階級別 稅負擔 比較

月給與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15萬 5千원	1,880	1.3	0	—	1,880	100
17 萬 원	3,760	2.2	1,058	0.6	2,702	71.9
20 〃	7,050	3.5	3,173	1.6	3,877	55.0
25 〃	13,390	5.4	6,698	2.7	6,697	50.0
30 〃	21,150	7.1	11,280	3.8	9,870	46.7
50 〃	69,790	14.0	43,005	8.6	26,790	38.4
70 〃	143,350	20.5	94,646	13.5	48,704	34.0
100 〃	300,263	30.0	215,666	21.6	84,597	28.2

※ 防·住包含

階層別 輕減率(現行對比)

(單位 : %)

區分	改正
30萬원以下	60.9
50萬원以下	52.6
70萬원以下	50.7
全體	47.2

8. 納稅節次 簡素化

가. 自動賦課對象者 範圍擴大(令 第164條, 令 附則 第8條)

所得稅法에서 2年間 正常的인 事業을 繼續 영위한 者로서 收入金額이 一定規模以下인 者에 대하여는 그 申告한 課稅標準은 當該年度 의 課稅標準으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決定制度를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이라 하며 이번 改正에서는 이 收入金額의 限度金額을 引上하여 自動賦課對象者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不動産所得	年間收入金額 500萬원以下	年間收入金額 600萬원以下
事業所得	2,000 〃	2,400 〃
事業所得中 保管業·代理·仲介·都給의 營業등	500 〃	600 〃

나. 書面調査決定對象擴大(法 第119條, 令 第167條, 令 附則 第8條)

備置·記帳한 帳簿가 없는 者에 대하여도 다음에 게기하는 者에 대하여는 當該 者가 備置한 去來에 관한 書類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書面審理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 納稅者에 대한 稅務 간섭을 排除, 租稅摩擦의 要因을 除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要件이 너무 엄격하여 受惠者가 거의 없어 이를 改正하여 對象者의 要件을 완화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象者	○ 官納 또는 軍納만을 영위하는 者의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全額을 計算書에 의하여 國稅廳長이 確認한 者.	改正前과 같음.
	○ 事業所得者로서 申告한 收入金額과 所得金額이 規模 및 業種別로 國稅廳長이 定한 一定率 以上인 者중 生産收率과 源泉徵收·附加價値稅去來徵收·資料報告등의 의무이행정도를 감안하여 國稅廳長이 指定한 者	事業所得者로서 附加價値稅去來徵收 및 資料報告등의 의무이행정도를 감안하여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者

이와 같은 自動賦課對象者의 限度金額 引上과 書面調査決定 對象擴大에 關聯하여 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은 이 規定은 1979年 歸屬所得부터 遡及하여 適用된다는 것이다.

9. 接待費限度 縮小(法 第50條)

法人稅篇 參照

10. 其　　他

가. 代理源泉徵收 範圍調整(法 第142條)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 對象이 되는 所得을 支給하는 者이나 改正前 規定은 例外的으로 外國人으로부터 源泉徵收 對象이 되는 金額의 支給을 委任받은 경우에는 當該委任을 받은 者가 源泉徵收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改正하여 源泉徵收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委任을 받은 자로 하여 內國人의 代理 源泉徵收의 경우도 包含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代 理 源 泉 徵 收	外國에 있는 外國人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源泉徵收 對象 所得金額의 支給을 委任받아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支給하는 者.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代理하거나 그 委任을 받은 者.

나. 少額株主 範圍調整(法 第144條)

少額株主가 支給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 5% 源泉徵收後 分離課稅를 하며, 其他 많은 稅制上의 惠澤이 있으나 改正前 所得稅法에서는 大株主와 特別關係가 있는 少額株主도 少額株主로 判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法人稅法上의 少額株主 範圍와 衡平이 어긋날 뿐 아니라 資產所得에 대하여 合算課稅하는 趣旨에 비추어 볼 때에도 不合理하므로 이를 改正하여 大株主와 特殊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少額株主로 보지 아니 하였다. 여기에서 特殊關係가 있는지의 判定은 所得稅法上 不當行爲 計算否認을 하는 特殊關係者에 의한다.

다. 漁村契의 配當金分離課稅(法 第144條)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 5% 源泉徵收後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漁村契로부터 받는 配當所得	25% 源泉徵收後 綜合課稅	5% 源泉徵收後 分離課稅

라. 課稅標準 決定猶豫範圍擴大(法 第129條)

課稅標準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 年度 7月 31日까지 當該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도록 되어 있고 例外的으로 實地調査決定을 하는 경우에만 課稅標準의 決定을 猶豫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改正前 規定을 改正하여 書面 調査決定에 대하여도 課稅標準의 決定를 猶豫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事業場別 收入金額 決定時期調整(令 第159條)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이 總收入金額을 다음 年度 6月 30日까지 事業場別·種目別로 決定하여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通報하여 所得金額 決定資料로 利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改正하여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總收入金額을 決定하도록 하였다.

바. 讓渡資產의 償却是否認(令 第90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固定資產의 償却是否認額 處理	固定資產을 讓渡한 경우에 各號別로 計算한 金額에 償却否認額이 있을 때에는 그 資產에 대한 償却否認額은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固定資產을 讓渡한 경우에 各號別로 計算한 金額에 償却否認額이 있을 때에는 그 資產에 대한 償却否認額을 限度로 하여 各號別 償却否認額을 소멸시키고 그 資產에 대한 是認不足額은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事　例>

區　　分	A 資 產	B 資 產	C 資 產	各號別合計
是否認額	+100	△50	+10	+60

① A資產讓渡(讓渡한 資產의 償却否認額이 各號別 償却否認額을 超過하는 경우)A資產의 償却否認額 100을 限度로 하여 各號別 償却否認額 50을 소멸시켜 各號別 償却否認額을 0으로 한다

② B資產의 讓渡(讓渡한 資產에 是認不足額이 있는 경우)
B資產의 是認不足額 50은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③ C資產의 讓渡(讓渡한 資產의 償却否認額이 各號別 償却否認額에 未達하는 경우)
C資產의 償却否認額 10을 限度로 하여 各號別 償却否認額 50을 소멸시켜 各號別 償却否認額을 40으로 한다.

사. 移越缺損金 控除範圍調整(令 第113條)

移越缺損金은 그後 年度의 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控除하도록 되어 있는바 改正前의 規定은 먼저 發生한 移越缺損金부터 순차로 當該所得別로 控除한 後에도 控除하지 못한 移越缺損金은 不動產·事業·配當·利子·勤勞·其他 所得金額順으로 控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當該所得別 즉 事業所得計算時 發生한 移越缺損金은 事業所得에서, 不動產所得 計算時 發生한 移越缺損金은 不動產所得에서만 控除하도록 하였다.

아. 擬制配當 範圍調整(令 第50條)

擬制配當을 計算함에 있어서 法人稅法 施行令 規定에 의하여 合併交付金으로 보는 包含 株式取得價額을 合併後 新設法人 또는 合併法人으로부터 받은 資產의 總額에 包含되도록 하였다.

※ 抱合株式 : 法人稅篇 參照

자. 職業訓練施設의 特別償却(令 第92條)

法人稅篇 參照

차. 團體退職保險定義(令 第60條)

法人稅編 參照

카. 公課金 範圍擴大(令 第100條)

法人稅篇 參照

타. 寄附金의 範圍調整(令 第103條)

法人稅篇 參照

파. 臨時投資稅額 控除對象 擴大(令 第130條의2)

法人稅篇 參照

讓 渡 所 得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讓渡價額에서 取得價額 其他 必要 經費를 控除하여 課稅하며 이 경우 讓渡·取得價額은 實地 去來價額에 의하여 決定함이 原則이며 實地 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 限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所在하는 資產에 대하여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基準時價에 의하고 其他의 地域에 所在하는 資產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의 登錄稅 課稅時價基準額을 基準時價로 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特定 地域에 所在하는 資產에 대한 基準時價의 策定 및 納稅者의 申告가 없어 實地去來價額을 알지 못하는 경우 實地去來價額의 調査確認過程에 있어서 納稅者와의 摩擦等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問題點을 解消하는 方向에서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方法을 改善하였다.

1. 基準時價의 決定方法改善(令 第115條)

改正前의 規定에 의하면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을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基準時價로 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取得當時는 特定地域이 아니었으나 特定地域으로 되는 경우 또는 特定地域에 대한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된 價額에 의하여 課稅하는 制度 實地 以前에 取得한 경우등은 讓渡價額을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된 價額으로 하는 때에도 取得價額은 地方稅法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으로 하여야 했다.

이번 改正을 통하여 取得當時 特定地域에 대한 倍率이 없는 것은 地價上昇率에 의하여 換算한 價額을 取得當時의 基準時價로 하도록 하였다.

2.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方法改善(令 第170條)

가. 實地 去來價額에 의한 所得計算의 範圍限定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課稅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改正前에는 納稅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政府가 讓渡者 및 取得者를 相對로 하여 實地去來價額을 調査·確認하여 課稅하였다. 그러나 執行過程에서 納稅者들의 非協助로 因하여 實地去來價額의 確認이 不可能하거나 또 一部 實地去來價額이 確認되는 경우에도 實地로 課稅는 基準時價에 의하여 課稅하는 등 課稅上의 實益이 없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다음에 當該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讓渡·取得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여 決定하도록 함으로써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課稅範圍를 制限하였다.

①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및 確定申告를 함으로써 實地去來價額이 確認되는 경우

② 國家·地方自治團體·其他 法人과의 去來에 의하여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實地去來價額이 確認되는 경우

③ 資產讓渡差益 決定通知書를 받은 居住者가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實地去來價額를 證

明할 수 있는 證憑書類를 提出한 경우

④ 國稅廳長이 地域에 따라 정하는 一定規模 以上의 去來와 不動產投機의 抑制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去來에 있어서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實地去來價額이 確認되는 경우

따라서 앞으로의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는 調査公務員의 裁量의 여지가 없이 實地去來價額이 確認되는 경우와 納稅者에 대한 不利益除去를 위한 경우 및 投機抑制를 위한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課稅는 認定되지 않는 것이다.

나. 讓渡·取得價額의 決定基準統一

改正前에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課稅에 있어서 取得價額은 基準時價를 基準으로 하고 讓渡價額은 實地去來價額을 기준으로 하여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課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改正에서는 이를 改正하여 讓渡 또는 取得價額中 어느 하나를 實地去來에 의하여 決定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基準時價에 의하여 決定하도록 함으로써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의 算定基準 및 必要經費의 算定基準이 되는 讓渡·取得價額을 하나로 統一適用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改正內容과 關聯하여 留意하여야 할 事項으로서, 制限된 範圍內에서 實地去來價額을 基準으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讓渡·取得價額中 어느 하나의 實地去來價額이 調査·確認되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를 基準時價에 의하여 課稅하는 때에는 課稅所得金額을 正確히 計算할 수 없으므로 이번 改正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讓渡日로부터 取得日間의 地價上昇率等에 의하여 그 實地去來價額을 換算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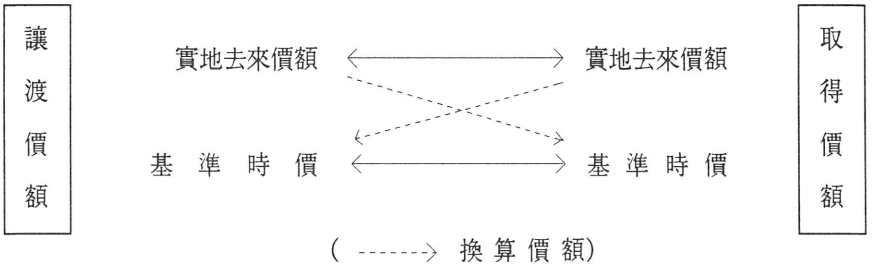

3. 未登記讓渡除外資產 範圍擴大(令 第121條의2, 令 附則 第6條)

未登記讓渡資產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稅率을 80%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各種 非課稅·減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경우에도 未登記讓渡資產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未登記讓渡 除外 資產이라 하며 이번 令改正時 1世帶 1住宅으로서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지 아니하여 登記가 不可能한 資產을 未登記讓渡除外 資產에 追加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未登記讓渡 除外 資產	○ 割賦 또는 延拂로 取得한 資產으로서 그 契約 條件에 의하여 讓渡當時 登記가 不可能한 資產 ○ 法律 또는 法院의 決定에 의하여 讓渡當時 登 記가 不可能한 資產 ○ – 8年以上의 自耕農地 – 農地의 交換 分合 – 農地의 代土 <新 設>	改正前과 같음. 改正前과 같음. 改正前과 같음. ○ 1世帶1住宅으로서 建 築許可를 받지 못하여 登記가 不可能한 資產

이와 같이 未登記 讓渡 除外資產에 追加된 無許可 1世帶1住宅에 대한 非課稅惠澤은 1980年 1月 1日 以後 讓渡하는 것뿐만 아니라 1979年 중에 讓渡한 것에 대하여도 遡及하여 適用된다.

4. 取得時期의 調整(法 第70條)

讓渡所得稅는 投機抑制를 위하여 讓渡하는 資產의 保有期間의 長·短에 따라 稅率을 달리하고 있다. 즉 保有期間이 2年以上인 長期 保有資產은 50%,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短期保有資產은 70%로 되어 있다.

그러나 相續資產의 경우에는 例外規定이 없어 被相續人이 保有하고 있던 期間은 除外되어 相續人이 取得한 날 즉 相續開始日로부터 取得日을 起算함으로써 投機抑制와 本來의 目的에 어긋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改正하여 相續받은 資產에 대한 保有期間의 計算은 被相續人이 當該 資產을 取得한 날로부터 起算하도록 하였다.

法 人 稅 法

〔要 約〕

租稅行政의 合理化를 爲하여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고, 企業의 過多消費支出을 抑制하기 爲하여 接待費의 損金限度를 縮小하여 證券市場育成을 爲한 稅制上의 支援을 強化하고 其他 現行法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가. 法人稅의 申告納付制度의 採擇

○ 申 告

○ 決定 및 更正

○ 誠實申告法人制度廢止

나. 證券市場育成을 爲한 稅制支援強化

○ 機關投資者 範圍擴大

○ 機關投資者의 配當所得 益金不算入

○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非課稅

다. 接待費 損金限度 縮小

라. 中間豫納稅額 調整

마. 綠色申告法人要件 強化

바. 法人稅의 物納

사. 加算稅制度의 強化

○ 過少申告加算稅

○ 未納付加算稅

아.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 申告納付制度의 採擇

○ 稅 率

○ 加算稅

○ 包合株式

자. 其 他

○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調整

○ 團體退職保險定義

○ 技術輸出所得非課稅

○ 公課金 範圍擴大

○ 職業訓練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 外國納付稅額控除範圍調整

○ 寄附金의 範圍調整

○ 臨時投資稅額 控除對象 擴大

○ 特別消費稅 非課稅節次

1. 法人稅의 申告納付制度 採擇

이번 稅法改正에서 稅制上 重要한 것은 法人稅法에 있어서 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租稅制度는 直接稅에 있어서 綜合所得稅制의 導入과 間接稅에 있어서 附加價値稅制의 導入으로 近代的인 租稅制度를 確立하였으나 稅政風土는 아직도 相互不信속에 稅務調査와 認定課稅를 爲主로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번에 法人稅法에 있어서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하게 된 것은 이러한 納稅風土를 改善하여 相互信賴속에 稅金을 주고받는 明朗한 納稅風土를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申告納付制度는 納稅者를 信賴하고 納稅者自身이 計算하여 申告한 金額으로 納稅義務(課稅標準과 稅額)를 確定하여 租稅에 關한 法律關係를 終了하고 年例的인 稅額調査를 排除하는 制度이다.

가. 法人稅課稅標準申告(法 第26條, 令 第82條)

申告納付制를 採擇함으로써 納稅者가 申告하는 課稅標準의 正確性이 더욱 要求되었다. 따라

서 納稅者가 申告한 課稅標準의 正確性을 確認할 수 있도록 稅務調整計算書等 各種 添附書類를 定하였다.

※ 課稅標準申告書의 添附書類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必須的添附書類	○ 貸借對照表 ○ 損益計算書 ○ 剩餘金計算書	○ 貸借對照表 ○ 損益計算書 ○ 利益剩餘金處分(缺損金處理)計算書 ○ 利益剩餘金 및 資本剩餘金明細書 ○ 稅務調整計算書
其他添附書類	○ 合計殘額試算表 ○ 剩餘金處分計算書	○ 財務部令으로 定하는 書類

※ 稅務調整計算書

稅務調整計算書는 企業이 스스로 作成하여 提出하여도 무방하나 다음의 경우는 꼭 公認會計士나 稅務士가 作成하여야 한다.

Ⅰ) 綠色申告法人의 경우

Ⅱ)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正確한 調整 또는 誠實한 納稅를 爲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경우

그러나 綠色申告法人이 公認會計士나 稅務士가 作成한 稅務調整計算書를 添附하지 아니하고 申告한 경우에는 綠色申告로 보지 아니하며 一般法人中 公認會計士, 稅務士가 作成한 稅務調整計算書를 添附하여 申告하여야 할 法人이 添附하지 아니한 경우는 租稅犯處罰法에 依하여 處罰받게 된다.

勿論 이때에 稅務調整計算書 自體를 添附하지 아니한 때에는 申告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 決定 및 更正(法 第32條)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하였다고 하여 모든 稅務調査가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申告納付制度下에서도 租稅에 關한 國家의 一般的인 質問調査權은 恒常 留保되고 있는 것이며, 단지 納稅義務를 確定하기 爲한 모든 法人에 대한 年例的인 稅務調査만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納稅者가 申告한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거나 支給調書나 計算書의 全部 또는 一部의 提出이 없는 때에는 申告에 의하여 確定된 課稅標準을 更正하여 脫漏稅額을 追徵하게 되며, 또한 全혀 申告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國家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 "支給調書나 計算書의 未提出"은 그 事實自體만으로 更正事由가 되는 것이 아니며 更正을 爲한 調査事由가 될 뿐이다.

다. 誠實申告法人制度廢止(法 第33條, 令 第92條의2)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기 爲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一定率以上 申告한 法人을 誠實申告法人으로 指定하여 實地調査를 排除하고 書面調査로 決定하도록 하는 誠實申告法人制度는 申告納付制度의 採擇으로 그 存置意義가 喪失되었으므로 이를 廢止하였다.

2. 證券市場浮揚을 爲한 稅制支援強化

가. 機關投資者範圍擴大(法 第22條, 令 第67條의3)

少額株主의 判定 및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金을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機關投資者範圍에 證券會社를 追加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機關投資者範圍	○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改正前과 같음
	○ 銀　行	〃
	○ 保險會社	〃
	<新　設>	○ 證券會社

나. 機關投資者의 受入配當金 益金不算入(法 第15條)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金額은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만, 寡占株主로서 支配를 目的으로 出資하고 있는 경우, 당해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所得金額은 課稅한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益金不算入	<新 設>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 다만, 寡占株主로서 支給받는 配當所得은 除外

다. 再評價積立金 無償株配當課稅除外(法 第19條)

內國法人의 增資를 誘導하여 企業의 對內外的인 公信力을 提高하고 또한 證券市場의 活性化를 爲하여 再評價積立金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을 配當의 擬制에서 除外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接待費限度의 縮小(法 第18條의2)

企業의 過多한 消費支出을 抑制하기 爲하여 接待費限度를 縮小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基礎金額	100萬원	合計額	300萬원	合計額
資本金(50億限度)	2%		2%	
收入金額	0.4%		0.2%	

위와 같이 接待費 限度를 全體的으로 約 25% 水準 縮小하였으나 中小企業은 基礎金額을 100萬원에서 300萬원으로 引上함으로써 오히려 限度가 增加하였다.

接待費限度額比較

資 本 金	改 正 前	改 正	比 率
5千萬원	3,400千원	4,070千원	119.7%
5億	25,000	20,000	80.0〃
20億	96,000	71,000	73.9〃
50億	241,000	173,000	71.8〃
80億	324,000	215,000	66.4〃
100億	381,000	243,000	63.8〃
150億	521,000	313,000	60.1〃
200億	660,000	383,000	58.0〃

※ 外形은 資本金의 7倍

4. 中間豫納의 調整(法 第30條·第38條)

가. 中間豫納 稅額調整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一般原則	事業年度가 6月을 초과하는 內國法人(非營利法人除外)은 6月間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直前事業年度 法人稅(또는 直前事業年度 申告한 法人稅)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事業年度月數로 나눈 金額에 6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中間豫納期間 경과후 30日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事業年度가 6月을 초과(合併의 경우를 除外한 新設法人의 最初의 事業年度除外)하는 內國法人(非營利法人除外)은 6月間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直前事業年度의 法人稅로 確定된 算出稅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事業年度月數로 나눈 金額에 6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中間豫納期間經過 30日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直前事業年度에 減免된 法人稅額 ○ 直前事業年度源泉徵收稅額 ○ 直前事業年度隨時賦課稅額	○ 直前事業年度에 減免된 法人稅額(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除外) ○ 改正前과 같음 ○ 〃
中間豫納推計納付對象	納付할 法人稅가 없는 法人 및 新設法人(合併으로 因한 것 除外)과 當該 中間豫納期間의 收入金額이 直前事業年度 月平均收入金額에 6을 곱한 金額의 1/2以下인 法人	納付할 法人稅가 없거나 中間豫納終了日까지 確定되지 않은 경우를 包含하여 모든 內國法人

改正前 中間豫納制度와 다른点은 다음과 같다.

① 合併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後 最初의 事業年度가 6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中間豫納을 排除하였다.

② 課稅標準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中間豫納 終了日까지 法人稅算出稅額이 確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中間豫納期間을 1事業年度로 보고 中間豫納稅額을 計算한다.

③ 中間豫納稅額을 算出하기 爲하여 直前事業年度 法人稅(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金額인 減免된 法人稅額에서 控除되는 것을 減免된 法人稅로 보지 아니 하였다.

④ 또한 直前事業年度의 法人稅를 基礎로 算出한 中間豫納稅額보다 당해 中間豫納期間을 1事業年度로 보아 算出한 中間豫納稅額이 적은 경우에는 申請의 節次가 必要없이 當該 中間豫納期間을 1事業年度로 보아 算出한 中間豫納稅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中間豫納稅額으로 納付할 수 있다.

(改正前은 中間豫納收入金額이 直前事業年度 月平均收入金額에 6을 곱한 收入金額의 1/2以下인 경우에만 中間豫納推計額으로 納付할 수 있다.)

5. 綠色法人要件強化(法 第26條의2, 令 第83條)

가. 綠色申告法人 範圍縮小

改　正　前	改　正
○ 公開法人 ○ 上場法人 ○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政府가 資本金을 50%以上 出資한 法人 ○ 政府의 承認을 받은 法人	○ 政府의 承認을 받은 法人

즉 改正稅法에서는 政府의 承認을 받은 法人만을 綠色申告法人으로 하고 있다.

나. 要件強化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課稅標準差額	○ 政府가 調査決定한 所得金額의 10/100에 未達(2年間 合計)	① 政府가 更正한 所得金額의 5/100에 未達(2年間 合計) ② 事業年度別로 更正한 所得金額의 7/100에 未達 ①②의 要件 同時에 充足할 것
支給調書計算書의 未提出金額 및 不分明한 金額	2年間 提出하여야 할 支給調書計算書의 15/100 未滿	2年間 提出하여야 할 支給調書計算書의 10/100 未滿

<適 用 例>

1980. 1. 1 當時의 綠色申告法人은 改正稅法에 의하여 資格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6. 法人稅의 物納制度新設(法 第31條의2, 令 第91條의2)

內國法人이 金錢으로 法人稅를 納付하기 困難한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政府의 承認을 얻어 韓國土地開發公社가 發行하는 土地開發債券으로 法人稅를 納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要　件

① 韓國土地開發公社에 양도한 不動產의 代金으로 交付받은 것일 것.
② 不動產을 양도한 事業年度의 法人稅額(加算稅 除外, 特別附加稅 包含)이 1,000萬원을 超過하는 法人일 것.
③ 物納을 할 수 있는 法人稅額은 韓國土地開發公社에 讓渡한 不動產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을 限度로 한다.

즉 讓渡差益에 대하여 中小企業은 中小企業稅率, 一般法人은 一般法人稅率, 公開法人은 公開法人稅率을 各各 適用하여 算出한 法人稅額을 限度로 하는 것이다.

나. 評　價

土地開發債券으로 法人稅의 物納을 認定하는 경우 그 價額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問題가 되겠다. 그래서 同債券의 評價는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다.

① 上場時
物納申請日前日 前 1個月間에 公表된 每日의 證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去來實績의 有無를 不問한다)의 平均額과 申請日前日의 證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中 낮은 價額

② 非上場 時
發行價額에 申請日前日까지의 未收利子相當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다. 物納申請과 承認

法人稅物納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課稅標準 申告期限 10日前까지 申請하여야 하며 同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申告期限前日까지 承認與否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日前日까지 通知가 없는 경우에는 承認한 것으로 본다.

라. 物納의 中止

歲入 또는 通貨調節上 必要한 경우에는 法人稅의 物納의 承認을 財務部長官이 中止할 수 있다.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納付하는 分부터 適用

7. 加算稅制度의 強化

申告納付制度의 成敗를 가름할 納稅者의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기 爲하여 納稅者의 故意的인 過少申告와 過少納付를 防止하도록 加算稅制度를 改正前보다 한층 強化하여 不誠實한 申告에 대하여 制裁를 加하도록 하였다.

가. 過少申告加算稅(法 第41條, 令 第113條)

改 正 前	改 正
過少申告所得金額(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와 期間損益計算 差異除外)에 該當하는 算出稅額의 30/100	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와 期間損益計算差異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의 10/100 ② 過少申告所得金額中 ①에 해당하는 部分을 除外한 金額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의 30/100

※ 改正前 過少申告加算稅適用을 받지 아니하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差異로 發生한 課稅申告所得에 대하여 改正된 稅法에서는 10%의 過少申告加算稅를 適用하여 申告納付制度轉換에 따른 課稅所得의 脫漏를 防止하도록 하였다.

나. 未納付加算稅(法 第41條, 令 第114條)

改　　正　　前	改　　正
未納付稅額의 10/100	○ 未納付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 ○ 利子計算期間(未納付期間) ① 告知의 경우 自進納付期限으로부터 告知日까지의 期間 ② 自進納付하는 경우 自進納付期限으로부터 納付日前日까지의 期間

改正前에는 未納付期間에 關係없이 一律的으로 未納付稅額의 10%相當額을 未納付加算稅로 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未納付期間에 따라 未納付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年20%)의 利子相當額을 未納付加算稅로 徵收하도록 하였다.

8.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가. 申告納付制度의 採擇(法 第46條·50條)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에 있어서도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였다.

따라서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課稅標準과 稅額決定規定이 全面的으로 改正되었으나 그 內容은 앞에서 說明한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 課稅標準決定規定과 同一함으로 說明은 省略한다.

나. 稅　率(法 第45條)

中小企業의 淸算所得에 대하여는 中小企業에 대한 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淸算所得分부터 適用

다. 加算稅新設(法 第52條의 2)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에 있어서도 申告納付制度의 採擇에 따라 無申告加算稅, 過少申告加算稅, 未納付加算稅를 適用하도록 하였다. 다만,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라. 包合株式(令 第17條의 2)

① 포함株式의 意義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取得한 被合併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

② 淸算所得 計算特例

包合株式이 있는 경우에 그 取得으로 因하여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이 不當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包合株式 取得價額을 合併交付金으로 보고 淸算所得을 計算한다.

이 경우 당해 包合株式에 대하여 合併法人의 株式을 交付한 때에는 包合株式取得價額中 당해 交付株式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合併交付金으로 한다.

왜냐하면 交付한 株式의 價額은 現行規定上 淸算所得에 合算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包合株式에 대한 淸算所得計算特例規定을 두게된 것은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所得稅 課稅制度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現行制度를 利用하여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負擔을 회피할 目的으로 事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을 買入하여 合併하는 變態的인 合併을 規制하기 위한 것이다.

9. 其 他

가. 非營利法人의 課稅事業 縮小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課稅事業이　아닌 事業	地籍法의 規定에 의한 測量과 船舶安全法의 規定에 의한 檢査	地籍法의 規定에 의한 測量과 國家로부터 委任을 받아 行하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船級協會가 行하는 檢査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

나. 團體退職保險定義(法 第9條, 令 第13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團體退職保險 定義	使用人의 退職을 保險金의 支給事由로 하고 使用人을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	使用人의 退職을 保險金의 支給事由로 하고 使用人을 被保險者와 受益者로 하는 保險

團體退職保險에 대한 保險料는 福利厚生費로서 法人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損金으로 認定하고 있다.

이것은 從業員의 退職金支給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改正時 使用人을 保險受益者로 하는 退職保險만이 稅法上 團體退職保險임을 明白히 하였다.

다. 其　他

가) 優秀發明에 대한 稅制支援

優秀發明을 促進하고 技術開發意慾을 鼓吹하기 위하여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을 外國에 讓渡하거나 貸與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였다.

라. 公課金의 範圍調整(法 第16條, 令 第25條)

① 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事業基金

② 石炭需給調整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의한 石炭需給安定基金
法人의 損金이 되는 公課金의 範圍에 追加하였다.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

마. 職業訓練施設에 대한 特別償却(法 第16條, 令 第15條)

우수한 技能人力의 養成을 爲하여 職業訓練施設中 事業別固定資產의 耐用年數表上의 設備(運休中인 機械設備除外)에 대하여는 技術開發을 위한 硏究, 試驗用施設과 같이 처음 1回에 限하여 取得價額의 50%를 一時 償却할 수 있도록 하였다.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投資하는 分부터 適用

바. 外國納付稅額控除 範圍調整(法 第24條의3)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控除範圍	納付한 外國法人稅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外國法人稅額

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는 同一所得에 대한 重複課稅를 調整하기 爲한 制度로 從前에는 法人稅申告時까지 納付한 外國法人稅額만을 控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法人稅申告時까지 賦課決定된 外國法人稅額은 아직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控除하도록 하였다.

사. 寄附金의 範圍調整(法 第18條 , 令 第40條)

現行은 法人이 所有資產을 低價로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寄附金으로 하고 있으나 高價買入의 경우에도 그 差額을 寄附金으로 보도록 하고 다만, 低價讓渡 高價買入에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寄附金의 範圍	○ 法人이 所有資產을 正常價格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不當行爲計算否認除外)의 그 讓渡差額	○ 法人이 正常한 事由없이 正當價格보다 낮은 價額으로 資產을 讓渡하거나 正常價額보다 높은 價額으로 資產을 買入한 경우의 그 差額(不當行爲計算否認除外)

아.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擴大(法 第24條의5, 令 第70條의2)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에 政府의 시멘트工業의 유연탄 活用計劃에 따라 燃料施設을 代替하기 위한 投資를 包含시켜 投資額의 8%(國產資材 使用時 : 10%)를 法人稅에서 控除하도록 하였다.

※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

改 正 前	改 正
技術開發을 爲한 附設硏究所設置를 爲한 投資	改正前과 같음
<新 設>	政府의 시멘트工業有煙炭活用計劃에 따른 燃料施設代替投資

<適 用 例>

80. 1. 1以後 最初로 投資하는 分부터 適用

자. 特別附加稅 非課稅節次(法 第59條의3)

特別附加稅가 非課稅되는 것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申請하는 경우에만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① 2年以上 繼續 가동한 工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讓渡하는 土地등

② 5年以上 繼續하여 經營한 牧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讓渡하는 土地등

<適 用 例>

80. 1. 1 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事業年度에 土地等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

相 續 稅 法

[要 約]

稅負擔의 適正化를 기하기 위하여 相續稅 및 贈與稅의 稅率構造를 全面改編하고 相續稅의 人的控除額을 引上하였다.

가. 相續稅調査 決定官署調整
나. 非居住者의 事業上 債務控除
다. 稅率引下 및 人的控除額 引上
라. 年賦延納 調整
  ○ 年賦延納·物納 許可基準額 引上
  ○ 年賦延納 利子率 調整
마. 合算課稅와 控除稅額 調整
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의 利益範圍 調整

1. 相續稅調査 決定 官署調整(令 第1條)

相續稅·贈與稅의 調査決定은 現行令에는 稅務署長으로 되어 있는 것을 地方國稅廳長도 調査 決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非居住者의 事業上 債務控除(法 第4條)

被相續人의 사망당시 國內에 그 事業場이 있는 경우 備置記帳한 帳簿等에 의하여 확인되는 事業上의 債務를 相續財産 價額에서 控除하여 相續稅 課稅價額을 計算하도록 하였다.

3. 稅率引下 및 人的控除額 引上

가. 稅率引下(法 第14條·第3條의2)

적정한 課稅를 통하여 相續稅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相續稅率을 引下하였으며 이에 따라 贈與稅率도 引下 調整하였다.

○ 相續稅率

改正前		改正	
15 단 계		15 단 계	
500千원 이하	10 %	1,000 千원 이하	7 %
500 〃 초과	12	1,000 〃 초과	10
1,000 〃 〃	15	3,000 〃 〃	13
3,000 〃 〃	20	5,000 〃 〃	17
5,000 〃 〃	25	7,000 〃 〃	21
7,000 〃 〃	30	10,000 〃 〃	25
10,000 〃 〃	35	13,000 〃 〃	29
15,000 〃 〃	40	19,000 〃 〃	33
20,000 〃 〃	45	25,000 〃 〃	37
30,000 〃 〃	50	35,000 〃 〃	42
50,000 〃 〃	55	50,000 〃 〃	47
70,000 〃 〃	60	70,000 〃 〃	52
100,000 〃 〃	65	100,00 〃 〃	57
300,000 〃 〃	70	300,000 〃 〃	62
500,000 〃 〃	75	500,000 〃 〃	67

○ 贈與稅率

14 단 계		14 단 계	
300 千원 이하	10 %	500 千원 이하	7 %
300 〃 초과	15	500 〃 초과	11
500 〃 〃	20	1,000 〃 〃	15
1,000 〃 〃	25	3,000 〃 〃	19
3,000 〃 〃	30	5,000 〃 〃	23
5,000 〃 〃	35	7,000 〃 〃	27
7,000 〃 〃	40	10,000 〃 〃	32
10,000 〃 〃	45	13,000 〃 〃	37
15,000 〃 〃	50	16,000 〃 〃	42
20,000 〃 〃	55	22,000 〃 〃	47
30,000 〃 〃	60	30,000 〃 〃	52
50,000 〃 〃	65	40,000 〃 〃	57
100,000 〃 〃	70	60,000 〃 〃	62
200,000 〃 〃	75	100,000 〃 〃	67

나. 人的控除額의 引上(法 第11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基 礎 控 除	800 萬원	改正前과 같음
配 偶 者 控 除	800 〃	1,600 萬원
未 成 年 者 控 除	1年 24 〃	改正前과 같음
年 老 者 控 除	100 〃	〃

※ 5人家族基準 人的控除額

未成年者 : 2人 ┌ 12歲　　年老者 : 1人
　　　　　└ 8歲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基 礎 控 除	800 萬원	800 萬원
配 偶 者 控 除	800 〃	1,600 〃
未 成 年 者 控 除	480 〃	480 〃
年 老 者 控 除	100 〃	100 〃
控 除 額 計	2,180 〃	2,980 〃

이러한 稅率引下와 人的控除額의 引上으로 인하여 相續稅負擔輕減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相續稅 負擔輕減

(單位 : 千원)

區分 /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輕減率
30,000	1,670	5.6	14	0.1	1,656	99.2
40,000	5,240	13.1	1,550	3.9	3,690	70.4
50,000	9,650	19.3	4,386	8.8	5,264	54.5
60,000	14,560	24.3	7,894	13.2	6,666	45.8
70,000	19,560	27.9	11,854	16.9	7,706	39.4
80,000	24,970	31.2	16,064	20.1	8,906	35.7
100,000	36,380	36.4	25,474	25.5	10,906	30.0
120,000	48,380	40.3	35,874	29.9	12,506	25.8
150,000	67,790	45.2	52,484	35.0	15,306	22.6
200,000	100,290	50.2	80,984	40.5	19,306	19.3
250,000	132,790	53.1	109,484	43.8	23,306	17.6
300,000	165,290	55.1	137,984	46.0	27,306	16.5
400,000	234,200	58.6	198,494	49.6	35,706	15.2
500,000	304,200	60.8	260,494	52.1	43,706	14.4
1,000,000	678,110	67.8	594,004	59.4	84,106	12.4
2,000,000	1,428,110	71.4	1,264,004	63.2	164,106	11.5

② 贈與稅 負擔輕減

(單位：千원)

區分 /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輕減率
3,000	285	9.5	165	5.5	120	42.1
4,000	535	13.4	315	7.9	220	41.1
5,000	810	16.2	485	9.7	325	40.1
6,000	1,110	18.5	675	11.3	435	39.2
7,000	1,435	20.5	885	12.6	550	38.3
8,000	1,785	22.3	1,115	13.9	670	37.5
9,000	2,160	24.0	1,365	15.2	795	36.8
10,000	2,560	25.6	1,635	16.4	925	36.1
15,000	4,735	31.6	3,185	21.2	1,550	32.7
20,000	7,160	35.8	5,035	25.2	2,125	29.7
30,000	12,585	41.9	9,385	31.3	3,200	25.4
50,000	24,510	49.0	19,460	38.9	5,050	20.6
100,000	56,935	56.9	47,885	47.9	9,050	15.9
150,000	91,860	61.2	78,810	52.5	13,050	14.2
300,000	201,785	67.3	176,735	58.9	25,050	12.4
500,000	351,785	70.4	310,735	62.1	41,050	11.7
1,000,000	726,785	72.7	645,735	64.6	81,050	11.2

4. 年賦延納 調整

가. 年賦延納·物納 許可基準額 引上(法 第28條·第29條)

年賦延納이란 相續稅·贈與稅額이 일정액을 超過하는 때에는 稅額을 일시에 賦課한 후 연차적으로 納付하는 制度를 말하며, 物納이란 相續財産·贈與財産中 不動産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전체의 1/2을 초과하고 相續·贈與稅額이 일정액 以上이 되는 경우에는 그 相續·贈與財産에 포함된 不動産과 有價證券으로 相續稅를 納付할 수 있는 制度이다.

이번 改正에 있어서는 이러한 許可基準이 되는 金額을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年賦延納 基準金額	100 萬원	400 萬원
○ 物納許可 基準金額	60 萬원	240 萬원

나. 年賦延納 利子率 調整(法 第28條, 令 第27條의2)

年賦延納하는 相續稅 贈與稅에 대하여는 利子를 加算하여 納付하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에는 利子率이 100원에 대하여 日邊 4錢으로 되어 있던 것을 法人稅法에 규정하고 있는 利子稅의 利子率과 衡平을 고려하여 日邊 5錢5厘로 개정하였다.

5. 合算課稅와 控除稅額調整(法 第31條의3, 令 第40條의3)

3年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의 합계가 200萬원(친족공제 제외)以上이 될 때에는 合算하여 課稅하되 加算한 價額에 대한 旣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을 控除한 것을 稅額으로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서는 合算하여 課稅하는 경우 合算한 價額에 대한 算出稅額이 기왕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年內 贈與價額을 合算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이러한 경우는 稅率의 引下 人的控除額의 引上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改正 施行令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算出된 稅額을 한도로 하여 旣納付

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을 控除하도록 하고 3年內 贈與價額은 合算課稅하도록 하여 合算課稅排除 규정을 改正하였다.

<合算課稅時 控除할 稅額限度>

$$\text{控除稅額限度額} = \text{合算課稅算出稅額} \times \frac{\text{3年內 贈與價額}}{\text{3年內 贈與價額} + \text{當該贈與價額}}$$

6.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의 利益範圍調整(法 第34條의4, 令 第41條의3)

가. 新株 引受權 課稅

株主가 特殊關係에 있는 자에게 新株引受權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課稅問題가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特殊關係者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물론, 特殊關係가 없는 자도 利益을 받음)의 증여세 課稅問題에 대하여는 이번 改正時 명백히 하여 課稅하도록 하였다.

附加價値稅法

[要　約]

이번 改正된 附加價値稅制는 輸出財貨染色賃加工에 대한 零稅率適用節次를 簡素化하고, 藥師가 提供하는 調劑用役에 대하여 免稅를 하며, 施設投資에 대한 早期還給制度를 改善하는 한편 領收證에 대한 報償金支給制度를 廢止하는 等 部分的으로 納稅節次面을 改善하였다.

가. 輸出財貨染色賃加工에 대한 零稅率 適用節次를 簡素化함.
나. 藥師가 提供하는 調劑用役을 免稅對象인 醫療保健用役에 包含함.
다. 施設投資에 대한 早期還給節次를 簡素化함.
라. 領收證에 대한 報償金支給制度를 廢止함.

1. 納稅節次

附加價値稅法에서는 事業者가 輸出 및 施設投資時에는 早期還給받을 수 있다.

이러한 早期還給制度는 事業者의 資金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한 制度로서 現行 染色賃加工의 경우에는 Local L/C 開設分에 한하여 零稅率이 適用되고 있으며, 또한 施設投資의 경우에는 事業設備 投資計劃書를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 最終 3月 開始 10日前까지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케 함으로써 이에 따른 早期還給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改善하였다.

가. 輸出財貨染色賃加工의 零稅率適用(令 第26條第1項第2號)

輸出財貨染色賃加工에 대하여 現行令에서는 內國信用狀을 開設하는 경우에 한하여 零稅率이 適用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令에서는 內國信用狀 開設없이 輸出業者와 直接 染色賃加工 契約으로도 零稅率이 適用되도록 하여 納稅便宜를 도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나. 施設投資早期還給(令 第73條第6項)

施設投資의 早期還給制度에 있어서 現行令에서는 豫定申告 또는 課稅期間 最終 3月 開始 10日前까지 事業設備投資計劃書를 提出하게 되어 있으므로 短期投資 또는 事業設備投資計劃書 未提出로 인하여 早期還給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改善하여 豫定申告期間 또는 確定申告期間經過後 早期還給申告時에 事業設備投資 實績明細書를 提出하게 함으로써 早期還給에 따른 어려움을 除去하였다.

2. 免稅範圍의 調整

藥師가 提供하는 調劑用役을 醫療保健用役에 包含시켜 免稅로 하는 한편 陳列用標本 및 參考品等 輸入時 免稅되는 施設의 範圍가 現行令에서 具體的으로 列擧하고 있지 아니하여 改正令에서 이를 補完하였다.

가. 藥師가 提供하는 調劑用役의 免稅(令 第29條)

國民保健生活에 따른 稅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藥師가 提供하는 醫藥品調劑用役을 醫療保健用役에 包含시켜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나. 陳列用標本 및 參考品等의 輸入時 免稅되는 施設(規則 第12條의1)

陳列用標本 및 參考品·敎育用의 撮影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등을 다음 各號의 施設에서 使用되는 物品을 輸入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도록 규정하였다.

다 음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直營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관

3)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5) 수출조합전시관(상공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農加工産品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서울특별시에 개설한 전시관에 한한다)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3. 報償金支給制度의 廢止(令 第83條)

領收證주고받기 生活化를 위한 補償金 支給制度는 領收證에 대한 消費者의 關心提高를 위한 臨時的 誘引措置로서 어느정도 그 施行効果가 達成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領收證주고받기가 국민간에 生活化되기 위하여는 商去來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의 改善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報償金支給制度에 대한 費用과 人力을 적극적으로 弘報에 전환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국민의식구조를 改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廢止하는 것이다.

特別消費稅法

〔要　約〕

輸出用物品에 대한 免稅搬出節次를 簡素化하고 課稅物品의 範圍를 明確히 하였으며 其他 現行令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가. 輸出用原資材와 輸出物品에 대한 未納稅 또는 免稅搬出節次를 搬出承認制에서 搬出申告制로 轉換하였음.

나. 製造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課稅物品을 搬出하거나 課稅物品을 荷置場에 搬出하는 境遇(第2種物品으로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것)에는 特別消費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고 搬出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外國人專用販賣場 指定基準을 정하였음.

라. 課稅物品의 判定基準을 明瞭히 하였음.

마. 毛絲와 毛織物, 空氣調節機等에 대한 課稅範圍를 明瞭히 하였음.

1. 輸出用物品의 搬出節次 簡素化(令 第19條의2・第20條④)

가. 輸出用物品과 同 原資材를 搬出時에는 事前에 所管稅務署長의 免稅搬出 承認을 얻어야 하던 것을 改正令에서는 現行의 承認申請書에 준하는 內容의 搬出申告制로 轉換하여 申告만 하면 承認을 얻은 것으로 看做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現行과 같이 輸出用物品에 대하여 承認書 交付前에 搬出하는 物品에 대한 課稅問題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때 搬出申告書 提出時에는 현행과 같이 當該事實證明書를 添附하여야 하며 其他 搬入申告, 搬入證明 또는 用途證明을 提出하는 것은 現行과 같다.

나. 또한 同 物品에 대한 搬入證明 또는 用途證明의 提出期限은 免稅搬出承認時에 搬出地 所管稅務署長이 承認日字를 基準으로 3月의 範圍內에서 任意的으로 指定하던 것을 改正令에서는 搬出하는 날이 속하는 月의 翌月 1日부터 3月內에 到來하는 課稅標準申告書의 提出期限(例, 1月中에 搬出한 것은 2月 20日, 3月 20日 또는 4月 20日)까지로 그 提出期限을 單純化하였으며, 다만, 納稅保全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搬出申告日을 基準으로 3月의 範圍內에서 所管稅務署長이 別途로 指定한 날을 提出期限으로 함으로써 不當한 免稅搬出을 防止하도록 하였다.

2. 未納稅搬出對象調整(令 第19條③·④·⑤)

販賣場이나 製造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搬出하거나 課稅物品을 保管管理하기 위하여 荷置場에 搬出하는 物品中 第2種物品으로서 財務部令이 定하는 것은 特別消費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고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企業의 資金負擔解消와 物品의 需給調節을 可能하도록 하였다. 이 境遇 申請書에 添附하는 書類는 搬入者의 事業者登錄證 또는 荷置場設置申告確認書로 한다.

3. 外國人專用販賣場 指定(令 第28條①·③·④)

外國人專用販賣場指定申請時에는 貿易去來法上 輸出業許可證寫本을 添附하였으나 改正令에서는 이를 除外하고 外國人이 專用하는 賣店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政府의 許可 또는 登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當該許可證 또는 謄錄證寫本을 添附하여 提出토록 하며, 申請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指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外國人의 利用度가 낮다고 認定되는 場所에서 販賣場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

나. 販賣에 必要한 人員 및 物的施設이 具備되지 아니한 者

다. 申請日로부터 起算하여 過去 1年內에 國稅에 관한 犯則行爲를 한 者

라. 販賣場 經營에 必要한 資力 및 信用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認定된는 者

4. 課稅物品의 判定基準 明瞭化(令 第3條)

別表1 第2種에 該當하는 物品으로서 하나의 物品이 課稅物品과 非課稅物品으로 結合되어 있는 境遇의 當該物品의 課稅與否에 관한 判定은 그 特性 및 主用途에 의하여 하되, 이에 의하여 判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原價가 높은 것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課稅物品의 判定基準을 明瞭히 하였다.

5. 課稅物品의 範圍調整(令 第1條 別表1)

課稅物品中 毛絲와 毛織物, 特殊化粧品, 空氣調節機, 冷藏器, 電氣洗濯機, 텔레비전受像機, 錄音機, 電氣電熱利用器具, 高級時計, 映寫機와 撮影機, 氷菓類等에 대하여 範圍를 調整하거나 그 限界를 明瞭히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備 考
1. 5毛絲와 毛織物의 課稅對象을 毛의 含量이 100分의 40을 超過하는 것으로 함.	100分의 50을 超過하는것으로 함.	國際規格과 同一하게 함.
2. 特殊化粧品 마스카라, 洗毛料, 선향 훈향等 28個 品目課稅	洗毛料를 非課稅함 훈향(선향을 包含하며 人體用의 것만 課稅)	비누代替品으로 一般化粧品化 人體用의 것이 아닌 것은 除外
3. 空氣調節機 暖房溫風機와 冷房冷風機를 課稅	冷房冷風機中 室內溫度가 恒時 섭씨15度以下의 低溫貯藏倉庫用의 것으로 特殊製作된 것은 非課稅	流通構造의 近代化
4. 氷菓類 아이스크림, 아이스샤벳,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牛乳 또는 乳製品(代用粉乳를 包含)이 包含된 液體食品을 凍結한 것	牛乳 또는 乳製品 및 이들이 含有된 代用粉乳가 包含된 液體食品을 凍結한 것	代用粉乳의 範圍를 縮小

酒　稅　法

1. 酒類製造 및 販賣免許 申告期限設定

酒類製造 및 販賣免許의 申告期限을 3月로 規定하므로서 現行 相續稅法과 均衡을 維持하였다.(令 第19條)

2. 內國輸出業 許可制度 廢止에 따른 條文整理

現行 酒類의 內國輸出業者는 酒稅法上 規制外에 貿易去來法上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있어 行政의 重複規制를 피하기 위해 貿易去來法上의 許可制度를 廢止함에 따라 이에 關聯되는 規定을 整理하였다.(令 第32條第3號)

3. 內服藥의 原料로 酒精을 使用할 경우 免稅節次 合理化

醫療醫藥品用에 使用하는 酒精의 酒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酒精을 飮用하지 못하게 變性使用토록 되어있어 內服藥의 경우에는 變性酒精을 使用할 수 없는 實情이므로 法上免稅趣旨에 맞도록 免稅節次를 合理化하기 위해 現行 試藥用品 官需用品등에 使用하는 酒精과 같이 變性하지 아니하고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第39條第1項)

防 衛 稅 法

〔要 約〕

現存 國防力을 維持하고 이를 더욱 增強하기 위하여 防衛稅의 適用時限을 5年 延長하고, 所得稅등의 減免分 및 奢侈性 物品에 대한 防衛稅率을 引上하며 所得稅 및 法人稅에 賦課되는 防衛稅率이 單純 累進稅率構造임에 따라 發生되는 稅負擔의 不合理를 除去하기 위하여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함.

가. 防衛稅率의 引上
- ○ 所得稅分 法人稅分 防衛稅率 引上
- ○ 特別消費稅分 및 高級酒에 대한 防衛稅率 引上

나. 限界所得稅額 控除制度
- ○ 所得稅分 防衛稅
- ○ 法人稅分 防衛稅
- ○ 適用例

다. 防衛稅 適用時限

1. 防衛稅率의 引上(法 第4條)

稅率의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所 得 稅	課稅標準金額 年 840만원 이하 10%	〃
	課稅標準金額 年 840만원 초과 20%	〃 단, 所得稅가 減免되는 分은 當該稅率에 그 50%를 각각 가산함.
法 人 稅	各 事業年度所得 2억원 이하 20%	〃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各 事業年度所得	〃
	5억원 초과　25%	단, 法人稅가 減免되는 分은 該當稅率에 그 50%를 각각 가산함.
特別消費稅	20%	30%
酒　稅	10%	10%
	단, 高級酒는　20%	단, 高級酒는　30%

가. 所得稅分, 法人稅分 防衛稅率 引上

所得稅나 法人稅가 課稅되는 分에 대한 防衛稅率은 從前과 같으나, 所得稅나 法人稅가 減免되는 分에 대한 稅率은 50% 引上되었다. 따라서 所得稅가 減免되는 分에 대하여는 10%(所得稅 課稅標準金額 年 840萬원 超過時는 20%)에서 15%(30%)로, 法人稅가 減免되는 分에 대하여는 20%(各 事業年度所得 5억원 超過時는 25%)에서 30%(37.5%)로 引上되었다.

所得稅 또는 法人稅減免分이라 함은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減免 또는 控除받는 分을 말한다.

또 防衛稅法上 「租稅減免規制法」이라 함은 租稅減免規制法 第2條에 게기하는 法律을 包含하는 것으로서(防衛稅法 第2條第2項),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뿐만 아니라 同法 第2條에 게기한 稅法, 外資導入法,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關한 法律등에 의하여 所得稅나 法人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非課稅·減免 또는 控除되는 分도 改正된 稅率을 適用하여야 한다. 改正된 所得稅減免分 및 法人稅減免分에 대한 稅率은 改正防衛稅法의 公布日인 '79. 12. 28 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分 또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改正法律 附則 第2項·第3項) 따라서 所得稅의 경우는 '79課稅期間分부터, 事業年度가 12月末인 法人의 경우는 '79事業年度分부터 改正된 稅率을 適用하여야 한다.

그리고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나 法人稅는 그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 納稅義務가 成立하고, 그 稅額도 確定되는 것이므로, 防衛稅法 第8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나 法人稅가 減免되는 分에 대하여 防衛稅를 源泉徵收 納付하는 경우에 있어 引上된 所得稅減免分 및 法人稅減免分에 대한 防衛稅率은 改正法律의 施行日인 '79. 12. 28 이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나. 特別消費稅 및 高級酒에 대한 防衛稅率 引上

特別消費稅에 賦課하는 防衛稅率을 20%에서 30%로 引上하고, 酒稅에 賦課되는 防衛稅중 高級酒에 대한 防衛稅率을 20%에서 30%로 引上하였다. 高級酒라 함은 酒稅의 稅率이 100% 이상인 酒類(酒精은 除外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酒稅의 稅率이 100% 이하인 酒類와 酒精에 대한 防衛稅率은 從前과 같이 10%이다.

特別消費稅分 및 高級酒類에 대하여 改正된 防衛稅率은 1980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搬出·販賣·入場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適用된다.(改正法律 附則 第4項)

2.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法 第4條의2, 令 第3條)

法人稅나 所得稅는 超過累進稅率構造인 반면 그에 賦課되는 防衛稅率은 單純累進稅率構造임에 따라 特定所得階級의 경우 稅負擔의 不合理가 發生한다.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는 이러한 稅負擔의 不合理를 除去하기 위하여 新設된 制度이다.

<事 例>

①所得稅課標	月 700,000원	月 700,001원	月 710,000원
②所得稅	122,750	122,750	125,950
③防衛稅	12,275	24,550	25,190
④稅額計	135,025	147,300	151,140
⑤可處分所得(①~④)	564,975	552,701	558,860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稅課標가 70萬 1원인 경우의 可處分所得이 所得稅課標가 70萬원인 경우의 可處分所得보다 12,274원이 적다. 이와같이 可處分所得이 적은 理由는 所得稅課稅標準金額이 月 70萬원(年 840萬원)인 경우의 防衛稅率은 10%이나, 所得稅課稅標準金額이 月70萬원(年 84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의 防衛稅率은 20%로서 課稅標準金額은 1원 增加한 반면 防衛稅는 12,275원이 增加함에 따른 것이다. 즉 所得의 增加分보다 稅額의 增加分이 큰데 따라 發生한 것이다.

限界所得稅額控除制度는 이와같은 稅負擔의 不合理를 除去하기 위한 것으로서, 限界所得稅額 控除를 함으로써 적어도 所得이 많은 者의 可處分所得이 所得이 적은 者의 可處分所得보다 적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가. 所得稅分

所得稅課稅標準金額이 年 840萬원(月 70萬원)을 초과하는 者로서 所得稅課稅標準金額에서 所得稅算出稅額과 이에 賦課되는 防衛稅算出稅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金額(이하 "可處分所得金額"이라 한다)이 所得稅課稅標準金額이 年 840萬원(月 70萬원)인 경우의 可處分所得金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所得稅額에 賦課되는 防衛稅算出稅額에서 그 未達하는 金額을 控除한다.

그리고 '79課稅期間의 경우 所得稅法 第74條의4의 규정에 의한 臨時特別稅額 控除額이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所得稅算出稅額으로 하여 可處分所得金額을 계산한다.

<計 算 例>

所得稅課稅標準金額이 月 71萬원인 경우 防衛稅限界所得控除額은 다음과 같다.

① 所得稅課標가 月 70萬원인 경우의 可處分所得金額 ····· 564,975원
(70萬원 所得稅算出稅額 122,750원, 防衛稅算出稅額 12,275원)

② 所得稅課標가 月 71萬원인 경우의 可處分所得金額 ····· 558,860원
(71萬원 所得稅算出稅額 125,950원, 防衛稅算出稅額 25,190원)

③ 限界所得稅額控除額=①-② 따라서 所得稅課標가 月 71萬원인 경우의 防衛稅 限界所得稅額控除額은 6,115원(=564,975원-558,860원)이다.

나. 法人稅分

각 事業年度所得이 5억원을 超過하는 法人으로서 각 事業年度所得金額에서 法人稅算出稅額과 이에 賦課되는 防衛稅算出稅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후의 각 事業年度 所得金額이 5억원인 경우의 稅額控除後 各 事業年度所得金額에 未達하는 때에는 그 未達하는 金額을 法人稅에 賦課되는 防衛稅算出稅額에서 控除하여 주는 것이다.

<計 算 例>

各 事業年度所得金額이 5억 1천만원인 경우의 防衛稅限界所得控除額은 다음 表와 같다.

<計 算 例>

(單位 : 1,000원)

①各 事 業 年 度 所 得 金 額	500,000	510,000
②法 人 稅 課 標	500,000	510,000
③法 人 稅 算 稅	199,200	203,200
④防 衛 稅 算 稅	39,840	50,800
⑤稅額控除後各事業年度所得(①－③－④)	260,960	256,000
⑥限 界 所 得 稅 額 控 除 額	－	260,960－256,000 =4,960

그러나 限界所得稅額控除額은 各 事業年度所得이 일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法人에 따라 그 控除額은 달라진다.

즉, 限界所得稅額控除額은 各 事業年度所得金額이 同一한 경우라도 法人稅算出稅額이나 法人稅課稅標準金額 및 減免稅額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 점을 特別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適 用 例

限界所得稅額控除額을 改正法律 公布後 최초로 終了하는 課稅期間分 또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되므로 個人의 경우는 '79課稅期間分부터, 事業年度가 12月末 法人의 경우는 '79事業年度分부터 적용된다.

3. 防衛稅 適用時限

防衛稅適用時限을 1980年 12月 31日에서 1985年 12月 31日로 5年 延長하였다.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貯蓄의 적극적인 誘導와 資本市場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이 勤勞者 證券貯蓄稅額 控除制度를 신설하고 大衆交通難解消를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事業에 대하여 法人稅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政府經濟施策을 수행하기 위하여 稅制上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가. 所得稅의 免除 및 非課稅利子·配當所得의 範圍擴大

나. 住宅建設業者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事前減免

다.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等

라. 重要政策事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

마. 增資所得控除期限의 延長

바. 新技術 企業化事業의 範圍擴大

사. 버스旅客運送事業에 대한 法人稅免除

아. 間接稅의 免除

- ○ 印紙稅의 免除
- ○ 特別消費稅의 免除
- ○ 附加價値稅의 免除

자. 地方稅 免除條項 補完

- ○ 登錄稅의 免除
- ○ 取得稅의 免除
- ○ 財產稅의 免除

차. 關稅의 減免

카. 其　他

- ○ 所得計算의 特例
- ○ 區分經理와 共通損益의 計算方法 補完
- ○ 減免稅額 相當額使用 規定 削除

1. 所得稅의 免除 및 非課稅 利子·配當所得의 範圍擴大(法 第3條6項, 令 第2條의2)

金融機關으로부터 지급받는 福金附預金의 當籤金에 대하여도 住宅福券當籤所得과 같이 綜合課稅하지 아니하고 5%分離課稅하도록 하였고 漁村契로부터 지급받는 200萬원以下의 出資金 또는 500萬원 以下의 預託金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하여도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2. 住宅建設業者에게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事前減免(法 第3條의3第20項 내지 第22項, 令 第2條의8)

建築物의 建築用地로 住宅建設促進法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業者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事前減免하도록 하였다.

가. 建築物의 範圍

建築法에 의한 建築物

나. 減免申請方法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는 讓渡者의 土地賣買差益 豫定申告期限內에 別紙 第14號 書式을 준용하여 작성한 申請書에 住宅建設業者登錄證寫本·登記簿謄本·賣買契約書를 첨부하여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建築物의 竣工期限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는 매입한 날로부터 2年內에 建築物의 建築을 完了하여야 한다.

라. 減免稅額의 追徵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가 2年內에 建築物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稅로 하여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징수한다.

3.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等(法 第3條의4, 令 第2條의9)

脆弱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資本市場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는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하여 證券貯蓄金額의 10%를 勤勞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控除하고, 당해 配當金에 대하여도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를 다음과 같이 免除하도록 하였다.

가. 勤勞者의 範圍

월정급여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

나. 勤勞者 證券貯蓄金額의 範圍

勤勞者가 1981 12. 31 以前에 證券貯蓄契約을 체결한 分으로 年間 貯蓄金額은 貯蓄契約締結當時의 月定給與額을 年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限度金額이 120萬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萬원까지 貯蓄을 하여도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의 免除

勤勞者 證券貯蓄期間의 滿了 또는 1年以上 勤勞者 證券貯蓄을 한 勤勞者가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사유에 해당됨으로써 勤勞者·相續人 또는 受贈者가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를 免除한다.

(1) 死亡

(2) 海外로 移住한 때

(3) 事業主의 破産으로 해고된 때

(4) 事業主의 休業 또는 廢業으로 貯蓄金額을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貯蓄契約이 解止된 때

(5) 海外勤勞者가 疾病 또는 就業契約期間의 滿了로 歸國한 때

(6) 天災·地變으로 貯蓄契約을 解止한 때

라. 旣控除된 稅額의 追徵

(1) 證券貯蓄機關은 勤勞者가 證券貯蓄의 契約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解止日의 翌月 10日까지 當該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當該源泉徵收義務者의 破産·廢業·天災地變 또는 當該勤勞者의 退職등의 경우에는 勤勞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上記 (1)의 사실을 通報받는 當該源泉徵收義務者 및 稅務署長은 旣控除된 稅額을 追徵하여야 한다. 다만, 上記 "다項"의 각호에 揭記된 사유로 인하여 貯蓄契約을 해지한 경우에는 旣控除된 稅額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4. 重要政策事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法 第4條)

가. 法人稅·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의 免除(法 第4條第1項)

國家의 主要施策事業으로 政府의 出捐金이나 補助金으로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特殊法人에 대하여 法人稅·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韓國石油開發公社

(2) 韓國資源再生公社

(3) 새마을指導者硏修院

나. 法人稅의 免除(法 第4條第2項)

私立學校育成法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私學育成財團"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5. 增資所得控除期限의 延長(法 第4條의2)

公開法人과 中小企業에 해당되는 內國法人에 대하여 增資所得控除期限을 1年 延長하여 1979. 1. 1부터 1980. 12. 31까지 增資한 分에 대하여는 1982. 12. 31以前에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 增資所得控除를 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增資期限	78. 1. 1~79. 12. 31	78. 1. 1~78. 12. 31	79. 1. 1~80. 12. 31
所得控除期限	81. 12. 31	81. 12. 31	82. 12. 31

6. 新技術 企業化 事業의 範圍擴大(令 第20條)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使用되는 주된 機械에 대한 投資額에 대하여 8%(國產機械 10%)를 稅額控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新技術 企業化 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특허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技術을 開發한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으로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事業	○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技術을 開發한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은 分野別 專門硏究所(韓國原子力硏究所法의 적용을 받는 韓國原子力硏究所를 포함) 또는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企業附設硏究機關이 技術을 개발한 成果로서 技術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事業

7. 大衆交通手段인 버스旅客運送業에 대한 法人稅免除(法 第4條의17)

大衆交通難 해소를 위한 支援策의 일환으로 自動車運送事業法 규정에 의한 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79. 1. 1以後 최초로 개시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로부터 2年間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단 高速버스旅客自動車 運送事業은 제외하였다.

8. 間接稅의 免除

가. 印紙稅의 免除(法 第6條)

(1) 郵便對替法의 규정에 의한 郵便對替에 관한 書類

(2) 公有水面埋立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造成事業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書類

나. 特別消費稅의 免除(法 第11條1項)

國家主要施策事業으로 政府의 出捐金이나 補助金으로 운영하게 되는 다음 각호의 特殊法人이 直接使用할 物品으로서 國內生產이 불가능한 物品을 外國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에 特別消費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1) 새마을指導者硏修院

(2) 國際經濟硏究院

(3) 韓國敎育開發院

다. 附加價値稅의 免除(法 第11條의2)

(1) 零稅率適用

首都圈 都市計劃 및 大衆交通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政府의 年次計劃으로 시행하게 되는 地下鐵道建設事業의 支援策으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地下鐵道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直接供給하는 地下鐵道建設用役에 대하여 零稅率을 적용토록 하였다.

(2) 附加價値稅의 免稅

다음 각호의 財貨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稅하도록 하였다.

(가) 地下鐵道建設用 物品으로 國內製作이 곤란한 物品

(나) 課稅事業에 供할 船舶

(다) 課稅事業에 供할 關稅法의 규정에 의한 保稅建設物品

9. 地方稅의 免除條項 補完

가. 登錄稅의 免除(法 第5條)

(1)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觀光團地로부터 이주하는 者 및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가 정착을 위하여 取得하는 住宅地·農耕地 및 住宅에 관한 登記를 하는 경우 登錄稅를 免除하는 규정을 財產의 取得登記를

신속히 하고 課稅의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移住者가 補償金을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정당한 사유없이 取得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當該取得財產價額이 補償金을 초과하는 경우 그 超過額"에 대하여는 登錄稅 免除를 排除하도록 補完하였다.

(2) 農漁民이 農業協同組合 또는 水產業協同組合으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擔保物에 대한 설정등기 및 收復地區內 토지의 地籍整理等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囑託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登錄稅免除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取得稅의 免除(法 第10條)

(1) 法 第4條第1項 및 第2項第2號 내지 第12號·第15號·第16號의 법인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財產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하지만 取得登記日로부터 1年以內에 그 固有目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를 추징하도록 보완하였다.

(2) 產業基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 및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가 補償金을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정당한 사유없이 財產을 取得하지 아니하거나 當該取得財產價額이 補償金을 초과하는 경우 그 超過金額에 대하여는 取得稅免除를 배제하였다.

(3) 收復地區內 土地의 地籍整理등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取得하는 土地에 대한 取得稅免除規定을 삭제하였다.

다. 財產稅의 免除(法 第9條第2項)

法 第4條第1項 및 第2項第2號 내지 第12號·第15號·第16號의 법인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免除하던 규정을 "法人이 納期開始日 현재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財產"에 대하여만 財產稅를 免除하도록 보완하였다.

10. 關稅의 減免(法 第12條)

다음 각호에 揭記한 물품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가. 地下鐵道建設用으로 導入하는 物品

나. 農業機械製造業體가 導入하는 農業機械製造用 部分品

다. 太陽에너지 利用機器製造業體가 도입하는 太陽에너지 利用機器製造用 機資材

11. 其　　他

가. 所得計算의 特例(法 第13條第5項)

社會福祉事業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社會福祉法人이 當該收益事業에서 생긴 所得을 社會福祉事業을 위하여 지출하는 寄附金은 當該事業年度의 損金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나. 區分經理와 共通損益의 計算方法 補完(令 第24條第22項)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事業과 其他의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區分經理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工場을 증설한 경우에 減免所得과 課稅所得의 區分經理가 곤란한 때에는 總工場施設價額과 증설된 工場施設價額의 비율로 按分計算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다. "減免稅額 相當額의 使用"規定削除(令 第28條)

法 第16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償還 및 投資 期間中에 金錢을 새로 차입하였거나 金錢出資에 의하여 資本을 增資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借入 또는 增資金額이 먼저 償還되거나 投資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80. 1. 1이후 최초로 申告·決定 또는 경정하는 分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간추린 改正稅法

80년도

國稅基本法
所得稅法
法人稅法
附加價値稅法
租稅減免規制法
租稅犯處罰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國家保衛立法會議의 審議를 거쳐 5個 稅法을 改正하였습니다.

이번 改正 稅法은 成長戰略으로서의 經濟開發 支援 稅制와 國民福祉 支援을 위한 公平·財政 稅制를 適切히 調和한다는 80年代 稅制와 稅政運用의 基本方向에 맞추어 作業이 이루어졌습니다.

改正된 稅法의 主要內容은 租稅減免을 段階的으로 縮小함으로써 公平·應能負擔을 具現하기 爲하여 預金利子나 配當等 財產所得에 對한 課稅를 強化하고, 豪華船舶 및 不動產 賃貸用役 等에 對하여 附加價値稅를 課稅토록 하였으며 企業體質 強化對策의 一還르로 法人稅率을 一般的으로 下向調整하고, 現金增資에 對한 所得控除를 擴大하며, 非公開 法人에 對한 紙上配當稅額課稅를 緩和하는 한편 配當稅額控除 制度를 擴大하는 等의 措置를 하였습니다. 또한 住宅 建設을 促進하기 爲하여 讓渡所得 稅率을 大幅下向調整하고 彈力稅率制를 새로이 導入함과 아울러 非投機性 不動產 去來에 對한 物價 上昇 控除制를 復活하였습니다.

한편 納稅者의 不便을 덜기 爲하여 國稅還給金의 支給節次와 零細事業者의 綜合所得稅 申告節次를 簡便히 하고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1世帶1住宅, 農地等의 範圍를 明白히 함으로써 納稅者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細心한 配慮를 하였습니다.

稅法은 國民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므로 改正된 內容을 알기쉽게 풀이한 冊子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國稅廳에서 制定할 國稅基本通則과 함께 이 冊子가 稅務公務員과 納稅者의 길잡이가 되어 國民便宜와 信賴의 바탕에서 稅政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祈願합니다.

1981年 1月

財務部 稅制局長 徐 榮 澤

目　　次

國稅基本法 …… 567

1. 修正申告時 追加 自進納付하는 加算稅 …… 567
2. 支給命令官 計定의 設置 …… 568
3. 計座 移替 支給制度의 新設 …… 568

所得稅法 …… 569

<綜合所得> …… 571

1. 利子·配當에 對한 非課稅 範圍縮小 및 分離課稅 稅率引上 …… 571
2. 課稅 最低限 廢止 및 少額 不徵收 引上 …… 574
3. 臨時 特別 稅額控除 …… 575
4. 非課稅되는 學資金의 範圍調整 …… 575
5. 國外 勤勞所得 非課稅 範圍調整 …… 576
6. 無住宅 從業員이 住宅購入 資金 低利融資로 얻는 經濟的 利益非課稅 …… 576
7. 其他所得의 範圍調整 …… 577
8. 紙上配當課稅 緩和 …… 578
9. 配當稅額 控除擴大 …… 581
10. 其　　他 …… 582

<讓渡所得> …… 587

1. 讓渡所得稅率의 引下調整 …… 587
2. 讓渡所得 算出稅額 計算方法 調整 …… 587
3. 讓渡所得 特別 控除制 導入 …… 588
4. 8年以上 自耕農地 非課稅 範圍擴大 …… 589
5. 1世帶1住宅 範圍調整 …… 590
6. 其他 資產의 範圍調整 …… 591
7. 基準時價 適用範圍 …… 594

法人稅法 …… 595

1. 非課稅所得 範圍等 縮小調整 …… 596

2. 法令에 의한 準備金 調整 …… 597
3. 損金不算入 範圍 調整 …… 599
4.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 損金規制 …… 600
5. 支給利子 損金否認 規定 適用順位 …… 602
6. 綠色申告法人制度 廢止 …… 603
7. 住宅購入資金 融資에 대한 不當行爲 排除 …… 604
8. 에너지節約 設備에 對한 特別償却 …… 604
9. 法人稅率 調整 …… 605
10. 稅額控除 順位 調整 …… 606
11. 所得處分 調整 …… 607
12.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 …… 609
13. 未納付 加算稅率 調整 …… 610
14. 旣課稅된 源泉徵收 漏落所得에 대한 源泉稅追徵 排除 및 源泉徵收 不履行 加算稅率 引上 …… 610
15. 外國法人의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對한 源泉徵收 調整 …… 610
16. 特別加算稅率 引下 調整 …… 612

附加價値稅 …… 613
1. 特種 船舶과 特殊 自動車에 의한 旅客 運送用役에 대한 課稅 …… 614
2. 不動產 賃貸用役에 대한 課稅 …… 614
3. 政府業務 代行團體의 範圍調整 …… 616
4. 醫療保健用役의 範圍를 明確히 規定 …… 616
5. 更正時 買入稅額의 控除範圍擴大 …… 616
6. 接待費 等에 關聯된 買入稅額 控除不認定 …… 616
7. 課稅特例者에 對한 事業者登錄證 未檢閱 加算稅率 引下 …… 617
8. 建物等 不動產 課稅標準 計算方法 改善 …… 617
9. 課稅特例者의 更正制限에 대한 例外設定 …… 617

租稅減免規制法 …… 618
1. 財政證券利子등 非課稅 所得을 10% 分離課稅 및 福券 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稅率 引上 …… 618

2.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排除 …… 620
3. 特別附加稅 等의 分納 …… 621
4.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 擴大 및 期限延長 …… 623
5. 에너지 節約 施設 投資稅額控除 申請節次 …… 625
6.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庶民住宅 建設用役 …… 625
7.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軍納物品의 範圍 …… 626
8. 公開法人 要件에 關한 特例 …… 627
9. 畜産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대한 稅制支援 …… 628
10. 새마을運動中央本部 등에 대한 法人稅 및 地方稅 免除 …… 630
11. 其 他 …… 630

租稅犯處罰法 …… 632
1.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引下 …… 632
2. 逋脫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633
3. 逋脫犯의 旣遂時期 …… 633
4. 帳簿 備置, 記帳 業務 不履行에 대한 處罰 …… 634
5. 施 行 日 …… 634

國 稅 基 本 法

國稅還給金의 支給制度를 改善하여 支給節次를 簡素化하고, 納稅者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加算稅
○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
나. 支給命令官計定의 設置
○ 國庫代理店에도 設置
다. 計座移替支給制度의 新設

1.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加算稅(令 第26條)

納稅者가 當初申告時 納付한 稅額이 課稅標準 修正申告額에 상당하는 稅額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法人稅의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未納付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에 의하여 경감되는 分 除外) 를 修正申告와 동시에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하는바, 이번 施行令改正時 法人稅의 경우는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2號에 規定하는 過少申告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경감되는 分 除外)도 함께 納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法人稅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稅額은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區 分	修正申告에 따른 加算稅輕減	加算稅徵收方法	
		改 正 前	改 正 後
未納付加算稅 未達納付額 × 利子率 × 未納期間	50% 減免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함	左 同
過少申告加算稅 ○ 一般過少申告加算稅 (과소신고액의 10%)	全額減免	—	—
○ 重過少申告加算稅 (過少申告額의 30%)	減免안됨	修正申告後 政府가 告知徵收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

2. 支給命令官 計定의 設置(令 第33條)

支給命令計定을 韓國銀行 本·支店에만 設置·運營하던 것을 管轄區域內에 韓國銀行 本·支店이 없는 稅務署의 경우에는 國庫代理店에 同計定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하여 國稅還給金의 處理를 圓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까지는 管轄區域안에 韓國銀行이 없는 市·郡所在地 稅務署의 경우는 管轄區域안에 韓國銀行이 있는 他稅務官署의 支給命令官이 國稅還給金의 支給業務를 代行하였다. 따라서 國稅還給金이 발생한 稅務署에서 支給命令官이 設置된 他稅務署에 還給通報를 하면, 그 他稅務署가 國庫手票를 發行하고 納稅者에게 國稅還給金送金通知를 하게 되므로 節次가 煩雜하고 또 支給이 늦어지는 不便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韓國銀行뿐만 아니라 國庫代理店에도 支給命令官 計定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稅還給金 發生 稅務署와 이를 지급하는 稅務署가 같게 됨에 따라 節次가 簡素化되고 支給時期도 단축되게 되었다.

3. 計座 移替 支給制度의 新設(令 第34條의2)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 計座를 두고 있는 者에게 國稅還給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納稅者가 去來하고 있는 計座에 移替할 수 있도록 하여 納稅者의 便益과 支給業務의 簡便을 圖謀하였다.

이제까지는 納稅者가 國稅還給金을 支給받기 위하여는 直接 銀行에 가서 印鑑證明書와 國稅還給金送金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印鑑證明書를 洞(面)事務所에서 發給받아 銀行에 書類를 제출하고 돈을 支給받는데 많은 時間이 걸리고 不便하였으나, 앞으로는 計座移替支給制度에 의하여 銀行(遞信官署)의 預金加入者(우편대체가입자)에게 國稅還給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納稅者의 銀行計定에 移替入金시키게 되므로, 國稅還給金을 支給받는데 印鑑證明書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일부러 銀行에 갈 必要도 없어졌으므로, 國稅還給金의 支給이 迅速하고 便利하게 되었다.

所 得 稅 法

[要 約]

所得間의 均衡課稅로 稅負擔의 公平을 期하기 위하여 利子·配當등 財產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範圍를 縮小하고, 當面한 景氣浮揚對策의 一環으로 住宅供給의 擴大를 支援하기 위하여 讓渡所得稅率을 引下하는 한편, 物價上昇控除制度와 彈力稅率制度를 導入하여 保有期間에 따라 稅負擔을 適正하게 하고 景氣變動에 伸縮性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企業體質強化對策으로 紙上配當課稅를 緩和하고 配當稅額控除를 擴大하며, 기타 現行法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行政 業務를 簡素化하고 納稅者의 不便을 줄이도록 하였다.

<綜合所得>

가. 利子·配當에 대한 非課稅範圍縮小 및 分離課稅 稅率引上
  1) 非課稅 範圍縮小
    — 繼續 非課稅되는 利子·配當
    — 새로이 課稅되는 利子
    — 適用例
  2) 分離課稅 稅率引上
    — 適用例
나. 課稅最低限 廢止 및 少額不徵收 引上
다. 臨時特別 稅額控除
라. 非課稅되는 學資金의 範圍調整
마. 國外勤勞所得 非課稅 範圍調整
바. 無住宅從業員이 住宅購入資金 低利融資로 얻는 經濟的 利益 非課稅
사. 其他所得의 範圍調整
아. 紙上配當 課稅緩和
자. 配當稅額 控除擴大
차. 其 他
  1) 年末精算時 住民登錄票 謄本 提出省略

2) 所得控除額 未達所得者에 대한 所得控除

3) 共同事業課稅 特例

4) 旣課稅된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5) 源泉徵收 不履行加算稅率引上

6) 法人申告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에 대한 支給時期 擬制

7) 納稅組合 交付金 引上

8) 에너지利用 合理化施設 特別償却

9) 非居住者의 有價證券 讓渡所得 課稅

<讓渡所得>

가. 讓渡所得稅率의 引下調整

나. 讓渡所得算出稅額 計算方法 調整

다. 讓渡所得 特別控除制 導入

라. 8年以上 自耕農地 非課稅 範圍擴大

마. 1世帶 1住宅 範圍調整

바. 其他 資産의 範圍調整

사. 基準時價 適用範圍

〈綜 合 所 得〉

1. 利子·配當에 대한 非課稅 範圍縮小 및 分離課稅 稅率引上

가. 非課稅 範圍縮小(法 第5條 및 第144條, 令 第5條 및 193條)

모든 所得에 대하여 그 所得이 發生하면 所得稅를 賦課하는 것이 원칙이나 政策的인 또는 行政的인 考慮에서 所得稅에서는 모든 所得 全部를 課稅하지 아니하고 一定範圍의 所得을 課稅對象所得으로 하고 있다.

所得稅가 賦課되지 않는 것은 課稅對象에서 除外하는 것과 課稅對象에는 包含되나 非課稅하거나 免稅하는 것이 있다. 非課稅와 免稅의 實質的인 差異는 非課稅는 積極的인 免稅로서 一定한 申請등을 要求하기 아니한다는 點이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러한 非課稅範圍를 縮小하였는바 다만, 強制消化되고 金利가 낮은 國·公債등의 利子와 公益性이 높은 公益信託의 利益에 대하여는 繼續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 繼續 非課稅되는 利子·配當

<所得稅法>

- ○ 産業復興國債利子
- ○ 徵發報償證券利子
- ○ 電信電話債權利子
- ○ 地下鐵公債·道路公債·上水道公債利子
- ○ 國民貯蓄組合貯蓄利子
- ○ 國民住宅債權利子
- ○ 土地開發債權利子
- ○ 公益信託의 利益

<租稅減免規制法>

○ 農·漁家 목돈 貯蓄預金의 利子
○ 優待特別 定期家計預金利子
○ 優待家計 定期積金利子
○ 信用協同組合의 利子 및 配當
○ 納稅預金의 利子
○ 勤勞者 證券貯蓄의 配當
○ 農協의 擬制配當 分配金

— 새로이 課稅되는 利子(10% 分離課稅)

<所得稅法>

○ 郵便對替의 利子
○ 法律이 정하는 賦金·契金의 利子(國民銀賦金·住宅賦金·相互信用契金)
○ 國　　債
  • 國民投資債權(預託金)의 利子
  • 糧穀基金證券의 利子
  • 財政證券의 利子
○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이 發行하는 債權등의 이자(金融債)
  • 產業金融債權利子
  • 住宅債權利子
  • 韓國電力(株)社債利子
  • 住宅償還 社債利子
  • 開發信託 受益證券利子
  • 長期信用債權利子
  • 農業金融債權利子
  • 農協定期預託金證書利子
  • 中小企業金融債權利子
  • 輸出入金融債權利子
  • 원貨表示 外國換金融債權利子

<租稅減免規制法에서 削除되어 所得稅法에 吸水規定된 利子>

- ○ 財形貯蓄債權의 利子
- ○ 通貨安定證券의 利子
- ○ 貯蓄預金의 利子
- ○ 自由積立預金의 利子

— 適 用 例

종래 非課稅되던 所得을 새로이 課稅하는 規程은 1981年 1月 1日이후 發生하는 所得부터 適用한다.

<事 例>

定期預金의 貯蓄期間 80. 8. 1~ 81. 7. 31
利子 總支給額 100萬원(81. 1. 1~81. 7. 31間 發生利子 60萬원)
80. 8. 1~12. 31間 利子는 非課稅

이때 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은 다음과 같다.

- 所得稅 6萬원 : $(60萬 \times \frac{10}{100})$
- 防衛稅 9千원 : $\{6萬원 \times \frac{10}{100}) + (40萬 \times \frac{5}{100} \times \frac{15}{100})\}$
- 住民稅 4.5千원 : $(6萬원 \times \frac{7.5}{100})$

나. 分離課稅 稅率引上(法 第144條)

改正前 分離課稅 稅率은 5%였으나 이를 改正하여 10%로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預金利子	5%	10%
○ 短資會社의 利子	10	10
○ 少額株主의 配當(우리社株組合員의 配當包含)	5	10
※ 紙上配當所得(源泉徵收後 綜合課稅)	5%	10%

－ 適 用 例

○ 分離課稅 利子所得

非課稅 所得範圍 縮小에서와 같이 1981年 1月 1日 以後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引上된 稅率을 適用한다.

○ 分離課稅 配當所得

1981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支給하는 所得分부터 引上稅率이 適用된다.

다만, 證券市場의 現況을 考慮하여 上場法人의 少額株主가 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1982年 1月 1日 以後 支給되는 1分부터 引上稅率이 適用된다.

2. 課稅最低限 廢止 및 少額不徵收 引上(法 第130條 및 第132條)

人的控除를 考慮할 수 없는 分類課稅制下에서는 所得種類別로 一定金額以下에 대하여는 課稅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課稅最低限이라 한다. 現行 稅制에서는 利子·配當等을 分離課稅하는 外에 課稅最低限까지 두고있어 綜合課稅되는 勤勞·事業所得에 비하여 二重의 惠澤을 賦與하고 있으므로 이를 廢止하였다.

다만, 少額貯蓄·證券投資者를 保護하고 徵稅費를 節約가기 위하여 源泉徵收稅額에 대한 少額不徵收를 現行 50원에서 100원으로 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課 稅 最 低 限	分離課稅 配當所得 年 36千원	廢　止
	分離課稅 利子所得 6月 18千원	廢　止
少 額 不 徵 收	50원	100원

3. 臨時特別稅額控除(法 第78條의 4)

低所得 勤勞者에 대하여 所得稅額의 一定率을 稅額控除하도록 하여 物價上昇에 따른 生計費 增加에 보전하도록 하였다.

區 分	控 除 率	適 用 時 期
○ 月定額給與가 30萬원 이하 者 ○ 月定額給與가 30萬원 초과 50萬원 이하 者	○ 賞與를 포함한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의 20% ○ 賞與를 포함한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의 10%	81. 1月分~12月分 勤勞所得

4. 非課稅되는 學資金의 範圍調整(令 第7條의 2)

大學院을 除外한 學校에 受學中인 從業員이 使用者로부터 學資金을 보조받는 경우 그 學資金은 非課稅되는 바 이를 改正하여 大學院을 물론 海外에 있는 敎育機關에 受學中에 있는 從業員이 받는 學資金도 非課稅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學資金의 範圍	敎育法에 의한 學校(大學院 除外)의 入學金·授業料·其他 公課金	敎育法에 의한 學校(海外에 있는 이와 같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의 入學金·授業料·其他 公課金

또한 이 規定은 80年 所得分부터 適用되므로 80年 勤勞所得 年末精算時 大學院에 대한 學資金도 非課稅所得으로 보아야 한다.

5. 國外勤勞所得 非課稅 範圍調整(法 第5條, 令 第12條 및 第55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備 考
○ 看護員·鑛山勤勞者·政府間 協約에 의하여 派遣된 勤勞者의 國外勤勞 所得	全額 非課稅	改正前과 同一	令 第12條
○ 公務員 및 在外公務員 人事管理規定의 一部가 準用되는 者	新 設	國外勤勞手當 非課稅	令 第12條 令 第55條
○ 公務員과 在外公務員 人事管理規定의 一部가 準用되는 公社等의 任職員과 內國法人의 任員의 國外勤務 勤勞所得	國內報酬規定에 의한 報酬를 基準으로 課稅	削 除	
○ 其他 國外勤勞所得者	月 50萬원 ┌ 從業員과 內國法 └ 人의 任員 除外	月 50萬원 ┌ 內國法人의 任員은 包含 되고 公務員 └ 은 除外	法 第5條 令 第12條

6. 無住宅從業員이 住宅購入資金 低利融資로 얻는 經濟的 利益 非課稅(令 第43條)

無住宅 從業員이 國民住宅 規模以下의 住宅購入資金으로 1,000萬원(外國法人으로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 2,000萬원)以下를 事業主로부터 低利로 融資받는 경우에는 그 低利로 融資받아 發生하는 經濟的 利益은 勤勞所得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購入한 住宅이 國民住宅規模 以上인 경우에는 低利로 貸與받음으로써 發生하는 經濟的 利益은 全額 課稅되며 1,000萬원(외국법인으로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대여받은 部分에 대한 經濟的利益만을 課稅한다.

이 規定은 80年 所得分부터 適用하며 기왕에 대여받은 경우에도 80年에 發生한 經濟的利益에 대하여는 위의 基準에 따라 課稅與否를 判定하여야 한다.

7. 其他所得의 範圍調整(令 第49條의 2 및 第73條의 2)

現行 우리나라 所得稅制는 모든 所得을 包括하여 課稅하지 아니하고 課稅對象所得을 列擧하여 課稅하는 列擧主義立場을 取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所得은 課稅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日時巨額所得인 專屬契約金 알선수수료등은 課稅되지 않아 課稅의 衡平이 어긋나고 綜合所得稅制의 實效性을 沮害하여 왔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이들 所得을 其他所得으로 列擧함으로써 一時巨額所得에 대한 課稅 根據를 마련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大統領令이 定하는 一時所得	一時的인 文藝創作所得 新設	改正前과 같음 • 財産權에 관한 알선 수수료 • 謝禮金 • 專屬契約金

이때 專屬契約金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의 50%를 必要經費로 認定하였으므로 課稅되는 其他所得金額은 나머지 50%가 된다.

따라서 專屬契約金을 支給하는 者가 源泉徵收하는 때에도 支給金額의 50%를 必要經費로 控除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이렇게 支給金額의 50%를 控除하고 源泉徵收하는 所得에는 專屬契約金外 講演料와 TV出演謝禮金이 있다.

8. 紙上配當 課稅緩和(法 第26條)

紙上配當課稅制度는 實地配當과의 課稅衡平을 圖謀하여 綜合所得稅의 實效性을 提高하고 企業의 不當한 留保를 억제하며 또한 非公開法人의 株主가 株式을 讓渡함으로써 所得稅負擔없이 企業의 保有所得을 回收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非公開法人의 留保所得이 適正留保水準을 超過하는 部分에 대하여 課稅하는 制度이다.

그러나 이 制度의 施行으로 企業의 配當을 強制하여 財政構造를 弱化시키고 또한 紙上配當所得에 대하여 株主가 負擔할 所得稅를 法人이 代納함으로써 企業의 資金難을 加重시켰던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따라서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紙上配當課稅에 있어서 免稅點이라 할 수 있는 適正留保水準을 配當可能利益의 40%에서 50%로 引上하여 紙上配當에 따른 稅負擔을 緩和하였으며 計算方法을 單純化하였다.

또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的으로 積立한 積立金은 利益準備金으로 보도록 되어 이쓰는 租稅減免規制法上의 規定을 所得稅法에서 吸水 規定하여 法體系 整備함으로써 納稅者의 混亂을 防止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紙上配當所得 • 留保所得	留保所得－適正留保 當該事業年度所得金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控除한 金額 • 移越缺損金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積立金 • 配當등 • 法人稅등 • 其他社外流出	改正前과 같음 當該事業年度所得金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 • 移越缺損金 • 利益準備金 • 法律에 의한 強制積立金 • 配當등 • 法人稅등 • 其他社外流出
• 適正留保	當該事業年度所得金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 • 法人稅등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積立金 • (當該事業年度所得－法人稅등 利益準備金)$\times\frac{60}{100}$	當該事業年度所得金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의$\frac{50}{100}$ • 法人稅등 • 利益準備金 • 法律에 規定에 의한 強制積立金

※ 法律에 規定에 의하여 義務的으로 積立한 積立金

- ○ 租稅減免規制法 第16條 : 企業合理化積立金
-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 第18條 : 損害賠償積立金
- ○ 相互信用金庫法 第19條 : 積立金

이 規定은 81. 1. 1이후 最初로 法人이 決算을 確定하는 分 부터 適用된다.

<事 例>

①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	1,000萬원
② 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 賞與	200萬원
③ 留保所得(①~②)	800萬원
④ 法人稅(①×25%)	250萬원
⑤ 防衛稅(④×20%)	50萬원
⑥ 住民稅(④×7.5%)	18萬원
⑦ 利益準備金	50萬원
⑧ 企業合理化積立金	10萬원

<計 算 例>

①改正前

가.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剩餘金處分에 의한

配當, 賞與－ | 法人稅
防衛稅
住民稅
利益準備金
企業合理化積立金 |

＝ 留保所得

$$1000 - 200 - \begin{bmatrix} 250 \\ 50 \\ 18^{75} \\ 50 \\ 10 \end{bmatrix} = 421.25$$

나. 當該事業年度

所得金額－ | ○ 法 人 稅
○ 防 衛 稅
○ 住 民 稅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 積立金 | － (當該事業年度 讓渡所得金額 － | ○ 法 人 稅
○ 防 衛 稅
○ 住 民 稅
○ 利益準備金
○ 企業合理化 積立金 |) × 60%

＝ 適正留保

$$1{,}000 - \begin{bmatrix} 250 \\ 50 \\ 18^{75} \\ 50 \\ 10 \end{bmatrix} - \left(1{,}000 - \begin{bmatrix} 250 \\ 50 \\ 18^{75} \\ 50 \\ 10 \end{bmatrix} \right) \times 60\% = 248.5$$

다. 留保所得－適正留保＝紙上配當

421.25－248.5＝172.75

① 改正後

가. 留保所得(改正前과 同一) : 421.25

나. (當該事業年度所得金額 － [法人稅 / 防衛稅 / 住民稅 / 利益準備金 / 法律에 의한 / 強制積立金]) × 50%

= 適正留保

(1,000 － [250 / 50 / 18.75 / 50 / 10]) × 50% = 310.625

라. 適正留保

421.25－310.625＝110.625

9. 配當稅額 控除擴大(法 第71條)

配當稅額控除는 論理的으로 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와 所得稅의 二重負擔을 緩和하기 위한 調整裝置로서 認定되고 있는 制度이므로 企業의 株式 上場與否와는 關係없이 모든 配當所得에 대하여 配當稅額控除를 한는 것이 原則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78年稅法改正時 과잉 流動性規則, 過熱景氣의 진정등을 目的으로 配當稅額控除를 廢止하였으나 企業公開를 誘引하고 證券市場에 대한 衝激을 緩和하기 위하여 上場法人의 配當에 대하여만 配當稅額控除를 認定하였던 것이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配當所得間의 課稅衡平을 回復하고 配當所得에 대한 二重負擔의 調整으로 企業의 增資意慾을 鼓吹시켜 財政構造改善을 誘導하고

企業體質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非公開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에 대하여도 配當稅額控除를 받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對象	• 上場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	• 모든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
○ 控除率	• 配當所得의 15%	• 上場法人配當 : 配當所得의 15% (改正前과 同一) • 기타法人配當 3千萬원이하 : 10% 3千萬원이하 : 5%
○ 控除限度額	綜所算出稅額 × 上場法人 配當所得 / 綜合所得 金　額	綜所算出稅額 × 配當所得 / 綜合所得金額
○ 時限	• 新設	• 上場法人의特惠는83年까지에限함

非公開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에 대한 配當稅額控除는 81. 1. 1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부터 適用하므로 死亡과 出國으로 課稅期間이 短縮되는 경우를 控除하고는 81. 1. 1~81. 12. 31間에 받는 配當所得을 82年 5月에 確定申告하는 分부터 適用되는 것이다.

10. 其　　他

가. 年末精算時 住民登錄票謄本 提出省略(令 第204條)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年末精算時 所得控除 現況의 變動이 있는 者만 住民登錄票謄本을 提出하도록 하였으나 源泉徵收 義務者가 기왕에 提出된 住民登錄票謄本을 確認하는 節次가 번잡하다는 理由로 每年 勤勞所得者로부터 住民登錄票謄本을 提出받으로써 地方行政官署의 業務가 폭주함은 물론 不必要한 時間과 經費의 浪費를 招來하였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年度中 就業者 및 退職者를 除外한 모든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所得控除對象이 變動되는 경우에도 住民登錄票謄本을 提出하지 않아도 變動된 所得控除를 認定하도록 하였다. 또한 所得控除申告書도 2通을 提出받아 그중 1通을 稅務署에 提出하던

것을 1通만 받아 源泉徵收義務者만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所得稅法 第67條 및 同令 第120條에 規定하는 就學, 養老·勤務上 形便등으로 인한 一時退居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住民登錄票謄本을 提出받아야 한다.

이 規定은 80年 所得分부터 適用되므로 80年 歸屬 勤勞所得을 年末精算할 때에는 改正稅法의 適用을 받는다.

나. 所得控除額未達 所得者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69條)

所得稅法은 課稅標準確定申告 對象者가 아닌 者, 例를 들면 分離課稅만이 있는 者, 勤勞所得者로서 年末精算을 完了한 者등을 除外하고는 모든 所得者에 대하여 確定申告 義務를 賦與하고 이때 所得控除申告를 하여야만 所得控除(配偶者 控除 扶養家族 控除등)를 認定하고 있어 年間 所得金額이 所得控除額에 未達하는 零細事業者도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所得控除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零細事業者가 申告를 하지 않는 경우 所得控除를 받지 못하는 不利益을 없애고, 申告書의 作成, 提出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한편, 申告勸奬, 接受, 資料處理에 따르는 行政業務量을 減少시키기 위하여 年間 所得金額이 所得控除額에 未達하는 零細事業者에게는 申告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所得控除를 認定토록 하였다.

<事　例>

事業所得者로서 扶養家族 狀況	無申告時 所得控除認定
○ 配偶者와 扶養家族 3人인 경우	年間 所得金額이 132萬원 이하인 때
○ 配偶者만 있는 경우	年間 所得金額이 60萬원 이하인 때

또한 이 規定은 81. 1. 1이후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다. 共同事業 課稅 特例(法 第56條, 令 第112條의 2)

共同事業者에 대한 課稅에 있어서 그 共同事業場을 하나의 居住者로 보아 所得을 計算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中小企業判定, 接待費 限度額計算등 各種 限度額計算을 함에 있어서 그 共同事業

場을 하나의 居住者로 보아 所得稅法을 適用한다는 것이며, 이때 共同事業者의 所得稅 計算은 그 共同事業場의 所得을 損益分配比率에 의하여 分配하여 計算한다. 다만, 다음의 關係에 있는 者의 所得은 비록 共同事業을 영위한 것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損益分配比率이 가장 큰 者(損益分配比率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綜合所得이 가장 많은 者, 다른 綜合所得도 同一한 경우에는 直前年度의 綜合所得이 가장 많은 者)의 所得으로 보아 所得稅를 課稅한다.

이때의 共同事業은 事業所得이 發生하는 事業만을 말한다.

<共同事業所得 合算課稅對象者>

居住者 1人과 課稅期間終了日 現在 生計를 같이 하는 同居家族으로 다음에 該當하는 者.

- 配偶者
- 直系 尊·卑屬과 그 配偶者
- 兄弟 姉妹와 그 配偶者

라. 旣課稅된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法 第131條)

源泉徵收 對象所得을 支給하면서 源泉徵收를 하지 않았으나 그 所得이 綜合所得으로 課稅된 경우, 從前에는 그 源泉徵收 稅額에 加算稅를 加算하여 徵收함으로써 二重 納付된 稅額은 納稅義務者가 還給받거나 원천징수세액으로 綜合所得稅額에서 控除받도록 하여 納稅者의 負擔을 加重시켰으나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納稅義務者가 申告·納付한 課稅標準金額에 그 源泉徵收對象 所得이 이미 合算된 때에는 源泉徵收納付 不履行加算稅만을 徵收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源泉徵收不履行時徵收	源泉徵收不履行時 源泉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稅額을 加算徵收 단서신설	改正前과 같음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申告·納付한 課稅標準金額에 그 원천징수 對象所得金額이 이미 算入된 때에는 加算稅만을 徵收함.

마. 源泉徵收不履行 加算稅率 引上(法 第182條)

源泉徵收·納付·不履行加算稅를 5%에서 10%로 引上하였는바 이는 源泉徵收 義務履行의 철저를 期하기 위한 것이다.

바. 法人申告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에 대한 支給時期 擬制(令 第195條·第198條·第206條의 2)

○ 法人申告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의 支給時期

法人稅의 申告納付制 轉換에 다라 法人申告時 納稅者가 스스로 益金加算한 所得을 配當·賞與等으로 處分한 所得의 支給時期를 當該法人의 法人稅 申告期限日로 擬制하였다.

따라서 法人稅 申告書의 所得處分欄에 配當·賞與等의 所得處分 事項을 記載하여 申告한 法人은 申告期限終了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當該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稅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또한 所得處分의 歸屬者가 課稅標準 確定申告를 한 경우에는 法人稅申告期間終了日이 속하는 달의 사음달 末日까지 自己에게 處分된 所得을 包含하여 追加 自進申告納付한 때에는 確定申告 期限內에 申告納付한 것으로 看做한다.

○ 法人所得 決定·更正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의 支給時期

法人所得金額을 政府가 決定·更正할 때 確定되는 所得處分의 支給時期는 從前과 同一하게 所管稅務署長으로부터 所得金額 變動通知書를 받은 날이 된다.

○ 其他 所得의 支給時期(令 第206條의 2)

法人의 所得金額을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更正함에 있어 益金에 算入한 金額으 處分內容中에 其他所得處分이 新設됨에 따라 (法人稅法 施行令 第94條의 2)所得稅法에서도 法人稅法에 의하여 處分된 其他 所得의 支給時期를 擬制하는 規定을 두었는 바 그 內容은 配當·賞與等과 同一하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申告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 (配當·賞與·其他所得)	新　　設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支給時期擬制		法人稅 申告期限終了日
• 源泉徵收納付期限		申告期限終了日 翌月 10日
• 追加自進納付時限		申告期限終了日 翌月 末日
○ 政府決定·更正에 의하여 確定되는 所得處分(配當·賞與·其他所得)		改正前과 同一
• 支給時期 擬制	所得金額變動通知를 받은 날	
• 源泉徵收納付時限	所得金額變動通知日 翌月 10日	
• 追加自進申告納付時限	所得金額變動通知日 翌月 末日	

사. 納稅組合敎父金引上(令 第240條)

零細事業者(露店, 煉炭販賣등)와 自由職業所得者 및 乙種 勤勞所得者는 納稅組合을 構成할 수 있으며 納稅組合員은 徵收稅額의 10%(乙種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20%)의 納稅組合控除 惠澤이 있다. 이러한 納稅組合에 대하여 納付稅額의 5%를 交付金으로 支給하여 納稅組合의 運營을 도우고 있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이 交付金을 引上 納付稅額의 10%로 하였다.

아. 에너지利用合理化施設 特別償却(令 第92條)

法人稅法篇 參照

자. 非居住者의 有價證券 讓渡所得課稅(法 第134條·第141條·第178條, 令 第185條·第189條의 2)

法人稅法篇 參照

〈讓 渡 所 得〉

1. 讓渡所得稅率의 引下 調整(法 第70條, 令 第121條의 3)

78年 稅法改正時 投機抑制 爲主의 稅法改正에 따라 讓渡所得稅率이 高稅率로 되었으나 이를 大幅 引下하여 住宅供給의 促進과 宅地開發을 꾀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法	令(彈力稅率)
○ 未登記轉賣	80%	75%	75%
○ 2年未滿保有	70	59	35
○ 2年以上保有	50	40	25
		(30)	(15)

( )國民住宅에 대한 稅率

稅率引下에 관한 規定은 所得稅法公布日(80. 12. 13)이후 讓渡分부터 適用되며 특히 法에서 新設된 彈力稅率을 適用하여 施行令에서 規定한 實行稅率은 81. 9. 30까지 讓渡하는 分에 限하여 適用된다. 그러므로 81. 10. 1이후에는 法에 규정한 法定稅率이 適用되는 것이다.

이 경우 15%의 實行稅率이 適用되는 2年以上 保有 國民住宅은 住宅建設促進法의 國民住宅範圍와 同一한 것으로 建物의 延面積이 85㎡(27.5坪)이하이고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面績이 170㎡(51.4坪)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만 不動產賣買業者에 대하여는 彈力稅率이 適用되지 않으므로 法定稅率 40%가 適用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2. 讓渡所得 算出稅額 計算方法 調整(法 第70條, 令 第121條의 3)

讓渡所得은 資產所得으로서 이중 重課하기 위하여 讓渡所得 基本稅率을 別途로 두고 있으나 巨額 所得者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는 경우보다 徑課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 改正時 讓渡所得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과 讓渡所得金額에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을 比較하여 많은 金額을 算出稅額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施行稅率의 引下 効果가 相殺되지 않도록 讓渡所得 法定稅率을 適用한 算出稅額(A)와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한 算出稅額(B)를 比較하여 (A)가 많을 때는 讓渡所得稅實行稅率을 適用하고 (B)가 많을 때는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도 80. 12. 13(法公布日)이후 양도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事　例>

課稅標準	讓渡所得稅率適用		B	(B>A인 경우B)
	A	C	綜合所得	算出稅額(B≦
	法定稅率(40%)	實行稅率(25%)	稅率適用	A인 경우 C)
4,000萬원	1,600萬원	1,000萬원	1,562萬원	1,000萬원
6,000萬원	2,400	1,500	2,622.5	2,662.5
1億	4,000	2,500	5,142.5	5,142.5

※ 2年以上保有, 一般住宅의 양도의 경우

3. 讓渡所得 特別控除制 導入(法 第23條)

讓渡所得 特別控除는 不動產投機抑制를 目的으로 한 不動產投機抑制稅 施行時期에 物價上昇에 따른 物價上昇을 超過하는 部分, 즉 投機所得에 대하여만 課稅하기 위하여 導入된 制度이므로 讓渡所得課稅制인 現行 制度下에서는 인플레所得도 課稅하여야 한다는 一部 主張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長期間에 걸쳐 發生한 所得을 一時에 課稅함으로써 保有期間이 長期間일 경우에는 負擔이 더욱 加重되는 것이 事實이므로 物價上昇控除制度를 다시 導入하여 保有期間의 長短에 따라 稅負擔이 適正하여지도록 하였다.

이 讓渡所得特別控除 對象은 2年以上 保有한 資產의 讓渡에 한하며 또한 그 共濟率은 年10%를 限度로 하여 韓國銀行이 發表한 都賣物價上昇率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規定도 稅率引下施行時期와 같이 法公布日(80. 12. 13)이후 양도한 分부터 滴用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稅率의 引下와 讓渡所得特別控除制 導入에 따른 稅負擔의 輕減을 보면 다음과 같다.

<事　例>

區　分	取得加額	讓渡價額	讓渡差益
1年保有	3,000萬원	3,900萬원	900萬원
3年保有	3,000	6,600	3,600〃

讓渡所得特別控除率 : 10%

稅負擔比較

(單位 : 百萬원)

區分 / 保有期間	改正前		改正				輕減			
			法定稅率		實行稅率		法定稅率		實行稅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稅額	負擔率
		%		%		%		%		%
1년	8.0	89.3	5.7	63.7	4.0	44.6	2.3	28.6	4.0	50.0
3年 一般	22.3	62.1	13.3	36.9	8.3	23.1	9.0	40.6	14.0	62.9
國民住宅			9.9	27.7	5.0	13.9	12.4	55.5	17.3	77.7

※ 防衛稅·住民稅 包含

4. 8年以上 自耕農地 非課稅 範圍 擴大(令 第14條)

所得稅法上 讓渡所得稅가 非課稅되는 8年以上 自耕農地의 範圍는 讓渡者가 讓渡할 때까지 8年以上 繼續하여 耕作한 土地로서 讓渡日 現在 農地임이 確認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8年以上 自耕農地라도 區劃整理事業等으로 本意아니게 地目이 變更되는 경우에는 課稅되는 不合理한 事例가 있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8年以上 自耕農地가 土地區劃整理事業等 부득이한 事由로 地目이 變更된 경우에도 換地處分公告日로부터 1年內에 讓渡하면 非課稅 惠澤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讓渡日 現在 農地의 確認을 農地稅納稅證明書에 의하여 確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稅

務署長이 農地與否를 直接調査 確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規定은 81. 1. 1이후 讓渡分부터 適用된다.

5. 1世帶 1住宅 範圍 調整(令 第15條)

1世帶 1住宅이라 함은 거주자 및 配偶者가 그들과 同一한 住所 또는 居所에서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과 함께 構成하는 1世帶가 國內에 1個의 住宅을 所有하고 6個月이상 居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가 30歲이상이거나 配偶者가 死亡 또는 離婚 等으로 없는 때와 相續을 받는 경우에 限하여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도 1世帶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配偶者가 없는 30歲미만인 居住者는 비록 扶養家族이 있는 경우에도 1世帶에 該當하지 아니하므로 國內에 1個의 住宅만을 所有하고 6個月이상 居住한 경우에도 그 住宅을 양도에 대하여는 1世帶1住宅의 非課稅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러한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기 위하여 30歲 未滿인 居住者가 所得(非課稅, 免稅, 分離課稅, 課稅를 不問한다)이 있고 扶養家族이 있는 경우에도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는 1世帶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도 1世帶도 認定되는 경우	○ 30歲이상인 경우 ○ 配偶者가 死亡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없는 경우 ○ 相續받은 경우	○ 30歲이상이거나 所得이 있는 경우 ○ 改正前과 같음. ○ 改正前과 같음.

또한 6個月 居住要件의 制限을 받지 않는 경우에 當該住宅의 保有期間이 2年 이상으로서 1世帶 1住宅임이 立證되는 경우를 追加하여 零細 庶民이 長期間에 걸쳐 1個의 住宅만을 所有하고 있었으나 資金事情등으로 그 住宅에 居住하기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境遇에도 1世帶 1住宅의 양도로 보아 非課稅토록 하였다. 이때 1세대 1주택임을 立證하는 住民謄錄票, 家屋臺帳謄本等에 의하여 그 讓渡住宅의 取得日 以後의 居住地 住宅이 그 讓渡者의 住宅이 아님을 證明하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6個月 居住要件 適用排除	○ 單獨住宅을 新築하여 讓渡하는 경우	○ 改正前과 같음
	○ 新　　設	○ 當該住宅의 保有期間이 2年이상으로서 1世帶 1住宅임이 立證되는 경우
	○ 其他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	○ 改正前과 같음

6. 其他 資產의 範圍 調整(令 第44條의2·第115條)

讓渡所得稅강 課稅되는 資產에는 土地·建物·不動產上의 權利와 其他資產이 있는 바 이 其他資產의 範圍를 擴大하여 一時 거액所得에 대하여 課稅함으로써 課稅의 公評을 期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其他資產	○ 다음의 株式 ㉮ 讓渡所得課稅 對象資產이 그 法人이 資產總額중 50%以上이고 ㉯ 株主1人과 特殊關係있는 株主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總數가 그 法人의 株式總數의 50%以上이며 ㉰ 株主1人과 特殊關係있는 株主가 그 法人의 株式의 50% 以上을 양도하는 경우	○ 改正前과 같음

區　　分	改 正 前	改　　正
	신　　설	○ 自由職業 所得者 이외의 事業所得者가 店鋪賃借人으로서의 權利를 讓渡하고 받는 經濟的利益(通商 店鋪權利金이라 함)
	신　　설	○ 營業權의 양도(營業權을 別途로 讓渡한 경우 및 영업권을 包含하여 양도되었다고 認定되는 경우 包含)

이러한 營業權 店鋪權利金의 양도소득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決定하는 것이 原則이며 다만 양도자가 提出할 書類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確認할 수 없는 경우(其他資產 이외의 資產의 경우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實地去來價額과 다르게 申告한 경우에 基準時價 適用)에는 基準時價를 適用하는 바 基準時價는 다음과 같다.

가. 讓渡所得課稅對象 株式 및 營業權 :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를 準用하여 平價한 價額

나. 店鋪賃借權

○ 讓渡價額(A)

讓渡時 賃借保證金相當額+양도자의 營業權評價額(當該 讓渡資產과 關聯된 事業의 營業權에 限함)

○ 取得價額(B)

取得時 賃借保證金 相當額+{(A)에 의한 讓渡價額-取得時의 賃借保證金 相當額}×$\frac{1}{2}$

위의 경우 賃借保證金 相當額은 賃借保證金과 月貰등을 賃借保證金으로 換算(月貰등

÷1年 滿期 定期預金 利子率)한 金額에 合計額을 말한다.

또한 이때 營業權을 評價함에 있어서 自己資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算出한 것중 큰 金額을 自己資本으로 한다.

○ 事業所得÷自己資本利益率

○ 收入金額÷自己資本回轉率

<事 例>

(單位 : 千원)

1) 讓渡者가 無記帳, 推計者의 경우		
2) 讓渡時 (80.5)	賃借保證金	10,000
	月賃借料	200
3) 取得時 (77.5)	賃借保證金	7,000
	月賃借料	200
4) 收入金額(V.A.T課標)		100,000
※ 自己資本 回轉率		5回
5) 所得金額		年間 10,000
※ 自己資本 利益率		41.7%

<稅額計算>

1) 賃借料의 賃借保證金 換算

$$\frac{200\times12}{20\%(\text{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 12,000$$

取得時 賃借保證金 : 7,000+12,000=19,000

讓渡時 〃 : 10,000+12,000=22,000

2) 自己資本

$$\frac{100,000}{5} = 20,000(A)$$

$$\frac{10,000}{41.7\%} = 24,000(B)$$

A<B이므로 24,000

3) 營業權 評價額

$$[(10,000)\times\frac{50}{100})-(24,000\times\frac{20}{100})]\times5=1,000$$

4) 讓渡價額

22,000+1,000=23,000

5) 取得價額

$19{,}000+(23{,}000-19{,}000)\times\frac{1}{2}=21{,}000$

6) 讓渡差益

23,000−21,000=2,000

7) 稅　　率

25%(法定稅率 40%의 實行稅率)

※ 保有期間 與否와 관계없음(所法 70조③1, 所令 121조의 3①1)

8) 所得稅額

$2{,}000\times\frac{25}{100}=500$

9) 防衛稅法

$500\times\frac{10}{100}=50$

7. 基準時價 適用範圍(令 第170條)

讓渡所得은 實地去來價額으로 決定하는 것이 原則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基準時價를 適用하는 것이다.

基準時價適用範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土地·建物 不動產上의 權利>	○ 實地去來 價額이 不分明한 경우	○ 豫定申告 및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實地去來 價額과 다르게 申告한 경우
<其他資產>		
○ 不動產過多所有法人의 株式 ○ 店鋪賃借權 ○ 營業權	○ 實地去來 價額이 不分明한 경우 신　설	○ 實地去來 價額을 讓渡者가 提出한 證憑에 의하여 確認할 수 없는 경우

法 人 稅 法

[要 約]

法人稅率體系를 合理的으로 調整하여 法人類型間의 稅負擔의 衡平을 期하고, 借入金에 의한 他企業株式取得을 規制하여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期하도록 하였으며 其他 現行法令中 不合理하거나 不分明한 規定등을 補完함으로써 申告納付制度의 실시에 對備하여 納稅者가 所得金額이나 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가. 非課稅所得範圍 縮小調整
  ○ 非課稅所得範圍 縮小
  ○ 國·公債利子에 對한 所得控除
나. 法令에 의한 準備金 調整
다. 損金不算入 範圍調整
  ○ 住民稅
  ○ 保險會社의 事業費
라.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損金規制
  ○ 損金規制要件
  ○ 損金否認되는 利子計算
  ○ 適用例
마. 支給利子 損金否認規定 適用順位
바. 綠色申告法人制度 廢止
사. 住宅購入資金 融資에 대한 不當行爲排除
아. 에너지 節約設備에 대한 特別償却
자. 法人稅率調整
차. 稅額控除 順位調整
카. 所得處分 調整
타.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
파. 未納付加算稅率 調整
하. 旣課稅된 源泉徵收 漏落所得에 대한 源泉稅追徵排除 및 源泉徵收 不履行加算稅率 引上
거. 外國法人의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대한 源泉徵收 調整
너. 特別附加稅率 引下調整

1. 非課稅所得範圍 縮小調整

가. 非課稅所得範圍 縮小(法 第10條, 令 第15條)

그동안 國·公債 및 金融債券의 消化促進을 위하여 이러한 國·公債등 債券의 利子에 대하여는 非課稅하여 왔으나 課稅衡平을 期하기 위하여 이러한 非課稅所得 範圍을 大幅 縮小하였다.

區 分	改正前	改正
— 國·公債		
○ 産業復興國債利子	非課稅	非課稅
○ 徵發報償證券利子	〃	〃
○ 電信電話債券利子	〃	〃
○ 地下鐵公債利子	〃	〃
○ 道路公債利子	〃	〃
○ 上水道公債利子	〃	〃
○ 國民投資債券 및 預託金利子	〃	課稅(所得控除)
○ 財政證券利子	〃	〃
○ 糧穀基金證券利子	〃	〃
— 金融債券		
○ 國民住宅債券利子	〃	非課稅
○ 其他 金融債券利子	〃	課稅
— 其他債券		
○ 土地開發債券利子	〃	非課稅
○ 國民貯蓄組合 貯蓄利子	〃	〃
○ 其他債券 利子	〃	課稅
— 公益神託의 利益	〃	非課稅

나. 國·公債利子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10條의2, 令 第15條)

國·公債利子中 一部가 課稅로 轉換됨에 따라 國·公債의 消化不振으로 因한 財政資金의 適

期調達에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으므로 課稅로 轉換한 다음의 國·公債利子所得에 대하여는 그 利子所得의 50%를 法人의 總所得金額에서 控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所得控除를 받기 위하여는 法人稅 課稅標準 申告書에 당해 利子所得에 관한 明細書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 所得控除對象利子所得

- ○ 國民投資債券 및 預託金에 對한 利子
- ○ 財政證券의 利子
- ○ 糧穀基金證券의 利子

다. 適 用 例

非課稅範圍 縮小와 國·公債利子에 對한 所得控除에 關한 規定은 1981年 1月 1日以後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된다. 따라서 1981年 1月 1日以前에 發行된 債券으로서 利子計算期間이 1981年 1月 1日前後에 걸쳐있는 債券의 경우에는 期間에 따라 按分計算하여 1981年 1月 1日以後 期間分利子에 對해서만 改正稅法에 의하여 課稅대상이 된다.

2. 法令에 의한 準備金의 調整(法 第12條, 令 第16條)

保險業法·銀行法·相互信用金庫法·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하는 各種 準備金의 損金限度를 해당 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던 것을 法人稅法에서 規定함으로써 準備金 調整에 의한 所得金額調整을 防止하고 또한 그 損金限度도 合理的으로 縮小調整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保險業法> ○ 責任準備金	<生 保> ○ 純保險料方式에 의하여 事業年度末 現在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	○ 貯蓄性保險 : 保險約款上 事業年度末現在 모든 保險契約이 解約된 경우 支給하여야 할 還給額(解約控除額 포함)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損　保> 收入保險料의 50% (先受保險料로 看做)	○ 支給備金 : <損　保> 推定保險金 <生　保> 契約上 保險金
○ 支給備金	○ 保險事故는 發生하였으나 事業年度末 現在 支給할 保險金이 아직 確定되지 아니한 금액	※ 支給備金은 責任準備金에 包含
○ 非常危險準備金	收入保險料×營業利益率	○ 各事業年度 損金限度 － 收入保險料 ×營業利益率(20%限度) ○ 累積限度 : － 正味收入保險料의 50%
<銀行法>		
○ 給付補準備金	－ 事業年度中에 發生한 定期積金 및 定期預金에 대한 支給利子 相當額	<現行과 같음>
<相互信用金庫法>		
○ 給付塡準備金	－ 事業年度中에 發生한 相互信用契金 및 賦金에 對한 支給利子 相當額	<現行과 같음>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 損害賠償充當金	－ 收入鑑定料의 3%	○ 各事業年度　損金限度 : 收入鑑定料의 3% ○ 累積限度 : 收入鑑定料의 20%

法令에 의한 準備金中 保險業法에 의한 責任準備金은 다음 事業年度 所得金額 計算上 益金에 還入하여야 하며, 또한 非常危險準備金이 있는 保險會社가 事故別로 10億원(人保險 : 2,000萬원)이상의 保險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非常危險準備金에서 먼저 相計하여야 하며 給付補塡準備金과 損害賠償充當金의 경우에도 당해 利子 또는 損害賠償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準備金 또는 充當金에서 먼저 相計하여야 한다.

또한 法令에 의한 準備金을 設定하여 損金으로 計上한 法人은 準備金 算出根據등을 明示한 準備金明細書를 法人稅 申告書에 첨부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3. 損金不算入 範圍調整(法 第16條, 令 第35條의2)

稅法은 法人이 支出한 經費라도 租稅政策上 損金算入을 認定하지 아니하는 經費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 이러한 損金不算入 經費中 一部를 다음과 같이 調整 또는 新設하였다.

가. 住 民 稅

法人의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算入을 認定하지 아니하는 住民稅中 所得金額에 比例하여 納付하는 所得割住民稅만을 損金不算入으로 하고, 法人所得과 關係없이 모든 法人이 劃一的으로 納付하는 均等割住民稅는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損金不算入	○ 各 事業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住民稅	○ 各 事業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所得割住民稅

나. 保險會社의 事業費

保險事業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기 위하여 保險會社가 保險業法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認可한 豫定事業費를 超過하여 事業費를 支出한 境遇에는 그 超過하는 金額은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損金不算入	<新　　設>	○ 保險會社가 支出한 事業費中 財務部長官이 認可한 初期事業費 執行方式에 의한 保險商品別 事業費의 合計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損金不算入

이경우 保險會社가 "지출한 事業費"는 豫定事業費에 포함된 經費項目으로서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된 金額을 말한다. 따라서 減價償却費등은 豫定事業費에 포함되지 아니한 經費項目이므로 支出한 事業費에서 除外되며 또한 豫定事業費에 포함된 接待費의 경우에도 限度超過로 損金否認된 接待費相當額은 支出된 事業費에서 除外하여 二重으로 損金이 否認되는 事例가 없도록 하였다.

4.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 損金規制(法 第18條의3, 令 第43條의2)

그동안 우리나라의 企業은 다른 企業을 支配하기 위하여 他人資本에 의한 無理한 企業擴張을 行함으로써 企業의 財務構造를 惡化시키는 主要한 要因이 되어 왔으며 이는 支給利子에 대하여 無制限 損金을 認定하고 있는 稅制에도 그 要因이 있었다.

따라서 企業의 無理한 企業擴張을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借入金이 過多한 法人이 他企業의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에는 支給利子中 一定額을 損金으로 認定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가. 損金規制要件

1) 對外借入金이 自己資本의 3倍를 超過하는 法人이
2) 他企業의 株式을 取得하여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支給利子中 一定金額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株式取得의 경우에는 支給利子 損金否認規定(法 第18條의3)은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

- ○ 機關投資者 또는 短期金融會社가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
- ○ 代物辨濟로 株式을 取得한 경우
  (株式을 取得한 날로부터 1年內에 限함)
- ○ 主務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이 協議하여 株式을 引受하는 경우
- ○ 外國人投資企業에 直接出資하여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

나. 損金否認되는 利子額 計算

$$\text{支給利子} \times \frac{\left.\begin{array}{l}\text{○ 株式取得價額}\\ \text{○ 自己資本의 3倍를 超過하는 借入金}\end{array}\right\}\ \text{中 적은 金額}}{\text{總 借 入 金}}$$

이 경우 株式取得價額·自己資本 및 借入金은 積數로 換算한 金額에 의한다.

<事 例>

(單位 : 億원)

區 分	<例 1>	<例 2>
○ 自己資本의 積數	330	300
○ 總借入金의 積數	1,000	1,000
○ 自己資本의 300%를 超過하는 借入金 積數	100	100
○ 株式取得價額 積數	150	50
○ 支給利子 總額	20	20

※ 支給利子 否認額

<例 1>

$$20\text{億원} \times \frac{100\text{億}}{1{,}000\text{億}} = 2\text{億}$$

<例 2>

$$20\text{億원} \times \frac{50\text{億}}{1{,}000\text{億}} = 1\text{億}$$

다. 適 用 例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 損金否認規定(法 第18條의3)은 1981年 1月 1日以後 株式을 取得한 法人이 1981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에 支給하는 利子에 對하여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株式取得에는 잉여금의 資本轉入에 의한 無償株 收入은 取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1981年 1月 1日以前에 取得한 株式과 發行法人이 같은 同種의 株式을 1981年 1月 1日以後에 取得한 後 그 株式의 一部만을 處分한 경우에는 規制對象이 되는 1981年 1月 1日以後 取得한 株式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看做하도록 하였다.

5. 支給利子 損金否認 規定適用 順位(令 第43條의2)

現行法上 支給利子의 損金을 否認하는 경우는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의 利子, 業務와 關聯없는 資產取得에 使用한 借入金 利子, 建設資金 利子 또는 이번에 新設한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한 法人이 한 事業年度에 여러가지의 支給利子損金 否認規定이 適用이 되는 경우 그 適用順位을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여 執行上 混亂이 招來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서 支給利子 損金否認規定이 同時에 適用되는 경우에는 다음 順位에 의하여 適用하도록 하여 執行上 混亂이 없도록 하였다.

1)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에 대한 支給利子 否認(法 第16條第11號)

2) 業務와 關聯없는 資產의 取得에 使用된 借入金에 대한 利子否認(法 第16條第7號)

3)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의 利子(法 第18條의3)

4) 建設資金에 使用한 借入金의 利子(法 第16條第11號)

또한 利子損金 否認額 計算에 있어서 "支給利子"는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된 利子를 말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說明한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 否認額 計算事例(54페이지)에서 總支給利子中

-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利子가 4億원,
- 業務와 關聯없는 資產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가 6億원이 있었다면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利子否認額은 다음과 같이 된다.

<例 1>

$$(20億-4億-6億) \times \frac{100}{1,000} = 1億$$

<例 2>

$$(20億-4億-6億) \times \frac{5}{1,000} = 0.5億$$

6. 綠色申告 法人制度 廢止

가. 綠色申告法人制度는 誠實히 申告한 法人에게 法人稅의 分納등 여러가지 稅制上의 惠澤을 賦與하는 制度로서 政府調査決定 制度下에서 誠實申告를 誘導하여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할 수 있는 納稅風土를 마련하기 위하여 運營해온 制度이다.

이제 79年度 稅法改正으로 1981年부터 申告納付制度가 실시됨에 따라 綠色申告制度는 그 存立意義가 없어졌으며, 또한 申告納付制度는 不誠實 納稅者에 대한 強力한 制裁로 誠實納付를 確保함을 基本으로 하는 制度이므로 稅制上의 惠澤을 賦與하여 誠實納稅를 誘導하려는 綠色申告制度는 더이상 存置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綠色申告制度를 廢止함에 따라 綠色申告法人에 대한 다음과 같은 特惠規定응 削除되었다.

<綠色申告法人에 對한 特惠>

- ○ 移越缺損金 控除期限 延長(3年→4年) (法 第8條)
- ○ 法人稅 分納(法 第30條·第31條, 令 第90條)
- ○ 貸損充當金 增額設定(1%→2%) (令 第19條)
- ○ 綠色法人에 對한 特別償却(20%) (令 第51條)
- ○ 綠色申告에 對한 減價償却不足額 移越認定(令 第54條)

다만, 綠色申告法人에게 申告調整만으로 各種 準備金을 損金計上할 수 있도록 한 規定은 綠色申告法人은 大部分 上場法人으로서 外部 會計監査를 받는 法人이라는 데 주어진 것이므로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으로 調整하였다.

나. 適 用 例

綠色申告法人制度의 廢止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기 위하여 旣存 綠色法人은 1981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는 從前規定을 그대로 適用하도록 하였으므로 12月末 法人의 경우에는 事實上 1983年 1月 1日以後 申告하는 分부터 綠色申告法人에 관한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된다.

7. 住宅 購入資金 融資에 對한 不當行爲 排除(令 第46條)

企業이 無住宅 使用人(任員은 除外)에게 國民住宅 規模以下의 住宅購入에 所要되는 資金을 無利子 또는 낮은 利子率로 融資해준 경우에도 不當行爲 否認規定 適用을 排除토록 하여 從業員의 福祉厚生을 위한 企業의 支援을 稅制面에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경우 住宅購入資金 融資는 1,000萬원(外國法人이 融資하는 경우에는 2,000萬원)으로 制限하고 있으므로(規則 第22條) 限度額 以上을 融資한 경우에는 融資金額中 限度額 超過金額은 不當行爲計算 對象이 된다.

또한 이 規定은 1981年 1月 1日 以後 申告하는 事業年度(1980事業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부터 適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從前에 融資해준 分에 대하여도 1980事業年度의 所得計算時부터 不當行爲 否認規定을 適用받지 아니하게 된다.

8. 에너지節約設備에 對한 特別償却(令 第51條)

에너지節約을 위한 産業設備改替를 지원하기 爲하여 法人이 에너지 利用合理化法에 規定하는 에너지節約設備를 投資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節約設備에 대한 減價償却은 一般償却 範圍額에 100% 加算한 金額을 特別히 償却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에너지節約設備投資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7에 규정한 에너지節約設備投資稅額控除와 重複 適用되는 경우에는 그中 한가지 方法만을 선택하여 適用받아야 한다.

또한 이 特別償却規定은 1908年 6月 30日부터 1981年 12月 30日까지 期間中에 投資를 開始한 分에 限하여 適用된다.

9. 法人稅率 調整(法 第22條)

從前 法人稅率構造는 非現實的으로 낮은 所得階級과 法人類型에 따라 稅率을 달리함으로써 稅率體系의 複雜性을 招來하고, 法人間 또는 所得階層間에 稅負擔의 衡平을 期하지 못하는 등 不合理性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서 法人稅率構造를 單純化하고 所得階級을 大幅引上(500萬원→5,000萬원)함으로써 全般的으로 稅負擔을 引下하는 한편 公開法人 稅率을 引上하여 一般法人과 公開法人間의 稅率隔差를 縮小하는 등 法人稅率體系를 全面的으로 改編하였다. 改正稅率은 1981年 1月 1日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率 計算時부터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改正前法人稅率

所得階級	一般	公開		中小	非營利	
		35%以下	35%超過		學校	其他法人
300萬원以下	20%	20%	25%	15%	15%	20%
500 〃	30			25		
500萬원超過	40	30	35	35	27	27

改正法人稅率

所得階級	一般法人	公開(35%以下)	非營利法人
5,000萬원以下	25%	25%	20%
5,000 〃 超過	40	33	27

※ 中小法人과 公開法人中 大株主 所有株式比率이 35%를 超過하는 公開法人은 一般法人稅率 適用

法人稅率 調整에 따라 總法人의 98%에 해당하는 中小法人과 一般法人은 稅負擔이 輕減되었으며, 大法人인 公開法人中 所得金額이 5億원을 超過하는 法人은 稅負擔이 多少 增加되었다.

法 人 稅 負 擔 比 率

(單位 : 百萬원)

區 分 / 課稅標準	改正前(A)		改 正(B)		增 減	
	稅 額	負擔率	稅 額	負擔率	稅 額 (B−A)	負擔率 (B−A/A)
(一般法人)	%	%		%		%
50	19.2	38.4	12.5	25.0	△6.7	△34.8
100	39.2	39.2	32.5	32.5	△6.7	△17.1
500	199.2	39.8	192.5	38.5	△6.7	△3.4
1,000	399.2	39.9	392.5	39.3	△6.7	△1.7
(中小法人)						
10	2.7	27.0	2.5	25.0	△0.2	△7.4
30	9.7	32.3	7.5	25.0	△2.2	△22.6
50	33.4	33.4	12.5	25.0	△4.2	△25.1
100	34.2	34.2	32.5	32.5	△1.7	△5.0
(公開法人)						
50	14.5	29.0	12.5	25.0	△2.0	△13.8
100	29.5	29.5	29.0	29.0	△0.5	△1.7
500	149.5	29.9	161.0	32.2	11.5	7.7
1,000	299.5	29.95	326.0	32.6	26.5	8.8

※ 公開法人 : 大株主 持分率35%以下

10. 稅額控除 順位 調整(令 第79條)

法人稅法·租稅減免規制法 및 其他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의 減免에 關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 規定에 同時에 適用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를 納稅者에게 有利하도록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 法 第11條의 免除所得에 對한 免除	1) 法人의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直接減免
2) 外國納付稅額控除(法 第24條의 3)	2) 稅額控除中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3) 災害損失稅額控除(法 第25條)	3) 稅額控除中 移越控除가 認定되는 稅額控除
4) 臨時投資 稅額控除(法 第24條의 2)	① 前事業年度에서 移越된 未控除額(發生年度가 다른 때에는 먼저 年度分부터 控除) ② 當該事業年度中에 發生한 稅額控除

稅額控除를 함에 있어서 1호의 直接減免稅額과 2호의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의 合計額이 納付한 法人稅額(特別附加稅 및 加算稅額은 除外)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되는 稅額은 업슨 것으로 看做된다.

11. 所得處分 調整(令 第94條의2)

法人稅 課稅標準은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 所得金額의 處分(所得의 種類와 歸屬者確定)을 所得稅法上의 所得의 種類와 一致되게 處分하도록 補完하였다.

申告納付制의 실시에 따라 所得處分도 納稅者 自身이 하여 그에 따라 相對方의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法人稅申告期限日이 屬하는 다음달 10日까지 納付하여야 함으로 所得處分에 關한 규정은 納稅者에게도 重要한 意味가 있다.

○ 所得處分 改正內容

事　　案	所 得 處 分
– 益金에 算入한 金額이 社外에 流出된 경우	
○ 歸屬이 分明한 경우	
(1) 歸屬者가 出資者(任員除外)인 경우	利益處分에 의한 配當所得
(2) 歸屬者가 使用人(任員포함)인 경우	利益處分에 의한 賞與所得
(3) 歸屬者가 法人이거나 個人事業者인 경우 (個人事業者의 경우에는 그 分與된 利益이 事業所得을 構成하는 경우에 限함)	利益處分에 의한 其他社外流出
(4) 歸屬者가 (1)~(3)以外의 者인 경우	利益處分에 의한 其他所得
○ 歸屬이 不分明한 경우	代表者에 對한 利益處分에 의한 賞與所得
○ 各種 限度額 超過分	利益處分에 依한 其他社外流出
– 接待費限度 超過分	
– 保險會社의 예정사업비 超過分	
–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 利子	
– 非業務用資產取得에 使用한 借入金 利子	
– 益金에 算入한 金額이 社外에 流出되지 않은 경우	留　保
– 推計決定을 하는 경우 推計決定所得과 法人의 B/S상의 當期純利益(法人稅控除前利益)과의 差額	代表者에 對한 賞與 但 推計事由가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장부 멸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其他社外流出

<適 用 例>

所得處分에 관한 改正規定은 1981年 1月 1日 以後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토록 하고 있다.

12.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

法人은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45日 以內에 決算을 確定하고, 決算確定日로부터 15日內에 法人稅課稅標準 및 稅額을 申告하여야 함으로 申告期限은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된다. 또한 申告한 法人稅額은 申告期限內에 自進納付하여야 함으로 申告期限은 同時에 納付期限이라는 點에서 重要한 意味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決算을 確定함에 있어서 外部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는 外部監査對象法人과 法人稅申告에 있어서 外部稅務士나 公認會計士의 稅務調整을 받아야 하는 外部稅務調整對象法人의 경우에는 決算確定이나 申告書 作成에 있어서 一般法人보다 더 많은 時間을 所要하여 申告期限을 各各 15日씩 延長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申 告 期 限	決算確定日로부터 15日內	決算確定日로부터 15日內 (外部調整計算書 添附法人은 30日內)
決 算 確 定 日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45日內(上場法人은 60日內)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45日內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은 60日內)

이러한 結果로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이면서 外部調整計算書를 添附하여야 할 法人의 경우에는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最長 申告期限은 90日이 된다.

事 例		事業年度終了日로 부터 最長申告期限
○ 一般法人	○ 外部調整計算書 不添附	60日
	○ 外部調整計算書 添附	75日
○ 外部會計 監査對象法人	○ 外部調整計算書 不添附	75日
	○ 外部調整計算書 添附	90日

13. 未納 加算稅率 調整(法 第41條, 令 第113條의3)

法人稅를 自進申告納付制로 轉換하면서 未納加算稅의 경우 長期에 걸친 未納付를 防止하고자 利子稅로 轉換하여 未納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年 利子率 : 20%)로 計算한 金額을 未納加算稅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規定은 短期間(6月)의 未納稅의 경우에는 從前의 加算稅率(10%보다 낮으므로 租稅의 短期間 流用으로 인한 歲入의 適期確保에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 未納付加算稅率을 金融機關의 金利引上에 따라 日邊 7錢(年利子率)으로 引上하였으며 또한 日邊 7錢으로 計算한 金額이 未納付稅額의 10%에서 未達할 때에는 未納付稅額의 10% 相當額을 加算稅額으로 하도록 하여 租稅의 短期流用을 規制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未納加算稅	未納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	다음중 많은 것 ① 未納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7錢 ② 未納稅額의 10%

이 規定은 81. 1. 1以後 최초로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여 法人稅 自進申告納付制의 施行 時期와 같이 施行되도록 하였다.

14. 旣課稅된 源泉徵收 漏落所得에 對한 源泉稅 追徵排除 및 源泉徵收不履行加算稅率 引上

所得稅法 篇 參照

15. 外國法人의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對한 源泉徵收調整(法 第54條·第55條·第59條, 令 第121條·第122條)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中 有價證券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讓渡金額의 25%를 源泉徵收

하도록 하고 있어 讓渡差益이 없는 경우에도 稅金을 負擔하는 不合理性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에서 有價證券의 範圍를 明白히 함과 同時에 源泉徵收에 있어서도 從前과 같이 有價證券 讓渡價額의 25%나 또는 讓渡差益의 40%中 選擇하여 源泉徵收토록 하여 外形基準에 의한 劃一的인 源泉徵收로 因한 모순점을 除去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有價證券의 範圍	<新　設>	○ 內國法人의 出資證券 및 株式과 外國法人의 國內 事業場이 發行한 其他 有價證券
有價證券 讓渡時 國內源泉所得課稅標準과 稅率	讓渡差額의 25%	讓渡價額의 25% ＞ 중 작은 것 讓渡差額의 40% ○ 讓渡差額의 40%로 할 수 있는 경우 – 取得價額이 출자금 또는 株金納入領收證, 양도증서·代金支給 領收證·기타 출자 또는 取得에 所要된 金額을 證明에 의하여 確認된 경우로서 – 그 取得價額은 다음의 金額으로 한다. ㉮ 그 有價證券의 取得에 직접 所要된 金額(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除外) ㉯ 無償株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金額 $\frac{\text{舊株式 1株當 장부가액}}{1+\text{舊株式 1株當 新株配定數}}$ ㉰ 有價證券을 贈與 받은 경우 取得價額은 當初 贈與者의 取得價額에 의함.

16. 特別附加稅率 引下 調整(法 第59條의2·第59條의3, 令 第124條의2)

景氣浮揚과 非業務用 부동산의 處分을 促進하기 위하여 特別附加稅率을 一般的으로 引下함과 동시에 15% 範圍內의 彈力稅率制를 導入하여 低稅率의 實行稅率을 定하여 適用하도록 하고 다만, 實行稅率은 改正稅法 公布日(1980. 12. 13)부터 1981年 9月 30日까지 讓渡한 分에 限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特 別 附 加 稅 率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法定稅率	實行稅率
2年以上 保有	20(%)	20(%)	13(%)
2年彌滿 保有	35	25	18
未登記 轉賣	40	35	35

또한 資產의 長期保有者에 대한 稅負擔의 公平을 期하기 위하여 2年以上 保有 不動產에 대하여는 物價上昇率 控除制度를 導入하였다.

다만, 都賣物價上昇率이 年 10%를 超過할 때에는 10%로 制限하도록 하였다.

※ 改正法人稅法의 適用例

改正된 法人稅法 및 施行令 規定은 個別的인 適用例를 特別히 따로 規定한 경우을 除外하고는 1981年 1月 1日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 所得分부터 適用된다.

附加價値稅法

[要　約]

附加價値稅의 免稅範圍와 買入稅額 控除範圍를 當初 立法趣旨에 맞도록 調整하고, 零細事業者에 대한 制裁規定을 緩和하는 한편 其他 執行過程에서 納稅者의 不便과 民怨의 素地가 되고 있는 現行法의 未備點을 補完하였음.

가. 免稅範圍 調整

○ 高速旅客船등 特種船舶에 의한 旅客運送用役과 寢臺車등 特殊自動車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을 附加價値稅 課稅對象으로 規定함.

○ 不動產賃貸用役中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와 田畓등의 土地賃貸用役만을 免稅對象으로 規定하고 余他 事業用 不動產賃貸用役은 課稅對象으로 規定함.

○ 政府業務代行團體에 國際空港管理公團과 畜產業協同組合을 追加하고 畜產業協同組合의 食品加工業은 課稅토록 함.

○ 免稅與否가 不分明한 助產員등의 醫療保健用役을 免稅對象으로 明確히 規定함.

나. 買入稅額控除範圍 調整

○ 更正時 期限內 提出하지 못하고 保管하고 있는 買入稅金計算書에 대하여 買入稅額控除를 許容함.

○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의 支出에 關聯된 買入稅額 控除를 排除함.

다. 零細事業者에 대한 制裁規定 緩和

○ 課稅特例者의 事業者登錄證 未登錄, 未檢閱加算稅率을 0.5%로 引下함.

라. 其他 未備點 補完

○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供給한 경우, 土地를 除外한 建物등의 課稅標準 計算方法을 改善함.

○ 課稅特例者에 대한 更正制限規定에 대한 例外 新設

1. 特種 船舶과 特殊 自動車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에 對한 課稅(法 第12條第1項第6號, 令 第31條第2項第3號)

高速旅客船등 特種船舶이나 寢臺車등 特殊自動車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을 一般大衆運送用役에 포함시켜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던 것을 現在 課稅되는 高速버스, 專貰버스, 택시에 의한 旅客運送用役과 衡平을 維持하기 爲하여 課稅對象으로 規定하였다.

여기서 特種船舶이란 海上運送事業法 第4條에서 規定하는 特種船舶을 말하며 特殊自動車는 自動車運送事業法 第3條第7號에서 規定하는 特殊自動車運送事業에 供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다만 現在 特殊自動車運送事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없는 것으로 안다.

2. 不動産賃貸用役에 對한 課稅(法 第12條第1項第11號, 令 第2條第1項第4號)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하여는 當初 賃貸料가 要素所得이라 하여 附加價値稅를 免除하였으나 事實上 要素所得의 比重이 적으므로 改正稅法에서는 이를 原則的으로 課稅하도록 하였다.

다만,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와 田畓·林野·果樹園·塩田의 賃貸의 境遇에는, 無住宅者와 農·漁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繼續하여 免除하도록 規定하였다.

가.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範圍(令 第34條第1項, 第2項)

附加價値稅가 繼續하여 免除되는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란 『常時 住居用으로 使用하는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를 넘지 않는 土地』를 말한다.

여기서 賃貸住宅에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事業用 建物이 함께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免稅되는 住宅과 課稅되는 事業用不動産의 區分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는, 住宅部分의 面積이 事業用建物部分의 面積보다 큰 때에는 그 全體를 住宅의 賃貸로 보아 免稅한다.

둘째는, 住宅部分의 面積이 事業用建物部分의 面積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住宅部分以外의 事業用建物部分은 住宅의 賃貸로 보지 않게되고 그 部分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課稅한다.

나. 不動產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令 第22條, 令 第49條의2, 令 第57條第6號)

不動產賃貸에 있어서는 賃貸料가 主된 對價라 할 수 있으나 保證金(傳貰金 包含)의 경우에도 그 自體는 對價라 할 수 없어도 保證金에 대한 利子相當額을 對價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通念이므로 이를 課稅標準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具體的인 課稅標準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 賃貸料

不動產賃貸와 같이 繼續的으로 用役이 供給되는 경우에는 對價의 各部分을 받기로 한 때가 供給時期가 되므로 各課稅期間에 받기로 한 賃貸料의 積數가 當該課稅期間의 課稅標準에 算入된다. 따라서 賃貸料 支給의 約定日이 基準이 되고 實際支給日이 基準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約定日 以前에 賃貸料의 支給을 받았을 때 契約의 修正으로 보아 課稅標準에 算入할 것이냐의 問題는 個別的인 事實判斷의 問題가 될 것이다.

○ 賃貸保證金

不動產賃貸用役을 供給하고 保證金 또는 傳貰金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課稅標準에 算入한다. 다만, 이 部分에 대하여는 稅金計算書交付 義務를 免除함으로써 賃借人이 買入稅額 控除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text{當該期間의 賃貸保證金 또는 傳貰金}) \times \text{課稅對象期間의 日數} \times \frac{\text{契約期間1年의 定期預金利子率}}{365}$$

= 賃貸保證金에 대한 課稅標準

※ 利子率은 當該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 終了日 現在를 基準으로 한다.

○ 歸屬이 不分明한 賃貸料등의 區分計算

課稅되는 不動產賃貸用役과 免稅되는 住宅賃貸用役을 함께 供給하여 그 賃貸區分과 賃貸料등의 區分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算式을 順次로 適用하여 課稅標準을 計算한다.

1. $\text{賃貸料등의 對價} \times \frac{\text{土地(建物)價額}}{\text{總不動產價額}}$

   = 土地(建物)分에 對한 賃貸料등의 對價

2. 土地(建物)分에 對한 賃貸料등의 對價

   $\times \frac{\text{課稅되는 土地(建物)賃貸面積}}{\text{總土地(建物)賃貸面積}}$

   = 土地(建物)賃貸에 대한 課稅標準

3. 政府業務代行團體의 範圍調整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政府業務代行團體에 國際空港管理公團과 畜産業協同組合을 追加하였다(令 第38條).

畜産業協同組合은 舊畜産振興會를 統合하여 設立된 것이다.

다만, 當該組合의 業務中 食品加工業과 같은 製造業이 包含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別途로 附加價値稅를 課稅하도록 例外規定을 두었다.

4. 醫療保健用役의 範圍를 明確히 規定

標準産業分類表上 醫療保健用役으로 規定되어 있으면서도 法令上 免稅對象으로 明示되어 있지 않아, 執行上 免稅與否가 不分明하던 一部 醫療保健用役을 免稅對象으로 明確히 規定하였다(令 第29條). 追加로 規定된 醫療保健用役은 다음과 같다.

○ 醫療法에서 規定하는 助産員, 看護員이 提供하는 用役

○ 醫療技士法에서 規定하는 臨床病理士, 放射線士,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齒科技工士 또는 齒科衛生士가 提供하는 用役

5. 更正時 買入稅額 控除範圍 擴大

買入稅金計算書를 期限內 提出하지 못하고 保管하고 있는 경우에도 更正時 稅務官署의 確認을 거쳐 政府에 提出한 때에는 買入稅額의 控除를 許容하도록 하였다(法 第17條第2項第1號, 令 第60條第1項第1號, 法 第26條第3項, 令 第74條의3第2項). 다만, 當該 買入稅金計算書에 대하여는 遲延提出加算稅를 賦課토록 하여 稅金計算書의 期限內 提出을 誘導하도록 補完하였다(法 第22條第2項).

6. 接待費 等에 關聯된 買入稅額控除不認定

所得稅法 第50條 및 法人稅法 第18條의2에 規定하는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의 支出에 關聯된 買入稅額에 대하여는 事業과 直接關聯이 없는 買入稅額으로 보아 그 控除를 排除하도록 하였다(法 第17條第2項3의2號, 令 第60條第5項).

7. 課稅特例者에 對한 事業者登錄證 未檢閱加算稅率 引下

課稅特例者가 事業者登錄證 檢閱義務를 履行하지 못한 경우 去來金額의 1%에 該當하는 加算稅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零細事業者를 保護한다는 趣旨에서 0.5%로 그 加算稅率을 引下하였다(法 第28條第3項).

8. 建物等 不動產 課稅標準計算 方法改善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土地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建物등을 함께 供給하여 그 實地去來價額의 區分이 不分明한 경우 改正前의 計算方法에 의하여 區分計算하면 基準時價로 評價한 土地의 價額이 實勢보다 낮아 建物등의 課稅標準이 相對的으로 높게 되는 結果를 招來하여 그 計算方法을 다음과 같이 改善하였다(令 第48條의2第3項).

〈改 正 前〉

不動產總供給價額 — 基準時價로 評價한 土地價額=建物등의 課稅標準額

〈改 正 後〉

$$\text{不動產總供給價額} \times \frac{\text{地方稅法上 課稅時價 標準額으로 評價한 建物價額}}{\text{地方稅法上 課稅時價 標準額으로 評價한 不動產價額}}$$

= 建物등의 課稅標準額

9. 課稅特例者의 更正制限에 對한 例外設定

課稅特例者가 課稅標準을 國稅廳長이 定하는 標準申告率以上 申告한 경우에는 更正이 一律的으로 制限되어 있던 것을 改正稅法에서는 客觀的인 證憑資料에 의하여 過少申告임이 明白한 경우에는 更正을 할 수 있도록 例外規定을 두었다(法 第28條第2項).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企業의 增資를 通한 財政構造改善을 誘道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對象의 擴大와 增資期間 및 所得控除期限을 延長하고 法人의 非業務用 不動產所有를 規制하는 등 企業體質強化를 圖謀할 수 있는 稅制上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가. 財政證券利子등 非課稅所得을 10%分離課稅하고 復權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도 引上함.
나.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排除
다. 特別附加稅등의 分納許容
라. 增資所得控除適用對象 擴大 및 期間延長등
마.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 控除申請 節次
바.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庶民住宅建設用役
사. 特別消費稅가 免稅되는 軍納物品의 範圍
아. 公開法人要件에 관한 特例
자.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대한 稅制支援
차. 새마을運動 中央本部등에 대한 法人稅 및 地方稅 免除
카. 其　他
　1)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削除
　2) 贈與의 擬制 規定適用排除
　3) 現行法令의 未備點 補完

1. 財政證券 利子등 非課稅所得을 10%分離 課稅하고, 福券當籤 所得에 對한 源泉徵收稅率도 引上함.(法 第3條 ①·④·⑥ 및 令 第2條의 2 ①, 法 第4條③)

가. 法改正事項

財產所得에 대한 課稅를 強化하여 所得間 租稅負擔의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非課稅되는 利

子 및 配當所得 範圍를 縮小 調整함과 同時에, 同一種類의 所得에 대한 課稅는 同一稅法에서 同一하게 規定하게 함으로써 稅法體系의 統一을 期하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區分 所得의 種類	改正前	改正	備考
○「財政證券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하는 財政證券」「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하는 通貨安定 證券」의 割引發行으로 인한 所得	所得稅 및 法人稅 免除	• 所得稅 : 10%源泉徵收分離課稅 • 法人稅 課稅	所得稅法 §15 및 §144
○「特殊農業協同組合 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 中小企業이 支給하는 配當」 「綜合金融株式會社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國內에서 發行하는 원貨表示」	5%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源泉徵收 稅率을 10%로 調整	上 同
「貯蓄機關이 發行하는 貯蓄債券의 利子와 割引額」	所得稅非課稅	10%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上 同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復權當簸所得」	5%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10%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나. 施行令 改正事項

非課稅 되는 利子 및 配當등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備 考
○ 貯蓄增大와 勤勞者 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 §3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한 債券의 利子와 割引額	削 除	所得稅法 §15 및 §144로 移管
○ 特別預金의 利子와 配當金	○ 特別預金의 利子와 配當金	
△ 特別定期家計預金	△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世帶當 200萬원 以下인 것)	
△ 貯蓄預金	△ 農漁民목돈 貯蓄預金 (世帶當 300萬원 以下인 것)	
△ 自由積立預金 및 農家 목돈 貯蓄預金	△ 優待家計定期積金 (世帶當 月 拂入額이 6萬원 以下인 것)	
△ 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 또는 出資金(預託金의 경우에는 500萬원 出資金의 경우에는 200萬원)	改正前과 같음	

2.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排除(法 第3條의5 및 令 第2條의10)

企業의 非業務用不動產 所有를 規制함으로써 企業體質強化를 期하기 위하여 1981. 1. 1以後 取得한 不動產으로서 國稅廳長이 정하는 非業務用不動產判定基準에 該當하는 것에 대하여는 同 不動產을 讓渡하는 경우 租稅減免規制法 및 法人稅法등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附加稅를 非課稅 또는 減免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減免 또는 非課稅에 관한 規定의 適用을 排除함으로써 法人의 非業務用不動產 取得을 稅制面으로 規制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였다.

3. 特別附加稅등의 分納(法 第3條의6 및 令 第2條의11)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金融機關에 申告된 非業務用不動產을 1983. 12. 31까지 處分하여 企業의 負債償還이나 또는 增資를 使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同 不動產을 讓渡함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分納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分納할 수 있는 特別附加稅등이 範圍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1980. 10. 15까지 金融機關에 申告된 다음의 各號의 非業務用不動產을 延拂賣買함으로써 發生하는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1) 法人이 所有하는 그 業務와 直接關聯이 없는 不動產
2) 法人이 株主 또는 그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
3) 個人事業者 또는 그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

나. 特別附加稅등의 分納方法

1) 分納稅額의 範圍

當該 不動產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稅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法 第5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등에 當該不動產의 讓渡金額중 當該延拂賣買契約에 따라 收入하기로 約定된 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以上의 稅額

$$\text{※ 分納稅額} \geqq \text{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times \frac{\text{延拂賣買契約에 따라 收入하기로 約定된 金額}}{\text{讓 渡 金 額}}$$

2) 分納稅額의 納付期限

當該延拂賣買契約에 따라 延拂金을 收入하였거나 收入하기로 約定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

3) 分納申請節次

特別附加稅등을 分納하고자 하는 者는 所得稅法 第95條·第100條 및 第104條 또는 法人稅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分納申請書에 分納稅額과 納付期限을 明記하여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4) 未納付 加算稅의 排除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分納하는 경우 同 分納稅額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21條③ 및 法人稅法 第41條①-3의 規定에 의한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다.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한 納稅擔保

特別附加稅등의 分納을 許容하는 경우 當該稅務署長은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分納稅額에 相當한 擔保의 提共을 要求할 수 있는바, 同 納稅擔保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29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 國稅基本法

第29條(擔保의 種類)	第30條(擔保의 評價)
第31條(擔保의 提共方法)	第32條(擔保의 變更과 補充)
第33條(擔保에 의한 納付와 徵收)	第34條(擔保의 解除)

라. 分納稅額의 一時徵收

稅務署長은 다음과 같은 事由가 發生하는 경우에는 分納稅額을 一時에 징수하여야 한다.

1) 擔保의 提供 變更 또는 補充의 要求에 不應하는 경우

2) 分納稅額을 그 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경우

○ 適用例 : 80. 12. 31부터 82. 12. 31까지 讓渡하는 不動產에 限하여 適用

4.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 擴大 및 期限延長(法 第4條의2 및 令 第2條의5)

企業의 增資를 通한 財政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의 適用對象을 擴大하는 反面에, 特殊關係에 있는 系列企業相互間의 形式的인 增資를 通한 增資所得控除制度의 惡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 要件을 強化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增資所得控除適用對象擴大

改 正 前	改 正
1978. 3. 25以前에 設立된 公開法人과 中小企業法人	1980. 12. 31以前에 設立된 全內國法人

나. 增資所得控除 適用이 排除되는 增資範圍의 擴大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增資分에 대하여만,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을 排除하고 있었던 것을 그 範圍를 調整하여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으로부터의 增資까지도 包含시켰다.

改 正 前	改 正
○ 政府·地方自治團體	○ 改正前과 같음
○ 金融機關	○ 金融機關
1. 銀行法§3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1~8. 改正前과 같음
2. 韓國產業銀行	
3. 中小企業銀行	
4. 國民銀行	
5. 韓國外換銀行	
6. 韓國住宅銀行	
7. 農協協同組合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8. 水產業協同組合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 (新 設)	9.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 (新 設)	10. 法人稅法 施行令 §46-1①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

다. 增資所得控除要件 強化

系列企業間의 相互形式的인 增資를 通한 增資所得控除의 惡用을 防止하고 增資를 通하여 調達된 資金이 社外로 流出되는 것을 抑制함으로써 實質的인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圖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資本을 增加한 後에 出資者 또는 使用人에게 業務와 直接關係없이 支給한 假支給金등의 每月 末日 現在의 殘額이 增資된 금액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 資本을 增加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金額을 合算한 每月 末日 現在의 殘額이 增加된 資本金額의 100분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가. 出資者 또는 使用人에게 業務와 直接關聯없이 支給한 假支給金 등의 合計額 나. 增資한 當該法人과 法人稅法 令 第46條 -①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의 合計額(但 法人稅法 第15條 ①-10에 規定한 機關投資者 및 法人稅法 施行令 第67條의 3-①에 規定하는 株式引受機構에 대하여는 例外)

라. 增資所得控除 期間延長 및 控除率調整

增資所得控除制度는 1978. 3. 25 稅法改正以後 累次에 걸쳐 改正되어 왔던바 금번에도 增資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는 增資期間과 所得控除期間을 各各 1年씩 延長하고 또한 金融機關의 貸出金利 引下 調整에 따라 同 控除率도 年 24%에서 年20%로 引下調整하였는바 그間 改正되여온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區　分	增資期間	控除時限	控 除 率	備　　考
改 正 前	78. 1. 1 ~78. 12. 31	81. 12. 31	年16%	法律 第3096號(78. 3. 25) 大統領令 第8962條(78. 4. 24)
	79. 1. 1 ~79. 12. 31	82. 12. 31	〃16%	法律 第3196號(79. 12. 28)
	80. 1. 1 ~80. 12. 31	82. 12. 31	〃24%	大統領令 第9795號(80. 2. 29)
改　正	81. 1. 1 ~82. 12. 31	83. 12. 31	〃20%	

○ 適用例 : (1) 法 第4條의 2-①의 規定은 이 法施行 前에 設立된 法人이 81. 1. 1 以後 最初로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

(2) 法 第4條의 2-②-2의 規定은 81. 1. 1以後 最初로 다른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는 分부터 適用

5.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 申請節次(法 第11條의2 및 令第7條의2)

에너지利用合理化法(法律 第3181號 79. 12. 28) 및 同 施行令(大統領令 第9931號 80. 6. 30)이 制定公布되어 80. 6. 30부터 施行됨에 따라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 申請節次를 規定하였는바, 同 投資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投資를 完了한 날이 屬하는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 課稅標準確定申告時 다음 各號의 書類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別紙 第11號 書式의 稅額減免控除 申請書
2) 에너지利用合理化 施行令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發給하는 에너지節約施設投資完了 確認書

○ 適用例 : 81. 1. 1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期間分 또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

6.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庶民住宅建設用役(法 第11條의2-②-1令 第26條-②)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國民住宅 建設用役 範圍를 '建設業法 또는 電氣工事法의 規定에 의

하여 免許를 받은 者와 住宅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供給하는 住宅建設用役'으로 明確히 規定함으로써 稅務當局과 納稅者의 租稅摩擦의 素地를 除去하였다.

○ 適用例 : 81. 1. 1以後 最初로 供給契約이 締結되는 分부터 適用

7. 特別消費稅가 免稅되는 軍納物品의 範圍(令 第27條-②)

軍이 直營하는 賣店에서 軍人事法 또는 軍屬人事法에 規定하는 者와 兵役法에 의하여 入營敎育을 받는 豫備役武官候補者 및 勤務演習召集 중에 있는 軍人 또는 軍屬에게 販賣하는 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은 特別消費稅를 免除하고 있는바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物品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但, 君人事法에 의한 法(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 包含한다)士官生徒士官候補生 및 下士官候補生과 兵役法에 의하여 入營軍事敎育을 받는 豫備役武官候補生 및 勤務演習召集 또는 敎育召集中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18-21號에 揭記하는 物品에 限하여 免除한다.

○ 適用例 : 81. 1. 1以後 最初로 搬出하는 分부터 適用

改 正 前	改 正
1. (新 設)	1. 空氣調節機(冷房冷風機로서 窓門形의 것에 限한다)
2. 텔레비전 受像機(黑白의 것에 限한다)	2. 텔레비전 受像機
3. 電氣솥	3. 削 除
4. 電氣냄비	4. 改正前과 같음
5. 커피 포트	5. 〃
6. 電氣煖爐 및 風爐	6. 削 除
7. 蓄音機(音聲再生機를 包含한다)	7. 〃
8. 錄音器(音聲再生機를 包含한다)	9. 改正前과 같음
11. 冷藏器	10. 改正前과 같음
12. 電氣洗濯機	11. 〃
17. 砂糖	12. 〃
18. (新 設)	17. 〃
	18. 氷菓類

改　正　前	改　正
19. 淸梁飮料	19. 改正前과 같음
20. 嗜好飮料	20. 〃
21. 酒類	21. 〃

8. 公開法人要件에 關한 特例(法 第13條의2 및 令 第27條의4)

政府의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부터 1980. 10. 15까지 各 金融機關에 申告된 株主의 個人所有不動產處分代金을 企業資金으로 誘引하기 위한 稅制上의 措置로서 公開法人의 株主가 個人 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그 代金으로 企業에 增資함으로 因하여 增資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와 그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2年以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는 公開法人으로 看做될 수 있도록 各株主의 株式比率計算에 대한 特例를 規定하였다.

가. 增資의 範圍

株式比率計算의 特例가 認定되는 增資의 範圍는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80. 10. 15間에 金融機關에 申告된 不動產中 法人의 株主 또는 그 配偶者·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의 讓渡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增資하는 것에 限한다.

나. 株式比率의 計算方法

法人稅 第22條③에 規定된 公開法人의 要件은

1) 株主의 1人과 그와 特殊關係人이 所有한 株式의 總數가 發行株式數의 100分의 51以下일 것
2)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거나 韓國證券去來所를 通하여 株式이 分散

된 法人으로서 發行總株式數의 100分의 1에 該當하는 株式數에 未達하는 株式을 所有한 株主 즉, 少額株主의 總所有株式이 政府가 所有한 株式數와 外國人所有株式數를 除外한 發行總株式數의 100分의 40以上일 것

3) 少額株主의 數가 300名 以上일 것.

이와 같이 되어 있는바 株主個人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企業에 增資함으로 因하여 株主의 株式比率이 變動되어 公開法人의 要件이 剝奪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計算한 各株主의 株式比率을 基準으로 하여 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으로 보도록 하였다.

株式比率의 計算方法

1) 法人稅法 第22條-③項1號의 株式比率

(公開法人要件確認當時의 當該株主의 株式比率)-{(增資로 因하여 變更된 當該株式의 株式比率)-(增資前의 當該株主 株式比率)}

2) 法人稅法 第22條③項2號의 株式比率

(公開法人要件確認當時의 當該株主의 株式比率)+{(增資前의 當該株主株式比率)-(增資로 因하여 變更된 當該株主 株式比率)}

○ 適用例 : 81. 1. 1以後 最初로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

9.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對한 稅制支援

養畜家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育成하여 畜產業의 進興과 그 構成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을 圖謀하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기함에 目的을 두고 新設되는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대하여 農業協同組合 및 水產業協同組合과 同等하게 다음과 같은 稅制支援을 하였다.

가. 擬制分配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法 第3條①項號2)

畜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精算하는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產중 擬制分配로 인한 所得(殘餘財產의 分配로

인하여 社員, 기타 出資者가 받는 財産의 價額이 解散한 團體에 出資하기 위하여 所要된 金額)을 超過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나. 特別附加稅의 免除(法 第3條의3項17號)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畜産業協同組合 또는 中央會에 土地 또는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다. 法人稅 및 地方稅의 免除(法 第4條①項51號)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과 中央會에 대하여 法人稅와 地方稅인 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라. 分納의 免除(法 第6條)

다음 各號의 書類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養畜家가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作成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다음의 約定書. 다만, 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除外된다.
2)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畜産業協同組合이 作成하는 當該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證書와 通帳
3) 養畜家가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畜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物品을 外上으로 購入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書類

(畜産進興會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에 관한 經過措置) : 畜産進興會에 대하여는 畜産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設立될 때까지는 從前의 例에 의하여 法人稅등을 免除

10. 새마을運動中央本部등에 대한 法人稅 및 地方稅 免除(法 第4條①項 58號, 令 第1條의2)

새마을運動을 活性化하고 보다 높은 次元에서 昇華發展시키기 위하여 새마을運動中央本部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그 傘下組職에 대하여 法人稅와 地方稅인 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새마을 指導者 中央協議會
2. 새마을 婦女會 中央聯合會
3. 職場 새마을運動 中央協議會

○ 適用例 : 81. 1. 1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

11. 其　　他

가.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 削除(法 第13條의4－③)

"當該事業年度의 利益處分에 있어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的으로 積立한 積立金은 所得稅法 第26條의 ②의 規定에 의한 紙上配當所得金額 計算上 이를 商法 第458條에 의하여 積立한 利益準備金으로 본다."는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을 稅法體系의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에서 削除하고 이를 所得稅法 第26條②－3으로 移管하였다.

나. 相續稅法 第34의4(贈與의 擬制) 規定適用排除(法 第13條의②)

內國法人이 다음과 같이 增資를 하는 경우에는 相續稅法 第23－34條의 3에 규정한 擬制贈與를 排除하고 相續稅法施行令 第41條②에 규정된 特殊關係있는 者고부터 「法人이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기 위하여 株式 또는 持分(新株)을 配定함에 있어서 當該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가 新株를 받을 수 있는 權利(株式引受權)의 一部 또는 全部를 수抛棄함으로 인하여 當該株主引受權을 포기한 株主등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의 持分率을 超過하여 新株를 配定받은 경우에 그 超過하여 配定받은 新株의 納入金額과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①에 의한 價額과의 差額」을 받은 者는 當該利益을 받은 때에 그 利益에 相當하는 金額을 받은 바 이는 企業體質強化對策에 의하여 申告된 大株主의 個人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增資時 新株引受權의 抛棄로 인하여 特殊關係人間에 發生할 수 있는 贈與稅課稅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增資를 誘導하기 위한 稅制支援策이다.

1) 增資의 範圍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부터 80. 10. 15까지 金融機關에 申告된 不動產중 法人의 株主 또는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의 讓渡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增資하는 分

2) 特殊關係가 있는 者(相續稅法 第41條②)의 範圍

ㄱ) 讓渡者의 配偶者와 그 配偶者의 親族

ㄴ) 讓渡者의 親族·親族의 配偶者와 그의 4寸以內인 親族

ㄷ) 讓渡者의 使用人이나 使用人以外의 者로소 讓渡者의 資產으로 生計를 維持하는 者와 이들과 生計를 같이하는 親族

ㄹ) 讓渡者 또는 前 各號에 揭記하는 者가 出資하고 있는 法人

ㅁ) 讓渡者의 商品 또는 製品을 特約販賣하는 者

ㅂ) 讓渡者의 親知

다. 現行法令의 未備點 補完(法 第17條②및 令第2條의4-⑥⑦)

法 第17條(減免 및 控除稅額의 追徵)중 第1項第3號가 法律 第3096號(78. 3. 25)로 新設되었고 令 第2條의 4(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중 第4項이 大統領令 第9232號(78. 12. 30)로 新設되었는바 法 第17條第2項 및 令 第2條의4 ⑥⑦에 引用된 條文을 法令改正時 改正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번 法令 改正時 이를 바로잡아 補完하였다.

租稅犯處罰法

[要　約]

附加價値稅가 大衆稅임을 감안하여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刑量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고 零細事業者인 附加價値稅課稅特例者의 경우는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따른 處罰對象에서 除外하였다.

가.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引下

○ 逋脫稅額의 5倍以下 → 3倍以下

나. 詐欺, 기타 不正한 行爲로 보지 않는 경우

다. 租稅逋脫犯 旣遂時期의 明確化

라.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대한 處罰

○ 附加價値稅課稅特例者는 處罰對象에서 除外

1.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對한 罰金引下(第9條)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限度額의 5倍以下에서 3倍以下로 引下하였다.

이제까지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등 間接稅 逋脫稅에 대하여는 逋脫稅額의 5倍以下의 罰金 또는 3年以下의 懲役, 所得稅·法人稅·相續稅등 直接稅 逋脫犯에 대하여는 3倍以下의 罰金 또는 3年以下의 懲役에 처하여 왔는바 이와같이 間接稅 逋脫犯의 罰金刑量이 直接稅 逋脫犯보다 무거운 것은 間接稅 逋脫은 橫域的 性格으로서 罪質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는 大衆稅的인 性質의 租稅이며, 아직 附加價値稅制度에 적응하지 못하는 納稅者의 現實을 감안하여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限度額을 直接稅 逋脫犯과 같은 水準으로 引下하였다.

– 逋脫犯에 대한 刑量

區分	刑量	
	罰金	懲役
1. 特別消費稅·酒稅	逋脫稅額의 5倍以下	3年以下
2. 印紙稅	〃	–
3. 1~2以外의 租稅 (直接稅·附加價値稅·證券去來稅)	3倍以下	3年以下

2. 逋脫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第9條의2)

–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改正前	改正
1.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인한 金額	1. (改正前과 같음)
2. 法人稅 課標를 政府가 決定·更正時 特殊關係者의 勤勞所得이나 配當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2. 法人稅 課標를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更正時 特殊關係者의 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80事業年度부터 法人稅가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轉換됨에 따라 法人稅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 益金算入한 金額의 處分은 政府決定·更正時뿐만 아니라 法人이 課稅標準申告時에도 하도록 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이 改正되었다.

이에 따라 法人稅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更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法人이 課稅標準申告時에 그 法人의 特殊關係者의 所得으로 處分한 金額에 대하여도 「詐欺·其他 不正한 行爲로 인하여 생긴 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逋脫犯의 旣遂時期(第9條의3)

– 旣遂時期

區分	改正前	改正
1.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賦課·徵收하는 租稅	告知納付期限 단, 無申告의 경우는 課稅標準 申告期限	(改正前과 같음)
2. 1以外의 租稅	納付期限	申告納付期限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賦課徵收하는 租稅以外의 租稅逋脫犯의 旣遂時期인 「納付期限」이라 함은

① 納稅者가 申告納付하는 租稅(例 :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의 경우는 申告期限과 納付期限이 같으므로 「申告·納付期限」을

② 納稅者의 申告없이 政府가 賦課하는 租稅(例 : 電話稅·不當利得稅)의 경우는 政府 「告知納付期限」을

③ 納稅의 申告나 政府의 賦課處分없이 納稅者가 納付함으로써 廓正되는 租稅(例 : 印紙를 貼付하여 納付하는 印紙稅)의 경우는 納稅者가 스스로 納付하여야 하는 「納付期限」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納付期限」을 「申告·納付期限」으로 改正한 것은 종전의 旣遂時期를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더욱 分明히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대한 處罰(法 第12條의3)

事業者는 附加價値稅法 第31條의 규정에 의하여 自己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關係되는 모든 去來事實을 帳簿에 記錄하고 事業場에 備置·記帳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課稅特例者는 處罰對象에서 除外하였다.

附加價値稅課稅特例者는 대부분 零細한 小商人들인 바 이들은 帳簿의 備置·記帳能力上 限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며 또 零細事業者에 대한 지나친 規制條項을 緩和함으로써 이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處罰對象에서 除外시켰다.

5. 適用例(附則)

改正된 法律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그리고 附加價値稅 逋脫犯이나 課稅特例者에 대한 帳簿備置·帳簿義務不履行犯과 같이 改正法律에 의하여 刑이 舊法보다 輕하게 되거나 處罰對象에서 제외된 경우에 있어 改正法律施行日 이전의 犯則을 改正法律施行日 이후에 處罰하는 때에는 刑法 第1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改正된 法律(新法)이 適用된다.

간추린 改正稅法

81년도

租稅減免規制法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特別消費稅法
教育稅法
國稅基本法
防衛稅法
附加價値稅法施行令
國稅徵收法施行令
關稅法

머 리 말

지난해 政府는 9個의 稅法을 改正하고, 1個의 稅法을 새로이 制定하여 公布하였습니다.

지난 60年代와 70年代의 우리나라 稅制는 4次에 걸친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支援하기 위한 經濟開發支援稅制로서, 內資調達과 開發支援에 重點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80年代의 우리나라는 正義·福祉社會 具現과 第2의 經濟跳躍을 이룩하기 위한 政策的 配慮가 社會 모든 分野에서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政府는 이번 稅制改革에서도, 이와같은 80年代의 國家目標達成을 強力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過去 어느 때보다도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 財政收入 確保와 所得再分配 機能 그리고 信賴稅政의 基盤構築과 明朗한 納稅風土 造成등에 重點을 두었습니다.

이번 稅制改革의 重要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租稅減免等 支援制度를 全般的으로 再檢討하여,

- ○ 租稅減免對象을 縮小하고, 所得이 있으면 누구나 最小限의 稅金을 내도록 하는 最低限課稅制度를 導入함으로써,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指向하고, 社會開發의 擴大를 위한 財源을 確保할 수 있도록 하며,
- ○ 民間主導의 技術 및 人力開發과 中小企業에 對한 租稅支援을 強化하여, 生產性向上을 通한 國際競爭力의 提高와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所得稅·法人稅 및 相續稅의 稅率을 段階的으로 引下하고, 中產層이하 所得者의 負擔을 大幅 輕減함으로써, 公平·適正한 稅率體系를 定立하였고,

셋째, 高額相續者의 脫漏를 防止하고, 奢侈性消費에 對한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을 擴大하여, 所得再分配를 위한 機能을 補強하였으며,

넷째, 健實한 企業을 稅制上 優待하도록 企業課稅를 合理的으로 改善하고,

다섯째, 中產層育成과 農村後繼者養成을 支援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國民과 納稅者에게 必要이상의 不便을 주는 節次와 規制事項을 大幅 簡素化함으로써, 信賴稅政의 基盤을 構築하고, 正當納稅風土가 造成되도록 段階的인 措置를 講究하였습니다.

또한, 우리社會의 痼疾的인 病弊였던 過熱課外를 根絶하고, 健全한 敎育風土를 造成하여, 國家의 百年大計인 敎育을 正常化함으로써, 全人敎育과 敎育發展을 이룩하려는 政府의 強力한 意志와 國民的 輿望에 따라 敎育稅法을 制定하였습니다.

稅法은 國民經濟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國民生活과 密接한 利害關係가 있으므로, 모든 國

民이 소상히 그 內容을 理解하여야만 蹉跌이 없는 稅政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改正稅法의 內容을 올바르게 理解하려는 國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번 稅政改正이 指向하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보탬이 되어, 國民生活의 安定과 經濟·社會發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82. 1.

財務部長官 羅 雄 培

目　　次

租稅減免規制法 …… 643

1.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改善 …… 646
2.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強化 …… 654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強化 …… 658
4. 海外建設業등에 대한 法人稅減免制度改善 …… 664
5.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改善 …… 667
6.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支援制度改善 …… 670
7.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支援制度 …… 675
8. 特定設備投資促進에 대한 支援 …… 677
9.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 678
10. 租稅支援 綜合限度制 新設 …… 681
11. 租稅支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 改善 …… 683
12.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制度 改善 …… 685
13. 其　他 …… 689

所得稅法 …… 695

1. 綜合所得稅率 및 人的控除 …… 697
2. 勤勞所得 …… 699
3. 其他所得 …… 709
4.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 改善 …… 711
5. 其他改正事項 …… 715
6. 讓渡所得 …… 717
7. 各種準備金등 租稅支援에 관한 事項의 租稅減免規制法 移管 …… 719

法人稅法 …… 721

1.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 範圍調整 …… 722
2. 接待費 및 機密費 限度 調整 …… 723
3. 法人稅率 引下調整 …… 725
4. 外貨債權債務償還差損의 一時 損金 …… 725

5. 非營利法人의 中間豫納 …… 726
6. 分納制度 新設 …… 726
7. 移延資産의 償却方法 變更 …… 727
8. 團體退職保險金 債務擔保 提供禁止 …… 728
9. 寄附金 範圍調整등 …… 729
10. 所得處分 改善 …… 730
11. 課稅標準 計算方法 …… 731
12. 在庫資産 評價方法 改善 …… 732
13. 其 他 …… 732
14. 特別附加稅에 관한 規定 …… 736

相續稅法 …… 737
1. 相續稅率의 引下調整 …… 737
2. 住宅相續控除制度 新設 …… 740
3. 農地·草地·山林地 相續控除制度 新設 …… 740
4. 相續稅 申告期限의 延長 …… 741
5. 相續稅 無申告加算稅 賦課 …… 741
6. 10% 自進申告控除惠澤의 擴大 …… 742
7. 無申告·申告漏落한 相續財産에 대한 評價特例 …… 743
8. 擔保提共된 相續財産에 대한 評價特例 …… 743
9. 死亡에 대비한 財産處分, 債務擔保의 擬制相續制度 新設 …… 744
10. 特殊關係者를 媒介로 한 贈與規制 …… 745
11.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 負擔控除 排除 …… 745
12. 其 他 …… 746

特別消費稅法 …… 748
1. 課稅對象 및 稅率調整 …… 749
2. 暫定稅率制度의 導入 …… 754
3. 乘用自動車에 대한 彈力稅率 適用期限 延長 …… 755
4. 課稅品目의 細目調整 …… 756
5. 其他主要改善事項 …… 759

教育稅法 …… 767
1. 利子·配當에 대한 敎育稅 …… 774
2. 酒稅에 대한 敎育稅 …… 780
3. 담배에 대한 敎育稅 …… 783
4. 金融保險業에 대한 敎育稅 …… 785

國稅基本法 …… 792
1. 送達遲延으로 納付期限의 延長 特例新設 …… 793
2. 時效의 停止追加 …… 793
3. 國稅의 優先 …… 794
4. 國稅還給金의 利率引上 …… 796
5. 國稅還給金등의 還給窓口의 增設 …… 796
6. 韓國銀行등의 未支給資金整理期間 調整 …… 796
7. 國稅의 審査·審判請求節次의 簡素化 …… 796
8. 國稅行政에 대한 協助(納稅指導交付金制度新設) …… 797

防衛稅法 …… 798
1. 納稅義務者 …… 798
2. 防衛稅 非課稅 …… 799
3. 課稅標準의 計算 …… 799
4. 防衛稅의 申告 …… 801
5. 分納制度의 擴大 …… 801
6. 非課稅利子所得에 대한 防衛稅源泉徵收 …… 801

附加價値稅法施行令 …… 802
1. 輸入財貨에 대한 免稅範圍調整 …… 802
2. 早期還給期限 調整 …… 803
3. 政府業務代行團體 範圍調整 …… 804
4. 記帳書式의 簡素化 …… 804

國稅徵收法施行令 …… 805
1.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事由를 追加 …… 805
2. 給與金의 押留限度額 調整 …… 806

3. 缺損處分事由를 新設 …… 806
4. 國稅滯納整理委員會 業務範圍 調整 …… 807

關稅法 …… 808
1. 關稅制度의 改善 …… 808
2. 關稅率의 調整 …… 815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지난 60年代의 70年代의 우리稅制는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稅制側面에서 支援하기 위한 經濟開發支援稅制로서 그동안 우리經濟의 지속적인 成長과 産業構造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支援稅制는 重化學工業등 戰略開發産業育成을 위한 租稅減免의 확대와 財産所得에 대한 課稅上의 優待措置등 內資調達과 開發支援에 치중한 결과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 財政收入의 원활한 確保, 건실한 納稅風土 造成등의 면에서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0年代 第2의 經濟跳躍을 위하여 成長의 지속을 위한 經濟安定基盤의 定着, 能率의 向上, 社會開發의 확대등을 추진하여 나감에 있어 租稅面에서도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 및 財政收入調達과 所得再分配機能등 租稅固有의 機能이 그 어느때보다도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82年 1月 1日부터 始作되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을 效果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이 1981年 12月 31日로 그 適用時限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租稅支援制度를 전면개편하여

가. 租稅支援對象産業은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産業중에서 아직 成長段階가 幼稚하여 租稅支援이 필요한 産業에 한정함으로써 종전 非鐵金屬 製鍊事業등의 重要産業과 9個의 指定産業을 통합하여 電子工業, 機械工業등 6個産業으로 축소 조정하고

나. 技術·人力開發 및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한 機能別 支援을 강화함으로써 租稅의 中立性을 유지하면서 生産性向上에 의한 競爭力提高와 國民經濟의 安定成長基盤을 확충토록 하였으며

다. 租稅支援方法을 直接減免方法에서 特別償却, 投資準備金을 중심으로 한 間接支援方法으로 轉換함으로써 같은 支援이라도 租稅의 公平性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 留保充實을 통하여 企業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라. 租稅支援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課稅公平과 國民皆納 및 財政收入確保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者는 누구나 최소한의 稅負擔을 지도록 最低限稅制(Minimum-Tax)를 도입하여

○ 法人稅를 全額免除받고 있던 政府出資企業등 公共法人에 대하여도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5%의 最低限稅를 課稅하도록 하고

○ 一般法人에 대하여는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를 新設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마. 其他 支援制度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所得稅法이나 法人稅法에 산재되어 있는 租稅特例條項을 흡수하는 동시에 地方稅減免에 관한 條項을 地方稅法에 이관함으로써 租稅減免規制法의 體系를 정리하였다.

가.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의 改善

○ 支援對象產業의 再調整

○ 支援方法의 改善

나.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으로 확충

○ 中小企業育成施策과 관련하여 近代化·協同化·系列化事業에 대한 租稅支援強化

○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 擴大

○ 現物出資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의 改善

○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改善

○ 中小企業範圍의 一部 調整

다.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強化

○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

○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新設

○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擴充

○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期間延長등

○ 技術所得에 대한 支援

○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免除

라. 海外建設業등(產業設備輸出事業, 海外港灣用役事業)에 대한 法人稅減免制度 改善

○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 海外事業損失準備金 新設

○ 特別償却制度의 擴充

마.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 探鑛準備金을 鑛業投資準備金으로 轉換

○ 石炭保安施設準備金制度를 鑛產保安施設準備金制度로 擴充

○ 鑛夫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

○ 畜產業投資에 대한 綜合所得稅免除制度 廢止

○ 畜產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

○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등의 免除制度 改善

○ 林地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50%減免制度 新設

바. 地方移轉에 대한 支援制度

○ 地方移轉準備金

○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 免除制度 改善

○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適用

사.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支援制度

○ 增資所得控除適用時限延長 및 控除率引下 調整

○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인정되는 增資의 範圍擴大

아. 特定設備投資促進에 대한 支援

○ 特定施設投資의 範圍

○ 稅額控除申請書등의 提出

자.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 其他參考事項

차.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 新設

○ 支援手段別 綜合限度

○ 特別費用의 益金算入 順位

○ 投資稅額控除의 順位 및 移越控除

카. 租稅支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 減免控除稅額의 追徵

타.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制度의 改善

○ 公共事業用 토지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新設

○ 建築用 토지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 2年以上 시내버스 駐車場으로 사용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免除制度 新設

파. 其　　他

○ 非課稅利子 및 配當所得의 範圍擴大

○ 福券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上向調整

○ 勤勞者證券貯蓄稅額控除制度 適用時限延長

○ 防衛産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의 改善

○ 重複支援의 排除

○ 推計時 租稅特例適用 排除

○ 稅法體系의 整備

○ 其　　他

1.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의 改善

要　約

— 租稅支援對象事業을 縮小 調整하고 支援方法을 間接支援으로 轉換함.

○ 支援對象産業의 再調整

改　正　前	改　　正
—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10個産業을 企業規模 또는 종목에 의하여 重要産業과 指定産業으로 구분하여 差等支援 나프타分解工業, 鐵鋼工業, 非鐵金屬製鍊業, 機械工業, 化學肥料製造業, 造船工業, 電子工業, 航空工業, 發電事業	— 重要産業과 指定産業 區分을 統合調整하여 다음의 6個産業에 한정하여 계속지원 ○ 나프타 分解工業 ○ 鐵鋼工業 ○ 機械工業 ○ 電子工業 ○ 造船工業
環境保全用 物品製造業 [防衛産業, 地方移轉事業 [鑛業, 畜産業]	⇒ 重要産業에 分離 別途 規定

○ 租稅支援方法의 改善

改 正 前	改 正
– 다음중 選擇的으로 適用 ○ 直接減免 ┌ 3年 100% ┐ 減免 └ 2年 50% ┘ ○ 投資稅額控除(8%, 10%) ○ 特別償却(100%)	– 重要産業에 대한 直接減免制度를 廢止하고 ○ 特別償却(100%) ┐ ○ 投資準備金(機械裝置價額의 5%) ┘ 適用 ※ 단, 機械, 電子工業에 있어서는 投資稅額控除와 特別償却 投資準備金의 選擇適用 許容

가. 支援對象産業의 再調整(法 第12條 및 令 第10條)

1)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支援의 沿革

–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은 第3次 또는 第4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 稅制面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租稅支援對象産業은 重化學工業등 經濟開發5個年計劃上의 成長戰略産業을 중심으로 변천되어 왔다.

2) 租稅減免對象産業의 再檢討 必要性

– '80年代 經濟政策 基本方向의 轉換과 第3次 및 第4次 經濟開發計劃 當時와는 産業構造 및 對內外的인 經濟與件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支援對象産業을

○ 國內産業開發與件에 적합한 産業으로서(比較優位基準)

○ 全産業에 波及效果가 큰 중요한 산업이며(産業高度化 基準)

○ 成長段階가 開發初期段階인 幼稚産業(租稅支援 必要性 基準)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再檢討 調整하였다.

3) 支援對象産業의 調整內容

	改 正 前	改 正	
		繼續支援	支援除外
1. 石油化學工業	– 나프타分解工業 및 石油化學支援事業	– 나프타分解工業	– 石油化學支援事業

	改正前	改正	
		繼續支援	支援除外
2. 鐵鋼工業	- 施設容量 10萬톤以上의 製鐵製鋼業	- 製鐵業 및 特殊鋼등 高級鋼材製造業	- 一般製鋼業
3. 非鐵金屬	- 銅, 亞鉛등 非鐵金屬製鍊事業		- 非鐵金屬製鍊事業
4. 機械工業	- 機械要素 및 一般機械, 電氣機械등 製造業	- 機械工業	
5. 電子工業	- 電子器機 - 電子部品 및 材料	- 電子工業	
6. 造船工業	- 積載重量 3千톤級以上의 造船台를 所有한 者가 營爲하는 造船工業	- 造船工業	
7. 化學肥料製造業	- 窒素燐酸加里등 無機質肥料製造業		- 化學肥料製造業
8. 發電事業	- 發電容量 10KW以上의 發電事業		- 發電事業
9. 航空事業	- 航空工業	- 航空事業	
10. 公害防止器機製造業	- 環境保全用 物品製造業 - 環境汚染防止施設業, 産業廢棄物處理業		- 公害防止器機製造業은 機械工業에 包含

※ 畜産業, 鑛業, 地方移轉事業, 防衛産業은 重要産業과 區分하여 別途로 規定하였다.

4) 機械 및 電子工業 範圍調整

-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의 구체적인 품목은 종전 施行令上의 品目을 원칙으로 하되 當該品目이 全産業에서 가지는 重要性·競爭力 確保可能性 및 成長段階등을 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하였다.

<調整內容>

區 分	除 外 品 目	追 加 品 目
機械工業	- 무계목강관	- 초자金型·動力傳達裝置
		- 머시닝센터·로봇工作機械
		- 원자로·농용트렉터
		- 公害防止器機
	- 製鐵·鐵鋼機械(소결기, 스택커, 코크스오븐)	- 압연기
	- 시멘트製造用機械중 연속식드릴 運搬用스크탄裝置	
	- 재봉기중 단추달이재봉기, 단추구멍재봉기	- 자수용재봉기
	- 鐵構造物	- 光學機械중 사진기·영사기
電子工業	<電子器機>	
	- 携帶用 電子時計	- 오실로스코프
	- 보청기	- 產業用電子制御 및 表示裝置
		- 반송通信裝置
		- 데이터뷰通信裝置
		- 寫眞 및 모사전송裝置
		- 광통신장치
		-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원격조정장치 (民生用 除外)
	<電子部品>	- 광섬유
	- 써미스터	- 다층인쇄기판 및 프렉서블 배선판
	- 발광다이오드	- 릴레이
		- 마그네트와이어(0.1mm以下)

나. 支援方法의 改善

1) 租稅支援方法轉換의 必要性

- 直接減免에 의한 租稅支援은 開發初期段階에 있어서 一定收益率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投資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나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重要産業은

(가) 投資懷妊期間이 長期이고, 開發初期段階에서 品質 및 技術水準의 低位, 市場開拓등으로 收益率이 낮아 支援의 實効가 적으며

(나) 또한 資本集約的인 産業으로 막대한 設備投資를 요하는 바, 投資規模에 상응하는 支援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많은 問題點이 있어 같은 支援이라도 租稅의 공평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하면서 內部留保充實을 통하여 企業體質을 強化하고 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도록 租稅支援方法을 改善한 것이다.

2) 支援方法의 改善內容

- 종전의 直接減免制度는 廢止하고 特別償却과 投資準備金制度를 新設適用함으로써 企業의 內部留保充實에 의한 競爭力 提高와 投資資金의 自體調達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特別減價償却의 適用(法 第11條 및 令 第6條)

종전의 法에서는 直接減免(3年 100%, 2年 50%) 投資稅額控除(8%, 10%) 또는 特別償却 100%중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直接減免과 投資稅額控除制度는 原則的으로 廢止하고 特別償却만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되 特別償却適用 對象資産의 範圍를 法人稅法施行規則上의 事業別 固定資産으로 하여 主된 機械의 從된 機械를 區分하는데 따르는 問題點을 해소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 象	主된 機械裝置	事業別 固定資産
償却率	一般減價償却費의 100%	一般減價償却費의 100%

<事業別 固定資産의 範圍>

(가) 당해 重要産業에 直接 使用하는 固定資産중 法人稅法 施行規則別表(2)上의 事業別 固定資産

(나) 重要產業과 其他의 事業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事業用資產은 그 資產을 주로 使用하는 事業用의 資產으로 보아, 特別償却適用與否를 判斷

(다) 重要產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영위하던 者가 그 事業用施設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重要產業을 개시하거나, 그 事業用施設을 增設함으로써 重要產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重要產業에 直接使用되는 事業用資產은 重要產業의 開始日 또는 重要產業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適用例>

– 1982. 1. 1이후 취득한 資產부터 改正法의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다.

– 舊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第19條의 指定產業에 대한 60% 特別減價償却은 82. 1. 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받을 수 없다.

나) 投資準備金制度新設(法 第10條 및 令 第7條)

① 目　　的

投資資金의 自體調達 支援

② 設定範圍

당해 課稅年度終了日 現在의 事業用資產價額(特別償却適用對象이 되는 事業別固定資產의 帳簿價額)의 100分의 5

③ 還　　入

㉮ 一般的인 경우

당해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이후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終了日까지 당해 事業에 使用되는 事業用資產의 新規取得 또는 改替등에 소요된 金額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3年間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산입한다.

㉯ 一般還入

損金에 산입한 投資準備金이 상기 "㉮"에 의하여 益金에 산입할 金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일시에 益金算入하고, 또한 다음의 事由가 발생한 때에도 그 事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한 準備金計定의 금액을 一時益金算入한다.

i) 당해 重要產業을 廢業한 때

ii)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 合併後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에 당해 準備金을 引繼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④ 利子相當加算額 追徵

投資準備金을 일시에 益金算入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益金算入하는 準備金에 대한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 100원에 대하여 당해 投資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당해 準備金을 益金에 산입하는 課稅年度終了日까지의 日邊 10錢으로 계산한 利子相當額을 추징하게 된다.

⑤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등 提出

投資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投資準備金明細書(損金算入後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準備金 使用明細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適用例>

- '82.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課稅年度부터 改正法에 의한 投資準備金의 計上이 가능하다.

다) 投資稅額控除의 適用(法 第11條第2項)

① 對　　象

改正法에서는 重要產業에 대하여 原則的으로 特別償却을 適用하도록 하고 다만, 機械·電子工業에 대하여는 例外的으로 投資稅額控除를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稅額控除對象投資의 範圍

重要產業에 해당하는 機械·電子工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事業別固定資產에 投資한 金額으로 하되, 中古品에 의한 投資와 增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投資的支出은 投資稅額控除對象에서 제외하였다.

③ 控除稅額의 計算

控除稅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國產機資材의 範圍와 國產機資材에 대한 控除率(10%) 등은 종전과 같으나 外國產機資材에 대한 控除率은 종전의 8%에서 6%로 하향조정함으로써 國產機資材에 대한 支援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④ 特別償却·準備金과의 重複適用時 選擇適用

㉮ 동일한 事業用資產投資에 대하여 特別償却과 投資稅額控除가 重複適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適用받을 수 있다.

㉯ 投資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直前 및 直前前 課稅年度에 投資準備金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投資計劃書등의 提出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다음의 書類를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投資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計劃書

㉯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完了報告書와 稅額控除申請書

※ 從前法에 규정되어 있던 投資進度報告書 投資計劃變更申告書 提出制度는 이를 폐지하였다.

3) 經過措置

종전法에 의한 重要產業減免은 舊租稅減免規制法 第18條의 규정에 따라 '8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期間까지만 適用하도록 되어 있으나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事業을 개시하거나 投資를 완료하고 아직 減免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한 企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旣得權을 설정함으로써 일시에 減免을 축소함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가) 直接減免을 適用받고 있던 者는 殘存減免期間에 상당하는 期間동안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는 期間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殘存 100%減免期間×2+殘存 50%減免期間).

나)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 있던 者에 대하여는 未控除殘額에 대하여 殘存控除期間동안 移越控除를 容認하며

다) 特別償却을 適用받고 있던 者에 대하여는 당해 資產의 殘存耐用年數동안 繼續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強化

要　約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均衡 發展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安定的인 成長基盤을 擴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을 強化함.

가.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으로 擴充

나. 中小企業 育成施策과 關聯하여 近代化·協同化·系列化事業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다.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 擴大

라. 現物出資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의 改善

마.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改善

바. 中小企業 範圍의 一部 調整

가.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으로 擴充(法 第13條 및 令 第11條)

종전의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 制度로 擴充하여 그 設定對象과 사용 範圍를 擴大하였다. 其他 事項은 重要產業投資準備金과 同一하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設定對象 業　種	— 製造業·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	— 모든 中小企業(製造業·鑛業·建設業·水產業·運輸業)
○ 使用範圍	— 旣存施設의 改替	— 旣存施設의 改替 및 新規施設의 取得
○ 設定限度	— 事業用 固定資產價額의 15%	— 改正前과 同一

<適用例>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

나. 中小企業 育成施策과 關聯하여 近代化·協同化·系列化 事業에 대한 租稅 支援 強化

1) 特別減價償却制度의 擴充(法 第14條 및 令 第12條)

종전에도 製造業 또는 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50% 特別償却을 認定하고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여 中小企業 優先育成業種에 대하여는 重要産業과 같이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中小企業의 共同利用施設에 대한 特別償却(50%)을 新設 適用토록 하였다.

適 用 對 象	特別償却率
中小企業 優先育成 業種	100%
中小企業 協同化 事業計劃에 의하여 設置된 共同利用施設	50%

<適用例>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改正法에 의한 特別償却 適用 可能

2)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免除

'82年 1月 1日이후에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施設計劃이 承認된 地域의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中小企業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고(法 第59條)

3) 投資稅額控除適用

中小企業 系列化事業計劃에 따라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台 및 試驗研究施設에 대하여는 '82年 1月 1日이후 取得하는 分부터 6%·10% 投資稅額控除 50% 一時 償却중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法 第71條)

다.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擴大(法 第22條 및 令 第22條)

中小企業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는 一般的인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額에 外貨收入金額의 1%를 追加하여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輸出損失準備金의 設定範圍 調整>

改正前	改正
外貨收入金額의 1% 外貨所得金額의 50% ┐ 中 적은 金額	改正前의 設定範圍額에 外貨收入金額의 1%를 追加

<適用例>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

라. 現物出資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의 改善(法 第45條 및 令 第39條)

종전 法은 個人中小企業이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事業用의 資產을 一括하여 現物出資하고 또한 新設法人의 資本金이 個人事業의 1年平均 出資金(純 資產價額의 150% 이상인 경우에 限하여 現物出資 資產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一括現物出資要件과 增資要件을 改善하여 個人事業의 法人轉換을 보다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區分	改正前	改正
現物出資하는 資產의 範圍	모든 事業場의 資產을 一括하여 現物出資	事業別로 당해 事業에 1年이상 直接 使用된 主된 事業用資產(土地·建物·機械裝置등)
出資金 要件	新設法人의 資本金이 個人事業의 1年間 平均 出資金의 150% 以上일 것.	新設法人의 資本金≥法人轉換하는 事業場의 1年間 平均 純資產 價額(150% 增資要件廢止)

마.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改善(法 第44條 및 令 第38條)

中小企業間의 統合(個人과 個人, 또는 個人과 法人間의 統合을 包含한다)時 讓渡所得稅 免

除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종전法에서는 事業場別로 그 事業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 包括承繼하는 경우에 限하여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包括承繼의 어려움을 勘案하여 改正法에서는 統合의 範圍와 要件을 改善하여 事業의 同一性이 維持될 수 있는 程度로 主된 資産을 承繼하고 또한 다음의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統合의 範圍	中小企業間의 統合 業種制限 없음.	主務部 長官이 認定하는 合併奬勵業種을 營爲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
要 件	(新 設)	- 統合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中小企業者는 統合後 存續하는 法人의 出資者地位를 가질 것. - 당해 統合으로 인하여 取得하는 持分 또는 株式價額은 消滅한 中小企業 純資産價額 以上일 것.

바. 中小企業範圍의 一部 調整(令 第11條)

稅法上 中小企業으로서 租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 中小企業의 要件은 原則的으로 종전과 같이 하되, 다만 相互信用金庫는 中小企業範圍에서 除外한다.

<中小企業의 要件>

○ 對象業種

- 製造業·鑛業·建設業·水産業 또는 運輸業을 主된 事業으로 營爲하는 企業

○ 要 件

- 從業員數가 300人 以下이거나 有形固定資産 總額이 3億원 이하일 것.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強化

要　　約

從前의 設備投資中心의 支援制度를 改善하여 技術開發을 위한 費用支出에 대한 支援을 強化함으로써 民間主導의 技術開發에 의하여 生産性 向上과 競爭力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
나.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新設
다.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擴充
라.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期間 延長등
마. 技術所得에 대한 支援
바.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 免除

가.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法 第8條 및 令 第15條)

企業附設硏究所의 設置, 新技術企業化 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適用 및 試驗硏究施設, 職業訓練施設등에 대한 特別償却(取得年度에 取得價額의 50%를 一時償却)등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하여는 從前水準의 支援을 繼續하되 租稅支援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支援方法을 改善하여 投資稅額控除와 50% 一時償却中에서 納稅者의 選擇에 의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投資稅額控除 適用 　○ 企業技術硏究所의 設置 　○ 新技術企業化 事業 − 50% 一時償却 　○ 試驗硏究用 施設 　○ 職業訓練施設	− 投資稅額控除(6%, 10%) 또는 50% 一時償却中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함. 　• 新技術企業化 事業 　• 試驗硏究施設 　• 職業訓練施設 　※ 단, 試驗硏究施設 職業訓練施設投資에 대하여는 다른 投資와는 달리 從前과 같이 投資金額의 8%(國産機資材 10%)를 稅額控除받을 수 있도록 함.

나.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新設(法 第17條 및 令 第14條)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設備投資보다도 技術開發費用에 대한 投資가 危險이 더 큼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設備投資에 대하여는 投資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등을 適用하여 왔으나 技術開發費支出에 대하여는 費用을 認定하는 외에는 별다른 支援이 없었다. 따라서 改正法에서는 技術開發投資에 대하여는 國庫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하여 危險負擔을 줄여 줄 수 있도록 企業이 新製品 또는 新技術을 開發하기 위하여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대하여는 당해 支出金額을 費用으로 認定하는 외에 그 支出金額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도록 하는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1) 稅額控除適用 對象事業

○ 製造業·鑛業·建設業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事業
○ 電子計算組職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業
○ 防衛產業

2) 技術·人力開發稅額控除를 適用받는 費用의 範圍

區 分	適 用
1. 技術開發	가. 自體開發의 경우 ① 新製品·新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한 研究部署에서 當該企業의 研究開發業務에 從事하는 研究要員의 人件費 ② 研究開發을 위한 材料費 ③ 製品의 試作 및 工業化 中間試驗에 必要한 經費 나. 委託開發의 경우 다음 研究機關에 대한 技術開發委託費 ① 特定研究機關 ② 產業技術研究組合 ③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④ 國防科學研究所 ⑤ 教育法에 의한 大學

區　分	適　　用
	다. 內國人으로부터 特許權등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라. 國內의 硏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마.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에 의한 技術情報費(技術·諮問費 포함) 또는 導入技術의 消化改良費
	바.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特定硏究開發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2. 人力開發	가. 委託訓練費
	① 國內外의 專門硏究機關 또는 大學에 委託敎育訓練費(단, 理工系에 限함)
	②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機關에의 委託訓練費
	③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託訓練하는 경우의 委託訓練費
	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分擔金
	다.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社內 職業訓練施設에 所要되는 費用

3) 技術 및 人力開發費支出에 관한 明細書 提出

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技術 및 人力開發費 支出에 관한 明細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適用例>

- 技術·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는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에 支出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擴充(法 第16條 및 令 第13條)

舊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所得金額만을 基準으로 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基準에 收入金額基準을 追加하여 企業規模에 相應하는 支援이 可能하도록 하는 同時에 技術開發費의 支出이 많은 技術集約的인 產業

에 대하여는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特例를 認定하고 또한 同準備金의 使用期間을 2年에서 4年으로 延長하였다.

1) 設定限度 및 使用期間擴大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設 定 限 度	• 所得金額의 20%	• 所得金額의 20%(30%) • 收入金額의 1%(1.5%)중 많은 金額 (　) : 技術集約的인 産業
使 用 期 間	2年	4年

※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範圍

– 技術集約的인 産業은 部品數를 基準으로 한 技術開發段階가 4段階 이상인 品目과 賣出額對 研究開發費의 支出比率이 平均比率이상인 品目을 製造하는 産業(電子工業·機械工業·航空工業·防衛産業·精密化學)으로 하였다. (具體的인 해당 品目은 施行令別表 4參照)

2) 技術開發準備金의 益金算入時 利子相當加算額 追徵 除外 範圍擴大

– 技術開發準備金을 技術開發費등에 사용하고 남은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때에 從前法에서는 研究施設投資에 使用된 部分에 대하여만 利子相當額(年 36.5%)의 追徵을 排除하였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그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 研究施設에 대한 投資 <新　設>	1. 改正前과 같음 2.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에 대한 出資金 3. 國內의 研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의 獲得에 所要된 金額

<適用例>

– 技術開發準備金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82. 1. 1이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다.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期間 延長등(法 第20條 및 令 第17條)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事業에 대하여는 종전의 5年間 50% 直接減免制度를 所得控除로 轉換하여 5年間 당해 事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의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고 專門技術用役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여 租稅支援의 實效를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技術用役事業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플랜트 엔지니어링 ○ 綜合建設技術用役事業 ○ 專門技術用役事業(단, 電氣·通信·船舶·建設·建築裝備·纖維 및 原子力技術部分은 3個專門分野이상 登錄業體에 限함)	改正前과 같음 ○ 專門技術用役事業(2個이상의 專門分野에 登錄한 業體에 限함)

2) 經過措置

가)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改正法의 規定은 82. 1. 1이후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하되 從前法에 의하여 50% 法人稅減免을 받던 技術用役事業者로서 減免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50% 所得控除를 받도록 하였고,

나) 1982年 1月 1日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專門技術用役事業者로서 從前法에 의하여는 租稅減免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던 者가 專門技術用役事業 範圍調整으로 새로이 所得控除를 適用받게 되는 경우에는 1982. 1. 1에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아 向後 5年間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技術所得에 대한 支援(法 第19條 및 令 第16條)

1) 特許權 및 實用新築權의 讓渡 및 賃貸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減免制度 新設

從前에는 特許權등의 賃貸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課稅하고, 讓渡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賃貸·讓渡所得을 모두 課稅對象으로

하되(改正所得稅法 參照), 發明家保護를 위하여 特許權(實用新案權)의 原始事業者가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고, 賃貸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5年間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技術輸出所得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從前法에서는 特許權등을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一律的으로 100%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原始取得者가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非課稅(讓渡하는 경우)하거나 5年間 100% 免稅(賃貸하는 경우)하도록 하고, 特許權의 轉賣取得者가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이나 100% 減免期間이 經過한 後에 받는 所得(賃貸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金額의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또한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技術輸出契約에 따라 外國人에게 技術秘法(Know-how)을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도 50%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 免除(法 第21條 및 令 第18條)

內國企業이 外國人技術者를 直接 고용하여 外國의 先進技術을 傳受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5年間 所得稅를 免除하여 주는 것과 같이 內國企業에 勤勞를 提供하는 外國人技術者에 대하여도, 5年間 勤勞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外國人技術의 範圍

勤勞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는 外國人技術者는 다음의 者 중에서 事業者와의 雇傭契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6個月이상 계속 勤務할 技術者를 말한다.

가) 外國에서 다음의 産業分野에 5年이상 勤務 經歷이 있거나, 또는 學士學位 이상의 學歷所持者로서 당해 分野에 3年이상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 製造業·鑛業·建設業·技術用役業·防衛産業·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事業

나)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專門研究機關에서 研究員으로 從事할 者.

2) 稅額免除申請書 提出

所得稅를 免除받고자 하는 者는 勤勞를 提供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源泉徵收義務者를 거쳐 管轄 稅務署長에게 稅額控除申請書등 所定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4. 海外建設業등(産業設備輸出事業, 海外港灣用役事業)에 대한 法人稅 減免制度 改善

要 約

海外建設(海外事業)에 대하여는 企業의 內部 留保充實을 통하여 國際競爭力과 瑕疵擔保責任能力을 提高할 수 있는 方向으로 종전의 支援制度를 改善하였다.

가. 所得控除

海外建設業등에 대한 종전의 5年間 50% 法人稅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

나.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의 新設

海外建設등 海外事業에서 발생하는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을 新設 適用하도록 함.

다. 特別償却適用 對象 資産範圍 擴大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는 海外事業用 資産의 範圍를 擴大 調整함.

가.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26條 및 令 第25條)

대부분의 海外建設業體가 1981. 12. 31로 減免 期間이 終了됨에 따라 종전의 50%를 稅額 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하여 1986.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海外建設等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50%를 한도로 하여 당해 收入金額의 2%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1) 海外事業의 範圍(從前과 同一)

가)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海外建設業

나) 産業設備輸出促進法 第2條에 規定하는 일괄 受注方式에 의하여 産業設備를 輸出하

는 事業

다)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

2) 支援方法의 轉換

改 正 前	改 正
海外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額의 50% 稅額 減免	海外事業에서 發生한 收入金額의 2%에 상당하는 金額(海外事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의 50%를 限度로 함)을 所得控除

<經過措置>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制度는 原則的으로 1982. 1. 1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하되 다만, 從前法에 의한 50% 法人稅減免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경우엔 1982. 1. 1이전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從前法에 의한 50% 稅額減免을 適用받도록 하였다.

3)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

從前法에서는 海外建設業 減免稅額에 대한 하등의 事後管理制度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改正法에서는 企業의 內部留保와 財務構造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海外建設등 海外事業에 대하여도 所得控除를 받은 稅額은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轉入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그 處分을 制限하였다.

나. 海外事業損失準備金新設(法 第27條)

海外建設事業에서 發生하는 損失에 補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從前의 海外市場開拓準備金과 輸出損失準備金을 綜合하고 또한 損益期間의 長期化 傾向을 勘案, 그 還入期間을 延長(4年据置後, 3年分割 還入)하여 海外事業損失準備金制度를 新設 適用하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海外事業의 範圍와 同一하다.

2) 設定限度

당해 課稅年度에 海外事業에서 發生한 外貨收入金額의 2%에 해당하는 金額

3) 相對處理許容

당해 海外事業에서 契約의 取消등으로 인한 損失이 發生한 경우에는 納稅者가 選擇하여 旣設定되어 있는 準備金과 相計할 수 있다.

4) 還 入

가) 一般的인 경우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은 그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 이후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輸出損失準備金과 같이 3年間 均等하게 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나) 一般益金還入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① 당해 事業을 廢業한 때

②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에 당해 準備金을 引繼하는 때는 除外한다.

③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 免許가 取消된 때

④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하여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免許가 取消된 때

다. 特別償却制度의 擴充(法 第28條 및 令 第26條)

海外建設業등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海外에서 이루어지는 事業이라는 特殊性을 勘案하여 從前에는 海外建設用 重機械裝備에 대하여만 限定的으로 認定하고 있던 特別償却을 改正法에서는 그 對象을 擴大하여 海外에서 당해 事業에 直接 使用되는 모든 機械裝置(法人稅法施行規則上의 事業別 固定資產)에 대하여 3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適 用 例>

海外事業損失準備金 및 海外建設用 資產에 대한 30% 特別償却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5.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 鑛業에 대한 支援 —

要 約

資源開發事業인 鑛業은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重要產業과 별도로 支援事業을 規定하되 그 支援方法을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이 特別償却·投資準備金에의 間接支援制度로 轉換하였다.

가. 從前의 探鑛準備金制度를 鑛業投資準備金制度로 轉換

나. 保安施設準備金의 設定對象을 石炭鑛業에서 모든 鑛業으로 擴大 適用

다. 鑛夫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支援

가. 探鑛準備金을 鑛業投資準備金으로 轉換(法 第33條 및 令 第29條)

鑛業에 대하여도 探鑛準備金制度를 鑛業投資準備金制度로 轉換하는 同時 그 使用範圍를 擴大하여 重要產業과 같이 投資準備金의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設定範圍	收入金額의 10% 所得金額의 30% 중 적은 金額	鑛業收入金額의 5%(다만, 國外에서 鑛物을 採掘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當該事業收入金額의 10%)
使用範圍	新鑛山開發을 위한 探鑛費등에 使用	探鑛費 以外에 旣存 鑛山의 擴張을 위한 事業用 資產의 取得에도 使用이 可能하도록 함.

※ 改正法에 의한 鑛業投資準備金의 設定은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可能하며 鑛業投資準備金에 관한 其他 事項은 重要產業投資準備金과 같다.

나. 石炭保安施設準備金制度를 鑛產保安施設準備金制度로 擴充(法 第34條)

鑛產의 保安施設投資를 支援하기 위하여 從前에는 石炭鑛業에만 設定되던 保安施設準備金制度를 다른 모든 鑛業에 대하여도 鑛業收入金額의 3% 範圍內에서 鑛產保安施設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鑛產保安施設準備金에 대하여는 重要產業 投資準備金에 관한 事項에 그대로 準用되며 改正法에 의한 鑛產保安施設準備金은 改正法 施行後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年度부터 計上할 수 있다.

다. 鑛夫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法 第36條)

鑛夫의 社會福祉를 稅制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石炭鑛業에 있어서의 鑛夫社宅에 대하여는 1982. 1. 1이후 取得하는 分부터 50% 特別償却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 畜產業에 대한 支援 —

要 約

畜產業에 대한 現行支援制度를 改善하여
가. 畜產業 投資金額에 따라 綜合所得稅를 免除하는 制度는 廢止하고
나. 畜產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함.

가. 畜產業 投資에 대한 綜合所得稅免除制度 廢止

從前의 租稅減免規制法은 綜合所得을 畜產業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當該 投資金額이 綜合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따라 所得稅를 50%까지 事前免除하고 또한 畜產業에서 發生한 所得은 重要產業으로 減免하도록 되어 있었던바 畜產業 投資에 대한 所得稅 減免規定을 廢止함으로써 同一事業에 대한 過多한 二重支援은 止揚하도록 하였다.

나. 畜產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法 第37條)

畜產業에 대한 從前의 重要產業減免制度를 改正法에서 所得控除制度로 轉換하여 所得이 發

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 開始日로부터 5年以內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當該 畜產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에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適用例>

畜產業所得控除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되며 旣存에 事業을 開始하여 重要產業減免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한 經過措置는 다른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다.(重要產業減免 方法 중 稅額減免을 받던 者는 殘存 減免期間에 한하여 所得控除를 適用한다.)

— 山林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

要　　約

山林資源의 效率的인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가. 山林開發事業에 대한 從前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 減免制度를 改善하고
나. 山地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輕減制度를 新設함.

가.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免除制度 改善(法 第38條)

山林法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으로부터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20年間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하도록 되어 있던 從前의 制度를 樹種別 成長期間(20年~40年)을 勘案하여 改正法에서는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으로서 自己가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 경우에는 期間制限없이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나. 林地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50% 輕減制度 新設(法 第65條 및 令 第53條)

大單位 林地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特殊開發地域內의 林地를 당해 特殊開發地域內의 事業施行者에게 讓渡時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를 事前에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免除要件

林地의 讓渡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免除는 林地를 讓渡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期限內(讓渡者가 個人인 경우에는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期限內에도 할 수 있다)에 林地를 買入한 者가 稅額免除申請書를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 稅額의 免除를 申請한 경우에 한하여 適用받을 수 있다.

2) 免除稅額의 追徵

林地를 買入한 者는 당해 林地를 買入한 날로부터 5年以內에 山林法에 의하여 造林을 하여야 하며 만약에 所定期間에 造林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買入者로부터 讓渡者에게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하게 된다.

6. 地方移轉에 대한 支援制度

要　約

大都市內의 人口 및 工場의 地方分散을 통한 地域間의 均衡發展과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을 目的으로 工場施設의 地方移轉에 대한 從前의 各種 支援制度를 移轉前段階, 移轉段階, 移轉後段階로 區分하여 다음과 같이 整備하였다.

가. 移轉準備段階－地方移轉準備金의 設定

나. 移 轉 段 階－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免除

다. 移轉後段階－投資稅額 控除 또는 50%－時償却中 選擇適用

가. 地方移轉準備金(法 第41條 및 令 第35條)

地方移轉準備金의 設定對象, 設定限度 및 益金算入등은 從前의 地方移轉準備金의 경우와 같고, 다만 從前法에서는 地方工業開發奬勵地區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地方移轉施設移轉準備金의 設定이 排除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大都市에서 地方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移轉地域의 區分없이 地方移轉準備金의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1) 目　　的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는데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

2) 設定限度

工場施設價額의 10%를 3年間 設定

3) 還　　入

○ 工場施設의 地方移轉에 所要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
　— 3年間 均等分割還入
○ 未使用分
　— 一時益金算入

4) 利子相當額 追徵

未使用分 還入時에는 年利 36.5%의 利子相當額을 追徵

나.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等(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免除制度 改善(法 第42條 및 令 第36條)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 從前에는 同工場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免除要件과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이 相異하여 동일한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는 免除되나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는 課稅되거나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는 免除되나 法人稅는 課稅되는 事例가 發生하였다. 改正法에서는 이러한 矛盾을 是正하여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一한 基準에 의하여 法人稅와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를 同時에 免除하도록 함으로써 工場의 移轉에 따르는 稅制上의 沮害要因을 除去하도록 하였다.

1) 免除對象 稅目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工場垈地와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

는 所得과 國家·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給받는 移轉補償金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 및 讓渡所得稅

2) 免除稅額의 計算

從前에는 舊工場價格以上인 工場으로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舊工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하고, 또한 2年以上 稼動한 工場의 移轉으로서 面積要件과 價格要件에 의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舊工場價格과 新工場價格의 比率에 의하여 舊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를 다음 算式에 의하여 同時에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算 式>

$$\text{免除稅額} = \text{法人稅등의 算出稅額} \times \text{工場價格比率}\left(\frac{\text{移轉後 工場價額}}{\text{移轉前 工場價額}}\right)$$

※ 上記算式의 適用에 있어서

① 移轉前工場價額은 移轉前工場의 土地, 建物 및 機械裝置의 讓渡價額(讓渡하지 아니한 資產은 帳簿價額)과 移轉補償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② 移轉後工場價額은 그 工場施設의 移轉費用과 移轉한 工場의 土地, 建物 및 機械裝置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③ 舊工場을 먼저 讓渡하고 工場을 移轉함으로써 移轉後의 工場價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工場價額比率을 일단 100%로 보고 舊工場의 讓渡時點에서 同工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등을 免除한다.

3) 免除要件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免除要件은 거의 從前과 같되 그 一部를 補完하여 그 內容을 明確히 하였다.

가)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從前法에서는 舊工場의 讓渡期間에 대한 制限이 없었으나 改正法에서는 工場을 移轉하여 地方에서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舊工場을 讓渡한 경우에만 舊工場의 讓渡差益에 法人稅등을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舊工場을 讓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에서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舊工場의 機械

裝置를 全部 撤法 또는 閉鎖하여 당해 工場施設에 의한 操業(賃貸하여 操業하는 경우 포함)이 實質的으로 불가능한 狀態에 있는 경우에만 移轉補償金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나)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

大都市의 工場을 讓渡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新工場을 施工하고 施工日로부터 2年이내에 준공하여 事業을 開始하여야 하며 旣存工場을 取得하는 때에는 舊工場 讓渡日로부터 1年이내에 地方에서 工場을 取得하여 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4) 稅額免除 申請書등 提出

舊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規定은 從前과 같이 大都市內 工場의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居住者인 경우에는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書 포함)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提出하는 경우에 한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에는 移轉完了申告書와 事業者登錄證寫本

○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에는 移轉計劃書

5) 免除받은 稅額의 追徵

가)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에 있어서는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등을 免除받은 者가 舊工場 讓渡日로부터 1年이내에 新工場을 施工하지 아니하거나 施工日로부터 2年內에 준공하여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除받은 稅額全額을 追徵하도록 하였고

나) 또한 工場價額比率을 알 수 없어 우선 免除한 稅額이 실제의 工場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免除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을 지체없이 徵收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改正法上의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規定은 1982. 1. 1 이후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適用(法 第43條 및 令 第37條)

從前에는 大都市內의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는 경우 移轉地域(開發地區, 誘致地域)에 따라 支援方法을 달리하여 適用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移轉地域의 區分없이 投資稅額控除(6%, 10%)나 50% 一時償却中 選擇하여 適用을 받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營爲하던 者가 그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계속 당해 事業을 영위하는 경우

2) 投資稅額控除 또는 一時償却適用

大都市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移轉後 당해 工場에서 직접 사용하는 事業別固定資產에 대하여는 다음의 方法中 하나를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다.

가) 投資稅額控除 10%(外產 6%)

나) 事業用資產의 取得價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一時償却

3) 適用要件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는 從前과 같이 다음의 要件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계속 大都市內에서 營爲하던 事業을 營爲할 것.

나) 大都市內에서 1年以上 계속 稼動한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한 事業일 것.

다)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6個月內에 大都市內의 工場을 閉鎖할 것.

4) 移轉計劃書등 提出

從前法에서는 移轉計劃書, 移轉進度報告書, 移轉計劃進度報告書와 移轉完了報告書를 모두 提出한 경우에 한하여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 또는 投資稅額控除를 適用(申請, 減免)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申請減免을 法定減免으로 移轉하는 同時에 提

出書類도 移轉計劃書와 移轉完了報告書로 대폭 簡素化하였다.

5) 其　他

가)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從前의 各種 支援制度를 統合整備함에 따라 從前法上 다음의 制度는 廢止되었다.

① 地方工業開發地區 移轉事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舊法 第4條의 8 第2項 第10號)

②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所得控除(舊法 第4條의 14)

③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 特別控除(舊法 第3條의 3 第4項)

나) 改正法上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는 82. 1. 1 이후 최초로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한다.

7.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支援制度

要　約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認定되는 增資의 範圍를 擴大하였음.

가. 增資所得控除의 適用時限延長 및 控除率의 調整

나.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認定

가. 增資所得控除 適用時限延長 및 控除率引下調整(法 第55條 및 令 第45條)

增資를 통한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增資期間과 控除時限을 各各 1年間 延長하고, 金融機關의 貸出金利以下 調整에 따라 控除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區　分	增 資 期 間	控除時限	控 除 率
改 正 前	79. 1. 1~79. 12. 31	82. 12. 31	年 16%
	80. 1. 1~80. 12. 31	82. 12. 31	24%
	81. 1. 1~81. 12. 31	83. 12. 31	20%

區　　分	增 資 期 間	控除時限	控 除 率
改　　正	81. 6. 16~81. 12. 31	] 84. 12. 31	20%
	82. 1. 1~82. 12. 31		18%

<適用例>

㉮ 改正된 增資所得控除規定은 1982. 1. 1 이전에 設立된 法人이 1982. 1. 1 이후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1981. 6. 16부터 1981. 12. 31까지 한 增資에 대하여는 1984. 12. 31까지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控除期間을 1年間 延長하였다.

나.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認定되는 增資의 範圍擴大(法 第56條, 令 第46條)

從前法에서는 政府의 企業體質 強化對策(9. 27措置)에 따라 公開法人의 株主가 個人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1982. 12. 31까지 增資한 分에 대하여만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認定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株價가 額面價以下인 公開法人이 有償增資를 함에 있어서 少額株主가 新株의 引受를 포기함으로써 發生하는 失權株를 大株主가 引受하여 增資를 하는 경우에도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를 認定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對 象 增 資	①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株主 個人所有不動產의 處分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한 增資 <新　　設>	① 改正前과 같음 ② 株價가 額面價以下인 公開法人이 1982. 12. 31까지 한 增資
2. 公 開 法 人 特 例 認 定	上記의 增資로 인하여 株主의 株式比率이 變更되어 公開法人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2年間은 公開法人要件을 갖춘 것으로 認定	— 改正前과 같음

8. 特定設備 投資促進에 대한 支援

要 約

從前法上의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 公害防止施設投資稅額控除 및 臨時投資稅額控除를 統合하여 그 適用對象施設의 範圍를 擴大하고 支援方式을 改善하여 投資稅額控除(6%, 10%)와 一時償却(50%)중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가. 特定施設投資의 範圍

事業者가 1983年 12月 31日 以前에 다음의 施設에 投資를 한 경우에는 投資稅額控除(6%, 10%)나 50% 一時償却中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다.

1)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節約施設
2) 環境保全法에 의한 公害防止 施設
3) 勤勞基準法에 의한 産業災害防止 施設
4)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한 中小企業系列化 事業計劃에 의하여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臺 및 試驗硏究 施設

※ ㉮ 改正法에서는 生産性 向上을 위한 施設投資 및 流通事業의 施設投資에 대하여도 租稅支援을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同 施設投資에 대하여도 租稅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醫療法人이 서울特別市, 直轄市 또는 道廳所在地 以外의 地域에 投資한 醫療施設에 대하여는 50% 一時償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稅額控除 申請書등의 提出

事業者가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特定施設에 投資한 경우에는 投資計劃書, 稅額

控除申請書 및 다음의 書類를 所管 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稅額控除 申請書의 提出與否 自體가 稅額控除 適用要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動力資源部長官이 發行하는 에너지節約施設投資完了確認書

2) 環境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發行하는 公害防止施設投資確認書

3) 勞動部長官이 發行하는 産業災害豫防施設投資確認書

<適 用 例>

特定施設投資稅額控除등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이후 投資를 完了하는 分부터 適用하도록 되어 있다.

9.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要 約

從前의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韓國銀行등 81個 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全額免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課稅의 公平, 國民皆納 및 財政收入 確保의 側面에서 公共法人에 대하여도 5%의 最低限稅를 課稅토록 하였다.

가.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나. 最低限稅의 課稅

가.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從前法에 의하여 法人稅를 免除받고 있던 法人중에서 民間企業과 競爭關係를 가지고 있는 商行爲를 目的으로 設立된 商事法人등을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考慮하여 公共法人의 범주에서 除外하여 正常課稅로 轉換하고, 公共事業 遂行을 目的으로 設立된 公社·公團은 새로이 追加하여 公共法人의 範圍를 一部 調整하였다.

<公共法人 範圍調整內容>

公共法人에서 除外된 法人	公共法人에 追加된 法人
○ 浦項綜合製鐵(株)	○ 韓國電氣通信公社
○ 韓國證券金融(株)	○ 韓國放送廣告公社
○ 韓國外換銀行	○ 地下鐵公社
○ 韓國信託銀行	○ 國際空港管理公團
○ 國民銀行	○ 韓國援護福祉公團
○ 中小企業銀行	○ 交通安全振興公團
○ 大韓洋灰公社	○ 에너지管理公團
○ 國際觀光公社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大韓教員共濟會	○ 大韓結核協會
	○ 韓國船級協會
	○ 韓國學術振興財團
	○ 韓國靑少年聯盟
	○ 私立大 醫科 및 齒科大學 附屬病院
	○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나.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1) 最低限稅의 課稅

改正法에 의하여 公共法人도 1982. 1. 1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는 非營利內國法人으로 보고 法人稅法上 收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5%의 法人稅를 負擔하게 된다.

2) 課稅標準計算에 대한 特例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은 公共法人을 非營利內國法人으로 看做하고 있으므로 公共法人은 收益 事業과 其他의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分 經理하여야 하나, 規模가 零細하여 專門的인 稅務處理能力을 갖추기 어려운 單位農業協同組合등에 대하여

는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作成한 決算財務諸表의 當期純利益(法人稅등을 控除하기 前의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5%의 最低限稅를 課稅토록 함으로써 區分經理에 따르는 問題點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當期純利益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公共法人

㉮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

㉰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 畜産業協同組合과 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 水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農村契를 포함한다)

㉲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業種別 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置된 契 및 組合

㉴ 葉煙草生産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葉煙草生産組合

3) 過少申告加算稅와 未納付加算稅의 適用猶豫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1982. 1. 1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처음으로 5%의 最低限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라 稅務處理能力을 갖출 수 있는 準備期間을 賦與하여 1983. 12. 31 이전에 開始한 事業年度까지는 稅法知識의 未熟으로 過少申告하는 경우에도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未納付 加算稅의 適用을 猶豫하도록 하였다.

4) 中間豫納稅額의 計算

法人稅法의 改正으로 非營利法人도 中間豫納을 하게 됨에 따라 公共法人도 1982年부터 法人稅法의 規定에 따라 中間豫納을 하여야 되는바,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公共法人의 中間豫納稅額은 直前課稅年度 決算財務諸表上 當期純利益의 2%로 하였다.

다. 其他 參考事項

1)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5%의 最低限稅만이 課稅되므로 其他 租稅特例(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 特別償却, 投資稅額控除, 所得控除)는 그 適用이 排除된다.

2)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稅는 從前과 같이 繼續 非課稅된다.

3)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1982. 1. 1이후 開始한 事業年度부터 5% 最低限稅를 課稅하게 되어 있으므로 1981. 12. 31이전에 開始한 事業年度에는 從前과 같이 法人稅가 免除된다.

10.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 新設(法 第88條 및 令 第63條)

要 約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課稅公平 國民皆納 및 財政收入 確保의 側面에서 租稅支援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所得이 있는 者는 누구나 最小限의 稅負擔을 지도록 最低限稅制를 導入하여

가.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收益事業所得의 5%를 法人稅로 課稅하도록 하였고

나. 一般法人에 대하여는 租稅支援의 綜合限度를 新設 適用토록 하였다.

가. 支援 手段別 綜合限度

類 型 別	綜 合 限 度	適 用 對 象	備 考
가. 各種 準備金 및 特別償却費등의 特別費用	準備金 또는 特別償却을 損金에 算入하기 前 所得金額의 60%	- 法令에 의한 準備金 및 充當金을 除外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支援性 準備金 - 12時間以上 稼動에 따른 20% 特別償却 以外에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特別償却費	綜合限度超過分은 益金算入
나. 所得控除金額	所得控除金額을 計上하기 前 所得金額의 50%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所得控除(增資所得控除, 石炭增產所得控除, 畜產業 및 海外事業所得控除등)	限度超過額은 消滅

類 型 別	綜 合 限 度	適 用 對 象	備 考
3. 稅額控除	算出稅額의 40% 控除	-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 外國納付 稅額控除 災害損失稅額控除등을 除外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投資稅額控除	限度超過分은 殘存控除期間동안 移越控除

나. 特別費用의 益金算入 順位

各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 特別費用(準備金, 特別償却費)의 合計額이 綜合限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하는 分은 益金에 算入하게 되는바 準備金과 特別償却費가 있는 경우에는 準備金부터, 準備金 相互間에 있어서는 投資準備金 또는 据置期間이 짧은 準備金부터 먼저 益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 綜合限度를 超過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益金算入 順位

① 地方移轉準備金 또는 鑛山保安施設準備金
② 投資準備金(重要產業, 中小企業, 鑛業, 防衛產業, 外國航行事業)
③ 技術開發準備金
④ 價格變動準備金, 施設貸與損失準備金
⑤ 輸出損失準備金, 海外市場開拓準備金
⑥ 海外投資損失準備金
⑦ 海外事業損失準備金
⑧ 特別減價償却費

다. 投資稅額控除의 順位 및 移越控除

1) 稅額控除順位

租稅支援의 綜合限度에 의하여 各 課稅年度의 稅額에서 控除할 各種의 投資稅額控除는 당해 課稅年度 算出稅額의 40% 範圍內에서만 控除가 認定되고 그 限度를 超過하는 것은 次年度에

移越하여 次年度의 稅額에서 控除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 企業이 여러가지의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稅額控除부터 먼저 控除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는 바,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納稅者에게 보다 有利하도록 하기 위하여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않는 것부터 먼저 控除하도록 하였다.

※ 稅額控除의 適用順位

㉮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技術, 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

㉯ 移越控除가 認定되는 稅額控除

㉰ 移越控除가 認定되는 稅額控除 相互間에 있어서는 먼저 發生한 稅額控除

2) 移越控除

投資稅額控除에 대하여는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各國이 移越控除를 容認하고 있는바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도 各 課稅年度의 稅額에서 控除할 投資稅額 控除額이 당해年度의 稅額控除 綜合限度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4年間 移越하여 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는 費用支出에 대한 課稅控除란 점에서 移越控除의 適用對象에서 除外하였다.

<適 用 例>

改正法에 의한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는 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11. 租稅支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要 約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減免·控除 稅額에 대한 事後管理 制度를 改善하였음.

가.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나. 減免控除稅額의 追徵

가.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法 第91條 및 令 第65條)

租稅支援의 궁극적인 目的은 單純히 稅負擔을 輕減시켜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稅負擔의 輕減을 通하여 內部留保를 充實히 하게 하고 또한 企業 스스로의 成長 潛在力을 培養시켜주는 데 있다 할 것인바, 改正法에서는 減免控除稅額에 대한 事後管理制度를 合理的으로 改善하여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積立對象者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各種의 所得控除나 稅額控除를 받은 內國法人은 당해 課稅年度의 利益金 處分時 그 控除받은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 從前法에서는 個人까지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하도록 되어 있으나 個人의 경우에는 資本金과 剩餘金이 區分되지 아니하고 또한 法定의 剩餘金 處分節次가 없으므로 改正法에서는 個人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對象에서 除外하였다.
- ○ 從前法에서는 重要產業 減免과 增資所得 控除의 경우에만 企業合理化 積立金을 積立토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그 對象을 擴大하여 稅額控除나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例外없이 모두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積立하도록 하였다.

2) 積立金額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은 당해 課稅年度에 所得控除나 稅額控除를 받은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이다. 從前法에서는 所得控除의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 全體를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토록 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所得控除額에 대한 稅額만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토록 하였다.

3) 處分制限

- ○ 企業合理化 積立金은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轉入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그 處分을 制限하였고, 만약에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移越缺損金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하지 아니하고 配當등으로 處分하였을 때에는 從前과 같이 當初 減免控除稅額과 年利 36.5%에 相當하는 利子를 追徵하도록 하였다.
- ○ 從前法에서는 企業合理化積立金에 대한 使用義務規定을 別途 規定하여 長期負債의 償還이나 固定資產投資에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旣減免控除稅額을 追徵토록 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이를 廢止하여 企業合理化積立金에 대한 別途의 使用義務 規定은 두지 않았다.

4) 企業合理化積立金에 대한 經過措置

82. 1. 1 現在 從前法에 의하여 積立되어 있는 것은 改正法에 의하여 積立한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看做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從前法에 의하여 積立한 企業合理化積立金도 改正法 施行後에는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만 하면 되며 別途의 使用義務는 없다.

나. 減免控除稅額의 追徵(法 第92條 및 令 第65條)

다음의 경우에는 旣減免 控除받은 稅額에 年利 36.5%의 利子를 加算하여 追徵하게 된다.

1) 稅額控除나 所得控除를 받은 個人事業者가 당해 減免控除稅額을 2年內에 長期負債의 償還이나 5年內에 事業用 資産에의 投資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
2)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하지 아니하고 配當등으로 處分한 때
3)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11條第2項),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18條) 또는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43條)를 適用받은 者가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終了日로부터 5年內에 당해 資産을 處分한 때, 다만 合併·現物出資 또는 統合에 의하여 所有權이 移轉되는 때에는 除外된다.

12.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制度의 改善

要 約

從前法上의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에 관한 規定을 類型別로 區分하여 體系的으로 整備하는 同時에 從前法上의 未備點을 補完하였음.

가.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나.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다.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라. 2年以上 使用한 駐車場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가.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57條 및 令 第47條)

1) 讓渡所得稅등이 免除되는 公共事業의 範圍

國家등이 公共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에 發生하는 稅制上의 沮害要因을 除去함으로써 당해 公共事業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다음의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全額 免除하도록 하였다.

가)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이 適用되는 公共事業用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경우

(※ 從前法은 公共事業의 範圍를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과 달리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法에서는 公共事業의 範圍를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과 一致시켰다.)

나) 道路建設工事에 必要한 土地를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하는 경우(從前法과 같음)

다) 土地收用法이나 其他 法律에 의하여 收用하는 경우(從前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것을 吸收한 것임)

라)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內의 土地를 당해 地區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마)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內의 土地를 당해 地區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2) 讓渡所得稅의 免除申請

公共事業用 土地中에서 住宅開發促進法,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公共事業의 경우에는 당해 土地를 買入한 事業施行者가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 申請한 경우에 限하여 讓渡所得稅등을 免除받을 수 있는 바, 그 申請은 讓渡者의 課稅標準申告期間內(讓渡者가 個人인 경우에는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期間內에도 할 수 있다)에 하여야 한다.

3) 免除稅額의 追徵

宅地開發促進法, 特定地域綜合開發에 關한 特別措置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讓渡所得稅가 免除된 土地를 買入하고, 事業施行의 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3年內에

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免除한 讓渡所得稅등을 事業施行者로부터 追徵하게 된다.

<適 用 例>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以後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나.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新設(法 第59條)

從前에는 法人稅法에서 地方工業開發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指定된 事業施行者에 대하여만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다음의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하여도 자기가 造成한 一定한 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分讓할 때에도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特定地域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土地등을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2)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이 承認된 地域의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中小企業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適 用 例>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다.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63條 및 令 第51條)

從前法上의 實需要土地稅額還給, 住宅建設業者에 讓渡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50% 事前免除,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50% 事前免除制度를 改正法에서는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 規定으로 統合하여 法條文을 單純化하였는바, 其他 稅額還給申請節次, 免除稅額에 대한 事後管理등은 從前의 경우와 같다.

○ 實需要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後에 還給하도록 함.
○ 住宅建設事業에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前에 免除하도록 함.

○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實需要者에게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前에 免除하도록 함.

라. 2年以上 市內버스駐車場으로 使用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免除制度 新設(法 第64條, 令 第52條)

1) 適用對象

自動車運輸事業法 第25條에 의한 事業改善命令에 따라 駐車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2年以上 市內버스 駐車場으로 使用한 土地(建物을 包含한다)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

2) 免除稅額의 計算

市內버스 駐車場用土地에 대하여는 面積比率과 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中 적은 金額을 免除한다.

〈算　式〉

① 免除稅額＝讓渡所得稅등의 算出稅額×面積比率$\left(\frac{\text{移轉後 駐車場用 土地面積}}{\text{移轉前 駐車場用 土地面積}}\right)$

② 免除稅額＝讓渡所得稅등의 算出稅額×價額比率$\left(\frac{\text{移轉後 駐車場用土地等 價額}}{\text{移轉前 駐車場用土地等 價額}}\right)$

※ 舊駐車場을 먼저 讓渡하고, 移轉함으로써 價額比率과 面積比率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舊駐車場을 讓渡한 時點에서 일단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價稅를 免除한다.

3) 免除要件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하여 事業改善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舊駐車場을 讓渡하고 新駐車場을 取得하여 移轉을 完了한 경우에 한하여 舊駐車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4) 免除稅額의 追徵

駐車場을 新設한 目的으로 讓渡함으로써 同駐車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은 者에게 다음의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지체없이 追徵하게 된다.

가) 事業改善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新駐車場을 取得하여 移轉하지 아니한 때에는 免除받은 稅額

나)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讓渡時點에서 免除한 稅額이 面積比率과 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免除稅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

5) 稅額免除 申請書등의 提出

駐車場用土地를 讓渡하고, 讓渡所得稅등을 免除받고자 하는 者는 舊駐車場을 讓渡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期限內에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가) 市內버스旅客 自動車運送事業免許證 寫本

나) 自動車運送事業法 第25條에 의한 事業改善命令書 寫本

다) 讓渡한 駐車場用土地 및 새로이 取得한 駐車場用土地의 登記簿謄本

라) 移轉前 駐車場用土地를 먼저 讓渡하는 경우에는 移轉計劃書

13. 其 他

要 約

가. 非課稅利子 및 配當所得의 範圍擴大

○ 奬學積金 및 入住者貯蓄의 利子

나. 福券當籤所得의 源泉徵收稅率 上向調整

다. 勤勞者 證券貯蓄稅額 控除의 適用時限 延長

라. 防衛産業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마. 重複支援의 排除

바. 推計時 租稅特例適用 排除

사. 租稅體系의 整備

○ 法人稅法과 所得稅法上의 租稅特例規定 吸收

○ 地方稅 減免規定의 整備

아. 其 他

가. 非課稅利子 및 配當所得의 範圍擴大(法 第4條 및 令 第2條)

家計·學生 및 農·漁民의 貯蓄을 增大시키기 위한 特別預金의 이자와 配當金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되어있는 바 改正法에서는 奬學積金의 利子와 入住者貯蓄의 利子를 特別預金의 利子에 追加하여 '82. 1. 1以後 支給받는 分부터 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特別預金의 利子 및 配當金의 範圍

區　　分	限　　度	備　　考
○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世帶當 200萬원 以下	從前과 같음
○ 農·漁民 목돈貯蓄預金	世帶當 300萬원 以下	〃
○ 優待家計 定期積金	世帶當 月拂入額 6萬원 以下	〃
○ 奬學積金	加入者가 未就學兒童 國民學校·中高等學校學生으로 1人當 50萬원(10口座)以下	新　設
○ 入住者 貯蓄	1世帶 1口座로 月拂入額 10萬원以下	〃
○ 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 또는 配當金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畜産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 (漁村契 포함)의 預託金(500萬원 限度)과 出資金(200萬원 限度)	畜産業協同組合을 追加

나. 福券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上向調整(法 第5條 및 令 第3條)

金融機關으로부터 支給받는 福券當籤所得에 대하여 從前法은 10%稅率로 源泉徵收後 分離課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分離課稅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한 5%敎育稅課稅와 關聯하여 源泉徵收稅率을 15%로 上向調整하였다.

다. 勤勞者證券貯蓄稅額 控除制度 適用時限 延長

貯蓄增大 및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의 適用時限 延長과 關聯하여 勤勞者證券貯蓄稅額 控除의 適用時限을 5年間 延長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適用對象	月定額給與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81年 12月 31日 以前에 체결한 證券貯蓄	月定給與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86年 12月 31日 以前에 체결한 證券貯蓄
○ 稅額控除	貯蓄金額의 10%를 綜合所得稅(勤勞所得稅)에서 稅額控除	改正前과 같음
○ 所得稅(相續稅·贈與稅)의 免除	證券貯蓄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所得	免除對象所得의 範圍에 利子所得을 追加

라. 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防衛產業과 外國航行事業에 대하여도 그 支援方法을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이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에 의한 間接支援 方法으로 轉換하였다.

1) 防衛產業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39條·第40條 및 令 第33條)

防衛產業에 대한 支援事項(特別償却·投資準備金)은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으나 防衛產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保安維持를 위하여 特別히 設置한 建物·構築物에 대하여도 特別償却이 可能하도록 特別償却 適用對象 資產의 範圍를 擴大調整하였다.

2)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31條·第32條 및 令 第28條)

지금까지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免除되던 外國航行事業도 課稅로 轉換하고 重要產業과 같이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以後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된다.

마. 重複支援의 排除

租稅減免規制法은 政策目的에 따라 各種의 支援制度를 마련하고 있는 바, 같은 性質을 가지는 여러가지의 支援을 同時에 適用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適正水準以上의 過多支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區　　分	選　　擇　　適　　用
가. 投資準備金의 選擇 適用	한 事業用 資産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準備金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適用 ○ 法 第10條(重要産業投資準備金) ○ 法 第13條(中小企業投資準備金) ○ 法 第31條(外國航行事業投資準備金) ○ 法 第33條(鑛業投資準備金) ○ 法 第39條(防衛産業投資準備金)
나. 特別償却의 選擇 適用	— 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다음의 特別償却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適用 ○ 法 第11條第1項(重要産業特別償却) ○ 法 第14條(中小企業特別償却) ○ 法 第28條(海外事業特別償却) ○ 法 第32條(外國航行事業特別償却) ○ 法 第36條(鑛業特別償却) ○ 法 第40條(防衛産業特別償却)
다. 投資稅額控除의 選擇 適用	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稅額控除가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適用 ○ 法 第11條第2項(重要産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18條(新技術企業化事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43條(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71條(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 ○ 法 第72條(臨時投資稅額控除)
라. 其　他	法 第18條의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適用 ○ 法 第18條第1項(新技術企業化事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14條(中小企業特別償却) ○ 法 第28條(海外事業特別償却) ○ 法 第32條(外國航行事業特別償却) ○ 法 第36條(鑛業特別償却) ○ 法 第40條(防衛産業特別償却)

바. 推計時 租稅特例適用 排除(法 第90條)

所得稅法 第120條 또는 法人稅法 第32條第3項 但書에 의하여 推計하는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租稅特例(準備金, 特別償却, 稅額控除, 所得控除)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個人의 경우에는 그 實情을 감안하여, 技術輸出所得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19條第4項), 石炭增產所得控除(法 第35條), 畜產業所得控除(法 第37條) 및 出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法 第38條)의 規定은 推計할 때에도 例外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稅法體系의 整備

改正法에서는 旣存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租稅特別條項을 吸收하고 地方稅減免에 關한 條項은 地方稅法에 移管하여 租稅政策法으로서의 租稅體系를 갖추도록 하였다.

1)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上의 特例條項

從前의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各種 準備金과 特別償却에 관한 規定을 吸收하여 政策目的으로 體系化하였는 바, 그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輸出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6條)

輸出損失準備金, 海外市場開拓準備金, 價格變動準備金, 外貨獲得事業用資產에 대한 特別償却에 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① 中小企業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도 特定地域에 대한 輸出이나 機械 船舶의 輸出과 같이 外貨收入金額의 1%를 追加하여 輸出損失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特例를 認定하였고

② 輸出損失準備金과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設定特例가 認定되는 輸出事業에 相互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輸出損失準備金·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設定特例適用 輸出事業

- ○ 機械·船舶輸出事業
- ○ 中小企業의 輸出事業
- ○ 特定地域에 대한 輸出
- ○ 延拂輸出事業

나) 海外投資損失準備金(法 第29條)

海外投資損失準備金에 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外國法人에 대한 資金의 貸與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設定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다) 臨時投資稅額控除(法 第72條)

從前의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臨時投資稅額控除에 관한 條項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政策目的에 따라 適用對象, 控除率등을 彈力的으로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50% 一時償却과 選擇適用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收用時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57條)

從前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上의 土地收用 및 其他 法律에 의하여 收用時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免除 規定을 吸收하여 改正法에서도 收用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公共事業用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參照)

마) 實需要土地稅額 還給(法 第63條)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 事後還給制度를 吸收規定하도록 하였는 바, 還給稅額·還給申請·還給要件등은 從前과 같다.

2) 地方稅減免條項의 整備

從前의 特定產業 또는 特定企業에 대한 地方稅(登錄稅, 取得稅, 財產稅)減免에 대한 規定은 國家의 產業政策上 國稅와의 統一的인 運用이 要求되는 事項以外에는 地方稅法으로 移管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實情에 맞는 地方稅制의 運用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아. 其 他

從前法上의 國際金融機構등의 租稅減免(舊法 第15條)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 및 免稅(舊法 第11條의 2), 特別消費稅의 免除(舊法 第11條)와 關稅의 減免(舊法 第12條)에 관한 條項은 改正法에서도 계속 適用하도록 하였고, 또한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가 '88年 서울올림픽大會에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中 國內製作이 困難한 것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및 關稅의 減免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所 得 稅 法

〔要 約〕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를 改善하여 全般的으로 稅負擔을 下向調整하되 특히 中產層이하의 稅負擔을 輕減함으로써 適正한 擔稅率에 의한 誠實한 自進申告納付 風土를 造成하고 稅負擔의 公平을 期하는 한편 勤勞所得控除를 現行 定額控除制度에서 遞減的 定率控除制度로 轉換함으로써 勤勞所得者와 事業所得者間에 實質稅負擔의 均衡을 維持하며, 其他 現行法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行政業務를 簡素化하고 納稅者의 不便을 줄이도록 하였다.

가. 綜合所得稅率 및 人的控除

○ 綜合所得稅率 構造改善

○ 配偶者 控除引上

○ 寄附金 特別控除制度 新設

○ 障害者 控除引上

나. 勤勞所得

○ 勤勞所得控除制度 改善

○ 日傭勤勞者 控除額 引上

○ 教育費 控除 新設

○ 保險料 控除制度

○ 醫療費 控除制度 改善

○ 勤勞所得稅額 控除制度

○ 勤勞所得 非課稅 範圍 調整

- 學資金 非課稅 要件 強化
- 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 福祉厚生的 性質의 給與

○ 月定額 給與의 基準

다. 其他所得

○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範圍 調整

○ 文藝創作所得에 課稅

- 課稅上의 分類
- 課稅制度 變遷
- 一時的 文藝創作所得에 대한 法定 必要經費 認定

○ 工業所有權등의 課稅範圍調整 및 法定 必要經費 認定

라.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 改善

○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의 總收入 金額의 申告 및 決定方法

○ 書面調査決定 對象者 擴大

○ 記帳義務區分 基準引上

○ 納稅地 指定制度 改善

○ 隨時 賦課 權限 調整

○ 無申告者에 대한 所得控除 認定

○ 納稅組合 組織對象擴大 및 交付率 調整

○ 納稅 貯蓄組合 稅額控除率 引下

마. 其他 改正事項

○ 不當行爲 計算否認 基準

○ 國民住宅債券에 대한 非課稅根據 整備

○ 名譽退職手當의 退職所得特別控除

○ 退職所得 受領申告制度 廢止

바. 讓渡所得

○ 讓渡所得控除 引上

○ 讓渡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課稅

○ 彈力稅率 適用排除

○ 長期 保有資産의 看做 取得時期 調整

사. 各種 準備金등 租稅支援에 關한 事項의 租稅減免規制法 移管

<法人稅篇 參照>

○ 團體 退職保險金의 債務擔保 提供禁止(令 第16條)

○ 在庫資産의 評價方法 改善(令 第77條)

○ 移延資産의 償却方法 變更(法 第44條)

○ 公課金의 範圍 調整(令 第100條)

○ 寄附金 範圍 調整등(令 第102條)

○ 接待費 限度 調整(令 第105條·第106條)

○ 外貨債權, 債務評價差損 一時損金(令 第110條)

○ 分納制度 改善(法 第107條의 2)

○ 建設資金의 利子(令 第98條)

1. 綜合所得稅率 및 人的控除 引上

가. 綜合所得稅率 構造改善(法 第70條)

이번 稅制改善에서는 租稅減免을 縮小하는 同時에, 所得稅負擔水準을 適正化하여 投資 및 勤勞意慾을 鼓吹하고 脫漏없는 성실한 納稅風土를 誘導하기 위하여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를 最高 60%를 基準으로 全 所得階層에 걸쳐 下向調整하여 現行 稅率構造의 累進構造를 다소 緩和하면서 中產層에 適用되는 稅率適用 所得區分(Income Bracket)을 全般的으로 引上 調整하여 中產層을 中心으로 從前보다 稅負擔이 大幅 輕減되도록 하였다. 다만, 最低稅率 6%는 世界的으로도 낮은 水準이므로 現 水準에서 더이상 引下하는 것은 低所得層의 實質 稅負擔 輕減效果는 별로 없는 反面 累進稅率 構造上 全體 階層의 實效稅率을 低下시켜 稅率構造를 非效率的인 것으로 만드므로 最低稅率은 從前대로 維持하였다.

改正前		改正	
階級	稅率	階級	稅率
120萬원 以下	6%	120萬원 以下	6%
120 초과	8	120 초과	7
180 〃	10	180 〃	8
240 〃	12	240 〃	10
300 〃	15	300 〃	12
360 〃	18	390 〃	15
450 〃	21	480 〃	18
540 〃	24	600 〃	22
690 〃	28	840 〃	26

改正前		改正	
階級	稅率	階級	稅率
840萬원 초과	32%	1,140萬원 초과	30%
1,080 〃	36	1,500 〃	34
1,320 〃	40	1,900 〃	38
1,800 〃	44	2,400 〃	42
2,400 〃	48	3,000 〃	46
3,300 〃	52	3,800 〃	50
4,500 〃	56	4,800 〃	55
6,000 〃	62	6,000 〃	60

나. 配偶者 控除引上(法 第64條)

人的控除水準은 그동안 繼續 引上調整되어온 結果 國民所得水準이나 課稅所得 範圍등을 考慮할 때 지나치게 높은 水準으로 全體勤勞者中 約 68%가 免稅點이하로 非課稅되어 國民皆稅라는 所得稅制의 基本原理를 沮害하고 있어 現段階에서 더 이상 引上하기 어려운 實情이나, 物價上昇으로 庶民家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點을 고려하여 現實的으로 生計費負擔이 큰 旣婚者에게 실질적인 惠澤이 될 수 있도록 配偶者 控除만을 月 1萬원 引上 調整하였다.

	改正前		改正	
	月	年	月	年
基礎控除	2萬 5千	30萬	(從前과 같음)	
配偶者控除	2萬 5千	30萬	3萬 5千	42萬
扶養家族控除 (3 人)	2萬(6萬)	24萬(72萬)	(從前과 같음)	
5 人 家族 基準 計	11萬	132萬	12萬	144萬

다. 寄附金特別控除 新設(法 第66條의 3, 令 第120條의 3)

從前에는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事業者에 한하여 支出한 寄附金을 一定 限

度內에서 必要經費로 認定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勤勞所得者등 餘他 綜合所得者에게도 寄附金 特別控除를 認定함으로써 所得種類間의 課稅公平을 기하고 社會福祉活動에 參與를 稅制上 支援토록 하였다.

가. 控除對象者

事業所得이나 不動產所得이외의 綜合所得이 있는 者. 즉 勤勞, 利子, 配當所得者

나. 控除對象寄附金

控 除 對 象 寄 附 金	限 度
○ 國家·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寄附金 ○ 國防獻金·恤兵金 ○ 天災地變으로 생긴 罹災民을 위한 救護金品의 價額	全 額
○ 所得稅法上의 指定寄附金	所得金額의 5%

라. 障害者 控除引上(法 第66條)

障害者의 福祉를 稅制上 支援하기 위하여 障害者 控除額을 從前 年 12萬원에서 年 30萬원으로 引上하여 引上된 控除額은 障害者의 해인 1981年度 歸屬所得分부터 適用토록 하였다.

2. 勤勞所得

가. 勤勞所得控除制度의 改善(法 第61條, 令 第116條)

從前의 勤勞所得控除制度는 勤勞所得에 대한 필요경비를 控除하여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所得의 크기와는 關係없이 一定額만을 控除하여 줌으로써 모든 必要經費가 認定되는 事業所得에 비하여 勤勞所得의 實質稅負擔이 무거워지고 物價上昇에 따른 名目所得增加分에 대한 稅負擔調整機能이 缺如되어 있는 등의 問題點이 있었고 賞與特別控除制度는 賃金支拂方法에 따라 同額所得者의 稅負擔이 달라져 不公平하게 되는 問題點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賞與特別控除制度를 廢止하고 이를 勤勞所得控除에 吸收統合시키

는 同時에 控除方法도 定額控除에서 定率控除로 轉換함으로써 事業所得者와 勤勞所得者間의 實質稅負擔의 均衡을 維持하고 특히 中産層 勤勞者의 稅負擔을 適正히 하고 物價上昇으로 인한 名目所得增加에 對應하여 控除額도 增加함으로써 名目所得에 課稅되는 幅을 줄여 制限된 範圍內에서 物價連動制를 導入한 것과 同一한 效果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低所得層에 비하여 高所得層의 控除額 增加幅이 커지는 定率控除方法의 短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所得金額이 커짐에 따라 控除率이 遞減하는 遞減的 定率控除制를 採擇하면서 控除限度를 年 170萬원으로 設定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勤勞所得控除 • 年 54萬원 − 賞與控除 • 年 400% (52萬원 限度)	− 勤勞所得控除로 統合 • (總給與額) (控除率) 88萬원以下 100% 88萬원超過 300萬원以下 20% 300萬원超過 10% 合　　計 → 控除金額 단, 最高限度 170萬원

〈參考〉

勤勞所得控除改善에 따른 控除額變動

(單位 : 千원)

所得階級			改正前控除額				改正後控除額			增加額	改正後勤勞所得控除算出根據
月所得	賞與所得(400%)	年間計	勤勞所得控除	賞與特別控除	其他人的控除(5人家族)	合計	勤勞所得控除	其他(人的控除)	合計		
100	400	1,600	540	400	1,320	2,260	1,024	1,440	2,464	204	880+(1,600−880)×20%
150	600	2,400	540	520	1,320	2,380	1,184	1,440	2,624	244	880+(2,400−880)×20%
200	800	3,200	540	520	1,320	2,380	1,324	1,440	2,764	384	1,304+(3,200−3,000)×10%
300	1,200	4,800	540	520	1,320	2,380	1,484	1,440	2,924	544	1,304+(4,800−3,000)×10%
400	1,600	6,400	540	520	1,320	2,380	1,644	1,440	3,084	704	1,304+(6,400−3,000)×10%
500	2,000	8,0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1,700千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1,700千원으로 함.
600	2,400	9,6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
700	2,800	11,2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
800	3,200	12,8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
900	3,600	14,4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
1,000	4,000	16,000	540	520	1,320	2,380	1,700	1,440	3,140	760	〃

醫療費控除額變動事例

(單位 : 千원)

給與額		支給醫療費	改正前		改正後		備考
月定給與	年所得		限度額	控除額	限度額	控除額	
30萬원	480萬원	〈事例 1〉					自己負擔醫療費가 所得全額의 5% 보다 적으므로 控除할 金額이 없음.
		總醫療費 30萬원	4	4	24	0	
		醫療保險公團負擔 20 〃	(24−20=4)			(10〈480×$\frac{5}{100}$)	
		自己負擔 10 〃					
		〈事例 2〉					
		總醫療費 100萬원	0	0	24	6	
		醫療保險公團負擔 70 〃	(24−70=△46)			30萬−(450×$\frac{5}{100}$)	
		自己負擔 30 〃					
60萬원	960萬원	〈事例 1〉	月定給與 50萬원 以上이므로 控除對象이 되지 않음				
		總醫療費 200萬원			24	12	
		醫療保險公團負擔 140 〃				〔60−(960×$\frac{5}{100}$)〕	
		自己負擔 60 〃					
		〈事例 2〉					
		總醫療費 300萬원	〃		24	24	控除對象金額은 52萬원이나 限度額이 24萬원이므로 24萬원만 控除
		醫療保險公團負擔 200 〃				〔100−(960×$\frac{5}{100}$)〕=52	
		自己負擔 100 〃					

나. 日傭勤勞者 控除額 引上

配偶者 控除 및 勤勞所得控除의 變動에 따라 日傭勤勞者의 控除額도 引上調整하였다.

從 前	改 正
日 10,300원	日 14,100원

다. 教育費控除 新設(法 第61條의 4, 令 第116條의 4)

月定給與 50萬원이하 勤勞者가 企業主로부터 子女의 教育費 補助金으로 받는 從前의 教育費 補助金 非課稅制度는 賃金支拂方法 및 就業企業에 따라 稅負擔이 달라져 不公平하고 給與引上時 租稅回避手段으로 誤用되어 賃金體系를 複雜하게 만드는 問題點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同 制度를 廢止하여 教育費 補助金도 課稅로 轉換하면서 從前의 勤勞學生 控除를 吸收 統合하여 새로이 教育費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教育費 補助金 非課稅 (令 第12條의 2) ○ 月定給與額 50萬원 이하 勤勞者가 企業主로부터 받는 子女의 教育費 補助金 非課稅	- 教育費 補助金을 課稅로 轉換
- 勤勞學生 控除(法 第61條의 4) ○ 月定給與 50萬원 이하 勤勞者인 學生이 自己의 俸給에서 納付한 公納金 免除	- 勤勞學生 控除를 吸收하여 教育費控除制 新設 ① 對象 : 月定給與 70萬원 이하 勤勞者 ② 控除額 ○ 勤勞者가 學生인 경우 : 유치원과 大學院을 除外한 教育法上 學校의 公納金 全額 ○ 勤勞者의 直系卑屬(2인 이내) 유치원, 대학, 大學院을 除外한 教育法上 學校의 公納金으로서 1人當 年 12萬원 限度 ③ 控除申請方法 年末精算時 教育費納入領收證을 添附하여 源泉徵收義務者에게 申請

라. 保險料控除制度 改善(法 第61條의 2, 令 第116條의 2)

現行 所得稅法은 經濟的 實質이 利子인 貯蓄性保險의 滿期 還給額과 納入保險料와의 差額은 課稅하지 않으면서 納入保險料에 대하여는 廣範圍한 控除를 인정하여 주고 있어 預金利子所得 등 다른 所得에 비하여 2중의 特惠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滿期에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여 還給받는 貯蓄性 保險의 保險料는 控除對象에서 除外하고 勤勞所得控除에 대한 必要經費的 性格이 있는 醫療保險과 같은 保險性 保險料로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保險料에 한하여 控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一時에 課稅로 轉換함으로 생기는 충격을 緩和하고 旣加入者의 旣得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改正制度는 83. 1. 1이후 새로이 체결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지급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토록 하였다.

따라서 1982. 12. 31 이전에 締結된 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保險料는 從前의 規定이 適用되므로 控除對象도 從前과 같이 月定給與額 50萬원 이하 者이어야 한다.

	改 正 前	改 正
控除對象者	月定給與 50萬원 以下의 勤勞者	全 勤勞者
控除對象保險料	- 勤勞者나 그 扶養家族을 被保險者로 하여 支給하는 다음의 保險料 ○ 醫療保險法에 의한 醫療保險料(全額) ○ 生命·傷害 家計에 關한 損害保險料 ○ 農·水協의 生命 共濟 〈年 24萬원 限度〉	- 醫療保險料(全額) - 其他 保險料는 財務部令이 정하는 社會保障性 保險料만 控除(生 24萬원 限度) ※ 貯蓄性 保險料는 除外

마. 醫療費 控除制度 改善(法 第61條의 3, 令 第116條의 3)

日常的인 醫療費는 一般 人的控除(基礎·配偶者 扶養家族 控除등)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醫療費控除는 非正常的인 一時 巨額의 醫療費를 控除對象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醫療費控除의 受惠對象을 모든 勤勞者로 擴大하는 한편 勤勞者가 자기나

扶養家族을 위하여 支給한 醫療費(企業主로부터 支給받는 醫療費補助金을 除外한 自己가 負擔하여 支給한 醫療費에 한함)中에서 年間 所得金額의 5% 超過하는 金額만이 控除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醫療費控除는 年 24萬원에서 醫療公團負擔 醫療費를 控除한 金額을 限度로 하고 있어 醫療費支出額이 클수록 控除限度가 줄어드는 不合理한 點이 있었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이를 是正하여 실제로 自己가 負擔하여 支出한 醫療費中 年 24萬원을 限度로 하여 控除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控除對象者	月定給與 50萬원 以下의 勤勞者	모든 勤勞者
控 除 限 度	年 24萬원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 ○ 醫療公團負擔·療養費 ○ 醫療補助金	所得金額의 5%를 超過한 醫療費中 年 24萬원을 限度로 控除

바.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法 第78條의 4)

이번 稅法 改正에서는 最低稅率을 引下하지 않았고 人的控除와 勤勞所得控除의 最低控除額이 근소하게 인상되어 物價上昇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低所得勤勞者의 稅負擔을 輕減시켜주는 데 未洽하였기 때문에 81年에 限하여 인정되고 있는 臨時特別稅額控除制度를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로 轉換시켜 勤勞所得納稅人員을 줄이지 않으면서 低所得勤勞者만에 局限하여 稅負擔을 輕減시키도록 하였다.

從前의 臨時特別稅額控除		勤勞所得稅額控除	
月定額 給與	控 除 率	月定額 給與	控 除 率
30萬원 이하	20%	30萬원 이하	20%
30萬원 초과 50萬원 이하	10	30萬원 초과 40萬원 이하	10

〔參　考〕

所得階層別 稅負擔比較

	改正前				改正後			
	所得金額		負擔額	負擔率	負擔額	負擔率	輕減額	輕減率
	月	年						
勤勞所得		萬원	月 千원	%	月 千원	%	月 千원	%
	(15)	240	(0.08)	(0.1)			(0.08)	(100)
	20		0.1	0.1			0.1	100
	(22.5)	360	(4.9)	(1.6)	32	1.1	(1.7)	(35.2)
	30		6.1	2.0			2.9	48.0
	(37.5)	600	(25.9)	(5.2)	16.3	3.3	(9.6)	(37.0)
	50		28.8	5.8			12.5	43.3
	(52.5)	840	70.2	10.0	45.6	6.5	24.6	34.9
	70							
	(75)	1,200	155.3	15.5	110.7	11.1	44.6	28.7
	100							
綜合所得	年 萬원		年 萬원		年 萬원		年 萬원	
	500		36	7.1	29	58	7	19.4
	1,000		156	15.6	125	12.5	31	19.8
	3,000		991	33.0	824	27.5	167	16.8
	6,000		2,589	43.1	2,334	38.9	255	9.8
	1億		5,061	50.6	4,726	47.3	335	6.6
	100億		61.9億	61.9	59.87億	59.9	2億	3.2

註 1) 5人家族 基準

2) 月勤勞所得欄의 (　)는 賞與를 400% 받는 경우의 月定額 給與임.

3) 稅額 및 輕減率欄의 (　)는 現行 臨時稅額控除後와의 比較임.

사. 勤勞所得 非課稅範圍 調整

① 學資金 非課稅 要件 強化(令 第7條의 2)

現在 勤勞者가 企業主로부터 支給받는 教育法에 의한 學校(大學院 및 外國教育機關 包含)의 公納金이 非課稅되고 있으나 一部 企業에서 學資金을 業務와 關聯없이 支給함으로써 私的 教育費를 企業의 費用으로 變態處理하는 事例가 있음으로 非課稅되는 學資金의 要件을 다음과 같이 強化하였다.

— 要 件

○ 勤勞者가 從事하는 事業體의 業務와 關聯있는 教育 訓練일 것

○ 당해 企業體의 社規등에 支給基準이 정하여지고 이 基準에 의하여 支給될 것

○ 教育期間이 6月이상인 경우에는 教育後 教育期間이상 勤務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學資金을 反納하는 條件일 것

② 實費辨償的인 性質의 給與範圍 調整(令 第8條)

i) 外國人 勤勞者의 海外勤務手當 非課稅

從前에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從事者등 一部 外國人에 대하여만 非課稅되어온 海外勤務手當을 모든 外國人勤勞者에 대하여 擴大 適用하는 한편 非課稅 金額에 一定限度를 設定함으로써 外國人 勤勞者가 海外勤務에 따라 特別히 소요되는 費用을 控除하여 주어 同一한 俸給을 本國에서 받는 경우보다 稅負擔이 크게 增加하는 事例가 없도록 하면서 外國人勤勞者 相互間에 稅負擔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였다.

區分	改 正 前	改 正 後
對 象	○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 從事者 ○ 外資導入法上 技術導入 契約에 의한 外國人 技術者	모든 外國人 勤勞者
範 圍	海外勤務에 따른 諸手當 (海外勤務手當, 住宅手當)	(從前과 같음)
限 度	(全 額)	月定給與의 $\frac{20}{100}$이내

ii) 言論企業從事者가 받는 取材手當 非課稅

言論企業에 從事하는 記者등이 取材活動에 所要되는 經費로 支給받는 取材手當을 非課稅되는 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에 追加하였다.

區 分	內 容
對象言論機關	言論基本法에 의한 通信·放送·新聞(一般日刊新聞, 特殊 日刊新聞, 外國語 日刊新聞과 당해 言論企業이 直接 發行하는 定期刊行物 包含)
非課稅金額	당해 言論企業에 從事하는 記者(當時 고용되어 取材活動을 하는 論說委員 및 만화가 包含)가 取材活動과 關聯하여 支給받는 取材手當
限 度	月定給與의 100分의 20이내(取材手當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月定給與의 100분의 20 相當額)

③ 福祉厚生的 性質의 給與範圍 調整(令 第12條의 2)

i) 年月次手當 및 精勤手當

改正前 所得稅法 施行令에서는 勤勞基準法에 의한 勤勞者의 年·月次手當과 公務員 등이 法令에 의하여 支給받는 精勤手當만을 福祉厚生的 性質의 給與로 規定하고 있어, 勤勞基準法이나 國家 및 地方公務員法을 直接 適用받지 않는 船員이나 私立學校 敎員이 同一한 性格의 手當을 支給받는 경우 課稅與否에 대하여 解澤上 疑問이 있어 왔으므로 이를 非課稅되는 福祉厚生的 性質의 給與에 追加함으로써 明白히 하였다.

ii) 醫療費 補助金

從前에는 月定給與額 50萬원 이하의 모든 勤勞者가 企業主로부터 支給받는 醫療費 補助金이 非課稅되었으나 醫療保險加入者의 경우 使用主가 代納하는 醫療保險料가 非課稅되는 外에 勤務者 本人이 負擔하는 保險料도 모두 控除되므로 二重惠澤을 받는 結果가 되어 이번 改正에서는 醫療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勤勞者에 대하여만 非課稅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後
•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받는 年月次手當과 公務員이 法令에 의하여 支給받는 精勤手當中 年100萬원 이내	• 勤勞基準法에 또는 船員法에 의한 勤勞者가 支給받는 年月次手當과 公務員이 法令에 의하여 支給받는 精勤手當 및 私立學校 敎員이 敎育公務員에 準하여 支給받는 精勤手當中 100萬원 이내
• 勤勞者가 醫療費 補助金으로 支給받는 臨時給與	• 醫療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勤勞者가 醫療費 補助金으로 支給받는 臨時給與

아. 月定額 給與의 基準整備(令 第8條의 2)

所得稅法上 勤勞所得에 대한 非課稅와 各種 控除對象을 判定하는 基準이 되는 月定額 給與를 整備함으로써 源泉徵收 節次를 簡便하게 하고 勤勞者가 給與引上으로 인하여 追徵稅額이 發生하는 事例를 막도록 하였다.

區　　分	根據條文	改 正 前	改　　正
賞與特別控除	〈削 除〉	最終月分 또는 月平均給與中 많은 것	—
實費辨償的 給與	令 第8條의 2	新 設	給與月의 月定額給與
(取材手當, 海外勤務手當)			
勤勞所得稅額控除	令 第78條의 4	支給月의 月定額給與	
(종전 臨時特別稅額控除)			
福祉厚生的인 給與	令 第12條의 2	最終月分	月定額給與制限이 없어짐
保險料 控除	令 第116條의 2		
醫療費 控除	令 第116條의 3		
教育費 控除	令 第116條의 4		最終月分

3. 其他所得

가.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法 第15條)

其他所得은 所得金額의 25%를 源泉徵收한 뒤 綜合課稅하는 것이 原則이나 大學教授의 原稿料와 같이 一時的으로 發生하는 少額 其他所得까지 모두 綜合課稅함에 따른 徵稅 및 納稅節次의 번잡을 덜어주기 위하여 一定額이하의 其他所得이 있는 者는 綜合課稅와 分離課稅를 選擇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分離課稅를 選擇받을 수 있는 其他所得金額의 限度를 引上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後)

年120萬원 이하 → 年200萬원 이하

나. 文藝創作所得에 대한 課稅

① 文藝創作所得에 대한 課稅上 分類

○ 文藝創作所得이란 著述·書畵·作曲·寫眞등 創作品에 대하여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을 말한다.

○ 所得稅法上으로는 職業的이고 專門的인 文藝人이 얻은 所得은 事業所得으로 分類되어 收入金額의 1% 源泉徵收後 綜合所得으로 合算 課稅하고

○ 大學敎授의 原稿料와 같이 非職業的이고 一時的인 文藝創作所得은 其他所得으로 分類되어 所得金額의 25% 源泉徵收後 綜合所得으로 合算課稅한다.

다만, 其他所得金額이 年間 20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離課稅를 選擇받을 수 있다.

② 課稅制度 變遷

– 79年 이전에는

事業所得 및 其他所得으로 非課稅되었다.

– 79年 稅法改正時 課稅로 轉換하면서 一時에 課稅로 轉換함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기 위하여 '81年末까지 2年間 經過措置를 두어

○ 事業所得으로 課稅되는 職業的인 文藝創作所得에 대하여는 年 360萬원의 特別控除를 認定하였고

○ 其他所得으로 課稅되는 一時的인 文藝創作所得은 課稅猶豫措置를 取하였다.

– '82年부터는 文藝創作所得에 대한 課稅特例措置의 時限이 終了됨에 따라 正常課稅로 轉換하게 된다.

③ 一時的 文藝創作所得에 대한 法定必要經費認定(令 第73條의 2)

其他所得으로 課稅되는 一時的 文藝創作所得에 대하여는 實所要經費를 立證하기 어려운 實情을 고려하여 總收入金額의 50%를 法定必要經費로 認定함.

區　　分	'79이전	'81 ~ '82	'82이후
事業所得에 屬하는 文藝創作所得	非 課 稅	課　　稅 創作所得 特別控除 年360萬원	課　　稅 創作所得 特別控除 廢　　止
其他所得에 屬하는 文藝創作所得	非 課 稅	課稅猶豫	課　　稅 (50% 必要經費 認定)

다. 工業所有權의 課稅範圍調整 및 法定必要經費認定(法 第25條, 令 第73條의 2)

從前에는 漁業權, 工業所有權등의 資產이나 權利에 대하여는 賃貸所得만을 課稅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同資產이나 權利의 讓渡로 얻는 所得까지 課稅토록 하여 其他所得의 課稅對象을 擴大하는 한편 同一한 種類의 所得에 대한 課稅上의 不均衡을 是正하였다.

또한 새로이 課稅되는 工業所有權등의 讓渡에 대하여는 實所有經費를 立證하기 어려운 實情을 고려하여 法定必要經費를 認定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 象 資 產	○ 漁業權, 工業所有權, 產業情報, 產業上祕密, 營業權, 採石許可에 따른 權利, 其他 이와 類似한 資產이나 權利	(從前과 같음)
課 稅 範 圍	○ 權利의 使用料	○ 權利의 使用料 ○ 權利의 讓渡로 얻은 所得 (總收入金額의 80%를 法定最低必要經費認定)

4.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 改善

가.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의 總收入金額申告 및 決定方法改善(法 第114條 및 第114條의 2)

從前에는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에 대하여는 申告없이 稅務官署에서 一方的으로 總收入金額을 調査·決定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에 대하여도 總收入金額 申告制度를 新設하여 總稅者가 申告한 收入金額을 바탕으로 調査·決定함으로써 一方的으로 調査·決定함에 따라 發生할 수 있는 稅負擔의 不均衡을 防止하도록 하는 한편 誠實하게 申告한 零細事業者에 대하여는 收入金額을 申告한 대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收入金額 調査決定에 따른 稅務干涉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 申告對象
  - ○ 附加價値稅 免稅事業者
  - ○ 附加價値稅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의 兼營者 : 免稅事業 收入金額에 한함.
  - ○ 數個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 : 事業場別로 申告
- 申告期限
  - ○ 다음해 1月 25日 이내
- 申告採擇 決定對象
  - ○ 申告年度 總收入金額 2,400萬원 이하인 者가 國稅廳長이 定하는 申告基準率 이상으로 申告한 경우

나. 書面調査決定 對象者 擴大(令 第167條)

誠實하게 記帳하여 正直하게 申告納付한 納稅者에 대하여는 稅務干涉을 排除하고 提出된 申告書와 稅務士등이 作成하여 첨부한 調査計算書만으로 賦課決定하는 書面調査 決定制度를 擴大適用하도록 調整計算書를 첨부하여 申告할 수 있는 者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 象 者	○ 綠色申告者 ○ 總收入金額 및 所得金額을 國稅廳長이 業種別·地域別로 定한 申告基準 이상으로 申告한 者	(改正前과 같음) ○ 당해 課稅期間으로부터 소급하여 2年 이상 實地調査決定 또는 書面調査決定을 받은 者로서 國稅廳長이 정하는 書面調査決定基準에 해당하는 者

다. 記帳義務 區分基準 引上(法 第184條)

記帳義務 區分基準이 '74年 制定이래 한번도 引上되지 않아 記帳能力이 없는 事業者까지 過重한 記帳義務를 負擔하는 事例가 있었으므로 記帳義務 區分基準을 小幅引上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複式記帳義務者	收入金額 2億원 (5千萬원)	收入金額 2億5千萬원 (6千萬원)
簡易帳簿義務者	6千萬원 (1千5百萬원)	8千萬원 (2千萬원)

(　)는 代理, 仲介, 都給 및 保管業 등

※ 從前의 規定에 의한 複式 및 簡易記帳義務者가 改正規定에 의하여 下位記帳義務基準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記帳義務通知를 받을 때까지는 改正規定에 의한 複式 및 簡易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것임.

라. 納稅地 指定制度改善(法 第12條, 令 第24條의 2)

綜合所得稅制에서는 課稅所得의 人別集計를 위해서는 住所地를 納稅地로 하는 것이 原則이나 住所地 移動이 빈번한 現實與件下에서 住所地와 事業場이 다른 事業者에 대한 課稅資料의 通受報 住所地 確實等에 많은 行政力이 所要되고 納稅者의 立場에서도 稅目에 따라 事業場 管轄稅務署와 住所地 管轄 稅務署에 各各 申告하여야 하는 不便등이 있었으므로 一定要件이 갖추어진 事業者는 事業場을 納稅地로 指定 申請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에서 所得稅를 申告 및 決定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要　件	○ 納稅地가 納稅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 不適當한 경우	○ 納稅者가 納稅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 不適當하거나 納稅義務履行上 不便하다고 認定될 때 ○ 簡易帳簿義務者 이상으로서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만 있는 單一事業場을 가진 事業者가 事業場을 納稅地로 指定 申請한 때
申　請 指　定		10. 1～12.31 다음해 2月末日까지

※ 納稅地 指定에 관한 規定은 '81年 歸屬所得分부터 適用토록 하였으며 '81年 歸屬所得分에 대하여는 '82.2月末日까지 納稅地 指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마. 隨時賦課權限의 調整(令 第182條)

從前에는 休廢業등 隨時賦課事由가 發生한 事業者에 대하여도 所在地 管轄稅務署長이 所得稅를 隨時 賦課토록 되어 있어 隨時賦課事由의 確認 및 租稅債權의 適期確保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隨時賦課事由를 신속 正確하게 把握하고 租稅債權을 適期에 확보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隨時賦課決定權限	住所地 稅務署長	事業場管轄稅務署長
○ 住所地 稅務署에 通報事項	總收入金額의 決定狀況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事項

바. 無申告者에 대한 所得控除認定(法 第69條)

'80年 稅法改正時 所得金額이 所得控除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所得控除를 認定하도록 함으로써 零細所得者가 無申告로 인하여 所得控除를 받지 못하는 不利益이 없도록 하였으나 納稅者가 自記計算에 의하여 所得控除額 이하로 判定하여 申告하지 아니하였다가 事後에 稅務調査등으로 收入金額이 追加되는 경우 善意의 零細所得者가 所得控除를 받지 못하고 所得金額 全體에 대하여 無申告·無納付加算稅를 負擔하게 되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無申告者에게도 配偶者控除나 扶養家族控除를 認定하도록 하였다.

○ 確定申告期間 經過後에 推計調査 決定者의 收入金額을 更正 決定할 때(다만, 故意로 收入金額을 脫漏시켜 租稅犯處罰法이 適用되는 경우를 除外한다)

○ 定期分 決定뒤에 所得標準率 適用錯誤로 인하여 更正決定할 때

사. 納稅組合 組織對象의 擴大 및 交付金 支給率 調整(法 第171條, 令 第240條)

○ 租稅組合 組織對象 擴大

종전에는 食肉販賣業者·露店商人등 所得稅法令에 列擧하고 있는 事業者에 限하여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는 業種指定을 國稅廳長에게 委任하여 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라 納稅組合制度를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음.

○ 交付金 支給의 調整

納稅組合에 支給하는 交付金의 交付率을 豫算의 範圍內에서 各 納稅組合의 特殊性等을 考慮하여 國稅廳長이 定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交付金制度 運營의 效率化를 기하도록 하였다.

아. 納稅貯蓄組合 稅額控除(法 第77條)

納稅貯蓄組合制度는 一時에 納稅함에 따른 資金負擔을 分散시켜 주는 同時에 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한 制度로서 종전에는 同貯蓄預金의 利子를 非課稅하는 外에 納付稅額의 10%를 稅額控除하여 주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零細事業者와 簡易帳簿義務以上者로 區分하여 稅額控除率을 달리함으로써 制度의 趣旨를 살리면서 過多支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控　除　率	○ 所得稅로 納入되는 金額의 10%	○ 所得稅로 納入되는 金額의 10% (단, 簡易帳簿義務以上者는 5%)

5. 其他改正事項

가. 不當行爲計算(法 第55條, 令 第111條)

事業者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因하여 所得金額 計算時 당해所得에 대한 租稅의 負擔을 不當하게 減少시킨 경우에는 政府가 그 行爲나 計算을 否認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었으나 具體的으로 不當行爲의 基準이 稅法上 마련되어 있지 않아 執行에 統一을 期하기 어려운 問題가 있었으므로 이를 具體的으로 정하였다.

① 特殊關係 있는 者로부터 時價를 초과하여 資產을 買入하거나 特殊關係 있는 者에게 時價에 미달하게 資產을 讓渡한 때

② 特殊關係 있는 者에게 金錢·其他資產 또는 用役을 無償 또는 낮은 利率등으로 貸付하거나 提供한 때 다만, 事業者가 無住宅 使用人에게 住宅建設促進法에 規定하는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住宅(그 住宅에 附隨된 土地를 包含한다)의 購入에 所要될 資金(財務部令이 정하는 金額을 限度로 한다)을 貸付하는 경우는 除外

③ 特殊關係 있는 者로부터 金錢·其他資產 또는 用役을 높은 利率등으로 借用하거나 提供받은 때

④ 特殊關係 있는 者로부터 無收益 資產을 買入하여 그 資產에 대한 費用을 負擔하는 때

⑤ 特殊關係 있는 者와 ① 내지 ④以外의 去來로 因하여 당해 年度의 總收入金額 또는 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租稅의 負擔을 不當하게 減少시킨 것으로 認定되는 때, 租稅의 負擔을 不當하게 減少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法人稅法施行令 第4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함.

나. 國民住宅債券利子에 대한 非課稅根據整備(法 第5條, 令 第5條)

종래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發行되는 國民住宅 債券의 利子는 韓國住宅銀行이 發行하는 金融債로서 非課稅되었으나 '81年 4月 住宅建設促進法의 改正으로 同債券이 國家가 發行하는 國債로 轉換됨에 따라 國債로서 계속 非課稅되도록 根據法令을 整備하였다.

또한 '81. 12. 31 이전에 이미 發行된 國民住宅債券의 利子가 '82. 1. 1이후에 支給되더라도 繼續 非課稅되도록 經過規定을 두었다.

	改 正 前	改 正
國民住宅債券利子에 대한 非課稅根據	○ 法 第5條第1號(사)	○ 法 第5條第1號(가) ○ 令 第5條第4號

다. 名譽退職手當에 대한 退職所得控除(法 第22條)

從前에는 敎育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功勞退職手當에 대하여 支給額의 75%를 退職所得에서 控除하여 주었으나 同制度가 名譽退職制度로 名稱을 바꾸어 全公務員을 對象으로 擴大됨에 따라 各級公務員이 받는 名譽退職手當에 대하여도 退職所得 特別控除를 認定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 象	教育公務員이 받는 功勞退職手當	各種 公務員이 받는 名譽退職手當
控除率	75%	(같 음)

라. 退職手當 受領申告制度 廢止(法 第167條)

종전에는 退職所得을 支給하는 源泉徵收義務者가 所管稅務署에 退職所得에 대한 支給報告書를 提出하는 外에 退職所得을 支給받은 사람도 住所地 管轄稅務署에 退職所得受領申告書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退職所得受領申告制度를 廢止하여 退職者에 대하여 申告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었다.

6. 讓渡所得

가. 讓渡所得控除額 引上調整(法 第23條)

讓渡所得控除額은 76年12月에 年 90萬원으로 調整되었으니 그동안 經濟與件이 크게 變動되었으므로 讓渡所得稅 負擔을 適正化하기 위하여 讓渡所得控除額을 年 150萬원으로 引上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年 90萬원	年 150萬원

나. 讓渡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比較課稅(法 第70條 및 令 第121條의 4)

從前 比較課稅는 讓渡所得課稅標準에 讓渡所得法定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과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여 產出한 稅額을 比較하여 높은 金額을 讓渡所得算出稅額으로 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讓渡所得이 長期間에 걸쳐 形成된 所得임을 고려하여 負擔을 適正化하고 彈力稅率制度의 實效를 提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첫째, 比較課稅되는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은 讓渡差益을 保有年數로 나눈 1年所得에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한 後 다시 保有年數를 곱하여 提出한 稅額으로 하였으며

改 正 前	改 正
讓渡所得 課稅標準 × 綜合所得 稅 率	$\left\{\frac{\text{讓渡差益} - \text{讓渡所得控除} - \text{第63條~第66條 所得控除}}{\text{保有年數}} \times \text{綜合所得稅率}\right\} \times \text{保有年數}$

둘째, 資產讓渡差益 豫定申告를 하는 경우 比較對象이 되는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讓渡差益에서 讓渡所得控除와 所得控除(基礎·配偶者·扶養家族)중 基礎控除만을 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였으며 資產讓渡差益 豫定申告를 2回以上하는 경우에는 去來單位別로 比較課稅하기 위하여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은 豫定申告하는 當該 讓渡差益別로 區分하여 計算하도록 하였다.

셋째, 彈力稅率制度의 實效를 提高하기 위하여 彈力稅率制度에 의하여 讓渡所得 法定稅率이 引下 施行되는 경우에는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과의 比較課稅를 排除하였다.

다. 彈力稅率 適用排除(令 第121條의 3)

彈力稅率制度는 未登記轉賣의 경우를 除外하고 모든 讓渡所得 課稅對象에 適用되는 것이나 現在 彈力稅率은 引下 調整되어 適用되고 있으므로 改正稅法에서는 典型的인 投機所得의 하나인 不動產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그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라. 長期保有資產의 看做取得時期 調整(附則 第16條)

改正前에는 1967. 12. 31 이전에 取得한 資產價額은 1968. 1. 1 現在의 時價(時價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 1. 1 現在의 基準時價)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土地評價方法이 土地賃貸價格制에서 土地等級制로 變更되고 管轄機關이 財務部→國稅廳→內務部로 바뀌고 行政管轄區域의 調整, 土地의 빈번한 分割등으로 資產價格의 確認計算이 어렵고 煩雜하여 讓渡所得稅 課稅資料의 迅速한 處理 및 納稅者의 自進申告納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1974. 12. 31 以前에 取得한 資產價額은 1975. 1. 1 現在의 時價(時價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75. 1. 1 現在의 基準時價)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하였다.

다만, 1974. 12. 31 以前에 取得한 資產의 實地去來價額에 1974. 12. 31以前의 實際取得日로부터 1974. 12. 31까지의 保有期間에 의한 都賣物價上昇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合算한 價額이 1975. 1. 1 現在의 時價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967. 12. 31 以前에 取得한 土地·建物 → 1968. 1. 1 現在 取得한 것으로 봄	1974. 12. 31 以前에 取得한 土地·建物 → 1975. 1. 1 現在 取得한 것으로 봄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 1. 1 以後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7. 各種準備金等 租稅支援에 관한 事項의 租稅減免規制法 移管

租稅減免規制法의 全面改正과 관련하여 所得稅法에 規定되었던 各種 租稅支援에 관한 規定을 租稅減免規制法에 吸收함에 따라 所得稅法에서 이를 削除하였다.

① 特許權등의 使用料로 받는 其他所得 非課稅(法 第5條)
② 土地收用法등에 의한 收用時 讓渡所得非課稅(法 第5條)
③ 內國人에 대한 外國航行所得의 所得稅免除(法 第6條)
④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資產의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6條)
⑤ 海外市場開拓準備金(法 第34條)
⑥ 輸出損失準備金(法 第35條)
⑦ 海外投資損失準備金(法 第36條)
⑧ 探鑛準備金(法 第37條)
⑨ 價格變動準備金(法 第37條의 2)
⑩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法 第37條의 5)
⑪ 臨時投資稅額控除(法 第78條의 2)

⑫ 實需要土地稅額還給(法 第78條의 3)

<經過措置>

○ 準備金에 關한 規定

各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金額은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臨時投資稅額控除에 關한 規定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 對象이 되는 投資로서 1981年 12月 31日까지 投資를 着手한 分에 대하여는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를 한다.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에 關한 規定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實需要土地稅額 還給對象이 되는 土地로서 1981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稅額을 還給한다.

法 人 稅 法

〔要　　約〕

法人 類型間 稅負擔의 公平性을 提高하고 租稅減免縮小에 따른 企業負擔을 適正化하기 위하여 法人稅率을 引下하고, 企業經營의 健全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接待費 및 機密費 限度를 縮小 調整하고 기타 租稅減免規制法의 全面改正과 關聯하여 關係規定을 整備하였다.

가.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 範圍 調整
나. 接待費 및 機密費 限度 調整
　○ 接待費 限度
　○ 機密費 限度
다. 法人稅率 引下調整
라. 外貨債權·債務償還差損의 一時 損金
마. 非營利法人의 中間豫納
바. 分納制度 新設
사. 移延資產의 償却方法 變更
아. 團體退職保險金 債務擔保 提供 禁止
자. 寄附金 範圍調整등
　○ 寄附金 範圍調整
　○ 指定寄附金 範圍擴大
　○ 非營利公益法人 範圍調整
차. 所得處分 改善
카. 課稅標準 計算方法
타. 在庫資產 評價方法 改善
파. 其　　他

○ 各種稅額控除節次 簡素化

○ 淸算所得 申告期限 延長

○ 一時償却充當金 計上方法 改善

○ 公課金의 範圍調整

○ 土地에 대한 建設資金 利子計算方法 改善

○ 各種準備金등 租稅支援에 관한 事項의 租稅減免規制法 移管

하. 特別附加稅에 관한 規定

○ 土地등의 取得時期 擬制

○ 學校法人 特別附加稅 追徵方法 補完

1.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 範圍調整(法 第1條, 令 第2條)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制度 導入과 關聯하여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 範圍를 調整하여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設立된 醫科 및 齒科大學附屬病院의 收入과 법률의 規定에 의한 檢査用役 收入을 課稅對象인 收益事業에 包含시켰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收益事業인 醫療法의 範圍	醫療業중 私立學校法에 의한 醫科 및 齒科大學附屬病院은 그 所得을 病院運營 및 大學敎育에 使用하거나 使用할 경우 法人稅를 부과하지 아니함.	〈削 除〉
○ 收益事業인 檢査用役의 範圍	檢査用役중 地籍法에 의한 測量과 國家의 委任을 받아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檢査 및 船級協會가 行하는 檢査는 收益事業에서 除外	〈削 除〉

<施行時期>

1) 私立學校 醫科·齒科大學附屬病院의 所得에 대한 課稅(法 附則 第13條)

1984年 12月 31日 이전에 開始하는 事業年度分까지는 改正前과 같이 病院運營 및 大學敎育에 使用하거나 使用할 경우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2) 檢査用役중 法律規定에 의한 檢査用役에 대한 課稅(令 附則 第9條)

1982年 12月 31日 이전에 開始하는 事業年度分까지는 改正前과 같이 地籍法에 의한 測量과 國家의 委任을 받아 法律規定에 의하여 行하는 檢査 및 船級協會가 行하는 檢査는 收益事業 범위에서 除外된다.

2. 接待費 및 機密費 限度調整

가. 接待費 限度調整(法 第18條의 2, 令 第43條)

現行 接待費限度는 企業의 實地 接待費支給實態와 附合되지 아니하므로 改正稅法에서는 接待費의 限度를 實地支給實態를 勘案하여 大企業은 그 限度를 縮小하여 過多한 接待費 限度를 利用한 費用의 變態處理를 規制하는 한편, 中小企業은 그 限度를 擴大하여 接待費 過少認定으로 인한 企業經營上의 애로가 없도록 調整하였다.

그리고 輸出事業이나 海外建設등을 영위하는 企業이 海外顧客을 위하여 支出한 海外接待費는 接待費限度와 關係없이 全額 損金에 算入되므로 國內接待費 限度額計算의 基準이 되는 收入金額에서 海外收入金額(外貨收入金額)의 一定額을 控除토록 하였다.

接待費 限度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基 礎 金 額	300萬원	600萬원
資 本 金 (50 億 限 度)	2%	(改正前과 같음)
收 入 金 額	0.2%의 合計額	0.1%
		(但 中小企業은 0.2%의 合計額)

接待費 및 機密費限度額計算基準이 되는 收入金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外貨收入金額	國內接待費限度 計算基準이 되는 收入金額에 全額包含	國內接待費 限度 計算基準이 되는 收入金額에 다음의 外貨收入金額中 一定額 除外 • 外國에 物品을 販賣하고 받은 外貨收入金額 • 外國에서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고 받은 外貨收入金額

나. 機密費限度 縮小調整(法 第18條의 2)

機密費限度의 委任 根據를 法에 明白히 規定하였으며 機密費의 限度도 接待費限度 調整에 따라 縮小되었다.

機密費 限度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資本金(50億 限度)	1%	改正前과 같음
收入金額	0.1%	0.05%
	의 合計額	의 合計額

또한 機密費는 法人의 定款, 社規 또는 株主總會, 社員總會나 理事會의 決議로 그 支給基準이 定하여지고 그 基準에 의하여 實地로 支給된 경우에는 위의 限度內에서는 企業이 業務와 關聯하여 支給된 것임을 證憑에 의하여 具體的으로 立證하지 아니하여도 業務와 關聯하여 支給된 것으로 看做하여 接待費로 認定하는 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따라서 機密費限度를 초과하여 支給된 金額이라도 그 支給된 機密費가 業務와 關聯하여 支出된 것을 當該 法人이 立證하는 경우에는 그 金額은 接待費로 認定받아 接待費의 限度內에서 法人의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것이다.

3. 法人稅率의 引下調整(法 第22條)

法人稅負擔을 適正化하고 法人 類型間 課稅의 公平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營利法人의 最低稅率을 22%로 引下하고 一般法人의 最高階級稅率을 38%로 引下하여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間의 稅率隔差를 縮小하였다.

法 人 稅 率

區 分	課稅標準	改正前	改正
一般法人	5,000萬원 以下	25%	22%
	5,000 〃 초과	40	38
公開法人	5,000 〃 以下	25	22
(35%以下)	5,000 〃 초과	33	33
非營利法人	5,000 〃 以下	20	20
	5,000 〃 초과	27	27

4. 外貨債權·債務償還差損의 一時損金(令 第38條의 2)

外貨債權·債務를 分割償還받거나 分割償還하는 경우에 당해 外貨債權·債務의 원貨記帳額과 償還받거나 償還하는 원貨金額과의 差額인 償還差損益에 대하여 改正前 稅法에서는 殘在償還期間에 따라 均等하게 損金 또는 益金에 算入토록 되어 있었으나 償還差損益은 이미 實現된 損益이므로 改正稅法에서는 그 金額을 償還한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에 算入하도록 하여 企業會計와 一致시켰다.

區 分	改正前	改正
外貨債權·債務償還 差損金의 處理	다음과 같이 處理 — 短期外貨債權·債務:當該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 — 長期外貨債權·債務:殘在償還期間에 均等하게 益金 또는 損金	長·短期 區分없이 當該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으로 處理

<適 用 例>

外貨債權·債務의 償還 差損益의 一時損金算入은 1982年 1月 1日 이후 償還하거나 償還받는 分부터 適用하고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償還하거나 償還받음으로써 發生한 外貨債權·債務의 償還差損益은 改正前 稅法의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5. 非營利法人의 中間豫納(法 第30條)

非營利內國法人에 있어서는 그 收益事業의 規模가 零細하여 지금까지는 中間豫納을 排除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中間豫納稅額을 納付토록 하였다. 이는 이제 非營利內國法人中에도 그 收益의 規模나 營利性에 있어서 一般企業과 區分하기 어려운 企業이 出現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特別法에 위하여 設立된 公共法人을 非營利法人으로 간주함에 따라 課稅上의 衡平을 期하기 위하여 改正稅法은 非營利內國法人에게도 中間豫納을 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開始하는 中間豫納分부터 適用한다.

6. 分納制度 新設(法 第31條)

企業이 많은 稅金을 一時에 納付하는데 따른 企業의 資金難을 덜어주기 위하여 中間豫納稅額 또는 自進申告 納付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稅額의 一部를 納付期限 經過日로부터 30日內에 分納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對 象 法 人	〈新 設〉	中間豫納稅額 및 自進申告 納付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法人
• 分 納 期 限		納付期限 經過日로부터 30日內
• 分 納 稅 額		• 納付稅額 2千萬원이하 : 1千萬원 초과 金額 • 納付稅額 2千萬원초과 : 納付稅額의 50%이하 金額

分納稅額計算例

區　分	〈事 例 1〉	〈事 例 2〉
〈法人稅〉		
○ 算出稅額	2,400(萬원)	5,000(百萬원)
○ 中間豫納	△800	△2,400
○ 自進納付稅額	1,600	2,600
〈防衛稅〉		
○ 算出稅額	480	1,250
○ 中間豫納	△200	△650
○ 自進納付稅額	280	600

위 事例의 경우 法人稅 同 防衛稅의 分納稅額의 計算은

區　分	自進納付稅額	期限內納付稅額	1個月後 分納할 稅 額
〈事 例 1〉			
○ 法人稅	1,600萬원	1,000萬원	600萬원
○ 防衛稅	280 〃	175 〃	105 〃
〈事 例 2〉			
○ 法人稅	2,600百萬원	1,300百萬원	1,300百萬원
○ 防衛稅	600 〃	300 〃	300 〃

※ 防衛稅는 法人稅의 分納의 例에 의하여 分納한다.

7. 移延資產의 償却方法 變更(法 第17條第10項)

創業費등 移延資產에 대하여 改正前稅法에서는 法人이 언제든지 損金으로 計上할 수 있는 自由償却을 認定하였으나 改正稅法에서는 移延資產價額을 다음의 償却年數로 나눈 金額 이상을 반드시 損金으로 計上하도록 하여 企業會計와 一致시킴으로써 會計差異로 인한 納稅者의 不便을 除去하고, 自由償却에 따른 期間損益 조정을 規制토록 하였다.

移延資產 種類別 償却年數

種　　類	償 却 年 數
創　　業　　費	5 年
開　　業　　費	3 年
株 式 發 行 費	3 年
社 債 發 行 差 金	社債償還期間
試 驗 硏 究 費	5 年
社 債 發 行 費	3 年
開　　發　　費	5 年

<經過措置>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 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年 1月 1日까지 各事業年度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移延資產은 1982年 1月 1日에 그 費用을 支出한 것으로 보아 1982. 1. 1이후 事業年度分부터 改正法을 適用한다.

8. 團體退職保險金의 債務擔保提供禁止(令 第13條)

團體退職保險料를 法人의 損金에 算入하도록 한 것은 從業員의 退職金 支給保障에 그 目的이 있으나 당해 團體退職保險金을 企業의 債務擔保로 提供하는 경우가 있어 그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改正稅法에서는 團體退職保險金을 受領할 權利를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경우에는 擔保를 提供한 保險金에 대한 保險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擔保로 提供한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益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1982年 1月 1日 以後 최초로 債務의 擔保로 提供하는 分부터 適用하므로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擔保로 提供한 部分은 改正法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9. 寄附金 範圍調整

가. 寄附金 範圍調整(令 第40條)

法人이 特殊關係가 없는 者와의 去來에 있어서도 正當한 事由없이 資產을 正常價格보다 低價로 讓渡하거나 高價로 讓受한 경우의 그 差額은 寄附金으로 看做하였으나 改正稅法은 그 差額중 實質的으로 贈與한 것으로 認定되는 部分만을 寄附金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또한 時價의 30% 範圍內의 價額은 正常價額으로 보도록 補完하여 賣買形式을 利用한 實質的인 資產贈與만을 規制토록 하였다.

看做寄附金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法人이 特殊關係가 없는 者와의 去來에 있어서도 正當한 事由없이 資產을 正常價額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하거나 높은 價額으로 買入한 경우 그 差額은 寄附한 것으로 看做	○ …… …… …… ……그 差額 중 實質的으로 贈與한 것으로 認定되는 金額
〈新 設〉	○ 이 경우 時價의 30%內外價額은 正常價額으로 認定

나. 指定寄附金의 範圍擴大(令 第42條, 規則 第17條)

다음 寄附金을 指定寄附金으로 追加 指定하여, 資本金의 2% 및 所得金額의 10%의 合計額의 範圍內에서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 ○ 老人福祉法에 의한 老人福祉事業을 行하는 非營利法人에 老人福祉事業費로 支出하는 寄附金
- ○ 韓國靑少年聯盟에 支出하는 寄附金
- ○ 國民體育振興基金으로 支出하는 寄附金

<適 用 例>

1982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申告하는 事業年度에 지출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 非營利公益法人의 範圍調整(令 第42條의 2)

指定寄附金의 損金限度의 特例(所得金額의 60%까지 損金認定)가 認定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範圍를 調整하여 그 法人의 性格上 非營利公益法人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建設共濟組合을 削除하고 다음 法人을 追加하였다.

- ○ 韓國銀行(租稅減免規制法 別表중 第1號)
-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第34號)
- ○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產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中央會
- ○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
- ○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聯合會와 中央會(第37號)
- ○ 韓國靑少年聯盟
- ○ 鐵道廳共濟組合
- ○ 遞信官署共濟組合
- ○ 專賣廳共濟組合
- ○ 어린이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非營利法人중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

10. 所得處分의 改善(令 第94條의 2)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 金額의 處分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益金에 算入한 金額이 社外에 流出된 경우	가. 歸屬者가 出資者(出資者 任員除外)인 경우 : 配當 나. 歸屬者가 使用人(出資者 任員 包含)인 경우 : 賞與 다. 歸屬者가 法人이거나 分與된 利益이 個人事業者의 所得을 구성한 경우 : 其他 社外流出	가. 改正前과 같음 나. 〃 다. 分與된 利益이 法人의 各 事業年度所得이나 個人의 事業所得을 구성한 경우 : 其他社外流出

區　　分	改 正 前	改　　正
2. 益金에 算入한 金額이 社外에 流出되지 않은 경우	留　　保	改正前과 같음
3. 例　外	다음 金額은 其他社外流出로 處理	다음 金額은 其他社外流出로 處理
	— 保險會社 豫定事業費 超過分	〈改正前과 같음〉
	〈新　設〉	— 寄附金損金不算入規定에 의한 益金算入額(指定寄附金以外의 寄附金중 去來相對方이 株主 또는 使用人인 경우는 除外)
	— 接待費限度超過分	接待費限度超過分
	〈但書新設〉	다만, 機密費중 益金에 算入한 金額은 除外
	— 株式取得에 使用한 借入金 利子	〈改正前과 같음〉
	— 非業務用 資產取得에 使用한 借入金 利子	〈　〃　〉

11. 課稅標準計算方法(法 第8條, 第53條)

法人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改正前에는 各事業年度所得에서 控除하는 非課稅所得 및 移越缺損金에 대하여 그 控除順序가 明白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改正稅法에서는 이를 明白히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課 稅 標 準 計 算	各 事業年度 所得範圍 안에서 다음 金額을 控除 1. 非課稅所得 2. 3年內의 移越缺損金	各 事業年度 所得範圍안에서 다음 金額을 順次로 控除 1. 3年內의 移越缺損金 2. 非課稅所得 3. 所得控除額

12. 在庫資產의 評價方法改善(令 第85條)

企業이 在庫資產을 評價함에 있어서 申告한 方法으로 評價하지 아니하고 다른 方法으로 評價한 경우 지금까지는 一律的으로 最終買入原價法으로 評價토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最終買入原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과 申告한 評價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중 많은 金額을 在庫資產 評價額으로 하도록 하여 商品價格 下落時 在庫資產 評價方法을 利用한 所得金額의 操作을 規制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評價方法을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는 改正前과 같이 最終買入原價法에 의하여 評價한다.

13. 其 他

가. 法人이 法 第24條의 3 規定에 의하여 外國에 納付한 法人稅額을 控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人稅申告와 別途의 稅額控除申請을 하는 경우에 限하여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法人稅 申請書에 控除稅額을 表示하여 申告한 경우에는 控除要件에 해당하는 限 別途의 控除申請書를 提出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控除를 받도록 하였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 이후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나. 淸算所得申告期限 延長(法 第46條)

各 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期限延長에 따라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申告 期限도 60日에서 90日로 延長하여 各 事業年度所得이 確定되기 前에 淸算所得을 計算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補完하였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 이후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 一時償却充當金 設定(令 第22條, 第23條의 2)

工事負擔金 및 國庫補助金으로 固定資產을 取得한 경우에 固定資產의 取得등에 所要된 金額의 100分의 90을 一時에 損金에 算入하되 그 金額을 一律的으로 一時償却充當金으로 計上하도록 規定하고 있었으나 改正稅法에서는 取得한 資產이 土地등 非償却資產인 경우에는 壓縮記帳充當金으로 區分計上하여 事後管理에 不便이 없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工事負擔金·國庫補助金의 損金算入	固定資產의 取得등에 所要된 金額의 100分의 90을 損金에 算入하되 그 金額은 一時償却 充當金으로 計上하여야 함.	固定資產의 取得등에 所要된 金額의 100分의 90을 損金에 算入하되 그 金額은 다음의 充當金으로 計上하여야 함. ○ 減價償却對象資產:一時償却充當金 ○ 위 以外의 資產:壓縮記帳充當金

그리고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은 會計監査와 관련하여 工事負擔金·保險差益 및 國庫補助金 申告調整으로 損金計上을 認定하였으나 稅源管理上 어려움이 있어 이를 削除하였다.

따라서,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이라 하더라도 決算上에 費用으로 計上하여야만 損金으로 認定받게 된다.

라. 公課金의 範圍調整(令 第25條)

法人이 納付하는 다음의 負擔金등을 公課金으로 追加規定하여 課稅所得計算上 損金에 算入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公課金의 範圍	〈新 設〉	○ 廢鑛整理基金 ○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한 負擔金 ○ 農藥管理基金 ○ 海外建設振興基金

<適 用 例>

1982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申告하는 事業年度에 納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마. 土地에 대한 建設資金利子計算(令 第33條)

建設資金에 所要된 借入金의 利子는 建設資金利子로서 당해年度의 費用으로 認定하지 아니하고 取得하는 資產의 原價에 加算하도록 하고, 이 경우 建設資金利子計算 期間은 建物이 竣工된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土地의 경우는 그 期限이 不分明하여 執行上 混亂이 있었다. 따라서 改正稅法은 土地의 경우는 買入者가 土地를 使用할 수 있는 代金完拂日까지 建設資金利子計算을 하도록 補完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土地買入의 경우 建設資金利子計算期限	買入한 날까지	代金의 完拂日까지

바. 各種 準備金등 租稅支援에 關한 事項의 租稅減免規制法으로 移管

租稅減免規制法의 全面改正과 關聯하여 法人稅法에 規定되었던 다음의 各種 租稅支援에 관한 規定을 租稅減免規制法에 吸收함에 따라 法人稅法에서는 이를 削除하여 法體系를 整備하였다.

① 外國航行所得에 대한 法人稅免除(法 第11條)

② 海外市場開拓準備金(法 第12條의 2)

③ 輸出損失準備金(法 第12條의 4)

④ 海外投資損失準備金(法 第12條의 5)

⑤ 探鑛準備金(法 第12條의 6)

⑥ 價格變動準備金(法 第12條의 7)

⑦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法 第12條의 8)

⑧ 主務部長官과 財務部長官 協議에 의한 合併의 경우 擬制配當 除外 淸算所得免稅(法 第19條第4號, 法 第42條의 2)

⑨ 臨時投資稅額控除(法 第24條의 5)

⑩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土地등의 特別附加稅 非課稅(法 第59條의 3 第1項第6號)

⑪ 實需要土地稅額 還給(法 第59條의 6)

<經過措置>

○ 準備金에 關한 規定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金額은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 臨時投資稅額控除에 關한 規定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投資로서 1981年 12月 31日까지 投資를 着手한 分에 對하여는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를 한다.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에 관한 規定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實需要土地稅額 還給對象이 되는 土地로서 1981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改正前 規定에 의하여 稅額을 還給한다.

14. 特別附加稅에 관한 규정

가. 土地등의 取得時期 擬制(法律 第2686號 附則 第13條)

〈所得稅法篇 參照〉

나. 學校法人의 特別附加稅 追徵方法補完(令 第124條의 8)

學校法人이 教育目的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는 土地등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金額을 讓渡日로부터 3年內에 教育事業에 使用하는 경우에 限하여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讓渡金額을 教育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免除받은 特別附加稅를 追徵하는바 이 경우 讓渡金額을 一部만을 使用하고 一部를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 免除받은 稅額金額을 追徵할 것인지 一部金額만을 追徵할 것인지가 不分明하였으므로 改正稅法에서는 이를 分明히 하였다.

追徵할 特別附加稅額

$$= \text{免除받은 特別附加稅} \times \frac{\text{教育目的에 使用하지 아니한 金額}}{\text{讓 渡 價 額}}$$

相 續 稅 法

[要 約]

相續稅率構造를 全面 改編하여 負擔의 適正化로 正當納稅風土를 造成토록 하고, 中產層의 基本財產을 保護維持하고, 農村後繼者育成을 稅制上 支援하기 위하여 1住宅 相續控除 및 農地·草地·山林地相續控除制度를 新設하고, 相續稅의 誠實申告를 誘導하고, 一部 高額相續者의 變則的인 相續稅의 回避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講究하였다.

1. 相續稅率의 引下調整
2. 住宅相續控除制度 新設
3. 農地·草地·山林地 相續控除制度 新設
4. 相續稅申告期限의 延長
5. 10% 自進申告控除惠澤의 擴大
6. 相續稅 無申告加算稅 賦課
7. 無申告·申告漏落한 相續財產에 대한 評價特例
8. 擔保提供된 相續財產에 대한 評價特例
9. 死亡에 對備한 財產處分, 債務負擔의 擬制相續制度 新設
10. 特殊關係者를 媒介로 한 贈與規則
11.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 負擔控除 排除
12. 其 他
   가. 相續稅의 連帶納稅義務
   나. 課稅價額·公示送達의 公告期間
   다. 相續稅法上 公益事業範圍 擴大

1. 相續稅率의 引下(法 第14條)

所得稅率의 引下調整에 따라 所得稅의 補完稅인 相續稅率을 引下調整하였음. 相續稅負擔의 適正化로 相續稅 脫漏를 防止하여 正當納稅風土를 誘導하도록 하였다.

稅率對比表

(單位 : 千원)

改正前			改正		
課標	稅率	稅額	課標	稅率	稅額
1,000 以下	7 %		1,000 以下	7 %	
1,000 超過	10	70	1,000 超過	9	70
3,000	13	270	3,000	11	250
5,000	17	530	5,000	13	470
7,000	21	870	7,000	15	730
10,000	25	1,500	10,000	17	1,180
13,000	29	2,250	13,000	20	1,690
19,000	33	3,990	19,000	25	2,890
25,000	37	5,970	25,000	30	4,390
35,000	42	9,670	35,000	35	7,390
50,000	47	15,970	50,000	40	12,640
70,000	52	25,370	70,000	45	20,640
100,000	57	40,970	100,000	50	34,140
300,000	62	154,970	300,000	55	134,140
500,000	67	278,970	500,000	60	244,140

輕 減 率

(單位 : 千원)

相續稅 課稅價額	改正前		改正		輕減率(%)
	相續稅	負擔率(%)	相續稅	負擔率(%)	
50,000	4,386	8.8	1,180	2.4	73.1
60,000	7,894	13.2	3,140	5.2	60.2
70,000	11,854	16.9	5,890	8.4	50.3
80,000	16,064	20.1	9,140	11.4	43.1
100,000	25,474	25.5	16,640	16.6	34.7
120,000	35,874	29.9	25,140	21.0	29.9
150,000	52,484	35.0	39,140	26.1	25.4
200,000	80,984	40.5	64,140	32.0	20.8
250,000	109,484	43.8	89,140	35.7	18.6
300,000	137,984	46.0	114,140	38.1	17.3
400,000	198,494	49.6	167,140	41.8	15.8
500,000	260,494	52.1	222,140	44.4	14.7
1,000,000	594,004	59.4	520,140	52.0	12.4
2,000,000	1,264,004	63.2	1,120,140	56.0	11.4

註 : 輕減率은 相續稅率의 引下와 住宅相續控除額(4,000萬원)을 考慮한 것임.

2. 住宅相續控除制度新設(法 第11條의 2)

相續稅納付를 위한 1家口1住宅의 處分을 防止하여 中產層의 基本財產을 保護維持하고 財產形成을 稅制上 支援하기 위하여 住宅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改正前에는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누구나 控除받을 수 있는 基礎控除(800萬원)以外에 被相續人의 扶養家族構成에 따라 配偶者控除(1,600萬원), 未成年者控除(年 24萬원×20才까지 年數), 年老者控除(100萬원)등이 認定되었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이러한 相續稅 人的控除以外에 被相續人의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兄弟姉妹가 住宅을 相續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住宅의 價額을 追加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토록 하되 控除金額은 課稅公平上 相續稅 人的控除와 합하여 4千萬원으로 限定하였다. 또한 主된 生活根據地로서 控除對象이 되는 住宅은 다음의 順位에 따른 1住宅으로 限定하였다.

가.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과 相續人이 함께 居住하는 住宅

나.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이 居住하는 住宅

다. 相續開始當時 相續人이 居住하는 住宅

라. 가 내지 다 以外의 住宅으로서 被相續人이 가장 오래 所有한 住宅

3. 農地·草地·山林地의 相續控除制度新設(法 第11條의 3)

우리나라 農村의 相續實態를 고려하고 農村後繼者育成의 必要에서 農地등의 控除制度를 新設하여 農地·草地·山林地의 所在地와 同一한 市·邑·面 또는 通常 直接 耕作할 수 있는 隣接地域에 居住하면서 相續開始日 2年前부터 계속하여 直接 農業에 從事한 農民이 所有하는 一定規模以下의 農地·草地·山林地에 대하여는 相續稅 人的控除·住宅控除 以外에 追加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토록 하였다.

區　　分	面　　積	控 除 限 度
農　地	6千坪 以內	人的控除 및 住宅控除를 합하여 5千萬원
草　地 山 林 地	3萬坪 以內	

이 制度는 農村後繼者育成을 위한 것이므로 農地등에 대한 投資를 防止하고 이 制度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된 農地·草地·山林地를 相續받은 相續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相續後 5年이내에 處分하거나, 農業에 從事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相當한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免除받은 相續稅를 追徵토록 하였다.

다만, 農地등이 收用되거나 營農上 必要에 의하여 交換·分合 代土되거나,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되거나, 相續人이 死亡 또는 海外移住하는 등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相續稅申告期限의 延長(法 第20條)

納 稅 義 務 者	改 正 前	改 正
國內에 住所를 둔 者	相續開始日로부터 3月이내	6月이내
國外에 住所를 둔 者	相續開始日로부터 6月이내	9月이내

相續稅 申告期限의 延長에 따라 贈與稅의 申告期限도 相續稅 申告期限과 同一하게 延長되었다.(法 第34條의 5)

<適 用 例>

1982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適用되도록 하였다.

5. 相續稅無申告加算稅制導入(法 第26條)

[改正內容]

改正前에는 相續稅를 申告期限內 申告하는 경우 10% 自進申告稅額控除가 許容되고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아무런 不利益이 없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財産을 申告期限內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相續稅 算出稅額에 申告漏落한 相續財産價額이 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의 10%를 加算稅로서 賦課하도록 하여 誠實申告를 誘導토록 하였다. 다만, 課稅標準에서 申告漏落한 相續財産의 價額이 차지하는 比率은 100分의 100을 限度로 함으로써 相續稅課稅價額에서 控除되는 部分(相續稅 人的控除, 住宅控除 및 農地·草地·山林地 控除에 相當한 金額)에 加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贈與稅의 경우>

相續稅無申告加算稅에 관한 相續稅法 第26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대하여 準用되므로 贈與받은 財産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때에는 10%加算稅가 賦課된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6. 10% 自進申告稅額控除擴大(從前 令 第14條第2項 削除)

[改正內容]

改正前에는 自進申告한 相續稅는 10%稅額控除하면서 3年間 年賦延納하는 경우에도 第1回 年賦延納分에 대하여만 10% 稅額控除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稅의 誠實申告納付를 誘導하기 위하여 10% 自進申告稅額控除惠澤을 擴大하여 自進申告한 相續稅를 3年間 年賦延納하는 경우에도 第2回·第3回 年賦延納分에 대하여도 10% 稅額控除惠澤을 賦與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이와 같은 改正內容은 1982年 1月 1日以後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따라서 1982年 1月 1日前에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도 1982년 1月 1日以後 法定申告期限(6月)이 到來하여 申告를 한 경우에는 改正稅法이 適用된다.

7. 無申告·申告漏落相續財産의 評價特例(法 第9條第2項)

相續財産의 誠實한 申告를 誘導하기 위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相續財産에 대하여는 10% 無申告加算稅를 賦課하는 以外에 相續財産價額도 相續開始當時의 價額에 의하지 아니하고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에 의하여 評價하도록 함으로써 申告納付遲延으로 인한 物價上昇利益을 租稅로 吸收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無申告·申告漏落한 財産	相續開始當時의 價額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

<贈與稅의 경우>

相續財産價額의 評價方法에 관한 相續稅法 第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準用되므로 贈與받은 財産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경우에도 贈與稅賦課當時의 價額으로 贈與받은 財産價額을 評價하여 贈與稅를 賦課한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以後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받은 分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것에 대하여 適用된다.

8. 擔保提供된 相續財産 評價特例(法 第9條第4項)

[改正內容]

相續財産의 價額은 原則的으로 相續開始當時의 時價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이나 改正稅法에서는 擔保등으로 提供된 다음의 相續財産에 대하여는 相續開始當時의 價額(또는 相續稅 申告期限內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漏落한 財産으로서 擔保提供한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稅賦課當時의 價額)과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額등을 比較하여 큰 金額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區　　分	債　權　額
① 抵當權·質權이 設定된 財産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額
② 讓渡擔保財産	〃
③ 根抵當權이 設定된 財産	當該財産이 擔保하는 債權의 最高額
④ 傳貰權이 登記된 財産	登記된 傳貰金
⑤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	登記된 賃貸保證金+(1年間賃貸料 / 定期預金利子率)

<贈與稅의 경우>

相續財産의 評價方法에 관한 相續稅法 第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準用되므로 擔保로 提供된 財産을 贈與받은 경우에는 위의 評價方法에 관한 特例規定이 準用된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1982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9. 死亡에 對備한 財産處分·債務負擔에 대한 擬制相續制度新設 (法 第7條의 2)

一部 高額相續者가 死亡에 對備하여 財産의 處分이나 債務負擔의 方法으로 相續財産을 分散·隱匿하는 事例가 있으므로 相續稅法에서는 이러한 變則的인 相續稅逋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相續開始日前 1年以內에 被相續人이 財産을 處分한 代金이 財産種類別(不動産·動産·有價證券·無體財産權·債權·其他財産)로 計算하여 5千萬원 以上이거나, 債務負擔한 金額의 合計額이 5千萬원 以上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代金의 用途가 明白하지 아니한 것은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例　示]

○ 被相續人 財産을 處分하거나 債務를 負擔하고 받은 金錢등을 支出한 去來相對方이 去來證憑의 不備등으로 確認되지 아니하거나

○ 去來相對方이 金錢등의 授受事實을 否認하거나 去來相對方의 財産狀態등으로 보아 金錢

등의 授受事實이 認定되지 아니한 경우

○ 去來相對方이 被相續人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로서 社會通念上 支出事實이 認定되지 아니한 경우 등

10. 特殊關係者를 媒介로 한 贈與規制(法 第34條第2項)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特殊關係者에게 賣却한 財産을 3年內에 配偶者나 直系尊卑屬이 다시 買入한 경우에는 代價를 支給한 事實에 不拘하고 配偶者나 直系尊卑屬에게 贈與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第3者인 特殊關係者를 利用한 相續財産의 事前分散을 規制토록 하였다.

<例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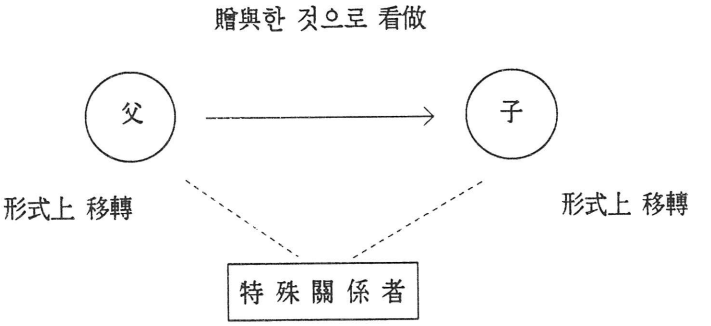

11.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時 負擔控除排除(法 第29條第2項)

負擔附贈與라 함은 受贈者가 財産을 贈與받은 同時에 一定한 負擔(예컨대, 子가 父로부터 不動産을 贈與받으면서 父의 債務를 引受하는 경우)을 하는 特殊한 形態의 贈與이다.

改正前에는 負擔附贈與의 경우 負擔部分을 控除한 나머지 部分에 대하여 贈與稅를 課稅하였으나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直系尊卑屬·配偶者에 負擔附贈與하는 경우 原則的으로 負擔部分을 控除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職業·年齡·所得 및 財産狀態등으로 보아 債務를 辨濟할 能力이 있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受贈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의 債務 또는 裁判上 確定된 債務를 引受한 때는 例外的으로 負擔部分을 控除하도록 하였다.

12. 其　　他

가. 相續稅의 連帶納稅義務(法 第18條)

改正前에는 相續人은 各自가 받았거나 받을 財產의 占有比率에 따라 相續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고,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相續稅를 滯納하는 경우) 各自가 取得한 相續財產의 範圍內에서 서로 連帶하여 納付할 責任이 있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稅의 納稅義務를 連帶納稅義務로 規定하여 相續人이 2人以上인 경우 各 相續人에게 同時 또는 順次로 相續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各自의 相續稅 納付責任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相續財產을 限度로 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國稅基本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면 共有物·共同事業 또는 當該共同事業에 속하는 財產에 關係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는 그 共有物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相續財產도 相續人에게 民法上 相續持分대로 分割되기 전에는 相續人의 共有物에 該當하기 때문에 國稅基本法의 趣旨에 맞도록 相續稅納稅義務를 連帶納稅義務로 改正하였다.

差異點 例示

	改　正　前	改　　正
○ 告知方法	各自에게 告知書를 送達	代表者 또는 1人에게 告知書送達可能
○ 告知稅額	各自取得한 相續財產의 占有比率로 按分計算한 稅額	稅額의 全部 또는 一部
○ 滯納處分	各自에 告知送達을 納付期限의 超過時	代表者 또는 1人에게 告知送達된 納付期限의 超過時
○ 納付責任의 範圍	各自 取得한 相續財產의 範圍內	左　同

나. 課稅價額 公示送達期間의 延長(法 第25條第3項後段)

改正前에는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納稅義務者가 그 納稅管理人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課稅價額의 通知를 公告로 갈음하고 이 경우 公告는 公告의 初日로부터 7日이 經過하였을 때 그 通知를 받은 것으로 看做하였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國稅基本法 第11條에 規定한 公示送達의 公告期間과 統一하여 公告의 初日로부터 10日이 經過하였을 때 그 通知를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다. 相續稅法上 公益事業의 範圍擴大(令 第3條의 2 第2項)

非營利法人은 原則的으로 相續·贈與稅 納稅義務가 있으나 宗教事業·慈善事業·學術事業·기타 公益事業으로서 相續稅法에 列擧되어 있는 公益事業에 대하여는 相續·贈與稅를 免除하고 있다.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韓國靑少年聯盟이 運營하는 事業과 各級새마을運動組織이 運營하는 事業을 公益事業으로 列擧하여 여기에 出捐·寄附·贈與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特別消費稅法

[要　約]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消費生活의 變化에 따라 一般的으로 大衆化된 物品의 消費에 대하여는 稅負擔을 輕減하고, 奢侈性物品등 여유있는 所得層의 消費에 대하여는 重課함으로써 間接稅負擔을 合理的으로 調整하며, 新技術開發促進을 위한 特別消費稅의 産業政策的 誘引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課稅物品의 細目 範圍를 明瞭히 하고 기타 節次規定을 補完하였다.

가. 課稅對象 및 稅率調整
- ○ 稅率引下品目
- ○ 稅率引上品目
- ○ 旣存課稅品目과 類似 및 代替品目 新規課稅
- ○ 奢侈性 業所의 新規課稅

나. 暫定稅率制度의 導入

다. 乘用自動車에 대한 強力稅率適用期限 延長

라. 課稅品目의 細目調整
- ○ 法 改正으로 追加된 課稅品目의 細目 範圍設定
- ○ 旣存課稅 細目의 範圍調整 및 明瞭化

마. 其他 主要 改善事項
- ○ 收去하는 課稅品目에 대한 非課稅範圍 擴大
- ○ 還入物品의 再搬出時 非課稅制度를 稅額控除 制度로 轉換
- ○ 寶石·貴金屬製品에 대한 納稅義務 强化
- ○ 製造擬制 對象品目의 追加
- ○ 自家消費物品의 搬出擬制 對象 除外
- ○ 搬出擬制 範圍縮小
- ○ 申告·納付期限 延長
- ○ 課稅物品 製造用 原料에 대한 未納稅 搬出 許容
- ○ 스키用品 免稅對象인 運動選手의 範圍規定
- ○ 免稅搬出 節次簡素化
- ○ 海外 就業勤勞者 쿠폰 免稅事後管理
- ○ 特殊 販賣場 賣買物品의 課稅標準 精算制度 廢止
- ○ 遊興飮食業所 課稅方法
- ○ 營業의 停止 또는 許容取消의 要求基準

1. 課稅對象과 稅率調整

가. 稅率引下品目(法 第1條第2項)

品　　目	改　正　前	改　　正
○ 黑白TV	30(21)%	10%
○ 컬러TV(小型 18"이하)	40(28)	28
○ 音盤器機		
小型錄音器(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것)	30	10
其他 錄音器, 電蓄等		25
○ 冷藏庫(小型250ℓ이하)	40(28)	28
○ 電氣·電熱利用器具	40(28)	28
○ 家具	20	15
○ 絨緞(化纖의 것)	30	20
○ 지프車	20(14)	10

※ (　)는 彈力稅率

1) 흑백TV : 30%→10%

트랜지스터라디오 이후 가장 大衆化된 耐久消費財일 뿐만 아니라 컬러TV의 市販에 따라 需要가 거의 代替되었고 殘餘需要는 學生敎育 및 農漁村用이므로 基本稅率을 大幅 引下하였다.

2) 컬러TV : ┌ 大型 40%→40%
　　　　└ 小型 40%→28%

強力稅率을 適用하여 基本稅率 40%를 強力稅率 28%로 適用하였으나 小型은 現在 主로 中產層以下의 普及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시 稅率을 40%로 還元하는 것은 이들의 負擔을 加重시키게 되므로 18"를 超過하는 大型의 것은 基本稅率을 40%로 그대로 두고, 小型은 基本稅率을 28%로 引下하였다.

3) 音盤器機

가. 小型錄音器 : 30%→10%

小型錄音器는 學生 語學實習用 敎材로 活用되고 있는 등 그 普及率이 상당한 水準에 도달하였으므로 基本稅率을 大幅 引下하였다.

나. 其他音響器機 : 30%→25%

音響器機는 主로 高價의 耐久消費財이지만 半導體를 가장 많이 쓰는 電子製品이므로 이의 支援을 위하여 基本稅率을 引下하였다.

4) 冷藏庫 : ┌ 大型 40%→40%
　　　　└ 小型 40%→28%

彈力比率을 適用하여 基本稅率 40%를 彈力稅率 28%로 適用하였으나 이미 그 普及이 大衆化되었고 특히 小型은 主로 中產層以下의 家庭에서 使用하고 있는 實情을 勘案하여 볼 때 다시 40%로 還元하는 것은 이들의 負擔을 加重시키게 되므로 大型과 小型으로 區分하여 250ℓ를 超過하는 것은 基本稅率로 還元하고 小型은 基本稅率을 28%로 引下하였다.

5) 電氣·電熱器具 : 40%→28%

彈力稅率을 適用하여 基本稅率 40%를 彈力稅率 28%로 適用하였으나 電氣·電熱器具는 家庭用 조리용기구등을 課稅對象(전기주전자, 커피포트, 오븐등)으로 하고 있고, 그 普及이 이미 상당 水準에 達하고 있으므로 基本稅率을 28%로 引下하였다.

6) 家具 : 20%→15%

1個 또는 1組 20萬원 이상의 것을 課稅하고 있으나 家庭生活의 基礎生活用品임을 勘案하여 基本稅率을 다소 引下하였다.

7) 絨緞 : ┌ 高級 30%→40%
　　　└ 低級 30%→20%

絨緞은 住居生活의 變化에 따라 冬節期의 난방용으로서 에너지 節約效果가 있는 品目임을 勘案하여 低級인 化學纖維를 使用한 大衆用 製品에 대하여는 消費者 負擔을 輕減하는 대신 表面纖維를 羊毛로 使用한 高級奢侈品에 대하여는 오히려 稅率을 引上함으로써 高所得層의 奢侈性 消費에 重課하도록 하였다.

8) 지프차 : 20%→10%

中型乘用車(레코드로얄, 마크V)와 같은 稅率(20%)이 適用되고 있는 지프차는 그 用途가 一般乘用車와 달리 主로 鑛山·農業·建設등 特殊產業用일 뿐 아니라 有事時 動員裝備로 使用되는 點을 勘案하여 基本稅率을 引下하였다.

나. 稅率引上品目(法 第1條第2項)

品　　目	改　正　前	改　　正
○ 피아노 ┌ 그랜드型	20%	30%
└ 一般型	10	20
○ 모터보트와 요트(大型의 것)	40	60
○ 絨緞(毛製品)	30	40
○ 滋養強壯品(錠劑·軟狀·固型·粉末의 것)	10	20

1) 피아노 : ┌ 그랜드型 20%→30%
　　└ 一般型 10%→20%

高所得層에서 使用하는 高價耐久消費財로서 他物品과의 稅率衡平을 喪失하고 있으므로 他耐久消費財의 稅率引下 구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學校敎育用은 繼續 免除한다.

2) 大型모터보트와 요트 : 40%→60%

現行 課稅物品中 가장 高價의 耐久消費財로서 극히 制限된 高所得者만이 利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高級絨緞 : <가 7) 參照>

4) 滋養強壯品(錠劑) : 10%→20%

人蔘·鹿茸·로열젤리·海狗腎 또는 구기를 含有한 것으로 錠劑이거나 液體이거나 모두 滋養·營養·強壯·強精·疲勞回復 또는 解毒의 目的에 使用되는 同一用途의 物品이므로 구태여 稅率을 區分하여 適用할 名分이 없으므로 液體의 것과 衡平上 同一稅率이 適用되도록 하였다.

※ 醫藥品類는 課稅對象이 아님.(비타민, 간장약 등)

다. 旣存課稅品目과 類似 및 代替品目 新規課稅(法 第1條第2項)

品　　目	改　正　前	改　　正
○ 澱粉糖(果糖·포도당·물엿)	-%	10%
○ 天然果實飮料(果菜類의 것 包含)	-	10(1)
○ 카카오마스	-	20
○ 크리스털유리製品	-	20
○ TV映像投寫機 및 동 스크린	-	40
○ 가스利用器具(大型)	-	28
○ 雪上 스키用品·水上스쿠터	-	40
○ 揮發油와 유사한 代替油類	-	160
○ TV受像機의 關聯製品	-	40
○ 映寫機·撮影機·高級寫眞機의 關聯製品	-	40

註 : (1)은 2年間(82-83年) 5% 適用

1) 澱粉糖 : 10%

砂糖價格의 引上으로 인하여 國內消費需要가 價格이 低廉한 果糖·포도당·물엿으로 相當한 物量이 代替되고 있으므로 砂糖과의 衡平上 課稅하는 것이다.

2) 天然果實飮料 : 10%(82-83年은 5%)

주스類(果實즙, 果實水)는 農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69年부터 非課稅하였으나 現在는 天然飮料의 生産供給이 相當한 水準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淸涼飮料 기타 嗜好飮料등과 代替品이므로 衡平上 低率로 課稅하는 것이다. 다만, 農家所得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여 82年 및 83年 2年間은 5%로 課稅한다.

3) 카카오마스 : 20%

全量輸入에 依存하는 카카오豆를 볶아서 加工한 嗜好食品의 半製品인 바 이는 同一한 카카오豆를 使用하여 加工한 嗜好飮料用인 코코아粉(40%)과 課稅衡平을 喪失하고 있으므로 外貨를 使用하는 物品의 輸入抑制와 課稅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課稅한다.

4) 크리스털유리製品 : 20%

高級유리製品인 크리스털유리製品은 高所得層에서 愛用되는 比較的 高價의 物品이므로 旣存 課稅物品과의 衡平上 課稅한다.

5) TV映像投寫機 및 동 스크린 : 40%

TV映像投寫機는 TV환등기로서 高價의 耐久消費財이며, 컬러TV 또는 비디오와 같이 사용하는 奢侈性 物品이므로 旣存 課稅物品과의 衡平上 課稅한다.

6) 가스利用器具 : 28%

都市家庭用燃料의 가스化 施策을 支援하기 위하여 79年부터 課稅對象에서 除外하였으나 庶民用이 아닌 高級가스器具가 市販되고 있으므로 高所得層의 消費에 重課하기 위하여 課稅한다.

7) 雪上스키用品·水上스쿠터 : 40%

運動과 關聯된 物品이지만 高價耐久消費財로서 比較的 富裕層이 使用하는 물품이므로 他課稅物品과의 衡平上 課稅한다.

8) 揮發油와 유사한 代替油類 : 160%

輸入하는 原油에서 나온 石油製品이나 石油化學 工業製品을 利用하여 加工한 代替油類의 生産은 資源利用側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旣存 揮發油와 衡平上 課稅한다.

9) TV受像機의 關聯製品 : 40%

新製品의 開發에 따라 TV도 電蓄과 같이 高級化되어 受像管·튜너·스피커로 分離하여 生産이 可能하게 되어 있으므로 旣存의 TV受像機와의 衡平上 課稅한다.

10) 映寫機·撮影機·高級寫眞機의 關聯製品 : 40%

分離하여 輸入되고 있는 렌즈·바디등에 대하여 完製品과의 衡平上 課稅한다.

라. 奢侈性業所의 新規課稅(法 第1條第3項·第4項)

品　　目	改　正　前	改　　正
○ 遊興飮食店 (나이트클럽·카바레·料亭·外國人專用遊興飮食店과 기타 이와 類似한 場所)	—	10%
○ 스 키 場	—	10

1) 遊興飮食店 : 10%

從前에 遊興飮食稅가 課稅되던 나이트클럽·카바레·料亭·外國人專遊興用飮食店等은 收入金額의 現實化가 當面 問題였으므로 遊興業所에 대한 稅務摩擦과 不條理를 除去하면서 收入金額의 現實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附加價値稅 施行과 同時에 附加價値稅만을 課稅하고 遊興飮食稅를 廢止하였으나 同 場所는 餘裕있는 消費階層이 飮酒 歌舞를 直接하는 場所로서 高所得層의 遊興行爲의 担稅力을 勘案하고 奢侈性 消費를 抑制하기 위하여 課稅한다.

2) 스키場 : 10%

主로 高所得層이 레저 目的으로 一時的으로 즐기는 場所이므로 他 課稅場所와의 衡平을 勘案하여 課稅하는 것이다.

2. 暫定稅率 制度導入(法 第1條의 2, 令 第2條의 2)

가. 暫定稅率의 意味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物品으로서 輸出戰略上 內需基盤의 擴大가 必要한 物品에 대하여 基本稅率을 一定期間別로 暫定的으로 引下 適用하는 것을 말한다.

나. 導入目的

技術開發 先導品目에 대하여 內需基盤을 갖도록 함으로써 技術開發을 계속 推進하고 早期에 輸出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暫定稅率 및 適用期間

最初 2年間	다음 1年間	다음 1年間
基本稅率의 10% (例) 基本稅率이 40%인 電子製品(4%)	基本稅率의 40% (16%)	基本稅率의 70% (28%)

- 다만, 政府는 與件의 變化를 勘案하여 適用을 中止하거나 稅率을 引上 調整할 수 있다.
  (例) 普及率이 一定水準이 될 때 등

라. 暫定稅率 適用 對象品目 選定

- 비디오테이프레코더
- 비디오테이프
-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品目으로서 輸出戰略上 內需基盤의 擴大가 必要한 品目임.

暫定稅率 適用例

品 目	法定稅率	暫 定 稅 率		
		82~83	84	85
비디오테이프레코더	40%	4%	16%	28%
비 디 오 테 이 프	40	4	16	28
마이크로웨이브오븐	28	2.8	11.2	19.6

3. 乘用自動車에 대한 彈力稅率 適用期限 延長(法 第1條第6項, 令 第2條의 2)

- 品目 및 稅率
  - ○ 1,500CC 이하 : 15%→10.5%
  - ○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20%→14%
- 期間 : 6個月 延長(82. 6. 30까지)
- 理由 : 景氣回復 지연

4. 課稅品目의 細目調整(令 第1條 別表1)

가. 改正法으로 追加된 課稅品目의 細目範圍 設定

品 目	課 稅 範 圍	備 考
○ TV關聯製品 0%→40%	分離型 TV用 튜너·同 受像機	- 分離型 TV製品課稅(輸入되고 있음)
○ 가스利用器具 0%→28%	오븐·오븐레인지·순간온수기	- 大型高級가스 利用器具課稅 - 日本의 課稅例에 따라 大型區分
○ 大型모터보트와 요트 40%→60%	○ 大型모터보트(船體길이가 8m초과 15m 이하의 것) ○ 大型요트(船體길이가 9m초과하는 것)	
○ 스키用品 0%→40%	스키·스틱·스키화	
○ 영사기·撮影機·高級寫眞機의 關聯製品 0%→40%	렌즈·바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단, 高級寫眞機의 것은 1個 10萬원 이상의 것에 한함)	- 映寫機등의 分離型 製品課稅 - 高級寫眞機의 課稅最低限을 30萬원으로 引上함에 따라 高級寫眞機의 關聯製品 課稅最低限을 10萬원으로 함
○ 澱粉糖(물엿 包含) 0%→10%	엿만을 만들기 위하여 엿의 原材料로 자기가 直接 製造한 물엿은 除外	- 소위 "엿장수"가 만드는 물엿은 除外
○ 天然果實飮料(果菜類의 것 포함) 0%→10% 단, 2年間 5%	濃縮한 것 포함	
○ 크리스털유리製品 0%→20%	납의 含有量이 7% 以上의 것	- 크리스털유리製品 分類上 最下 납 含有量 基準
○ 揮發油와 類似한 代替油類 0%→160%	石油製品 또는 石油化學工業製品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自動車 기타 가솔린 엔진用의 燃料로 使用되는 油類 但, 가스類 除外	- 旣存 石油類製品을 加工한 것 以外의 순수한 代替油類는 除外

나. 旣存課稅 細目의 範圍 調整 및 明瞭化

現 行 細 目	調 整	備 考
○ 家 具 1個 또는 1組 20萬원이상의 것 課稅	〔課稅最低限의 種類別 引上 및 明瞭化〕 ○ 장농 독립식 1개 20萬원 비독립식 1조 50萬원 ○ 응접의자 1조 30萬원 장의자 1개 15萬원 1인용 1개 7萬원 ○ 기타의자 1개 7萬원 ○ 기타가구 1개 또는 1조 30萬원	- 物價上昇 - 家具種類別 課稅最低限의 適正化
○ 電氣音樂器機 • 축음기 축음기용 앰프등 축음기용품 ○ 녹음기 ○ 뮤지컬앰프등	〔細目追加〕 리듬·박스·음질조정기·스테레오식마이크·칼라오르간 〔細目 明瞭化〕 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 〔細目除外〕 大衆意思傳達用의 P·A앰프	- 旣存課稅細目과 衡平維持 - 음악감상용이 아니고 敎育, 訓練등 대중의사전달용인 특성감안
○ 電氣·電熱利用器具 : 오븐·온장고·진공소제기·식기세척기등 18個 품목	〔細目除外〕 전기냄비·난로·풍로·토스터·버너 〔細目追加〕 전자게임기·공기청정기·정수기·사우나바스·스팀바스·온수기·잔디깎기·이온수기	- 低價大衆品에 대한 特消稅 排除 - 旣存課稅細目과 衡平維持
○ 高級寫眞機 1個 15萬원 以上의 것 課稅	〔課稅最低限 引上〕 1個 30萬원 以上의 것 課稅	- 精密機械工業 育成支援

現 行 細 目	調 整	備 考
○ 자양강장품 人蔘·鹿茸등을 함유하는 내복제제와 피로회복용 내복제제로서 치료제 以外의 것 • 人蔘製品 • 鹿茸	〔細目追加〕 로열젤리·해구신	- 既存 課稅細目과 衡平 維持
○ 淸涼飮料 사이다, 콜라등	〔細目追加〕 天然藥水	- 既存課稅細目과 衡平維持
○ 공기조절기 냉방 냉풍기, 난방 온풍기	〔細目除外〕 냉방냉풍기중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使用動力이 11kw 이상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 5톤 이상의 것 除外	- 超大型은 産業用임을 감안
○ 공기조절기의 關聯製品 • 중앙식의 에어핸드링유니트,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에어컨	〔細目除外〕 ○ 중앙식의 에어 핸드링유니트	- 完製品인 中央式 공기조절기가 非課稅인 점과 衡平維持
○ 냉장고 規格制限 없음	〔細目除外〕 1000ℓ 초과의 것	초대형의 것은 산업용임을 감안
○ 貴金屬製品 裝身用品·化粧用具·喫煙用具·食卓用具·其他記念品등	〔細目除外〕 國家的 紀念行事用의 것으로 特別製作한 것 〔細目追加〕 室內裝飾用品·記念品·其他用品	他 貴金屬 製品과 衡平維持
○ 紡毛糸와 紡毛織物毛의 混合比率이 50% 超過하는 것 課稅	毛의 混合比率이 80% 超過하는 것 課稅	中小企業支援(梳毛糸·織物과 衡平維持)

5. 其他 主要改善事項

가. 收去하는 課稅物品에 대한 非課稅範圍 擴大(法 第2條第1項第3號)

人蔘事業法, 藥事法,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收去하는 人蔘製品·滋養強壯品·淸涼飮料등에 대해서만 課稅하지 아니하고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하여 收去되는 아이스크림·醱酵乳등에 대하여는 課稅함으로써 衡平에 맞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非課稅對象을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人蔘事業法·藥事法·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하는 課稅物品은 特別消費稅를 課稅하지 아니함.	畜産物加工處理法을 追加함.

나. 還入物品 再搬出時 非課稅制度를 稅額控除制度로 轉換 (法 第2條第1項第5號, 第20條第2項第3號)

特別消費稅가 課稅되어 搬出한 物品이 商去來 事情의 變更등으로 本來의 製造場에 還入된 後 再搬出時에 非課稅하는 制度는 再搬出時의 時價 또는 稅率의 變動으로 課稅物品에 대한 搬出價格이 당초의 搬出價格과 差異가 나는 경우에 實地 價格에 의하여 課稅할 수가 없으며 再搬出時에도 非課稅하기 위하여는 還入物品에 대한 사후관리의 번거러움이 따르며, 또한 還入物品을 輸出등 特定免稅用途에 供하기 위하여 再搬出하는 경우에도 非課稅 規定이 適用되기 때문에 免稅가 되지 아니하는 등 問題點이 있었으므로 還入時에는 당초 課稅된 稅額을 控除하여 주고, 再搬出時에는 再搬出時의 價格과 稅率로 課稅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特別消費稅가 課稅된 物品이 出庫된 後 商去來 事情으로 本來의 製造場에 還入된 경우에 이를 그대로 다시 搬出하거나 새로이 製造·加工하여 搬出하는 때에는 다시 課稅하지 아니함.	當初 搬出時 課稅된 特別消費稅額은 還入 당시 月分의 特別消費稅 納付稅額에서 控除함.

다. 寶石·貴金屬製品에 대한 納稅義務 強化(法 第3條第2號)

貴金屬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納稅義務는 販賣를 하는 者에게 있고 受託加工만을 하는 者에게는 없기 때문에 大量消費者인 企業體등 實需要者는 貴金屬을 購入하여 貴金屬製品을 委託加工함으로써 合法的으로 特別消費稅를 負擔하지 아니하고 使用하는 事例가 있었기 때문에 單純히 賃加工만을 하는 者에 대하여도 納稅義務者로 規定하여 特別消費稅를 負擔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寶石·貴金屬製品에 대하여는 同製品을 販賣하는 경우에만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가 있음.	單純히 受託加工하는 者도 納稅義務者로 追加함.

라. 製造擬制對象物品의 追加(法 第5條第1號, 令 第5條第1項)

特別消費稅法上 課稅物品의 納稅義務者는 原則的으로 課稅物品을 製造하여 搬出하는 者이므로 이들로부터 物品을 購入하여 販賣하는 者는 納稅義務가 없기 때문에 이들 販賣業者가 課稅物品을 大量의 容器로 포장하여 製造場에서 購入한 후 實需要者用으로 小分 또는 改裝만 하여 販賣하는 경우에는 課稅物品을 直接 製造하여 消費者가 利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搬出하는 納稅義務者인 製造者보다 稅額計算에 있어서 包裝費用에 負擔하는 稅額만큼 有利하므로 이들간의 衡平을 維持하기 위하여 커피와 코코아를 大量으로 購入하여 小分·改裝만 하여 販賣하는 경우에도 淸涼飮料등과 같이 課稅物品의 製造로 보아 納稅義務가 있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課稅對象인 特殊化粧品·淸涼飮料·嗜好飮料를 直接製造하지 아니하고 製造된 이들 完製品을 大量 購入하여 작은 용기에 갈라 넣거나 改裝하여 販賣하는 경우에도 이를 課稅物品의 製造로 看做하여 課稅함.	커피와 코코아를 追加함.

마. 自家消費物品의 搬出擬制對象 除外(法 第6條第1項第1號, 令 第6條第1項)

課稅物品이 同一製造場 안에서 課稅物品의 品質 또는 性能檢査를 위하여 使用되는 경우에도 自家消費로 보아 課稅하였으나 이는 課稅物品의 生産을 위한 工程의 一部이기 때문에 課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 製造場 안에서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使用되는 경우 2. 課稅되지 아니하는 石油類의 製造用 原材料로 精油工程上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同一 製造場 안에서 課稅物品의 品質 또는 性能의 檢査를 위하여 使用되는 경우를 追加함.

바. 搬出擬制範圍縮小(法 第6條第1項第4號)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경우에는 特別消費稅에서도 課稅物品의 搬出로 보도록 하여 課稅時期를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課稅物品의 價格引上 또는 稅率引上등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課稅物品을 搬出하기 전에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미리 作成·交付함으로써 稅金負擔을 合理的으로 회피하는 등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이를 整備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附加價値稅法上 財貨의 供給으로 보는 경우(財貨를 引渡하기 前에 稅金計算書를 作成·交付한 때)에는 特別消費稅法上의 搬出로 본다.	(削 除)

사. 申告·納付期限 延長(法 第9條)

信用販賣의 一般化에 따라 企業體의 資金回收日이 주로 月末로 集中됨으로써 稅金納付日인 20日과 一致하지 아니하여 稅金納付를 위한 별도의 資金이 所要되었기 때문에 納期를 연장하여 時差에 의한 資金負擔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다음달 20日까지	다음달 末日까지

아. 課稅物品製造用 原材料에 대한 未納稅 搬出許容(法 第14條第1項第6號, 令 第19條第3項第6號)

課稅物品의 製造業者가 課稅物品인 原材料購入時에 稅金을 미리 負擔하는 것은 完製品을 製造하여 販賣하기까지 長時間이 所要되는 경우 企業體의 資金負擔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課稅物品인 原材料를 未納稅로도 搬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課稅物品을 製造하는 者가 課稅物品인 原材料를 購入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稅額控除를 받을 수도 있고 未納稅로 購入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事前 課稅後 事前 稅額控除	未納稅로 搬出許容

자. 스키用品 免稅對象인 運動選手의 範圍規定(法 第18條第1項第15號, 令 第32條의 2)

- 스키用品中 法에 의해 免除되는 "運動選手用"의 範圍를 "大韓體育會에 登錄된 運動選手用"으로 規定하였다.

차. 免稅搬出節次 簡素化(法 第14條第2項·第15條第2項本文·第17條第2項·第18條第2項前段, 令 第19條의 2·第20條)

課稅物品의 製造者가 課稅物品을 免稅로 搬出하는 경우에는 同 物品을 搬出하기 전에 所管稅務署長에게 免稅搬出承認 申請(輸出用 物品은 搬出申告)을 한 후 承認을 얻어 搬出하였으나 이를 省略하도록 하여 事前規制로 인한 불편을 除去하도록 하였으며, 免稅로 搬出한 物品의 事後管理를 위한 免稅用途證明의 提出期限을 稅務署長이 指定하였으나 앞으로는 搬出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末日까지 課稅標準申告時에 提出하도록 法定化하여 稅務署長의 裁量權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리고 課稅物品을 輸出했거나 其他 특정한 用途에 使用되고 있어도 節次上의 錯誤등으로 免稅用途證明을 期限內에 提出하지 못하면 즉시 稅金을 徵收하였으나 앞으로는 期

限內에 提出하지 아니하면 1個月內에 提出할 것을 일단 催告한 후 同期間이 經過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稅額을 徵收하도록 하여 不測의 稅額徵收를 排除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 免稅搬出時 事前에 搬出承認申請을 한 후 承認을 얻어 搬出	事前 免稅搬出承認申請 省略
2. 搬出者所管 稅務署長이 承認時에는 免稅用途證明등의 提出期限을 지정	免稅用途證明등 提出期限을 課稅標準申告時(다음달 末日까지)로 法定
3. 指定期限까지 未提出時에는 무조건 稅額追徵	未提出時에는 1個月內 提出을 催告하고 催告期間의 經過後 稅額追徵

카. 海外就業勤勞者 쿠폰 免稅事後管理(法 第15條第3項, 令 第22條의 2)

海外就業勤勞者에 대한 國產家電製品(카셋트·뮤직센터·리시버型 앰프·콤비TV·컬러TV·카메라)을 種類別로 5年에 1台씩 免稅로 購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그 限度를 超過하여 購入하더라도 이를 制限하기 위한 事後管理 規定이 없었으므로 이를 法定化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新 設〉	海外就業勤勞者가 國產家電製品을 種類別로 5年안에 1台를 超過하여 購入한 事實이 確認되는 때는 免稅額 追徵

타. 特殊販賣場 販賣物品의 課稅標準精算制度 廢止(令 第9條第1項但書)

課稅物品이 製造者가 自己의 製品을 直賣場등 特殊販賣場에서 販賣하는 경우 製造場에서 直賣場에 搬出한 物品의 課稅標準은 주로 實際 直賣場에서 販賣한 金額이 되는 것이나 販賣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課稅標準인 搬出價格이 없기 때문에 당해 直賣場에서 販賣한 同種·同質物品의 單價別 數量의 合計에 대한 比率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數量에 適用하여 算定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申告納付하고, 이에 의하여 算定된 金額과 直賣場에서 實際로 販賣한

金額이 다를 경우에는 6月마다 課稅標準을 精算하도록 하여 附加價値稅法上의 課稅標準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側面에서 精算制度를 採擇하였다. 그러나 精算制度로 인하여 課稅標準을 6個月동안 不確實한 狀態에 두는 것은 製造場에서 搬出한 物品에 대한 課稅期間이 1個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納稅義務가 不安定하게 되므로 問題點이 있으며 특히 直賣場등에서 販賣中에 있는 物品의 稅率이 變動된 경우에는 그 變動된 稅率에 따라 價格을 決定하여 販賣하더라도 當該物品에 대한 課稅標準 精算時의 稅率은 搬出課稅原則에 따라 當初 製造場에서 課稅物品을 搬出한 당시의 稅率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課稅標準이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製造場에서 搬出時의 數量과 直賣場에서 當該 月에 販賣한 物品의 推定單價를 곱하여 申告·納付를 하면 되는 것이다.

改　　正　　前	改　　正
課稅標準 = 製造場 搬出數量×直賣場 販賣推定單價 但, 推定價格과 實際販賣價格이 不一致時에는 6個月마다 精算	단서(削除)

파. 遊興飮食業所 課稅方法

- 課稅標準(法 第8條第6號, 令 第14條의 2)

  課稅標準은 遊興飮食料金(飮食料·演奏料 기타 名目如何에 不拘하고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遊興飮食行爲를 하는 者로부터 領收하는 金額을 말함)으로 한다. 그러나 金錢登錄機를 設置 使用하는 者가 金錢登錄機 領收證을 交付하고 監査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現金收入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할 수 있다. 다만, 無償으로 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 것은 該當 月分의 課稅標準에 合算하고 외상으로 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 것으로서 經營을 廢止한 때의 외상賣出金 殘額은 廢業分 課標申告時의 課稅標準에 合算한다.

- 納稅担保 提供(令 第17條)

  所管稅務署長은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에 대하여 納稅保全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前月에 納付한 特別消費稅額(前月에 納付한 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月分에 納付할 特別消費稅額의 推定額)의 2個月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稅担保로 提供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經營者는 担保提供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納稅担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 免稅(法 第19條의 2, 令 第23條의 2)

免 稅 業 所 와 對 象 者	備 置 書 類
○ 觀光事業法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經營者가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外國人船員들에게 外貨를 받고 宿泊用役과 함께 提供하는 것.	外國人宿泊記錄表
○ 駐韓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이 駐屯하는 地域內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所管稅務署長의 指定을 받는 者가 外國軍人 및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提供하는 것	外國人에게 販賣한 領收證
○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所管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은 者가 駐韓外交官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外交官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 것	外交官 免稅販賣記錄表

※ 免稅要件

1. 所管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을 것. 단, 觀光호텔은 除外
2. 外貨를 받고 提供하여야 하며, 이를 確認할 수 있는 書類를 備置 記錄하여야 한다.

– 稅額控除(法 第20條第8項, 令 第34條第6項)

金錢登錄機를 使用하는 者는 金錢登錄機를 使用하여 交付한 領收證金額(免稅分을 除外한 것으로서 月 1千萬원을 限度로 함)에 대하여 納付할 特別消費稅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을 당해 月에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한다. 이 경우 稅額을 控除받고자 하는 者가 당해 月分의 課稅標準申告書에 당해 月分에 納付할 特別消費稅額에서 控除할 金額을 記載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하.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의 要求基準(法 第27條第1項, 令 第37條의 2)

營業의 停止 許可取消要件	要 求 基 準	
	15日間 營業停止	許 可 取 消
1. 課稅場所 課稅遊興場所의 營業에 관한 租稅犯處罰法 또는 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의한 處罰이나 處分을 받은 때	回數가 1回인 때	2回인 때

營業의 停止 許可取消要件	要 求 基 準	
	15日間 營業停止	許 可 取 消
2. 課稅場所에의 入場行爲 및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全部 또는 一部를 3回以上 申告納付하지 아니한 때	3回以上인 때	6回以上인 때
3.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納稅担保의 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	30日內에 担保를 提供하지 않은 때	營業停止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30日이 經過할 때까지 提供하지 아니한 때

- 所管稅務署長은 課稅場所와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에 대하여서만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의 要求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경우 回數의 計算은 당해 事由가 처음 發生한 날로부터 1年을 單位로 한다.

教 育 稅 法

[要 約]

教育稅는 國稅로서 時限附(1982~1986) 目的稅이며 所得(利子·配當), 消費(술·담배) 및 金融·保險業을 그 稅源으로 하고 있다.

利子·配當에 있어서 個人이 받은 社債利子, 紙上配當, 公開法人 또는 上場法人의 大株主配當, 非上場法人의 配當등과 法人이 받은 利子·配當은 綜合所得 또는 各事業年度所得으로서 綜合課稅하므로 課稅對象에서 除外하였고 술에 있어서 濁酒, 藥酒 및 燒酎와 담배에 있어서는 賣渡價格이 280원미만인 製造담배는 주로 一般庶民이 즐기는 것이므로 庶民生活을 保護하기 위하여 課稅對象에서 除外하거나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또한 金融·保險業에 있어서는 金融·保險業者로 열거되지 아니한 韓國銀行, 輸出入銀行, 信用保證基金등과 金錢貸付業者로서 政府의 認·許可를 받은 마을金庫, 信用協同組合, 建設共濟組合등은 教育稅의 納稅義務가 없으며 政府의 認·許可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組合員 또는 會員의 相扶相助를 目的으로 組合員 또는 會員만을 상대로 金錢貸付業을 하는 團體(例 : 社友會, 職場의 共濟會, 契등)는 教育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金融·保險業의 경우 附加價値稅 施行(1977. 7. 1)前에는 收益金額의 1%를 營業稅로 課稅하였으나 附加價値稅가 施行되면서 免稅事業에 해당되어 附加價値稅를 課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번 教育稅의 新設에 따라 收益金額의 0.5%를 教育稅로 課稅하게 된 것이다.

納稅義務者別 課稅標準, 稅率 및 申告·納付方法은 다음과 같다.

納稅義務者	課 稅 標 準	稅 率	申 告 納 付
分離課稅利子, 配當所得者 (個 人)	分離課稅利子所得金額 分離課稅配當所得金額	5%	所得支給者가 源泉徵收하여 每月分을 다음달 10일까지 納付
酒稅의 納稅義務者 (酒類製造者)	納付하여야할 酒稅額 (加算稅額 除外)	10%	酒稅申告納付時 같이 申告納付 (每月分을 다음달 20日까지)
담배製造者 (專賣廳長)	製造담배의 賣渡價格(消費者價格－小賣商手數料)	10%	專賣廳長이 每月分을 다음달 20日까지 申告納付

納稅義務者	課 稅 標 準	稅 率	申 告 納 付
金融, 保險業者	金融, 保險業의 收益金額(收入利子, 配當, 手數料, 保證料, 有價證券의 賣却益 및 償還金, 純保險料 등)	0.5%	年4回 申告納付 1－ 3月分 : 5月末日까지 4－ 6月分 : 8月末日까지 7－ 9月分 : 11月末日까지 10－12月分 : 다음해 2月末日까지

教育稅法案에 대한 提案說明

－ 다음은 1981. 10. 30. 財務部長官이 國會 財務委員會에서 行한 教育稅法案에 대한 提案說明의 全文임 －

「10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百年앞을 내다보는 國家는 教育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있듯이 教育은 「國家百年大計」로서 民主市民으로서의 人格形成과 個個人의 潛在能力의 개발을 통한 福祉社會實現에도 重要한 것이며, 教育에 더 많은 投資가 이루어져 子女들이 보다 나은 教育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한결같은 우리의 所望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數年間 教育에 대한 投資를 계속 擴大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急膨脹하는 教育財政需要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現在 國民學校 教育環境實態를 보면 學級數는 75年 98,600學級이었던 것이 81年에는 115,100學級으로 1.2培 증가된 반면 教室數는 97,000개에서 101,400개로 1.1培 증가하여 學級數 增加率의 89%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기다 工業化에 다른 인구의 都市集中이 심해져 大都市의 教育與件은 계속 惡化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政府豫算中 문교예산의 比重도 75年 14.4%에서 81年에는 18.7%로 每年 增加되었으나, 이는 증가되는 教育需要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어서 36학급이상의 過大學校가 전체의 11.6%, 學級當 70명이상의 학급만도 2,024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의 9.1%에 이르는 10,363學

級이 二部制授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國民生活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體位도 向上되었으나 體格에 맞지 않은 施設로 姿勢가 부자연하게 되고 校地確保의 困難으로 좁은 땅에 교실만을 늘리다 보니 마음껏 뛰놀 운동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教職을 기피하게 되고, 教師의 士氣도 떨어져 왔습니다. 이와같이 매우 부족한 教育環境과 子女에 대한 學父母의 教育熱은 過熱課外라는 기현상을 유발하여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이 없고 쪼들리는 사람들도 무리를 해가며 子女에게 課外를 시켰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도가 심해져 한때는 課外費로 지출되는 金額이 1조원에 이른다는 推計가 나왔던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7월 30일「課外의 全面的 廢止와 大學教育正常化」를 위한 획기적인 教育改革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후 課外가 없어지고 學校教育도 점차 正常化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學校教育의 正常化가 完全定着되기 위하여는 過密學級과 二部制授業을 해소하고 老朽된 시설과 教員의 處遇를 改善하는등 教育與件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期間中 教育費投資規模를 보면 81年度 價格으로 過密學級解消등의 教育環境改善事業費 4兆 5,600億원을 包含하여 總 11兆 2,600億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81年 18.7%인 一般豫算中의 教育費 比重을 높여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의 마지막 年度인 1986年에는 教育稅 財源을 除外하고도 19.7%로 책정하고 있으며 政府機構를 축소하고 不要不急한 豫算執行을 줄이는 한편 租稅減免範圍의 축소조정으로 인한 追加財源도 教育財源으로 活用하는 등 教育部門에 대한 投資의 優先順位를 높이도록 努力하였으나, 이렇게 하여도 1兆 4,700億원 정도의 財源이 부족하여 年平均 約 3,000億원 規模의 教育稅를 신설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教育稅法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議員 여러분!

政府는 이와같은 배경과 여건아래서 教育稅法案을 成案하게 되었고 議員여러분의 審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教育稅法案의 基本方向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要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新稅新設에 따른 稅負擔感을 緩和할 수 있도록 稅源을 所得·財產·消費등으로 분산하였고

둘째,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教育의 惠澤을 받는 受惠者가 더 負擔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應能負擔의 原則을 살려 低所得者의 追加負擔을 될수록 피하고 財產과 어느정도의 所得이 있는 사람에게 賦課하여 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을 補完함으로써 현행세제의 改編作業과 相互調和를 기하는 한편

넷째, 生産·投資등 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하고,

다섯째, 1986年까지 5年間 時限附 目的稅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1. 敎育稅는 國稅인 敎育稅와 地方稅인 地方敎育稅의 2種으로 하여, 國稅인 敎育稅는 分離課稅되는 利子·配當所得과 酒稅 및 담배에 부과하고, 地方敎育稅는 敎育改善事業의 投資需要가 집중되어 있는 6大都市에 한하여 財産稅에 부가하여 그 지역의 敎育投資財源으로 活用하도록 하였습니다.

2. 分離課稅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金額의 5%를 과세하되, 少額家計性 및 勤勞者 財産形成支援을 위한 預金의 利子에 대하여는 非課稅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자·배당등 財産所得에 대하여는 10%로 分離課稅하고 있으나, 이번 敎育稅法案에서는 5%의 敎育稅를 추가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長期的으로 財産所得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여 나간다는 方向에 따라서 비교적 中産層이상의 所得階層에 敎育費를 부담시켜 國民이 골고루 敎育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세의 所得再分配機能의 補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3. 消費行爲에 대한 課稅로서 술에 대하여는 酒稅額의 10%를 課稅하되 大衆酒는 과세대상에서 除外하도록 하고, 담배에 대하여는 消費者價格 300원 이상인 담배에 대하여만 賣渡價格의 10%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술과 담배는 消費性嗜好物品으로서 企業의 生産活動에 비교적 影響이 적기 때문에 이들을 稅源으로 選擇한 것이나, 一般庶民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주·濁酒·燒酎등의 大衆酒와 소비자가격이 300원미만인 저급담배와 海外勤勞者에게 판매하는 담배등에 대하여는 敎育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4. 財産의 경우에는 課稅對象地域을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등 6大都市로 한정하고, 稅率을 差等化하여 住宅 및 주거용토지는 財産稅額의 30%를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는 財産稅額의 50%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財産價額이 500만원이하인 家屋에 대하여는 地方敎育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大都市의 경우는 地價의 급격한 상승과 학교용지의 부족 및 인구의 계속적인 流入으로 學級의 過密化, 2部制授業, 過大學校등 敎育環境의 惡化가 促進되어온 반면 農漁村地域의 경우는 취학아동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旣存學校施設中 遊休施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지역을 6大都市로 한정하였고, 敎育은 그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지역의 住民中에서 상대적으로 擔稅能力이 있는 財産所有者에게만 地方敎育稅를 과세토록 하였으며, 地方敎育稅의 사용도 그 지역의 敎育投資財源으로만 活用토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受益者負擔原則에도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住宅의 경우 현행 재산세 稅率構造는 0.3%에서 5%까지 5

段階로서 집이 작은 사람은 적은 金額을 부담하고 집이 큰 사람은 좀더 많은 金額을 부담하는 累進稅인 부담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되는 教育稅도 財産의 價額에 따라 差等負擔함으로써 應能負擔原則에 충실한 과세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민이 어렵게 내집마련을 하고 住宅에서는 受益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住居用 財産에 대하여는 非居住用 財産보다 稅率을 낮게하는 한편 財産稅課稅標準이 되는 내무부 時價標準額을 基準으로 500만원이하의 家屋에 대하여는 地方教育稅를 면제토록 하여 80年度基準으로 家屋分財産稅 納稅義務者中 82%가 免稅惠澤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5. 教育稅法의 施行期間은 1982年 1月 1日부터 1986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에 부과되는 教育稅의 시행시기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금을 어떻게 徵收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거둬들인 세금을 옳고 有效適切하게 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政府는 歲出豫算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의 浪費도 없도록 하고 不要不急한 부분의 지출을 抑制하여 投資의 效率性을 높이도록 함은 물론 教育投資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상세히 國民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教育稅法案을 제안하게 된 배경, 여건 그리고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政府가 이 法案을 提出함에 있어서 論議가 많았던 教育稅新設의 必要性에 관하여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各界各層의 의견중에서 教育財政確保의 必要性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하나, 이를 위하여 별도의 目的稅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가 없으며 政府豫算의 節約과 既存稅制의 改編 및 정부예산중 教育費의 비중을 높여 教育財源을 確保하라는 의견이 있음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政府豫算中 國防費, 地方財政支援費, 人件費등 硬直的經費가 73%나 되기 때문에 政府의 豫算構造改編을 통한 教育財源의 추가적인 確保에는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期間中에는 教育財政의 比重을 계속 높이도록 計劃이 되어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둘째, 租稅減免의 축소, 財産課稅의 강화등 현행세제를 개선하여 증가되는 稅收는 經濟·社會開發뿐만 아니라 教育部門에도 중점적으로 配定하도록 하는 한편

셋째, 政府構造와 定員의 축소등 一般行政費의 豫算節減과 效率的運營을 기하여 한푼의 豫算浪費도 없도록 하여 節減되는 豫算을 教育部門등에 사용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次計劃期間中 教育費投資所要額 11兆 2,600億원중 9兆 7,900億원은 既存政府豫算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나머지 1兆 4,700億원은 既存 政府豫算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國民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教育財源을 確保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落後된 教育環境을 正常化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득이 教育稅를 5年時限附로 신설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教育競爭時代」라는 말도 있듯이 教育도 競爭으로서 이에 대한 投資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教育投資의 時急性을 생각할 때 財源捻出과 負擔의 方法에 관하여 硏究·檢討만 하다가 자칫하여 投資時期를 놓치게 되면 教育環境은 더욱 惡化되어 현재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장래에는 가래로 막아야 할 事態가 될 것입니다.

賦存資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人的資源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資源으로서 教育에 대한 投資를 擴大하여 教育環境을 개선하고 應能負擔의 方法에 의하여 低所得層에까지 公教育機會를 均等히 함으로써 産業人力의 質을 높이고 技術革新과 새로운 기술도입을 促進시켜 經濟成長의 뒷받침을 튼튼히 함은 물론 社會 各階層의 均衡있는 발전을 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至上課題인 國家安保의 기틀도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6大都市의 財産所有者에 대한 教育稅 課稅는 一般國民에게 負擔을 준다는 이유등으로 인하여 國會審議過程에서 削除되고 그 대신에 金融·保險業의 收益金額에 대하여 教育稅를 課稅하게 되었음.

1. 利子·配當에 대한 教育稅
   가. 意　　義
   나. 納稅義務者
   다.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라. 非 課 稅
   마. 稅　　率
   바. 源泉徵收
   사. 賦課와 徵收
   아. 還　　給
   자. 施行期間
   차. 經過措置
2. 酒稅에 대한 教育稅
   가. 納稅義務者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다. 免　　稅
라. 稅　　率
마. 申告·納付
바. 加 算 稅
사. 賦課의 徵收
아. 還　　給
자. 損金不算入
차. 施行期間
3. 담배에 대한 敎育稅
가. 納稅義務者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다. 非 課 稅
라. 課稅時期
마. 稅　　率
바. 納 稅 地
사. 申告·納付
아. 還　　給
4. 金融·保險業에 대한 敎育稅
가. 納稅義務者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다. 業種別課稅收益金額의 計算方法
라. 收益의 歸屬時期
마. 稅　　率
바. 納 稅 地
사. 課稅期間 및 申告·納付期間
아. 申告·納付
자. 加 算 稅
차. 賦課와 徵收
카. 還　　給
타. 損金算入
파. 施行期間

1. 利子·配當에 대한 敎育稅

가. 意　　義

利子나 配當所得은 不動產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其他所得과 合算하여 綜合所得으로서 課稅하므로 綜合所得金額에 따라 6%에서부터 60%까지의 累進稅率이 適用된다.

그러나 個人이 받는 利子·配當所得중 私債利子를 제외한 대부분의 利子所得과 公開法人 또는 上場法人이 少額株主가 받는 配當所得등에 대하여는 다른 綜合所得과 合算하여 綜合課稅하지 아니하고 10%의 單一稅率로 分離課稅하므로 다른 綜合所得에 비하여 稅負擔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分離課稅되는 利子나 配當所得에 대하여 5%의 敎育稅를 追加負擔하도록 한 것은 長期的으로 財產所得에 대한 課稅를 強化하여 나간다는 方向에 따른 것이며, 비교적 中產層이상의 所得階層이 敎育費를 負擔하도록 하여 一般國民이 골고루 敎育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의 補完이라는 側面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나. 納稅義務者(法 第3條第1號)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敎育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그러나 非住居者인 경우에는 國內事業場이 있거나 不動產所得이 있는 者로서 國內源泉所得중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에 한한다.

따라서 利子·配當에 대한 敎育稅의 納稅義務者는 個人에 한하며 法人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利子나 配當所得의 경우 그 源泉이나 支給받는 者에 따라서 課稅方法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法人이 金融機關으로부터 預金利子를 받는 경우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利子에 대한 法人稅를 源泉徵收당하게 되며, 이때 源泉徵收率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源泉徵收稅率을 適用하게 되는데, 法人이 받는 預金利子는 分離課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法人이 各事業年度所得에 合算하여 法人稅로서 綜合課稅하고 預金利子를 支給받을 때 源泉徵收당한 稅額은 그 法人稅에서 控除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法人이 받는 利子나 配當所得중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分離課稅源泉徵收稅率로 源泉徵收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敎育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다.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法 第6條第1項第1號)

課稅標準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分離課稅利子所得金額 또는 分離課稅配當所得金額이며 이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5條第3項에 規定하고 있다.

○ 分離課稅利子所得

所得稅法 第144條第1號 (가) 내지 (사)의 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利子가 分離課稅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私債利子는 綜合課稅하므로 敎育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1) 國內에서 支給하는 預金 및 相互信用契金의 利子와 割引額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債券·證券 및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3) 短期金融會社,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또는 綜合金融會社가 發行·引受·保證하거나 賣買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의 利子 및 割引額과 相互信用金庫가 발행한 債務證書의 利子

(4) 合同運用信託의 利益

(5) 證券投資信託의 利益

(6) 韓國產業銀行, 金融機關, 短期金融會社, 綜合金融會社, 信託會社, 證券會社, 長期信用銀行이 賣出하거나 募集을 周旋한 社債로서 少額社債所有者의 社債의 利子

※ 少額社債所有者(所得稅法施行令 第193條第5項)

總發行社債의 3%(3%에 해당하는 金額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만원)와 1億원중 적은 金額미만의 社債를 所有한 者를 말함

(7)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 地區別水產業協同組合, 業種別水產業協同組合, 漁村契가 支給하는 預金의 利子

다만, 信用協同組合등이 支給하는 利子중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경우에는 敎育稅도 非課稅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8) 다음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通貨安定證券, 產業金融債券, 農業金融債券, 中小企業金融債券, 住宅債券, 韓國電力株式會社의 社債, 農業協同組合이 發行하는 定期預託金證書, 輸出入金融債券, 원貨表示 外國換金融債券, 住宅償還社債, 開發信託收益證券, 長期信用債券,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國內에서 發行한 원貨表示社債, 貯蓄債券, 金融機關과 長期信用銀行이 商業어음의 割引 및 賣出事務處理에 관하여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定하는 規定에 의하여 割引하여 賣出하는 어음

○ 分離課稅配當所得

所得稅法 第144條第2號 (가) 내지 (마)의 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配當이 分離課稅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配當所得중 紙上配當, 公開法人 또는 上場法人의 大株主配當, 非上場法人의 配當등은 綜合課稅하므로 敎育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1) 少額株主에게 公開法人 또는 上場法人이 支給하는 配當과 商法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2)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特殊農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 地區別水產業協同組合, 業種別水產業協同組合, 農漁契 및 中小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配當 그러나 信用協同組合등의 配當중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에 의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것에 대하여는 敎育稅도 非課稅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우리社主組合員으로서 少額株主基準에 해당하는 者에게 支給하는 配當

(4)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

라. 非課稅(法 第4條第1項)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 第3條第1項에 게기하는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減免되는 때에는 그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減免되는 分에 대하여는 敎育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所得稅法에 의한 非課稅 利子所得(所得稅法 第5條)

㈎ 產業復興國債, 徵發補償證券, 電信電話債券, 地下鐵公債, 道路公社, 上水道公債의 利子와 割引額

㈏ 公益信託의 利益

㈐ 國民貯蓄組合貯蓄의 利子

㈑ 土地開發債券의 利子

(2)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非課稅 利子·配當所得

㈎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에 해당하는 利子·配當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農漁民목돈貯蓄預金, 優待家計定期積金, 奬學積金,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入住者貯蓄의 利子와 信用協同組合(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과 農村契를 포함)에 대한 預託金 또는 出資金(預託金은 500만원, 出資金은 200만원 이하)의 利子 또는 配當 및 納稅貯蓄組合預金의 利子

(나) 租稅減免規制法 第7條에 해당하는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利子·配當

(다) 外國人出資企業으로부터 받은 利益의 配當金 또는 剩餘金의 分配金으로서 租稅減免規制法 第6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것

(라) 租稅減免規制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利子

(3)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產形成支援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非課稅되는 財產形成貯蓄의 利子·配當所得(同法 第32條)

(4) 外貨導入法에 의하여 減免되는 利子·配當所得(同法 第15條, 第24條)

마. 稅率(法 第6條第1項第1號)

稅率은 5%이다. 稅額計算에 있어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防衛稅는 所得稅額의 10%(또는 20%)이지만, 敎育稅는 所得稅額이 아니고 所得金額의 5%인 點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바. 源泉徵收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敎育稅는 納稅義務者인 所得者가 敎育稅를 申告·納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者가 利子등을 支給할 때 所得稅와 함께 敎育稅도 源泉徵收하여 政府에 申告·納付한다.

일반적으로 分離課稅利子所得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所得稅·防衛稅·所得割住民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는데, 敎育稅 新設에 따라 82. 1. 1부터는 敎育稅를 追加로 源泉徵收하게 되었다.

(1) 源泉徵收義務者(法 第11條第1項)

個人에게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을 支給하는 者와 國內事業場이 있거나 不動產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게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을 支給하는 者는 敎育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따라서 分離課稅利子所得등을 法人에게 支給하거나, 綜合課稅되는 所得(例 : 私債利子, 非上場法人의 株主가 받는 配當등)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敎育稅源泉徵收義務가 없다.

(2) 源泉徵收時期(法 第11條第1項)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때에 所得稅·防衛稅등과 같이 敎育稅도 源泉徵收한다.

(3) 源泉徵收稅額(法 第11條第1項)

支給하는 所得金額의 5%를 敎育稅로 源泉徵收한다.

<事 例>

分離課稅利子所得 10만원을 個人에게 支給하는 경우에 源泉徵收할 稅額은?

<計 算 例>

㉠ 所得稅 : 100,000원(所得金額)×10% = 10,000원

㉡ 防衛稅 : 10,000원(所 得 稅)×10% = 1,000원

㉢ 住民稅 : 10,000원(所 得 稅)×7.5% = 750원

㉣ 敎育稅 : 100,000원(所得金額)× 5% = 5,000원

◎ 源泉徵收할 稅額 合計 ····· 16,750원

(4) 少額不徵收(法 第11條第2項)

所得稅法 第1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分離課稅利子所得이나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敎育稅도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源泉徵收稅額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所得稅는 물론 敎育稅도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5) 申告·納付(法 第10條第1項)

源泉徵收義務者는 徵收한 稅額을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6) 加算稅(法 第13條第1項)

源泉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申告·納付期限을 경과하여 未納付稅額을 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未納付稅額의 10%를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源泉徵收義務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市·郡組合인 경우에는 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7) 書式(令 第8條)

(가) 源泉徵收領收證 : 教育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所得稅의 源泉徵收領收證에 教育稅額을 併記하고 그 合計額을 기재하여 支給받는 者에게 交付한다.

(나) 源泉徵收稅額申告·納付書 : 教育稅源泉徵收稅額을 申告·納付하는 때에는 所得稅法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의 申告·納付書式에 의하여 이를 所得稅額과 併記하고 그 合計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8) 所得稅法의 準用(法 第11條第3項)

教育稅의 源泉徵收·納付에 관하여는 教育稅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所得稅法중 源泉徵收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따라서 利子·配當所得 支給時期의 擬制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所得稅法 第146條의2 및 第147條는 教育稅에서도 準用되며, 教育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所得支給時 源泉徵收의 免除에 관하여는 所得稅法 第176條의 規定이 準用한다.

사. 賦課와 徵收(法 第12條第1項)

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다음달 10일까지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그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未納付稅額(또는 未達納付稅額)에 그 未納付稅額의 10%를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아. 還給(法 第14條第1項)

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에 賦課되는 教育稅로서 納付한 金額중 過誤納付한 金額의 還給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자. 施行期間(附則 第1條, 第3條第1項)

分離課稅利子所得과 分離課稅配當所得에 대한 教育稅는 82. 1. 1부터 86. 12. 31까지 사이에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課稅한다. 여기에 發生基準에 의하여 課稅한다는 점에 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敎育稅가 施行되기 이전인 81. 12. 31이전에 發生한 利子를 82. 1. 1이후에 支給하더라도 敎育稅는 課稅되지 아니한다.

<事　例>

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預金利子를 支給할 때 敎育稅源泉徵收稅額은?
① 利子發生期間 : 81. 10. 1.~82. 3. 31.
② 利子支給時期 : 82. 4. 1.
③ 利子所得金額 : 60萬원

<計 算 例>

① 82. 1. 1이후 發生한 利子 : 600,000원 $\times \frac{3월}{6월}$ = 300,000원

② 敎育稅源泉徵收稅額 : 300,000원 × 5% = 15,000원

차. 經過措置(附則 第4條)

定期積金·相互賦金 및 住宅賦金에 대하여는 82. 1. 1이후 最初로 加入하는 分부터 敎育稅를 課稅한다. 따라서 81. 12. 31이전에 위의 積金등에 加入한 경우에는 82. 1. 1이후 發生된 利子라 하더라도 敎育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이 經過措置는 庶民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2. 酒稅에 대한 敎育稅

가. 納稅義務者(法 第3條第2號)

酒稅法의 規定에 의한 酒稅의 納稅義務者는 敎育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그러나 濁酒, 藥酒 및 燒酎는 大衆酒로서 주로 一般庶民이 즐기는 것이므로 庶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敎育稅課稅對象에서 제외하였다.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法 第6條第1項第3號)

課稅標準은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酒稅額(加算稅額 제외)이다. 그리고 敎育稅의 課稅標準인 酒稅의 納付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敎育稅가 賦課되는 酒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 酒類에 대하여는 그 製造한 酒類의 酒稅 算出稅額에서 그 原料에 대하여 納付한 酒稅額을 控除한 것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다. 免　　稅

(1) 敎育稅法에 의한 免稅(法 第5條)

所管稅務署長으로부터 酒稅法施行令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酒類 製造用으로 酒精에 대한 導入·出庫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 酒精에 대한 敎育稅를 免除한다. 그러나 免稅받은 酒精을 당해用途에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入庫者 또는 引入者를 納稅義務者로 보아 즉시 敎育稅를 徵收한다.

(2) 酒稅法에 의한 免稅(同法 第28條·第28條의2)

敎育稅의 課稅標準은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酒稅額이므로, 輸出用 酒類에 대하여 酒稅를 免稅하는 경우와 같이 酒稅法에 의하여 酒稅가 免稅되는 때에는 酒稅의 納付稅額이 없으므로 敎育稅도 自動的으로 免稅된다. 그리고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出庫時 酒稅를 免除받은 酒類를 당해用途에 使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免稅받은 酒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敎育稅도 徵收하여야 한다.

라. 稅率(法 第6條第1項第2號)

稅率은 酒稅額의 10%이다.

마. 申告·納付(法 第10條第2項)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를 申告·納付하는 때에는 酒稅의 申告·納付書式에 의하여 酒稅額과 敎育稅額을 併記하고 그 合計額을 記載하여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바. 加算稅(法 第13條第2項)

酒稅에 대한 敎育稅의 納稅義務者가 申告·納付期限내에 敎育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그 未納付稅額의 10%를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徵收한다.

사. 賦課와 徵收(法 第12條第2項)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酒稅의 賦課·徵收의 例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아. 還給(法 第14條第3項)

酒稅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納付한 金額중 過誤納付한 金額의 還給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酒稅法 第27條의2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用 酒類에 대한 酒稅額을 還給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敎育稅도 還給한다.

자. 損金不算入(法 第15條)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차. 施行期間(附則 第1條·第3條第2項)

酒稅類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82. 1. 1부터 86. 12. 31까지 搬出·販賣 또는 輸入申告하는 것에 대하여 課稅한다.

3. 담배에 대한 敎育稅

가. 納稅義務者(法 第3條第3號)

製造담배의 製造者 및 外國產製造담배를 輸入하는 者는 敎育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製造담배라 함은 잎담배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 것을 말하며, 現行法上 製造담배는 專賣廳長만이 製造하도록 되어 있고 外國產 製造담배는 專賣廳長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輸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法 第6條第1項第3號)

課稅標準은 製造담배의 賣渡價格이다. 賣渡價格이라 함은 專賣廳長이 小賣人에게 賣渡하는 價格을 말한다.

다. 非課稅(法 第4條第2項)

다음에 該當하는 製造담배에 대하여는 敎育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輸出하거나 輸出許可를 받은 者에게 賣渡하는 製造담배

(2) 特殊한 用途의 製造담배(國軍用, 外航船員用, 國際航路의 乘客用, 海外就業者用등으로 販賣하는 것)

(3) 1갑 또는 1통의 賣渡價格이 280원 미만인 製造담배

이때 1갑 또는 1통은 20개비들이(파이프 담배는 50g통)包裝을 基準으로 하며, 1갑 또는 1통에 包裝된 것이 20개비(파이프 담배는 50g)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다.

$$\boxed{\begin{array}{l}\text{1갑 또는 1통당}\\ \text{賣渡 價格}\end{array}} \times \frac{\text{20개비(파이프 담배는 50g)}}{\begin{array}{c}\text{1갑 또는 1통에 包裝된 개비수}\\ \text{(파이프 담배는 g수)}\end{array}}$$

(4) 小賣人의 販賣用담배로서 變質등으로 인하여 交換하여 주는 製造담배

(5) 專賣廳長이 小賣人의 廢業등의 事由로 還買한 담배를 다시 販賣하는 것

(6) 外國人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政府가 輸入한 外國産 製造담배를 專賣廳長이 輸入담배 販賣人으로 指定한 者에게 賣渡하거나 專賣廳長이 직접 外國人에게 販賣하는 것

라. 課稅時期(法 第8條第1項)

製造담배에 대한 敎育稅는 專賣廳長 또는 製造담배의 輸入業者가 製造담배를 賣渡하거나 販賣하는 당시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다.

마. 稅率(法 第6條第1項第3號)

稅率은 製造담배 賣渡價格의 10%이다.

바. 納稅地(法 第7條第1項)

製造담배의 경우는 專賣廳所在地로 하고 輸入담배의 경우는 輸入하는 者의 事業場 所在地 또는 住所地로 한다.

사. 申告·納付(法 第10條第3項)

每月 賣渡하거나 販賣한 製造담배의 種類·數量·價格·稅額등을 記載한 申告書를 다음달 20日까지 申告함과 동시에 稅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또 專賣廳長이 製造담배에 賦課되는 敎育稅를 納付하는 경우에는 企業豫算會計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하므로, 歲出豫算에 관계없이 每月實績에 의하여 敎育稅를 納付한다. 즉, 專賣廳 歲出豫算에 담배分敎育稅로 500億원이 計上되어 있으나, 實際로 販賣한 담배에 대한 敎育稅額이 600億원이 되는 경우에도 歲出豫算을 超過하는 100億원을 敎育稅로 納付할 수 있는 것이다.

아. 還給(法 第14條第1項·第2項)

製造담배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納付한 金額중 過誤納付한 金額의 還給에 관하여는 國稅基

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그리고 專賣廳長은 申告·納付한 金額중 過誤納付한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追加告知할 稅額에서, 還給을 받지 아니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納付할 稅額에서 調整하여 納付할 수 있다.

4. 金融·保險業에 대한 敎育稅

가. 納稅義務者(法 第3條第4號)

國內에서 金融·保險業을 營爲하는 者중 다음에 게기하는 者는 敎育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1)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外國銀行의 國內支店을 포함하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機關은 제외함)

(2) 韓國產業銀行과 成業公社,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 韓國住宅銀行, 韓國外換銀行, 長期信用銀行

(3) 綜合金融會社

(4) 相互信用金庫

(5) 短期金融會社

(6)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및 韓國保險公社

다만, 外國保險事業者의 경우는 國內에서 內·外國人을 對象으로 保險事業을 하는 者만 敎育稅의 納稅義務가 있으며, 國內에서 外國人만을 對象으로 保險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敎育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7)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는 信用事業의 收益에 한하여 敎育稅의 納稅義務가 있다.

(8) 證券投資信託會社

(9) 信託會社

(10) 典當鋪 營業者

(11) 換錢商

(12) 金錢貸付業者

教育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金錢貸付業者라 함은 政府의 認·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金錢을 貸付하고 利子를 받거나 有價證券을 割引·貸與하고 割引料, 貸與料를 받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와 金錢의 貸付 또는 有價證券의 割引·貸與를 代理·仲介·周旋하고 手數料를 받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 경우의 代表的인 例로 私債業者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金錢貸付業者라 하더라도 政府의 認·許可를 받아 하는 경우, 例를 들면 政府의 許可를 받은 마을金庫, 信用協同組合, 建設共濟組合등은 教育稅의 納付義務가 없다.

한편, 政府의 認·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組合員 또는 會員의 相扶相助를 目的으로 組織한 團體로서 組合員 또는 會員만을 相對로 金錢貸付業을 하는 團體는 제외한다. 따라서 政府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마을金庫, 信用協同組合, 社友會, 職場의 共濟會, 契등의 경우는 教育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金融·保險業者중 教育稅의 納稅義務者는 위에 게기한 者에 한하므로, 여기에 게기되지 아니한 者 즉, 韓國銀行, 輸出入銀行, 信用保證基金, 農·水·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는 제외), 證券會社, 施設貸與會社등은 教育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나.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法 第6條第1項第4號)

課稅標準은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 收益金額에는 營業收入과 營業外收益 이외에 特別利益중 固定資産處分益·投資有價證券處分益이 포함되고 其他 特別利益에 대하여는 教育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1) 收益金額의 範圍

收益金額은 金融·保險業者가 收入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가) 利子·割引料

(나) 手數料

(다) 配當金

(라) 保險料

(마) 信託報酬

(바) 委託者報酬 및 利益分配金

(사) 有價證券의 評價益·貸與料·賣却益 및 償還益

다만, 有價證券의 評價益중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投資有價證券의 評價差益은 課稅收益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外換賣買益(評價益은 제외)

일반적으로 外貨轉貸의 경우, 評價益과 評價損이 동시에 發生되므로 評價益만 課稅하면 名目收益에 대하여 課稅하는 결과가 되므로 外換評價益은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것이다.

(자) 收入賃貸料

收入賃貸料중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不動產의 賃貸料는 課稅收益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차) 保險料(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金額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카) 固定資產處分利益

(타) 기타 營業收益과 營業外收益

(2) 收益金額에서 제외되는 것

(가) 國外의 事業場에서 發生한 收益金額

國內銀行의 外國支店(例 : 韓國外換銀行 뉴욕支店)에서 發生하는 收益金額을 말한다.

(나) 內部利益

內部利益이라 함은 本·支店間 獨立採算制를 實施함에 따라 企業內部에 있어서 會計單位 相互間의 內部去來에서 發生하는 收益金額을 말한다.

(다) 國庫補助金, 保險差益, 債務免除益, 償却債權推尋益, 資產受贈益,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益(資產再評價法에 의하지 아니한 任意評價益은 課稅收益에 포함한다)

(라)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價額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中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分에 대하여도 敎育稅를 課稅한다면 二重課稅가 되기 때문에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것이다.

(마) 國外의 保險事業者가 引受한 保險으로서 再保險契約에 의하여 國內에 收入된 保險料 즉, 外國의 原受保險會社가 우리나라의 甲保險會社에 再保險을 하고, 甲이 다시 國內의 乙保險會社에 再再保險을 한 경우에 甲·乙保險會社가 받는 再保險料 및 再再保險料는 모두 課稅收益에서 제외된다.

(바) 再保險事業者로부터 받은 出再保險手數料, 出再利益手數料, 罹災調査費

이들은 일종의 支出經費의 還入과 類似한 것이므로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 業種別 課稅收益金額의 計算方法

(1) 銀行, 短期金融會社, 信託會社, 證券投資信託會社,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相互信用金庫의 경우에는 "나"의 方法에 의하면 된다.

(2) 保險會社, 韓國保險公社의 保險料는 다음 (가)의 金額에서 (나)의 金額을 控除하여 計算한다.

(가) 保險料, 受再保險料, 前期末 現在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 및 再保險事業者로부터 받은 解約還給金(中途解約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金額중 未經過保險料에 해당하는 金額)의 合計額

(나) 當期末 現在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解約還給金(中途解約으로 인하여 支給한 金額중 未經過保險料에 해당하는 金額)·出再保險料(國外의 保險事業者가 引受한 保險으로서 再保險契約에 의하여 國內에 收入된 保險料에 관계되는 出再保險料는 제외)의 合計額

責任準備金등은 앞으로 保險會社가 支給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負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保險料收入에서 控除하는 것이며, 이 경우 控除되는 責任準備金등은 當期末 現在額에서 前期末 現在額을 差減한 金額 즉, 當期分에 해당하는 金額을 말한다. 中途解約還給金중 未經過保險料에 해당하는 金額은 일종의 賣出額의 還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것이다.

(3) 綜合金融會社의 收益金額에는 施設貸與業을 營爲함으로써 발생한 施設貸與料 및 貸與資産賣却益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施設貸與業(리스會社)에 대하여 敎育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는 것과 衡平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4) 典當鋪營業者의 收益金額은 收入利子·收入割引料 및 流質物處分益의 合計額으로 한다. 따라서 典當鋪營業者의 경우에는 이 이외의 收入(例 : 收入配當金)에 대하여는 敎育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典當鋪 營業의 收益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 換錢商의 收益金額은 外國換賣買益 및 收入手數料의 合計額으로 한다. 其他의 收益金額에 대하여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이유는 典當鋪의 경우와 같다.

(6) 金錢貸付業者의 收益金額은 收入利子·收入割引料·收入手數料 및 收入貸與料의 合計額으로 한다. 기타의 收益金額에 대하여 課稅收益에서 제외한 이유는 典當鋪의 경우와 같다.

라. 收益의 歸屬時期(法 第8條第2項)

收益金額의 歸屬時期에 관하여는 法人稅法 第1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즉, 利子·保險料·保證料는 그 利子등이 實際로 收入된 課稅期間의 收益으로 하되 先受利子등은 제외한다. 다만, 未收利子등을 收入으로 確定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收益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現金主義에 의하되, 未收利子와 先受利子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收益의 實現時期는 어느 한 基準을 계속적으로 適用하여야 하며, 未收利子를 權利確定主義 基準에 의하던 企業이 이를 變更하여 現金主義基準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 稅率(法 第6條第1項第4號)

稅率은 0.5%로서 收益金額의 0.5%가 稅額이 되며 收益金額은 各 課稅期間分 收益金額의 總額에 의한다.

바. 納稅地(法 第7條第2項)

納稅地는 事業場住所地로 한다. 따라서 종전의 營業稅와 같이 各 事業場別로 納稅義務를 지므로, 여러개의 支店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本店과 各 支店別로 각각 敎育稅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한편 敎育稅法 第7條第2項 但書에서 「金融·保險業者에게 2이상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住所地로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어 附加價値稅와 같이 總括納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金融·保險業의 경우 대부분 各 事業場마다 會計處理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施行令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規定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行法上으로는 各 事業場別로 敎育稅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사. 課稅期間 및 申告·納付期間(法 第9條)

課稅期間은 3個月 單位로 되어 있어 年4回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期 別	課 稅 期 間	申告·納付 期間
第 1 期	1. 1~ 3. 31	5. 31까지
第 2 期	4. 1~ 6. 30	8. 31 〃
第 3 期	7. 1~ 9. 30	11. 30 〃
第 4 期	10. 1~12. 31	다음해 2月 末日까지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의 최초의 課稅期間은 事業開始日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하며,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로부터 廢業日까지로 한다.

아. 申告·納付(法 第10條第4項)

金融·保險業者는 各 課稅期間의 課稅標準과 稅額등을 記載한 課稅標準申告書를 各 課稅期間終了후 2月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함과 동시에 稅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課稅標準申告書에는 다음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合計殘額試算表
- 計定科目別 課稅除外 收入金額 및 非課稅收益金額 明細表

자. 加算稅(法 第13條第2項)

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申告·納付期限내에 敎育稅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때에는 그 未納付稅額의 10%를 加算稅로 加算하여 徵收한다.

차. 賦課와 徵收(法 第12條第3項·第4項)

敎育稅는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稅額의 確定에 있어 일률적으로 政府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納稅義務者가 申告·納付함으로써 稅額이 確定되며, 納稅義務者가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政府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며 申告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을 경우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또한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을 것이 발견된 때에는 更正 또는 再更正하며 決定·更正 또는 再更正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納付할 稅額을 즉시 徵收하여야 한다.

카. 還給(法 第14條第1項)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納付한 金額중 過誤納付한 金額의 還給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타. 損金算入(法 第15條)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규정에 의한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 이 점은 종전의 營業稅의 경우와 같다.

파. 施行期間(附則 第1條·第3條第4項)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82. 1. 1부터 86. 12. 31까지 各 課稅期間의 收益金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國稅基本法

〔要　　約〕

擔保目的으로 假登記된 一定한 財産을 國稅滯納을 原因으로 強制徵收를 위하여 押留한 경우에 그 後 假登記에 基하여서 本登記가 行하여지더라도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國稅가 優先하도록 하였고, 審査請求등의 提出節次를 簡素化하였으며, 國稅還給金의 利率을 現實化하여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還給金取扱銀行의 數를 擴大하여 還給金支給의 圓滑을 기했으며, 納稅指導交付金制度의 新設에 따라 支給節次등을 定하고, 其他 他法의 改正에 따라 關聯된 現行制度를 改善하였다.

가. 送達遲延으로 納付期限의 延長 特例新設
나. 時效의 停止追加
다. 國稅의 優先
　○ 假登記制度를 制限한 理由
　○ 擔保目的으로 된 假登記와 國稅
　○ 施行日
라. 國稅還給金의 利率引上
마. 國稅還給金등의 還給窓口의 增設
바. 韓國銀行등의 未支給資金 整理期間調整
사. 國稅의 審査·審判請求節次의 簡素化
　○ 請求節次의 改善
　○ 國稅 審判請求時 添附書類의 簡素化
아. 國稅行政에 대한 協助(納稅指導交付金制度 新設)
　○ 目　　的
　○ 交付金의 申請
　○ 交付金의 支給

1. 送達遲延으로 因한 納付期限의 延長 特例新設(法 第7條)

國稅徵收法 第14條第1項의 事由로 因한 納期前徵收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事實上 納期를 7日까지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例外規定을 新設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納稅告知書, 納付通知書, 督促狀 또는 納付催告書를 送達한 경우 到達한 날에 (○ 納付期限이 經過 / ○ 7日以內에 納付期限到來) 한 때에는 到達한 날로부터 7日이 經過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改正前과 같음 但 : 納期前徵收의 경우에는 到達한 날에 (○ 納付期限이 經過→到達한 날 / ○ 到達後 納付期限到來→到來하는 날) 을 納付期限으로 하여 送達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로 할 수 있도록 함.

2. 時效의 停止事由追加(法 第28條第3項)

分納期間中에도 國稅徵收權의 時效가 停止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時效의 停止事由 ○ 稅法에 의한 徵收猶豫 期間, 年賦延納期間	– 時效의 停止事由 改正前과 같음 分納期間을 追加

3. 國稅의 優先(法 第35條第2項)

- 債權擔保目的의 假登記는 國稅의 優先關係에 있어 抵當權등과 같이 取扱하였다.

가. 假登記制度를 制限한 理由

(1) 假登記 擔保制度

① 債務者 : 債權者로부터 金錢을 借入

② 債權者는 債務者의 不動產에 賣買豫約에 의한 所得權移轉, 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設定

③ 債務者가 辨濟期日까지 債務不履行時 債權者는 假登記에 基하여 本登記를 함에 의하여 그 不動產의 所有權을 取得하여 자기의 債權을 滿足시키는 것이다.

- 假登記와 抵當權등의 比較

	抵 當 權	假 登 記
登錄稅	債權金額의 0.2%	件當 2,000원
債務不履行時 辨濟方法	任意競賣-代金配分 ○ 節次 繁雜 ○ 費用, 時間所要 ○ 目的物을 時價 以下로 處分	本登記를 함에 의하여 所有權 移轉받음

(2) 制限理由

○ 抵當權, 質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경우는 擔保權 設定日로부터 1年後에 發生한 國稅에 대하여만 擔保物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이 優先하도록 되어 있으나

○ 擔保目的으로 假登記된 財產을 國稅滯納을 原因으로 하여 強制徵收를 위하여 押留한 경우에도 그 後 假登記에 基하여서 本登記를 하게 되면 假登記의 順位保全效力으로 인하여 押留의 效力을 喪失하게 되며 假登記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은 假登記日字가 押留日字보다 빠르면 언제나 國稅에 優先하도록 되어 있음.

○ 假登記制度는 本來 債權擔保를 위한 制度는 아니었으나, 擔保物權의 경우 換價制度가 複雜하고 假登記登錄稅의 低率등의 理由로 債權擔保를 爲한 制度로 假登記가 많이 利用되고 있음에도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假登記를 擔保物權보다 더 保護

하는 不衡平이 發生하고 또는 最近에는 假登記制度를 惡用하는 事例(廢業, 滯納등이 豫想되는 경우 미리 假登記를 함에 의하여 租稅回避)도 생기고 있음.

○ 따라서 實質的으로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利用되는 假登記에 對하여는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擔保物權과 같이 取扱하도록 한 것임.

(3) 改正內容(新設)

納稅義務者를 登記義務者로 하고 債務不履行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代物辨濟의 豫約에 基하여 權利移轉의 請求權의 保全을 爲한 假登記(假登記 包含) 其他 이와 類似한 擔保의 目的으로 된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産을 押留하는 경우에 當該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所有權 移轉)가 押留後에 行하여진 때에는 그 假登記의 權利者는 그 財産에 대한 滯納處分에 對하여 그 假登記에 基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다만, 國稅 또는 加算金(그 財産에 對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除外)의 納付期限으로부터 1年前에 假登記된 財産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이니하다.(法 第35條第2項)

나. 擔保目的으로 된 假登記와 國稅

(1) 優先權의 內容

— 債權擔保目的의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産을 押留한 경우

○ 假登記日로부터 1年以內에 納付期限이 到來한 國稅와 그 財産에 對하여 賦課된 國稅(相續·贈與稅·再評價稅)→押留後 本登記가 되어도 假登記權利者는 假登記에 基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음(卽 假登記에 의한 順位保全效力을 主張할 수 없음)

○ 假登記日로부터 1年後에 發生한 國稅→押留後 本登記가 되면 押留의 效力은 失效됨.

(2) 通　　知

稅務署長은 假登記財産을 押留하거나 公賣하는 때에는 그 뜻을 假登記權利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3) 施行日

82. 1. 1. 以後 最初로 假登記한 分부터 適用한다.

4.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引上(令 第30條第1項)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이 加算金·加算稅나 金融機關의 利率에 비하여 낮으므로 現實에 맞게 引上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00원에 對하여 1日 2錢 (年 7.3%)	100원에 對하여 1日 3錢 (年 11.0%)

5. 國稅還給金等의 還給窓口의 增設(令 第33條第2項)

國稅還給金의 支給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과 一部 地域의 國庫代理店에서만 取扱하던 것을 韓國銀行과 모든 國庫代理店이 이를 取扱할 수 있도록 擴大하였다.

6. 韓國銀行등의 未支給資金整理期間調整(令 第39條)

豫算會計法施行令의 改正으로 國稅還給金의 未支給資金의 整理期限을 1月 31日에서 1月 15日로 短縮하였다.

7. 國稅의 審査·審判請求節次의 簡素化(令 第62條·第69條·第70條)

가. 請求節次의 改善(令 第62條·第69條)

審査·審判請求書의 提出機關은 "當該處分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稅務署長"을 거쳐야만 하던 것을 審査請求書는 當該稅務署長外에 다른 稅務署長, 地方國稅廳長, 國稅廳長에게 提出된 때, 審判請求書는 當該稅務署長 이외의 稅務官署 또는 國稅審判所長에게 提出된 때에도 審査·審判請求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다른 場所에 提出된 때에는 이를 延滯없이 管轄稅務署長에게 送付하고 그 뜻을 請求人에게 通知하도록 하여 請求人의 便宜를 圖謀하였다.

나. 國稅審判請求時 添附書類의 簡素化(令 第70條)

國稅廳長이 國稅審判請求에 대한 國稅廳長의 意見書를 送付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時 請求人이 提出한 모든 證憑書類의 一切와 決定書, 處分廳의 意見書 및 處分의 理由로 된 事實을 證明할 書類를 提出하도록 하여 請求人이 審査請求時 提出한 證憑書類等을 審判請求時 다시 提出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請求書類의 提出을 簡素化하였다.

8. 國稅行政에 대한 協助(法 第84條第3項, 令 第65條의 2)

가. 國民의 納稅意識水準向上과 申告納付制度의 內實化로 所得稅의 申告納付制度의 基盤構築等을 위하여 長期的으로 全國民의 納稅指導가 要望됨에 따라 民間團體中 納稅指導를 擔當하는 團體에 對하여 그 指導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交付金으로 支給함으로써 納稅指導의 體系化와 積極性을 賦與하고자 하여 納稅指導交付金制度를 新設하였다.

나. 納稅指導交付金을 支給받고자 하는 團體는 該當年度의 1月 31日까지 交付金支給申請書를 國稅廳長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

다. 國稅廳長은 事業의 適正性등을 檢討하여 申請한 年度의 2月末日까지 支給與否를 決定(必要時 條件을 붙일 수 있음)하여 通知하도록 하였다.
또한 支給받는 交付金을 他用途에 使用하거나 支給條件에 違反時 支給決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旣支給된 交付金의 返還을 命하도록 하였다.

라. 交付金을 支給받은 團體는 交付金을 支給받은 다음 年度의 1月 20日까지 納稅指導事業實績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하였다.

防 衛 稅 法

〔要　　約〕

收用의 경우에도 防衛稅를 課稅하여 協議買收時와 衡平을 맞추고 酒稅分 防衛稅의 計算時 酒稅의 경우와 같이 原料分旣納付稅額은 酒稅分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는 것임을 明白히 하며, 分納制度를 擴大改善하는 한편 他稅法의 改正에 따라 關係規定을 整備하였다.

가. 納稅義務者
나. 防衛稅非課稅
　○ 農家副業所得에 대하여 防衛稅非課稅
　○ 土地收用으로 인한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防衛稅 課稅
다. 課稅標準의 計算
　○ 勤勞者證券貯蓄控除稅額
　○ 法人稅外國納付控除稅額
　○ 公共法人의 法人稅分防衛稅額의 計算
　○ 酒稅分防衛稅
라. 防衛稅의 申告
마. 分納制度의 擴大
바. 非課稅利子所得에 대한 防衛稅源泉徵收

1. 納稅義務者(法 第2條)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防衛稅納稅義務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個人 또는 法人에 限하던 것을 所得稅法 第134條第3號 또는 法人稅法 第55條第1項第3號의 所得에 該當되는 不動產所得이 있는 者까지도 防衛稅 納稅義務를 지도록 하였다.

2. 防衛稅 非課稅

가. 農家副業所得에 대하여 防衛稅非課稅(法 第3條第3項)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農家副業所得에 대하여도 防衛稅가 非課稅되도록 新設하였다.

非課稅對象農家副業所得(所得稅法 第5條)이란 農漁民이 副業으로 영위하는 畜産·養魚·藁工品 其他의 所得을 말한다. 다만, 副業的인 所得(別表 3에 게기하는 農家副業的인 畜産에서 얻는 所得을 除外한다)의 合計額이 年 186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例外로 하였다.

나. 土地收用으로 인한 土地等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防衛稅課稅(法 第3條第3項)

改 正 前	改 正
○ 收用으로 인한 讓渡差益→讓渡所得稅·防衛稅非課稅 ○ 國家에 協議讓渡로 인한 讓渡差益→讓渡所得稅非課稅·防衛稅課稅	○ 收用으로 인한 讓渡差益→讓渡所得稅非課稅·防衛稅는 課稅 ○ 國家에 協議讓渡로 인한 讓渡差益→讓渡所得稅非課稅·防衛稅課稅

3. 課稅標準의 計算

가. 勤勞者證券貯蓄控除稅額은 所得稅分防衛稅 課稅對象에서 除外(法 第4條第1項)

改 正 前	改 正
勤勞者證券貯蓄控除稅額은 減免稅額으로써 所得稅分 防衛稅割增課稅	勤勞者證券貯蓄控除稅額도 所得稅法의 稅額控除와 같이 防衛稅課稅對象에서 除外

나. 法人稅外國納付控除稅額의 割增課稅 排除(法 第4條第1項)

改 正 前	改 正
外國納付控除稅額은 減免稅額으로서 法人稅分防衛稅割增課稅	外國納付控除稅額은 減免稅額에서 除外하여 法人稅分防衛稅를 割增課稅 않도록 함(一般課稅)

다. 公共法人의 法人稅分防衛稅額의 計算(法 第4條第3項)

(1) 法人稅課稅分(最低限 稅率 5% 課稅分)

○ 防衛稅 一般課稅(防衛稅率 20, 25%)

(2) 法人稅減免分

○ 非營利法人稅率과 最低限稅率과의 差額分을 法人稅減免分으로 보아 防衛稅를 割增課稅(防衛稅率 30, 37.5%)

○ 法人稅減免稅額의 計算

法人稅課稅標準×(非營利法人稅率－5%)

○ 減免稅額에 대하여는 防衛稅割增課稅

〈事 例〉

公共法人인 韓國銀行의 82事業年度 各事業年度所得이 10億 5千萬원인 경우 法人稅額과 防衛稅額은?

○ 法人稅 : 5,250萬원(105,000萬원×5%=5,250萬원)

○ 防衛稅 : 9,843.75萬원(①+②)

① 法人稅課稅分에 대한 防衛稅

5,250萬원×25%(防衛稅率)=1,312.5萬원

② 法人稅減免分에 대한 防衛稅

i) 105,000萬원×(非營利法人稅率－5%)=28,000－5,250=22,750萬원

(法人稅減免稅額)

ii) 22,750萬원×37.5%(防衛稅率)=8,531.25萬원(減免分防衛稅額)

라. 酒稅分防衛稅

(1) 高級酒 原料用 酒精에 대한 防衛稅率 調整(法 第4條第1項第6號)

酒稅의 稅率이 100%以上인 酒類의 原料用으로 使用하는 酒精에 대한 防衛稅率을 10%에서 30%로 調整하였다.

(2) 原料用 酒類에 대하여 納付한 防衛稅額의 控除(令 第2條第6項)

이미 防衛稅가 課稅된 酒類(例 : 酒精)를 原料로 하여 다른 酒類(例 : 燒酎)를 製造한 경우 原料用 酒類에 대하여 納付한 防衛稅額은 그 酒類(燒酎)에 대한 稅額에서 控除되는 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4. 防衛稅의 申告(法 第5條第1項)

政府備蓄用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 關稅率表 第2709號의 物品(原油)에 대하여는 備蓄場所에서 搬出하는 때에 防衛稅를 申告納付할 수 있도록 特例規定을 新設하였다.

5. 分納制度의 擴大(法 第7條의 2)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付稅額이 1,000萬원 以上인 경우에만 防衛稅의 分納도 可能하던 것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全額 또는 一部 減免되어 本稅의 分納稅額이 1,000萬원 以下인 경우에도 防衛稅의 納付稅額이 1,000萬원 超過時에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分納例에 따라 分納할 수 있도록 改善하였다.

6. 非課稅利子所得에 대한 防衛稅 源泉徵收(法 第8條)

分離課稅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稅率이 5%에서 10%로 引上調整된 것과 衡平을 維持하기 위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利子所得에 대한 防衛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그 支給金額의 5%를 防衛稅의 課稅標準으로 하던 것을 支給金額의 10%를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하였다.

附加價値稅法施行令

〔要　　約〕

輸入財貨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免除範圍와 零稅率등에 대한 早期還給期限을 調整하고, 韓國電氣通信公社와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등을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하는 등, 他法令의 改正에 關聯된 一部 施行事項을 改正하고, 其他 現行制度의 運營上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가. 輸入財貨에 대한 免稅範圍調整

○ 身體障碍者用品으로서 특수하게 製作된 輸入物品에 대해 輸入時 附加價値稅를 免除함.

○ 韓國石油開發公社가 導入하는 政府의 備蓄用 原油에 대해 輸入時 附加價値稅를 免除함.

나. 早期還給期限調整

○ 零稅率등 早期還給期間에 대한 還給稅額을 申告期限 經過後 20日以內에 事業者에게 還給하도록 함.

다. 政府事業代行團體 範圍調整

○ 韓國電氣通信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通信公社를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함.

○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支援法에 의하여 設立된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를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함.

○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함.

라. 記帳書式의 簡素化

○ 記帳을 위한 帳簿의 書式을 國稅廳長이 定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1. 輸入財貨에 대한 免稅範圍調整

輸入하는 財貨中 重要한 用途에 使用되는 一部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輸入時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施行令에서 個別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바 다음 財貨에 대하여도 輸入時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追加로 施行令에서 規定하였다.

가. 身體障碍者 用品으로서 특수하게 製作되어 輸入하는 物品(法 第12條第2項第14號, 令 第46條第17의 2號)

농아·肢體不自由등 身體障碍者用으로 특수하게 製作된 物品으로서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것을 前提로, 輸入時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이며, 身體障碍者의 生活用具에 대한 稅負擔輕減을 圖謀하기 위한 措置이다.

나. 韓國石油開發公社가 輸入하는 政府備蓄用 原油(法 第12條第2項第14號, 令 第46條第19號)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石油開發公社가 政府의 備蓄用 原油(石油는 關稅法關稅率表中 第2709號의 物品으로, 實行稅率에 該當하는 暫定稅率이 無稅임)를 輸入하는 때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韓國石油開發公社 以外의 商社가 備蓄用 原油를 輸入하는 경우라든가. 韓國石油開發公社가 輸入하는 原油라 하더라도 政府備蓄用이 아닌 原油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가 免除되지 않는 것이다. 政府備蓄用原油에 대한 證明은 動力資源部長官의 輸入推薦書에 의하여 確認할 수 있다.

2. 零稅率등에 대한 早期還給期限調整(法 第24條第2項·第73條第3項·第72條第1項)

從前에는 輸出 및 投資時의 還給稅額은 每月, 每 2月 또는 每 3月을 早期還給期間으로 하여 翌月 25日內에 早期還給申告하고 申告期限으로부터 10日內 還給하도록 하였으나, 10日의 早期還給期限은 너무 촉박하여 不當還給등의 事例가 있을 뿐 아니라 豫算會計法施行令의 改正으로 每年度 出納整理期限이 翌年 1月 20日에서 當該年度 12月末로 앞당겨짐에 따라 早期還給期限이 年度初에 있게 될 경우에는 還給에 必要한 國庫資金關係上 還給期限을 延長 調整할 必要가 있었다. 따라서 改正稅法에서는 早期還給期限을 早期還給申告期限 經過後 20日內로 規定하였다.

3. 政府業務代行團體의 範圍調整(法 第12條第1項第17號, 令 第38條)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政府業務代行團體에 다음의 團體를 追加 規定하였다.

가. 韓國電氣通信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通信公社

新設된 韓國電氣通信公社는 遞信部에서 관장하던 公衆電氣通信事業(電話事業)을 專擔하게 되는 바, 同公社가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됨에 따라, 電話使用料에 대한 附加價値稅가 앞으로도 계속 免除되는 것이다.

나.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에 의하여 設立된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

서울올림픽大會를 圓滑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支援法이 새로 마련되고 同支援法에서 各種稅金에 대한 減免規定을 둠에 따라 그 細部事項으로서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가 主催하는 各種 運動競技의 入場料나 其他 同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등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이다.

다. 農地改良組合聯合會

이미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되어 있는 農地改良組合과 同一한 事業을 營爲하고 있는 農地改良組合聯合會도 政府業務代行團體로 規定하여 附加價値稅課稅上 取扱을 一致시켰다.

4. 記帳書式의 簡素化(法 第31條, 令 第79條第4項)

納稅者의 不便要因을 줄이는 方案의 一環으로 附加價値稅法上의 帳簿와 所得稅法上의 簡易帳簿를 統合하여 하나의 帳簿로 使用할 수 있도록 帳簿書式을 國稅廳長이 定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國稅徵收法施行令

〔要　約〕

會社整理法의 整理節次에 따라 當該 會社의 納稅義務가 免除된 경우를 缺損處分事由에 追加하는 한편 現行 規定을 改善하였다.

가.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事由를 追加
나. 給與金의 押留限度額 調整
다. 缺損處分事由를 新設
라. 國稅滯納整理委員會 業務範圍 調整

1.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事由 追加(令 第2條)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에 따라 徵收猶豫 또는 押留된 財産의 換價의 猶豫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徵收猶豫가 아니므로 徵收猶豫證明書를 發給받을 수 없었던 것을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를 받는 경우에도 徵收猶豫證明書를 發給할 수 있도록 하여 會社整理期間中 企業活動의 沮害要因을 除去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發給事由 國稅徵收法 第15條 또는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額을 除外하고는 다른 滯納額이 없는 경우 發給	○ 發給事由 改正前과 같음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額 또는 押留된 財産의 換價의 猶豫에 關聯된 滯納額이 있는 경우 追加

2. 給與金의 押留 限度額 調整(令 第37條)

國稅의 滯納으로 給與金을 押留하는 경우 押留可能 限度額을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總給與額－所得稅)×50%	(總給與額－{所得稅, 防衛稅, (所得割, 住民稅)})×50%

3. 缺損處分事由 新設(令 第83條)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計劃 認可의 決定이 있은 後에는 整理債權에 대하여 整理會社는 免責된다.

따라서 租稅債權도 納稅義務가 消滅되는 것이나 國稅徵收法上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規定이 없으므로 事實上 徵收할 수 없는 滯納額을 消滅時效期間이 經過할 때까지 기다려서 處理하여야 하는 不便이 있게 되므로 이를 "徵收할 可望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를 缺損處分事由에 追加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缺損處分事由 滯納者의 行方이 不明하거나 財産이 없다는 것이 判明된 때	○ 缺損處分事由 改正前과 같음 ○ 會社整理法 第2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한 會社가 納稅義務를 免除받게 된 때

4. 國稅滯納整理委員會 業務範圍 調整(令 第85條)

一定金額 以上의 國稅滯納整理(缺損處分)는 稅務署 또는 地方國稅廳에 設置된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던 것을 貨幣價値의 變動等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對象增加로 非能率을 招來하고 있으므로 各 委員會의 審議對象 및 滯納額의 範圍를 國稅廳長이 定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審議對象金額 가. 稅務署委員會(1級地) 1人分 滯納額 30萬원 以上 100萬원 未滿 나. 地方國稅廳委員會 ○ 1級地稅務署의 1人分 滯納額 100萬원 以上 ○ 其他 稅務署의 1人分 滯納額 30萬원 以上	○ 審査對象金額 國稅廳長이 定함.

關　稅　法

〔要　約〕

過多保護된 一部品目의 關稅率을 引下하고 新規開發品目등 保護必要性이 대두된 一部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하는 한편 國際競爭力이 確立된 産業에 대한 關稅支援을 縮小하고 貿易量의 增大에 對處하는 效率的인 通關管理體制를 確立하고자 關稅法을 一部 改正하였다.

가. 關稅制度의 改善
- ○ 關稅支援制度의 整備
- ○ 通關管理制度의 改善

나. 關稅率의 調整
- ○ 保護關稅率의 調整
- ○ 財政關稅補完
- ○ 關稅支援의 擴大
- ○ 關稅率體系의 整備

1. 關稅制度의 改善

가. 關稅支援制度의 整備

(1)背　景

關稅減免制度를 中心으로 한 關稅上 産業支援制度는 지난 20年間 4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遂行함에 있어 不足한 資本과 技術을 主要基幹産業 및 開發戰略産業에 集中投入하여 餘他産業의 育成을 誘導하는 開發戰略의 一環으로서 이들 主要産業에 所要되는 施設機械類등 投資財에 대한 關稅負擔을 輕減시켜 投資需要를 誘發하고 促進시킴으로써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産

業構造의 高度化에 크게 寄與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經濟開發 初期段階에서 規模經濟를 實現하기 위하여 支援과 保護의 政策에 力點을 둔 經濟運用方式은 누적된 高度成長의 副作用과 世界的인 景氣不況,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強化등 對內外的인 經濟與件의 變化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重化學工業과 輕工業間등 部門間投資의 不均衡, 構造的인 인플레이션, 無理한 企業의 擴張 및 特定部門의 過剩投資, 過保護에 의한 技術水準의 落後와 國際競爭力의 減退등 우리經濟에 構造的인 脆弱點을 안겨주는 한편 關稅政策 側面에서도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惹起시켰다.

첫째, '77年이후 關稅徵收實績과 減免實績間의 比率은 漸次的으로 不向趨勢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名目稅率과 實效稅率의 乖離의 主要 要因으로서 財政收入을 減退시키고 있다.

둘째, 減免惠澤을 받는 部門과 그렇지 못한 部門間에 關稅負擔의 不公平을 招來하였으며 이러한 現象은 重工業과 輕工業間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現在의 減免對象物品은 國內生產이 困難한 物品에 限定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資本財에 대한 關稅率은 15~30%水準으로서 國內生產을 誘導하는 關稅政策의 基本方向 側面에서 特定物品의 實效稅率을 低下시켜, 國產開發意慾을 低下시키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넷째, 關稅減免惠澤이 旣得權化·慢性化됨에 따라 狀況의 變化에 彈力的으로 對處해야 하는 政策手段이 硬直化되고 있는 등 問題點을 露呈시키고 있다.

(2) 改編方向

上記와 같은 問題點을 漸進的으로 是正하고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이 不可避한 現時點에서 政府의 支援依存的 企業體質을 改善하며, 關稅의 本來的 機能인 財政收入 確保와 國內產業保護의 兩大機能을 漸次的으로 回復함과 同時에 產業支援政策의 變化를 例示한 第5次計劃과의 齊合性을 圖謀코자 첫째, 減免對象業種 및 物品을 調整하고 減免率을 縮小함으로써 關稅減免을 縮小運用, 둘째, 最低財政關稅負擔(3~5%水準)을 誘導하기 위하여 免稅支援의 止揚 및 最高減免率의 法定化, 셋째, 支援方法을 直接支援制度인 減免制에서 間接支援方式인 分割納付制로의 段階的 轉換, 넷째, 減免을 縮小할 경우 對象產業에의 一時的 衝擊을 緩和하고 企業家의 事前豫測이 可能하게 하여 投資與件의 安定性을 圖謀하기 위한 關稅減免의 年次的 縮小原則, 다섯째, 新規有望產業의 支援등을 基本方向으로 하였다.

(3) 改編內容

關稅減免對象을 調整함에 있어 從前의 個別產業別 또는 部門別 接近方式에서 탈피하여 全產業構造內에서의 支援對象抽出方法 즉 當該產業의 全產業構造內에서의 重要度 및 緊要度등을 測定하여 支援與否를 決定하는 Macro Approach方法을 擇하였다. 詳論하면, 韓國銀行이 發行한

1978年度 産業關聯分析表(I/O Table)에 의한 392個 全産業中 製造業 264個 部門의 現況과 特性을 調査하고 産業間의 相互 依存關係와 緊密度를 把握하여 個別産業의 重要性을 測定한 다음, 個別産業의 對內外國際競爭力을 分析하여 幼稚生成段階, 基礎確立段階, 國際競爭力確立段階, 斜陽段階로 區分되는 産業別 成長段階를 分類整理한 後 上記 重要度를 考慮한 支援基準에 의해 支援對象業種을 調整하였다.

이에 따라 法 第28條의 化學工業등 法定 9個業種中 化學工業에 包含되어 있는 肥料 및 시멘트製造業을 減免對象에서 除外시켰으나 當該産業의 一時的 衝擊을 緩和하기 위하여 5年間 10%씩 減免率을 縮小後 削除토록 하였으며 減免率에 있어서는 法 第28條의 重要産業, 法 第28條의 2의 資源開發産業, 法 第28條의 4의 原料品에 대한 그 最高限度를 各各 70%, 90%, 90%로 法定化 하였으나 原料品 減免對象産業中 航空機와 그 部分品 및 農藥에 대해서는 當該産業의 緊要性을 勘案하여 全額免稅支援까지 可能하도록 하였다. 또한 新規有望産業中 '80年代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確保政策上 가장 重要한 液化天然가스 貯藏業(Liquified Natural Gas)을 資源開發産業에 包含시켜 關稅減免이 可能토록 하였고, 産業災害豫防物品에 대한 關稅減免支援을 擴大하여 勤勞者의 作業改善을 支援토록 하였으며, 5次計劃上의 目標中의 하나인 生産性向上과 福祉施策의 擴充을 支援하기 위하여, 技術 및 人力開發用物品, 醫療機關등 福祉機關輸入物品과 우리나라가 投資하여 海外에서 開發되어 輸入되는 國民經濟上 緊要한 物品을 關稅分割納付對象에 追加하였다.

나. 通關管理制度의 改善

(1) 必要性

'70年代 이후 急激한 貿易增大와 民間企業의 迅速한 通關處理要求 및 自律性 提高必要에 따라 通關業務의 科學化와 더불어 輸出入貨物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한 制度的 轉換이 要請되고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이 不可避한 우리經濟實情에서 貿易關係諸般制度의 國際化와 輸出入貨物의 流通을 最終的으로 確認管理하는 輸出入通關節次의 簡素化가 切實히 要請된다.

(2) 改善內容

(가) 國際關稅規範의 國內法 受容

稅關에 輸入申告된 物品을 檢査後 品目分類를 確定하는 現行制度를 物品의 輸入이전에 品目分類를 確定할 수 있도록 하여 通關許容與否와 關稅負擔額을 豫測할 수 있도록 하는 品目分類事前回示制를 導入하고, GATT/MTN에서 妥結된 補助金·相

計關稅協定의 加入(1980. 6. 10)에 따라 同 協定內容을 國內法에 反映하여 相計關稅의 協定內容을 反映하여 相計關稅의 發動要件을 強化하고 輸出國에서 補助金을 支給하지 않겠다거나 輸入國의 被害를 補償하여 주겠다는 등의 約束을 提示할 경우 相計關稅賦課를 免除할 수 있는 約束制度(Undertaking)를 新設하였으며, 船用品 등을 積載 또는 揚陸하기 위하여 24時間內에 出港할 目的으로 一時 歸港하는 運輸機關에 대한 入出港節次를 大幅 簡素化하는 簡易入出港制와, 通過貨物에 대한 一時藏置가 可能하도록 하는 外國物品의 一時揚陸制를 新設하여 物品管理와 運輸機關의 來往을 便利하게 하였다.

(나) 通關節次의 改善

旅行者 및 乘務員의 携帶品 通關時에 品目別로 適用되는 簡易稅率制度를 一定金額以下인 경우에는 金額別로 單一稅率을 適用토록 하여 旅行者의 便利를 더욱 圖謀하였고, 天災·地變등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關稅의 納付등을 期限內 할 수 없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延長하거나 分割納付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關稅行政의 彈力的 運用을 可能토록 하였다.

(다) 輸出入貨物의 效率的 管理

自律管理保稅區域制를 新設하여 原則的으로 保稅區域의 物品搬出入, 管理, 檢査등을 現行 稅關公務員이 擔當함에 따른 不便과 非效率性을 除去하기 위하여 同節次의 省略 또는 簡易한 節次로 移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簡易保稅運送制度를 新設하여 外國物品의 國內運送을 簡略하게 할 수 있도록 保稅運送物品의 檢査, 申告 및 免許를 省略 또는 簡易한 節次로의 移行이 可能하게 되었다.

(라) 品目分類事前回示制度新設(法 第7條의 2)

關稅率表上의 品目分類(CCCN)는 關稅率의 分類만이 아니라 貿易去來法 및 其他特別法에 의한 輸出入의 制限與否에 널리 使用되는 品目分類 體系이나 그간 品目分類機關을 制度上으로 一元化하지 못하고 財務部, 關稅廳, 商工部等으로 多岐的으로 運營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分類意見의 相衝으로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하곤 했다. 금번 關稅法改正時에 品目分類事前回示制度를 新設함으로써 그간의 問題點을 解消하고 品目分類機關을 關稅廳으로 一元化하였다.

- 制度의 槪要

品目分類事前回示制度란 장차 外國으로부터 物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사전에 關稅廳長에게 品目分類番號를 質疑하고 關稅廳長은 審査結果 確定된 品目分類番號를 回信함으로써 品目分類上의 紛爭을 事前에 解消하자는 制度이다.

– 主要內容

○ 法的要件

△ 申請者

關稅法 第7條의 2 第1項에 의하면 "外國物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關稅廳長에게 그 物品에 適用될 別表 關稅率表上의 品目分類에 관하여 質疑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즉 申請者는 "外國으로부터 物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이다.

△ 審査義務

關稅法 第7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疑를 받은 關稅廳長은 同質疑에 대하여 審査義務를 진다. 다만, 留意할 點은 品目分類事前回示書의 交付義務는 審査結果 品目分類가 정하여 진 경우에 한하여 賦與된다는 點이다.

△ 事前回示書의 提出時期

關稅法 第7條의 2 第3項에 의하면 "輸入申告人이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할 때"에 品目分類事前回示書를 稅關長에게 提出토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輸入貨主는 輸入申告時의 申告書類에 品目分類事前回示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 申請書와 見本

× 申請書

申請者는 物品의 品名, 規格, 製造過程, 原產地, 用途, 從前의 通關與否 및 通關豫定地稅關을 記載한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從前의 通關與否를 記載토록 한 것은 從前의 品目分類番號 및 그 分類理由等을 參考키 위한 것이다.

× 見本

申請者는 輸入하고자 하는 物品과 同一한 見本 3個 및 物品의 說明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提出된 3個의 見本은 1個는 分類者가 保管하고, 1個는 封印하여 事前回示書에 添附되며 나머지 1個는 通關豫定地 稅關에 送付된다.

△ 手數料의 納付

申請者는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手數料(1品目當 5,000원)을 納付하여야 한다.

○ 中央關稅品目分類委員會

△ 審議事項

關稅法施行令 第1條의 2에 의한 中央關稅品目分類委員會는 品目分類의 事前回示에 관하여 關稅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其他品目分類에 관하여

關稅廳長이 提議하는 事項을 審議하기 위한 委員會이다. 委員會에서 審議하는 事項은 2個로 大別된다. 그 하나는 品目分類의 事前回示에 관하여 關稅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이고, 둘째는 其他品目分類에 관하여 關稅廳長이 提議하는 事項이다. 品目分類의 事前回示에 관한 事項 모두가 中央關稅品目分類委員會에 回附되는 것이 아니고 限定된 品目 다시 말해서 그 分類에 問題가 있는 品目만이 委員會의 審議對象이 되는 것이다.

△ 委員會의 構成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7人以上 11人以下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委員長은 關稅廳次長이 되고 其他의 委員은 關稅廳所屬 公務員, 關係部處의 公務員 및 關係團體의 任員과 其他 商品學에 관한 知識이 풍부한 者 중에서 關稅廳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마) 簡易稅率改正(法 第8條)

— 制度의 槪要

簡易稅率이란 携帶品·託送品·郵便小包等의 迅速通關을 爲하여 輸入에 關聯된 諸稅를 合算한 稅率을 말하며 國內都賣價格에 簡易稅率을 곱하여 稅額을 算出한다.

— 主要改正內容

○ 適正對象

從前에는 携帶品, 託送品, 別送品, 郵便物, 修理船舶을 對象으로 하던 것을 託送品, 別送品을 除外하였는 바, 이는 託送品, 別送品에 對하여는 迅速한 通關보다는 正確한 稅額의 算出을 通한 公平課稅가 더 要求되었기 때문이다.

○ 課稅方法—金額基準簡易稅率制度導入

携帶品輸入額이 一定額(50萬원)以下인 경우에는 單一稅率(30%)을 適用토록 하였는바, 同 制度는 美國等에서 採擇하고 있는 制度로서 迅速한 通關을 圖謀하기 爲하여 導入되었다.

○ 稅率段階의 縮小

從前의 簡易稅率表는 10%~90%의 8段階로 되어 있었으나 現在는 10%~80%의 7段階로 縮小하였다.

○ 申請에 의한 簡易稅率適用排除等

그 밖에 國民의 便宜를 爲하여 申請이 있는 경우 簡易稅率을 適用하지 아니하고 基本稅率을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課稅衡平을 지나치게 그르칠 우려가 있는 物品에 對하여는 關稅廳長이 規定에 의거 金額基準簡易稅率을 排除할 수 있도록 하였다.

改正簡易稅率表

番號	品　　名	稅率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50만원 이하의 물품	30%
2	기　타	
	가. 주　류	80%
	나. 모피 및 동제품, 진주, 귀석, 반귀석 및 이들의 제품	70%
	다. 귀갑·산호·상아·호박 및 이들의 제품, 커피, 귀금속 및 동제품, 시계, 오락용품 및 골프용품	60%
	라. 코코아, 음료, 융단, 가정형전기기기, 촬영기, 영사기, 사진기 및 스키용품	50%
	마. 녹용, 자양강장품, 연초, 화장품, 모직물, 조명기구 및 크리스털유리제품	40%
	바. 수리선박	10%
	사. 기　타	30%

비고 : 총포류에 대하여는 이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強力關稅率 變更範圍 縮小(法 第12條, 第15條, 第16條)

強力關稅率은 行政府가 經濟與件의 變化에 신속히 對處하기 위하여 法律의 授權을 받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稅率로서, 從前에는 緊急關稅, 割當關稅의 稅率變更幅이 ±50%(絶對値)이던 것을 ±40%로 그 幅을 縮小 調整하였는데 이는 行政府의 裁量範圍를 縮小한 것이다.

<例　　示>

基本關稅率 50%인 경우

	從　前	現　在
最高引上可能稅率	100%	90%
最低引下可能稅率	0%	10%

2. 關稅率 調整

가. 關稅率 調整의 背景

1978年 關稅率의 全面改正以後 우리經濟는 많은 變化를 經驗하였는 바, 經濟運用面에서도 價格機構의 活性化와 企業의 自律的 意思決定을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型 經濟理念과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이 強調되고 있다.

關稅率面에서도 國際競爭力이 確立된 部門에 대하여는 海外競爭導入을 積極化하여 企業體質을 強化하고 消費者 保護를 圖謀할 필요가 커졌으며 한편으로는 新規產業의 開發 및 輸入自由化 推進에 따라 競爭力이 微弱한 品目에 대하여는 關稅에 의한 保護度를 높여줄 必要가 發生하였다.

또한 1982年부터 시작되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遂行에 必要한 財源의 確保 및 政府의 主要施策에 대한 關稅上의 支援이 要請됨에 따라 總 340個 品目의 關稅率을 改正 補完하였다.

나. 關稅率 調整의 基本方向

今番 關稅率 調整은 關稅率의 急激한 引下로 인한 企業에 대한 衝擊을 緩和하며 海外競爭導入을 위한 準備態勢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部分的·漸進的·豫示的 調整方式을 導入하였고

(1) 保護關稅率 水準을 調整, 過多保護品目과 新規開發된 國內產業에 대하여 適正한 保護水準을 設定하며

(2) 關稅의 財政機能을 補完하기 위하여 從量稅額을 現實化하거나 從價稅로 轉換하고

(3) 輸出產業·開發輸入產業·半導體產業等 重要產業 및 醫療福祉의 擴大를 위한 關稅上의 支援을 強化하고

(4) 稅率段階를 보다 單純化하고 加工段階別 稅率逆進 및 類似物品間 稅率不均衡을 是正하고 慢性的 割當關稅品目의 稅率을 現實化함으로써 關稅率體系를 整備하는 것을 基本方向으로 하였다.

다. 部門別 調整內容

<調整內容要約>

○ 關稅率變更品目數 : 340個(引上 : 29個, 引下 : 311個)

○ 總稅率 變更

- 單純平均稅率 : 24.9%→23.7%
- 加重平均稅率 : 12.8%→12%水準

○ 稅率段階 : 14段階→11段階

(1) 保護關稅率의 調整

(가) 過多保護關稅率의 一律引下(218品目)

引 下 內 容

○ 現行 關稅率 構造上 高稅率部門인 60%, 80%, 150% 品目의 關稅率을 一律引下方式에 의하여
150%→100%, 80%→50%, 60%→50%로 各各 引下하였다.

○ 다만, 競爭力未洽品目, 奢侈性品目, 國際關稅協商 對象品目은 現稅率水準을 暫定的으로 維持토록 하였다.

引 下 理 由

○ 現行 우리나라 關稅率은 最低 0%에서 最高 150%인데 60%以上의 高稅率品目은 大部分 比較的 競爭力이 갖추어진 輕工業製品인 바

○ 關稅의 產業保護機能을 適正化하고 產業別 保護隔差를 縮小함으로써 資源配分의 效率化를 期하고

○ 海外競爭 導入으로 企業의 國際競爭力 向上을 圖謀하고 國內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關稅率을 引下하였다.

基本關稅率(%) 現行→調整	實質引下品目	暫定稅率設定品目
150→100	담 배	洋酒類·高級乘用車 (暫定 150%)
80→50	加工龜甲·細工品	乘用車샤시·車體·엽총·초콜릿·인스턴트 커피(暫定 80%)
60→50	加工食料品·纖維製品·신발類·유리製品·家庭用金屬製品等 174品目	貨物車·車體·피아노·樹脂製品·果實類·화장품·진주·엽연초等 28品目(暫定 60%)

(나) 新規開發品目의 關稅率 引上(7品目)

○ 現在 緊急關稅 및 暫定關稅 適用對象品目中 關稅上保護가 계속 필요한 石炭酸等 7個品目에 대하여 法定關稅率을 引上하였다.

○ 다만, 新規開發·競爭力 微弱品目·輸入自由化品目에 대한 關稅上 保護도 限時的으로 하기 위하여 基本關稅率에 의하지 아니하고 暫定稅率로 反映하였다.

品 目	關 稅 率 (%)		備 考
	現 行	調 整	
石 炭 酸	20	20(暫 30)	緊急關稅品目
아 세 톤	20	20(暫 30)	〃
T D I	20	20(暫 30)	〃
밸 브	15	15(暫 20)	〃
망 간 乾 電 池	30	30(暫 40)	〃
軌 條	20(暫 0)	20	暫定稅率停止品目
切 削 工 具	30(暫 15)	30	〃
솔 비 돌	20	20(暫 30)	輸入自由化品目(81年)

(2) 從量稅의 現實化를 통한 財政關稅 補完

○ 인플레 및 換率變動에 따라 他 類似物品의 稅負擔보다 낮아진 從量稅品目의 稅負擔을 類似品目과 同一水準의 從價稅로 轉換하거나 또는 從量稅額을 現實

化함으로써 稅負擔의 公平性을 期하고 稅收確保를 圖謀하였다.

從量稅額의 現實化

品 名	關 稅 率		從價換算稅率
	現 行	調 整	
原 糖	54원/kg	77원/kg	14%→20%
비 디 오 필 름	330원/분	400원/분	16%→20%

從量稅의 從價稅轉換

品 名	關 稅 率		類似物品 및 稅率
	現 行	調 整	
	kg당		
糖 蜜	12원	20%	大豆粕 20%
바 나 나	90원	50(暫 60%)	파인애플·오렌지 50%(暫 60%)
후 추	520원	40%	고 추 40%
코 코 아 豆	870원	30(暫 40%)	커피豆 30%(暫 40%)

(2) 關稅支援의 擴大

(가) 重要產業支援(26品目)

○ 政府의 重點育成產業等에 所要되는 原資材 및 施設材의 關稅率을 引下함으로써 同重點育成產業을 關稅面에서 支援한 바 그 細部內容은 다음과 같다.

○ 技術集約的 產業育成의 一環으로 政府는 產業規模가 크고 技術開發效果가 廣範圍하게 미치는 半導體產業에 대해 國策硏究開發事業으로 推進해 나갈 方針이므로 同施策에 副應하여 半導體 製造用 輸入原資材의 關稅率을 平均 20% 引下하였다.(13品目)

○ 우리나라 大宗 輸出產業의 하나인 纖維產業의 品質高級化를 위하여 國內生產이 不可하거나 未洽한 施設材 및 染料의 關稅率을 引下하였다.(11品目)

○ 기타 鍍金產業育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니켈陽極등의 稅率을 引下하였다.(3品目)

區 分	品 名	關稅率 (%)	
		現 行	調 整
半導體產業	回路板	40	40(暫 10)
	硅素板	30	30(暫 10)
	리드프레임	30	30(暫 10)
纖維產業	織機 (4種)	20	20(暫 15)
	裁縫機	40	40(暫 30)
染色加工機	染料	30	30(暫 20)
	染色加工機械 (5種)	20	20(暫 15)
鍍金產業	니켈陽極	20	20(暫 15)

(나) 輸出支援(14品目)

○ 輸入「패턴」으로 보아 주로 內需用보다 輸出用原資材로 輸入되는 物品에 대하여는 選別的으로 關稅率을 引下하였다.

○ 이들 原資材는 物量이나 國際競爭力으로 보아 國內產業을 保護하기보다는 輸出을 支援하는 關稅率體系가 바람직할 것으로 判斷되어 關稅率을 引下한 것이다.

區 分	品 名	關稅率(%)		輸出用 比率(%)
		現 行	調 整	
主資材	하이드라진	40	30	84
	하이드레이트			
	牛皮	40	30	95
	豚皮	40	30	86
	生毛皮	40	30	99
副資材	織物라벨	60	40	77
	종이라벨	60	40	62

(다) 醫療福祉·開發輸入等 支援

○ 醫療施惠의 擴大를 支援하기 위하여 醫藥品基礎原料, 醫藥品 및 醫療器機의 關

稅率을 大幅 引下하였다.(12品目)

○ 資源確保의 一環으로 開發輸入의 重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南洋材를 除外한 餘他 原木의 關稅率을 5%로 引下하였고 南洋材 製材木과 合板用單板稅率을 10%로 引下하였다.(2品目)

○ 營農機械化를 위하여 現在 國內生産이 不可能하고 關稅減免對象이 아닌 收穫·脫穀兼用機의 關稅率을 最低 財政關稅水準인 2%로 引下하였다.

○ 通信施設擴充을 支援하기 위하여 公衆通信用 電子式 自動交換施設 및 同部分品의 稅率을 無稅로 引下하였다.

區 分	品 名	關稅率(%)	
		現 行	調 整
醫療福祉	人工腎臟器	15	0
	X線用필름(2種)	20	20(暫 0)
	避姙劑原料(5種)	40	40(暫 0)
	移植用피부, 뼈	20	0
	人體挿入나사	30	0
	無影燈	60	20
	人體內部모니터TV	50	15
營農機械化	콤바인	15	15(暫 2)
開發輸入	南洋材製材木	20	20(暫 10)
	合板用單板	30	30(暫 10)
通信施設擴充	ESS施設	10	10(暫 0)

(4) 關稅率體系의 整備

(가) 稅率段階의 縮小調整

○ 今番關稅率改正에서는 基本關稅率段階가 14段階에서 11段階로 縮小하였는 바 특히 高稅率段階를 調整하여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圖謀하고자 하였다.

現 行(14段階)	改 正(11段階)
0-5-10-15-20-25-30-40-50-60-80-100-150+從量稅	0-5-10-15-20-25-30-40-50-100+從量稅

(나) 完製品과 中間財의 稅率逆進 是正

○ 新商品의 開發·新製造工法의 出現 等으로 發生한 完製品과 中間財의 稅率逆進을 可能한 範圍內에서 是正하였다.

區分	關稅率(%)		關聯物品 및 稅率
	現行	調整	
電氣絶緣紙	40	30	製品 : 콘덴서 (30%)
캐슈넛쉘液	40	30	製品 : 캐슈페놀樹脂 (30%)
液體包裝容器	30	40	原料 : 종이 (40%)
印刷回路基板用필름	40	30	製品 : 印刷回路基板 (30%)
알킷樹脂	40	30	製品 : 콘덴서 (30%)
弗素비닐필름	40	30	製品 : 銅積層板 (30%)
펄프칩	20	5	製品 : 펄 프 (10%)
폴리프로피렌樹脂	40	30	製品 : 콘덴서 (30%)

(다) 類似物品間의 稅率不平衡 是正

○ 品目間 關稅負擔의 公平性을 기하기 위하여 類似物品間의 不公平한 關稅率을 同一하게 調整하였다.

品名	關稅率(%)		類似物品稅率	
	現行	調整		
金屬黑鉛	30	20	人造黑鉛	(20%)
電氣絶緣油	40	30	切削油	(40%)
海綿鐵鋼	10	5	古 鐵	(5%)
小包裝糖蜜	60	40	糖시럽	(40%)
印刷製板用金屬板	40	30	印刷製板用필름	(30%)
토마토페이스트	60	40	과일粉	(40%)
船舶用디젤엔진	40(暫 20)	40	가솔린 엔진	(40%)
爬蟲類原皮	40	30	生毛皮	(30%)
크로라로다	15	15(暫 20)	훨로다	(暫 20%)

(라) 慢性的 割當關稅適用品目의 割當稅率 現實化

○ 78年 關稅率 調整 以後 繼續的으로 割當稅率을 適用하고 있는 品目中에서 國內産業保護·類似品目間 稅率均衡面에서 問題가 없는 物品은 割當稅率을 法定稅率로 現實化함으로써 同一品目에 대한 慢性的 割當關稅 適用을 止揚하였다.

區 分	現行稅率(%)		調整稅率(%)	備 考
	現 行	調 整		
美松原木	10	5	5	79年부터 割當關稅
古 紙	10	5	10(暫定 5)	〃
冷凍魚類	25	10	25(暫定 10)	〃
伸展油	30	15	30(暫定 15)	〃
粗酒精	100	50	100(暫定 50)	〃

간추린 改正稅法

82년도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租稅減免規制法
金融資産實名去來에관한法律
特別消費稅法
附加價値稅法施行令
國稅徵收法施行令
關稅法

머 리 말

지난해 우리경제는 그 運用方式에 있어서 커다란 轉換이 있었고, 그 成果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物價오름세 심리에 오랫동안 젖어온 우리의 의식을 安定基調로 轉換하고 安定된 物價體制아래서 技術革新을 통한 持續的成長을 도모하는 方向으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단합된 國民的意志를 이와 같은 方向으로 結集시켜 노력한 결과, 競爭相對國등 다른 外國에 비해 相對的으로 안정된 가운데 높은 成長率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經濟運用에 밝은 빛을 안겨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이러한 經濟的成果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금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安定基調下에서 民間自律化에 의한 市場經濟暢達"이라는 우리經濟가 나아갈 施策方向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 租稅制度도 「競爭促進을 통한 市場經濟體制를 擴充해 나갈 수 있는 公平한 稅制」를 指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政府는 所得稅法等 5個稅法을 改正하고 租稅와 관련이 있는 "金融 實名去來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커다란 稅制改編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經濟施策運用을 보다 원활히 하면서 經濟運用方式 轉換에 걸맞는 制度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의 稅制改編은

- ○ 法人稅·所得稅率의 引下를 통하여 생산주체인 민간기업의 稅負擔을 완화함으로써 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하고
- ○ 無記名 假名인 利子·配當等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差等分離課稅를 함으로써 公平課稅에 점차 접근토록 하며
- ○ 特定產業에 대한 「多減免」을 「少減免」으로 바꾸는 등으로 稅制上 競爭制限要因을 축소하고
- ○ 稅額控除의 擴大등으로 중산층 이하의 稅負擔輕減도 아울러 도모하며
- ○ 正常企業活動을 制約하거나 납세자에게 不便을 주는 稅制上要因은 最大限으로 이를 줄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經濟는 이제 政府의 「보호나 규제」 方式에서 벗어나 민간의 「自律과 責任」아래 經濟能率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市場經濟體制 아래서는 먼저 모든 국민이 「經濟人化」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經濟現象이나 관련된 各種制度를 일반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번에 「간추린 改正稅法」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예년의 경우보다 자세하고 쉽게 풀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이번 稅制改編이 指向하는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는데 보탬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1983. 1.

財務部長官　姜 慶 植

目　　次

所得稅法 …… 831

1. 綜合所得稅率 引下 …… 833
2. 勤勞所得 …… 835
3. 利子·配當所得(金融資產所得) …… 846
4.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 改善등 其他事項 …… 854
5. 讓渡所得稅 …… 860

法人稅法 …… 870

Ⅰ. 法人稅 …… 872

1. 法人稅率 引下 …… 872
2. 課稅所得範圍 調整 …… 877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差異調整 …… 878
4. 納稅者 便宜를 위한 制度改善 …… 879
5. 其　他 …… 884

Ⅱ. 特別附加稅 …… 889

1. 業務用不動產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889
2. 特別附加稅率 調整 …… 894
3. 取得·讓渡時期 調整 …… 895
4. 特別附加稅 非課稅範圍一部 調整 …… 895

相續稅法 …… 896

Ⅰ. 相續稅 …… 896

1. 相續財產控除額의 引上 …… 897
2. 3代이상 代물림 住宅에 대한 追加控除制度 新設 …… 898
3. 葬禮費 槪算共濟 新設 …… 900
4. 自進申告稅額控除額의 範圍調整 …… 901

5. 相續稅 決定節次의 改正 …… 901
6. 年賦延納申請節次등의 改正 …… 902
7. 物納申請節次등의 改正 …… 904

Ⅱ. 贈與稅 …… 904
1. 당초 贈與者에게 贈與財産 返還時 贈與稅 課稅排除 …… 905
2. 直系尊卑屬間 不動産등 相互交換時 贈與擬制 除外 …… 905
3. 特殊關係者에게 高價讓渡時 贈與擬制 …… 906
4. 贈與擬制에서 除外되는 信託財産 …… 907
5. 勤勞福祉基金과 關聯한 贈與稅非課稅 …… 907

租稅減免規制法 …… 909

Ⅰ. 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 …… 910
1 重要産業·防衛産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減免 縮小 …… 910
2. 鑛業에 대한 減免 縮小 …… 912
3. 畜産業에 대한 減免 縮小 …… 914
4. 海外港灣荷役·運送業에 대한 減免 縮小 …… 915
5. 施設貸與(lease)業에 대한 減免 縮小 …… 916
6.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917
7.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918
8. 社員用 住宅 新築時 投資稅額控除 新設 …… 919
9.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縮小등 其他 …… 921

Ⅱ. 讓渡所得稅등에 대한 租稅特例調整 …… 924
1. 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率 引下 …… 925
2.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 …… 927
3.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 …… 927
4.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補完 …… 928
5.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免除制度 改善 …… 929
6.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要件 緩和 …… 931

Ⅲ. 公共法人에 대한 租稅特例 補完 …… 932
1.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 933
2. 貸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 適用排除 …… 933
3.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特例認定 …… 934
4. 法人稅申告期限 延長 …… 935
5. 防衛稅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등 …… 936
6.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의 範圍調整등 …… 938
7. 求償債權償却充當金制度 新設 …… 939
8. 農·水·畜協中央會의 寄附金特例 …… 940
9. 國策銀行에 대한 非營利法人稅率 適用 削除 …… 941

Ⅳ. 非課稅 利子所得등 기타 …… 941
1. 非課稅 利子所得의 範圍 縮小 …… 942
2. 15%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 …… 943
3.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租稅支援 調整 …… 943
4. 非課稅 山林開發所得의 範圍 擴大 …… 944
5. 財務構造改善積立金에 대한 紙上配當金額計算特例 新設 …… 944
6. 附加價値稅의 零稅率 適用對象 擴大 …… 945
7. 工場등의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除 新設 …… 945
8. 印紙稅 免除調整 …… 946
9. '86아시아 競技大會의 施設에 대한 關稅등 免除 …… 947
10. 租稅特例根據法律의 追加 …… 947
11. 公開法人要件의 特例規定 削除 …… 948

金融資產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 949

1. 無記名·假名의 利子·配當에 대한 所得稅差等 課稅 …… 949
2. 實名의 金融資產에 관한 租稅特例 …… 956

特別消費稅法 …… 961

1. 課稅對象과 稅率 調整 …… 961

2. 暫定稅率의 適用期限 延長 및 適用品目 追加 …… 964
3. 乘用自動車에 대한 彈力稅率 適用期限 延長…… 965
4. 免稅範圍의 一部 調整…… 966
5. 其他 補完事項 …… 966

附加價値稅法施行令 …… 969

1.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政府業務代行團體 範圍 調整…… 970
2. 零稅率 適用範圍 擴大 및 節次 簡素化 …… 971
3. 同一場所에서 5年以上 事業을 繼續한 事業者에 대한 稅制上 優待…… 973
4.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 調整 …… 973
5. 其 他 …… 975

酒稅法施行令…… 982

1. 濁酒알콜度數 調整 : 6度 → 8度 …… 982
2. 擬制販賣免許申告制度의 簡素化 …… 982

所 得 稅 法

[要 約]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를 개편하여 全般的으로 稅負擔을 引下함으로써 勤勞 및 事業意慾의 鼓吹로 當面한 經濟活性化를 도모하고 適正稅率에 의한 성실한 自進申告納付風土를 造成하는 한편, 勤勞所得稅額控除對象을 종전보다 擴大하고 勤勞所得稅額控除率도 引上하는 同時에 小規模의 事業所得者에 대하여는 稅額控除를 새로이 新設하는등 中產層 이하의 稅負擔도 함께 輕減되도록 하였다. 또 앞으로 金融所得을 綜合課稅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해 나가기 위하여 實地名義를 밝히지 아니한 金融所得에 대하여는 差等分離課稅하고 非課稅되는 金融所得의 範圍를 縮小調整하였으며, 기업의 內部留保擴充을 통하여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할 수 있도록 紙上配當에 대한 所得稅의 負擔을 合理的으로 緩和하였고, 기타 讓渡所得稅의 課稅方法을 原則的으로 時價標準額으로 轉換하는등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도록 改正하였다.

1. 綜合所得稅率 引下

2. 勤勞所得
   가. 中產層이하에 대한 稅額控除 擴大
      (1) 稅額控除擴充 內容
      (2) 勤勞所得者에 대한 稅額控除
      (3) 事業所得者에대한 稅額控除
   나. 勤勞所得控除 引上
   다. 敎育費控除對象勤勞者 擴大
   라. 非課稅勤勞所得의 範圍 擴大
      (1) 實費辨償的인 給與에 대한 非課稅
         • 敎員이 받는 硏究補助費
         • 硏究機關從事者의 硏究活動費
      (2) 福祉厚生的인 給與에 대한 非課稅
         • 僻地手當에 대한 非課稅 範圍
         •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에 대한 非課稅 範圍 擴大

• 週休手當 및 生理手當 非課稅

• 優秀勤勞者가 받는 償金 非課稅 調整

(3) 國外勤勞所得控除對象인 外國航行船舶의 船員範圍 調整

(4) 經費의 補塡으로 보아 勤勞所得에서 除外하는 것

• 20萬원 이하의 自家運轉補助金

• 團體定期災害保險料

3. 利子·配當所得(金融資產所得)

가. 非課稅利子所得을 課稅로 轉換

(1) 國·公債利子, 土地開發債券의 利子

(2)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등의 利子

(3) 還買條件附債券 賣買差益

나. 無記名·假名 金融資產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다. 紙上配當課稅 緩和

(1) 適正留保額 算定基準에 資本金基準 導入

(2) 財務構造改善積立金 積立時 紙上配當 免除

(3) 紙上配當 收入時期등의 調整

라. 配當稅額控除率 調整

마. 利子·配當에 대한 源泉徵收 關聯規定 補完

(1) 短資社가 仲介한 어음利子 分離課稅 新設

(2) 源泉徵收時期 및 利子所得支給時期 補完

(3) 分離課稅利子·配當源泉徵收簿備置制度 新設

(4) 金融機關의 預金에 대한 質問·調査 排除規定 削除

4.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改善등 其他事項

가. 不動產賃貸業에 대한 總收入金額計算方法 改善

나. 帳簿備置 및 記帳義務制度 改正

(1) 簡易帳簿義務基準額 引上

(2) 業種에 맞는 帳簿組織(標準帳簿)의 制定

다.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廢止

라. 稅額控除順位 調整

마.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制度 補完

5. 讓渡所得稅

가. 讓渡差益의 計算方法 改善

(1) 取得·讓渡價額은 原則的으로 基準時價에 의함

(2) 基準時價의 決定

(3) 必要經費槪算控除 新設

(4) 讓渡所得特別控除額 計算時의 取得價額

(5) 高級住宅에 대한 讓渡所得金額計算方法 改善

나. 取得·讓渡時期는 代金淸算日 基準

다. 非課稅所得의 調整

(1) 讓渡所得稅 課稅對象인 讓渡의 定義

(2) 公有水面埋立地 讓渡所得稅 非課稅

(3) 工場移轉期間의 延長

라. 不動產賣買業者의 賣買差益의 推計決定

<法人稅篇 參照>

○ 指定寄附金 範圍 調整(規則 第53條의 2)

○ 特別償却 範圍 縮小(令 第92條)

○ 有價證券 讓渡差益(令 第62條)

○ 支給調書代理提出(法 第193條)

○ 非居住者 有價證券讓渡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引下(法 第178條第1項)

○ 寄附後 使用收益하는 寄附資產의 損金處理(規則 第48條)

<租稅減免規制法篇 參照>

○ 農家副業的인 畜產業 範圍 調整(令 第6條의 2)

1. 綜合所得稅率 引下(法 第70條)

종전에 最低 6%에서 最高 60%로 되어있던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를 最高 55%를 基準으로 遞次的으로 下向調整하여 勤勞 및 事業意慾을 鼓吹하고 당면한 經濟活性化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適正稅率에 의한 誠實한 自進申告納付風土를 造成하도록 하였다.

다만, 現行 最低稅率 6%는 世界的으로도 낮은 水準일 뿐만 아니라, 또 最低稅率을 더이상 引下하는 것은 低所得層의 實質所得輕減效果는 미미한 反面 累進稅率構造上 高所得層으로 갈수록 오히려 輕減額이 커지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現行 水準으로 維持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번 改正에서는 當面한 經濟活性化를 위해 높은 所得階層에 대하여는 最高稅率을 5% 포인트 引下하는 것을 基準으로 체차적으로 상당히 큰 幅으로 稅率을 引下하였으며, 高所得層으로 갈수록 오히려 輕減額이 더 커지는 最低稅率의 追加引下나, 最低稅率의 引下時와 똑같은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人的控除額의 引上은 取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問題點이 있는 最低稅率의 引下나, 人的控除額의 引上을 하지 않는 대신에 中產層 이하 所得者에 대하여는 稅率構造調整에 의한 輕減效果 以外에 稅額控除擴大, 勤勞所得控除額 引上, 其他 非課稅되는 所得範圍의 擴大등을 통해 中產層이하 所得者에만 限定해서 追加로 稅負擔이 輕減되도록 하였다.

改正된 綜合所得稅率은 83年度分 綜合所得부터 適用되며 綜合所得 以外의 綜合所得稅率을 基本稅率로 하여 課稅되는 山林所得 및 退職所得에 대하여도 83年度分 所得부터 改正된 稅率을 따르게 된다.

新·舊稅率 對比

改正前		改正	
課標	稅率(%)	課標	稅率(%)
120萬원 이하	6(7.1)	180萬원 이하	6(7.1)
120萬원 초과	7(8.2)	180萬원 초과	8(9.4)
180萬원 〃	8(9.4)	250萬원 〃	10(11.8)
240萬원 〃	10(11.8)	350萬원 〃	12(14.1)
300萬원 〃	12(14.1)	480萬원 〃	15(17.6)
390萬원 〃	15(17.6)	630萬원 〃	18(21.2)
480萬원 〃	18(21.2)	800萬원 〃	21(24.7)
600萬원 〃	22(25.9)	1千萬원 〃	24(30.6)
840萬원 〃	26(33.2)	1千250萬원 〃	27(34.4)
1千140萬원 〃	30(38.3)	1千550萬원 〃	31(39.5)
1千500萬원 〃	34(43.4)	1千900萬원 〃	35(44.6)

改正前		改正	
課標	稅率(%)	課標	稅率(%)
1千900萬원 초과	38(48.5)	2千300萬원 초과	39(49.7)
2千400萬원 〃	42(53.6)	2千900萬원 〃	43(54.8)
3千萬원 〃	46(58.7)	3千700萬원 〃	47(59.9)
3千800萬원 〃	50(63.8)	4千700萬원 〃	51(65.0)
4千800萬원 〃	55(70.1)	6千萬원 〃	55(70.1)
6千萬원 〃	60(76.5)		

( )는 防衛稅·住民稅 포함.

2. 勤勞所得

※ 稅額控除등에 관련된 部分은 이 項에서 事業所得者에 대하여도 같이 說明한다.

가. 中產層이하에 대한 稅額控除 擴大(法 第78條의 4·第78條의 5, 令 第130條의 2·第130條의 3)

(1) 稅額控除 擴大內容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累進稅率構造 아래서 人的控除를 引上하거나 最低稅率을 引下하는 것은 低所得層보다 高所得層의 稅負擔輕減額이 더 커지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를 從前대로 維持하는 대신에 中產層이하로 볼 수 있는 月 50萬원 이하 所得者에게만 追加로 稅負擔輕減效果가 나타나도록 現在 月 40萬원 이하 勤勞者에게만 適用되고 있는 稅額控除制度를 月 50萬원이하 勤勞者까지로 適用을 擴大하였고 稅額控除率도 從前보다 引上調整하였다.

한편 從前에는 事業所得者에게는 稅額控除를 해주지 않았지만 中產層이하 事業所得者의 경우 勤勞所得者와 똑같은 問題點이 있으므로 이번 改正에서는 事業所得者에게도 새로이 稅額控除를 新設하되, 事業所得者는 勤勞所得者와는 달리 所得計算上 必要經費가 認定되는 點을 감안하여 稅額控除率은 勤勞所得者보다 다소 낮은 水準으로 하였다.

稅 額 控 除

區 分	改正前	改正	
	勤勞所得者	勤勞所得者 (擴大)	事業所得者 (新設)
月 30萬원(年 360萬원)이하	20%	30%	10%
月 30萬원(年 360萬원)초과 40萬원(年 480萬원)이하	10	20	5
月 40萬원(年 480萬원)초과 50萬원(年 600萬원)이하	—	10	5

註 : 勤勞所得者는 月所得 基準, 事業所得者는 年所得 基準으로 控除率을 區分함.

(2) 勤勞所得者에 대한 稅額控除

勤勞所得者에 대하여는 每月 給與受領時 簡易稅額表에 의한 每月의 源泉徵收稅額에 改正된 控除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일단 控除하고, 勤勞所得年末精算時에는 各月分控除額의 合計額을 年間 所得稅 算出稅額에서 差減하는 方法으로 控除額도 함께 精算하게 되므로 그 控除稅額計算方法과 控除節次는 종전과 같다. 다만, 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된 賞與(法人所得計算時 益金加算된 金額을 代表者나 株主등이 가져간 것으로 處分한 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勤勞所得稅額控除를 排除하여 中產層이하 所得者에 대한 稅負擔을 輕減시켜 주기 위한 稅額控除制度가 制度本來의 趣旨와는 달리 運用될 素地가 있는 從前 制度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3) 事業所得者에 대한 稅額控除

㉮ 一般事業所得者의 稅額控除

事業所得者는 年間 事業所得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稅額控除率을 適用한다. 다시 말해서 年間 事業所得金額이 360萬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의 10%, 年 360萬원초과 年 600萬원 이하인 경우는 그 算出稅額의 5%를 控除받게 된다. 이 경우 課稅年度중에 事業을 開始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者는 當該年度 事業所得을 12月로 換算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예컨대 8月 1日자로 事業을 開始한 사람이 그 해 말까지의 5個月間 所得金額이 200

萬원인 때에는 이를 年間으로 換算하면 480萬원($200\times\frac{12}{5}=480$)이 되므로 適用控除率은 年間 360萬원초과 600萬원이하 所得金額에 해당하는 5%가 되어 200萬원에 대한 所得稅算出稅額에서 5%를 控除받게 된다. 그리고 事業所得者에 대한 稅額控除時期는 綜合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는 때이며, 또 이 控除는 納稅義務者의 特別한 申請節次가 必要없이 控除되는 것이므로 所得稅申告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政府調査決定時 控除받게 된다.

㉯ 納稅組合員인 事業所得者의 稅額控除

所得稅의 圓滑한 納稅를 도모하기 위해 露店商人·農·畜·水產物販賣業者등 零細商人들은 納稅組合을 組織하여 당해 組合이 組合員의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每月 源泉徵收하여 納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事業所得稅額控除는 組合이 每月 源泉徵收할 때 稅額控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零細商人의 便宜를 도모하였다.

이때 稅額控除率을 適用할 基準所得金額은 稅務署로부터 組合이 3月마다 源泉徵收해야 될 金額으로 통보받은 당해 組合員의 收入金額을 年으로 換算한 金額에 당해 業種의 所得標準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이와같이 하여 每月 源泉徵收할 때 控除받은 稅額은 所得稅確定申告決定時 確定된 事業所得金額 및 算出稅額을 基準으로 해서 控除額도 精算하게 된다.

㉰ 事業所得 以外의 綜合所得이 있는 경우의 控除稅額計算

事業所得 以外에 綜合所得(勤勞所得, 配當所得, 其他所得등)이 함께 있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 算出稅額에 綜合所得중 事業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事業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으로 보아 이에 年間 事業所得金額別로 適用받게 되는 稅額控除率을 곱한 金額을 事業所得控除額으로 한다.

$$\left.\begin{array}{l}\text{綜合所得算出稅額}\times\dfrac{\text{事業所得金額}}{\text{綜合所得金額}}=\text{事業所得에 대한 算出稅額(A)}\\ \text{A}\times\text{事業所得金額別控除率(10\% 또는 5\%)}=\text{事業所得控除額}\end{array}\right\}$$

<適 用 例>

- 改正된 稅額控除規定은 1983年 1月 1日 이후 發生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分부터 適用한다.

나. 勤勞所得控除 引上(法 第61條)

勤勞所得控除는 81年 稅法改正時 定額控除였던 勤勞所得控除와 賞與特別控除(世稱 보너스 控除)를 통합하여 체감식 定率控除로 轉換하면서 控除額의 限度를 最低 年 83萬원에서 最高 年 170萬원까지 認定토록 하였었다. 이것은 最低 54萬원부터 最高 年 106萬원까지로 되어있던 81年 이전의 控除水準과 比較하면 最高限度가 크게 늘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所得稅 最高稅率을 중심으로 所得稅 稅率을 全般的으로 引下하여 全 所得者의 稅負擔을 輕減시키고 있는 點을 고려하여 특히 高所得層에게 더 많은 控除惠澤이 가게 될 上位階級의 勤勞所得控除率과 控除額의 最高限度는 從前水準대로 維持하면서 最低階級의 控除額만을 上向調整하였다. 즉, 從前에 年 88萬원이하 所得分에 대하여는 88萬원 全額, 年 88萬원초과 300萬원이하 所得分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에 20%를 곱한 金額, 年 300萬원초과 所得分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의 10%를 곱한 金額을 모두 합하여 年間 勤勞所得控除額으로 하고, 그 控除額의 最高限度는 年 170萬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던 것을 83年부터는 年 94萬원이하 所得分에 대하여는 94萬원 全額을 控除토록 하여 控除額의 最低限度만을 引上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一般給與所得者의 所得控除調整과 均衡을 維持할 수 있도록 日傭勤勞者의 從前 所得控除額 日 14,100원도 日 15,000원으로 引上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年所得	― 年所得	(計算式)
○ 88萬원이하 所得分 : 全額	○ 94萬원이하 所得分 : 全額	○ 全額控除
○ 88萬원초과 300萬원 이하 所得分 : 20%	○ 94萬원초과 300萬원 이하 所得分 : 20%	○ 年所得×20%+752千원
○ 300萬원초과 所得分 : 10% (最高限度 170萬원)	○ 300萬원초과 所得分 : 10% (最高限度 170萬원)	○ 年所得×10%+1,052千원
※ 日傭勤勞者는 日 14,100원	日傭勤勞者는 日 15,000원	

이와 같이 勤勞所得控除額이 調整됨에 따라 從前에는 本人包含 5人家族이 있는 勤勞者의 경우 月 223千원(年 268萬원)까지는 人的控除(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額과 勤勞所得控除額을 合한 金額에 未達하여 稅金을 낼 것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月 228千원(年 274萬

원)까지는 稅金負擔이 없게 된다. 또 5人家族 勤勞者가 月 228千원을 넘는 給與를 받음으로써 所得稅를 내게 되는 경우에도 改正된 勤勞所得控除에 의하여 月給與 40萬원(年 480萬원)이하 勤勞者에게는 年間 48千원의 所得控除를 引上한 結果가 된다. 改正된 勤勞所得控除를 適用할 경우 各 勤勞所得階級別로 變動되는 所得控除額은 별표와 같다.

勤勞所得控除引上에 따른 所得控除額變動

(單位 : 千원)

所得階級			改正前 所得控除額(年)			改正後 所得控除額(年)			所得控除增加額
月所得	賞與所得(400%)	年間計(月平均)	勤勞所得控除	人的控除(5人家族)	合計	勤勞所得控除	人的控除(5人家族)	合計	
200	800	3,200 (267)	1,324	1,440	2,764	1,372	1,440	2,812	48
300	1,200	4,800 (400)	1,484	1,440	2,924	1,532	1,440	2,972	48
400	1,600	6,400 (533)	1,644	1,440	3,084	1,692	1,440	3,132	48
500	2,000	8,000 (667)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600	2,400	9,600 (800)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700	2,800	11,200 (933)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800	3,200	12,800 (1,067)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900	3,600	14,400 (1,200)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1,000	4,000	16,000 (1,333)	1,700	1,440	3,140	1,700	1,440	3,140	—

이번 稅法改正에서 所得稅負擔變動의 主要原因이 되는 所得稅率引下, 勤勞所得控除調整, 稅額控除 擴大의 3가지 效果를 모두 合하여 勤勞所得者와 綜合所得者의 所得階級別로 稅負擔 輕減內容을 보면 별표와 같다.

所 得 稅 負 擔 變 動

	所得金額	改 正 前		改 正		輕 減	
		負 擔 額	負 擔 率	負 擔 額	負 擔 率	輕 減 額	輕 減 率
勤勞所得	萬원	원	%	원	%	원	%
	月 30	月 3,741	1.2	月 3,076	1.0	月 665	17.8
	40	10,581	3.5	8,635	2.2	1,946	18.4
	50	21,306	4.3	18,048	3.6	3,258	15.3
	70	53,639	7.7	47,881	6.8	5,758	10.7
	100	141,163	14.2	120,232	12.0	20,931	14.8
	150	321,619	21.4	277,121	18.5	44,498	13.8
綜合所得	萬원	千원	%	千원	%	千원	%
	年 500	年 340	6.8	年 303	6.1	年 37	10.9
	1,200	2,258	22.6	1,919	16.0	338	15.0
	3,000	10,511	35.0	9,479	31.6	1,032	9.8
	6,000	29,755	49.6	27,593	46.0	2,162	7.3
	1億	60,263	60.3	55,570	55.6	4,693	7.8
	10億	748,763	74.9	686,695	68.7	62,068	8.3

註) 1) 5人家族 基準

2) 防衛稅·住民稅 包含

3) 輕減內譯 : 稅率引下, 勤勞所得控除引上, 稅額控除 擴大

다. 敎育費控除對象勤勞者 擴大(法 第61條의 4)

종전에는 月給與額이 70萬원 이하인 勤勞者에 대하여만 敎育費控除를 認定하여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를 擴大하여 月給與額의 크기에 關係없이 모든 勤勞者는 本人의 敎育費 또는 子女의 敎育費로 支出한 金額에 대하여 所得控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控除限度額(勤勞者 本人의 敎育費는 全額, 初·中·高校生인 子女를 둔 勤勞者의 경우는 子女 2人까지 1人當 年 12萬원의 敎育費支出額을 限度로 함)은 改正되지 아니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課稅年度 最終月의 月給與額이 70萬원 이하인 勤勞者	모든 勤勞者

라. 非課稅 勤勞所得의 範圍 擴大

(1) 實費辨償的 給與에 대한 非課稅(令 第8條)

(가) 教員이 받는 研究補助費

從來 各級學校 育成會(또는 期成會)가 教員에게 支給하는 研究補助費는 非課稅하여 왔다.

現在 育成會의 現況을 보면 대부분의 各級學校에 組織되어 있지만 國民學校같은데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大都市에만 組織되어 있다. 따라서 6大都市 以外의 國民學校教員에 대하여는 育成會가 組織되어 있지 않은 關係로 育成會가 組織되어 있는 地域의 教員과 研究補助費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國家나 學校財團이 育成會를 대신하여 教員들에게 일부 研究補助費를 支給한다. 그 結果 같은 研究費라 할지라도 育成會가 組織되어 있는 6大都市의 國民學校教員은 研究補助費를 非課稅받고, 6大都市 以外의 國民學校教員은 研究補助費에 대하여 課稅를 받는 不公平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技能大學教員을 包含하여 育成會가 組織되어 있지 아니한 學校의 教員이 支給받는 研究補助費도 月定額給與의 20% 範圍안에서 實費辨償的인 給與로서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育成會가 있는 教育機關의 教員	育成會로부터 받는 研究補助費를 全額 非課稅	現行과 같음
育成會가 없는 教育機關의 教員	國庫나 學校財團으로부터 支給받는 研究補助費(教科指導費, 補塡手當, 加算金 包含)는 勤勞所得으로 課稅	月定額給與의 20% 範圍內의 研究補助費는 實費辨償的 給與로 非課稅

(나) 研究機關從事員의 研究活動費

韓國科學技術院(KAIST), 韓國開發研究院(KDI)등 特定研究機關育成法·其他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研究機關의 研究活動從事員이 支給받는 研究活動費로서 月定額給與의 20% 이하의 金額은 實費辨償的인 給與로서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이 研究活動費를 非課稅하도록 한 것은 事實上 研究活動을 위한 實費辨償費用으로 支給되는 것임을 考慮하는 한편, 海外優秀頭腦를 國家의 政策的인 研究機關에 誘致하는 것을 支援하려는 目的도 있다.

研究活動費가 非課稅되는 政府出捐研究機關

('83. 1. 1 現在)

機關名		設立根據法
韓國開發研究院	KDI	韓國開發研究院法
韓國教育開發院	KEDI	韓國教育開發院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KREI	韓國農村經濟研究院法
韓國產業經濟研究院	KIET	韓國產業經濟研究院法
韓國生產技術事業團	KOPPEC	機械工業振興法
國土開發研究院	KRIS	國土開發研究院育成法
韓國人口保健研究院	KIPH	韓國人口保健研究院法
韓國科學技術院	KAIST	韓國科學技術研究院法
韓國에너지研究所	KAERI	韓國에너지研究所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精神文化研究院法
韓國化學研究所	KRICT	特定研究機關育成法
韓國標準研究所	KSRI	〃
韓國動力資源研究所	KIER	〃
韓國電子研究所	KIT	〃
韓國機械研究所	KIMM	〃
韓國電氣通信研究所	KETRI	〃
韓國人蔘煙草研究所	KGTTRI	〃
國防科學研究所		國防科學研究所法

(2) 福祉厚生的인 給與에 대한 非課稅(令 第12條의 2)

(가) 僻地手當에 대한 非課稅 範圍(規則 第3條의 3)

종래 勤勞者가 鑛山村·섬·無醫面 기타 이와 類似한 곳에 勤務함으로써 支給받는 僻地手當은 非課稅해 오고 있었지만 그 對象地域이 不分明하여 執行上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僻地의 範圍를 公務員 特殊勤務手當 支給對象地域을 準用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地域으로 함으로써 執行上 不分明한 점을 없앴다.

僻地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鑛山村·섬·無醫面 기타 이와 類似한 곳	公務員 特殊勤務地 勤務手當 支給對象地域을 準用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地域

(나)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에 대한 非課稅對象 擴大

종래 月定額給與가 50萬원 이하인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등에 대하여는 非課稅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月定給與額이 50萬원을 초과하는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등에 대하여는 勤勞所得으로서 課稅된다. 그러나 國內企業의 海外事業場에 종사하는 國外勤勞者에 대하여는 月定額給與가 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勤勞者가 海外事業場에서 提供받는 食事에 대하여는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勤勞者가 提供받는 食事에 對한 非課稅

改 正 前	改 正
○ 月定給與額 50萬원 이하의 勤勞者만 非課稅	○ (改正前과 같음) 但, 國外勤勞者의 경우는 모든 勤勞者에 대하여 非課稅

(다) 週休手當 및 生理手當 非課稅(令 第12條의2 第2項第7號)

종전에는 勤勞基準法 및 船員法에 의하여 支給받는 年·月次手當만 福祉厚生的 給與로 非課稅되어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週休日이나 生理休暇日에 쉬지 않고 勤務한 勤勞者가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通常賃金에 加算하여 支給받는 手當도 非課稅되는 福祉厚生的 給與에 追加하였다. 다시 말해서 勤勞基準法에 의하면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해 一週日에 1日이상의 有給休暇를 주고, 女性勤勞者가 生理休暇를 請求할 때는 月 1日의 有給休暇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有給休暇日에 勤勞者가 休日을 갖지 않고 勤務를 한 경우에는 通常賃金의 50% 이상을 加算하여 休日勤務手當으로 주게 되며 이 休日勤務手當을 福祉厚生的 給與로서 非課稅한다. 이때 週休는 月曆上의 日曜日 또는 國慶日등 公休日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各 企業이 勤勞基準法에 의거 一週日에 하루이상 쉬기로 정해놓고 있는 날을 말한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勤勞基準法의 의한		
○ 年·月次手當	非 課 稅	非 課 稅
○ 週休日 勤勞手當	課　　稅	非 課 稅
生理休暇日 勤務手當		

(라) 優秀勤勞者가 받는 賞金에 대한 非課稅 調整(令 第12條의2 第2項第9號)

종전에는 職場새마을運動推進實績이 우수한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賞金에 대하여만 限度規定없이 非課稅하여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와 비슷한 優秀勤勞者에게 支給하는 賞金에 대하여도 非課稅하도록 하는 한편 非課稅 限度額을 規定하였다. 즉, 職場새마을運動 또는 産業災害根絶運動의 推進實績에 따라 主務部長官 이상의 表彰을 받은 從業員 및 主務部長官이 인정하는 國內外 技能競技大會에 入賞한 從業員에게 支給하는 賞金으로서 1人當 年 15萬원 이하의 金額에 대하여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3) 國外勤勞所得控除對象인 外國航行船舶의 船員範圍調整(令 第16條)

종래 船員이 遠洋漁業船舶 또는 外國航行의 船舶에서 勤勞를 提供하고 받는 報酬中 月 50萬원까지는 非課稅하되 모든 遠洋漁船이나 外國航行船舶의 모든 船員에 대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라, 300톤 이상의 船舶의 船員에 대하여만 非課稅하여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船舶의 크기에 關係없이 모든 遠洋漁業船舶과 外國航行船舶의 全員에 대하여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4) 經費의 補塡으로 보아 勤勞所得에서 除外하는 것(令 第43條)

(가) 20萬원 이하의 自家運轉補助金

從業員의 所有車輛을 從業員이 直接 運轉하여 使用主의 業務遂行에 利用하고 그 所要經費를 당해 事業體의 規定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支給基準에 따라 支給받는 金額으로서 月 20萬원의 範圍안의 金額은 勤勞所得에 合算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近來에 自家用車輛의 보급이 늘어나고 企業이나 使用主는 經費節減의 하나로서 從業員의 自家用車輛을 企業의 業務用으로 使用하고 그에 대한 經費를 月定額 또는 實額에 의하여 보전하여 주는 事例가 많은데, 이때 從業員에게 支給된 自家運轉補助金이 業務를 위해 使用된 事實이 證憑에 의하여 밝혀지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勤勞所得으로서 課稅된다. 그러나 業務에 使用하였음을 일일이 證憑을 갖추어 밝히는 것은 現實的으로 매우 어렵고, 不可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自家運轉補助金으로서 月 20萬원까지는 從業員이 負擔한 기업(또는 使用主)의 業務用經費의 보전으로 보아 課稅所得에서 除外한 것이다.

(나) 團體定期災害保險料

使用者가 從業員을 위하여 負擔한 團體定期災害保險料로서 年 12萬원 이하의 金額은 勤勞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團體定期災害保險이란 災害로 인한 從業員의 死亡과 상해를 保險金의 支給事由로 하고 從業員를 被保險者와 수익자로 하여 만기에 納入保險料를 還給받지 아니하는 保險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從業員이 保險契約者이거나 從業員 또는 그 家族을 保險收益者로 하는 保險의 保險料를 使用者가 支給하는 경우에 이는 從業員의 勤勞所得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勤勞所得稅가 課稅된다.

따라서 使用者가 從業員을 위하여 負擔한 團體定期災害保險料의 경우도 勤勞所得으로서 課稅하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아직 社會保障制度가 完備되지 못한 점을 考慮하여 勤勞所得課稅對象에서 除外한 것이다.

한편, 企業이 團體定期災害保險料를 支給한 경우에 이는 必要經費로서 認定된다.

3. 利子·配當所得(金融資產所得)

가. 非課稅利子所得을 課稅로 轉換

所得의 種類	改正前	改正
— 國公債利子 産業復興國債, 徵發補償證券, 電信電話債券, 國民住宅債券, 道路公債, 上水道公債, 地下鐵公債의 利子	非課稅	10% 分離課稅
— 土地開發債券의 利子	非課稅	10% 分離課稅
— 預金利子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優待家計特別定期積金, 納稅貯蓄組合預金의 利子	非課稅	10% 分離課稅
— 還買條件附證券賣買差益	—課稅對象이 아님	10% 分離課稅

(1) 國·公債利子·土地開發債券의 利子(法 第5條, 令 第5條·第194條)

'80年 稅法改正時 過去 所得稅가 非課稅되어 오던 國·公債, 金融債등 대부분의 各種債券利子를 課稅로 轉換하면서 強制添加消化되거나 당시 市中利子率에 비하여 그 利子率도 낮은 産業復興國債, 徵發補償證券, 電信電話債券, 國民住宅債券, 道路公債, 上水道公債, 地下鐵公債등 7種의 國·公債와 特殊債인 土地開發債券은 계속 非課稅로 存置시켰었다.

그러나, 이들 強制添加消化 國·公債利子는 처음 그 債券을 사간 사람, 즉 添加消化者가 계속 保有하는 例는 드물고 그 즉시 헐값에 專門債券去來者 손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며, 그간 銀行預金利子率도 계속 引下調整되어 이러한 國·公債利子率과의 큰 격차도 줄어들었고, 또한 財政證券·糧穀證券등 이미 課稅로 轉換되어 있는 國·公債와 課稅上 中立性을 維持할 必要가 있어, 非課稅되는 債券利子로 남아있던 産業復興國債등 強制添加消化되는 國·公債 7種과 土地開發債券의 利子에 대해서도 10%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適 用 例>

○ '83. 1. 1前에 이미 發行된 從前의 非課稅債券의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82. 12. 31이전에 發行된 國民住宅債券등의 利子를 '83. 1. 1이후에 받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非課稅받을 수 있다.

※ 電信電話債券에 대한 課稅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國家가 發行한 電信電話債券의 利子는 앞으로 언제 償還받더라도 그 利子에 대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되나 82年 1月 1日字로 設立된 韓國電氣通信公社가 82年 1月 1日 이후에 發行한 電信電話債券의 利子는 非課稅되지 않고 所得稅가 10%로 分離課稅된다(令 附則 第6條).

(2)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등의 利子(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第2條)

종래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우대가계특별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少額의 가계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세대별로 一定限度額의 범위안에서 非課稅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預·積金은 세대별 非課稅限度를 사실상 관리하기 곤란하며 또 金利가 같고 限度管理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이미 10% 分離課稅되고 있는 家計綜合預金利子등 다른 金融資產所得과의 課稅上 公平을 이룰 必要가 있기 때문에 10%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한편 納稅貯蓄組合預金利子에 대한 非課稅는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金融資產에 비하여 지나친 惠澤이기 때문에 非課稅制度를 廢止하였다.

즉 최근에는 金融機關의 金融技法開發로 家計綜合預金등 대부분의 다른 貯蓄도 各種 稅金·公課金으로 自動 移替納付되고 있어 特定預金口座에 限定하여 稅金輕減惠澤을 주는 것은 不合理하고 課稅公平性도 잃고 있으므로 納稅貯蓄組合預金의 利子에 대한 非課稅를 廢止하였다.

또한 納稅貯蓄組合預金에 대하여는 그 利子가 非課稅되는 惠澤以外에 同口座預金으로 稅金을 納付한 事業者에게는 稅額控除의 惠澤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稅額控除惠澤도 廢止토록 하였다.

(租稅控除廢止에 대하여는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篇 참조)

<適 用 例>

'83. 1. 1이후 發生된 利子부터 改正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82. 12. 31이전에 발생한 利子를 '83. 1. 1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非課稅한다.

(3) 還買條件附債券賣買差益(法 第17條, 令 第27條의 2)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個人의 證券賣買差益에 대하여는 資本市場의 育成이라는 측면에서 課稅하지 않고 있다. (不動產을 過多保有한 法人의 寡占株主가 株式을 讓渡할 때만 不動產讓渡所得稅 回避를 防止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課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래 還買條件附債券差益은 실질에 있어서는 約定利率에 따라 利子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有價證券賣買形式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稅法上으로도 利子所得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難點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實質이 利子所得인 이상 다른 利子所得에 대하여 모두 課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公平하지 못함으로 이번 改正에서는 還買條件附債券賣買差額을 利子所得으로서 10% 源泉徵收稅率로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具體的으로 利子所得으로 課稅되는 還賣條件附賣買差益은 證券會社등이 還買期間에 따른 事前約定利率을 適用하여 還買收 또는 還買渡할 것을 條件으로 賣買하는 債券 또는 證券의 賣買差益을 말한다.

<適 用 例>

還買條件附賣買差益은 1983. 1. 1이후 發生하는 分부터 利子所得으로 分離課稅받게 된다.

改　　正　　前	改　　正
證券賣買差益으로 보아 非課稅	利子所得으로 課稅

나. 無記名·假名·金融資產所得에 대한 差等課稅(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第4條)

– 差等課稅內容

– 實名에 의하지 아니하는 金融資產所得중 分離課稅되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差等課稅함.

○ 83. 7. 1부터는 소득세법에 의한 分離課稅源泉徵收稅率의 50%를 加算

○ 85. 1. 1부터는 소득세법에 의한 分離課稅源泉徵收稅率의 100%를 加算

※ 구체적인 內容은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편 참조

다. 紙上配當課稅 緩和

이번 改正에서는 기업의 內部留保를 높여 自己金融機能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財務構造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非上場法人(의 株主)에게 課稅되는 紙上配當課稅(正確하게 말해서 非上場法人의 株主에게 紙上配當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稅를 課稅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대부분의 경우 株主의 紙上配當稅는 法人이 代身 물어주고 있다)를 緩和하였다.

그러나 모든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一律的으로 무조건 紙上配當課稅緩和를 통해 企業을 健實化하려는 위와 같은 目的達成이 어렵고 非上場法人株主의 配當課稅를 緩和할 때는 紙上配當綜合所得稅 回避手段으로만 利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改正에서는 紙上配當課稅를 緩和하더라도 企業健實化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紙上配當免稅點算定基準에 資本金基準을 도입하고 財務構造改善積立金制度를 新設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1) 適正留保額(지상배당면세점) 算定基準에 資本金基準 導入(法 第26條)

○ 紙上配當所得의 計算

改 正 前	改 正
○ 紙上配當所得金額 ＝留保所得－適正留保額 ○ 適正留保額 • 配當可能利益의 50%	○ 紙上配當所得金額 ＝留保所得－適正留保額 ○ 適正留保額－다음 중 큰 金額 • 配當可能利益의 50% • 資本金(100억 한도)의 5%

이번 改正에서 紙上配當課稅의 免稅點 算定基準에 資本金의 5%를 追加하였다. 現行 紙上配當課稅의 免稅點인 適正留保水準은 配當可能利益의 50%로 單一基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資本金에 비해 利益率이 낮아 실지로 配當할 餘力이 없는 法人에게까지 利益率이 높은 法人과 같은 率의 紙上配當稅負擔을 지우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러한 點을 고려하여 적정유보액 산정기준에 자본금기준을 추가함으로써 資本利益率이 5%이하인 企業은 紙上配當稅를 물지 않도록 하여 收益率에 따른 紙上配當稅 負擔을 合理的으로 調整하는 한편 資本金이 클수록 紙上配當課稅의 免稅點이 높아지게 하여 間接的으로 增資를 통한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도록 한 것이다.

<適 用 例>

改正基準에 의한 紙上配當計算은 1983. 1. 1이후 法人의 決算이 確定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82. 1. 1~82. 12. 31인 법인의 경우 82사업연도의 결산은 一般的으로 83年 2月중에 確定되므로 이때 지상배당소득계산은 改正된 규정에 의한다.

○ 紙上配當所得計算 比較

區 分	資本利益率이 5% 이상인 法人		資本利益率이 5% 이하인 法人	
	改 正 前	改 正 後	改 正 前	改 正 後
○ 資 本 金	50억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 留 保 所 得 ①	5 〃	5 〃	5 〃	5 〃
○ 適 正 留 保 額 ② 다음중 많은 것	2.5 〃	2.5 〃	2.5 〃	2.5 〃
• 配當可能利益의 60%	2.5 〃	2.5 〃	2.5 〃	2.5 〃
• 資本金의 5%	—	2.5 〃	—	5 〃
○ 紙 上 配 當 課 稅 對 象 所 得 (① — ②)	2.5 〃	2.5 〃	2.5 〃	0 〃

(2) 財務構造改善積立金 積立時 紙上配當稅免除(租稅減免規制法 第56條의 2, 同令 第46條의 2)

紙上配當金額의 20% 범위안에서 財務構造改善積立金을 積立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대하여는 紙上配當 課稅를 免除함으로써 紙上配當免稅點을 現行 50%에서 60%로 引上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紙上配當輕減額을 企業主가 社外로 流出시키는 것을 막아 增資등 실질적인 財務構造改善에 사용토록 유도하였다.

① 積立限度額

소득세법 第26條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紙上配當所得金額의 20% 범위안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積立累積限度額은 資本金의 50%까지이다.

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紙上配當所得金額에서 당해 財務構造改善積立金을 공제한 금액을 지상배당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積立時期

法人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시 利益處分을 할 때 적립하여야 한다.

③ 積立金의 處分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하는 이외에는 處分하여서는 안되며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위의 用途外로 處分하는 경우에는 處分金額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出資者들에게 配當한 것으로 보며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法人의 法人稅에 가산하여 徵收한다.

法人稅에 加算한 稅額	=	用途外 處分金額	×	0.3%	×	積立日로부터 處分日까지의 月數

<適 用 例>

83. 1. 1이후 최초로 財務構造改善積立金을 積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83. 1. 1이후 법인의 결산이 確定되어 當該事業年度의 利益處分으로 財務構造改善積立金을 積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財務構造改善積立金 積立時 紙上配當所得計算 比較

區 分	積立하는 경우	積立하지 않은 경우
① 資 本 金	100億	100億
② 留保所得	900百萬	900百萬
③ 適正留保額	500百萬	500百萬
다음중 많은 것		
• 配當可能利益의 50%	②×50%=450	좌 동
• 資本金의 5%	①× 5%=500	
④ 財務構造改善積立金 控除前 紙上配當(②-③)	400百萬	400百萬
⑤ 財務構造改善積立金	80 〔④×20%=80〕	-
⑥ 紙上配當課稅對象所得 (④-⑤)	320百萬	400百萬

(3) 紙上配當所得 收入時期등의 調整(令 第57條·第195條)

從前의 경우 同一紙上配當所得이 法人의 歸屬時期規定과 施行令에 규정된 收入時期가 一致하지 않는 不合理한 點이 있어 歸屬時期와 收入時期를 法人決算確定日로 一致시켰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歸 屬 時 期	決算確定日 (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45日內)	決算確定日
收 入 時 期	法人稅課稅標準申告日	決算確定日
支 給 時 期	法人稅課稅標準申告日	法人稅課稅標準申告日

라. 配當稅額控除率 調整(法 第71條)

配當稅額控除制度는 同一所得에 대한 法人段階課稅와 株主個人段階課稅의 二重負擔을 調整하여 주기 위한 制度이다. 從前에는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에 따라 控除에 差等을 두고 있어 稅負擔에 不公平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上場·非上場에 따른 差等控除를 廢止하여 單一化하는 한편 法人稅率이 대폭 引下되는 것에 맞춰 二重負擔의 조정장치인 配當稅額控除도 그 引下幅만큼 控除率을 引下調整하였다.

또한 株式을 上場할 能力이 있으면서도 株式을 上場하지 아니하는 非上場大法人으로부터의 配當에 대하여는 配當稅額控除를 하여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非上場法人이라 함은 資本金이 50억원이상이거나, 自己資本이 100억원이상인 法人을 말하며 非上場大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에 대해 配當稅額控除를 排除토록 한 것은 公開할 餘力이 있는 法人의 公開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非上場大法人에 대해 法人稅率을 높은 稅率로 課稅토록 한 것과 그 趣旨가 同一하다(非上場大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非上場大法人의 範圍篇 參照).

<適 用 例>

改正된 규정은 84. 1. 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配當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83. 12. 31까지 지급받는 配當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配當稅額控除를 한다.

改　　正　　前	改　　正
○ 非上場法人으로부터의 配當 配當金 ┌ 3,000萬원이하 : 10% 　　└ 3,000萬원초과 : 5% ○ 上場法人으로부터의 配當 配當金의 15% (83. 12. 31까지 適用)	配當金 ┌ 1,000萬원이하 : 8% 　　└ 1,000萬원초과 : 4% 단, 非上場大法人으로부터의 配當에 대하여는 配當稅額控除 廢止 (84. 1. 1이후의 配當金부터 適用)

마. 利子·配當에 대한 源泉徵收關聯規定 補完

(2) 短資會社가 仲介한 어음利子分離課稅新設(法 第144條)

從前에는 단기금융회사(短資社)등이 發行·引受·保證·賣買한 어음의 利子에 대하여만 10% 分離課稅하던 것을 그 외에도 단자사등이 仲介하는 어음의 利子에 대하여도 10% 分離課稅하도록 이번에 追加하였다.

현재는 단기금융회사등을 통한 어음仲介制度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는 信用있는 企業이 단기금융회사등의 仲介를 통하여 단기운전자금을 私債市場에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私金融을 制度金融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改　　正　　前	改　　正
短期金融會社등이 發行·引受·保證·賣買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의 利子는 10% 分離課稅源泉徵收	短期金融會社등이 發行·引受·保證·賣買하거나 仲介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의 利子는 10% 分離課稅源泉徵收

(2) 源泉徵收時期 및 利子所得支給時期補完(法 第146條의 2, 令 第194條의 2)

短資社등이 割引賣買하는 어음등의 利子支給時期는 從前의 경우에도 金融慣例에 따라 割引賣出하는 날 利子所得에 대하여 源泉徵收하고 있던 것을 이번 改正에서 法令으로 分明히 定하였다.

(3) 分離課稅利子·配當源泉徵收簿 備置制度 新設

分離課稅利子·配當을 지급하는 金融機關등은 分離課稅利子·配當에 대한 源泉徵收簿를 비치·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理由는 從來 分離課稅利子·配當은 10%의 單一稅率이 적용되었으나, 83. 7. 1부터는 分離課稅利子·配當일지라도 實名與否에 따라 實名은 10%, 實名이 아닌 것은 15%로 差等化함에 따라 이에 맞는 源泉徵收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며 實名與否에 따른 差等源泉徵收履行을 管理하기 위하여 分離課稅利子·配當源泉徵收簿를 비치·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短資會社등이 賣出·仲介하는 어음의 利子와 割引額	約定에 의한 償還日	割引賣出하는 날

(4) 金融機關의 預金에 대한 質問調査排除規定 削除(法 第201條第2項)

종래 「預金·積金등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預·積金의 內容 및 去來者의 秘密을 保障하여 주고 또한 稅法의 規定에 의해서도 金融機關에 預金한 사람의 個人別 預金額 및 利子所得源泉徵收狀況에 대한 稅務調査를 위한 質問·調査를 排除하였으나 '83. 1. 1부터는 「預金·積金등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이 廢止되고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金融去來도 實名에 의하도록 되었고 또한 租稅에 관련하여 質問·檢査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從前의 稅法上 金融機關의 預金 및 源泉徵收狀況에 대한 質問·調査排除規定도 削除하였다.

4.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制度改善등 其他事項

가. 不動產賃貸業에 대한 總收入金額計算方法 改善

從前 不動產賃貸所得者가 保證金·傳貰金을 받는 경우에 推計調査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 保證金 또는 傳貰金에 當該年度 終了日(12月末) 현재의 1년짜리 定期預金利子率을 곱한 金額을 그 所得者의 收入金額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不動產賃貸所得者가 물어야 하는 附加價値稅는 그 課稅標準(收入金額)을 計算함에 있어 附加價値稅 豫定申告期間(3月末, 9月末) 또는 確定申告期間 終了日(6月末, 12月末) 현재의 1년짜리 定期預金 利子率을 保證金·傳貰金에 곱하도록 하고 있어(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49條의 2 第1項) 不動產賃貸所得者은 收入金額計算上 所得稅法과 附加價値稅法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所得稅의 課稅期間은 曆年단위인 1年이고,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6月(豫定申告期間은 3月)로 各法이 규정하고 있는데서 發生된 것이기는 하나 推計決定하는 경우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으로 決定된 收入金額이 所得稅決定時에도 所得金額計算上 收入金額으로 前提가 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양법상 收入金額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 納稅者나 稅務行政上 不便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附加價値稅法上 計算한 收入金額의 年間合計額을 不動產賃貸所得者의 所得稅 決定時의 收入金額으로 하도록 하여 附加價値稅의 경우와 一致시킴으로써 所得稅課稅年度中에 銀行定期預金 利子率이 變更되더라도 不動產賃貸收入金額算定에 있어 適用되는 利子率이 相互一致되지 않는 不合理한 點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改正의 뜻은 推計調査決定을 하는 경우 所得稅法上 不動產賃貸所得者의 收入金額 計算方法을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方式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不動產賃貸事業, 예컨대 住宅, 林野, 果樹園, 牧場用地, 염전 賃貸의 경우에도 收入金額을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경우와 똑같이 計算하여 所得稅를 課稅하면 된다.

<適 用 例>

1983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여 金利變動이 심하였던 '82課稅年度分부터 適用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 帳簿備置 및 記帳義務制度 改正

(1) 簡易帳簿義務 기준액 인상(法 第184條)

지난 81年 稅法改正時 간이장부의무기준액을 直前課稅期間 收入金額 6,000萬원에서 8,000萬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간이장부의무기준액을 더 인상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이상인 자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이하인 자는 日記帳만을 기장하게 되었다.

일기장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에 세액의 10%를 記帳稅額控除로서 받게되며, 帳簿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간이장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기장의무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은 종전과 같다.

區 分	82年	83年
複式簿記義務者	2억5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이상
簡易帳簿義務者	8,000만원이상	1억원이상
日記帳義務者	8,000만원미만	1억원미만

(2) 業種에 맞는 帳簿組織(標準帳簿)의 制定(令 第220條)

종전에는 所得稅法의 규정에 의한 簡易帳簿義務者나 日記帳義務者가 備置·記帳할 帳簿는 所得稅法施行規則에서 具體的으로 그 樣式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同樣式에 의한 帳簿는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한 樣式과 二元的 體系를 이루고 있었고, 또 所得稅法施行規則에서는 業種別로 現實에 맞는 樣式을 정해 주기가 어려워 全業種이 공통적으로 使用하는 帳簿樣式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一部業種에 있어서는 法定樣式에 따르더라도 완벽한 所得金額算定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簡易帳簿義務者나 日記帳義務者가 記帳할 帳簿의 內容만을 所得稅法施行令에서 정하고 具體的인 帳簿의 樣式은 國稅廳長이 정하도록 하여 國稅廳長은 所得稅法施行令이 정한 事項과 內容을 포괄할 수 있는 限 各業種別 特性에 맞는 樣式(業種別 標準帳簿)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特定業種의 事業者가 國稅廳長이 정한 하나의 標準帳簿만 記帳하여도 所得稅法과 附加價値稅法이 規定하는 帳簿備置·記帳을 充足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制度的 뒷받침을 받아 標準帳簿를 制定하여 納稅者의 便宜를 돕고 있는데 83. 1. 1현재 국세청장이 정해 놓은 標準帳簿를 보면 다음과 같다.

<簡易帳簿>

業種別標準帳簿	
業種別	帳簿
製造業	○ 買入賣出帳 ○ 經費帳 ○ 原材料受拂簿 ○ 製品受拂簿 ○ 固定資產臺帳(備忘記錄)
販賣業	○ 買入賣出帳 ○ 經費帳 ○ 商品受拂簿 ○ 固定資產臺帳(備忘記錄)
서비스 및 用役業	○ 收入 및 經費帳 ○ 固定資產臺帳(備忘記錄)

<日記帳>

業種別標準帳簿	
業種別	帳簿
製造業	○ 收入 및 經費帳 ○ 原材料買入 및 生產量記錄簿 ○ 固定資產臺帳(備忘記錄)
販賣業	○ 收入 및 經費帳 ○ 實地在庫調査表 ○ 固定資產臺帳(備忘記錄)
서비스 및 用役業	○ 簡易記帳義務者와 同一

다.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廢止(法 第77條, 令 第129條)

從前 不動產所得者 또는 事業所得者로서 納稅貯蓄組合을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金融機關에 納稅貯蓄을 한 자에게는 金融機關에 3月이상 계속하여 貯蓄된 納稅貯蓄金額으로 所得稅를 納付한 金額에 대하여 簡易帳簿義務者는 5% 日記帳義務者는 10%를 綜合所得稅에서 控除하여왔다.

본래 이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는 貯蓄奬勵와 함께 稅金納期에 一時的인 資金壓迫을 分散시킴으로써 稅金納付도 원활하게 할 目的으로 認定된 것인데, 그 對象者를 不動產所得者나 事業所得者만 對象으로 限定하고 있어 所得者別로 不公平을 招來할 뿐 아니라, 이 제도를 利用하는 納稅者는 零細事業者보다는 비교적 여유있는 事業者가 節稅手段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또한 納稅貯蓄預金에 대한 지나친 租稅特惠는 預金種類間에 實質利子率體系를 歪曲시켜 다른 種類의 預金을 納稅貯蓄預金으로 代替시키는 結果까지 招來하는 등의 問題點이 派生되기도 하여 이번 改正에서 이를 廢止하였다.

즉 최근에는 金融機關의 金融技法開發로 家計綜合預金등 대부분의 다른 貯蓄도 各種 稅金·公課金으로 自動移替納付되고 있어 特別口座에 限定하여 稅金輕減惠澤을 주는 것은 不合理하고 課稅公平性도 잃고 있으므로 納稅貯蓄預金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廢止하였다.

<經過措置>

- 83. 1. 1現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預入된 納稅貯蓄으로서 83. 5. 31까지 소득세로 納稅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稅額控除를 適用한다.

라. 稅額控除順位 調整(法 第79條)

종전 稅額控除順位는 各 稅額控除의 성질이나 특성과는 관계없이 所得稅法 條文配列順序에 의하여 控除順位를 정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各稅額控除를 性質別로 分類하여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거 稅額控除順位를 정하였다.

첫째, 外國納付稅額控除, 配當稅額控除와의 같이 二重課稅 調整目的의 성질이 있는 稅額控除

둘째, 勤勞所得稅額控除, 事業所得稅額控除와 같이 中產層이하 低所得層에 優先惠澤을 주는 稅額控除

셋째, 記帳稅額控除와 같이 根據課稅를 誘導하고 稅政協力에 대한 惠澤의 性質이 있는 稅額控除

넷째, 貯蓄稅額控除, 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 災害損失稅額控除,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稅額控除와 같이 기타 임시적인 稅額控除의 순서를 調整하였다.

<稅額控除順位>

改 正 前	改 正
1. 配當稅額控除	1. 外國納付稅額控除
2. 勤勞所得稅額控除	2. 配當稅額控除
3. 記帳稅額控除	3. 勤勞所得稅額控除
4. 貯蓄稅額控除	4. 事業所得稅額控除
5. 住宅資金稅額控除	5. 記帳稅額控除
6. 外國納付稅額控除	6. 貯蓄稅額控除
7.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7. 國外勤勞所得稅額控除
8. 災害損失稅額控除	8. 災害損失稅額控除
9. 臨時投資稅額控除	9. 租稅減免規制法의 의한 稅額控除

마.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制度補完(令 第190條)

종래 「음악, 재단, 무용, 요리 및 바둑교사」와 「직업운동가, 力士, 騎手, 운동지도가」의 자유직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유직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지급하는 者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음악교사등」과 「직업운동가동」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음악교사등」과 「직업운동가등」에 자유직업소득 지급시 누구나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사업가나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만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접대부·댄서등」에게 自由職業所得(소위 "팁")을 지급할 때도 支給하는 사람은 누구나 源泉徵收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制度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 源泉徵收義務도 事業者나 法人으로 限定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접대부·댄서의 자유직업소득 지급시는 누구나 원천징수함	사업자·법인이 지급시만 원천징수
– 다음 자유직업소득지급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음악·재단·무용·요리 및 바둑교사의 자유직업소득 • 직업운동가·力士·騎手·운동지도가의 자유직업소득	사업자·법인이 지급시는 원천징수함

5. 讓渡所得法

讓渡差益 = 讓渡價額 – 取得價額 – 附帶費用

讓渡差益은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의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所得額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稅金을 내게되므로 公平課稅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實地去來價額을 申告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告示한 地方稅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었고 8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에 있어서 課稅件數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만이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였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종래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이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무관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申告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은 實地去來價額을 확인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實地去來價額의 확인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납세마찰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解消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은 原則的으로 정부가 정한 基準時價(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附帶費用 控除에 있어서도 槪算控除制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支出證憑을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액까지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양도소득세 課稅方法을 간편히 하고 制度를 納稅現實에 맞도록 고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마찰과 納稅不條理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課稅節次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여 行政의 能率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가. 讓渡差益의 計算方法 改善

(1) 取得·讓渡價額은 原則的으로 基準時價에 의함(法 第23條·第45條, 令 第170條)

<改正內容>

改　　正　　前	改　　正
양도·취득가액은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것이 原則 단,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는 基準時價	- 양도·취득가액은 基準時價에 의하는 것이 原則 단,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는 實地去來價額

종전에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實地去來價額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實地去來價額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의 확인조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번 改正에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基準時價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法人과의 거래에 있어서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去來 기타 不動產投機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讓渡 또는 取得當時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讓渡者가 讓渡所得稅豫定申告 또는 所得稅確定申告한 경우에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取得 및 讓渡當時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장이 讓渡差益을 결정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은 다같은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즉, 양쪽 모두를 實地去來價額에 의하거나, 양쪽 모두를 基準時價에 의하여야 한다. (令 第170條第1項)

그러나 앞의 ①, ②의 경우로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중 어느 하나의 實地去來價額을 確認할 수 없는 때에는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實地去來價額에 의하고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基準時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이 경우는 一方만을 實地去來價額(소위 「짝짝이 課稅」)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앞의 ③의 경우 즉 讓渡者가 스스로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申告한 경우에는 取得 및 讓渡當時의 實地去來價額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모두를 基準時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소위「짝짝이 課稅」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증빙을 提出받은 날로부터 1月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양도자에게 通知하고 更正할 사항은 更正하여야 한다.

(2) 基準時價의 決定(令 第115條)

○ 讓渡·取得時의 時價標準額이 같은 경우의 讓渡價額計算方法

地方稅의 課稅時價 標準額은 土地는 年 2回, 建物은 年 1回 決定 告示한다.

例를 들어 土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每年 1月 1日과 7月 1日에 決定告示하는 경우에 있어 8月 1日에 土地를 取得하여 같은 해 10月 31日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取得時의 時價標準額이나 讓渡時의 時價標準額은 같다. 따라서 이와같은 短期去來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讓渡差益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基準時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그 결과 短期賣買差益을 노린 부동산 去來를 조장하게 되고, 不動產 투기꾼들이 이를 惡用하여 양도소득세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制度上의 결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補完하여 市價標準額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讓渡時의 基準時價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text{讓渡時의 基準時價} = \text{取得時의 時價標準額} + \frac{(\text{취득시의 시가표준액} - \text{前期시가표준금액})}{\text{시가표준액調整月數}} \times \text{당해자산 保有月數}$$

事 例

다음의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 時價標準額 83年 1月 1日 決定告示 된 것 : 1,000萬원

83年 7月 1日 〃 1,500萬원

○ 取得日 83. 8. 1

○ 讓渡日 83. 10. 31

讓渡價額의 計算

○ 양도자산 保有月數 3月

○ 양도시의 시가표준액

$$= 1{,}500萬원 + \frac{1{,}500萬원 - 1{,}000萬원}{6月} \times 3월$$

$$= 1{,}500萬원 + 250萬원 = 1{,}750萬원$$

② 不動產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의 基準時價

종전에는 不動產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예 : 아파트프리미엄)에 대한 기준시가는 土地나 건물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建物이나 土地에 대한 基準時價와 같은 方法으로 評價	양도자산의 種類·規模·去來狀況·賣買實例價額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評價한 價額에 의함

③ 法人등과의 去來時 基準時價

國家, 法人등과의 去來로서 취득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만 實地去來價額이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基準時價에 의한다. 이 경우에 基準時價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에 인근지역의 地價上昇率을 감안하여 計算한 價額으로 한다.

(3) 必要經費槪算控除 新設(令 第94條)

改 正 前	改 正
○ 支出證憑에 의하여 必要經費 인정	○ 槪算控除制度 新設 取得時의 基準時價에 다음 金額을 加算한 金額을 必要經費로 인정 ① 土地·建物(未登記資產은 제외)전세권 등 基準時價의 7% ② 其他資產, 未登記資產의 경우 基準時價의 1% ○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는 증빙에 의하여 必要經費全額 인정

讓渡差益은 양도자산의 讓渡價額에서 그 필요경비인 取得價額과 附帶費用(설비비 및 개량비·資本的支出額 및 讓渡費用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같은 必要經費를 控除받기 위하여는 支出證憑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과세를 위하여 몇 年間을 계속하여 保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讓渡取得價額은 證憑이 없거나 不分明하여 基準時價에 의하면서도 取得價額 이외의 必要經費 즉 附帶經費은 실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控除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取得當時의 基準時價에 그 基準時價의 7%(未登記資產등의 경우는 1%)를 必要經費로 무조건 인정하여 주도록 하였다.

① 讓渡者가 양도소득세豫定申告 또는 所得稅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豫定決定通知후 確定申告期間 이전에 증빙서류를 提出하여 실지거래가액이 確定되는 경우는 제외함)

② 讓渡者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必要經費의 實地支給額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경우

그러나 讓渡·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로 지급한 附帶費用이 취득당시 基準時價의 7%를 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실지지급액 金額을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

<事　例>

土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차익은?

(豫定申告나 確定申告는 하지 아니하였음)

○ 취득시의 時價標準額 5,000萬원(實地去來價額 7,000萬원)

○ 양도시의 〃 7,000萬원(〃 1億원)

※ 양도차익

	등기된 資產의 경우	未登記의 경우
양 도 가 액	7,000萬원	7,000萬원
취 득 가 액	5,000萬원	5,000萬원
필 요 경 비	350萬원	50萬원
양 도 차 익	1,650萬원	1,950萬원

<參　考> 概算控除率(7%, 1%)의 산출근거

① 土地·建物등의 경우 : 7%

취득세 + 등록세 + 방위세 + 복덕방비용 = 7%

2%　　3%　　0.6%　　1.4%

② 未登記資產 영업권등 其他資產 : 1%

登記費用이 들지 아니하므로 양도비용으로서 1%만 인정

(4) 讓渡所得特別控除계산시의 取得價額(令 第46條)

讓渡所得特別控除額(物價上昇控除)은 取得價額에 都賣物價上昇率에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의 取得價額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改　正　前	改　正
○ 取得價額은 당해자산의 取得에 所要한 實地去來價額에 設備費·改良費의 資本的 支出額등의 합계액	○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는 改正前과 같으나 ○ 取得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함

즉 취득가액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등은 必要經費로서 공제는 되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등에 대하여는 物價上昇控除를 받을 수 없다.

(5) 高級住宅에 대한 讓渡所得金額計算方法 改善(法 第23條, 第46條의 2)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非課稅되지만 高級住宅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高級住宅의 基準인 5,000萬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高級住宅 전체의 讓渡差益중 5,000萬원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非課稅한다.

그러면서도 종래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계산시 비과세하는 5,000만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建物上昇額을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控除하여 주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非課稅所得에 해당하는 부분의 物價上昇額을 課稅所得에서 控除하여 주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고급주택의 讓渡價額중 비과세되는 5,000萬원에 대한 部分에 대하여는 物價上昇控除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高級住宅의 讓渡差益 讓渡差益×$\frac{(양도가액-5,000萬원)}{양도가액}$	(改正前과 같음)
○ 讓渡所得特別控除額 취득가액×물가상승률×보유기간	○ 讓渡所得特別控除額 (취득가액×물가상승률×보유기간)×$\frac{(양도가액-5,000萬원)}{양도가액}$

나. 取得·讓渡時期는 代金淸算日基準(法 第27條, 令 第53條)

<改正內容>

改　　正　　前	改　　正
○ 원칙적으로 契約金 이외에 1次 中渡金을 받은 날	○ 원칙적으로 代金을 淸算한 날

종전에는 取得·讓渡時期를 契約金이외에 1次中渡金을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中渡金支給時期는 去來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뿐이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는 契約書등이 필요하나, 계약서등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따라서 취득·양도시기의 확인이 매우 어려워 稅務調査時 納稅者와 稅務公務員間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代金을 전부 받지 않았는데도 稅金은 먼저 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더러 中渡金을 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去來의 慣行이나 다른 法(地方稅法·民法)과도 맞지 아니하다.

이번 改正에서는 取得·讓渡時期는 원칙적으로 代金을 淸算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代金淸算日이 不分明하거나 기타 특수한 거래로 취득·양도한 때의 그 취득·양도시기는 다음에 의하도록 하였다.

① 代金淸算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代金淸算日前에 所有權移轉登記(登錄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권 移轉登記原因日. 다만, 登記原因日로부터 登記接受日까지의 기간이 1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登記接受로 한다.

② 延拂條件附販賣의 경우에는 첫회 賦拂金의 支給日

③ 自己가 建設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그러나 준공검사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실상 使用日, 假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假使用承認日로 하고 無許可 건축물의 경우는 그 사실상의 使用日로 한다.

④ 相續에 의하여 취득한 資產은 相續開始日(死亡日),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贈與를 받은 날

⑤ 代金을 淸算한 날까지 未完成 또는 未確定된 資產의 경우에는 그 目的物이 完成 또는 確定된 날

<適 用 例>

取得·讓渡時期에 관하여 改正한 規定은 83.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83. 1. 1이전에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예를 들어 82. 12월에 中渡金을 받고 83. 1월에 代金을 淸算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讓渡時期가 이미 83. 1. 1전에 到來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82年에는 契約金만 받고 1次中渡金은 83年에 받는 경우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도 讓渡時期가 83. 1. 1前에 到來하지 아니하였으므로 改正된 規定을 적용받는다.

다. 非課稅所得의 調整

(1) 讓渡所得稅 課稅對象인 讓渡의 정의(法 第4條)

다음의 경우는 讓渡所得稅課稅對象에서 제외하였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종전에는 일단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켰다가 非課稅所得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아예 실질에 맞춰 讓渡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贈與稅가 課稅되는 負擔附贈與
종래부터 贈與者의 債務를 贈與를 받은 者가 떠맡기로 하고 不動產을 贈與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部分은 讓渡所得稅가 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債務 4,000萬원을 떠맡기로 하고 1억원짜리 不動產을 증여받을 경우에 1억원중 채무부담부분 4,000萬원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머

지 6,000萬원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負擔附贈與는 全體를 贈與로 보도록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우자등에게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고 또 증여세도 과세하는 모순이 있었다. 즉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1억원중 負擔附贈與部分 4,000萬원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전체가액 1억원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負擔附증여중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도록 하고,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負擔附贈與時 인수한 債務額部分은 양도로 보아 讓渡所得課稅	(改正前과 같음) 但, 負擔附贈與중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경우는 贈與稅가 과세되므로 讓渡所得課稅 對象에서 除外

(2) 公有水面埋立地 讓渡所得稅 非課稅(法 第5條)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公有水面埋立地의 所有權을 최초로 取得한 者가 그 埋立地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여 국토확장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非課稅된 讓渡所得稅에 대한 防衛稅는 물어야 한다.

(3) 工場移轉期間의 延長(令 第18條)

종래 2年以上 가동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먼저 새로운 工場으로 移轉하고 移轉후 종전의 工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工場의 竣工日로부터 1年 이내에 종전 工場을 讓渡하여야 工場讓渡差益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免除받을 수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종전 공장의 양도기간「1年」은 현실적으로 짧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2年」으로 延長하였다.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讓渡限度

改　　正　　前	改　　正
새로운 工場 竣工日로부터 1년이내에 讓渡하여야 양도소득세 免除	…… 2년…… ……

라. 不動產賣買業者의 賣買差益의 推計決定(令 第142條)

종전에는 商街등을 新築하여 賣買하는 등의 「不動產賣買業」과 住宅을 新築하여 販賣하는 「住宅新築賣買業」은 같은 事業所得이면서도 課稅所得計算方法이 달랐다.

즉, 住宅新築賣買業을 推計調査決定하는 경우는 所得標準率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反面, 不動產賣買業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양도소득세 決定方法을 準用하였다.

즉,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所得標準率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賣買差益을 계산하였다.

이에따라 상가등을 신축하여 즉시 판매하는 경우는 취득시의 시가표준액이나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이 같거나 거의 비슷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不動產賣買業者의 경우에 實地證憑에 의하여 賣買差益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推計調査決定方法 즉 收入金額(양도가액)에 所得標準率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賣買差益으로 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양도소득계산방법 준용 ○ 즉 實地去來價額이 나타나는 경우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하고 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時는 基準時價에 의함	○ 賣買差益豫定申告時 제출한 證憑書類 또는 備置·記帳한 帳簿등에 의하여 賣買差益을 計算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計算 ○ 上記 以外의 경우 즉, 推計決定事由가 있는 경우 賣買差益=(賣買價額×所得標準率)

法 人 稅 法

〔要 約〕

지난 '79年이래 계속되어온 경기침체로 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經濟를 活性化하고 持續的인 成長潛在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法人稅率을 競爭相對國水準으로 大幅 引下하고, 法人類型間에 있어서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維持함으로써 公正한 競爭基盤위에서 經濟能率이 提高될 수 있도록 公開·非公開法人間의 差等稅率을 原則的으로 統合하되,

앞으로는 能力이 있으면서도 그 株式을 公開하지 아니하고 있는 非上場大法人에 限해서 一般法人보다 높은 稅率로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60年代初부터 追求해온 企業公開政策의 一貫性은 維持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業務用 不動產의 讓渡差益에 對하여는 폭넓게 特別附加稅를 免除하고, 錢主不分明私債利子에 對한 利子所得稅와 勤勞所得稅의 二重負擔을 排除하며,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를 調整하는 등에 의하여 正常的인 企業活動을 지나치게 制約하고 있는 稅制上의 諸要因들을 緩和하는 한편 納稅便宜를 期할 수 있도록 하였다.

法 人 稅

1. 法人稅率引下
   가. 法人稅率引下
   나.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높은 稅率適用
      (1) 非上場法人의 範圍
      (2) 非上場法人에서 제외되는 法人
      (3) 非上場法人이 事業年度中에 上場法人이 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法人稅額計算
2. 課稅所得範圍調整
   가. 非營利外國法人의 課稅所得範圍 一部調整
   나. 非課稅利子所得範圍縮小
   다. 一部公債利子에 대한 所得控除廢止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
   가. 有價證券讓渡捐의 損金算入時期
   나. 商品·製品外의 資產讓渡損益의 歸屬時期
   다. 移延資產의 種類와 그 償却方法 一部調整

4. 納稅者便宜를 위한 制度改善
   가. 任員退職金의 損金算入要件調整
   나. 課稅標準申告時 必須提出書類 一部調整
   다. 錢主不分明私債利子에 대한 二重課稅排除
   라. 加算稅率引下
   마. 貸借對照表公告의 簡素化
   바. 自由職業所得資料提出의 簡素化
   사. 外國換銀行의 外貨債券債務評價差損益
5. 其 他
   가. 外國軍에 軍納時 隨時賦課稅額計算
   나.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의 益金不算入要件
   다. 減價償却 一部調整
      (1) 特別償却範圍縮小
      (2) 無形固定資產範圍調整
      (3) 再評價時의 減價償却基礎價額
   라. 源泉徵收制度補完
      (1) 代理源泉徵收
      (2) 利子所得의 源泉徵收時期
      (3)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差益에 대한 源泉徵收稅率引下
   마. 使用·收益하는 寄附資產의 損金處理
   바. 金融機關預金에 대한 質問調査排除規定 削除
   사. 農·水·畜產의 共濟事業에 대한 法令에 의한 準備金등의 設定認定

特別附加稅

1. 業務用不動產에 대한 特別附價稅 免除
   가. 業務用不動產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要件
   나. 業務用·非業務用不動產의 判定
   다. 免除稅額 및 追徵稅額의 計算
   라. 特別附加稅 免除申請節次
   마. 종전의 工場移轉에 대한 經過措置
2. 特別附加稅率調整
3. 取得·讓渡時期調整
4. 特別附加稅 非課稅範圍 一部調整

Ⅰ. 法 人 稅

1. 法人稅率引下(法 第22條)

가. 法人稅率 引下

長期不況에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經濟의 活性化를 圖謀하는 한편, 企業의 內部留保를 促進시켜 財務構造를 健實化함으로써 競爭力을 높여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持續的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法人稅率을 大幅引下하였다.

이와같이 法人稅率을 引下함에 있어서 종래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間에 公開有無에 따라 큰 폭의 差等稅率을 適用하던 것은 이를 廢止함으로써 法人類型間의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維持하도록 하여 公正한 稅負擔에 의한 競爭促進으로 市場經濟體制의 活性化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종래 5,000萬원이하의 課稅標準分에 대하여 適用되던 22%의 稅率은 이를 20%로 引下하는 한편, 公開法人에게는 33%의 낮은 우대稅率로 適用되고, 非公開法人에게는 38%의 높은 稅率로 適用되던 5,000萬원을 초과하는 課稅標準分에 대한 稅率은 30%로 大幅引下하였다.

따라서 종래 5,000萬원이하의 課稅標準分에 대하여 適用되던 稅率은 모든 企業이 2%포인트 引下되고, 5,000萬원을 초과하는 課稅標準分에 대하여 適用되던 最高稅率은 300 餘個의 公開法人에 있어서는 3%포인트 引下되는 반면에, 大部分 公開할 餘力이 없었기 때문에 公開法人보다 훨씬 높은 最高稅率을 適用받고 있던 約 2萬餘個(全體營利法人의 約 99%)의 中小企業등 非公開法人은 8%포인트가 引下되게 되었다.

종래 우리나라의 法人稅率은 防衛稅·住民稅까지를 감안하면 最高稅率이 50.35%로서 인근의 競爭相對國인 대만(35%), 싱가포르(40%), 말레이시아(40%)등과 比較해 볼 때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이번 稅法改正으로 引下된 法人稅率은 이러한 인근의 競爭相對國과 비슷한 水準(防衛稅, 住民稅 包含 最高稅率 39.75%)을 維持하게 됨으로써, 우리企業의 競爭力提高에도 相當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렇게 法人稅率을 引下·改編하는 過程에서 一定의 非上場大法人에 限해서는 一般法人보다 3%포인트 높게 課稅하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 項에서 詳說하겠다.

<法人稅率>

課稅標準	改 正 前	改 正
5,000萬원 以下	○ 營利法人 • 非公開法人 22% (28.05%) • 公開法人 22% (28.05%) ○ 非營利法人 22% (28.05%)	→20%(25.5%)
5,000萬원 초과	○ 營利法人 • 非公開法人 38% (50.35%) • 公開法人 33% (43.73%) ○ 非營利法人 27% (35.78%)	→30%(39.75%) ※ 但 非上場法人(33%) (43.73%) →27%(35.78%)

※( ) : 防衛稅·住民稅包含

이 改正稅率은 '83.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適用하는 것이 原則이나, '82. 12. 31 이전에 開始된 事業年度가 '83. 1. 1까지 終了되지 아니한 때 즉 事業年度가 '83. 1. 1 前後에 걸치는 경우에는 '83. 1. 1을 基準으로 月割計算하여 '83. 1. 1 이후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는 改正稅率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全般的으로 大幅引下된 法人稅率을 可能한 한 早期에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經濟活性化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算 式

$$\left[\left(\text{課稅標準}\times\frac{12}{\text{事業年度月數}}\times\text{從前의 稅率}\times\frac{\text{'82. 12. 31이전事業年度의 月數}}{\text{事業年度 月數}}\right.\right.$$

$$\left.\left.+\left(\text{課稅標準}\times\frac{12}{\text{事業年度月數}}\times\text{改正稅率}\times\frac{\text{'83. 1. 1이후事業年度月數}}{\text{事業年度月數}}\right)\right]\right.$$

$$\times\frac{\text{事業年度月數}}{12}$$

이 경우 舊法 第22條第3項에 規定하는 公開法人이 '82. 12. 31이전의 事業年度月數에 對하여 舊法 第22條第2項에 規定하는 公開法人稅率(33%)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83. 1. 1를 前後로 하여 걸친 當該事業年度가 終了될 때까지 계속하여 從前法에 의한 公開法人要件을 갖춘 것이 確認되어야 한다.

나.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높은 稅率適用(法 第22條第2項)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公正한 競爭을 促進하기 위하여 企業이 公開되었다는 事實만으로 모든 非公開法人보다 월등하게 낮은 優待稅率로 適用받는 것은 廢止하였지만, 過法 '60年代初부터 追求해온 企業公開誘導政策의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公開할 餘力이 있으면서도 그 株式을 公開하지 않고 있는 一部上場大法人에 限하여 繼續하여 높은 法人稅率로 課稅하도록 하였다.

종전과 같이 株式을 公開한 公開法人에게 낮은 優待稅率을 適用해 주던 方式에서 公開할 餘力이 있으면서도 그 株式을 公開하지 않고 있는 一部非上場大法人에게 例外的으로 높은 稅率을 適用하는 方式으로 稅制上의 企業公開誘導政策을 轉換한 것은 可能한 한 民間部門의 競爭促進을 稅金面에서 沮害하지 않고 企業公開를 誘導하기 위한 것이다.

公開할 餘力있는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法人稅率은 다른 法人의 最高稅率이 30%인데 비해 이보다 3%포인트 높은 33%로 적용된다.

(1) 非上場大法人의 範圍

非上場大法人에 대하여 一般法人보다 높은 33%의 稅率로 課稅하도록 한 것은, 公開할 餘力이 있으면서도 그 株式을 公開하지 않고 있는 大法人의 公開를 誘導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範圍를 上場法人의 平均資本金規模('81年末 現在 約78億)등을 고려하여 事業年度末 現在 資本金이 50億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自己資本의 總額이 100億원을 초과하는 法人으로 하였다.

즉 改正法에서 33%의 높은 稅率의 適用對象이 되는 "非上場法人"이라 함은

① 事業年度終了日 現在 株式發行資本金이 50億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自己資本의 總額이 100億원을 超過하는 大法人으로서

② 그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株式이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지 않는 法人을 말한다.

이때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 非上場法人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自己資本의 總額」은 貸借對照表上의 株式發行資本金과 剩餘金의 合計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 剩餘金중 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이 法人稅法施行令 第84條의 規定에 따라 稅法上 損金算入되는 準備金을 利益處分에 의한 積立金으로 積立한 금액
- 事業年度終了日 現在 株式割引發行差金의 未償却殘額
- 事業年度終了日 現在 配當建設利子의 未償却殘額
- 當期純利益 또는 當期純損失

이렇게 計算한 金額이 100億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非上場大法人이 된다.

이와같이 自記資本總額을 計算하도록 한 것은 會計處理過程에서 計數上으로만 自己資本에 包含되어 있는 項目들을 差減함으로써 實質的인 自己資本을 基準으로 하여 公開할 수 있는지 여부를 判斷하는 것이 보다 合當하고, 事業年度終了日以後에 가서야 파악되는 當期純損益을 自己資本總額에 포함시켜 그 事業年度終了日 現在 株式이 上場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높은 稅率로 課稅하는 것은 不合理하기 때문이다.

(2) 非上場法人에서 제외되는 法人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높은 稅率로 課稅하도록 한 것은 基本的으로 그 株式을 公開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면서도 公開하지 않고 있는 法人의 公開를 誘導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으므로 規模面에서는 非上場大法人에 該當하더라도, 法律에 의하여 出資者가 制限되어 있는 特別法人 등 客觀的인 事由로 그 株式을 公開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法人에 對하여는 높은 稅率適用對象에서 除外하여 一般法人과 같이 30%의 稅率로 課稅토록 하였다. 非上場大法人에서 除外되는 法人類型과 그 除外理由는 다음과 같다.

除外法人 및 除外理由

除 外 法 人	除 外 理 由
○ 商法에 의한 合資會社, 合名會社 및 有限會社	— 商法에 의하여 出資者 數가 制限되어 있거나, 社員의 無限責任으로 持分의 양도가 制限되고 있음.
○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特別法人	— 當該設立根據法에서 出資者를 特定人으로 制限하고 있음.
○ 事業年度終了日 現在 設立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證券去來法에 의한 上場要件未備 (原則的으로 設立後 2年이 經過된 法人만 上場可能)

除 外 法 人	除 外 理 由
○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株式發行資本金의 51%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법인	- 大株主가 政府임.
○ 上場法人인 持株會社가 株式發行資本金의 50%以上을 出資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	- 持株會社를 通하여 그 株式이 公開되어 있음.
○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법인	- 現實的으로 公開可能
○ 商法 第463條에 의하여 建設利子를 配當하고 있는 法人	- 事業開始前이므로 事實上 公開困難

(3) 非上場大法人이 事業年度中에 上場法人이 된 경우등에 있어서의 法人稅額 計算

(가) 非上場大法人이 事業年度中에 上場法人이 된 경우(法 第22條第8項)

非上場大法人이 事業年度中에 그 株式을 公開하여 上場法人이 된 때에는 事業年度月數를 上場前과 上場後로 나누어 上場前의 月數에 對하여는 33%의 높은 稅率을 上場後의 月數에 對하여는 30%의 稅率을 各各 適用하여 法人稅算出稅額을 計算하게 된다.

<算 式>

$$[(\text{課稅標準}\times\frac{12}{\text{事業年度月數}}\times\text{非上場法人稅率}\times\frac{\text{上場前月數}}{\text{事業年度月數}}+(\text{課稅標準}\times\frac{12}{\text{事業年度月數}}\times\text{一般法人稅率}\times\frac{\text{上場後月數}}{\text{事業年度月數}})]\times\frac{\text{事業年度月數}}{12}$$

(나) 上場法人이 事業年度에 上場廢止등으로 非上場大法人이 된 경우

上場法人이 事業年度중에 上場廢止등의 理由로 非上場大法人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종전에 公開法人이 事業年度중에 公開法人資格을 박탈되었을 때의 경우에 稅額計算하던 方式에 같이 月割計算치 않고 全事業年度의 所得에 33%의 높은 稅率을 適用하여 法人稅額을 計算하게 된다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2. 課稅所得範圍 調整

가. 非營利外國法人의 課稅所得範圍 一部調整(法 第1條, 令 第2條)

非營利法人에 對하여는 營利法人의 경우와 달리 法 또는 令에서 具體的으로 列擧하고 있는 受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 또는 收入에 對하여만 法人稅를 課稅토록 하고 있는바, 非營利外國法人에 對한 課稅對象 收益事業의 範圍를 一部調整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非營利法人이 外國에 進出하여 外國에서 營爲하는 技術用役에 對하여 그 國家가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互免稅主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도 그 國家에 本店 또는 主된 事業所를 두고 있는 非營利外國法人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營爲하는 技術用役은 課稅對象收入事業에서 除外하여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非課稅利子所得範圍 縮小(法 第10條 令 第14條)

<所得稅法 利子配當所得篇 參照>

※ 電信電話債券에 對한 課稅

-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國家가 發行한 電信電話債券의 利子는 앞으로 언제 償還받더라도 그 利子에 對하여 法人稅가 非課稅되나, '82. 1. 1字로 設立된 韓國電氣通信公社가 '82年 이후에 發行한 電信電話債券의 利子는 非課稅되지 않고 正常的으로 法人稅가 課稅된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다. 一部 國·公債利子에 대한 所得控除廢止

'80年 稅法改正時 종전에 法人稅가 非課稅되던 各種債券의 利子中 強制添加消化되는 國·公債등 一部債券의 利子를 제외한 金融債券등 大部分의 債券利子를 正常課稅對象으로 轉換하면서, 다만 國民投資債券, 財政證券 및 糧穀基金證券의 利子에 對하여만, 例外的으로 그 受取利子의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던 것을 '83. 1. 1 이후부터는 所得控除에 關한 規定을 削除하여 다른 債券을 利子와 마찬가지로 正常的으로 法人稅로 課稅토록 하였다.

이 改正規定은 '83. 1. 1이후 最初로 發生하는 利子부터 適用되므로, '82. 12. 31以前에 發行된 財政證券등으로서 '83. 1. 1以後에 償還期間이 到來하는 것은 그 利子를 期間에 따라 按分計算

하여 '82. 12. 31이전에 귀속되는 分만 50%의 所得控除가 可能하다.

원래 위의 3個國債利子에 대해 50%所得控除制度를 두었던 것은 갑작스런 課稅轉換에 따른 主要國債의 消化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一部國債에 限定된 稅金減免의 結果 債券種類間에 收益率差異를 誘發하여 各種債券을 통한 資金調達上의 公正性을 잃게 하는 등의 問題點이 있어 이 制度를 廢止하게 된 것이다.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

가. 有價證券 讓渡捐의 損金算入時期(令 第29條)

종전에는 商品買入時에 添加取得한 國債등의 有價證券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損失은 그 證券의 處分時期에 不拘하고 그 損失額을 各事業年度에 當該 商品을 販賣한 量에 比例하여 損金에 算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그 處分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計上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2. 12. 31以前에 添加取得한 有價證券을 處分함으로 因하여 發生한 讓渡差損으로서 '82. 12. 31現在 아직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繼續하여 종전의 規定에 따라 商品販賣量에 比例하여 各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나. 商品·製品外의 資產讓渡損益의 歸屬時期(法 第17條第3項)

商品·製品以外의 資產(즉 固定資產등)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益金과 損金의 歸屬年度를 종전의 中途金基準(契約金 以外의 代金의 一部를 領收한 날)에서 '83. 1. 1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는 企業會計에 맞추어 代金淸算日基準 또는 所有權移轉登記日(登記日)基準으로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商品, 製品이외의 資產의 收益實現時期	當該資產의 讓渡代金을 淸算한 날 또는 所有權移轉登記日에 不拘하고 契約金 以外에 代金의 一部를 領收한 날	當該資產의 讓渡代金을 淸算한 날과 所有權移轉登記日(登記日)중 빠른 날

다. 移延資產의 種類 및 償却方法一部調整(法 第17條第10項, 令 第38條)

稅法上移延資產의 種類와 그 償却方法을 可能한 範圍內에서 企業會計基準에 맞춤으로써 納稅便宜를 期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新技術의 開發 및 導入, 新市場開拓, 資源開發 또는 新經營組職의 採用등을 위하여 特別히 支出한 費用은 모두 移延資產인 開發費로 計上하고 一定期間에 걸쳐 償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3. 1. 1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는 종전의 開發費에 屬하던 費目중 新技術의 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만 試驗硏究費에 包含시켜 移延資產으로 處理하고 其他의 費用은 그 費用을 實際로 支出한 事業年度에 全額 損金으로 計上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改正規定은 '83. 1. 1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에 支出한 것부터 適用되므로 '82. 12. 31現在 移延資產으로 計上되어 있는 開發費는 앞으로도 繼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償却處理하여야 한다.

또한 社債償還期間에 均等額以上을 償却하도록 되어 있던 社債發行差金의 경우에도 企業會計基準에 있어서와 같이 社債償還期間에 걸쳐 均等하게 나누어 損金에 算入토록 하였다.

4. 納稅者 便宜를 위한 制度改善

가. 任員退職金의 損金算入 要件調整(令 第34條)

退職한 任員에게 支給한 退職金을 法人所得計算時 損金算入함에 있어서 退職金의 支給에 관하여 會社의 定款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등에서 決議한 金額으로서

② 一定限度內의 金額(年間總給與×10%×勤續年數)만을 法人의 所得金額計算時 損金에 算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3. 1. 1이후 支給한 退職金부터는 株主總會決議要件을 削除하여 株主總會등의 決議가 없는 경우에는 一定限度內의 金額은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任員退職金中 損金算入되는 金額

改　　正　　前	改　　正
1. 定款에 退職金으로서 支給할 金額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定款에 정하여진 金額	― 改正前과 같음.
2. 위의 경우 外에는 株主總會등의 결의로 정한 金額으로서 다음 限度內의 金額 年間總給與×1/10×勤續年數	○ 위의 경우 外에는 다음 限度內의 金額 年間總給與×1/10×勤續年數 ※ 株主總會등의 決議要件 削除

나. 課稅標準申告時 必須提出書類 一部調整(令 第82條)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할 때에는 반드시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및 稅務調整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만약에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漏落된 경우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하게 되어 있으나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合併消滅法人의 最終事業年度終了日(合併登記日) 現在의 剩餘金은 合併存續法人에 引繼되어 버리는 關係로 合併消滅法人의 最終事業年度 法人稅 申告時에는 剩餘金 處分(缺損金 處理)計劃書를 必須提出書類에서 除外하여,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稅務調整計算書만을 必須的인 書類로 하였다.

이러한 改正規定 '83. 1. 1이후 최초로 合併消滅法人이 課稅標準을 申告할 때부터 適用한다.

다. 不分明한 私債利子에 대한 二重課稅 排除(令 第94條의 2)

法人이 支給한 私債利子중 債權者(錢主)가 不分明한 私債利子에 대하여 종전에는

① 法人은 錢主의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할 義務가 있고, 만일 源泉徵收하지 않으면 法人에게 그 源泉徵收不履行 稅額을 追徵하게 되며

② 法人所得金額計算時에는 錢主不分明私債利子로 支給된 金額은 損金에 不算入하도록 함으로써 法人稅를 課稅하고

③ 이와같이 損金不算入된 錢主不分明私債利子支給額은 다시 利子金額 全額을 代表者가 가져간 것으로 看做〔代表者에게 歸屬된 所得으로 稅務上 處分하여 代表者에게 綜合所得稅를 과세(私債利子는 綜合課稅되는 所得이므로 錢主가 드러날 때에는 當該錢主에게 綜合

所得稅가 課稅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3.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부터는 錢主不分明私債利子에 대하여

① 錢主의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와

② 法人所得計算時 錢主不分明私債利子의 損金不算入은 종전과 같이 하되

③ 私債利子金額을 다시 代表者의 所得으로 보던 것은 이를 바꾸어 私債利子金額에서 法人이 源泉徵收納付한 錢主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相當額(源泉徵收納付하지 않음으로써 그 法人에게 源泉徵收不履行稅額을 追徵할 때에는 당해 追徵稅額相當額)을 差減한 나머지 金額만을 代表者가 가져간 所得으로 보아 代表者에게 綜合所得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源泉徵收稅額에는 所得稅는 물론이고 所得稅에 附加하여 源泉徵收하는 防衛稅·住民稅도 包含한다.

이렇게 改正한 理由는 源泉徵收稅額은 法人이 私債利子支給額에서 떼어 國庫에 拂入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支給된 私債利子중 源泉徵收稅額에 상당하는 金額까지도 錢主가 不分明하다고 하여 代表者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것은 論理的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이를 是正하고, 實質面에서는 과거 同一한 所得을 두고,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源泉稅와 代表者에 대한 綜合所得稅를 二重課稅해왔기 때문에 이를 改善하기 위한 것이다.

錢主不分明私債利子의 所得處分

改 正 前	改 正
○ 錢主不分明私債利子金額 全體를 代表者 賞與로 處分	○ 私債利子에 대한 源泉徵收稅額 相當額(所得稅·防衛稅 및 住民稅) — 其他 社外流出로 處分 ○ 利子金額중 源泉徵收稅額을 控除한 殘額 — 代表者 賞與로 處分

<適 用 例>

— '83.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부터 錢主不分明私債利子를 益金에 算入하고 所得處分하는 경우에 適用한다.

라. 加算稅率 引下(法 第41條, 令 第113條의 3)

稅法에서는 誠實한 納稅와 協力義務의 確保를 위하여 各種 加算稅制度를 두고 있는바, 大部分의 他稅目에서는 稅額의 一定率로 加算稅率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人員에 비하여 納稅比重이 큰 法人稅의 경우에는 보다 圓滑한 納稅履行을 圖謀하기 위하여 稅額의 一定率과 收入金額의 一定率로 計算한 金額中 큰 金額을 加算稅로 하도록 規定되어 있는 加算稅種目이 많다. 이러한 加算稅種目에 있어서 이번 稅法改正으로 法人稅率이 대폭 引下됨에 따라 稅額基準에 의한 加算稅가 自動的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와 衡平이 維持되도록 收入金額基準에 의한 加算稅率도 引下 調整하였다.

한편 연체이자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法人稅未納付加算稅率中 日邊基準을 7錢(年 25.5%)에서 5錢(年 18.3%)으로, 現在의 公金利水準을 감안하여 引下 調整하였다.

加 算 稅 率

種 類	改正前	改正
無申告(無記帳)加算稅	産出稅額×30% 收入金額×0.18% 중 많은 金額	算出稅額×30% 收入金額×0.1% 중 많은 金額
無公告加算稅	算出稅額×10% 收入金額×0.15% 중 많은 金額	算出稅額×10% 收入金額×0.05% 중 많은 金額
未納付加算稅率	未納付稅額×10% 未納付稅額×日邊 7錢 중 많은 金額	未納付稅額×10% 未納付稅額×日邊 5錢 중 많은 金額

<適用例>

① 改正된 無申告(無記帳) 및 未納付 加算稅率은 '83. 1. 1이후 최초로 申告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② 改正된 無申告加算稅率은 '83. 1. 1이후 최초로 公告義務가 發生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마. 貸借對照表 公告의 簡素化(法 第64條)

'81. 12. 31字로 企業會計基準이 前期와 當期의 兩年度 比較貸借對照表를 作成하도록 變更됨에 따라 稅法上 要求되는 貸借對照表를 公告할 때 比較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當期 것만을 公告해도 좋은지가 不分明하던 것을 '83. 1. 1 이후부터는 當期事業年度만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도 좋도록 분명히 하여 納稅便宜와 費用의 節減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自由職業所得資料提出의 簡素化(令 第128條 2)

保險會社, 證券會社 또는 金融機關이 保險加入者의 모집, 證券賣買의 勸誘, 貯蓄勸誘 또는 集金을 하는 自由職業所得者에게 支給하는 募集手當, 勸奬手當, 集金手當으로서 2年間收入額이 180萬원 이하인 때에는 個別支給調書에 갈음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收入金額支給明細書로 일괄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改正規定은 '83. 1. 1이후에 發生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부터 適用되는바 年度中에 취업한 者의 경우에는 취업기간중의 收入金額을 年으로 換算한 金額이 180萬원 이하인 때에만 支給調書에 갈음하여 收入金額支給明細書를 提出할 수 있고 또 年度中에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이 規定이 適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個別的인 支給調書만을 提出하여야 한다는 점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사. 外國換銀行의 外貨債權·債務 評價差損益(令 第38條의 2)

外貨債權·債務를 가지고 있는 모든 外國法人은 그 債權·債務의 원貨 記帳額과 各事業年度終了日 現在의 換率에 의하여 다시 評價한 원貨金額과의 評價差損益을 移延資產으로 計上하여 一定한 方法에 따라 損金(益金)에 算入토록 되어있던 것을 外國換銀行의 경우는 그 業務의 性格上 一定法人과 달리 外貨債權·債務의 評價差損益은 移延資產으로 할 必要性이 적으므로 外國換銀行의 外貨債權·債務는 稅法에 의한 強制評價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따라서 外國換銀行은 그 外貨債權·債務를 稅法의 規定에 따라 評價하여 移延資產으로 計上하든, 아니면 당해 外國換銀行의 會計處理慣行에 의하여 稅法의 規定을 따르지 않아도 繼續性의 原則이 지켜지는 한 稅務會計上으로는 無妨하도록 하였다.

5. 其　　他

가. 外國軍에 軍納時 隨時賦課稅額計算(令 第98條)

法人이 駐韓國際聯合軍 또는 外國機關으로부터 事業收入金額을 領收할 때에는 隨時賦課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종전에는 事業收入金額에 所得標準率을 곱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한 後 다시 事業收入金額의 1%를 控除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隨時賦課稅額을 計算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事業收入金額의 1%를 控除하지 아니하고 事業收入金額에 所得標準率을 곱하여 算出한 所得金額을 바로 課稅標準으로 하여 隨時賦課稅額을 計算하도록 함으로써 正常的으로 法人稅를 課稅할 때의 稅額計算方法과 맞추도록 하였다.

隨時賦課稅額計算

改　正　前	改　　正
〔事業收入金額×所得標準率－事業收入金額×1%法人稅率〕	事業收入金額×所得標準率×法人稅率

<適 用 例>

－ '83. 1. 1이후 最初로 隨時賦課 事由가 發生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나.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의 益金不算入 要件 (令 第23條의 3)

法人이 다른 法人에 出資하여 받는 配當에 대하여는 原則的으로 法人稅를 課稅하고 있지만, 投資信託會社·證券會社·保險會社·銀行등 機關投資者의 경우에는 다른 法人을 支配하거나 企業擴張을 위하여 株式을 買入한다기보다는 證券市場의 健全한 育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介入하게 되는 것이므로,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은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一定한 要件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例外的으로 益金에 算入하여 法人稅를 課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그 益金에 算入하는 要件을 補完하여 明確하게 規定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機關投資者가 "舊法人稅法 第22條第3項第1號에 規定하는 株主1人" 즉 第1大株主 그룹(Group)의 一員으로 出資하고 있는 上場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만 益金에 加算하여 法人稅를 課稅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번 法人稅法改正으로 公開法人에 關聯된 規定이 削除되어 종전의 "株主1人"의 槪念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83. 1. 1이후에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에 支給받는 配當부터는 機關投資者가 第1大株主그룹(Group)의 一員에 속하는지의 여부와는 關係없이 當該機關投資者(그 機關投資者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가 發行總株式의 10%이하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上場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은 종전과 같이 繼續하여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지만, 그 持分率이 10%를 초과할 때에는 益金에 加算하여 法人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益金算入되는 配當

改 正 前	改 正
機關投資者가 從前 法 第22條第3項第1號에 規定하는 株主 1人으로 出資하는 法人(令 第67條의 3 第4項)	機關投資者 및 그와 特殊關係있는 者가 당해 上場法人 發行 總株式數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法人(令 第23條의 3)

다. 減價償却 一部調整

(1) 特別償却範圍 縮小(令 第51條)

(가) 에너지 節約施設 特別償却(令 第51條第1項第4號)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節約施設에 대하여는 一般減價償却費의 100%를 追加로 特別償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條項은

그 適用對象이 '80. 6. 30부터 '81. 12. 31사이에 投資를 開始한 분에 限定되어 있어 앞으로 더이상 새로운 特別償却對象資產이 發生치 아니하므로 이를 削除하되 '82. 12. 31이전에 取得하여 기왕에 從前法에 의하여 特別償却을 適用받던 경우에는 旣得權을 認定하여 앞으로도 계속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 法人稅法施行令에 規定되어 있던 이 條項을 削除하더라도 '82. 1. 1이후 取得한 에너지 節約施設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第71條에 의하여 特定設備資產으로서 投資稅額控除(投資金額의 10%, 단 外產은 6%)를 適用받거나 取得價額의 50%

를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는 支援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나) 國產機資材에 대한 特別償却 廢止(令 第51條第1項第6號의 2)

'75. 1. 1부터 '75. 12. 31사이에 取得한 事業用固定資產中 國產化比率이 60%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鑛業·製造業·水產業 및 建設業에 있어서는 80%, 其他의 業種에 있어서는 40%의 特別償却을 設定하고 있던 條項도 當該資產의 減價償却 耐用年數가 經過되어 實效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削除하여 '83. 1. 1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그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2) 無形固定資產範圍調整(令 第54條)

減價償却할 수 있는 無形固定資產의 範圍에 工業用水道施設管理權과 有料道路管理權을 새로이 追加하고 그 償却年數를 各各 35年 및 10年으로 정하고 '83. 1. 1이후 申告하는 事業年度부터 該當資產에 대한 減價償却을 損金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再評價時의 減價償却基礎價額(令 第55條의 2)

減價償却費는 當該法人이 이를 費用으로 計上한 때에만 損費로 認定하는 것이 原則이나 各 事業年度所得에 대하여 法人稅가 減免 또는 免除되는 事業을 營爲하는 경우에는 減免되는 期間과 그 後 課稅되는 期間에 있어서 減價償却費의 配分이 適正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當該法人이 減免 또는 免除되는 期間동안에 스스로 減價償却費를 費用으로 計上하지 아니하더라도 稅務會計上으로는 減價償却을 한 것으로 擬制(擬制償却)하여 帳簿價額에서 擬制償却額을 差減한 殘額을 基礎價額으로 減價償却範圍額을 計算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法人이 擬制償却對象資產을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하였을 때에는 評價價額을 基礎로 하여 減價償却費를 計算할 것인지 아니면 再評價額에서 그동안의 擬制償却額을 差減한 價額을 基礎價額으로 할 것인지가 不分明하던 것을 改正令에서는 擬制償却對象이 아닌 一般的인 경우와 같이 再評價額을 基礎價額으로 하여 減價償却範圍額을 計算하도록 明確히 하였다.

라. 源泉徵收義務制度 補完

(1) 代理源泉徵收義務(法 第39條)

所得稅法 利子 配當所得篇 參照

(2) 利子所得의 源泉徵收時期(法 第39條)

所得稅法 利子·配當所得篇 參照

(3) 外國法人의 有價證券양도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引下(法 第59條)

우리나라에 固定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이 소유하고 있던 株式등의 有價證券을 買入하고 그 代價를 外國法人등에게 支給하는 경우에 株式등을 買入한 者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源泉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토록 되어 있는바, 그 源泉徵收稅額을 引下 調整하였다.

즉, 종전에는 有價證券讓渡價額의 25%와 有價證券讓渡差益의 10%中 적은 金額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하였던 것을 83. 1. 1이후 최초로 有價證券을 讓渡하는 分부터는 有價證券讓渡價額의 10%와 有價證券讓渡差益의 25%중 적은 金額을 源泉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도록 하였다.

源 泉 徵 收 稅 率

改 正 前	改 正
有價證券讓渡價額의 25%. 다만, 取得價額이 確定되는 경우에는 다음중 적은 金額 ┌有價證券讓渡價額의 25% └有價證券讓渡差益의 40%	有價證券讓渡價額의 10%. 다만, 取得價額이 確定되는 경우에는 다음중 적은 金額 ┌有價證券讓渡價額의 10% └有價證券讓渡差益의 25%

<適 用 例>

'83. 1. 1이후 최초로 外國法人등의 有價證券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마. 使用·收益하는 寄附資産의 損金處理(令 第40條, 規則 第16條)

法人이 金錢外 資産(즉 固定資産등)을 他人에게 寄附한 후에도 繼續하여 그 資産을 使用하거나 그 資産으로부터 收益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 寄附資産이 全額 損金算入되는 寄附金에 該當되는지, 指定寄附金에 該當되는지에 관한 명백한 區分없이 當該寄附資産價額을 一時에 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移延資産으로 計上하여 그 資産의 使用·收益期間동안 均等하게 損金算入한다고만 規定되어 있던 것을 改定令에서는 寄附金 種類別로 當該 寄附資産이 全額 損金算入되는 寄附金에 該當하는 경우와 指定寄附金에 해당되는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그 損金處理方法을 細分하여 規定하였다.

① 當該 寄附資産이 全額 損金算入되는 寄附金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寄附資産價額을 當該寄附資産의 耐用年數(使用·收益期間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期間)로 나눈 全額을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時 損金에 算入하되 다만, 그 寄附資産價額 金額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에 當該寄附資産이 滅失되거나 使用·收益契約이 해지된 때에는 그 나머지 殘額을 당해 事由가 發生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損金 算入하게 된다.

② 使用·收益·寄附資産이 指定寄附金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 當該 寄附資産價額中 寄附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指定寄附金 損金算入限度를 초과하는 金額은 바로 損金不算入하고
- 指定寄附金 損金限度內의 金額만 全額 損金算入되는 寄附金과 同一한 方法에 의하여 損金處理하도록 하였다.

바. 金融機關의 預金에 대한 質問調査 排除規定 削除(法 第68條)

'83. 1. 1부터 「預金·積金等의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이 廢止되고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이 施行됨에 따라 金融機關의 預金에 대해서 例外的으로 稅務公務員의 質問 調査權을 排除하고 있던 稅法上의 規定도 削除하였다.

사. 農·水·畜協의 共濟事業에 대한 法令에 의한 準備金등의 設定 (法 第12條, 令 第16條 및 第32條)

종전에는 保險業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保險事業을 營爲하는 一般保險會社에 대하여만 稅法上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등의 設定을 認定하고 있었던 것을

81年 租稅減免規制法의 改正으로 과거 法人稅가 課稅되지 않던 農·水·畜協에 대하여도 法人稅가 課稅되고 또 農·水·畜協이 營爲하는 共濟事業은 共濟事業을 規定하고 있는 根據法만 다를 뿐이고 그 性質이 一般 保險事業과 같으므로, 農·水·畜協도 '83. 1. 1이후 申告하는 事業年度부터는 一般保險會社와 같이 責任準備金·非常危險準備金 및 契約者 配當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特別附加稅

1. 事業用 不動產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法 第59條의 3, 令 第124條의 6)

종전에는 2年以上 가동한 工場을 다른 지역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었다.

工場外의 業務用資產, 例를 들면 事務室로 使用하던 本社社屋을 處分하여 그 代金으로 工場을 取得하는 경우에도 本社社屋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外에 특별부가세가 따로 과세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經營의 合理化등을 위하여 토지·건물등의 固定資產을 處分하여 機械裝置등 다른 事業用 固定資產으로 代替하려 하여도 많은 稅負擔으로 因하여 이를 꺼리게 되는 문제점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取得할 目的으로 2年以上 業務用으로 直接 使用한 不動產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法人의 非業務用不動產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계속 特別附加稅를 課稅한다. 이는 기업이 不動產投資와 같은 非生產的인 方法에 의하여 이윤추구를 하거나 막강한 資金力에 의하여 不動產을 買占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이상으로 不動產을 보유하는 것을 抑制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特別附加稅 免除範圍

改 正 前	改 正
○ 2年以上 가동한 工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工場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용으로 2年以上 사용한 不動產을 다른 고정자산(土地·建物·機械)을 取得할 目的으로 讓渡하는 경우에는 特別附價稅를 면제함

가.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要件

(1) 讓渡日까지 2年이상 계속하여 業務用으로 직접 사용한 不動產일 것.

(2) 그 土地등의 讓渡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일정기간내에 다른 土地, 建物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용土地나 建物을 讓渡하여 그 대금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法人이 工場을 讓渡하고 그 讓渡價額相當額으로 호텔을 취득하여 호텔업을 하는 경우에도 工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3) 다른 固定資產의 取得期間

① 먼저 業務用固定資產을 양도한 후 다른 業務用 固定資產을 取得하는 경우(先讓渡, 後取得)에는 물론

② 다른 業務用 固定資產을 먼저 취득한 후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先取得, 後讓渡)에도 특별부가세가 免除되는 바 各 경우에 따라 取得期間에 차이가 있음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 先讓渡, 後取得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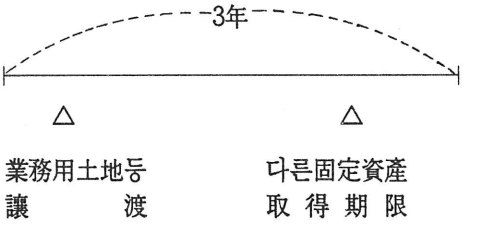

業務用 不動產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讓渡日로부터 3年이내에 土地, 建物 또는 機械裝置를 取得하여 業務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을 讓渡한 때에 일단 法人의 申請에 의하여 特別附加稅를 免除한 後, 事後管理하여 讓渡日로부터 3年以內에 다른 固定資產의 取得에 사용한 金額이 讓渡價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差額에 대하여 이미 免除한 特別附價稅를 追徵하게 된다.

○ 先取得, 後讓渡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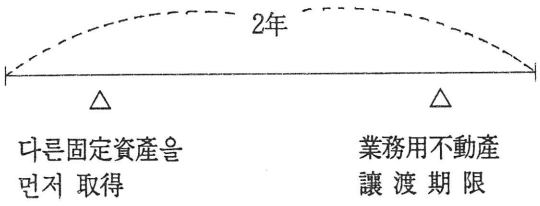

業務用 不動產을 讓渡하기 前에 먼저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業務用資產을 取得한 때에는 그 取得日로부터 2年內에 양도한 경우에만 그 業務用 不動產의 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나. 業務用·非業務用 不動產의 判定

다음에 該當하는 土地등은 免除對象에서 除外된다.

① 牧場用 不動產

牧場移轉을 위해 牧場用土地등을 讓渡時 그 免除에 關하여는 法人稅法 第59條의 3 第2項第1號에 따로 規定되어 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免除對象에서 제외하였다.

② 賣買事業用 不動產

③ 賃貸事業用 不動產

法人이 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賃貸하여 주고 있는 不動產은 免除對象에서 제외된다.

④ 事業場과 獨立하여 설치한 運動場·경기장·硏修所 및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不動產.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運動競技部를 설치한 법인이 選手專用으로 사용하는 體育施設用 부동산은 業務用 不動產으로 본다.

⑤ 사무실용에 직접 사용되는 建物의 附屬土地로서 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土地

⑥ 당해 法人外의 者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⑦ 기타 당해法人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國稅廳長이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다. 免除稅額 및 追徵稅額의 計算

(1) 先讓渡 後取得

먼저 업무용 부동산을 讓渡한 후 뒤에 고정자산을 取得하는 경우는 우선 특별부가세를 免除하여 준 후, 讓渡日로부터 3年內에 讓渡價額상당액을 다른 固定資産의 取得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金額을 免除받는 者로부터 追徵하게 된다.

$$\text{○ 追徵金額} = (\text{免除받은 特別附加稅額}) \times \frac{\left(\begin{array}{c}\text{다른固定資産의}\\ \text{취득에 사용하지}\\ \text{아니한 금액}\end{array}\right)}{(\text{讓渡價額})}$$

(2) 先取得 後讓渡

업무용부동산을 讓渡하기 전에 고정자산을 먼저 取得한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을 免除하게 된다.

$$\begin{array}{l}\text{特別附加稅}\\ \text{免除稅額}\end{array} = (\text{特別附加稅 算出稅額}) \times \frac{\left(\begin{array}{c}\text{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text{2년이내 취득한 고정}\\ \text{자산가액}\end{array}\right)}{(\text{업무용부동산 讓渡價額})}$$

(3) 業務用과 기타 用途에 兼用하는(不動産에 대한 免除稅)額의 計算

업무용과 기타의 用途에 兼用하는 不動産을 양도한 경우에 그 讓渡差益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面積의 比率에 따라 讓渡差益을 按分計算하여 特別附加稅를 면제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面積의 計算을 讓渡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面積이 가장 적은 때의 面積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에 있어서 業務用外의 他用途로 사용한 면적이 建物延面積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全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免除稅額을 계산하게 된다.

事 例

다음과 같이 업무용과 賃貸用에 兼用하는 建物을 讓渡한 경우 免除받을 수 있는 特別附加稅額은?

○ 建物延面積 1,000坪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400坪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600坪

○ 讓渡差益 1억원

免除稅額

○ 特別附加稅 算出稅額

1억원×25%=2,500萬원

○ 면제받을 수 있는 세액

$$2{,}500萬원 \times \frac{400坪}{1{,}000坪} = 1{,}000萬원$$

라. 免除申請節次

(1) 先讓渡 後取得의 경우

○ 업무용부동산의 讓渡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특별부가세 免除申請書를 제출하고

○ 양도일이후 3년이내에 다른 固定資產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取得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先取得 後讓渡의 경우

○ 업무용부동산 양도전에 먼저 다른 固定資產을 取得한 경우에는 取得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課稅標準申告時 取得明細書 및 讓渡計劃書를 提出하고,

○ 業務用不動產을 양도한 때에는 讓渡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課稅標準申告時 特別附價稅 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마. 종전의 규정에 의한 工場移轉에 대한 經過措置

(1) 先移轉의 경우로서 '83. 1.現在 新工場이 竣工 안된 경우 '82. 12. 31以前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舊工場讓渡前에 新工場을 施工하였으나 '83. 1. 1現在 新工場이 竣工 안된 경우에는 다음의 方法중에서 選擇하여 適用을 받을 수 있다.

① 新工場의 竣工日로부터 2年이내에 舊工場을 讓渡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非課稅를 받거나

② 新工場 施工日로부터 '82. 12. 31까지 그 新工場의 取得에 소요한 金額을 '83. 1. 1에 새로운 固定資產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改正된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先移轉의 경우로서 '83. 1. 1現在 新工場이 竣工된 때

先移轉의 경우로서 '83. 1. 1現在 新工場竣工日로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新工場의 取得에 소요한 金額을 '83. 1. 1에 새로운 固定資產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改正된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免除받을 수 있다.

(3) '83. 1. 1이전에 工場을 讓渡한 경우

'82. 12. 31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工場을 먼저 讓渡하였으나 '83. 1. 1現在 아직 새로운 工場을 竣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工場讓渡日로부터 1년내에 新工場을 施工하고 施工日로부터 2年以內에 新工場을 竣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免除한 특별부가세액을 追徵한다.

2. 特別附加稅 稅率調整(法 第59條의 4, 令 第124條의 12)

종전에는 2年以上 保有한 不動產에 대하여는 낮은 稅率을 適用하는 한편, 부동산경기와 관련하여 法定稅率의 15%포인트 範圍안에서 稅率을 加減할 수 있는 彈力稅率制度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稅法改正으로 業務用 不動產에 대하여는 特別附價稅가 幅넓게 免除되고 非業務用 不動產에 대하여만 課稅하게 되었다.

따라서 2년이상 保有資產이라 하여 낮은 稅率을 適用하거나 彈力稅率을 適用하여 法定稅率을 낮출 경우 法人이 非業務用不動產을 長期保有하는 것을 오히려 稅制面에서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長期保有에 대한 差等稅率과 彈力稅率制度를 廢止하였다.

特別附加稅率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2年以上 保有	20(13)%	25%
○ 2年未滿 保有	25(18)%	
○ 未登記 轉賣	35 %	35%

※ (　)內는 彈力稅率임.

3. 取得·讓渡時期의 調整(法 第59條의 2, 令 第124의 2)

不動產의 取得·讓渡時期를 法人稅나 讓渡所得稅의 경우와 같도록 調整하였다.(所得稅法 讓渡所得稅篇 參照).

4. 特別附加稅 非課稅範圍 一部調整

가. 法律에 의한 換地處分의 경우에는 特別附價稅 課稅對象에서 除外 (法 第59條의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法律에 의한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變更되거나 替費地로 充當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讓渡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稅額은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改正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性質이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除外토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에는 특별부가세는 非課稅하면서 그에 대한 防衛稅만큼은 50% 割增課稅하던 것을 앞으로는 防衛稅도 負擔하지 않게 되었다.

나. 公有水面埋立地에 대한 特別附加稅 非課稅(法 第59條의 3)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公有水面埋立地의 所有權을 最初로 取得한 者가 그 埋立地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特別附加稅를 非課稅하도록 함으로써 國土擴張事業에 대한 稅制支援을 強化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非課稅된 特別附價稅에 대한 防衛稅는 負擔하여야 한다.

相 續 稅 法

〔要 約〕

相續財產控除額을 引上함으로써 특히 中產階層의 稅負擔을 緩和하는등 相續稅負擔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年賦延納制度 및 贈與擬制 規定과 기타 納稅節次를 改善하여 納稅便宜를 도모하는 한편, 勤勞福祉基金이 받는 贈與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免除하여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支援하도록 하였음.

Ⅰ. 相 續 稅

1. 相續財產控除額의 引上
2. 3代이상 代물림 住宅등에 대한 追加控除制度 新設
3. 葬禮費 槪算控除 新設
4. 自進申告稅額控除額의 範圍調整
5. 相續稅 決定節次등의 改正
6. 年賦延納申請節次등의 改正
7. 物納申請節次등의 改正

1. 相續財産控除額의 引上(法 第5條·第11條·第11條의 2 및 第11條의 3)

<改正內容>

(單位 : 萬원)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基礎控除	800	1,000
- 人的控除		
• 配偶者控除	1,600	2,000
• 年老者控除	100	300
• 子女控除	-	1人當 500
• 未成年者控除	年24萬원×20세까지의 年數	年40萬원×20세까지의 年數
• 不具廢疾者控除	180	800
- 住宅相續控除	4,000	6,000
- 農地·草地·山林地相續控除	5,000	7,000

(註) ① 住宅相續控除는 基礎控除 및 人的控除額을 包含한 限度額임.

② 農地·草地·山林地控除는 基礎控除 및 住宅控除를 包含한 限度額임.

③ 子女控除 및 未成年者控除는 子女2人까지에 한함.

가. 子女控除 新設

종전에는 被相續人(死亡人)의 子女중 未成年者에 대하여만 相續財産控除를 許容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未成年者여부에 불구하고 子女1人에 대하여 500萬원씩 控除해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子女가 2人이상인 때에는 人口政策과 관련하여 出生日時가 빠른 2人까지만 控除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子女控除는 1,000萬원을 한도로 控除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未成年者인 子女는 子女控除에 추가하여 未成年者控除도 거듭 받을 수 있다.

나. 기타 控除額의 引上

基礎控除額 및 人的控除도 각기 引上調整함으로써 5人家族을 基準으로 할 때 相續稅 免稅點은 종전 약 3,000萬원에서 5,100萬원으로 引上되었다. 특히 不具廢疾者控除額은 社會保障이라는 側面에서 180萬원에서 800萬원으로 大幅 引上하였다.

한편 基礎控除 및 人的控除額이 引上調整되는 것에 맞춰 住宅相續控除의 限度額도 4,000萬

원에서 6,000萬원으로, 農地·草地·山林地相續控除의 限度額도 5,000萬원에서 7,000萬원으로 각각 引上하였다.

다. 相續控除對象인 山林 및 山林地의 範圍擴大

(1) 土 地(땅)

山林地에 대하여는 基礎控除·人的控除 및 住宅相續控除額을 包含하여 7,000萬원을 한도로 控除하여 주는 것으로서 控除對象이 되는 山林地의 種類와 面積을 擴大하였다. 즉 종전에는 營林計劃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이상인 3萬坪이내의 山林地를 控除對象으로 하였으나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地와 保安林, 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6萬坪이내의 山林地로 개정하였다.

이는 指定開發事業이나 保安林등의 경우는 山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政府등의 계획에 따라 開發 또는 管理되기 때문에 이를 控除對象에 包含한 것이며 적정 營林規模와 山地價格을 고려하여 控除對象面積을 「3萬坪에서 6萬坪」까지로 擴大하였다.

(2) 山 林(나무)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 이상인 山林은 全額 相續稅를 課稅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더욱 擴大하여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한 山林 및 採種林·保安林·天然保護林도 免除對象인 山林에 추가하였다.

2. 3代이상 代물림 住宅등에 대한 追加控除制度 新設(法 第11條의 2)

<新設內容>

- 相續財産중 다음의 住宅이 있는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外에 追加控除하여 주는 制度임.
  - ○ 控除對象住宅
    -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
    - 5년이상 被相續人(死亡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者가 相續받은 住宅
  - ○ 追加控除額
    (住宅價格－6,000萬원)×90%

한 집안이 3代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相續된 住宅은 한 집안의 터전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父母를 모시는 우리의 美風良俗을 기리기 위하여 이와같이 住宅相續追加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가.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

3代이상에 걸쳐 代를 물려 相續받는 住宅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女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친정부모가 2代이상 代물림한 住宅을 시집간 딸이 다시 친정부모로부터 相續받는 경우 이는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에 해당한다.

<3代이상의 事例>

증조 할아버지	→	할아버지	→	아버지	→	아들, 딸
1代		2代		3代		
외증조할아버지	→	외할아버지	→	어머니	→	아들, 딸
1代		2代		3代		

나. 5年이상 同居·奉養한 者가 相續받은 住宅

5年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成年의 直系卑屬(아들, 딸, 손자, 손녀등)인 相續人이 相續받은 住宅을 말한다.

「5年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다 함은 被相續人의 死亡日로부터 소급하여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중 1人이(당해 直系卑屬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와 함께) 계속하여 5年이상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夫婦가 함께 被相續人을 모셔야 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을 夫婦가 함께 同居하면서 奉養하던 중 夫婦중 한사람이 就學·질병의 요양·業務上 형평등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夫婦중 한사람이 계속하여 被相續人을 同居하면서 奉養한 경우에 한하여 그 期間을 同居·奉養期間에 算入한다.

同居·奉養의 立證은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의 住民登錄票에 의한다. 따라서 住民登錄票상 同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同居·奉養한 것으로 보나, 同居하지 아니한 사실이 確認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집간 女子가 친정父母를 모신 경우에도 친정父母로부터 相續받은 住宅은 控除對象이 된다.

다. 控除額의 計算

○ 控除額=(住宅價格-6,000萬원)×90%

3대이상 代물림한 住宅등에 대하여는 당해 住宅價格중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뺀 金額의 90%를 追加하여 控除한다. 예를 들면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이 1億원이라고 하면 먼저 일반적인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빼고 그 나머지 4,000萬원에 대하여 90%, 즉 3,600萬원을 다시 뺀 400萬원에 대하여만 相續稅를 물게 된다. 따라서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價格이 6,000萬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住宅相續控除額 6,000萬원을 控除하면 남는 金額이 없으므로 이 경우 追加控除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3代이상 代물림한 住宅 또는 5年이상 同居·奉養住宅등이 중첩되거나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住宅價格이 가장 높은 1住宅에 대하여만 適用한다.

<參 考>

○ 5年이상 同居·奉養者와 그렇지 아니한 者의 稅負擔 比較

	5年以上 同居·奉養한 者	同居·奉養하지 아니한 者
○ 住宅價格	1億원	1億원
○ 住宅相續控除額	6千萬원	6千萬원
○ 追加控除額	3,600萬원 (1億-6千萬원)×90%	
○ 課稅價格	400萬원	4,000萬원
○ 相續稅額	43.2萬원	1,096.8萬원

3. 葬禮費概算控除 新設(法 第4條)

被相續人(死亡人)의 葬禮費는 相續財產價格에서 控除하고, 相續稅를 課稅하게 되는데 葬禮費控除를 받기 위하여는 그 증빙을 稅務署에 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葬禮를 치르는등 경황이 없는 가운데 葬禮費支出證憑을 正確히 提出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稅務署에 提出한 葬禮費證憑이 200萬원이하인 경우는 勿論 證憑을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萬원까지는 무조건 葬禮費로 支出된 것으로 보아 控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實際 支出한 葬禮費가 2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支出證憑을 提出하면 實際 支出한 葬禮費 金額을 控除받을 수 있다.

<適 用 例>

이 규정은 83. 1. 1 이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4. 自進申告稅額控除額의 範圍調整(法 第20條의 2)

종전에는 相續稅課稅價額을 申告하면 控除·減免되는 稅額에 대하여도 다시 10%의 自進申告稅額控除를 하여 주었으나 이는 지나친 惠澤이므로 앞으로는 申告한 相續稅額에서 控除·減免稅額이나 기타 徵收猶豫額을 차감한 實負擔稅額의 10%만 自進申告稅額으로 控除해 주도록 하였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83. 1. 1 이후 최초로 申告書를 提出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改　　正　　前	改　　正
○ 申告한 相續稅額의 10%를 控除	○ 신고한 相續稅額에서 다음을 控除한 金額의 10%를 控除] • 文化財에 대한 徵收猶豫額 • 減免·控除稅額

5. 相續稅 決定節次의 改正(法 第25條·第25條의 2)

종전에는 相續人(相續稅納稅義務者)이 相續稅自進申告를 한 후 自進申告를 받은 稅務署長은 相續稅課稅價額을 決定하여 通知한 후 다시 納付할 相續稅額을 決定하여 通知(相續稅納稅告知書)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課稅價額의 決定通知節次를 없애고 바로 相續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를 하도록 하여 他稅目의 경우와 稅金決定節次를 같게 하였다.

그리고 相續人이 國稅등 다른 稅金을 滯納하여 滯納處分을 받거나 海外로 移住하는 경우등 國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한 納期前徵收事由가 있는 때에는 相續稅 自進申告期日(相續開始日로부터 6月)전이라도 稅務署長은 隨時로 相續稅課稅標準과 稅額을 早期에 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 稅金의 逸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相續稅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方法에 있어서도 여러명의 納稅義務者(相續人)가 있는 경우 納稅義務者 1人에게만 通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通知의 效力은 納稅義務者 모두에게 미치도록 明文化하였다.

<適 用 例>

이 規定은 '83. 1. 1 이후 최초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改 正 前	改 正
○ 決定節次 ① 自進申告→② 課稅價額決定通知→ ③ 稅額決定通知(告知)	○ 決定節次 ① 自進申告→② 課稅標準 및 課稅決定通知(告知) ○ 隨時賦課制度 新設

6. 年賦延納 申請節次등의 改正(法 第28條)

가. 年賦延納申請 및 許可通知

相續稅 課稅價額 決定通知를 廢止하게 됨에 따라 相續稅年賦延納節次를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

즉, 相續稅 自進申告時 年賦延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相續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時 그 許可與否를 通知하도록 하였고, 相續稅 自進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自進申告時 年賦延納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相續稅 決定通知에 따른 納付期限까지 年賦延納을 申請하면 申請日로부터 10日내에 그 許可與否를 通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相續稅 告知納付期限을 경과하여 相續稅 年賦延納許可通知가 있는 경우에는 年賦延納 許可通知日 이전에 한하여 遲延許可된 年賦延納稅額에 대하여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加算金은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事業相續時 年賦延納時期 延長

이번 改正에서는 事業相續에 對하여 年賦延納期間을 一般財産의 경우보다 2년을 더 延長하여 5年으로 하였다. 이는 事業을 相續받은 경우 相續稅納付를 위하여 事業을 處分하지 아니하고도 事業을 해서 번 돈으로 相續稅를 納付할 수 있도록 하여 事業의 계속성도 維持하면서, 家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事業相續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財産을 相續받은 경우로서 그 財産總價額이 1億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被相續人(死亡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3年이상 계속하여 營爲한 個人事業(不動産賃貸業·自由職業·서비스業은 除外)

②被相續人(死亡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10%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被相續人이 相續開始日 現在 3年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그리고 5年間 年賦延納을 받을 수 있는 稅額을 事業相續으로 인정되는 財産에 상당하는 相續稅에 한한다.

改正된 이 規定은 '83. 1. 1이후 최초로 年賦延納을 許可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 年賦延納 利子率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5厘였으나 5錢으로 引下하였다. 이 引下된 利子率은 '83. 1. 1부터 施行한다. 따라서 '82年에 年賦延納을 許可한 分이라 할지라도 '83. 1. 1이후의 期間에 대하여는 引下된 利子率이 適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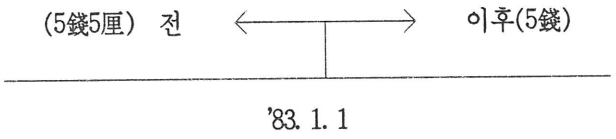

	改 正 前	改 正
○ 年賦延納 및 物納 申請 期限	○ 課稅價額 決定通知日로부터 30日內(外國에 있는 경우에는 3月內) 申請	○ 相續稅 自進申告時 또는 申告納付期限까지 申請
○ 年賦延納 許可·通知	○ 申請日로부터 30日內 申請人에게 許可與否 通知	○ 相續稅 自進申告期限內 申請時:稅額決定通知時 함께 許可與否通知 ○ 告知納付期限內 申請時:申請日로부터 10日內 許可與否 通知
○ 年賦延納 期 限	3年	3年 但,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
○ 年賦延納 利 子 率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5厘	100원에 대하여 1日 5錢

7. 物納申請節次등의 改正(法 第29條)

物納의 申請 및 許可節次는 年賦延納의 申請 및 許可節次가 改正된 것과 똑같이 改正되었다.

Ⅱ. 贈 與 稅

1. 당초 贈與者에게 贈與資產 返還時 贈與稅 再評價 排除
2. 直系尊卑屬間 不動產등 相互交換時 贈與擬制 除外
3. 特殊關係者에게 高價讓渡時 贈與擬制
4. 贈與擬制에서 除外되는 信託財產
5. 勤勞福祉基金과 관련한 贈與稅 非課稅

1. 당초 贈與者에게 贈與財産 返還時 贈與稅 再課稅 排除 (法 第29條의 2)

贈與를 받은 者가 贈與받는 金錢以外의 財産을 1年 이내에 당초 贈與者에게 返還 또는 다시 贈與한 때에는 贈與稅를 또 賦課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甲이 乙에게 住宅을 贈與한 후 乙이 그 贈與받은 住宅을 甲에게 返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초 受贈者 乙에게 贈與稅를 課稅한 후 乙로부터 贈與財産을 返還받는 甲에 대하여 贈與稅를 再次 課稅하였다.

그러나 改正된 規定에서는 당초 受贈者 乙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課稅하나, 乙로부터 贈與財産을 返還받은 甲에 對하여는 贈與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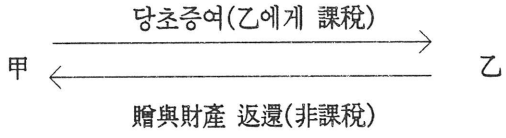

2. 直系尊卑屬間 不動産등의 相互交換時 贈與擬制 除外 (法 第34條, 令 第41條)

종전에는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에게 財産을 판 경우 그 財産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대가를 支給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해 財産을 판 사람이 特殊關係者인 산 사람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아 贈與稅를 課稅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權利의 移轉등에 있어서 登記·登錄을 요하는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間에 서로 交換한 경우는 그 代價의 支給事實이 明白하며 贈與稅 回避를 위한 造作의 可能性도 적으므로 贈與의 擬制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直系尊卑屬間에 自動車를 서로 交換한 경우는 그 價格差異가 30%를 넘지 않는한 贈與稅는 課稅되지 아니한다. 이때 交換한 自動車의 價格差異가 30%를 넘는 때에는 法 第3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間의 低價 또는 高價讓受度에 의한 별도의 贈與擬制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讓渡所得稅가 課稅되는 不動産(土地·建物)을 서로 交換한 경우에는 이

번 相續稅法 改正으로 直系尊卑屬등간의 贈與擬制에서는 除外되었다 해도 각각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所得稅法에 의한 讓渡所得稅는 課稅된다.

改 正 前	改 正
○ 配偶者·直系尊卑屬間의 財産讓渡時 讓受者가 그 財産의 代價를 支給한 사실에 불구하고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 權利의 移轉이나 行使에 있어서 登記나 登錄을 要하는 財産을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間에 交換한 경우는 贈與로 보지 아니함.

3. 特殊關係者에게 高價讓渡時 贈與擬制(法 第34條의 2)

종전에는 일정한 特殊關係에 있는 者에게 財産을 현저히 低廉한 價額, 즉 時價의 70%이하의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에만 讓渡者가 讓受者에게 그 差額相當額을 贈與한 것으로 擬制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종전의 低價讓渡以外에 그 반대의 경우인 高價讓渡의 경우에도 贈與로 擬制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特殊關係있는 者로부터 현저히 높은 價額, 즉 時價의 130%이상의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高價讓渡로 보아 讓受者가 讓渡者에게 그 差額相當額을 贈與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甲이 特殊關係者인 乙로부터 時價 1,000萬원인 重機를 1,500萬원에 산 경우 甲이 乙(讓渡者)에게 500萬원은 贈與한 것으로 본다.

低價讓渡의 경우는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는 반면 高價讓渡의 경우는 讓渡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低價讓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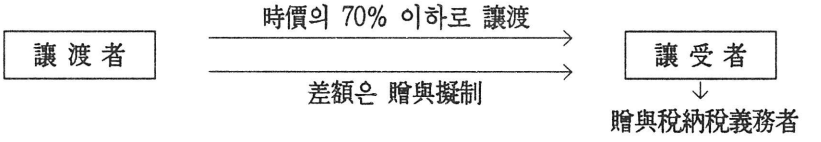

(高價讓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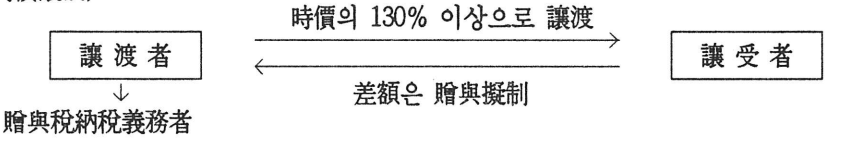

改　　正　　前	改　　正
○ 低價讓渡 特殊關係者에게 時價의 70%이하의 價額으로 財產讓渡時 그 差額은 讓受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 低價讓渡 (改正前과 같음)
<新　　設>	○ 高價讓渡 特殊關係者에게 時價의 130%이상의 價額으로 財產讓受時 그 差額은 讓渡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봄.

4. 贈與擬制에서 除外되는 信託財產(法 第32條의 2)

相續稅法上 不動產등을 實所有權者의 名義로 登記하지 아니하고 他人名義로 登記하는 경우에는 實所有權者가 名義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보고 贈與稅를 課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他人등 第3者 名義로 登記등을 한 財產중에서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을 營爲하는 자가 信託財產인 사실을 登記한 경우에는 實所有權者와 名義上의 所有權者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그러한 때는 종전부터 贈與擬制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信託業法에 의한 財產의 信託登記를 贈與擬制에서 除外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趣旨로 信託法에 의한 信託財產임을 登記·登錄한 경우도 贈與擬制에서 除外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을 營爲하는 者가 信託財產인 事實을 登記등을 하는 경우	信託法 또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財產인 事實을 登記등을 하는 경우

5. 勤勞福祉基金과 關聯한 贈與稅 非課稅(令 第4條·第42條)

가. 勤勞福祉基金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企業體에 設置하는 基金으로서 稅制支援對象이 되는 勤勞福祉

基金은 勞動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이 協議하여 정한 바에 의하여 設置·運營되는 것에 한한다.

나. 贈與稅의 非課稅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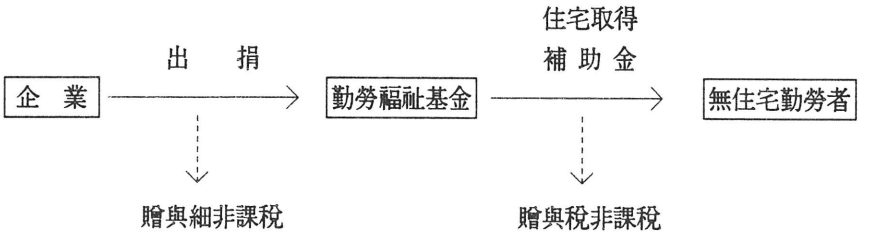

勤勞福祉基金이 企業으로부터 贈與받은 金品에 대하여는 贈與稅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無住宅勤勞者가 건물연면적이 50㎡(15坪)이하인 住宅을 取得하는 경우에 勤勞福祉基金으로부터 贈與받은 住宅取得補助金중 住宅取得價額의 5%이하의 金額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非課稅한다.

租稅減免規制法

[要　約]

1) 앞으로 우리經濟는 競爭原理에 의한 市場經濟體制를 擴充해 나감으로써 經濟效率을 極大化해야 할 것인바, 稅制面에서도 지나친 高稅率構造는 民間市場經濟의 暢達 내지는 活性化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適正化해가는 한편 特定產業이나 特定部門에 偏重된 많은 租稅減免(多減免)은 이를 점차 줄여 가는 것(小減免)이 바람직한 經濟運用方向이 될 것이고, 租稅本然의 中立性도 回復하여 公平課稅에 接近하게 될 것이다. 이번 稅制改編에서는 所得稅 및 法人稅의 稅率이 引下 調整되어 전반적인 企業의 稅負擔은 輕減되는 만큼, 競爭制限的인 特定部門의 租稅支援은 그 幅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즉, 鑛業·畜產業등 一部 特定產業에 대하여 例外的으로 許容되고 있는 直接減免인 所得控除制度를 廢止 또는 縮小調整하고 機械·電子工業등 特定產業에 대한 準備金·特別償却의 二重的인 間接減免은 準備金制度를 廢止하여 特別償却 中心으로 適用하도록 하였고,

2) 한편, 技術·人力開發을 통한 經濟構造의 質的內實化와 中小企業의 均衡있는 發展, 對外指向的인 持續的成長은 '80年代 우리經濟의 基本的 發展戰略이 될 것이므로 特定產業이 아닌 技術·人力開發, 中小企業 輸出등 戰略的 機能部分에 대하여는 所得稅와 法人稅의 稅率引下에도 不拘하고 從來의 租稅支援制度를 繼續存置하도록 하여 相對的으로 支援을 強化하는 效果를 가지도록 하였고, 특히 賦存資源등 資本이 不足한 우리나라의 경우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技術開發 및 革新에 의한 生產性向上이 가장 重要한 것이므로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은 이를 보다 強化하였고,

3) '79年 이래 長期間 持續된 景氣沈滯가 다소 恢復되는 趨勢라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經濟의 活性化에는 未洽하므로, 關聯產業 波及效果 및 雇傭增大效果가 큰 住宅建設을 促進함으로써 景氣活性化에 必要한 稅制上의 措置를 새로이 마련하였고,

4) 市·道醫療院, 大韓地籍公社, 韓國가스安全公社등을 5%의 法人稅가 課稅되는 公共法人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現行制度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Ⅰ. 企業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Ⅱ. 讓渡所得稅등에 대한 租稅特例調整

Ⅲ. 公共法人에 대한 租稅特例補完

Ⅳ. 非課稅利子所得등 기타

Ⅰ. 企業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1.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減免縮小
2. 鑛業에 대한 減免縮小
3. 畜產業에 대한 減免縮小
4. 海外港灣荷役·運送業에 대한 減免縮小
5. 施設貸與(Lease)業에 대한 減免縮小
6.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7.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8. 社員用住宅 新築時 投資稅額控除
9.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縮小등 其他

1.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減免縮小

가. 投資準備金制度 廢止(法 第10條·第31條·第39條)

1) 機械·電子등 6個業種의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의 2가지 間接支援制度를 許容하였으나, 投資準備金制度는 廢止하였다.

投資準備金制度는 '81年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時 종전 法에서 法人稅(所得稅)免除(3年間 100%, 2年間 50%) 投資稅額控除(10%, 外國產機資材는 8%)등 直接減免 爲主로 되어있던 租稅減免을 大幅 縮小하면서 租稅減免을 一時에 縮小調整함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고, 企業의 內部留保促進을 支援할 目的으로 導入된 制度이다.

그러나, '82年 稅法改正으로 稅率이 크게 引下調整됨에 따라 企業의 稅後留保所得이 自動的으로 增加하게 되므로 內部留保支援을 위한 投資準備金制度는 廢止하였고, 앞으로는 特別償却制度만으로 運用하여 企業이 이미 投下한 資本을 早期에 回收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改 正 前	改 正
– 支援產業(機械·電子·鐵鋼·造船·航空·나프타分解工業), 防衛產業, 外國航行事業	改正前과 같음
– 支援方法	
• 投資準備金 : 機械裝置價額(外國航行事業의 경우는 航空機 및 船舶價額)의 5%→損金算入後 3年거치 3年分割 還入	廢 止
• 特別償却 : 機械裝置 또는 船舶 및 航空機에 대한 一般減價償却額의 100%	改正前과 같음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各 課稅年度에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規定에 따라 事後管理를 한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나. 重要產業중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率 引下調整(法 第11條 第2項)

機械·電子工業은 技術集約的 高附加價値產業으로서 우리나라 產業開發與件에 適合한 產業이고 또한 技術開發의 速度가 대단히 빨라 종전부터 다른 重要產業보다는 支援을 다소 強化한다는 側面에서 特別償却 100% 대신에 投資稅額控除를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投資稅額控除制度는 機械·電子工業의 開發戰略上 重要性을 勘案하여 繼續存置하되 이번 稅制改編에서 稅率이 大幅 引下됨에 따라 投資稅額控除率을 引下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投資稅額控除 機械裝置價額의 [10%] (外國產機資材는 [6%])稅額 控除選擇 適用	– 投資稅額控除 機械裝置價額의 [5%] (外國產機資材는 [3%]) 投資稅額控除

<適 用 例>

- 引下된 投資稅額控除率은 1983年 1月 1日 以後 投資를 完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2. 鑛業에 대한 減免縮小

資源開發事業인 鑛業에 대한 租稅減免은 稅率의 引下調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다.

가. 直接減免인 石炭增產所得控除制度를 廢止하였다. 즉, 前年보다 石炭生產을 增產하는 경우 그 增產比率에 따라 所得金額의 30%까지 控除하던 所得控除制度를 廢止하고

나. 鑛業에 대한 準備金중 鑛山保安施設準備金制度는 廢止하되, 鑛山保安施設投資는 이미 制度化되어 있는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對象인 產業災害豫防施設投資와 事實上 그 投資의 性格이 같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鑛山保安施設에 대한 投資는 特定設備投資로서 稅制支援을 適用받도록 하였고(7.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強化篇 參照)

다. 鑛業投資準備金은 重要產業등과는 달리 採鑛, 掘進 및 廢鑛에 所要되는 費用이 큰 鑛業으로서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그 設定을 계속 認定하되 그 支援水準만을 下向 調整하였으며

라. 鑛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는 重要產業등 다른 產業에서와 같은 취지로 그대로 存置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가. 石炭增產所得控除 : (所得金額 30% 限度)	廢 止
나. 鑛山保安施設 準備金 : 收入金額의 3% 損金算入 →3年거치 3年均等分割 還入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로 轉換
다. 鑛業投資準備金 : 收入金額의 5% (海外資源開發事業은 10%) 損金算入→3年거치 사용후 3年均等分割 還入	鑛業投資準備金 收入金額의 2% (海外資源開發事業은 5%) 損金算入→3年거치 사용후 3年均等分割還入

改　　正　　前	改　　正
라. 特別減價償却 : 機械裝置價額에 대한 一般減價償却額의 100%(石炭鑛夫社宅은 50%)	改正前과 같음

<經過措置>

- 石炭鑛業에 대한 石炭增産所得控除는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고, 所得控除를 받으므로 인하여 積立한 廢鑛積立金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를 계속 適用받는다.
-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鑛山保安施設準備金을 設定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事後管理한 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마. 100% 特別減價償却을 適用하는 鑛業의 範圍調整(令 別表 7)

100% 特別償却이 適用되는 鑛業의 範圍에 重要鑛種인 사문석과 토륨광을 새로이 追加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金·銀·鐵鑛등 22個 鑛物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사 문 석 ○ 토 륨 광

<適 用 例>

- 새로이 追加된 사문석과 토륨광의 鑛業에 대하여는 1983年 1月 1日 以後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100%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3. 畜産業에 대한 租稅支援 調整

가. 企業畜産에 대한 所得控除縮小(法 第37條)

畜産業에 대해 許容해온 直接減免인 所得控除制度는 稅率이 引下調整됨에 따라 所得控除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나.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非課稅範圍擴大(所得稅法 施行令 別表 3)

反面에 農家가 副業으로 營爲하는 畜産業에 대하여는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農家副業規模의 畜産範圍를 現實性있게 上向調整하여 畜産業의 底邊을 擴大하고, 農家所得을 實質的으로 增大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企業畜産에 대한 所得控除	○ 所得金額의 50%		所得金額의 20%
나. 農家副業規模의 畜産範圍		非 課 稅 限 度	非 課 稅 限 度
	젖소	10마리 이하	20마리 이하
	소	20 〃 〃	30 〃
	돼지 산양 면양	각각 100마리 이하	각각 150마리 이하
	닭 토끼 오리	각각 1,000마리 이하	각각 3,000마리 이하

<經過措置 및 適用例>

- 1982年度中에 企業畜産業을 開始한 者는 殘存減免期間동안 종전의 規定에 따라 50%

所得控除를 받게 되며

- 農家副業畜産의 경우에는 1983年 1月 1日 이후부터 改正된 農家副業畜産規模에 의하여 所得稅를 非課稅받게 된다.

4.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에 대한 租稅支援 縮小(法 第26條·第27條·第28條)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에 대하여는 海外事業所得控除등이 適用되는 海外事業 範圍에서 除外하여 일반적인 外貨獲得事業으로서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과 똑같이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였다.

調 整 內 譯

改 正 前	改 正
〔海外事業으로 支援〕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으로 支援〕
○ 海外事業所得控除(法 §26) : 外貨收入金額의 2%(所得金額의 50% 限度)	○ 輸出損失準備金(法 §22) : 外貨收入金額의 1%(所得金額의 50%限度)損金算入→1年거치 3年均等分割還入
○ 海外事業損失準備金(法 §27) : 外貨收入金額 2% 損金算入→4年据置 3年均等分割還入	○ 海外市場開拓準備金(法 §23) : 外貨收入金額의 1% 損金算入→1年据置 3年均等分割還入
○ 特別減價償却(法 §28) : 海外事業用 重機械裝置에 대한 30%特別償却	○ 特別減價償却(法 §25) : 外貨收入金額의 比率에 따라 30%까지 特別償却

<經過措置 및 適用例>

-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는 1982年 12月 31日以前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만 종전의 規定에 따라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으며,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稅額相當額에 대하여는 法 第90條 내지 第92條의 規定에 따라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하고 계속 事後管理를 받게 된다.

- 海外事業損失準備金 및 特別償却은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適用받고, 83年 1月 1日이후 開始한 課稅年度부터는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으로서 支援을 받는다.
-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規定에 따라 事後管理한 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還入한다.

5. 施設貸與(Lease)業에 대한 減免縮小(法 第53條, 令 第43條)

施設貸與會社에 대하여도 重要產業등 다른 特定產業에서와 같은 취지로 內部留保促進을 위한 準備金制度는 廢止하고, 特別償却의 경우 12時間 以上 사용한 機械裝置에 대하여 許容되는 特別償却率을 20% 水準으로 引下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施設貸與損失準備金 : 施設貸與價額의 2% 損金算入→翌年度 益金 算入	廢 止
○ 特別減價償却 :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 또는 技術用役事業에 대하여 貸與한 施設價額에 대한 一般減價償却額의 50%	○ 特別減價償却 : …… 20%

<經過措置 및 適用例>

- 1982年 12月 31日 이전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종전의 規定에 따라 準備金을 설정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 益金에 還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益金에 還入한다.
- 引下된 特別減價償却率은 1983年 1月 1日 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한다.

6. 技術開發을 위한 租稅支援 強化

技術·人力開發에 대한 租稅支援은 '81稅法改正時 大幅 強化한 바 있고 이번 稅法改正에서도 다른 分野의 稅制支援은 縮小調整하면서도 技術·人力開發分野에 대한 稅制支援은 稅率引下에도 不拘하고 계속 維持함으로써 相對的으로 支援을 強化하는 한편 企業의 新技術研究開發活動(R&D)을 支援하는 制度는 오히려 強化하여 技術革新을 통하여 國際競爭力을 提高토록 하였다.

가. 研究試驗用施設에 對한 一時償却率 引上(法 第18條第2項)

最近 國內外의 産業社會에 있어 技術開發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여 研究試驗用施設에 대한 一時償却率을 大幅 引上하였다.

適用對象	改正前		改正	
研究試驗用機械및裝置	○ 10%(外國産機資材는 8%)稅額控除 ○ 50% 一時償却	중 擇 一	○ 10%(外國産機資材는 8%)稅額控除 ○ 90% 一時償却	중 擇 一

<適用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取得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나. 試驗研究用 見本品 및 研究開發用品 輸入時 特別消費稅 및 關稅의 免除 (法 第75條第6號, 第83條第1項第5號)

企業附設研究所 또는 中小企業이 共同으로 設立한 産業技術研究組合이 新製品·新技術을 開發함에 있어서 國內生産이 困難하여 外國에서 輸入하는 見本品·開發用品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 및 關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新　　設>	○ 試驗硏究用 見本品→特別消費稅免除 ○ 硏究開發用品→關稅免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7. 特定設備投資에 對한 租稅支援 強化(法 第71條, 令 第57條)

가. 適用時限延長

內國人이 에너지 節約施設·公害防止施設등 特定設備에 投資를 한 경우에는

[• 投資金額의 10%(外國産機資材는 6%)의 稅額控除
  • 取得價額의 50% 一時償却] 중 擇一

하여 租稅支援을 適用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特定設備에 對한 投資를 계속 誘導하기 위하여 종래 '83.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의 時限인 1986年 12月 31日까지 繼續 租稅支援을 하도록 하였다.

나. 特定設備投資의 範圍擴大

特定設備投資의 範圍에 「鑛山保安法에 의한 鑛山保安支援施設」을 追加하여 産業災害豫防施設과 衡平을 맞추고 鑛夫의 安全事故와 災害를 防止하기 위한 投資를 誘導하도록 하였다.

鑛山保安施設의 具體的인 範圍는 施行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適用時限	1983. 12. 31	1986. 12. 31
나. 特定設備의 範圍	• 에너지節約施設 • 公害防止施設	〃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産業災害豫防施設 •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하여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臺 및 試驗研究施設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鑛山保安施設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投資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8. 社員用 住宅新築時 投資稅額控除 新設(法 第72條의 2, 令 第57條의 3)

企業이 住宅을 新築하여 無住宅 從業員에게 賃貸하는 경우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도록 함으로써 企業이 低廉한 賃貸住宅供給을 통하여 住宅供給을 擴大하는 한편 從業員의 住居生活安定에 기여할 수 있도록 稅制上 뒷받침하였다.

가. 投資稅額控除對象者

無住宅從業員(出資者인 任員은 除外)에게 賃貸하기 위하여 住宅의 總面積이 50㎡(15坪)이하인 住宅을 住宅建設 事業單位當 20戶이상 新築하는 內國人으로서

(1) 個人의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20條에 規定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

(2) 法人企業의 경우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가 있는 內國法人(非營利法人을 包含하되 法 別表 I에 해당하는 公共法人은 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用이 排除된다)

나. 投資稅額控除

(1) 當該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住宅新築金額의

10%(外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新築한 경우 6%)를 控除한다.

(2) 50㎡(15坪)이하인 社員用 賃貸住宅과 其他의 住宅을 함께 新築한 경우 控除稅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住宅新築金額} \times 10\%(\text{또는 } 6\%) \times \frac{\text{社員用 賃貸住宅의 總延面積}}{\text{住宅의 總延面積}}$$

(3) 住宅新築金額의 範圍

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住宅新築金額은 法人稅施行令 第48條第2項 및 所得稅法施行令 第86條第1項에 規定한 取得價額으로 하되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買入代金도 包含한다.

다. 低價賃貸時 課稅排除(不當行爲計算否認의 適用排除)

無住宅 從業員에게 住宅을 低廉한 價格으로 賃貸하는 경우에도 所得稅法 第55條 및 法人稅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行爲計算規定의 適用을 排除하여 低廉한 價格으로 賃貸함에 따른 經濟的 利益에 對하여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素地를 없앴다.

라. 住宅新築計劃書등 提出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의 書類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住宅新築을 着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住宅新築計劃書(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土地의 不動産登記簿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2) 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竣工報告書

마. 其　　他

稅額控除를 받은 新築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終了日로부터 5年이내에 讓渡하거나 無住宅從業員 以外의 者에게 賃貸 또는 다른 目的에 轉用한 때에는 控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適 用 例>

– 1983年 1月 1일 이후 賃貸住宅을 最初로 竣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9.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縮小등 其他

가. 租稅支援의 綜合限度 縮小調整(法 第88條)

租稅支援이 不可避하더라도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最小限의 稅負擔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81年 稅法改正時 最低限稅(Minimum Tax)를 導入하여 一般企業에 대하여는 租稅支援手段別(準備金, 特別償却, 所得控除, 稅額控除)로 綜合限度를 두고 있는 바, 이번 稅法改正으로 稅率이 引下調整됨에 따라 從前의 綜合限度를 계속 適用하는 경우 企業의 稅負擔水準이 지나치게 낮아지기 때문에 稅率引下效果를 相殺시키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綜合限度를 縮小調整하였다.

支援手段別	改正前	改正
각종 準備金·特別償却	總所得의 60% 이내	總所得의 50% 이내
각종 準備金·所得控除	課稅所得의 50% 이내	改正前과 같음
각종 準備金·稅額控除	算出稅額의 40% 이내	算出稅額의 30% 이내

<適用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한다.

나. 從前法 經過措置에 대한 租稅支援綜合限度의 適用(法律 第3481號 附則 第15條 후단 新設)

從前法 附則(法律 第3481號 81. 12. 31 全文改正) 第16條 내지 第18條의 經過措置規定에 따라 增資所得控除·重要產業減免 및 畜產業減免을 받는 경우 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租稅支援의 綜合限度를 適用받는지 與否가 從前法 附則으로는 不分明하였는 바, 이번 稅法改正에서 이를 補完하여 '81稅法改正의 經過措置로 繼續減免을 받는 경우에도 綜合限度의 適用을 받도록 明文化하였다.

<適用例>

- 1983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한다.

<圖　示>

綜合限度縮小調整에 따른 稅負擔比較(防衛稅·住民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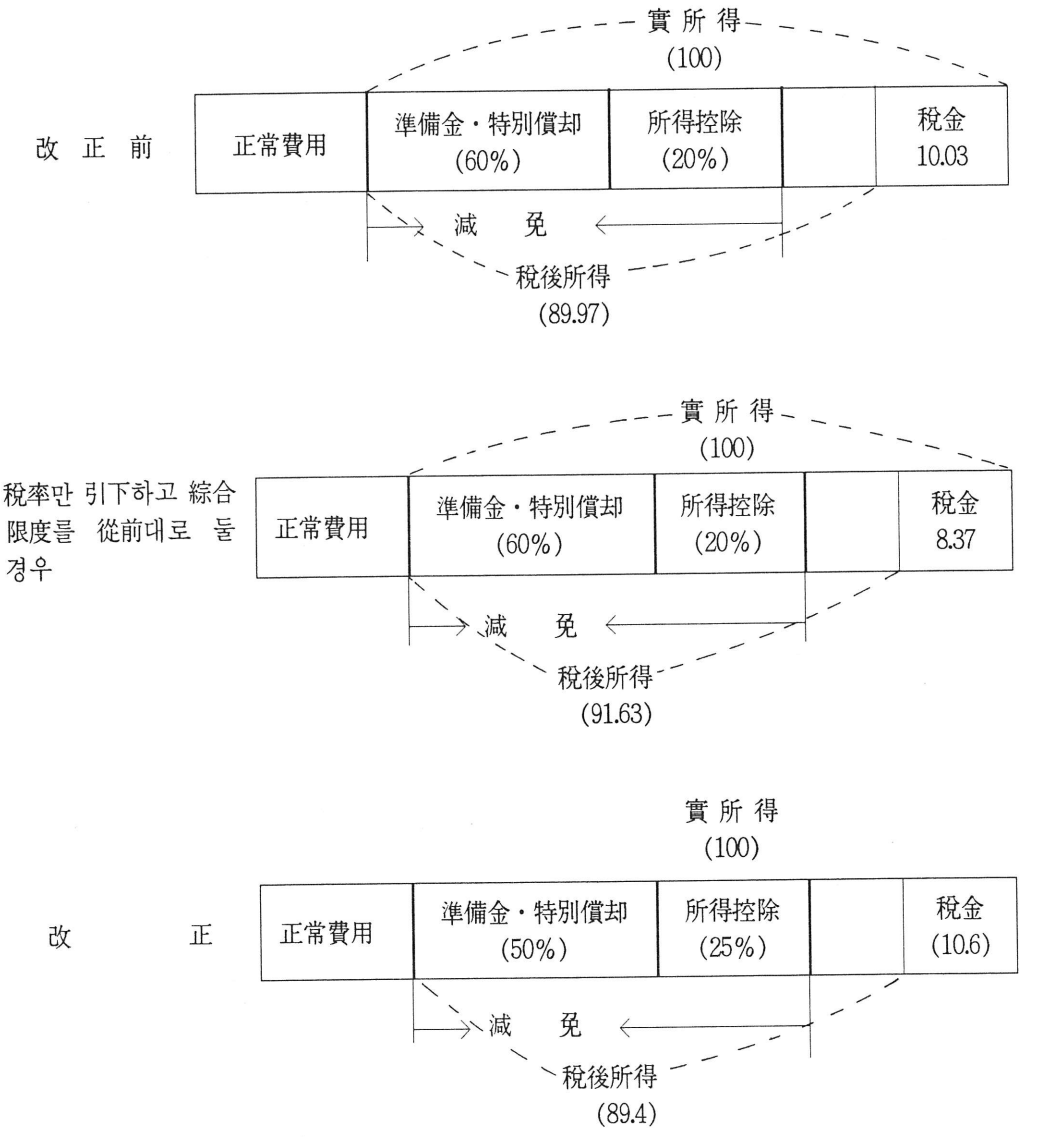

※ 1) 改正前後의 法人稅의 最高稅率로 比較

2) 租稅支援을 最大限으로 받는 경우임.

라.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資產處分時 控除稅額追徵對象 擴大(法 第92條 第1項)

租稅減免規制法上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은 資產을 投資한 날로부터 5年이내에 處分(賣却 등)하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稅額에 利子相當加算額을 加算하여 追徵토록 하고 있는 바, 이의 適用對象을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新技術企業化事業投資稅額控除 ○ 地方移轉事業稅額控除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 ○ 臨時投資稅額控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資產을 處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마. 利子相當加算稅의 追徵率 引下調整(法 第13條第4項·第92條, 令 第7條·第65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控除 또는 免除받은 稅額 100원에 대해 日邊 10錢(年 36.5%)에 相當하는 利子相當加算額을 함께 追徵하고 있으나 現行 金融機關의 延滯金利水準을 감안하여 追徵率을 日邊 6錢(年 21.9%)으로 大幅 引下調整하였다.

(1) 投資準備金·技術開發 및 地方移轉準備金 一定期間內에 所定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當該 準備金을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法 第13條第4項)

(2) 法人稅를 減免 또는 控除받은 法人이 積立한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의 轉入 以外의 用途에 處分하거나(法 第92條第1號) 또는 所得稅를 減免 또는 控除받은 個人이 減免 또는 控除받은 稅額相當額을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나 長期

借入金의 償還에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法 第92條第3號)

(3)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당해 事業用資産을 5月이내에 處分하는 경우(法 第92條第2號)

改　　正　　前	改　　正
100원에 대한 日邊 10錢(年 36.5%)	100원에 대한 日邊 6錢(年 21.9%)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未使用한 準備金을 最初로 益金에 算入하는 分과, 減免·控除稅額의 追徵事由가 最初로 發生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사. 其　　他

각종 租稅特例規定이 新設 또는 廢止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補則에서 規定하고 있는

○ 區分經理(法 §86)

○ 重複支援의 適用排除(法 §87)

○ 租稅支援에 관한 綜合限度(法 §88)

○ 控除稅額의 移越控除(法 §89)

○ 推計時 稅額計算의 特例(法 §90)

○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法 §91)

○ 減免控除稅額의 追徵(法 §92)등

關聯條文의 字句를 整理하였다.

Ⅱ. 讓渡所得稅등에 대한 租稅特例調整

1. 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率 引下
2.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
3.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擴大

4.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補完
5.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免除制度 改善
6.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要件緩和

1. 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率 引下(法 第67條의 2, 令 第55條의 2)

雇傭과 關聯産業에 波及效果가 큰 國內住宅景氣를 實需要 中心으로 浮揚함으로써 經濟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一定期間內 取得한 新築住宅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率을 引下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引下稅率

法에서 규정한 內容	引下稅率(實行稅率) 〔施行令規定事項〕
가. '82.5.18~'83.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 5%까지 引下可能 나. '83.7.1~'84.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중 국민주택은 5%까지 引下可能 기타住宅은 20% 〃	가. '82.5.18~'83.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 5%로 施行 '83상반기에는 不動産景氣를 감안하여 정할 예정임(未定)

나. 新築住宅의 槪念

(1) '82. 5. 18부터 '84. 6. 30까지 住宅을 新築하여 不動産 登記簿에 保存登記한 住宅을 原則으로 한다.

(2) 다만, 住宅建設業者가 新築하여 不動産登記簿에 保存登記한 住宅으로서 '82. 5. 18 現在 住宅建設業者의 所有로 되어 있는 住宅도 포함된다. 이는 原則的으로 '82. 5. 18부터 '84. 6. 30사이에 新築하여 保存登記한 住宅이 讓渡所得稅率의 引下惠澤을 받는 것이지만 住宅建設業者가 分讓할 住宅을 新築한 경우에는 '82. 5. 18이전에 新築하여 所

有權保存登記를 하였더라도 '82. 5. 18現在의 在庫住宅은 讓渡所得稅率引下惠澤을 받을 수 있는 新築住宅으로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82. 5. 18 現在 住宅建設業者의 所有로는 되어 있어도 住宅建設業者가 割賦 또는 延拂 條件으로 賣買契約을 체결한 住宅은 除外된다.

(3) 다음의 住宅은 新築住宅에서 除外된다.

- 所得稅法 第5條第6號(자)의 규정에 의한 高級住宅
- 未登記 讓渡住宅
-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內의 住宅

다. 引下된 讓渡所得稅率의 適用要件

(1) 住宅建設業者가 아닌 居住者가 住宅을 新築하는 경우

不動產登記簿에 居住者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것. 이때 新築住宅의 所有權保存登記는 '82. 5. 18부터 '84.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住宅建設業者가 住宅을 新築하는 경우

住宅建設業者가 新築하여 所有權保存登記한 住宅을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最初로 取得하여 不動產登記簿에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居住者가 당해 新築住宅을 讓渡할 때 引下된 稅率이 適用된다. 이때, 所有權移轉登記는 '82. 5. 18부터 '84.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84. 6. 30 現在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所有權移轉登記를 받지 못한 狀態에 있는 경우, 즉 '84. 6. 30 現在 分讓만 받았든가 所有權移轉登記없이 割賦 또는 延拂條件으로 賣買契約만 체결되어 있는 住宅은 引下된 稅率이 適用되지 않는다.

라. 綜合所得稅 比較課稅 適用排除

新築住宅에 대하여 讓渡所得稅의 引下稅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70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 比較課稅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新築住宅부터 引下된 稅率을 適用한다.

2.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免除擴大(法 第62條, 令 第50條)

종전에는 85㎡(25.7坪)이하의 아파트建設用地에 대하여만 讓渡所得稅를 全額免除하고 있던 것을 85㎡(25.7坪)이하의 單獨·聯立住宅의 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全額免除토록 하여 小規模 國民住宅의 供給을 促進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免除對象	• 아파트地區內 土地를 85㎡(25.7坪)이하의 아파트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 85㎡(25.7坪)이하의 聯立·單獨住宅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追加
• 免除方法	• 土地讓渡時:讓渡所得稅事前免除	• 住宅建設登錄業者·住宅公社에게 讓渡時:讓渡所得稅事前免除 • 기타 住宅建設實需要者에게 讓渡時:住宅준공(土地讓渡日로부터 3年이내)後 讓渡所得稅 事後還給
• 事前免除時의 追徵事由	• 建設部長官의 事業計劃書上의 竣工日까지 아파트를 竣工하지 않은 경우 土地買入者인 建設業者에게 追徵 (新 設)	아파트建設時는 改正前과 같음. • 아파트가 아닌 聯立·單獨住宅建設時는 土地買入日로부터 3年이내 住宅을 建設하지 않은 경우 土地買入者인 建設業者에게 追徵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土地부터 適用한다.

3.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擴大(法 第45條)

讓渡所得稅는 資產의 讓渡·交換뿐만 아니라 法人에 現物出資를 할 때도 課稅된다. 그러나

종래부터 個人事業을 영위하던 個人이 當該事業體를 法人으로 轉換함으로써 現物出資하게 되는 土地·建物에 대하여는 事業의 繼續性과 企業의 法人化를 支援하는 側面에서 現物出資로 인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하여 왔다. 그런데 從前에는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個人事業, 즉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으로서 常時 從業員數 300人(建設業은 50人)이하이거나 有形固定資產價額이 3億원 이하인 事業을 영위하는 個人만이 그 事業을 法人으로 轉換할 때 讓渡所得稅가 免除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法人化할 필요가 더 절실한 規模가 큰 個人事業體는 讓渡所得稅의 負擔으로 인하여 個人事業의 法人化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 및 水產業을 營爲하는 居住者는 從業員數, 有形固定資產價額의 規模에 關係없이 法人轉換에 따른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適用事業者	• 中小企業을 營爲하는 個人	• 企業規模에 관계없이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 또는 水產業을 營爲하는 모든 個人

※ 中小企業의 範圍(令 第12條)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을 營爲하는 居住者로서

- 常時從業員數 300人(建設業은 50人)이하이거나
- 또는 有形固定資產價額이 3億원 以下인 경우

<適用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現物出資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4. 產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補完(法 第46條第5項, 令 第40條第2項)

租稅減免規制法 第4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7條에 의하면 產業合理化對象으로 指定된 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產業合理化對象產業 또는 企業의 指定이나 指定되는 合理化對象產業 또는 企業에 대한 合理化基準은 「產業政策審議會」가 정한다) 相互間에 資產을 讓受渡하거나 現物出資를 한 때에는 그 讓渡差益에 대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하고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登錄稅 또는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指定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의거 合併이나 資產의 讓受渡를 하는 過程에서는 規模經濟를 초과하는 過多한 不用資產이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產業合理化措置에 의한 企業의 統廢合등이 우리經濟全體의 不實化를 除去하고, 건전한 產業調整이 本來의 취지라면 직접적인 產業合理化 過程인 事業用資產의 相互讓受渡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合併이나 讓受渡後에 合併存續法人 또는 事業用資產을 讓受받은 法人이 不用資產을 賣却할 때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排除할 필요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指定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의한 合併이나 資產의 讓受를 한 후 發生하는 不用資產을 經營合理化 내지 財務構造改善을 위하여(不用資產의 範圍와 處分期限은 合理化基準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一定期限內에 處分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圖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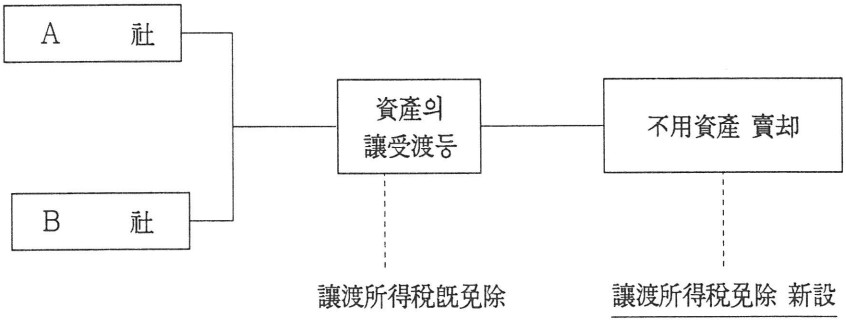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5.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免除制度改善(法 第58條, 令 第47條의 2)

가. 免除時限調整을 통한 免除擴大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 및 建物을 再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할 때

에는 종전부터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가 免除되어 왔고 免除받을 수 있는 要件은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事業施行의 認可日로부터 당해 再開發事業에 관한 工事完了公告日이후 1年이 되는 날까지의 期間중에 讓渡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都市再開發事業施行節次를 보면

(1) 建設部長官이 都市計劃으로 指定告示한 再開發區域內의 土地등의 所有者가 그들이 設立한 組合이 再開發事業을 하도록 하되(都市再開發法 第9條)

(2) 이들이 一定期間內에 施行認可申請을 하지 않을 경우등의 事由가 있을 때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再開發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特殊法人중에서 再開發事業施行者로 指定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고(都市再開發法 第10條)

(3) 이들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再開發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特殊法人등으로서 再開發事業者로 指定된 者가 일정기한내에 再開發事業의 認可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事由가 있을 때는 일정 要件을 갖춘 第3開發者를 指定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都市再開發法 第11條)

이와 같이 再開發區域으로 告示된 地域內의 土地所有者가 그들이 設立한 組合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두 再開發事業施行者로 먼저 指定을 받은 뒤에 事業認可를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再開發事業施行者가 事業認可를 받은 날 이후 買入하는 土地등에 대해서만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했으나 앞으로는 土地所有者나 그들이 設立한 組合이 아닌 都市再開發法 第10條 또는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再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때에는 再開發事業施行認可를 받기 전이라도 再開發事業者로 指定만 되고 나면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여 第3開發者등을 통한 再開發事業을 원활히 推進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종래에는 都市再開發事業의 支援을 위한 讓渡所得稅등의 免除時에 追徵등의 事後管理指定등이 없었으나,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점을 補完하였다.

나. 免除稅額에 대한 追徵事由 新設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事後管理를 強化하여 첫째, 第3開發者등이 事業施行者로 指定받는 날로부터 1年이내에 再開發事業施行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둘째, 事業施行認可를 받은 事業施行者가 建設部長官으로부터 認可받은 事業計劃書上工事完了日까지 당해 再開發事業을 完了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免除한 讓渡所得稅등을 買受者(事業施行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

로서 追徵하도록 新設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免除擴大	•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등을 都市再開發事業施行認可後 讓渡하는 경우	改正前과 같음
	(新 設)	•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등을 事業施行者로 指定된 者에게 同指定日이후 讓渡하는 경우 追加
• 追徵事由	(新 設)	• 事業施行者로 指定받은 날로부터 1年이내 再開發事業施行認可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事業施行認可를 받은 事業施行者가 建設部長官으로부터 認可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 工事完了日까지 당해 사업을 完了하지 아니하는 경우

<適 用 例>

- 讓渡所得稅등의 免除는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事業施行者로 指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하고,
- 讓渡所得稅등의 追徵을 위한 事後管理는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免除받은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分부터 適用한다.

6.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 및 市內버스駐車場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 免除要件 緩和(令 第36條第4項·第52條第3項)

大都市內의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거나 2年이상 사용한 市內버스駐車場을 移轉하기 위해 舊工場 또는 舊駐車場을 讓渡하는 때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는바 工場이나 駐車場을 먼저 移轉하고 舊工場 또는 舊駐車場을 讓渡하는 경우 종래에는 舊工場등의 處分期限을 1年으로 하고 있었으나 大規模 工場用土地등을 일시에 處分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舊工場用土地등의 處分期限을 1年에서 2年으로 연장함으로써 正常的인 企業活動을 支援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 市內버스 駐車場의 移轉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完了하고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 이내 舊工場을 讓渡하는 경우 事業改善(移轉)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 讓渡하는 경우 免除	…… …… [2年] …… …… …… [2年] ……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延長된 處分期限을 適用한다.

Ⅲ. 公共法人에 대한 租稅特例 補完

1.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2. 貸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 適用排除
3.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 特例認定
4.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
5. 防衛稅 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 등
6.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등
7. 求償債權償却充當金制度 新設
8. 農·水·畜協中央會의 寄附金 特例
9. 國策銀行에 대한 非營利法人稅率 適用削除

1.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第8條 및 別表Ⅰ)

最低限稅(Minimun Tax)인 5%의 法人稅가 課稅되는 公共法人의 範圍에 國家業務를 代行하는등 公共性이 큰 市·道醫療院, 別定郵遞局등 5個法人을 새로이 追加하고, 公共法人 相互間에 統廢合되었거나 設立根據法이 變更됨에 따라 公共法人의 範圍를 一部 調整하였다.

公共法人의 範圍

改正前	改正
○ 大統領令이 정하는 서울올림픽大會 推進團體	○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 韓國技術檢定公團 ○ 職業訓練法人	○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公務員年金特別會計 및 基金의 設置運營등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公務員年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國際經濟硏究院	○ 韓國產業經濟技術硏究院
(追加)	○ 別定郵遞局聯合會 ○ 韓國가스安全公社 ○ 地方公社 市·道醫療院 ○ 大韓地籍公社 ○ 韓國漁船協會

<適用例>

- 1983.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分부터 法人稅를 5% 課稅한다.

2. 貸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 適用排除(法 第8條第5項)

公共法人은 대부분 그 設立根據法등에서 決算書類의 公告에 관하여 別途의 特別規定

을 두고 있거나 主務官廳으로부터 會計에 관한 監督을 받고 있으므로 法人稅法에 의한 貸借對照表無公告加算稅(算出稅額의 10%와 收入金額의 0.5%중 多額)의 適用을 排除토록 하여 決算書類公告에 따른 煩雜과 經費의 二重負擔이 없도록 하였다.

<適 用 例>

- 1983年 1월 1日 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부터 적용한다.

3.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特例 認定(法 附則 第14條)

'81年 稅法改正時 과거 전혀 法人稅를 물지않던 公共法人에 대하여도 '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5%의 法人稅를 課稅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82年 이후부터는 公共法人도 稅務計算上으로는 法人稅法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1년 이전까지는 非課稅되었기 때문에 法人稅法의 規定과는 關係없이 在庫資產을 評價하거나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는등 法人이 임의로 會計處理를 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와같은 法人의 獨自的인 會計慣行을 課稅로 轉換시키는 過程에서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에 관하여 從前法에서는 明確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經過措置를 新設補完하여 '82課稅年度부터 適用토록 함으로써 公共法人의 納稅便宜를 기하도록 하였다.

가. 適用對象法人

○ 法 別表1의 公共法人

○ '82. 1. 1 이후 法人稅가 正常課稅되는 다음의 8個法人

- 韓國外換銀行
- 中小企業銀行
- 國民銀行
- 韓國住宅銀行
- 浦項綜合製鐵(株)

- 韓國證券金融(株)
- 韓國觀光公社
- 大韓敎員共濟會

나.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 特例內容

(1) '81. 12. 31이전에 收益事業을 開始한 公共法人이 法人稅法에 의하여 所定期限內에 申告하여야 할 在庫資產評價方法이나 減價償却方法을 稅務署에 申告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82課稅年度(이하 「基準課稅年度」라 함)에도 繼續하여 '81年 이전과 같은 方法으로 在庫資產을 評價하거나 減價償却費를 計上한 경우에는 法人稅法에 의거 適法하게 그 計算方法을 申告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 在庫資產評價 및 減價償却方法 變更申告 特例
「基準課稅年度」부터 在庫資產評價方法이나 減價償却方法을 變更하고자 할 경우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基準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評價 및 償却方法의 變更申告를 할 수 있도록 特例를 認定하였다.

(3) 「基準課稅年度」 開始日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減價償却 基礎價額
「基準課稅年度」의 直前課稅年度終了日 現在의 帳簿價額을 基礎로 向後 減價償却費를 計上토록 하였다.

(4) 退職給與充當金의 設定特例
「基準課稅年度」의 直前課稅年度 終了日 現在의 退職給與充當金 累計額이 法人稅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限度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金額은 稅務計算上 直前課稅年度의 課稅所得計算時 損金에 不算入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稅務計算上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設定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退職給與充當金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4.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法 第8條第4項, 令 第5條第3項 내지 第5項)

公共法人은 大部分 그 設立根據法이나 企業豫算會計法등에서 決算確定節次등에 관하여 별도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法人稅法이 定한 申告期限內에 課稅標準과 그 稅額을

申告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어 公共法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申告期限에 관한 特例를 認定토록 하였다.

가. 申告期限의 延長

公共法人의 決算確定에 관하여 規定하는 法律이 따로 있어 法人稅法上의 期限內에 課稅標準申告를 할 수 없는 公共法人은 申請에 의하여 課稅年度終了日後 60日이 되는 날부터 2次에 걸쳐 각 1월씩 申告期限을 延長받을 수 있다.

나. 承認申請 및 通報

(1) 承認申請

申告期限을 延長받고자 하는 公共法人은 課稅年度終了日로부터 45日 이내에 申告期限延長承認申請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承認通報

申告期限延長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承認與否를 當該 公共法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適 用 例>

- 1983. 1. 1 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5. 防衛稅 未納附加算稅 適用排除등(法律 第3481號, 附則 第5條)

가. 防衛稅 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

'81年 稅法改正으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던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82. 1. 1이

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5%의 法人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라 稅務處理能力을 갖출 수 있는 準備期間을 賦與하기 위하여 83年 12月 31日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法人稅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하고 있는 바 그와같은 法人稅의 過少申告와 未納付에 따라 自動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法人稅分 防衛稅의 未納付加算稅도 '83.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그 適用을 排除토록 補完하였다.

나. 適用對象法人의 擴大

'81年 稅法改正으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다가 '82.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正常課稅로 轉換된 國策銀行등 다음의 法人에 대하여도 公共法人에서와 똑같이 稅務處理適應能力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1983年 12月31日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法人稅 未納付加算稅 및 그에 따라 自動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法人稅分 防衛稅의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토록 補完하였다.

- ○ 韓國外換銀行
- ○ 中小企業銀行
- ○ 國民銀行
- ○ 韓國住宅銀行
- ○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 ○ 大韓敎員共濟會
- ○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 ○ 韓國觀光公社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한다.

6.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의 範圍調整등

가.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 追加(法 第9條第2項)

公共法人중에서 規模가 零細하여 稅務會計能力이 不足한 信用協同組合등 7個類型의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稅法이 規定하는 方法으로 課稅標準을 計算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當期純利益 自體를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特例를 認定하여 왔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農地改良組合」도 旣存의 零細公共法人에서와 같은 理由로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에 追加하는 한편 「韓國銀行」에 대하여도 無資本特殊法人인 中央銀行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作成한 決算財務諸表上의 當期純利益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5%의 法人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 ○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 ○ 地區別·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 ○ 地區別·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 業種別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 山林組合의 契 ○ 葉煙草生産組合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農地改良組合 • 韓國銀行

나. 複式簿記不履行에 따른 無記帳加算稅 適用排除(法 第9條第4項)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은 稅務處理能力이 不充分한 以外에 大部分 現金基準에 의한 會計方式으로 할 必要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公共法人(韓國銀行은 除外)에 대하여는 法人稅法이 要求하는 複式簿記方法이 아닌 單式簿記의 方法에 의하여 帳簿를 記帳하는 경우에도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無記帳加算稅(算出稅額의 30%와 收入金額의 0.1% 중 多額)의 適用을 排除토록 하였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分부터 當期純利益에 의한 課稅와 無記帳 加算稅 排除를 適用한다.

7. 求償債權償却充當制度 新設(法 第54條, 令 第44條의 2)

中小企業등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을 때, 信用保證을 主事業으로 하는 信用保證基金과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은 零細한 中小企業등에 대하여 사실상 回收하기 어려운 巨額의 不實債權(保證해준 中小企業등의 債務를 代拂한데 따른 求償債權)을 안고 있어 法人稅 課稅所得金額을 正確히 計算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一般 營利法人의 貸損充當金과 같은 趣旨에서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適用對象法人

- ○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保證基金
- ○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

나. 充當金 設定限度

當該 課稅年度終了日 現在의 信用保證總額의 2%(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前의 所得金額을 限度로 함)以內의 金額을 充當金으로 設定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다. 相計處理 및 益金의 還入

損金에 算入한 充當金은 다음 各號의 貸損金과 相計處理한 後의 殘額을 다음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 益金에 還入한다.

(1) 債務者의 破產·強制執行·刑의 執行 또는 事業의 廢止로 인하여 回收할 수 없는 求償債權

(2) 債務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으로 인하여 回收할 수 없는 求償債權

(3) 其他 財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回收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求償債權

라. 償却債權推尋利益의 益金算入

이미 設定된 求償債權償却充當金으로 貸損金과 相計處理한 金額중 그후 回收된 金額은 回收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 益金에 算入한다.

마. 求償債權償却充當金 明細書 提出

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하고자 하는 자는 當該 課稅年度 課稅標準申告時 求償債權償却充當金에 관한 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8. 農·水·畜協中央會의 寄附金特例(法 第49條第7項, 令 第42條第2項)

農·水·畜協中央會의 고유目的事業인 農·漁民·養畜家와 會員組合에 대한 指導事業은 國家가 遂行하여야 할 公共性이 큰 事業인 점을 감안하여 各 中央會의 收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중 主務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 金額을 당해 固有目的事業에 支出하는 경우에는 寄附金으로서 損金에 算入토록 함으로써 固有目的事業遂行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適 用 例>

— 1983.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한다.

9. 國策銀行에 대한 非營利法人稅率適用排除(法 第8條第3項 削除)

'81稅法改正 당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다가 1982.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課稅로 轉換된 韓國外換銀行등 4個 國策銀行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課稅轉換에 따른 충격을 緩和하기 위하여 一般營利法人稅率을 適用하여야 하겠지만 당분간 非營利法人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던 바 이번 稅法改正時 法人稅率이 大幅 引下되어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稅率 격차도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이러한 特例適用을 削除하였다.

<適 用 例>

- 1983.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營利法人稅率을 適用한다.

Ⅳ. 非課稅利子所得등 기타

1. 非課稅利子所得의 範圍縮小
2. 15%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
3.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4. 非課稅山林開發所得의 範圍擴大
5. 財務構造改善積立金에 대한 紙上配當金額計算特例 新設
6.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對象擴大
7. 工場등의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 新設
8. 印紙稅 免稅調整
9. '86아시아競技大會의 施設에 대한 關稅등 免稅
10. 租稅特例根據法律의 追加
11. 公開法人要件의 特例規定 削除

1. 非課稅利子所得의 範圍縮小(法§4, 令§2)

所得種類間에 課稅衡平을 유지하고 長期的으로는 金融所得을 綜合課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非課稅限度를 事實上 管理하기 어려운 貯蓄의 利子所得을 課稅對象으로 轉換하여 83. 1. 1이후부터는 所得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所得稅法, 金融所得篇 參照).

改 正 前	改 正
– 家計·學生 및 農漁民의 貯蓄增大를 위한 特別預金등의 利子와 配當金	
가.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의 利子 (세대당 200萬원 이하)	<削 除>
나. 農·漁民 목돈貯蓄預金의 利子 (세대당 300萬원 이하)	改正前과 같음
다. 優待家計定期積金의 利子 (세대당 月拂入額이 6萬원 이하)	<削 除>
라. 奬學預金의 利子 (저축계약당시 加入者가 未就學兒童, 初·中·高等學生으로 1人當 10口座에 한하며 積金總額이 50萬원 以下의 利子)	改正前과 같음
마. 入住者貯蓄(1세대 1구좌에 한하며 月拂入額이 10萬원 이하)	
–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5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신용협동조합의 범위에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추가
– 納稅貯蓄組合預金의 利子	<削 除>

<適 用 例>

– 非課稅 對象에서 削除된 利子所得은 83. 1. 1이후 발생하는 利子부터 課稅를 하게 되며
– 非課稅 對象으로 追加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組合員의 利子 및 配當金은 83. 1. 1이후 발생하는 分부터 非課稅한다.

2. 15%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法 第5條, 令 第3條)

福券當籤所得은 其他所得으로서 綜合所得稅가 課稅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준비를 위한 基金造成支援을 위하여 '83年부터 發行되는 올림픽福券當籤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住宅福券當籤所得과 같이 綜合所得課稅對象에서 除外하여 15%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分離課稅對象福券當籤所得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住宅福券 當籤所得 ○ 福金附預金 當籤所得	現行과 같음
<追 加>	○ 아시아競技大會 및 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가 發行하는 福券當籤所得

<適 用 例>

– 1983. 1. 1이후 最初로 當籤되는 福券所得부터 適用한다.

3. 勤勞者證券貯蓄에 對한 租稅支援調整(法 第7條, 法 附則 第11條)

月給與 100萬원이하의 勤勞者가 證券貯蓄(株式 또는 債權을 買入하기 위한 貯蓄)에 加入하는 경우에는 年間 證券貯蓄金額의 10%를 所得稅額에서 控除받는 외에 買入한 株式으로부터 받는 配當金이나 債權의 利子에 대하여 非課稅惠澤을 받아왔다

그런데 金融資產所得의 幅넓은 非課稅는 가급적 줄여나감으로써 점진적인 綜合課稅로의 履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必要가 있는 한편, 비슷한 稅制上 惠澤을 받고 있는 勤勞者財形貯蓄의 加入이 月給與 40萬원('83. 1. 1現在)이하인 勤勞者로 限定되어 있는 것과 比較해 보면 貯蓄種類相互間 衡平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勤勞者證券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를 財形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와 같도록 改正함으로써 勤勞者證券貯蓄稅額控除 및 利子·配當의 非課稅範圍를 사실상 縮小시켰다. 그러나 이 改正條項은 勤勞者證券貯蓄加入者의 範圍를 갑자기 縮小施行할 때 올 수 있는 證券市場의 충격을 감안하여 '84. 1. 1이

후부터 施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84. 1. 1이후부터는 財形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만이 勤勞者證券貯蓄에 加入하여 稅制上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財形貯蓄加入對象勤勞者의 範圍는 財形貯蓄法 第2條第3項에 규정하고 있으며 '83. 1. 1現在는 月給與 40萬원이하 勤勞者로 되어 있음).

4. 非課稅山林開發所得의 範圍擴大(法 第38條)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으로 5年이상된 山林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山林開發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人의 경우 法人稅)를 免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이거나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에 대하여도 造林期間이 5年以上인 경우에는 이를 非課稅되는 山林開發所得의 範圍에 追加하여 山林開發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	}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 ○ 採種林·保安林·天然保護林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에 發生하는 所得부터 適用한다.

5. 財務構造改善積立金에 대한 紙上配當金額計算特例新設(法 第56條의 2, 令 第46條의 2).

企業이 財務構造改善積立金을 積立한 경우에는 每事業年度 紙上配當所得金額의 20%(累積限度는 資本金의 50%)限度內에서 紙上配當課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具體的인 內容은 所得稅法 金融所得篇 參照).

6. 附加價値稅의 零稅率 適用對象擴大(法 第73條第1號)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指定받은 軍需業體가 供給하는 軍需物資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의 零稅率을 適用하고 있는바 "警察이 作戰用으로 使用하는 物品"에 대하여도 軍需物資에 準하여 附加價値稅의 零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軍需業體가 供給하는 軍需物資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警察이 作戰用으로 使用하는 것을 包含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供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7. 工場등의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値稅免稅新設(法 第74條第1項, 令第58條)

工場·鑛山·建設事業場 및 노선여객운송사업자의 事業場 및 各級學校의 經營者가 當該事業場 및 學校構內食堂을 直接 經營하여 自己의 從業員 및 學生에게 提供하는 食事類인 飮食用役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免稅토록 함으로써 事業現場의 勤勞者 또는 學生의 福利厚生을 支援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新 設>	○ 場 所 • 工場·鑛山·建設事業現場·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의 事業場·教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각급학교의 構內食堂 ○ 經營者가 直接 經營하는 경우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提供하는 飮食用役分부터 適用한다.

8. 印紙稅의 免除(法 第81條第5號 및 第6號)

山林所有者 및 漁村稧員이 山林組合이나 漁村稧로부터 少額의 融資를 받거나 漁村稧가 所屬稧員의 預·積金證書와 通帳을 作成하는 경우에도 印紙稅를 免除하도록 하여 現行 農·漁民 養畜家등에 대한 印紙稅免除와 衡平을 維持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500萬원이하의 融資書類에 대한 免除	○ 組合員이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 農·漁民·養畜家가 당해 組合 및 中央會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山林所有者가 山林組合으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 漁村稧員이 漁村稧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預·積金證書와 通帳에 대한 免除	○ 어린이 預金通帳 ○ 마을金庫組合員의 積金證書 및 通帳 ○ 信用協同組合의 〃 ○ 單位農協組合의 〃 ○ 畜産業協同組合의 〃 ○ 水産業協同組合의 〃	改正前과 같음
	<追 加>	漁村稧의 稧員의 積金證書 및 通帳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作成하는 書類부터 印紙稅를 免除한다.

9. '86아시아競技大會의 施設에 대한 關稅등 免除(法 第74條·第75條 및 第83條)

'88서울올림픽大會를 원활하게 推進하기 위한 稅制上 措置는 이미 '81稅法改正時 反映된 바 있지만, '86서울아시아競技大會의 경우에도 '88서울올림픽大會와 똑같이 支援토록 하였다. 卽, '86아시아競技大會를 準備하는 大韓體育會가 國內生産이 困難하여 外國에서 輸入하는 競技施設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使用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關稅를 免除토록 하였고 또한 關稅의 경우에는 선수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免稅對象 物品에 追加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 및 '86아시아競技大會를 對備하여 科學的 訓練을 통한 優秀選手養成에 寄與토록 하였다.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輸入 申告하는 物品부터 適用한다.

10. 租稅特例根據法律의 追加(法 第3條)

租稅減免規制法은 租稅政策의 效率的인 運營과 稅法體制의 維持를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 第3條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 않고서는 租稅減免과 租稅特例의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에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을 法 第3條에 追加로 揭記하여 同法에서 規定한 租稅에 관한 特例規定의 效力을 法的으로 뒷받침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國稅基本法·條約外 21個 法律	改正前과 같음
<追 加>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適 用 例>

— 1983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11. 公開法人要件에 관한 特例規定削除(法 第56條第1項, 令 第46條第2項)

'83. 1. 1이후부터는 法人稅法上 公開法人에 대한 優待 差等稅率이 廢止됨에 따라 稅法上 公開法人要件 및 그에 대한 特例는 實益이 없게 되어 法 第56條第1項 및 令 第46條第2項에 규정되어 있는 公開法人 要件에 관한 特例規定을 削除하였다.

從前法에서는 9. 27 企業體質強化 對策으로 公開法人의 大株主가 個人所有 不動產을 處分하여 '82. 12. 31까지 增資한 경우나 株價가 額面價 以下인 公開法人이 有償增資를 함에 있어 少額株主가 新株의 引受를 포기함으로써 發生하는 失權株를 大株主가 引受하여 增資를 하는 경우에 大株主 및 少額株主의 株式比率이 變動됨에 따라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增資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2개 課稅年度까지는 公開法人으로 認定할 수 있도록 特例規定을 두고 있었다.

金融資産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이 法律은 實地名義에 의한 金融去來를 促進하여 金融去來의 正常化를 기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할 目的으로 지난 82年 12月 31日 法律 第3607號로 制定 公布되었다. 實名去來란 金融機關에 預金을 하거나 株式·債券을 사고 팔 때에 또 利子나 配當을 받을 때에 그 去來者의 實地名義 즉 이름과 住民登錄番號(법인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를 밝힘으로써 그 去來對象者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制度를 말한다.

이 法律은 金融機關에 대한 實名去來實施 및 그 實施時期, 實名去來促進을 위한 措置, 實名이 아닌 金融資産의 實名轉換·實名金融資産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 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金融資産에 대한 課徵金賦課 및 金融去來의 秘密保障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施行되는 이 法律의 규정중 租稅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로 한다.

1. 無記名·假名의 利子·配當에 대한 所得稅差等課稅
   가. 差等課稅의 대상이 되는 所得
      (1) 實地名義의 確認
      (2) 利子등의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 確認
      (3)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아니하는 分離課稅利子·配當
   나. 差等課稅稅率
   다. 差等課稅 適用例
2. 實名金融資産에 관한 租稅特例
   가. 適用對象
   나. 租稅特例의 內容

1. 無記名·假名의 利子·配當에 대한 所得稅差等課稅(法 第4條)

所得이 많은 사람은 稅金도 많이 내고, 所得이 적은 사람은 稅金도 적게 내는 것이 社會正義에도 맞는 것으로서 個人別로 所得을 合算한 후 그 所得의 크기에 따라 稅金을 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는 바로 이러한 機能을 다 할 수 있는 制度이다. 따라서,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安全한 綜合課稅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所得을 所得者別로 合算할 수 있도록 그 所得者의 實地名

義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金融資産의 많은 部分이 實地名義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經濟의 흐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實名을 促進시켜 金融去來의 正常化를 기하기 위하여 83. 7. 1부터는 無記名·假名의 金融資産所得에 대하여는 實名에 의한 것보다 段階的으로 높은 所得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差等課稅內容

○ 差等課稅

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分離課稅利子·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높은 所得稅率 적용

① 83. 7. 1부터는 分離課稅源泉徵收稅率(10%)에 50% 加算(즉 15%)

② 85. 1. 1부터는 分離課稅源泉徵收稅率에 100% 加算

○ 適用時期

83. 7. 1이후 발생하는 利子所得分 또는 支給하는 配當所得分부터 適用

가. 差等課稅의 대상이 되는 所得

83. 7. 1이후 發生하는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83. 7. 1이후 支給하는 分離課稅配當所得으로서 그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아니하는 것.

(1) 實地名義의 確認

○ 實地名義의 確認은 住民登錄票·旅券·事業者登錄證上의 이름과 番號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住民登錄票上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다만, 國外居住者로서 여권법시행령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居住目的의 一般旅券(여권을 대신하는 證明書를 포함함)을 發給받은 者는 여권상의 姓名 및 旅券番號

② 外國人인 個人의 경우

出入國管理法 第36條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상의 姓名 및 番號. 다만, 거류신고증을 交付받지 아니한 者는 旅券上의 姓名 및 旅券番號

③ 法人(稅法上 法人으로 取扱하는 法人格없는 社團등을 포함)의 경우

法人稅法 第67條의 규정에 의한 事業者登錄證上의 法人名 및 登錄番號. 다만, 事業者登錄番號를 交付받지 아니한 法人은 法人稅法施行令 第128條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納稅番號를 증빙하는 書類上의 法人名 및 納稅番號

④ 法人이 아닌 團體의 경우

第1號의 規定에 의한 代表者인 個人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또는 旅券番號. 다만, 免稅事業者등 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賦與받은 團體는 固有番號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團體名 및 固有番號.

한편 實地名義라 함은 利子나 配當을 支給받는 者의 實地名義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實地所有者인지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利子등의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를 確認

實地名義인지 아닌지의 確認은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의 支給時期까지 이루어지면 된다. 따라서 利子등의 支給時期 이전에는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支給時期 現在에 있어 實地名義가 確認되는 경우는 差等課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實地名義 確認은 늦어도 利子·配當을 지급받을 때까지만 하면 된다는 뜻이므로, 預金口座나 通帳을 신규로 開設한다든가 作成할 때는 미리 實名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장으로 계속적인 預金去來를 할 때 利子를 實地 引出하지 않더라도 일정 利子支給期間이 되어 利子가 元帳上의 原本에 자동전입되는 경우에 預金主는 사실상 利子支給時期를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로 불의의 差等課稅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부터 通帳등으로 계속 預金去來등을 해온 경우에 그 名義와 住民登錄番號등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差等課稅가 施行되는 '83. 6月末까지 이를 바로 해 놓은 것이 안전할 것이다. 所得稅法上 利子·配當所得의 支給時期는 다음과 같으며, 이 支給時期가 바로 源泉徵收時期이기도 하다.

<利子所得의 支給時期>

① 無記名의 公債 또는 社債의 利子와 割引額
그 支給을 받은 날

② 定期預金의 利子

○ 約定에 의한 利子支給日. 다만, 그 契約期間 滿了後의 期間에 대한 利子는 그 支給을 받은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利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支給되는 利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③ 보통예금의 이자

○ 約定에 의하여 支給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④ 통지예금의 이자

引出日

⑤ 信託의 收益

受益計算期間의 滿了日, 信託의 終了日 또는 解約日

⑥ 記名의 公債 또는 社債의 利子와 割引額

約定에 의한 利子支給開始日

⑦ 債券·어음 其他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約定에 의한 償還日. 다만, 期日前에 償還하는 때에는 그 償還日

⑧ 定期預金連結 定期積金의 利子

定期預金 또는 定期積金이 解約되거나, 定期積金의 貯蓄期間이 滿了되는 때.

⑨ 短期金融會社등이 賣出 또는 仲介하는 어음의 利子와 割引額

割引賣出日

<配當所得의 支給時期>

① 實地配當

配當金支給日. 다만, 配當所得을 그 處分을 決定한 날로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剩餘金을 자본에 轉入함으로 받는 無償株(再評價積立金·資本準備金을 資本轉入하는 것은 除外)

자본에의 轉入을 決定한 날.

③ 株式의 소각이나 減資로 인한 擬制配當

株式의 소각·減資등을 결정하는 날.

④ 法人의 해산으로 인한 擬制配當

殘餘財産의 價額이 確定된 날. 다만, 殘餘財産의 價額이 해산등기후 365日이 되는 날까지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65日이 되는 날.

⑤ 法人이 合併으로 消滅한 경우의 擬制配當

合併登記日

⑥ 法人稅法에 의하여 配當으로 處分된 것.

당해 法人의 當該事業年度 決算確定日

(3)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아니하는 分離課稅利子·配當所得

分離課稅되는 所得이라 함은 綜合所得에 合算課稅하지 아니하는 所得을 말한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所得稅法 第144條第1號(가) 내지 (아)에 게기된 分離課稅利子所得과 법 第144條

第2號(가) 내지 (마)에 게기된 分離課稅 源泉徵收하는 配當所得을 말한다.

差等課稅의 適用對象을 分離課稅되는 利子·配當에 한하므로 公益信託의 利益과 같이 非課稅되는 利子·配當이나 綜合課稅되는 利子·配當(例 : 私債利子·非公開法人의 配當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分離課稅 利子所得

① 國內에서 支給하는 預金 및 相互信用 契金의 利子와 割引額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債券·證券 및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③ 短期金融會社등이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引受·保證·賣買하거나 仲介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의 利子와 割引額과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相互信用金庫가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한 債券證書의 利子.

④ 合同運用信託의 利益

⑤ 證券投資信託의 利益

⑥ 韓國產業銀行·金融機關·短期金融會社·綜合金融會社·信託會社·證券會社·長期信用銀行이 賣出하거나 모집을 周旋한 社債로서 總發行社債의 3%(1億원을 限度로 함)未滿을 所有한 居住者의 社債의 利子

⑦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單位農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에 의한 畜產業協同組合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區別水產業協同組合·業種別水產業協同組合·漁村契가 지급하는 預金의 利子

⑧ 通貨安定證券등 所得稅法施行令 第193條第4項에 規定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⑨ 債券 또는 證券의 還賣條件附 賣買差益

分離課稅 配當所得

① 上場法人이 當該 法人發行株式 總額의 1%(1億원을 限度로 함)未滿의 株式을 所有하는 株主에게 지급하는 配當과 商法 第463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② 信用協同組合·마을金庫와 單位農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特殊農業協同組合·地區別 水產業協同組合·業種別水產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中小企業協同組合이 지급하는 配當

③ 上場法人 이외의 內國法人이 當該法人의 우리社株組合員으로서 少額株主의 基準에 해당하는 者에게 支給하는 配當

④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

나. 差等課稅 稅率

83. 7. 1부터는 實地名義에 의하지 아니한 分離課稅 利子所得·配當所得에 대하여는 實地名義에 의한 이자·配當所得보다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높게 課稅한다.

① 1983. 7. 1부터는 소득세법 第144條에 정한 源泉徵收稅率의 100分의 50을 加算한다.

② 1985. 1. 1부터는 소득세법 第144條에 정한 源泉徵收稅率의 100分의 100을 가산한다.

그리고 無記名·假名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防衛稅나 所得割住民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위에 의하여 加算된 所得稅額도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額으로 본다.

따라서 위에 의하여 加算된 稅額에 대하여도 防衛稅와 所得割住民稅가 課稅된다. 現行의 所得稅法 第144條에 의한 稅率을 基準으로 할 때 實名與否에 따른 稅負擔은 다음과 같다.

實地名義의 利子配當			實地名義가 아닌 것			
			83. 7. 1~84. 12. 31		85. 1. 1 이후	
	(稅 率)	(負 擔 率)	(稅 率)	(負 擔 率)	(稅 率)	(負 擔 率)
所 得 稅	利子所得의 10%	10%	利子所得의 15%	15%	20%	20%
防 衛 稅	所得稅額의 10(20)%	1(2)	所得稅額의 10(20)	1.5(3)	10(20)	2(4)
教 育 稅	利子所得의 5%	5	利子所得의 5	5	5	5
住 民 稅	所得稅額의 7.5%	0.75	所得稅額의 7.5	1.125	7.5	1.5
計		16.75 (17.75)		22.625 (24.125)		28.5 (30.5)

※ ( )안은 年間所得金額이 84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임.

卽, 無記名·假名의 利子·配當에 대한 所得稅率은 83. 7. 1~84. 12. 31 기간중에는 15%, 85. 1. 1이후는 20%로 된다.

預金利子所得金額 10萬원인 경우 實地名義에 의한 사람에 對하여는 16,750원의 稅金을 源泉徵收한 後 83,250원을 支給하나 假名·無記名에 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① 1983. 7. 1~84.12.31기간 중에는
22,625원의 稅金을 源泉徵收한 後 77,375원을 支給하고
② 1985. 1. 1이후는
28,500원의 稅金을 源泉徵收한 後 71,500원을 支給한다.

다. 差等課稅 適用例

83. 7. 1이후 發生하는 利子所得分 또는 支給하는 配當所得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83. 7. 1 이전에 發生한 利子所得을 83. 7. 1이후에 支給하는 경우에는 支給時期까지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아니하더라도 差等課稅되지 아니한다.

事 例

社債의 發行日 83. 1. 1
社債의 償還日 83. 6. 30
利子를 支給받은 날 83. 7. 11인 경우 差等課稅對象인가?
※ 利子는 83. 7. 1前에 發生한 것이므로 支給時期에 實名이 確認되지 아니하여도 差等課稅하지 아니한다.

한편 83. 7. 1전에 發生한 利子와 83. 7. 1이후에 發生한 利子를 83. 7. 1이후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로서 實名이 確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3. 7. 1이후 發生한 利子에 대하여만 差等課稅한다.

事 例

發行日 83. 5. 1
償還日 83. 8. 1
社債의 利子 30萬원을 83. 8. 10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支給時期에 실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差等課稅할 金額은?
※ 3月간의 利子金額 30萬원중 83. 7. 1전에 發生한 2個月分의 利子 20萬원($30\times\frac{2}{3}$)은 10% 分離課稅하고 83. 7. 1이후에 發生된 1個月分의 이자 10萬원($30\times\frac{1}{3}$)은 差等課稅됨.

그러나 配當의 경우에는 '83. 7. 1이후 최초로 支給하는 분부터 지급액전부에 대해 課稅가 差等 適用된다.

따라서 事業年度가 '82. 7. 1부터 '83. 6. 30까지인 法人이 '83. 8. 15에 配當決議를 하고 '83. 9. 1에 配當金을 지급하는 경우에 支給日까지 지급받는 자의 實地名義가 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는 全額 差等課稅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實地名義의 確認은 株主名簿와는 關係없이 支給時期까지 支給받는 者의 實地名義 與否를 確認한다.

2. 實地金融資産에 관한 稅務調査特例(法 第10條)

金融實名去來法이 施行되기 前인 82年末 현재 無記名 또는 假名인 금융자산을 83. 1. 1이후 實名化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資金出處調査를 排除하고, 過去의 稅金을 追徵하지 않도록 하는 租稅特例를 허용한다.

이와같이 한 것은 종전의 無記名·假名金融資産이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도 없으며 正當한 資金의 경우에도 數十年間에 축적된 자금에 대한 出處를 소급하여 증빙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資金出處를 조사할 경우 이를 싫어하는 많은 金融資産이 더욱 地下로 숨어서 經濟秩序의 교란요인으로 남게 될 가능성마저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實名化金融資産에 대하여 租稅特例를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82年末이전부터 이미 實名化한 金融資産에 대하여 租稅特例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82年末까지는 預·積金秘密保障法에 의하여 預·積金에 대하여는 사실상 稅務調査를 하지 않았던 기존의 秩序를 존중하는 한편 종전의 無記名金融資産을 83年이후에 實名化할 경우 租稅特例를 인정하는 것과 衡平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 稅務調査特例의 內容

— 特例對象者

- '83. 1. 1前에 實名으로 된 金融資産의 名義人
- '83. 1. 1前에 假名등에 의하여 去來한 金融資産으로서 83. 1. 1이후에 實名으로 變更한 金融資産의 名義人
- '82. 7. 2이후 '82. 12. 31期間중 短資會社등의 設立을 위하여 金融機關에 收入된 預金 및 取得된 株式

– 特例의 內容

• 資金出處調査排除

• 實名資料를 課稅資料로 하여 '82. 12. 31이전에 納稅義務가 成立한 租稅追徵排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租稅特例適用을 받지 못함.

• 700萬원을 초과하는 未成年者名義 金融資産

• 당해 金融資産 이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

가. 稅務調査特例 適用對象

資金出處調査의 排除 및 '83. 1. 1前에 納稅義務가 成立한 租稅의 追徵禁止등의 特例가 認定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83. 1. 1前에 實名으로 된 金融資産의 名義人

② '83. 1. 1前에 實名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한 金融資産을 '83. 1. 1이후에 實名으로 變更한 金融資産의 名義人

③ 短期金融會社 또는 相互信用金庫設立을 위하여 1982年 7月 3日부터 1982年 12月 31日까지 金融機關에 受入된 預金 및 取得된 株式(1983. 6. 30까지 그 出資를 完了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名義人

實名化 金融資産에 대한 租稅特例는 '83. 1. 1전부터 實名 또는 假名으로 去來한 金融資産에 限하여 適用된다.

事 例

'83. 1. 10 新規로 銀行에 1,000萬원을 假名으로 預入한 후 '83. 7. 1 實名으로 變更한 경우 稅務調査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가?

※ '83. 1. 1前의 去來分이 아니기 때문에 稅務調査特例를 適用받을 수 없음.

事 例

• '82. 7. 1 假名으로 6,000萬원을 預入

('82. 12. 31. 現在 殘額 6,000萬원)

- '83. 1. 20. 4,000萬원을 追加預入
- '83. 7. 10. 實名으로 轉換한 경우(이때 殘額은 1億원임) 稅務調査特例의 適用對象이 되는 金額은?

※ '83. 1. 1前의 去來分 즉 6,000萬원에 대하여만 稅務調査特例를 適用받음.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實名으로 하였다 하여도 稅務調査特例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① 未成年者 名義의 金融資産이 7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

未成年者는 大部分 經濟能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贈與·相續등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모든 實名化 金融資産에 대하여 租稅特例를 認定할 때는 實名化를 기화로 하여 未成年者名義로 財産을 分散하는 方法으로 租稅를 回避하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特例規定을 두었다.

② 當該 金融資産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

이는 金融資産의 實名化 資料가 아닌 다른 資料에 의하여 明白히 課稅가 可能한 경우를 말한다. 例를 들면 讓渡所得稅 課稅資料가 등기소를 통하여 明白히 드러나는 경우등은 그 登記資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課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租稅特例를 認定하지 않는 것은 金融資産의 변동자체를 課稅資料로 하지 않더라도 租稅를 賦課 徵收할 수 있는 경우로서 實名化促進과는 直接的인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 租稅特例를 認定할 理由가 없기 때문이다.

事 例

- '82. 1月 住宅을 相續받았으나 그에 대한 相續稅는 納付하지 아니하였음.
- '82. 7月 위 住宅을 讓渡하여 그 代金을 銀行에 假名으로 預入한 후
- '83. 1月 위의 銀行預金의 名義를 實名으로 變更

※ 이 경우 위의 實名化 金融資産을 根據資料로 하여 資金出處調査등은 하지 아니함. 그러나 住宅登記資料에 의하여 相續받은 事實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과거에 納付하지 아니한 稅金은 追徵할 수 있음.

나. 租稅特例의 내용

앞의 實名化 金融資產의 名義人에 대하여는

① 그 金融資產과 관련하여 資金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83. 1. 1전에 納稅義務가 成立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③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法人稅法에 의한 公開法人의 株主가 所有株式을 實名으로 變更함에 따라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83. 1. 1이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는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實名化 金融資產에 대한 資金의 出處를 調査하지 아니하므로 과거에 稅金을 納付한 事實이 없는 個人이 實名化 結果 많은 金融資產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경우에도 그에 대한 出處를 調査할 수 없으므로 結果的으로 아무런 稅金도 追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實名化된 金融資產은 課稅資料로 하여 '83. 1. 1전에 納稅義務가 成立된 租稅를 賦課하지도 아니한다.

例를 들면 사실상 많은 株式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假名등으로 株式을 僞裝分散하는 방법에 의하여 少額株主로 되어 있던 者가 實名化結果 少額株主가 아님이 判明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의 問題가 생길 수 있다.

첫째, 少額株主의 配當은 分離課稅하는 반면 少額株主가 아닌 者(즉 大株主)에 대하여는 配當所得을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課稅한다.

따라서 過去에 받은 配當은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綜合所得稅를 追徵할 것인가의 問題와

둘째, 그 株主가 實名化함에 따라 그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過去에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 判明된 경우 公開法人으로서 받은 稅制上의 惠澤(例 : 낮은 法人稅率適用, 綠色申告法人)을 追徵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稅金의 追徵問題는 實名化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實名化資料를 課稅資料로 하여 '83. 1. 1前에 納稅義務가 成立한 租稅를 賦課할 수 없다는 規定에 의하여 過去의 稅金을 追徵하지 아니한다.

한편 法人의 事業年度가 2個年度에 걸쳐있는 경우 例를 들면 '82. 7. 1~'83. 6. 30 事業年度의 法人稅의 경우 法人稅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는 事業年度 終了日인 '83. 6. 30이다. 따라서 이 法人의 株主가 所有株式을 '83年에 實名으로 變更함에 따라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82. 7. 1~'83. 6. 30 事業年度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問題가 생긴다.

이와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이 法律附則 第3項에 「이 法 시행전에 종전의 法人稅法에 의한 公開法人의 株主가 所有株式을 實名으로 變更함에 따라 그 公開法人이 종전의 法人稅法 第2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法人稅法 第2項 또는 第3項의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82. 7. 1~'83. 6. 30 事業年度에 대하여도 公開法人으로서의 稅制上 惠澤을 받을 수 있다.

事 例

- 김갑돌은 甲山會社의 大株主임.
- 甲山會社의 事業年度는 7. 1~6. 30까지임.
- 甲山會社는 '80. 7. 1 株式을 公開하였으며
- 株式公開時 大株主 김갑돌은 株式을 위장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30%만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83. 9. 4 僞裝分散한 株式을 實名化함에 따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55%를 가지고 있었음이 나타난 경우

※ '80. 7. 1~'81. 6. 30 事業年度와 '81. 7. 1~'82. 6. 30 事業年度의 法人稅는 '83. 1. 1전에 納稅義務가 成立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稅金은 追徵하지 아니함.
'82. 7. 1~'83. 6. 30 事業年度의 法人稅는 '83. 1. 1이후인 '83. 6. 30에 納稅義務가 成立된 것이나 實名去來法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法人으로서의 惠澤을 받을 수 있음.

特 別 消 費 稅 法

[要 約]

石油類에 대한 稅率構造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技術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新製品開發의 誘引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與件의 변화를 고려하여 課稅對象의 細目을 一部 調整하는 등 現行 制度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1. 課稅對象과 稅率調整
   가. 稅率調整
   나. 課稅品目의 細目調整
2. 暫定稅率의 適用期限 延長 및 適用品目 追加
3. 승용자동차에 대한 彈力稅率 適用期限 延長
4. 免稅範圍의 一部 調整
5. 기타 補完事項
   가. 貴金屬製品을 賃加工할 경우의 課稅標準明瞭化
   나. 推計決定方法 規定
   다. 荷置場으로부터 製造場에 還入하는 物品에 대한 未納稅搬出適用
   라. 海外就業勤勞者에 대한 免稅쿠폰制度의 事後管理 간소화
   마. 外國航行船舶用 물품에 대한 事後管理用 서류변경

1. 課稅對象과 稅率調整

가. 稅率調整(法 第1條第2項, 令 第2條의 2)

品 目	改 正 前	改 正
•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160(130)%	100%
• 輕 油	10(7)%	10(9)%
• 液化石油가스(LPG)	非 課 稅	10%
• 黑白TV	10%	5%

註 : ( )는 實行稅率임.

1) 揮發油 160(130)% → 100%

輕 油 10(7)% → 10(9)%

○ 揮發油는 輸入依存品目으로서 주로 여유있는 所得階層이 使用하는 것으로 보아 外貨節約과 消費抑制側面을 중시하여 最高稅率인 160%(實行稅率 130%)로 課稅하였으나

○ 乘用自動車用 燃料가 揮發油보다 價格이 싼 輕油와 液化石油가스인 LPG로 代替되고 있기 때문에 揮發油에 대해서만 高稅率을 적용하는 것은 油種間의 租稅衡平上 不合理할 뿐만 아니라 乘用車用엔진과 農機械인 原動機가 輕油化하는 등 産業構造를 歪曲시키고 있으므로 揮發油에 대하여는 現行稅率 160%(實行稅率 130%)를 100%로 引下하고, 輕油에 대하여는 그 用途가 運輸用과 産業用뿐만 아니라 家庭煖房用으로도 使用되는 점을 고려하여 現在의 實行稅率 7%를 9%로 小幅 引上하였다.

○ 改正稅率의 適用은 1983年중에 動力資源部에서 油類販賣價格을 처음 調整하여 告示하는 날로부터 하게 된다.

2) 液化石油가스(LPG) : 非課稅 → 10%

○ LPG가스는 用途面에서 揮發油의 代替燃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와 揮發油의 價格構造가 不合理하여 營業用 택시의 燃料가 가스로 代替되어 油種間의 配分을 歪曲시키고 있고, 또한 LPG는 家庭用의 다른 燃料(煉炭·燈油·輕油)보다 상대적으로 高級品이기 때문에 新規로 課稅하는 것이다.

○ 그러나 LPG가스의 용도가 營業用 택시 이외에 炊事用 燃料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最低稅率인 10%로 課稅한 것이다.

○ 그리고 가스를 新規로 課稅하더라도 油價調整시 消費者 負擔을 현재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이며, 改正稅率의 適用時期는 揮發油·輕油의 경우와 같다.

3) 黑白TV : 10%→5%

○ 黑白TV는 컬러TV의 放送에 따라 低所得層이 主로 구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引下하였다.

나. 課稅品目의 細目調整(令 別表1)

改 正 前	改 正	備 考
	<細目除外>	
• 軟玉을 寶石類인 翡翠로 課稅	翡翠중 軟玉	翡翠는 硬玉과 軟玉으로 區分되는 바 軟玉은 硬玉에 비하여 價格이 低廉하고 稀少價値가 없는 土產品임
	<細目除外>	
• 당구대·큐·공·초크·탑을 당구用品으로 課稅	당구대·초크·탑	당구대는 製品의 特性 및 課稅技術上 稅源捕捉이 곤란하며, 초크와 탑은 課稅實益이 미미함.
	<細目除外>	
• 공기조절기중 버스쿨러는 非課稅	선박·철도객차·地下鐵電動車用 쿨러	大衆交通手段用이므로 버스用과 衡平維持
	<細目除外>	
• 煖房溫風機를 공기조절기로 課稅	煖房溫風機중 석유류를 使用하는 것	에너지節約器機로서 현재 課稅하지 아니하는 다른 煖房器具(電氣난로·石油난로·가스난로)등과 衡平維持
	<細目除外>	
• 전기·전열기구로서 커피포트·調理用器具·冷水器등을 課稅	– 電氣주전자·핫플레이트	非課稅하고 있는 다른 基礎炊事用器具와 衡平 유지
	– 冷水器중 酪農用 우유冷却器	酪農產業支援
	<細目追加>	
	– 사우나 스토브	「사우나 바스」중에 스토브 부분만 분리하여 輸入함으로써 租稅負擔을 回避하고 있는 것을 防止함.
	– 電氣이불	高級物品으로서 주로 輸入되고 있는 것이므로 租稅衡平上 課稅

改 正 前	改 正	備 考
• 모터보트중 漁業·貨物運搬·消防·曳引船用으로 特殊製作된 것은 非課稅	<細目除外> 급수선·병원선·救命船(救命艇·短艇)으로 特殊製作된 것	用途 및 構造의 特殊性을 고려함
• 澱粉糖(물엿 포함)	<細目除外> 麥芽물엿	麥芽물엿은 전래의 固有 食品임을 고려함.

2. 暫定稅率의 適用期限延長 및 適用品目追加(法 第1條의 2, 令 第2條의 3)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適用期限延長	基本稅率의 10%가 適用되는 期間 : 2年間	4年間
• 適用品目 追加	– 비디오테이프레코더 – 비디오테이프 –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텔레비전 카메라 • 텔레비전 映像投寫機 및 同 스크린을 추가

가. 暫定稅率制度의 立法趣旨

特別消費稅가 課稅되는 내구소비재중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물품으로서 輸出戰略上 內需基盤의 擴大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일정기간별로 稅率을 引下適用하여 줌으로써 新技術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制度인데, 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開發은 重要한 政策目標의 하나이므로 1982年 1月 1日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暫定稅率의 適用期限을 延長한 理由

일반적으로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여 製品을 만드는 데는 初期에 막대한 資金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投資한 費用을 回收하는 데는 오랜 時日이 걸리기 때문에 現在의 2年間은 짧다고 판단하여 4年間으로 연장한 것이다.

다. 暫定稅率 適用品目追加

현재 暫定稅率을 適用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레코더·비디오테이프·마이크로웨이브오븐」 이외에 이번 改正에서 「텔레비전카메라와 텔레비전映像投寫機 및 同 스크린」을 추가 指定하였는데 이들 물품은 光學技術과 電子技術을 複合的으로 應用한 고도의 精密을 요하는 技術開發 先導 물품이기 때문이다.

適用期間과 稅率은 다음과 같다.

品　　目	基 本 稅 率	適用期間 및 稅率		
		4年間	2年間	1年間
<既存品目>		(82年~85年)	(86年)	(87年)
• 비디오테이프레코더	40%	4%	16%	28%
• 비디오테이프	40%	4%	16%	28%
• 마이크로웨이브오븐	28%	2.8%	11.2%	19.6%
<追加品目>		(83年~86年)	(87年)	(88年)
• 텔레비전 카메라	40%	4%	16%	28%
• 텔레비전映像投寫機 및 同 스크린	40%	4%	16%	28%

3. 승용자동차에 대한 彈力稅率適用期限延長(令 第2條의 2, 令 第10,700號 附則)

區　　分	基本稅率	彈力稅率	改 正 前	改　正
• 小型乘用車	15%	10.5%	82. 12. 31까지	83. 6. 30까지
• 中型승용차	20%	14%		

82年 상반기부터 新車種의 開發, 金利의 引下, 택시 合乘禁止와 漸進的인 景氣恢復에 힘입어 出庫가 81年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出庫實績이 良好하였던 79年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景氣活性化施策을 위한 産業政策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彈力稅率을 다시 6個月 더 延長하였다.

4. 免稅範圍의 一部調整

가. 관광요정에 대한 免稅(法 第19條의 2 第4號, 令 第33條의 2 第1項第4號)

從前에는 觀光宿泊業者가 직접 경영하는 遊興飮食業所에서 외국인 관광객등에게 숙박과 함께 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에 한하여 免稅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관광요정에서 외국인관광객등이 外貨를 지불하고 遊興飮食行爲를 하는 경우에도 外貨獲得事業인 점을 고려하여 免稅가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免稅方法은 외국인 관광객등의 國籍·人員 및 遊興飮食料金등이 기재된 「외국인 관광객 거래확인서와 알선수수료영수증」을 해당업소에서 備置·記錄하여야 하며,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할 때에 外貨獲得事實證明書를 提出하여야 免稅가 된다.

나. 외국인專用 販賣場에서 免稅하는 物品追加(令 第27條)

從前에는 外國人專用 販賣場에서 外貨를 받고 免稅로 판매할 수 있는 物品으로 寶石類·TV등 15個 品目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 「크리스털유리製品」을 추가하였다. 크리스털유리製品은 외국인의 嗜好度가 높은 물품이므로 國內輸出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5. 其他補完事項

가. 貴金屬製品을 賃加工할 경우의 課稅標準 明瞭化(令 第9條第3項)

寶石商인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貴金屬製品을 만들어 달라는 委託을 받아서 加工만 하여주

고 工賃을 받은 때에는 그 工賃만을 課稅標準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순전히 加工만 하여 주는 加工業者가 소비자로부터 委託받아 加工한 경우에는 무엇을 課稅標準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明文의 규정이 없어 이번 改正에서 加工業者인 경우도 寶石商과 같이 加工賃을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分明히 규정하였다.

나. 推計決定方法規定(令 第18條第2項)

特別消費稅法에서는 課稅標準 推計事由만 規定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決定方法은 規定되어 있지 아니하여 執行上 문제가 있어 이번 改正에서 이를 보완하여 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69條의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였다.

- ○ 同業者權衡에 의한 방법
- ○ 生產收率을 적용하는 方法
- ○ 營業效率을 적용하는 方法
- ○ 業種別 基準에 의한 方法등이다.

다. 荷置場으로부터 製造場에 還入하는 물품에 대한 未納稅搬出適用 (令 第19條第3項第5號)

從前에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에서 荷置場으로 搬出하는 物品은 未納稅로 搬出하는 것이 가능하고 荷置場으로부터 製造場으로 還入하는 物品은 未納稅로 搬出이 되지 아니하는 不合理한 點이 있어 이번 改正에서는 荷置場에서 製造場으로 還入되는 물품도 未納稅搬出이 가능하도록 補完하였다.

라. 海外就業勤勞者에 대한 免稅쿠폰制度의 事後管理 간소화(令 第22條의 2 第2項)

從前에는 海外就業勤勞者의 免稅國產家電製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자(引渡者)는 外貨免稅品引渡報告書에 引渡明細書와 免稅쿠폰(引受證)을 첨부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번잡하였으나 이번 改正으로 免稅쿠폰(引受證)은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明細書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마. 外國航行船舶用등의 物品에 대한 事後管理用 서류변경(令 第20條第2項·第33條第1項·第34條第2項)

從前에는 外國航行船舶등에서 사용하는 石油類등 船用品을 免稅할 경우 事後管理를 위하여 稅關長이 발행하는 船積證明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關稅行政에 번거로움을 주었으나 이번 改正에서 船積證明書 대신에 關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稅關長이 發行하고 있는 船積許可書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船積許可書라 함은 關稅法施行令 第61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船長이 免稅物品을 受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附加價値稅法施行令

[要　約]

'83 年稅制改編에서 附加價値稅는 法律의 改正은 없었다. 다만,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改正하여 政府業務代行團體중 一部 團體의 免稅範圍를 調整하고 零稅率適用節次를 簡素化하는등 現行制度의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1.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政府業務代行團體 範圍調整
   가. 大韓住宅公社의 事業중 國民住宅規模(85㎡)를 초과하는 住宅分讓事業을 課稅로 轉換
   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事業중 飼料製造事業을 課稅로 轉換
   다.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을 政府業務代行團體에 추가

2. 零稅率適用 範圍擴大 및 節次簡素化
   가. 零稅率適用을 받는 國內輸出의 範圍擴大
   나. 外國政府機關등에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零稅率適用要件 緩和

3. 同一場所에서 5年以上 事業을 繼續한 事業者에 대한 稅制上 優待
   가. 更正調査 制限
   나. 標準申告率 輕減適用

4.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 調整
   가. 輸入原資材에 대한 價格 統一
   나. 特別消費稅課稅 對象品目은 控除對象에서 除外

5. 기　타
   가. 修正稅金計算書의 交付期限延長
   나. 課稅事業을 위하여 購入한 減價償却資産을 免稅事業에 일부 轉用할 경우 課稅標準計算方法 新設
   다. 新規事業者의 買入稅額控除基準日을 事業者登錄申請日로 調整
   라. 書式改正

1.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政府業務代行團體의 範圍調整

附加價値稅는 「財貨」나 「用役」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對物稅이므로 원칙적으로 免稅與否는 課稅對象인 「財貨」나 「用役」의 特性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따라서 過去의 營業稅와 같이 納稅者의 個別的特性이나 營利性 有無를 基準으로 免稅를 決定하는 이른바 「主體別 免稅」는 原則的으로 困難하다. 다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代行하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를 지우는 경우에는 모든 公共行政서비스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해야 하는 問題點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 團體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免稅되고 있는 政府業務代行團體의 事業중에는 純粹한 政府代行業務外에 一般企業과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이 一部있어 免稅趣旨에 어긋날 뿐 아니라 市場經濟秩序에 교란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施行令改正에서는 私經濟部門과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의 경우에는 免稅團體의 業務라 하더라도 課稅로 轉換하여 附加價値稅의 長點인 價格中立性을 回復토록 하였다.

가. 大韓住宅公社의 事業中 國民住宅 規模초과 住宅事業등은 課稅로 轉換 (令 第38條第6號 但書)

1) 住宅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同公社의 모든 事業을 現存 免稅하고 있으나 改正令에서는 同公社의 事業中 國民住宅規模(25.7坪)를 초과하는 住宅分讓事業과 商街의 分讓 및 賃貸事業을 課稅事業으로 轉換하였다.
2) 다만, 住宅事業中 國民住宅과 當該住宅의 建設用役의 供給은 租稅減免規制法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附加價値稅가 免稅된다.
3) 일부사업의 課稅轉換에 따른 經過措置
   - ○ 83. 1. 10까지 事業者登錄證의 정정교부
   - ○ 83. 1. 25까지 課稅로 轉換되는 事業에 관련하여 取得한 商品, 製品, 材料등의 在庫品 申告
   - ○ 申告한 在庫品의 買入稅額은 83年 1期分의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

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事業중 飼料製造業을 課稅轉換(令 第38條第12號)

1) 同組合中央會의 事業中 飼料製造事業은 一般飼料 製造業者와 競爭關係에 있으므로 價格의 中立性 回復을 위하여 改正令에서는 課稅事業으로 轉換하였다.

   다만, 地域別 組合의 飼料製造事業은 規模의 零細性을 감안하여 계속 免除되도록 하였다.

2) 一般事業의 課稅轉換에 따른 經過措置

   ○ 83. 1. 25까지 飼料製造事業에 관련하여 取得한 商品, 製品, 材料등의 在庫品 申告

   ○ 申告한 在庫品의 買入稅額 控除

   申告한 在庫品中 구입시 附加價値稅를 부담한 在庫品인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買入稅額, 購入時 附加價値稅를 부담하지 아니한 免稅在庫品中 擬制買入稅額 控除對象인 原材料는 擬制買入稅額을 83年 第1期分의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받을 수 있다.

다. 政府業務代行團體追加(令 第38條第15號·第17號)

1) 서울아시아 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은 주된 事業內容이 政府代行業務이기 때문에 政府業務代行團體에 追加하였다.

   따라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 運營하는 生活物資販賣事業등은 종전에는 課稅되었으나 앞으로는 免稅된다. 다만, 同公團의 事業中 不動產賃貸業과 不動產賣買業은 一般事業者와의 衡平을 考慮하여 계속 課稅하도록 例外를 두었다.

2) 同公團이 지금까지 課稅를 받아오던 事業과 관련하여 구입한 販賣用 在庫品에 대하여는 이를 時價로 計算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確定申告時에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2. 零稅率 적용범위 擴大 및 節次 簡素化

零稅率 適用範圍를 擴大하고 그 適用節次를 簡素化하여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의 支援을 強化하였다.

가. 零稅率 適用을 받는 國內輸出의 範圍擴大(令 第24條第2項)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國內業者에게 輸出物品을 供給하는 경우에는 輸出에 準하여 零稅率을 適用하고 있으나 그 適用範圍가 第2次 內國信用狀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執行過程에서 第2次 內國信用狀과 第3次 內國信用狀의 구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輸出支援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衡平이 逸失되기 때문에 改正令에서는 輸出하는 財貨와 關聯하여 開設된 모든 內國信用狀에 의한 供給에 대해서는 零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나. 外國政府機關등에 대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零稅率 適用要件 緩和(令 第26條第4號)

國內에 駐在하는 外國政府機關, 國際機構, 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그 代金을 外國換銀行에서 外換證書 또는 원貨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零稅率을 適用하였던 바 이러한 機關에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였더라도 그 代金을 外國政府機關 등으로부터 直接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外貨를 獲得하고 零稅率을 적용받지 못하는 不合理한 事例가 있어 앞으로는 外國政府機關에 財貨나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는 代金受取方法에 관계없이 모두 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輸出財貨의 供給時期 調整(令 第21條第1項第10號)

1) 輸出財貨供給時期를 「輸出免許日」에서 「輸出財貨의 船積日」로 改正하였다.
   輸出財貨의 供給時期를 종전과 같이 免許日로 하는 경우에는 供給時期가 公明하다는 行政節次面에서의 장점은 있으나 所得稅法이나 法人稅法上의 損益의 歸屬時期와 맞지 않아 企業의 會計處理에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改正한 것이다.
2) 遠洋漁業의 경우에는 現地販賣등으로 인하여 輸出된 후 輸出物量이 變更되는 事例가 있는 바, 이러한 特殊한 事情을 考慮하여 「輸出財貨의 供給價額이 確定되는 때」를 供給時期로 하였다.

3. 同一場所에서 5年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 대한 稅制上優待

現金去來를 주로 하는 소매, 음식업등에 있어서는 같은 場所에서 長期間 事業을 계속하는 경우 新規事業者보다 去來實績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稅金을 納付하는 事例가 많은 實情이다. 이러한 納稅現實을 감안하여 同一場所에서 5年以上 事業을 계속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稅制上의 惠澤을 附與하였다.

가. 對 象

소매, 음식업등 主로 最終消費者와 去來하는 業種(令 第55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業種)중 國稅廳長이 指定하는 業種의 事業者로서 同一場所에서 5年以上 계속 사업한 자

나. 稅制上 惠澤

1) 更正調査制限(令 第68條第3項)
   客觀的인 證憑資料에 의하여 過少申告한 사실이 明白한 경우에 限하여 更正을 할 수 있도록 更正要件을 強化함.
2) 標準申告率 輕減適用(令 第76條第2項)
   事業者가 申告한 대로 認定해주는 課稅特例者의 標準申告率을 他業所보다 前期對比 增加率의 50% 範圍內에서 國稅廳長이 輕減適用
   (例) : 他業所의 標準申告率 : 前期對比 120%
   長期계속業所의 標準申告率 : 前期對比 110%

4. 擬制買入稅額 控除制度 調整

가. 擬制買入稅額 控除制度의 趣旨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賣出稅額에서 控除하는 買入稅額은 買入時 徵收당한 稅額에 限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農產物, 畜產物, 林產物, 水產物등 免稅原材料를 구입하여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를 製造하여 販賣하는 경우(例 : 복숭아통조림製造)에는 例外的으로 買入時 徵收당한 附加價値稅가 없더라도 免稅原材料價額의 一定率(10/110, 輸出의 경우 5/105)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賣出稅額에서 控除받을 수 있는데 이를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 한다.

그러나 現行制度는 輸出原材料의 경우 그 價額이 輸入條件에 따라 각기 다름에 따라 控除惠澤의 衡平이 逸失된 점이 있고 또한 控除對象品目중 일부는 擬制買入稅額控除 趣旨에 어긋나는 品目이 있어 이를 補完하였다.

1) 輸入原材料의 價額統一(規則 第19條第3項)

輸入原材料(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에 限하여 控除 認定)에 대한 擬制買入稅額의 計算은 다음 算式에 의한다.

<算　式>

$$\text{輸入原材料價額} \times \frac{10}{110}(\text{輸出의 경우 } \frac{5}{105}) = \text{擬制買入稅額控除額}$$

위 算式에서 輸入條件(FOB. C&F. CIF)에 따라 輸入價額이 각기 相異함으로 控除惠澤이 차이가 있는 矛盾點이 있어 이를 改正하여 輸入條件에 관계없이 FOB價格으로 輸入價格을 統一하여 같은 物量의 輸入에 대하여는 같은 金額을 控除받도록 하였다.

2) 따라서 CIF C&F條件으로 輸入하는 경우에는 運賃과 保險料를 除外한 純粹原材料價額을 基準으로 하여 擬制買入稅額控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運賃과 保險料는 運賃明細書나 保險料明細書에 의하여 確認되는 경우에는 確認된 金額에 의하고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關稅廳長이 定하는 運賃, 保險料換算率表를 適用하여 計算하도록 하였다.

나. 擬制買入稅額이 控除되지 아니하는 財貨의 範圍調整(規則 別表 3)

擬制買入稅額控除는 價格補助金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酒稅課稅對象이나 과자류등과 같은 財貨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控除되지 아니하는 財貨」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分類表上에는 일부 과자類와 特別消費稅課稅對象財貨에 대하여서도 擬制買入稅額을 控除할 수 있으므로 이는 同制度의 趣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 財貨를 追加 規定하여 擬制買入稅額控除가 排除되도록 하였다.

擬制買入稅額이 控除되지 아니하는 財貨

區 分	追 加 規 制 品 目
과자류	아이스크림 포장과자, 스낵과자, 코코아, 카카오마스
기 타	特別消費稅가 課稅되는 物品중 家具, 毛皮製品, 淸涼飮料, 嗜好飮料, 氷菓類와 醱酵乳 및 이와 類似한 酸性飮料, 滋養強壯品, 天然果實飮料, 사탕, 澱粉糖(물엿은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한다)

5. 其 他

가. 修正稅金計算書의 交付期限延長(令 第59條)

修正稅金計算書의 交付期限을 延長하여 修正申告制度의 實效性이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當該去來에 대한 供給時期가 속하는 課稅期間內	當該去來에 대한 國稅基本法上 修正申告期限內 ※ 修正申告期限 ○ 豫定申告 : 豫定申告期限 經過後 3月內 ○ 確定申告 : 確定申告期限 經過後 6月內

나. 課稅事業을 위하여 구입한 減價償却資產을 免稅事業에 一部 轉用한 경우 課稅標準 計算方法 新設(令 第49條第2項)

課稅事業을 위하여 구입한 減價償却資產을 免稅事業에 轉用하는 경우에는 이를 課稅去來로 看做하여 課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制度에서는 課稅事業을 위하여 구입한 財貨를 「全部」 免稅事業에 轉用하는 경우에는 課稅標準 計算方法이 있으나 「部分的」으로 轉用하는 경우에는 課稅標準計算方法이 없어 지금까지 사실상 課稅를 못하는 事例가 있어 이번 改正令에서는 이를 新設補完하였다.

<算　式>

當該資産의 取得價額 × (取得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을 基準으로 每期 25%씩 遞減適用) × (免稅事業에 일부 轉用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總收入金額에 대한 免稅收入金額比率) = 課稅標準金額

<計 算 例>

專貰버스사업(課稅)을 경영하는 A運輸會社가 修理設備를 取得하여 사용하던 중 市內버스事業(免稅)을 兼營하게 되어 修理設備를 專貰버스와 市內버스 修理에 共通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修理設備取得日 : 1982. 1. 10

○ 修理設備取得價額 : 1億원

○ 市內버스事業開始日 : 1982. 7. 25

○ '82年 2期分 總收入金額中 免稅收入金額比率 : 40%

○ 課稅標準算入金額 : 1億원×75%×40%=3千萬원

다. 新規事業者의 買入稅額控除基準日을 「事業者登錄申請日」로 조정(令 第60條第1項第3號 및 第6項)

新規事業者의 買入稅額控除基準을 從前의 「登錄證交付日」에서 「登錄申請日」로 하여 開業準備에 따른 買入稅額 控除範圍를 擴大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登錄申請日로부터 登錄證을 交付받는 날까지의 去來에 대하여는 事業者의 住民登錄番號를 記載하여 稅金計算書를 受取한 경우에는 買入稅額을 控除받을 수 있다.

라. 書式改正一別紙書式 參照

○ 事業者登錄證

※ '83. 1. 31까지 更新交付

○ 稅金計算書

※ 舊書式은 '83. 3. 31까지 使用할 수 있음.

○ 擬制買入稅額控除申告書

※ 供給者의 事業者登錄番號를 追加함.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자 등 록 증

(등록번호 제 □□□ - □□ - □□□□□ 호)

① 상호 (법인명)		② 납세번호	
③ 성명 (대표자명)		④주민 등록번호	
⑤ 사업장(주사업장) 소재지	통 반 (아파트 동 호)		
⑥ 사업자의 주소	통 반 (아파트 동 호)		
⑦ 개업연월일 (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년 월 일		
⑧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⑨ 교부사유			

⑩ 검열사항	신청연월일	. . .	. . .	. . .	. . .	. . .
	검열연월일	. . .	. . .	. . .	. . .	. . .
	검열인					
	신청연월일	. . .	. . .	. . .	. . .	. . .
	검열연월일	. . .	. . .	. . .	. . .	. . .
	검열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2207-318C(1)
82.12.20 승인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11호서식) (적색)

세금계산서(공급자제출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년	월	일	공란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불명사유	담당	주무	과장	서장

2207-325(4-1)A
1982.12.20 승인

190㎜×134㎜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제출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년	월	일	공란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불명사유	담당	주무	과장	서장

2207-325(4-2)A
1982.12.20 승인

190㎜×134㎜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색)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년	월	일	공란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청구 함.

2207-325(4-3)A
1982.12.20 승인

190㎜×134㎜
(인쇄용지특급 20g/㎡)

(별지 제11호서식) (적색)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년	월	일	공란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청구 함.

2207-325(4-4)A
1982.12.20 승인

190㎜×134㎜
(인쇄용지특급 20g/㎡)

〈전면〉
(별지 제30호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① 법인명(상호)		② 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의 주소			⑥ 업 태	
⑦ 사업장소재지			⑧ 종 목	

신 고 내 용

⑨ 공급받은 연월일	⑩ 품 명	⑪ 수 량	⑫ 매입가격	⑬ 공제율	⑭ 의제매입세액	공급자 ⑮ 성명(법인명)	⑯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⑰ 주 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207-343B(1)
'82.12.20 승인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268㎜
신문용지54g/㎡

〈이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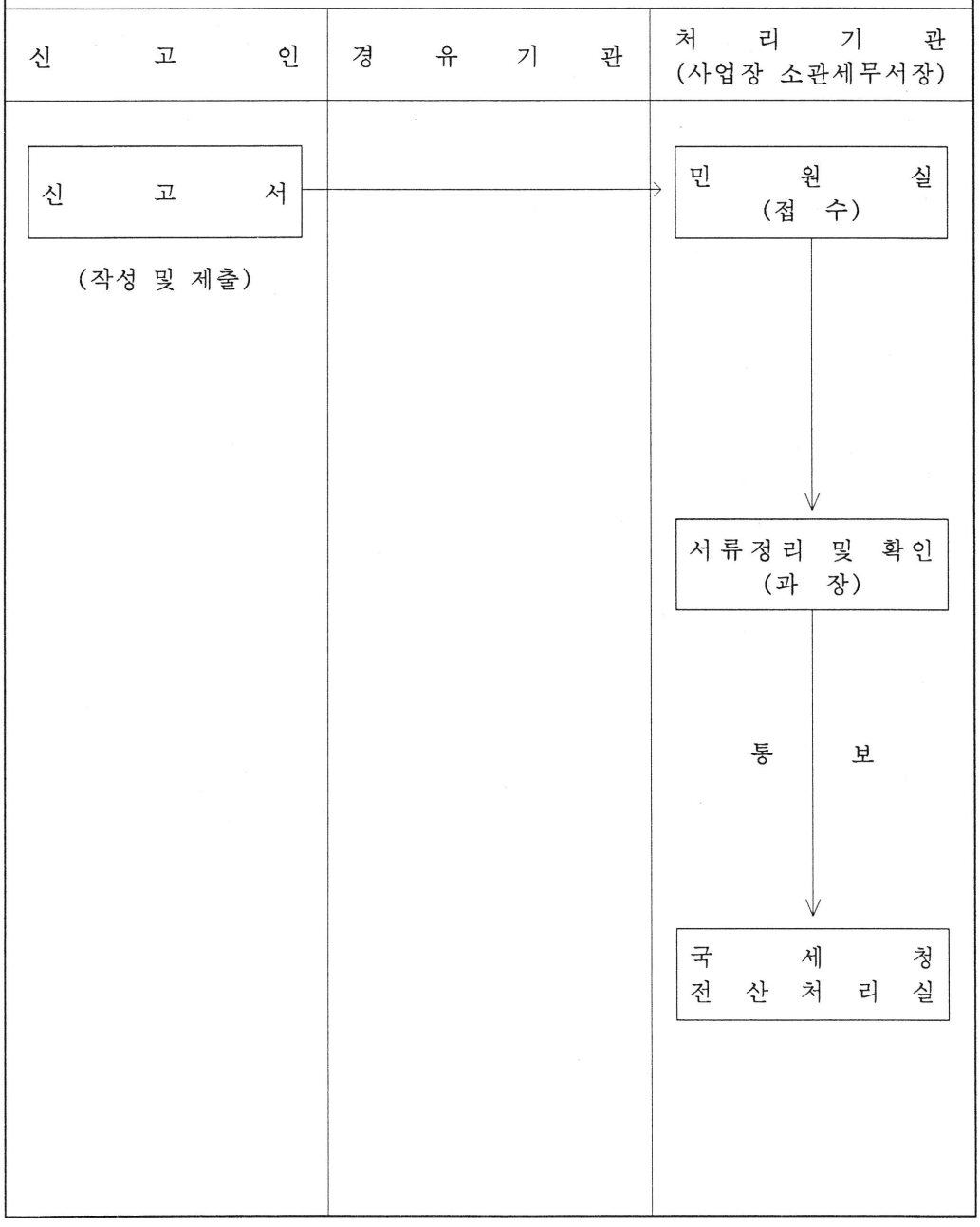

酒稅法施行令

[要　約]

濁酒에 對한 消費者의 嗜好에 副應하기 위하여 濁酒알콜度數를 上向調整하고 酒類小賣販賣免許의 申告制度를 簡素化하여 納稅便宜를 도모하였다.

1. 濁酒알콜度數調整, 6度→8度
2. 擬制賣買免許申告制度의 簡素化

1. 濁酒알콜度數上向調整(6度→8度)

우리나라 傳來의 濁酒알콜度數는 8度였으나 1962年부터 6度濁酒를 生產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國民 大多數가 8度濁酒를 選好할 뿐 아니라 現行 6度는 長期保管등 酒質保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從前 8度로 還元하는 것이다.(令 第2條第1項)

2. 酒類擬制販賣免許申告의 節次簡素化

酒類小賣業者(飮食店, 飮料雜貨店, 日用雜貨店)가 酒類를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所管稅務署長에게 酒類販賣業申告를 하도록 한 것을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事業者登錄申請書에 販賣할 酒類의 種類를 記載하고 申請하여 事業者登錄證을 交付받은 경우에는 擬制販賣免許申告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申告를 하지 않도록 納稅節次를 簡素化하였다.(令 第15條의 2)

改正稅法 總覽 (Ⅰ)

1994年 10月 1日 印刷
1994年 10月 10日 發行
發行處 韓國租稅硏究院
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60번지
전화 : 576-8540~1, 팩시밀리 : 574-9183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印 刷 (株) 新進商事(503-7154)

값 100,000원 (Ⅰ·Ⅱ·Ⅲ권, 전 3권)